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일 반 회 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026. 1.

고 용 노 동 부

- 순 서 -

I. 일반회계	1
(1) 고용센터인력지원(1031-300)	3
(2) 직업안정기관운영(1032-301)	10
(3)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1032-302)	19
(4)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1032-303)	30
(5) 고용노동통계조사(1033-470)	38
(6) 사회적기업 지원(1037-311)	53
(7) 치유희직 지원(1038-303)	64
(8)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1039-321)	69
(9) 고용동향조사분석(1040-300)	76
(10) 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	97
(11) 청년내일채움공제(1044-301)	105
(12) 고용영향평가사업(1045-301)	112
(13) 한국잡월드운영지원(1049-301)	118
(14) 해외취업지원(1051-304)	126
(15)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1051-305)	134
(16)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1051-306)	144
(17) 공정채용문화확산(1051-307)	155
(18) 청년 미래플러스(1051-308)	160
(19) 건설근로자고용지원(1060-301)	166
(20)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1070-300)	172
(21)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정보화)(1075-302)	180
(22)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지원(정보화)(1075-303)	196
(23) 내일배움카드(일반)(1131-300)	207
(24)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1131-315)	217
(25)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1133-300)	223
(26)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1134-307)	235
(27)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1134-316)	246
(28) 숙련기술장려사업(1134-317)	259
(29)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1134-500)	266
(30)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1136-300)	273
(31)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231-300)	284

(32) 실업크레딧지원(일반)(1232-351)	294
(3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1233-300)	300
(34)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1234-300)	306
(35)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1331-300)	313
(36) 중장년 경력지원제(1336-305)	323
(37)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339-301)	328
(38) 중장년층취업지원(1340-300)	333
(39) 경계선지능청년지원(1343-300)	340
(40) 상생협력 확산지원(2031-301)	344
(41) 취약노동자지원(2031-303)	352
(42) 한국고용노동교육원운영지원(2031-305)	364
(43) 노사발전재단 지원(2036-311)	372
(44) 일터혁신 상생컨설팅(2039-300)	379
(45) 근로조건개선지원(3031-302)	386
(46) 근로감독역량강화(3032-306)	406
(47)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3034-313)	419
(48) 최저임금위원회전문성강화(3036-301)	427
(49) ILO 분담금(ODA)(3050-300)	432
(50)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3050-301)	436
(51)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3050-302)	449
(52)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3051-308)	462
(53)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4135-300)	474
(54) 본부인건비(7001-100)	486
(55) 노동위원회인건비(7002-104)	490
(5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건비(7002-150)	494
(57)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7007-107)	499
(58) 사회복지무요원운용(본부, 총액)(7011-211)	503
(59)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총액)(7011-212)	507
(60) 기본경비(고용정책실, 총액)(7011-213)	512
(61) 기본경비(노동정책실, 총액)(7011-214)	516
(62)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총액)(7011-216)	520
(63)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 총액)(7011-217)	524
(64)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총액)(7011-218)	528
(65) 사회복지무요원운용(본부, 비총액)(7011-251)	532
(66)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총액)(7011-252)	536

(67) 기본경비(고용정책실, 비총액)(7011-253)	541
(68) 기본경비(노동정책실, 비총액)(7011-254)	545
(69)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비총액)(7011-256)	549
(70)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 비총액)(7011-257)	553
(71)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비총액)(7011-258)	557
(72) 사회복무요원운용(노동위, 총액)(7018-219)	562
(73) 산재재심사위원회기본경비(총액)(7018-220)	566
(74)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7018-221)	570
(75) 노동위원회기본경비(총액)(7018-222)	574
(76) 사회복무요원운영(노동위, 비총액)(7018-261)	578
(77) 산재재심사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7018-262)	582
(78)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7018-263)	586
(79) 노동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7018-264)	590
(80) 최저임금위원회전산경비(비총액)(7018-265)	595
(81) 서울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5)	599
(82)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6)	603
(83) 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7)	607
(84) 중부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8)	611
(85)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9)	615
(86)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30)	619
(87) 서울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67)	623
(88)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68)	627
(89) 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69)	631
(90) 중부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70)	635
(91)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71)	639
(92)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72)	643
(93) 정책연구개발(7031-300)	647
(94)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7032-310)	651
(95) 고용노동행정(정보화)(7034-500)	659
(96) 노동위원회청사관리(7036-306)	670
(97) 청관사유지및시설관리(7036-440)	675
(98)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7039-309)	681
(99) 무료법률서비스지원(7039-310)	687
(100)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7039-502)	692
(10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7040-307)	698

(102) 고객상담센터인건비(7902-101)	708
(103) 고객상담센터운영(7931-301)	714
(104)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8421-881)	726
(10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전출(산재보험운영)(8422-882)	730
(10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전출(산재예방지원)(8422-883)	734
(107)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임채기금운영)(8425-885)	738
II.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43
(1) 진폐위로금(4131-300)	745
(2) 진폐건강진단(4131-301)	752
(3) 진폐근로자지원(4131-304)	758
III.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65
(1) 사회적기업육성(지특)(1037-312)	767
(2)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자율)(1056-315)	774
(3)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제주)(1056-315)	779
(4)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세종)(1056-316)	784
(5)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1056-317)	789
(6) 직업안정기관운영(지특)(7041-301)	797
(7) 내일배움카드운영지원(지특)(7041-310)	802
(8)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7041-316)	807
(9) 제주노동위원회지원(7041-401)	813
(10)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7041-402)	817
IV.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821
(1)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1135-308)	823
(2)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1135-750)	836
(3)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1136-309)	842
(4)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1136-750)	853



I . 일반회계



사 업 명						
(1) 고용센터인력지원(10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0
명칭	고용창출	고용센터인력지원	고용센터인력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센터 인력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사업시행주체	고용서비스정책과
		-

*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지방관서 고용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센터인력지원	94,361	97,719	97,719	108,734	108,734	11,015	11.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4,640	94,640	94,361	0	279	97,719	97,719	97,593	-	126	108,734
· 고용센터인력지원	94,640	94,640	94,361	0	279	97,719	97,719	97,593	-	126	108,7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취업알선 등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상담원 등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1. 고용서비스 제공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이하 생략)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이하 생략)

-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시설·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가 그 적성·능력·경험 등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자 개개인의 적성·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구직자에게 적합하도록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직업상담원 배치 근거 및 수행업무

□ 직업안정법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 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2(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때에는 직업안정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 근로자 수 및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고용보험법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3. 직업상담원 처우 및 보수지급 기준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조의4(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① 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민간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지급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직업상담원의 근무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지급기준을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1996년

○ '96년, 전문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인력은행을 설치하고 직업상담원 제도 도입 (민간직업상담원 채용 42명)

→ 배치 등 법적 근거 마련('99.2.8. 직업안정법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04.1.20.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4(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조항 신설)

○ '98년, 고용지원센터 설치, 외환위기로 급증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필요 인원 충원이 어려워 민간직업상담원으로 대체('06년말 1,574명)

○ '07년, '08년 직업상담원을 상담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1,446명)

- '10년~11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시간제 근무 활성화'를 위해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채용(291명)
- '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에 따라 기간제로 채용된 구인상담원(100명)·훈련상담원(200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 '13년~14년,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수행을 위해 '12~13년에 기간제로 채용된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800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 '15.1월,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 시군구에 배치되어 근무 하던 자립지원직업상담사를 고용센터 인력으로 특별채용(178명)
- '15.4월, 인력운영 효율성을 위해 고용센터에 근무하는 4개 직종(구인·훈련·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사무원)을 직업상담원(일반직급 신설)으로 통합(1,319명)
- '19.1월, 효율적 인력운동을 위해 직업상담원 일반직급과 자립지원직업상담사를 직업상담원 전임직급으로 통합
- '22년, 기존 기간제 취업지원관 정원 100명을 직업상담원으로 전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6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5,755	92,288	94,640	97,719	108,734

- 기타: 지원 인원(단위: 명)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직업상담원	1,928	1,928	1,928	1,928	1,928
기간제 직업상담원	200	200	200	200	2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사업 수혜자 :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구인기업, 구직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고용센터인력지원

: (2025 예산) 97,719백만원 → (2026 예산) 108,734백만원, 11,015백만원 증액

- (요구)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취업알선 등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상담원 등 인력운영 소요 인건비 요구

- (산출) 상용임금 88,150백만원 (직업상담원 1,928명 인건비)

일용임금 1,609백만원 (매년 1분기 급증 실업급여업무(1.7배) 대응 기간제 200명, 3개월 인건비)

복리후생비 1,337백만원 (직업상담원 1,928명 복지포인트)

고용부담금 17,638백만원 (직업상담원 1,928명 및 기간제상담원 200명 사회보험료 등)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7,719	① 상용임금: 79,149백만원 ■ 직업상담원(전임): 55,181백만원 = 2,955,305원×12월×1,556명 ■ 직업상담원(책임이상): 18,608백만원 = 4,168,348원×12월×372명 ■ 정액급식비: 3,239백만원 = 140,000원×12월×1,928명 ■ 명절상여금: 2,121백만원 = 550,000원×1,928명×2회	108,734	① 상용임금: 88,150백만원 ■ 직업상담원(전임): 57,739백만원 = 3,092,246원×12월×1,556명 ■ 직업상담원(책임이상): 19,414백만원 = 4,349,073원×12월×372명 ■ 정액급식비: 3,239백만원 = 140,000원×12월×1,928명 ■ 명절상여금: 6,694백만원 = 기본급의 60% × 2회 × 1,928명 ■ 민원업무지원비: 1,064백만원 = 50,000원 × 12월 × 1,774명
	② 일용임금: 1,552백만원 ■ 기간제 직업상담원: 1,358백만원 = 2,263,626원×3월×200명 ■ 정액급식비: 84백만원 = 140,000원×200명×3월 ■ 명절상여금: 110백만원 = 550,000원×200명×1회		② 일용임금: 1,609백만원 ■ 기간제 직업상담원: 1,385백만원 = 2,307,594원×3월×200명 ■ 정액급식비: 84백만원 = 140,000원×200명×3월 ■ 명절상여금: 110백만원 = 550,000원×200명×1회 ■ 민원업무지원비: 30백만원 = 50,000원 × 3월 × 200명
	③ 복리후생비: 1,337백만원 ■ 직업상담원 복리후생비: 1,337백만원 = 1,928명×69만원		③ 복리후생비: 1,337백만원 ■ 직업상담원 복리후생비: 1,337백만원 = 1,928명×69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④ 고용부담금: 15,681백만원 ■ 사회보험료: 9,079백만원 = 80,701백만원(상용임금)×11.2531%(보험료율) ■ 퇴직충당금: 6,722백만원 = 80,701백만원(상용임금)×8.33%(퇴직충당률) ■ 기간제 사회보험료 등: 174백만원 ■ 단수조정 : △294백만원		④ 고용부담금: 17,638백만원 ■ 사회보험료: 10,111백만원 = 88,150백만원(상용임금)×11.47%(보험료율) ■ 퇴직충당금: 7,343백만원 = 88,150백만원(상용임금)×8.33%(퇴직충당률) ■ 기간제 사회보험료 등: 18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직업상담원 1,928명, 기간제상담원 200명 인력운영
2023	직업상담원 1,928명, 기간제상담원 200명 인력운영
2024	직업상담원 1,928명, 기간제상담원 200명 인력운영
2025	직업상담원 1,928명, 기간제상담원 200명 인력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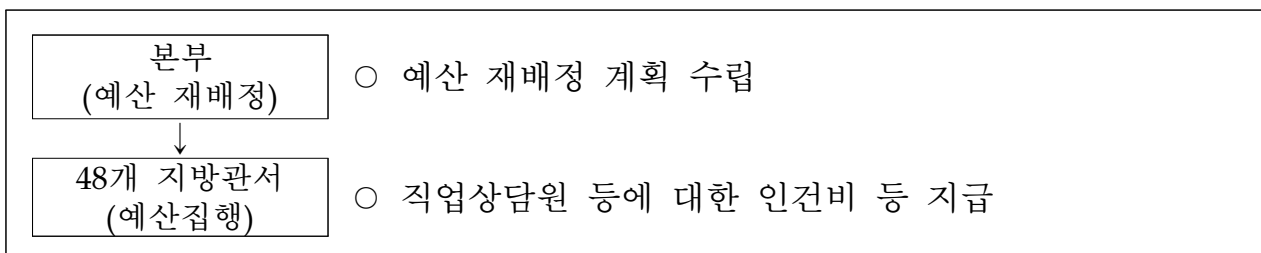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국 173개 고용센터에 고용서비스 전담인력인 직업상담원 운영(1,928명)을 통해 구직자 및 구인기업에 대한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등 고용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 한편, 기간제 직업상담원(200명) 한시적 운영을 통해 매년 연초에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실업급여 신청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원활한 대국민 고용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기간제 직업상담원 명절상여금 등을 상용 직업상담원과 동일수준으로 인상필요(환노위, '24예산)
 - 직업상담원 처우개선을 위해 민원수당 지급 및 명절상여금 증액, 기간제 인건비 단가에 공통처우개선을 적용 등 증액 필요(환노위 • 예결위 '25예산)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5,755	-	85,755	85,482	84,623	98.7	99.0	-	859
2023	92,288	-	92,288	92,288	92,125	99.8	99.8	-	163
2024	94,640	-	94,640	94,640	94,361	99.7	99.7	-	279
2025	97,719	-	97,719	97,719	97,593	99.9	99.9	-	12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통계조사관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고용센터인력 지원(1031-300)에서 고용노동통계(1033-470)로 273백만원 전용 - (불용) 직업상담원 휴직 및 결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등 집행잔액 859백만원
2023	- (전용) 직업상담원 퇴직연금적립금 납입을 위해 동일 사업 내 상용임금에서 고용 부담금으로 2,200백만원을 전용 - (불용) 직업상담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163백만원
2024	- (불용) 직업상담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279백만원
2025	- (불용) 직업상담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126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 직업안정기관운영(10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1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고용지원인프라운영	직업안정기관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직업안정 기관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직업안정기관운영	59,294	55,092	55,092	59,340	59,340	4,248	7.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기준)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3,166	61,572	59,294	989	1,289	55,092	56,081	55,427	-	653	59,340
· 직업안정기관운영	53,166	61,572	59,294	989	1,289	55,092	56,081	55,427	-	653	59,3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기업지원,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 지원

* 고용센터 임차료, 관리비, 청사 시설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비, 출장여비, 공무직(미화경비·보안실무관) 인건비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법령상 근거>

- 「직업안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① 정부는 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업무
 2. 구인자, 구직자에게 국내외의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3. 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 업무
 4. 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제공하는 업무
 5.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
 6.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7.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는 업무
 8.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연계 협력과 고용서비스 시장의 육성에 관한 업무

② 정부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3.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4. 그 밖에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역 근로자와 사업주가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대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 (고용복지+센터 운영) '98년 7월에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과의 고용보험과를 통합, 고용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제공

- 이후, 급증한 실업과 고용보험 확대 및 자활사업 시행 등으로 늘어나는 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고용센터 기능 및 조직을 지속적 개편

- '14년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용·복지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해 고용복지+센터 신설 및 기존 고용센터를 고용복지+센터로 전환

⇒ '25.12월 기준, 고용복지+센터 101개소, 중형고용센터(1) 30개소, 출장센터(2) 42개소 등 총 173개소 운영 중

(1) 중형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특화센터로 고용부, 지자체, 새일센터 직원(5명 내외) 근무

(2) 출장센터: 고용센터 직원이 지자체 청사 등 사전협의된 장소에 주 1~2회 출장 근무

○ (국정과제 96번,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 통합 고용서비스 추진(신설 및 운영),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설(전환) 등을 포함한 지역단위 통합 고용서비스 접점 및 기능 강화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3,195	71,425	53,166	55,092	59,34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구인·구직자 등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직업안정기관운영 : (2025) 55,092백만원 → (2026) 59,340백만원(+4,248백만원)

① 고용센터 운영 : (2025) 40,346백만원 → (2026) 41,484백만원 (+1,138백만원)

① 고용센터 기본 운영비 : (2025) 38,340백만원 → (2026) 39,478백만원 (+1,138백만원*)

- 101개소 × 391백만원

* 임차료, 관리비 등 물가상승 반영

② 고용센터 참여·유관기관 협업활성화 : (2025) 374백만원 → (2026) 374백만원 (전년동)

- 101개소 × 3.7백만원

③ 고용센터 냉난방기 교체 : (2025) 500백만원 → (2026) 500백만원 (전년동)

- 2개소 × 250백만원

④ 고용센터 청사 이전 : (2025) 1,132백만원 → (2026) 1,132백만원 (전년동)

- 청사수급 관리계획에 따른 청사 이전 1개소 × 1,132백만원

② 공무원근로자(미화원, 보안실무관, 시설관리(요원) 인건비

: (2025) 4,720백만원 → (2026) 5,137백만원 (+417백만원)

- 상용임금 4,231백만원(+340백만원), 복리후생비 68백만원(전년동), 고용부담금 838백만원(+77백만원)

③ 지역단위 통합 고용서비스 접점 및 기능 강화 : (2025) 9,310백만원 → (2026) 12,719백만원(+3,409백만원)

* 내내역사업명 변경 : 고용서비스 고도화 → 지역단위 통합 고용서비스 접점 및 기능 강화

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설(전환) : (2025) 0백만원 → (2026) 3,783백만원(순증)

- 2개소 × 1,892백만원

② 통합 고용서비스 제공 : (2025) 8,078백만원 → (2026) 8,936백만원(+858백만원)

- (기존운영) 8개소 × 429백만원 + (신규) 2개소 × 2,752백만원

③ 업종별 취업지원 허브 운영 (2025) 352백만원 → (2026) 0백만원(순감, 이관)

*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사업(1070-300)으로 이관

- ④ 고용센터 취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2025) 880백만원 → (2026) 0백만원(순감, 이관)
*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사업(1070-300)으로 이관

④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 (2025) 716백만원 → (2026) 0백만원(순감, 이관)
*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사업(1070-300)으로 이관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5,092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3,890,795천원 가. 고용센터 공무원 근로자 인건비 · 기본급, 기타 수당 등: 135명×2,402천원×12개월 ○ 일반수용비(210-01) : 8,470,00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고용센터 기본 운영비(사무용품 구입 등): 101개소×6,069천원×12개월 · 고용센터 유관기관 협업활성화: 56,000천원 · 고용센터 청사이전: 2개소×14,000천원 나.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 구인·구직 서식 인쇄, 각종 회의 참석 수당 등: 101개소×4,337천원 다. 고용서비스 고도화 ·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신규) 60,000천원 + (기존) 72,000천원 ·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 (업종별 포럼·워크숍 등) 2개소×1,000천원 ·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운영 : 48개소×2개 사업×2,708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4,703,00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고용센터 기본 운영비: 101개소×3,132천원×12개월 나.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 취업지원 관련 행사 안내, 탁송료 등: 101개소×66천원×12개월 다. 고용서비스 고도화 ·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2개소(신규)×80,000천원*+6개소(기존)×75,000천원(12개월) ·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 2개소×12,000천원(12개월) · 기업지원전담자 고용서비스 상담장비 통신비 : 385명×500천원+5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036,00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고용센터 기본 운영비: 101개소×855천원×12개월 ○ 임차료(210-07) : 15,318,686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고용센터 청사 임차료(중형센터 등 포함) : 101개소×11,113천원×12개월 · 고용센터 유관기관 협업활성화: 262,000천원 · 고용센터 청사이전: 2개소×168,000천원 나.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 취업지원 관련 행사 시설장비 임차료: 101개소×505천원 다. 고용서비스 고도화 ·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200,000천원)	59,340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4,230,518천원 가. 고용센터 공무원 근로자 인건비 · 기본급, 기타 수당 등: 135명×2,611천원×12개월 ○ 일반수용비(210-01) : 7,660,00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고용센터 기본 운영비(사무용품 구입 등): 101개소×6,072천원×12개월 · 고용센터 유관기관 협업활성화: 56,000천원 · 고용센터 청사이전: 1개소×28,000천원 나. 지역단위 고용서비스 접점 및 기능 강화 · 통합 고용서비스 운영 및 구축 : (신규) 60,000천원 + (기존) 96,000천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설(전환) : 2개소 × 30,0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4,621,00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고용센터 기본 운영비: 101개소×3,132천원×12개월 나. 지역단위 고용서비스 접점 및 기능 강화 · 통합 공공고용서비스 운영 및 구축 : (신규) 160,000천원 + (기존) 600,000천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설(전환) : 2개소 × 32,500천원 ○ 피복비(210-03) : 80,000천원 가. 현업 공무원 근로자 피복비 80,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036,00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고용센터 기본 운영비: 101개소×855천원×12개월 ○ 임차료(210-07) : 16,822,34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고용센터 청사 임차료(중형센터 등 포함) : 101개소×11,719천원×12개월 · 고용센터 유관기관 협업활성화: 262,000천원 · 고용센터 청사이전: 1개소×336,000천원 나. 지역단위 고용서비스 접점 및 기능 강화 · 통합 고용서비스 운영 및 구축 : (신규) 1,280,000천원 + (기존) 240,000천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설(전환) : 2개소 × 250,000천원 ○ 유류비(210-08) : 18,00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냉난방 연료비 등: 101개소×178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8,397,00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청사 시설관리, 유지보수 등: 101개소×5,403천원×12개월 · 고용센터 청사이전: 1개소×108,000천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2개소(신규)×120,000천원(6개월)+4개소(기존)×240,000천원(12개월)		나. 지역단위 고용서비스 접점 및 기능 강화
○ 유류비(210-08) : 18,000천원			• 통합 고용서비스 운영 및 구축
가. 고용센터 운영			: (신규) 180,000천원 + (기존) 1,440,000천원
• 냉난방 연료비 등: 101개소×178천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설(전환) : 2개소 × 60,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7,837,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68,50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가. 고용센터 공무원직근로자 복리후생비	
• 청사 시설관리 유지보수 등: 101개소×5,238천원×12개월		• 미화원 보안실무관 시설관리(요원 복리후생비: 135명×500천원	
• 고용센터 청사이전: 2개소×54백만원			
나. 고용서비스 고도화		○ 일반용역비(210-14) : 105,000천원	
•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가. 고용센터 운영 관련 용역비 등: 105,000천원×1식	
: 2개소(신규)×90,000천원(6개월)+6개소(기존)×180,000천원(12개월)		○ 관리용역비(210-15) : 708,000천원	
•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가. 고용센터 청사관리 등 용역비: 101개소×584천원×12개월	
: 2개소×60,000천원(12개월)		○ 기타운영비(210-16) : 558,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68,500천원		가. 고용센터 인센티브 강화 등	
가. 고용센터 공무원직근로자 복리후생비		• 우수 고용센터, 직원 인센티브 등	
• 미화원 보안실무관 시설관리(요원 복리후생비: 135명×500천원		: 30개소×1,000천원+30개소×5명×500천원	
		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운영 등: 101개소×1,807천원 (182,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05,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000,00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관련 용역비 등: 105,000천원×1식		가. 고용센터 운영	
○ 관리용역비(210-15) : 708,000천원		• 출장·교육여비 등: 101개소×1,650천원×12개월	
가. 고용센터 청사관리 등 용역비: 101개소×584천원×12개월		○ 국외업무여비(220-02) : 15,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558,000천원		• WAPES활동, 실무직원 해외 견학 등: 4인×3,750천원	
가. 고용센터 인센티브 강화 등		○ 사업추진비(240-01) : 172,000천원	
• 우수 고용센터, 직원 인센티브 등		가. 고용센터 운영	
: 30개소×1,000천원+30개소×5명×500천원		• 고용센터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등: 101개소×1,544천원	
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운영 등: 101개소×1,807천원 (182,500천원)		나. 지역 단위 고용서비스 접점 및 기능 강화	
○ 국내여비(220-01) : 2,078,000천원		• 통합 고용서비스 운영: 16,00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고용부담금(320-09) : 837,642천원	
• 출장·교육여비 등: 101개소×1,650천원×12개월		가. 고용센터 공무원직근로자 고용부담금	
나.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 미화원 보안실무관 시설관리(요원 고용부담금: 135명×517천원×12개월	
• 채용지원서비스, 일자리발굴 등 출장여비: 101개소×772천원		○ 국제부담금(340-02) : 27,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5,00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WAPES활동, 실무직원 해외 견학 등: 4인×3,750천원		• 세계공공고용서비스협회(WAPES) 가입회비: 27,000천원×1회	
○ 사업추진비(240-01) : 377,000천원		○ 실시설계비(420-02) : 348,00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가. 고용센터 운영	
• 고용센터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등: 101개소×1,456천원		• 고용센터 운영비 등: 110,000천원	
나.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나. 지역단위 고용서비스 접점 및 기능 강화	
• 취업지원 관련 설명회, 행사 등: 101개소×683천원		• 통합 고용서비스 구축: 130,000천원	
다. 고용서비스 고도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설(전환) : 100,000천원	
•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공사비(420-03) : 7,137,000천원	
: (신규) 4,000천원+(기존)×12,00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2개소×4,000천원		• 고용센터 안전리모델링, 노후시설 보수 등: 101개소×9,673천원	
• 도약보장패키지 운영 등: 48개소×2개 사업×1,438천원		• 고용센터 노후 냉난방기 교체 :2개소×14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760,650천원		• 고용센터 청사이전: 1개소×460,000천원	
가. 고용센터 공무원직근로자 고용부담금		나. 지역단위 고용서비스 접점 및 기능 강화	
• 미화원 보안실무관 시설관리(요원 고용부담금: 135명×470천원×12개월		• 통합 고용서비스 구축: 3,500,000천원	
○ 국제부담금(340-02) : 27,000천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설(전환) : 1,920,00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시설부대비(420-05) : 36,000천원	
• 세계공공고용서비스협회(WAPES) 가입회비: 27,000천원×1회		가. 지역단위 고용서비스 접점 및 기능 강화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설시설계비(420-02) : 134,000천원 가. 고용서비스 고도화 ·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2개소×67,000천원 ○ 공사비(420-03) : 5,469,00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고용센터 안전리모델링, 노후시설 보수 등: 101개소×9,673천원 · 고용센터 노후 냉난방기 교체 :2개소×140,000천원 · 고용센터 청사이전: 2개소×230,000천원 나. 고용서비스 고도화 ·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3,500,000천원 · 심층상담 공간 확충 등: 5개소×2개×25,200천원 ○ 시설부대비(420-05) : 26,000천원 가. 고용서비스 고도화 ·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28,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474,00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노후 사무기기 등 교체구매 등: 101개소×15,019천원 · 고용센터 노후 냉난방기 교체 :2개소×110백만원 · 고용센터 청사이전: 2개소×50백만원 나. 고용서비스 고도화 ·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600,000천원 · 심층상담 공간 확충 등: 5개소×2개×3,700천원 ○ 무형자산(440-00) : 1,018,50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고용센터 임차보증금 등: 318,500천원 · 고용센터 청사수급 : 100,000천원 나. 고용서비스 고도화 ·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600,000천원		· 통합 고용서비스 구축: 26,000천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설(전환) : 1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3,085,00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노후 사무기기 등 교체구매 등: 101개소×15,019천원 · 고용센터 노후 냉난방기 교체 : 2개소×110,000천원 · 고용센터 청사이전: 1개소×100,000천원 나. 지역단위 고용서비스 접점 및 기능 강화 · 통합 고용서비스 구축: 600,000천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설(전환) : 648,000천원 ○ 무형자산(440-00) : 1,378,000천원 가. 고용센터 운영 · 고용센터 임차보증금 등: 318,500천원 · 고용센터 청사수급 : 100,000천원 나. 지역단위 고용서비스 접점 및 기능 강화 · 통합 고용서비스 구축: 600,000천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설(전환) : 360,000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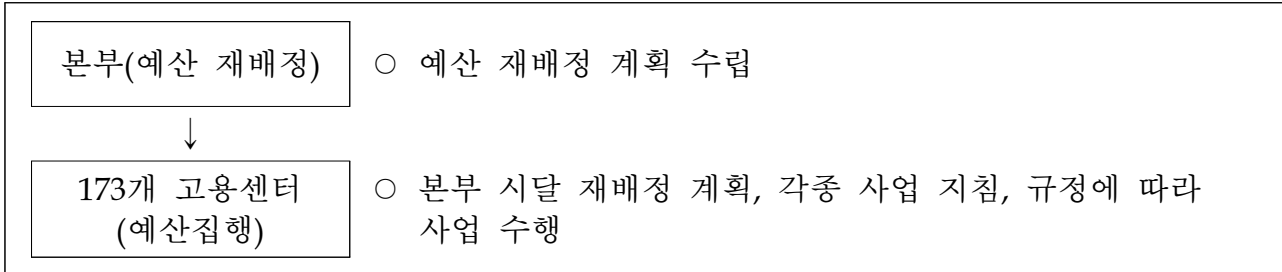
2022	고용센터 173개소(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1, 고용복지센터 30, 출장센터 42) 운영
2023	고용센터 173개소(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1, 고용복지센터 30, 출장센터 42) 운영
2024	고용센터 173개소(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1, 고용복지센터 30, 출장센터 42) 운영
2025	고용센터 173개소(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1, 고용복지센터 30, 출장센터 42) 운영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 취약계층 등에 대한 효율적인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품질 개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 |
|---|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재정지원일자리사업평가(고용부, '25.5), “우수” |
|---|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정 증감액	추경(A)						
2022	43,795	△ 600	43,195	43,195	42,763	99.0	99.0	-	432
2023	71,425	-	71,425	71,425	60,191	84.3	84.3	8,406	2,828
2024	53,166	-	53,166	61,572	59,294	96.3	96.3	989	1,289
2025	55,092	-	55,092	56,091	55,436	100.6	98.8	-	64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고용센터 청사 노후화에 따른 시설 안전 및 보수공사, 청사 이전 등을 위한 공사비 부족액, 고용센터 공무원 근로자 퇴직연금납입금 납부를 위한 고용부담금 부족액 집행을 위해 자체 전용
2023	- 전용: 고용센터 개선 공사를 위한 공사비 부족액, 고용센터 공무원 근로자 퇴직연금납입금 납부를 위한 고용부담금 부족액, 고용센터 출장비 증가로 인한 여비 부족액 집행을 위해 자체 전용
2024	- 전용: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단가 상승(일비·식비 2만원→2.5만원 등)으로 여비 예산이 부족하여 자체전용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10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2
명칭	고용창출	고용지원인프라운영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일자리 대책지원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일자리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고용정보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4,052	3,360	3,360	3,310	3,310	△50	△1.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4,053	4,053	4,052	-	1	3,360	3,360	3,357	-	3	3,310
· 일자리대책지원	300	300	299	-	1	314	314	311	-	3	314
·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	612	612	612	-	-	612	612	612	-	-	612
· 일자리사업평가	3,141	3,141	3,141	-	-	2,434	2,434	2,434	-	-	2,3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일자리대책지원>

- 고용정책심의회 등 고용정책 및 업무추진의 원활한 지원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협의 조정 및 효율화 추진, 관련 연구 실시
- 일자리사업 전면 개편에 따른 연구개발, 고용서비스·직업능력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고용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고용실천 전략 수립 지원 및 효율적 정책 추진, 지원 강화
- 고용 관련 데이터의 개방·활용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범정부 일자리 정책 지원 강화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지역고용대책을 공식 발표하도록 유도하고, 그 추진성과와 연계하여 인센티브 제공
-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노동시장 정보를 정확히 진단·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일자리 진단 시스템(지역일자리맵) 운영

<일자리사업 평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를 일자리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자리사업의 국민체감도 제고
-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대상 성과평가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유사·중복사업 정비, 저성과사업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한 평가 환류 강화로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의2, 제34조, 고용보험법 제3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5조

*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3.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고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2(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 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
- 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
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 심의로 본다.
- 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 1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제1항제6호의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제1항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받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설계·운영 방안을 조정하여야 하며, 고용

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반영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업실적, 예산서, 운영지침 등 현황 통보
 -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
 - 3.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 4.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 5.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과 그 밖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 또는 권고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실업대책사업)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별·지역별 실업 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1.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 3.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 5.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 6. 그 밖에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는 실업자로 본다.
- ④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가 그 지역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5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가 지역 내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내용, 지원의 요건·내용·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일자리대책지원)** 2001년부터 노동시장 급변에 따라 주요 고용정책 현안에 대한 공유 및 공감대 형성과 유관기관과의 고용·인적자원 정책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 추진
-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10년도 노동부 업무보고('09.12) 및 제1·3차 국가고용전략회의 ('10.1,3월)에서 지역일자리공시제 도입 계획 대통령 보고
 -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內 지역일자리 진단시스템)
 - '22년 일자리환경·양·질·정책 등 4개 구분, 총 40개 세부 지표로 구성하여 구축 시
 - '23년 지표 확대(40개→70개) 및 지역별·주제별 지표 비교기능 강화하여 구축 완료
 - '24년 5월부터 시범운영, '25년 2월부터 대국민 서비스 운영 중
- **(일자리사업평가)**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에 대해 매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차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개선 등에 반영
 - '08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위해 고용대책 재정집행상황 현장점검 사업 실시
 - '18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전체 일자리사업 대상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일자리대책지원) '01년~계속
(일자리대책지원 內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관련 거버넌스 구축) '25년~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11년~계속
(일자리사업평가) '08년~계속('23년도에 고용서비스모니터링에서 이관)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92	4,297*	4,053	3,360	3,310

* '23년 고보기금 고용서비스모니터링(1031-351) 사업에서 이관(+36억원)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일자리대책지원및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직접수행
(지역일자리 진단시스템, 일자리사업평가) 출연사업
- 사업시행주체 : (일자리대책지원및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진단시스템, 일자리사업평가)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구직자, 실업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內 지역일자리 진단시스템	출연	한국고용 정보원	289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및 제40조(위탁)
일자리 사업평가	출연	한국고용 정보원	2,384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및 제40조(위탁)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360,000	○ 일반수용비(210-01) : 268,867천원 가. 고용정책 추진 (92,767천원) · 일자리대책추진 자료 유인 등 운영비 21,267천원 · 고용정책심의회 등 전문가 수당 100,000*20명*10=20,000천원 · 고용정책 언론 자료 배부 2,100,000*5개지*2회=21,000천원 · 고용 및 인적자원대책 브리핑 등 P/T 제작 3,300,000*5회=16,500천원 ·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 및 실무위 위원 참석 수당 200,000*10명*4회=8,000천원 · 고용행정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자료집 및 보고서 인쇄 300,000*4회=1,200천원 · 고용행정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료 및 홍보비 4,800천원 나. 지역고용 관련 업무지원 및 관련 자료 유인(176,100천원) · 지역고용 관련 지원 지방관서 운영비 2,010,000*47개관서+30,000=94,500천원 · 정책자료 유인 25,000*40부*47개관서+600,000원=47,600천원 · 일자리공시제 안내자료 배부 2,000부*1회*6,500원=13,000천원 · 일자리공시제 업무매뉴얼 제작배부 1,500부*1회*10,000원=15,000천원 · 지역산업일자리 전문가회의 수당 200,000원*10명*3회=6,0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0,000천원 가. 공공요금 1,200천원 나. 일자리 대책 등 홍보 안내문 발송 190*5,000개소*4회=3,800천원 다. 일자리공시제자료배포 200원*25부*4회*244지자체+120000=5,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5,000천원 가. 일자리 대책 등 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271,000천원 가. 공시제 평가지원 271,000천원 · 지자체 평가 및 시상 710,000원*243지자체+1,470,000=174,000천원 · 자치단체 담당자역량강화 240,000원*73지자체*2회-40,000원=35,000천원 · 기타경비(사무용품구입비, 전자장비 임차료 등)62,000천원 ○ 국내여비(220-01): 23,113천원 · 일자리대책관련 지도점검 550,000*2회*4조=4,400천원 · 지방관서 및 관련기관(단체) 경상업무 출장여비 4,183천원 · 일자리대책 관련 설명회 및 간담회(관외)36,000원*5회*8명=1,440천원 · 일자리공시제 등 지자체 확인지도(관외)36,000원*181개지자체*2명+58,000원=13,09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9,020천원 가. 일자리대책 관련 전문가등 간담회 25,000*15명*7회+115,000원=2,740천원	3,310,000	○ 일반수용비(210-01) : 268,867천원 가. 고용정책 추진 (88,667천원) · 일자리대책추진 자료 유인 등 운영비 41,167천원 · 고용정책심의회 등 전문가 회의체 자료 유인 및 수당 2,200,000*8회=17,600천원 · 고용정책 관련 책자 유인, 자료 배포 4,000*5,000부=20,000천원 · 고용 및 일자리 대책 등 발표자료 제작 3,300,000*3회=9,900천원 나. 지역고용 관련 업무 지원 및 관련자료 유인(132,200천원) · 지역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운영비 1,000,000*48개관서=48,000천원 · 지방관서 고용정책 홍보 지원 1,000,000*48개관서=48,000천원 · 정책자료 유인 등 750,000*48개관서+200,000원=36,200천원 다.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관련 업무지원(34,000천원) · 안내자료 배부 6,500원*2,000부*1회=13,000천원 · 업무매뉴얼 제작배부 10,000원*1,500부*1회=15,000천원 · 전문가회의 수당 200,000원*10명*3회=6,000천원 라. 고용행정데이터 개방관련 거버넌스 구축(14,000천원) ·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 및 실무위 위원 참석 수당 200,000*10명*4회=8,000천원 · 고용행정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자료집 및 보고서 인쇄 300,000*4회=1,200천원 · 고용행정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료 및 홍보비 4,8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0,000천원 가. 공공요금 1,200천원 나. 일자리 대책 등 홍보 안내문 발송 190*5,000개소*4회=3,800천원 다. 일자리공시제자료배포 200원*25부*4회*244지자체+120000=5,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5,000천원 가. 일자리 대책 등 5,000천원 · 9,000원*12명*12월*4일-184,000=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271,000천원 가. 공시제 평가지원 271,000천원 · 지자체 평가 및 시상 710,000원*243지자체+1,470,000=174,000천원 · 자치단체 담당자역량강화 240,000원*73지자체*2회-40,000원=35,000천원 · 기타경비(사무용품구입비, 전자장비 임차료 등)62,000천원 ○ 국내여비(220-01): 23,113천원 · 일자리대책관련 지도점검 550,000*2회*4조=4,400천원 · 지방관서 및 관련기관(단체) 경상업무 출장여비 4,183천원 · 일자리대책 관련 설명회 및 간담회(관외)36,000원*5회*8명=1,440천원 · 일자리공시제 등 지자체 확인지도(관외)36,000원*181개지자체*2명+58,000원=13,090천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나. 고용정책조정회의 관련 관계자 회의 25,000*10명*5회=1,250천원 다. 일자리공시제간담회 5,030천원 ·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25,000원*50명*2회+560,000=3,060천원 · 전문가회의 개최30,000원*15명*4회+170,000=1,97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50,000천원 가. 일자리 대책지원 관련 연구용역 50,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2,723,000천원 · 일자리사업 평가 및 일자리사업 평가분석 시스템 운영 2,434,000천원 · 지역일자리 진단시스템 운영 289,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9,020천원 가. 일자리대책 관련 전문가등 간담회 25,000*15명*7회+115,000원=2,740천원 나. 고용정책조정회의 관련 관계자 회의 25,000*10명*5회=1,250천원 다. 일자리공시제간담회 5,030천원 ·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25,000원*50명*2회+560,000=3,060천원 · 전문가회의 개최30,000원*15명*4회+170,000=1,97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50,000천원 가. 일자리 대책지원 관련 연구용역 50,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2,673,000천원 · 일자리사업 평가 및 일자리사업 평가분석 시스템 운영 2,384,000천원 · 지역일자리 진단시스템 운영 289,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 수 / 만15~64세 인 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 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만7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 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 보험자 전수조사/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고용정책심의회(5회) 개최(1.27, 3.16, 6.22, 10.18, 12.14) ○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고용정책방향 연구 진행 ○ 전국 243개 자치단체 지역일자리공시제 참여(~4.15.)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개최(7.21.) * '21년도 실적 우수 58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47억원 사업비 지원 등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통한 지역고용활성화 도모 ○ '2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6.22)
2023	○ 고용정책심의회(6회) 개최(1.27., 5.3., 6.22., 7.13., 8.31., 12.18.~21.) ○ 전국 243개 자치단체 지역일자리공시제 참여(~4.18.)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개최(8.2.) * '22년도 실적 우수 58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담당 공무원 고용노동부 장관표창 등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통한 지역고용활성화 도모 ○ '2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7.7) ○ 지역일자리맵 구축 완료('23.12)
2024	○ 고용정책심의회(5회) 개최(1.22., 4.22., 6.26., 9.26.~9.30., 11.7.~11.12.) ○ 전국 243개 자치단체 지역일자리공시제 참여(~4.19.)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개최(8.8.) * '23년도 실적 우수 65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담당 공무원 고용노동부 장관표창 등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통한 지역고용활성화 도모 ○ '24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6.26.)
2025	○ 고용정책심의회(5회) 개최(2.27., 4.30.~5.2., 8.19., 11.15.~11.18. 12.15.~12.17.) ○ 전국 243개 자치단체 지역일자리공시제 참여(~4.18.)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개최(9.30.) * '24년도 실적 우수 64개 자치단체에 시상, 담당 공무원(19명)에 고용노동부 장관표창 등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통한 지역고용활성화 도모 ○ '25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8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일자리대책지원>

- 고용정책심의회 등을 통하여 중앙부처간, 중앙-자치단체 간, 공공-민간 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
-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위기 신속 대응 등을 통한 노동시장 활성화 조치
- 고용행정데이터의 공유 및 개방 확대를 통해 범정부 일자리 정책 지원 강화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 지역일자리 책임성 제고
-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일자리 자율성 제고
- 지역 간 우수한 고용정책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역고용정책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고용 창출을 제고
- 지역일자리진단시스템(지역일자리맵)을 통해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노동시장 정보를 정확히 진단·파악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고용 창출 제고

<일자리사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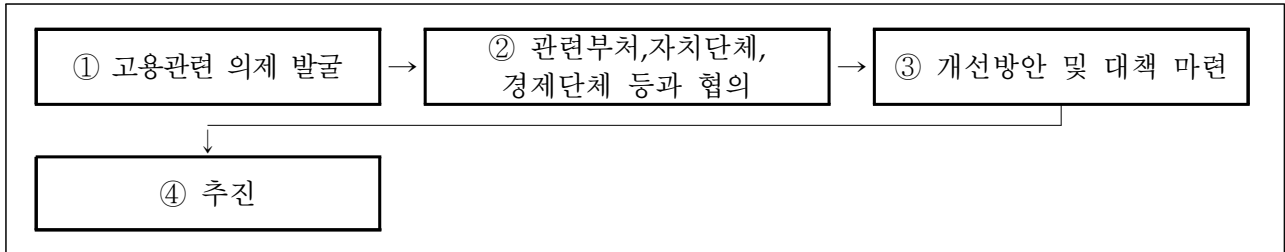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른 체계적 사업성과 관리를 통해 예산연계, 사업 개편, 일자리사업 범위조정 등 환류기능 강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분석 시스템을 통해 성과평가 데이터 산출의 정확성·효율성 제고 등 분석체계 고도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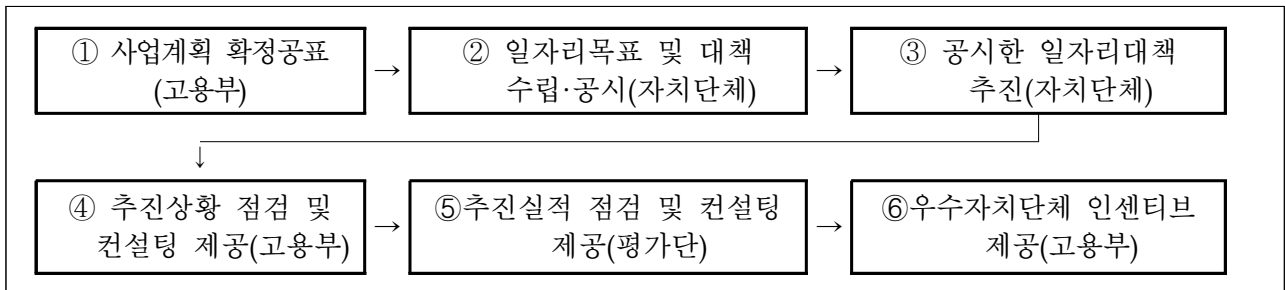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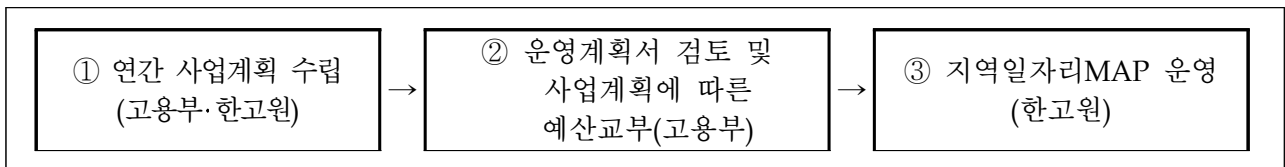
○ 일자리대책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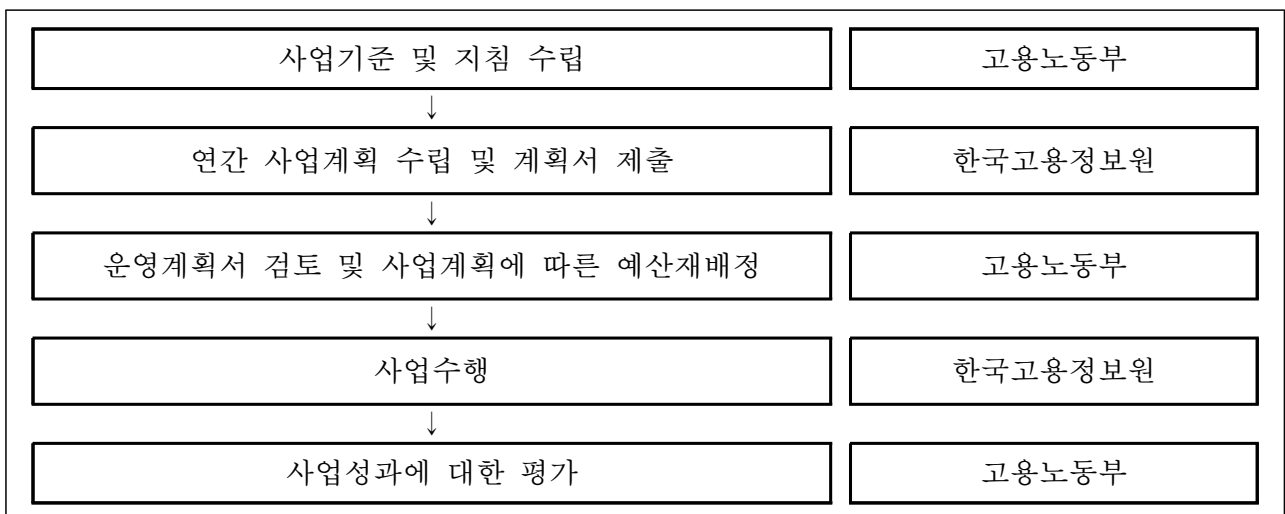
○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內 지역일자리 진단시스템



○ 일자리사업평가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92	-	692	692	652	94.2	94.2	-	40
2023	4,297	-	4,297	4,297	4,203	97.8	97.8	-	94
2024	4,053	-	4,053	4,053	4,052	99.9	99.9	-	1
2025	3,360	-	3,360	3,360	3,357	99.9	99.9	-	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집행잔액(21백만원)
2023	집행잔액(94백만원)
2024	집행잔액(1백만원)
2025	집행잔액(3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4)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10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3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고용지원인프라운영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소관부처	실·국·과(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사업시행주체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2030자문단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사업시행주체	

- ※ 1) 사업시행주체는 피보조·피출연 기관(지자체 보조 사업에서 지자체는 제외)을 의미
 2) 내역사업별 사업 담당자가 모두 같은 경우 사업명에 세부사업명을 기재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고용지원 인프라운영	82,935	109,730	109,730	108,560	106,820	△2,910	△2.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83,147	83,147	82,935	-	212	109,730	109,730	108,525	-	-	106,820
·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	82,801	82,801	82,773	-	28	109,384	109,384	108,266	-	-	106,524
· 2030자문단운영	67	67	27	-	40	67	67	56	-	-	67
· 운영비	279	279	135	-	144	279	279	203	-	-	22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학내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2030 자문단' 운영
- (내역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학내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과 기초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재학생,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 지역청년, 쉬었음 청년 등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
- (내역사업: 2030 자문단 운영)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30 자문단'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제공)** ①정부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①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정부는 대학 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5. 10. 「청년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 일환으로 대학일자리센터 도입(상명대 등 21개교)
- '21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후속 추진
- '23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에서 '청년센터 운영'으로 이관하고 세부 사업명을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으로 변경
- '23년 및 '24년 재학 단계의 청년들 및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들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 '25년부터 졸업 후 미취업 청년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소요기간 단축 등 장기 니트화 방지를 위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728	40,667	83,147	109,384	106,82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대학
- 사업 수혜자 :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보조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참여대학	102,480 백만원	거점형 57.1%, 일반형 67%	사업 시행지침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5) 109,384백만원→ ('26) 106,524백만원(△2,860백만원, △2.6%)

('25)	('26)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보조, 일반형) 200백만원×60개교=12,000백만원 - (보조, 거점형) 400백만원×60개교=24,000백만원 - (운영비, 출연) 464백만원 * 모니터링, 성과평가, 전산망 유지·보수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보조) 744백만원×60개교=44,640백만원 - (운영비, 출연) 1,680백만원 * 모니터링, 성과평가, 전산망 유지·보수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 (보조) 119백만원×120개교=14,300백만원 - (출연) 전산망 개선 3,000백만원 - (홍보) 200백만원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보조) 280백만원×30개교=8,400백만원 - (운영비, 출연) 300백만원 * 모니터링, 성과평가 - (고졸인재성장로드맵 구축) 연구 용역비 400백만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기존 대상자별로 구분·운영하던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의 내내역 사업을 통합하여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 (인프라, 보조) 300백만원×120개교=36,000백만원 - (재학생) • 15.5만명(목표인원)×지원단가(162천원)=25,110백만원 • 865명(수당)×40만원×0.61(수료율)×60개교=12,670백만원 * 단수조정 - (졸업생) • 5만명(목표인원)×지원단가(286천원)=14,300백만원 - (성과평가 등 관리비) 3,344백만원 * 2,844백만원(성과평가, 전산망 유지·보수, 500백만원(운영비))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보조) 280백만원×30개교=8,400백만원 - (운영비, 출연) 300백만원 * 모니터링, 성과평가 - (고졸인재성장로드맵 구축) 연구 용역비 400백만원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 운영>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 지정 • 600백만원×10개교

② 2030 자문단 운영: ('25) 67 → ('26) 67백만원(전년 동)

- (내역) 67백만원

· 정책모니터링, 월간 회의 개최, 세미나·포럼 운영, 여비 등

③ 운영비 : ('25) 279 → ('26) 229백만원(△50백만원)

- (내역) 229백만원(일반수용비, 임차료, 여비 등)

· PBS제도 폐지에 따라 운영비 內 연구용역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이관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 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7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 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 보험자 전수조사/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온라인 청년센터 - 정책정보제공 4,116건(중앙정부 231건, 자치단체 3,885건) - 17개 시도 180개 청년공간 정보 탑재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청년센터 - 28개 지자체에 63억 교부 - 취업역량강화 등 프로그램 2,617명 참여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16개 대학 지원
2023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99개 대학 지원 ○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2개 대학 지원 ○ 2030 자문단 운영
2024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1개 대학 지원 ○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53개 대학 지원 ○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20개 대학 지원 ○ 2030 자문단 운영
2025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포함): 121개 대학 지원 ○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64개 대학 지원 ○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30개 대학 지원 ○ 2030 자문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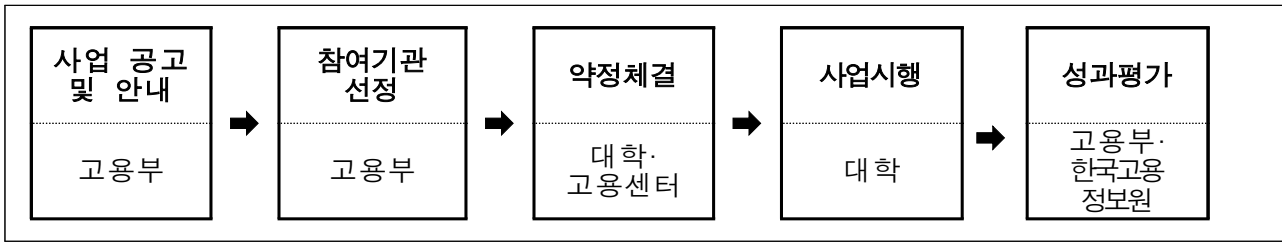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지역청년들에게까지 서비스 대상과 기능을 확대하여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 적극 지원
-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체계적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교 졸업생의 취업 가능성 제고 및 미래 인재로의 성장 기대
-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 운영) 권역별 거점 센터 지정(10개소), 쉬었음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율적인 자율적인 취업활동 촉진
- (2030자문단 운영) 청년의 국정 참여를 유도하고 분과별 추진과제를 발굴을 통해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효과적인 정책 제안을 할 것으로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고졸 미취학·미취업 청년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예결위, '24년 예산) → 조치완료 ○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지원할 전산시스템 구축(예결위, '24년 결산) → 조치완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24): 양호
--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728	-	11,728	11,728	11,570	98.6	98.6	-	158
2023	40,667	-	40,667	40,667	40,563	99.7	99.7	-	104
2024	83,147	-	83,147	83,147	82,935	99.7	99.7	-	212
2025	109,730	-	109,730	109,730	108,540	98.9	98.9	-	1,19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사유 (158백만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목표 대비 부족인원 125명에 대한 인센티브 등 미집행으로 불용 발생
2023	- 불용사유 (104백만원) · 집행잔액
2024	- 불용사유 (212백만원) · 집행잔액
2025	- 사업 중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 조정	청년고용지원 인프라운영 (1032-303)	210-14	100	청년고용지원 인프라운영 (1032-303)	210-01	지방관서 홍보비 재배정을 위해 세목변경 * 홍보물 제작, 협의체 운영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부족

사 업 명
(5) 고용노동통계조사(1033-47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470
명칭	고용창출	고용노동통계조사	고용노동통계조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노동 통계조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사업시행주체	노동시장조사과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노동통계조사	25,664	26,699	26,699	30,384	30,384	3,685	13.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164	26,164	25,664	0	500	26,699	26,699	26,317	10	372	30,384
· 고용노동통계조사	26,164	26,164	25,664	0	500	26,699	26,699	26,317	10	372	30,3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노동시장 구조 및 고용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고용노동정책 수립 시행·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통계법 제17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통계조사 작성 승인
- ILO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제160호) '88. 4. 24. 효력 발생
-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합의('07. 12. 21.): 정부는 비정규직 통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② 추진경위

- '68년부터 노동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 근로시간, 고용동향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 제공

<사업체노동력조사: '68년~계속>

- 매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사업체의 근로자수·노동이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 고용 및 임금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
- '68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상용근로자 현황 최초 조사
- '99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상용근로자 현황 확대 조사
- '08년, 조사대상을 상용근로자→ 상용·임시·일용근로자로 확대
- '09년, 노동수요측을 대상으로 일자리변동 상황을 매월 조사하는 「사업체고용동향조사」 신설
- '11년, 「사업체고용동향조사」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로 통합
- '19년, 17개 시도 고용통계 생산(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대상 '18년 이후부터 소급 공표)
- '21년, 17개 시도별 제조업 중분류 고용통계 생산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11년~계속>

- 자치단체별 지역의 고용현황을 파악하여 지역고용노동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 '11년,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를 신설(연 2회 조사)
 - '23년, 전국 산업 소분류 고용통계 생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76년~계속>

- 사업체의 현재인원과 부족인원 등 노동력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인력양성정책 및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의 기초자료로 제공
 - '76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상용근로자 현황 최초 조사
 - '04년, 조사대상을 임시·일용 및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
 - '07년, 6개 권역 지역통계 생산
 - '08년, 16개 시도 지역통계 생산 및 연간 조사에서 반기별 조사로 조사횟수 확대
 - '11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로 명칭 변경
 - '16년, 17개 시도 지역통계 생산(세종특별자치시 분리 공표)
 - '22년, 공표대상을 상용 5인 이상에서 종사자 1인 이상으로 확대 공표

<기업체노동비용조사: '83년~계속>

- 근로자 고용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종합적으로 조사·파악하여 복지노동행정 구현을 위한 노동정책 입안 자료로 사용하고 기업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83년,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체 대상 최초 조사
 - '99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대상 확대 조사
 - '05년, 회사법인으로 조사대상 변경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02년~계속>

-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실태를 인적 속성과 사업체 속성별로 실태를 조사하여 고용정책, 근로기준 및 노사정책 등 정책 개선·개발에 기초자료 제공
 - '02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03년,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실태를 상호비교하기 위해 정규직 까지 조사를 확대하면서 명칭을 「사업체근로실태조사」로 변경
 - '06년, 조사항목, 조사내용 등이 유사한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 근로실태 조사」를 통합하여 조사 실시
 - '08년, 조사항목, 조사내용 등이 유사한 「사업체근로실태조사」와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를 통합하여 조사 실시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10년~계속>

-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 중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한 조치사항(계약종료, 정규직 전환, 계속고용, 기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고용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 '10년,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신설(매월조사)

- '14. 1월, 조사주기 및 조사항목 변경(월→분기)
- '17. 8월, 조사주기 변경(분기→반기)
- '25. 1월, 조사주기 변경(반기→연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950	25,599	26,164	26,699	30,38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정부, 기업, 학교, 연구기관, 일반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고용노동통계조사 ('25) 26,699 → ('26) 30,384백만원, +13.8%

① 사업체노동력조사: ('25) 10,922 → ('26) 11,704백만원, +7.2%

- (요구) 공무원 통계조사관 인건비 공통처우개선을 및 명절상여금 지급기준 변경 등 처우개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비 반영 **'25년 대비 7.2% 증액 요구**
- (산출)

<㉠인건비(상용)> ('25) 7,386 → ('26) 8,038백만원, +8.8%

- 기본급 및 법정수당 : ('25) 6,278 → ('26) 6,568백만원, +4.6%
 - * 공통처우개선을 3.8% 반영 및 통상임금 산입범위 변경에 따른 증액분 반영
 - * (법정수당) 초과수당 연 48시간, 연가보상비 연 3일
- 모집단관리비 : ('25) 436 → ('26) 436백만원, (전년동)
 - * 242명×월 15만원
- 명절상여금 : ('25) 266 → ('26) 627백만원, +135.6%
 - * 242명×연 110만원 → 242명×기본급 120%
- 정액급식비 : ('25) 407 → ('26) 407백만원, (전년동)
 - * 242명×월 14만원

<㉡고용부담금>

- 사회보험료 : ('25) 829 → ('26) 922백만원, +11.3%
 - * 총 인건비×11.47%, 상용임금 인상분 및 사회보험료를 인상분(11.22%→11.47%) 반영
- 퇴직충당금 : ('25) 615 → ('26) 670백만원, +8.8%
 - * 총 인건비×8.33%, 상용임금 인상분 반영

<㉔운영비>

- 답례품 : ('25) 1,000 → ('26) 1,000백만원, (전년동)
- 복리후생비 : ('25) 121 → ('26) 121백만원, (전년동)
 - * 242명×연 50만원
- 조사표, 보고서, 지침서 등 인쇄비 : ('25) 108 → ('26) 108백만원, (전년동)
- 조사표 등 인쇄물 발송비, 공과금 : ('25) 455 → ('26) 455백만원, (전년동)
- 통계 프로그램(SAS 등) 임차료 : ('25) 144 → ('26) 144백만원, (전년동)
 - * 352만원×41개

<㉕국내여비> ('25) 227 → ('26) 227백만원, (전년동)

<㉖일반연구비> ('25) 37 → ('26) 20백만원, △45.9%

* 전년도 표본설계 연구비 감액(△37백만원), 고용노동통계조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비 반영(20백만원)

② 고용노동통계 5종 조사(반기·연간): ('25) 13,233 → ('26) 15,981백만원, +20.8%

- (요구) 국정과제 관련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표본 확대, 3년 주기 표본개편에 따른 표본설계 연구용역 추진, 기간제 통계조사관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 2종 조사* 조사주기·표본수 변경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현실화 등 '25년 대비 20.8% 증액 요구
- (산출)

<㉗인건비(일용)>

- 기간제 통계조사관 인건비 : ('25) 9,400 → ('26) 10,974백만원, +16.7%
 - * 최저임금 인상률 2.9% 반영
 - * 2종 조사 표본수·조사주기 변경에 따른 조사인력 반영
 - <고용형태조사> ('25) 249명→ ('26) 500명(+251명)
 - <기간제조사> ('25) 127명×2회→ ('26) 130명×1회(△124명)

<㉘고용부담금> ('25) 1,055 → ('26) 1,258백만원, +19.2%

* 총 인건비×11.47%, 일용임금 증액분 및 사회보험료율 인상분(11.22%→11.47%) 반영

<㉙운영비>

- 답례품 : ('25) 1,515 → ('26) 2,187백만원, +44.4%
 - * 3종 조사 표본수 변경 반영
 - <고용형태조사(2만원)> ('25) 33,000개→ ('26) 66,000개(+33,000개)
 - <기간제조사(1만원)> ('25) 10,000개→ ('26) 11,100개(+1,100개)
 - <기업체조사(1만원)> ('25) 3,500개→ ('26) 3,600개(+100개)
- 조사표, 보고서, 지침서 등 인쇄비 : ('25) 325 → ('26) 336백만원, +3.6%
 - * 고용형태조사 표본수 확대, 기간제조사 조사주기 변경에 따른 조사표, 지침서 등 인쇄부수 현실화
- 조사표 등 인쇄물 발송비, 공과금 : ('25) 509 → ('26) 720백만원, +41.4%
 - * 고용형태조사 표본수 확대, 기간제조사 조사주기 변경에 따른 공공요금 현실화

<㉚국내외여비> ('25) 392 → ('26) 402백만원, +2.6%

- 국내여비 : ('25) 386 → ('26) 396백만원, +2.6%
 - * 고용형태조사 표본수 확대, 기간제조사 조사주기 변경에 따른 여비 현실화
- 국외여비 : ('25) 6 → ('26) 6백만원, (전년동)

<㉛일반연구비> ('25) 37 → ('26) 104백만원, +181.1%

* 전년도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표본설계 연구비 감액(△37백만원), 2종 조사(고용형태,직종별) 표본설계 연구용역비(각 37백만원), 전산시스템 고도화(30백만원) 반영

※ 3종 조사 변경내역

구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표본수	33,000개소 → 66,000개소(+33,000개소)	10,000개소 → 12,000개소(+2,000개소)	3,500개소 → 3,600개소(+100개소) * '24년부터 변경되었으나 예산 미반영
조사주기	변경없음(연1회)	연 2회→ 연 1회 * '25년부터 변경	변경없음(연1회)

③ 고용노동통계 자료처리 위탁사업: ('25) 444 → ('26) 438백만원, △1.3%

- (요구) 고용노동통계 자료처리 위탁사업 낙찰차액을 반영 '25년 대비 1.3% 감액 요구

- (산출)
 - 자료처리 위탁사업 : ('25) 444 → ('26) 438백만원, △1.3%
 - * 3년 장기계속계약('25~'27년) 신규 체결로 낙찰차액(낙찰률 98.7%) 발생
- ④ 공통경비: ('25) 2,101 → ('26) 2,261백만원, +7.6%
 - (요구) 국정과제 관련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표본 확대에 따른 전산시스템 고도화 예산 반영으로 '25년 대비 7.6% 증액 요구
 - (산출)
 - 지방관서 노동시장분석팀 운영비: ('25) 318 → ('26) 318백만원, (전년동)
 - * 지역노동시장통계자료집 발간 등(18개 거점관서)
 - * 지역통계 네트워크 구축 관련 운영수당 및 운영비
 - 노동시장분석자료집 발간: ('25) 48 → ('26) 48백만원, (전년동)
 - * 지방관서, 유관기관 등(250여 개소) 배부: 1,000권×48천원
 - 관서업무추진비: ('25) 10 → ('26) 10백만원, (전년동)
 - 특정업무경비: ('25) 117 → ('26) 117백만원, (전년동)
 - * 103명×월 9.5만원
 - 공사비: ('25) 134 → ('26) 134백만원, (전년동)
 - * 조사인력 근무환경 개선 공사
 - 자산취득비: ('25) 161 → ('26) 321백만원, +99.6%
 - * 조사인력 근무환경 개선 161백만원
 - * 전산시스템 고도화 관련 SW 구매 160백만원
 - 임차료(월세): ('25) 885 → ('26) 885백만원, (전년동)
 - * 사무실 임차료(12개소×6,147천원×12월)
 - 관리비: ('25) 427 → ('26) 427백만원, (전년동)
 - * 임차 사무실 관리비(12개소×2,965천원×12월)
 - 중개수수료: ('25) 1 → ('26) 1백만원, (전년동)
 - * 50백만원(조사인력 사무실 임차보증금, 2년차 이상 재계약)×0.5%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6,699	○ 사업체노동력조사 : 12,154백만원 가. 상용임금(110-03) 7,385,926천원 • 기본급 및 법정수당 : 25,940천원×242명=6,277,566천원 • 정액급식비 : 242명×월 14만원=406,560천원 • 모집단관리비 : 242명×월 15만원=435,600천원 • 명절상여금 : 242명×연 110만원=266,200천원 나. 일반수용비(210-01) 1,473,860천원 • 답례품비 : 50,000개소×20,000원=1,000,000천원 • 조사표,보고서 인쇄비, 면접수당 : 107,660천원 • (공통)노동시장분석팀 운영비 : 318,200천원 *통계자료집(288,200천원), 지역통계협의회 운영비(12,000천원), 지역통계협의회 운영수당(18,000천원) • (공통)노동시장분석자료집: 1,000권×48천원=48,000천원 다.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454,733천원 • 조사표,보고서,안내문 등 발송비 : 454,733천원 라. 임차료(210-07) 144,278천원 • 통계 SW(SAS 등) 임차 : 352만원×41개=144,278천원 마. 복리후생비(210-12) 121,000천원 • 공무원 복지포인트 : 242명×연 50만원=121,000천원 바. 관리용역비(210-15) 444,000천원 • (공통)고용노동통계 자료처리 위탁사업: 444,000천원 사. 국내여비(220-01) 226,997천원	30,384	○ 사업체노동력조사 : 12,931백만원 가. 상용임금(110-03) 8,037,825천원 • 기본급 및 법정수당 : 27,142천원×242명=6,568,462천원 • 정액급식비 : 242명×월 14만원=406,560천원 • 모집단관리비 : 242명×월 15만원=435,600천원 • 명절상여금 : 242명×기본급 120%=627,203천원 나. 일반수용비(210-01) 1,473,860천원 • 답례품비 : 50,000개소×20,000원=1,000,000천원 • 조사표,보고서 인쇄비, 면접수당 : 107,660천원 • (공통)노동시장분석팀 운영비 : 318,200천원 *통계자료집(288,200천원), 지역통계협의회 운영비(12,000천원), 지역통계협의회 운영수당(18,000천원) • (공통)노동시장분석자료집: 1,000권×48천원=48,000천원 다.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454,733천원 • 조사표,보고서,안내문 등 발송비 : 454,733천원 라. 임차료(210-07) 144,278천원 • 통계 SW(SAS 등) 임차 : 352만원×41개=144,278천원 마. 복리후생비(210-12) 121,000천원 • 공무원 복지포인트 : 242명×연 50만원=121,000천원 바. 관리용역비(210-15) 438,227천원 • (공통)고용노동통계 자료처리 위탁사업: 437,227천원 사. 국내여비(220-01) 226,997천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조사요령 교육, 실사지도, 조사원 여비 : 226,997천원 아. 관서업무추진비(240-02) 10,135천원 · (공통)간담회, 지방관서 교육 등 : 10,135천원 자. 특정업무경비(240-02) 117,420천원 · (공통)공무원 통계활동비 : 103명×월 9.5만원=117,420천원 차. 일반연구비(260-01) 37,000천원 · 사업체노동력조사 표본설계 연구비 : 37,000천원 카. 고용부담금(320-09) 1,443,949천원 · 사회보험료 : 총 인건비×11.22%=828,701천원 · 퇴직충당금 : 총 인건비×8.33%=615,248천원 타. 공사비(420-03) 134,000천원 · (공통)조사인력 근무환경 개선 공사 : 134,000천원 파. 자산취득비(430-01) 160,600천원 · (공통)조사인력 근무환경 개선 : 160,600천원 ○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 4,000백만원 가. 일용임금(110-04) 2,995,628천원 · 급여(조사원) : 498명×3,008천원(1.5개월 급여)×2회=2,995,628천원 나. 일반수용비(210-01) 181,634천원 · 조사표,보고서 인쇄비 : 181,634천원 다.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83,921천원 · 조사표,보고서,안내문 등 발송비 : 283,921천원 라. 국내여비(220-01) 160,322천원 · 조사요령 교육, 실사지도, 조사원 여비 : 160,322천원 마. 국외여비(220-02) 5,871천원 · OECD 등 국제노동통계회의 및 연수 참석 : 5,871천원 바. 일반연구비(260-01) 37,000천원 ·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표본설계 연구비 : 37,000천원 사. 고용부담금(320-09) 336,110천원 · 사회보험료(조사원) : 총 인건비×11.22%=336,110천원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7,185백만원 가. 일용임금(110-04) 4,275,864천원 · 급여(조사원) : 504명×4,012천원(2개월 급여)×2회=4,044,096천원 · 급여(조사지원) : 18명×12,036천원(6개월 급여) +18명×140천원(정액급식비)×6개월=231,768천원 나. 일반수용비(210-01) 816,190천원 · 답례품비 : 72,000개소×10,000원=720,000천원 · 조사표,보고서 인쇄비 : 95,940천원 · (공통)중개수수료 : 50,000천원×0.5%=250천원 다.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59,454천원 · 조사표,보고서,안내문 등 발송비 : 159,454천원 라. 임차료(210-07) 885,100천원 · (공통)사무실 임차료 : 12개소×6,147천원×12월=885,100천원 마. 시설장비유지비(210-09) 426,967천원 · (공통)사무실 임차료 : 12개소×2,965천원×12월=426,967천원 바. 국내여비(220-01) 141,972천원 · 조사요령 교육, 실사지도, 조사원 여비 : 141,972천원		· 조사요령 교육, 실사지도, 조사원 여비 : 226,997천원 아. 관서업무추진비(240-02) 10,135천원 · (공통)간담회, 지방관서 교육 등 : 10,135천원 자. 특정업무경비(240-02) 117,420천원 · (공통)공무원 통계활동비 : 103명×월 9.5만원=117,420천원 차. 일반연구비(260-01) 20,000천원 · 고용노동통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 20,000천원 카. 고용부담금(320-09) 1,591,490천원 · 사회보험료 : 총 인건비×11.47%=921,939천원 · 퇴직충당금 : 총 인건비×8.33%=669,551천원 타. 공사비(420-03) 134,000천원 · (공통)조사인력 근무환경 개선 공사 : 134,000천원 파. 자산취득비(430-01) 160,600천원 · (공통)조사인력 근무환경 개선 : 160,600천원 ○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 4,068백만원 가. 일용임금(110-04) 3,082,228천원 · 급여(조사원) : 498명×3,095천원(1.5개월 급여)×2회=3,082,228천원 나. 일반수용비(210-01) 181,634천원 · 조사표,보고서 인쇄비 : 181,634천원 다.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83,921천원 · 조사표,보고서,안내문 등 발송비 : 283,921천원 라. 국내여비(220-01) 160,322천원 · 조사요령 교육, 실사지도, 조사원 여비 : 160,322천원 마. 국외여비(220-02) 5,871천원 · OECD 등 국제노동통계회의 및 연수 참석 : 5,871천원 바. 일반연구비(260-01) 미편성 사. 고용부담금(320-09) 353,531천원 · 사회보험료(조사원) : 총 인건비×11.47%=353,531천원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7,370백만원 가. 일용임금(110-04) 4,398,964천원 · 급여(조사원) : 504명×4,128천원(2개월 급여)×2회=4,160,932천원 · 급여(조사지원) : 18명×12,384천원(6개월 급여) +18명×140천원(정액급식비)×6개월=238,032천원 나. 일반수용비(210-01) 816,190천원 · 답례품비 : 72,000개소×10,000원=720,000천원 · 조사표,보고서 인쇄비 : 95,940천원 · (공통)중개수수료 : 50,000천원×0.5%=250천원 다.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59,454천원 · 조사표,보고서,안내문 등 발송비 : 159,454천원 라. 임차료(210-07) 885,100천원 · (공통)사무실 임차료 : 12개소×6,147천원×12월=885,100천원 마. 시설장비유지비(210-09) 426,967천원 · (공통)사무실 임차료 : 12개소×2,965천원×12월=426,967천원 바. 국내여비(220-01) 141,972천원 · 조사요령 교육, 실사지도, 조사원 여비 : 141,972천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사. 고용부담금(320-09) 479,752천원 · 사회보험료(조사원) : 총 인건비×11.22%=453,748천원 · 사회보험료(조사지원) : 총 인건비×11.22%=26,004천원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2,448백만원 가. 일용임금(110-04) 1,499,871천원 · 급여(조사원) : 249명×6,024천원(3개월 급여)=1,449,871천원 나. 일반수용비(210-01) 694,617천원 · 답례품비 : 33,000개소×20,000원=660,000천원 · 조사표,보고서 인쇄비 : 34,617천원 다.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41,772천원 · 조사표,보고서,안내문 등 발송비 : 41,772천원 라. 국내여비(220-01) 43,146천원 · 조사요령 교육, 실사지도, 조사원 여비 : 43,146천원 마. 고용부담금(320-09) 168,286천원 · 사회보험료(조사원) : 총 인건비×11.22%=168,286천원 ○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 711백만원 가. 일용임금(110-04) 506,191천원 · 급여(조사원) : 127명×1,993천원(1개월 급여)×2회=506,191천원 나. 일반수용비(210-01) 104,950천원 · 답례품비 : 10,000개소×10,000원=100,000천원 · 조사표,보고서 인쇄비 : 4,950천원 다.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9,180천원 · 조사표,보고서,안내문 등 발송비 : 19,180천원 라. 국내여비(220-01) 24,096천원 · 조사요령 교육, 실사지도, 조사원 여비 : 24,096천원 마. 고용부담금(320-09) 56,795천원 · 사회보험료(조사원) : 총 인건비×11.22%=56,795천원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200백만원 가. 일용임금(110-04) 122,732천원 · 급여(조사원) : 61명×2,012천원(1개월 급여)=122,732천원 나. 일반수용비(210-01) 42,716천원 · 답례품비 : 3,500개소×10,000원=35,000천원 · 조사표,보고서 인쇄비 : 7,716천원 다.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4,954천원 · 조사표,보고서,안내문 등 발송비 : 4,954천원 라. 국내여비(220-01) 16,240천원 · 조사요령 교육, 실사지도, 조사원 여비 : 16,240천원 마. 고용부담금(320-09) 13,771천원 · 사회보험료(조사원) : 총 인건비×11.22%=13,771천원	사. 일반연구비(260-01) 37,000천원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표본설계 연구비 : 37,000천원 아. 고용부담금(320-09) 504,561천원 · 사회보험료(조사원) : 총 인건비×11.47%=477,259천원 · 사회보험료(조사지원) : 총 인건비×11.47%=27,302천원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5,364백만원 가. 일용임금(110-04) 3,098,171천원 · 급여(조사원) : 500명×6,196천원(3개월 급여)=3,098,171천원 나. 일반수용비(210-01) 1,368,617천원 · 답례품비 : 66,000개소×20,000원=1,320,000천원 · 조사표,보고서 인쇄비 : 48,617천원 다.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52,772천원 · 조사표,보고서,안내문 등 발송비 : 252,772천원 라. 국내여비(220-01) 63,146천원 · 조사요령 교육, 실사지도, 조사원 여비 : 63,146천원 마. 일반연구비(260-01) 67,000천원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표본설계 연구비 : 37,000천원 · 전산시스템 고도화(AP사업, 부하테스트) : 30,000천원 바. 고용부담금(320-09) 354,338천원 · 사회보험료(조사원) : 총 인건비×11.47%=354,388천원 사. 자산취득비(430-01) 160,000천원 · 전산시스템 고도화(SW 구매) : 160,000천원 ○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 446백만원 가. 일용임금(110-04) 268,192천원 · 급여(조사원) : 130명×2,063천원(1개월 급여)=268,192천원 나. 일반수용비(210-01) 113,571천원 · 답례품비 : 11,100개소×10,000원=111,000천원 · 조사표,보고서 인쇄비 : 2,571천원 다.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9,180천원 · 조사표,보고서,안내문 등 발송비 : 19,180천원 라. 국내여비(220-01) 14,302천원 · 조사요령 교육, 실사지도, 조사원 여비 : 14,302천원 마. 고용부담금(320-09) 30,761천원 · 사회보험료(조사원) : 총 인건비×11.47%=30,761천원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206백만원 가. 일용임금(110-04) 126,232천원 · 급여(조사원) : 61명×2,069천원(1개월 급여)=126,232천원 나. 일반수용비(210-01) 43,716천원 · 답례품비 : 3,600개소×10,000원=36,000천원 · 조사표,보고서 인쇄비 : 7,716천원 다.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4,954천원 · 조사표,보고서,안내문 등 발송비 : 4,954천원 라. 국내여비(220-01) 16,240천원 · 조사요령 교육, 실사지도, 조사원 여비 : 16,240천원 마. 고용부담금(320-09) 14,478천원 · 사회보험료(조사원) : 총 인건비×11.47%=14,478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국가데이터처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국가데이터처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폐지	폐지	폐지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국가데이터처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폐지	폐지	폐지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국가데이터처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폐지	폐지	폐지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기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입인원(철회 · 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 보험피보험자 전수조사/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공표대상 확대) 노동시장 조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의 공표 대상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체의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 강화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사업체를 대상으로 구인·채용·미충원·부족인원 등을 연 2회 조사하여 외국인력 도입계획, 인력수급 전망 및 훈련수요 등에 활용 ** (기존) 상용 5인 이상 사업체(32천개)⇒ (확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72천개, +40천개) ↳ 상용 5인 미만 사업체 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76.4%를 차지하고, 상용 5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전체의 27.4%를 차지(사업체 모집단 기준) ○ (비대면 조사 활성화) 현 인터넷조사에 최적화된 고객지원 환경을 구축하여 조사응답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개선하고, 조사대상 안내 등을 통해 조사 응답률 제고 * (개선) 온라인 원격지원 서비스 도입, 이용문의 게시판 확대 개편 등 고객 서비스 개선 (활성화) 조사대상 표본에 인터넷조사 안내문 발송 등 이용률 제고 도모
------	---

2023	○ 고용노동통계의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공표수준 세분화 및 생산체계 고도화 추진 - (산업소분류별 고용통계 생산) 산업전환,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세부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탐지를 위해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로부터 고용통계 생산 * (기존)시군구(229개)×산업초대분류(5개) → ('23.11월)기공표 + 전국산업소분류별(220개) - (직종소분류별 임금 공표 확대)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형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등 관련하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한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제공 * (기존)124개(중분류 51개, 소분류 73개)→ ('23.8월)183개(중분류 51개, 소분류 132개) - (생산체계 고도화) 정확하고 안정적인 통계생산을 위한 기업체모집단 구축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추진 * ①기업체모집단(통계청) 제공 중단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자체 모집단 구축, ②직업분류 정확성·일관성 제고를 위한 직업검색기 등 전산 기능 강화, ③착오입력 감소 및 입력 부담 경감을 위해 조사표 업로드 전산 기능 추가
2024	○ 통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표범위 확대 추진 - (지역별 임금·근로시간 공표 확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인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조사의 공표범위를 상용 5인이상에서 상용 1인이상으로 확대 공표
2025	○ 통계 자료 제공 강화 - (지역별 임금·근로시간 소급 공표) 통계이용자에게 자료 제공을 강화하고자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조사의 공표범위 확대(상용 5인이상에서 상용 1인이상)를 과거 자료('11년~'22년)로 소급 적용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상황을 파악하여 주요 고용노동 정책 결정기구에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용노동 정책 수립 가능
- 대상·지역·산업별 세분화된 노동시장 통계 생산으로 맞춤형 고용노동 정책 수립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주요내용	세 부 업 무
1.조사기획 (본부 노동 시장조사과)	조사표 개선	• 부서 내·외부 의견 수렴 • 통계청의 조사표 변경 승인 요청
	표본설계 (모집단 분석 및 표본추출)	• 모집단 분석(사업체노동실태현황, 고용보험DB 분석) • 양적, 질적으로 변화되는 산업구조 및 근로자의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설계(3년 단위) • 공표수준 감안한 표본 크기 산출 • 층별 분산 등을 고려한 표본배정
	조사대상 여부 판단	• 준비조사 실시 및 조사대상 여부 판단 <지방관서↔본부(공동수행)>
	조사요령서 보완 및 업데이트	• 조사개요 • 조사대상 사업체의 정의 및 범위 • 주요 용어 해설 • 조사 관련 유의사항 • 조사표 작성 방법 • 조사표 검토 방법, 조사표 입력 방법 및 입력시스템 사용법
	조사요령 교육	• 지방관서 집합교육용 교육자료 작성 * (대상) 지방관서 공무원 및 통계조사관
	입력시스템 보완 및 개선	• 오류검토 조건 추가 및 입력시스템 탑재
2.조사실시 (18개거점 관서)	조사관 채용	• 채용 공고, 서류심사, 면접, 합격자 발표 및 조사관 채용 * 조사관의 잦은 이직에 따른 추가채용 수시 발생
	조사방법 교육	• 조사 기본 교육 및 조사내용, 보안교육 등 실시 * 추가 채용 조사관에 대하여 일대일교육 수시 발생
	조사실시	• 실시안내 및 공문 발송 • 조사표 회수, 불응사업체 특별관리 및 방문 조사 실시
	조사결과 오류검토	• 조사표 오류 검토 (조사표 검토 아이체크, 전산프로그램 활용한 검토) • 사업체조사표 항목 및 개인조사표 항목 로직 검토
	조사결과 입력	• 입력시스템 상 전산오류 검토 및 확인
3.자료정제 (본부 노동 시장조사과) 5.7. 반복실시 * 오류검토 실시	본부 오류 및 검토리스트 확인	• 본부에서 검토한 오류 점검사항 확인, 검토 리스트에 대한 오류 수정 및 사유 기재
	입력자료 검토	• 지방청 입력 자료에 대한 검토 후 검토 리스트 송부
	오류추출	• 오류·검토 조건 등에 따라 오류·검토 리스트 추출
	오류내용 재검토 요청	• 지방청에 오류 리스트 송부 후 수정 여부 재확인 (각 차수별 각각 확인)

↓↑		
4. 재 조사 (18개 거점관서) 6 & 반복 실시	오류내용 재조사	• 오류내용 재조사 사항 재검토
	조사결과 입력	• 수정입력 시 착오사항 없는지 재확인
9. 추정 및 공표 (본부 노동 시장조사과)	결과 추정 및 마이크로 데이터 생성	• 사업체 가중치 및 근로자 가중치 산정 • 각 분류별 각종 통계치(총량, 평균 등)의 추정 • 데이터 클리닝(이상치 식별 등) • 최종 가중치 산정 후 마이크로 데이터 생성
	보도자료 작성	• 주요결과 분석
	보고서 발간	• 조사개요 • 조사결과 요약 • 통계표 수록
	정책부서 전달	• 주요 정책부서에 활용토록 주요 지표 전달
	OECD 등 국제 통계 제공	• 평균임금, 중위임금, 최저임금, 분위별 임금, 성별 임금, 연령별 임금, 시간당 임금 등
	홈페이지 게시	• 보도자료, 보고서, 결과표 DB로 홈페이지 게시
	원시자료 제공	• 원시자료 요청 시 무상 제공
	각종 분석자료 제공 및 외부대응	• 공표 결과 외에 각 과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자료 분석 요청 시 제공 • 법원사실조회,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 게시판 민원 등 외부대응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23년) 4등급, ('24년) 5등급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4,177	△ 227	23,950	24,223	22,854	95.4	94.3	0	1,369
2023	25,599	0	25,599	25,599	24,891	97.2	97.2	0	708
2024	26,164	0	26,164	26,164	25,664	98.1	98.1	0	500
2025	26,699	0	26,699	26,699	26,317	98.6	98.6	10	37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273백만원 · 상용임금: 공무원 통계조사관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동일프로그램 내(고용 창출) 상용임금을 동 사업으로 273백만원 자체전용 - 추경: △227백만원 · 재정 운영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부처공동 경상경비 감액 대상으로 고용노동 통계조사 사업비(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일부 감액 - 불용: 1,369백만원 · ①공무직(상용) 휴직 및 연가촉진에 따른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에 따른 상용임금 (44백만원), 복리후생비(1백만원) 등 46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 ②기간제(일용) 통계조사관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인한 채용미달, 중도 퇴사 등으로 일용임금(459백만원), 운영비(468백만원) 등 집행잔액 928백만원 * 연간 누적 확진자 수: ('20) 6만명→('21) 57만명→('22) 2,843만명 · ③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지침 준수 등을 위해 조사인력에 대한 방문조사 금지 또는 자제 지침으로 여비 집행잔액 278백만원 · ④그 외 고용노동통계조사 자료처리를 위한 위탁운영비 낙찰차액(7백만원), 고용노동통계 조사인력 정원 대비 현원 미달에 따른 특정업무경비(7백만원), 지방관서 사무환경 개선 공사비(4백만원), 자산취득비(1백만원), 지방관서 임차보증금 미인상(100백만원) 등 집행잔액 119백만원
2023	- 전용: 해당없음 - 불용: 708백만원 · 공무원(상용) 연가촉진으로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에 따른 상용임금(8백만원), 기간제(일용) 중도퇴사(재채용시 상당기간 소요)에 따른 일용임금(229백만원) 등 총 236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 응답사례품 낙찰차액 등 운영비(283백만원), 예산절감을 위한 여비집행지침 변경에 따른 여비(133백만원), 지방관서 임차보증금 미인상(50백만원), 고용노동통계 조사인력 휴직·결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5백만원) 등 총 472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2024	- 전용: 50백만원 · ①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24.5.22) 시 기존 표본추출 방법에 대한 개선 의견 제시에 따라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새로운 표본설계 및 추정법 연구 필요로 동일 사업내 일반수용비(210-01)를 일반연구비(260-01)로 30백만원 자체전용 · ②'24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위원회 회의 시 담당위원이 고용노동통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성과지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 필요로 동일 사업내 일반수용비(210-01)를 일반연구비(260-01)로 20백만원 자체전용 - 불용: 500백만원 · 공무직(상용) 연가촉진으로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에 따른 상용임금(15백만원), 기간제(일용) 중도퇴사(재채용시 상당기간 소요)에 따른 일용임금(239백만원) 등 총 254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 응답사례품 낙찰차액 등 운영비(174백만원), 기간제 중도퇴사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68백만원), 고용노동통계 조사인력 휴직·결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4백만원) 등 총 246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2025	- 전용: 420백만원 · 공무직 등 근로자 퇴직연금 부담금 예산 부족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준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관서 퇴직연금 부담금 예산 부족 해소를 위해 동일 사업내 상용임금(110-03) 및 일용임금(110-04) 예상잔액 420백만원을 고용부담금(320-09)으로 자체전용 - 이월: 10백만원 · 고용노동통계 정보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 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HW1에 위임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국자원 화재('25.9.26.)에 따른 전산장비 설치 등 화재복구로 해당 사업이 일시 정지되어 동 사업의 소요예산인 자산취득비(430-01) 10백만원 차년도 이월 - 불용: 372백만원 · 기간제(일용) 중도퇴사(재채용시 상당기간 소요)에 따른 일용임금 총 4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 기간제 중도퇴사에 따른 여비집행잔액(183백만원), 운영비 집행잔액(79백만원), 지방관서 환경개선 완료에 따른 공사비 집행잔액(93백만원), 전산처리 위탁사업 낙찰차액(6백만원), 고용노동통계 조사인력 휴직·결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5백만원) 등 총 368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11.28)	고용노동통계조사 (1033-470)	210-01	80	고용노동통계조사 (1033-470)	210-02	응답사례품(재)발송 등 우편요금 소요 증가로 일반수용비를 공공 요금 및 제세로 세목변경
조정 (2025.12.8)	고용노동통계조사 (1033-470)	210-01	33	고용노동통계조사 (1033-470)	210-02	응답사례품(재)발송 등 우편요금 소요 증가로 일반수용비를 공공 요금 및 제세로 세목변경
전용 (2025.12.26)	고용노동통계조사 (1033-470)	110-03	20	고용노동통계조사 (1033-470)	320-09	지방관서 퇴직연금 부담금 예산 부족 해소를 위해 인건비를 고용 부담금으로 자체전용
		110-04	400			

사 업 명
(6) 사회적기업 지원(1037-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7	311
명칭	고용창출	사회적기업육성	사회적기업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50~7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사회적기업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사회적기업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사회적기업 지원	32,990	28,412	28,412	85,872	85,872	57,460	202.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990	32,990	32,979	-	-	28,412	28,412	28,405	-	7	85,872
· 청년등사회적기업가 육성(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5,826	5,826	5,826	-	-	-	-	-	-	-	30,000
·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4,721	4,721	4,721	-	-	3,493	3,493	3,493	-	-	4,963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5,938	5,938	5,938	-	-	9,356	9,356	9,356	-	-	14,171
·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640	640	640	-	-	282	282	282	-	-	504
· 운영비	16,487	16,487	16,487	-	-	15,854	15,854	15,854	-	-	16,600
· 지원운영비	258	258	247	-	11	136	136	129	-	7	176
· 결산잉여금	△ 880	△ 880	△ 880	-	-	△ 709	△ 709	△ 709	-	-	△ 439
· 사회적기업 자금지원	-	-	-	-	-	-	-	-	-	-	800
·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	-	-	-	-	-	-	-	-	-	18,697
· 사회적경제 교육	-	-	-	-	-	-	-	-	-	-	4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하고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판로, 성장지원, 인식개선 등 수행
 -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사회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지원 및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등 온·오프라인 통합 판로지원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장지원센터 운영,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 사회적가치 평가 등을 지원
 -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사회적기업 인식 제고를 위해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국제포럼·국내외 사회적경제 정책 사례 확산 등의 사업 수행
 - (사회적기업 자금지원) 민간자본 활용·자금조달이 어려운 사회적기업에게 금융 공급 및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
 -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사업, 사회적기업 성과 보상 등을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 확대 등 사업 수행
 - (사회적경제 교육) 사회적기업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역·현장 중심 인재양성 및 체계적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재개발원 타당성 분석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 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4.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② 추진경위

- 사업시작년도 : 2011년
- 사업 추진경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10.6.8)·시행('10.12.9)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법인 설립등기('10.12.31)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 시작('11.1.17.)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4,402	69,259	32,990	28,412	85,872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출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0,000	100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제5항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출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963	100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제5항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출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4,171	100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제5항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출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504	100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제5항
사회적기업 자금지원	출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800	100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제5항
사회적경제 교육	출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00	100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제5항
사회적경제 생태계활성화	보조	지자체 보조	18,697	50~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
운영비	출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00	100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제5항
자체수입 (결산잉여금)	출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39	100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제5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사업명 변경, 신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 (2025 예산) 0 → (2026 예산) 30,000백만원, 30,000백만원 순증

- (요구)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팀에 사업화 자금(시제품 제작 등), 창업프로그램(BM고도화,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사업모델 현실화 지원
- (산출) 창업팀 선정 및 운영 28,500백만원 + 사후관리 1,500백만원

(2)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 (2025 예산) 3,493백만원 → (2026 예산) 4,963백만원, 1,470백만원 증

- (요구) ① 사회적기업의 수요 및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마케팅, 제품개발, 입점까지 연계하는 맞춤형 판로지원 확대, ② 공공기관 대상 우선구매 제도 교육 및 상담회 등 운영하고, 기관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를 발굴 및 추천 지원, ③ 플랫폼 이용 활성화 및 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통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산출) ①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2,387백만원, ② 공공구매 활성화 784백만원, ③ 차세대 판로플랫폼 운영 1,792백만원

(3)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 (2025 예산) 9,356백만원 → (2026 예산) 14,171백만원, 4,815백만원 증

- (요구) ① 성장지원센터 중심으로 공간 지원 및 교육, 멘토링, 인증상담 설명회 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 촉진 및 인증기업 대상 사후관리 강화, ②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③ 사회적가치 측정 미흡기업 대상 심화코칭 신설, SVI 측정체계 전면 개선, ④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및 성장지원센터 중심 정책 수행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강화
- (산출) ①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3,134백만원, ② 유망기업 스타트업 지원 7,690백만원, ③ 사회적가치 평가 1,040백만원, ④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2,307백만원

(4)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 (2025 예산) 282백만 원 → (2026 예산) 504백만원, 222백만원 증

- (요구) ① 사회적기업의 인지도 제고 위한 홍보 강화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 진작 및 자립 기반 마련, ② 사회적기업과 국민이 참여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행사 운영, ③ 국내외 사회적경제 정책 교류 수요 증가에 따라 정책 확산 확대, ④ 사업보고서 기반으로 통계구축 및 성과분석,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경영공시 강화
- (산출) ① 사회적기업 브랜드 강화 100백만원, ②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100백만원(전년동), ③ 국제협력 244백만원, ④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 60백만원

(5) (신규) 사회적기업 자금지원

: (2025 예산) 0 → (2026 예산) 800백만원, 800백만원 순증

- (요구) 크라우드펀딩, 투자유치 IR대회 등을 통해 일반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자금조달 지원
- (산출) 투자유치 강화 650백만원 + 크라우드 펀딩 150백만원(재편)

(6) (한시 시범사업)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 (2025 예산) 0 → (2026 예산) 18,697백만원, 18,697백만원 순증

- (요구) ① 통합돌봄·노동통합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사회적기업·민간지원기관 등 협력 사업 시범추진, ②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성과 보상 등을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확대 사업 시범추진
- (산출) ①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13,720백만원, ②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4,977백만원

(7) (신규) 사회적경제 교육

: (2025 예산) 0 → (2026 예산) 400백만원, 400백만원 순증

- (요구) ① 정부 정책 집행기관(지방관서, 자치단체, 진흥원) 담당자 대상 교육 운영을 통해 사회적기업 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담당자 간 소통·협력 강화, ② 인재개발원 설립·운영 방안과 기관 부설 교육 시설 마련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산출) ① 업무담당자 교육 100백만원, ②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 300백만원

(8) 운영비

: (2025 예산) 15,854백만원 → (2026 예산) 16,600백만원, 746백만원

- (요구) 정규직 인건비,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청사 및 전국 성장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임대료·관리비 등 고정비 인상요인 요구
- (산출) 인건비 8,720백만원 + 기관운영 7,880백만원

(9) 지원운영비

: (2025 예산) 136백만원 → (2026 예산) 176백만원, 40백만원 증

- (요구) 지침·매뉴얼 마련(인증, 우선구매 등), 사회적기업 지도점검, 전문가·현장 간담회 등 원활한 업무수행
- (산출) 일반수용비 105백만원+임차료 14백만원+국내여비 57백만원

(10) 결산잉여금

: (2025 예산) △709백만원 → (2026 예산) △439백만원, 270백만원 증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8,412 백만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15,807,000천원 가. 인건비 (7,988,000천원) 나. 기관운영 (7,866,000천원)	85,872 백만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16,511,000천원 가. 인건비 (8,720,000천원) 나. 기관운영 (7,880,000천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진흥원 운영비 1,522,000천원 · 센터 임차료 등 6,344,000천원 - 센터 고정비 6,102,000천원+이전지원 242,000천원 다. 결산상 잉여금 (△47,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 12,469,000천원		· 진흥원 운영비 1,536,000천원 · 센터 임차료 등 6,344,000천원 - 센터 고정비 6,102,000천원+이전지원 242,000천원 다. 결산상 잉여금 (△89,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 50,388,000천원
	가.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3,493,000천원) · 온-오프라인 통합 판로지원(2,128,000천원) - 온라인 판로지원 200,000천원 : TV홈쇼핑 80,000천원+온라인 홍보 지원 120,000천원 - 상품정보제공 및 홍보 220,000천원 : 맞춤형 마케팅 지원단 220,000천원 - 소셜벤더 지원 1,163,000천원 : 시장진입형 100,000천원+성장지원형 420,000천원+특화형 100,000천원+온라인진출지원형 450,000천원+벤더역량 강화 등 13,000천원 - 오프라인 판매장 활성화 지원 295,000천원 : 판매장 통합 운영 및 모니터링 295,000천원 - 지역특화 스타상품 판로지원 250,000천원 : 5개 권역X10,000천원X5개소 · 공공구매 활성화(173,000천원) - 공공구매 지원 173,000천원 : 상담인력 43,000천원+교육-워크숍 30,000천원+조달특례제도 성과관리 100,000천원 · 판로지원 인프라 확대(1,192,000천원) -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1,192,000천원		가. (사업명 변경, 신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30,000,000천원) · 창업팀 지원(30,000,000천원) - 창업팀 선정 및 운영 28,500,000천원 : 창업팀 지원 27,500,000천원(500팀x55,000천원)+사업운영비 1,000,000천원(500팀x2,000천원) - 사후관리 1,500,000천원(전문멘토링 1,350,000천원+이력성과조사 150,000천원)
	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9,356,000천원) · 성장지원센터 운영(1,356,000천원) - 성장지원센터 운영 1,139,000천원 : 센터 운영 및 상담 1,139,000천원 - 인증심사 지원 217,000천원 : 인증심사 지원 45,000천원+현장실사 및 개선지원 172,000천원 ·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4,910,000천원) - 디딤돌 지원 1,500,000천원 : 초기 경영지원 1,400,000천원+온라인 교육 100,000천원 - 도약 지원 2,560,000천원 : 혁신성장지원 80개소X40,000천원X80% - 성숙기 지원 850,000천원 : 규모화 지원 750,000천원(5개 과제X300,000천원X50%) + 크라우드펀딩 100,000천원 · 사회적가치 평가(350,000천원) - 사회적기업 평가 350,000천원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2,740,000천원) -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 1,565,000천원 : 고도화 1,283,000천원+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282,000천원 - 시스템 유지관리 350,000천원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600,000천원 : 클라우드 이용료 50,000천원x12개월 - 홈페이지 관리 50,000천원 - 전자문서 관리체계 개편 175,000천원 : 웹한글 기간기 개편 20,000천원+그룹웨어 업그레이드 155,000천원		나.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4,963,000천원) · (사업명 변경)맞춤형 판로개척 지원(2,387,000천원) - (사업명 변경)온라인 입점·판매지원 400,000천원 : TV홈쇼핑 160,000천원+온라인 홍보 지원 240,000천원 - (사업명 변경)맞춤형 마케팅 지원단 220,000천원 - 소셜벤더 지원 1,163,000천원 : 시장진입형 110,000천원+성장지원형 930,000천원+특화형 110,000천원+사후관리 등 13,000천원 - 오프라인 판매장 활성화 지원 304,000천원 : 판매장 통합 운영 및 모니터링 304,000천원 - 지역특화 스타상품 판로지원 300,000천원 : 6개 권역X10,000천원X5개소 · 공공구매 활성화(784,000천원) - 공공구매 지원 484,000천원 : 상담인력 46,000천원+교육-워크숍 338,000천원+조달특례제도 성과관리 100,000천원 - (신규)수요 맞춤형 구매지원 300,000천원 : 구매지원 240,000천원+제품 정보제공 60,000천원 · (사업명 변경)차세대 판로플랫폼 운영(1,792,000천원) - 판로플랫폼 유지관리 1,192,000천원 - (신규)판로플랫폼 운영·성과관리 600,000천원 : 고객지원 202,000천원+구매계약지원 160,000천원+유통판매 지원 238,000천원
	다.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282,000천원) · 사회적기업 주간행사(100,000천원) · 국제협력(182,000천원)		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14,171,000천원) · 성장지원센터 운영(3,134,000천원) - 성장지원센터 운영 1,766,000천원 : 센터 운영 및 상담 1,196,000천원+(신규)소셜길잡이 570,000천원 - 인증심사 지원 1,368,000천원 : 인증심사 지원 63,600천원+현장실사 및 개선지원 172,000천원 + (신규)설명회 114,000천원+사후관리 강화 68,400천원+SOS 인증지킴이 950,000천원 ·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7,690,000천원) - 디딤돌 지원 3,740,000천원 : 초기 경영지원 3,400,000천원+온라인 교육 340,000천원 - 도약 지원 3,200,000천원 : 혁신성장지원 100개소X40,000천원X80% - 성숙기 지원 750,000천원 : 규모화 지원 5개 과제X300,000천원X50% * 크라우드 펀딩은 사회적기업 자금지원 사업으로 재편 · 사회적가치 평가(1,040,000천원) - 사회적기업 평가 1,040,000천원 : 사회적가치 측정 400,000천원 + (신규)공모전 200,000천원+심화코칭 350,000천원+SVI연구 90,000천원 · (사업명 변경)통합정보시스템 운영(2,307,000천원) - 시스템 유지관리 1,000,000천원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720,000천원 : 클라우드 이용료 60,000천원x12개월 - 홈페이지 관리 100,000천원 - (사업명 변경)전자문서 웹한글 기간기 연간 라이선스 22,000천원 : 110천원X200개 - (신규)중장기 정보화 로드맵 수립 100,000천원 - (신규)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체계 강화 190,000천원 - (신규)데이터 관리 강화 175,000천원
	라.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504,000천원) · (사업명 변경)사회적기업 브랜드 강화(100,000천원) : 국민소통 채널 운영 100,000천원		라. 사회적기업 인식개선(504,000천원) · (사업명 변경)사회적기업 브랜드 강화(100,000천원) : 국민소통 채널 운영 100,000천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국제포럼 90,000천원 - 국내외 사회적경제 정책 사례 확산 92,000천원 : 정책자료 번역 92,000천원 라. 결산상 잉여금 (△662,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65,000천원 ○ 임차료(210-07) : 1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57,000천원		• 사회적기업 중간행사(100,000천원) • 국제협력(244,000천원) - 국제포럼 90,000천원 - 국내외 사회적경제 정책 사례 확산 154,000천원 : 정책자료 번역 94,000천원+국내정책소개 60,000천원 •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60,000천원) - (신규)사회적기업 모니터링 60,000천원 : 성과분석 50,000천원+자율경영공시 10,000천원 마. (신규)사회적기업 자금지원(800,000천원) • 투자유치 강화(650,000천원) : 투자유치 역량강화 200,000천원+사업고도화 용자지원 450,000천원 • (재편)클라우드 펀딩(150,000천원) 바. (신규)사회적경제 교육(300,000천원) •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300,000천원) * 업무담당자 교육은 일반용역비에 편성 사. 결산상잉여금 △439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05,000천원 ○ 임차료(210-07) : 14,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00,000천원 • (신규)사회적경제 교육-업무담당자 교육(100,000천원) : 45명X4회X550천원 ○ 국내여비(220-01) : 57,000천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18,697,000천원 - (한시 시범사업)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13,720,000천원) : 2개 분야*14개 지자체(수도권제외)*700,000천원*70%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4,977,000천원) : 수도권 1,211,000천원(269개소X9,000천원X50%) +비수도권 3,766,000천원(538개소X14,000천원X5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 / 만15~29세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기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입인원(철퇴· 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 고용보험피보험 자 전수조사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사회적기업 고용인원 67,633명, 취약계층 고용인원 42,747명
2023	사회적기업 고용인원 71,950명, 취약계층 고용인원 46,385명
2024	사회적기업 고용인원 74,135명, 취약계층 고용인원 47,655명
2025	사회적기업 고용인원 75,059명, 취약계층 고용인원 49,189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자체, 민간지원조직 등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하고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부처 고용노동부 (30,000백만원)	=> (30,000백만원)	피출연·피보조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0,000백만원)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부처 고용노동부 (4,963백만원)	=> (4,963백만원)	피출연·피보조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963백만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부처 고용노동부 (14,171백만원)	=> (14,171백만원)	피출연·피보조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4,171백만원)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고용노동부 (504백만원)	=> (504백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504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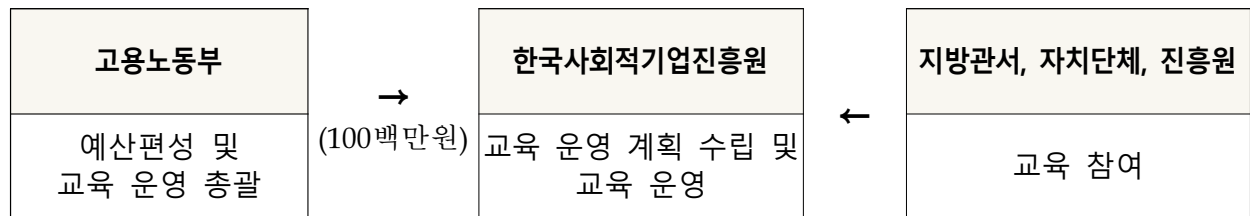
<사회적기업 자금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고용노동부 (800백만원)	=> (800백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80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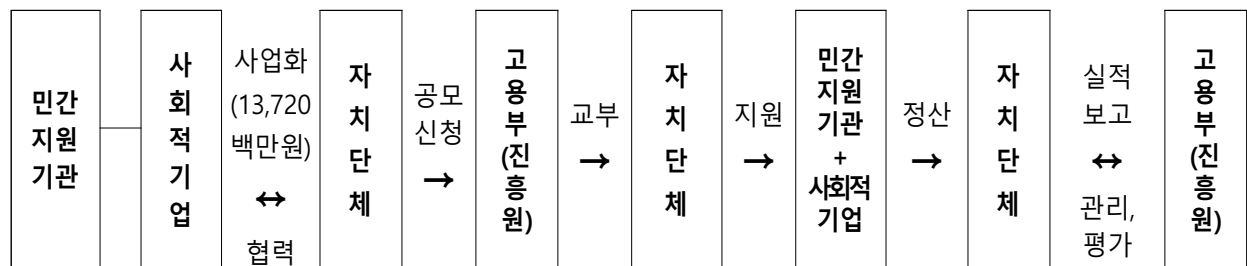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교육-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고용노동부 (300백만원)	=> (300백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0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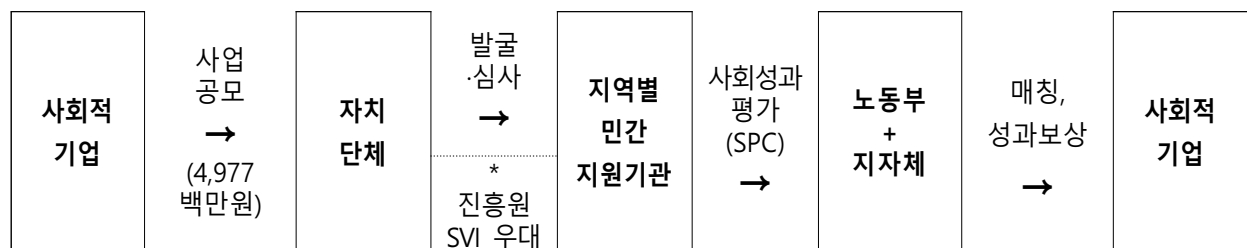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교육-업무담당자 교육>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3년 예결위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인증실적 제고를 위해 타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과의 연계 및 인·지정 수요 발굴 등 방안 수립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24년 폐지, 기존 창업팀의 사회적기업 진입 확대를 위해 후속지원 내실화 및 지속적 관리 기반 구축 조치완료

-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여 지속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 발굴 및 사회적기업으로 진입 제고 노력,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 정책 등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국회 보고

-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 참여율 제고를 위해 참여율 분석 등을 통해 공시 참여 독려 및 실태조사·심층 연구 수행 등을 통해 유인체계 재구축 및 개선방안 마련

→ '24년 미참여기업 의견수렴을 통해 주된 참여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개선, 향후 실태 파악 및 자율경영공시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2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규모의 단계적 조정 필요

→ '24년 사회적기업 예산으로 인건비(500억원, 6,006명)를 감액 편성하고, 他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예산(198억원, 7,254명)을 증액하여, 지원종료(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조정 현황을 파악하여 맞춤형 취업·기업지원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등 후속지원을 하고 있음

→ 향후에도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지원 등을 지속 제공

○ '2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정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삭감 관련 정책 재검토 필요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라 정책추진

○ '2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 복원 필요

→ 26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복원·혁신(284->1180억, +315%)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3년 자율평가) 미흡

- ('24년 자율평가) 보통

- ('25년 자율평가) 우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4,402	-	64,402	64,402	64,402	100	100	-	-
2023	69,259	-	69,259	69,259	69,259	100	100	-	-
2024	32,990	-	32,990	32,990	32,979	100	100	-	11
2025	28,412	-	28,412	28,412	28,405	100	100	-	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전용) 지원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지원사업 안내 책자 제작 및 민간 투자유치·자원연계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간담회 신규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210-01) 충당을 위해 국내여비(220-01)에서 일반수용비(210-01)로 20백만원 자체전용 - (전용) 지원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지역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네트워킹 세미나 직접 운영을 위해 국내여비(220-01)에서 일반수용비(210-01)로 10백만원 자체전용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7) 치유희직 지원(1038-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8	303
명칭	고용창출	긴급재난특별고용지원	치유희직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치유희직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치유희직 지원	-	-	-	2,232	1,535	1,535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1,535
· 치유휵직 지원	- (-)	-	-	-	-	-	-	-	-	-	1,5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치유휵직 지원) 「12·29여객기참사지원법」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치유휵를 위한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12·29여객기참사지원법」 제14조, 제15조

제14조(근로자의 치유휵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휵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휵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치유휵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치유휵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근로자의 치유휵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휵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내용,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29여객기참사지원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8조(치유휵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휵직(이하 “치유휵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치유휵직 신청서를 치유휵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치유휵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필요하면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치유휵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유휵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이하 “고용유지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치유휵직을 한 근로자(이하 “치유휵직자”라 한다)에게 사업주가 치유휵직 기간에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填)하기 위한 비용
2. 근로자가 치유휵직을 신청한 날부터 치유휵직 종료일까지 사업주가 치유휵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② 추진경위

- '24.12월 :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사고 발생('24.12.29.)
- '25.4월 : 치유휴직 지원 내용이 포함된 「12·29여객기참사지원법」 제정('25.4.29.)
- '25.6월 : 「12·29여객기참사지원법」 시행('25.6.30.)
- '25.7월 : 치유휴직 관련 예산 노동부 편성·집행 결정, 전국 고용센터에 치유휴직 신청 및 대체인력 알선 전담인력 배치
- '25.11월 : 치유휴직 지원단가 및 지원절차 결정(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 심의·의결)
- '25.12월 : 사업시행지침 마련 및 시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산 구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6년~'2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535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12·29여객기참사지원법」 상 피해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치유휴직 지원 : (2025 예산) 0원 → (2026 예산) 1,535백만원, 순증

① 치유휴직자 금품 보전비용 지원: 1,228백만원

- (요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수 대비 치유휴직 신청자수 등 고려하여 편성
- (산출) 62명×198만원×10개월

<세부산출 내역>

- **62명** : 이태원참사의 경우 피해자수('25.5.20. 기준, 약 500명) 대비 치유휴직 신청자수(25명)가 5%이나, 여객기참사의 경우 이태원참사 대비 치유휴직 신청기간이 더 길고 사업인식이 확산된 점 등 고려하여 피해자수 800여명의 8% 수준인 62명으로 산출
- **198만원** : 여객기참사지원추모위 최종 확정 금액
- **10개월** : 최대 사용기간 12개월인 점 및 집행가능기간 고려

② 대체인력 임금 보전비용 지원: 307백만원

- (요구) 10·29이태원참사 치유휴직 신청자수 대비 대체인력 채용비율 등 고려하여 편성
- (산출) 31명×99만원×10개월

<세부산출 내역>

- **31명** : 이태원참사의 경우 치유휴직자 25명 중 11명(44%)에 대해 대체인력 채용한 점 고려하여 여객기참사 치유휴직자 산출인원 62명의 50% 수준인 31명으로 산출
- **99만원** : 여객기참사지원추모위 최종 확정 금액
- **10개월** : 최대 사용기간 12개월인 점 및 집행가능기간 고려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1,535	< 치유휴직 지원 1,535백만원 > - 순증 ○ 기타보전금(310-04): 1,535백만원 가. 치유휴직자 금품 보전비용(1,228백만원) · 62명×10개월×198만원 ≒ 1,228백만원 나. 대체인력 임금 보전비용(307백만원) · 31명×10개월×99만원 ≒ 30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 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기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 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 보험자 전수조사/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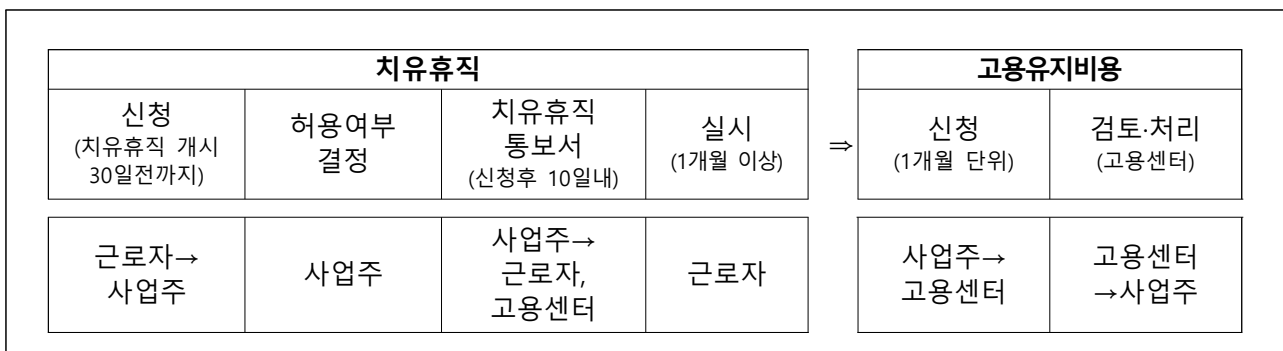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12·29여객기사고 피해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지원하여 원만한 직장회복 및 고용안정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8)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1039-32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9	321
명칭	고용창출	출연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고용정보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	41,400	41,323	41,323	42,976	42,976	1,653	4.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1,407	41,407	41,400	-	7	41,323	41,323	41,323	-	-	42,976
· 한국고용정보원 인건비	35,160	35,160	35,160	-	-	36,509	36,509	36,509	-	-	38,055
· 한국고용정보원 운영	6,247	6,247	6,240	-	7	4,814	4,814	4,814	-	-	4,9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고용정보원이 우수한 전문인력 유치 및 직원의 지속적 역량 강화를 통해 고용 서비스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인건비 지원
-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의 원활한 지원으로 대국민 고용서비스 강화
- 고용서비스 관련 국제기구의 협력 수요(WAPES 등)를 수용하고, 급변하는 고용·노동분야의 국제환경 변화 추이에 대응하여 공공고용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 ①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 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79.7월 : 노동청 국립중앙직업안정소 개소
- '95.5월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직제 개정
- '01.1월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개원
- '06.3월 : 한국고용정보원 설립
- '07년 : 한국고용정보원 인건비는 일반회계 지원, 기관운영경비는 고보기금 지원

- '15년 :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 한국고용정보원인건비로 이관
- '17년 : 직급보조비 한국고용정보원 인건비로 이관
- '19년 : “한국고용정보원인건비(일반회계)”와 “한국고용정보원운영(고보기금)”을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일반회계)” 사업으로 통합
- '20년 : “공공고용서비스 국제협력(일반회계)” 사업을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일반회계)”사업으로 이관 통합
- '22년 :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고용보험기금” 사업비에 편성하고 있던 공무원 등 인건비를 일반회계 “한국고용정보원 인건비”로 이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1,282	39,241	41,407	41,323	42,976

- 기타: 3본부 10부서(10실) 33팀, 임직원 437명, 공무원 83명, 정원외무기계약직 9명 인건비 및 운영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 한국고용정보원 임직원, 고용노동부, 실업자, 구직자, 사업주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고용 정보원 인건비	출연	한국고용 정보원	38,055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제5항
한국고용 정보원 운영	출연	한국고용 정보원	4,921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제5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한국고용정보원 인건비> (2025) 36,509백만원 → (2026) 38,055백만원 (+1,546백만원, 4.2%)

(1) 임직원 인건비 (2025) 36,367 → (2026) 38,020백만원(+1,653백만원, 4.5%)

- (요구) 계속 소요+'25년 수시증원(1명, 12개월)+'26년 정기증원(7명, 6개월)+공통 인상분 3.5% 반영

- (산출)

① 계속 소요 인건비 : 36,367백만원

② 증원인력 인건비 : 증 367백만원 ('25년 수시증원 81백만원, '26년 정기증원 286백만원)

③ 공통인상분(3.5%) : 증 1,286백만원 ('25년 기준 인건비 36,734백만원x3.5%)

(2) 직원이주수당 (2025) 142 → (2026) 35백만원(△107백만원, △75.4%)

- (요구)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완공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 이주수당 비용 반영

* '25년 12개월분, 26년 최종 3개월분 반영

- (산출) 서울근무인원(59명)x3개월x20만원(기재부 예산운용지침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기획재정부)

<표주요 항목별 지침 1.인건비 (2)수당 등>

· 1인당 이주수당은 연간 240만원 범위내에서 2년간 지급할 수 있다.

· 이주수당은 연간 지급한도 내에서 기관 사정에 따라 자율적(월별, 분기별, 반기별, 일시불 등)으로 편성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운영> (2025) 4,814 → (2026) 4,921백만원 (+107백만원, 2.2%)

(1) 일반운영비 : (2025) 3,679 → (2026) 3,848백만원(+169백만원, 4.6%)

○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 재구축 ISMP (2025) 0 → (2026) 169백만원(순증)

○ 공과금 및 제세 등 (2025) 1,812 → (2026) 1,812백만원(전년동)

○ 기타운영비(선택적복지비 등) (2025) 1,867 → (2026) 1,867백만원(전년동)

(2) 여비 : (2025) 51백만원 → (2026) 51백만원(전년동)

(3) 업무추진비 : (2025) 75 → (2026) 75백만원(전년동)

(4) 자산취득비 : (2025) 118 → (2026) 297백만원(+179백만원, 151.7%)

○ Windows 11 전환에 따른 업무용 PC 교체 179백만원 (순증)

(5) 시설비 : (2025) 771 → (2026) 530백만원 (△241백만원, △31.2%)

○ 국가기반시설 노후 유지보수 등

○ 시설비 절감분 △241백만원

(6) 공공고용서비스 국제협력 : (2025) 120 → (2026) 120백만원(전년동)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6,509	○ 한국고용정보원인건비 : 36,509백만원 · 임직원 계속 인건비 35,054백만원 · '24년 증원인력 인건비(6개월분) : 254백만원 · 공통인상분(3.0%) : 1,059백만원 · 직원 이주수당 142백만원(+36백만원)	38,055	○ 한국고용정보원인건비 : 38,055백만원 · 임직원 계속 인건비 36,367백만원 · '25년 수시증원 인건비(12개월분) 81백만원 · '26년 정기증원 인건비(6개월분) 286백만원 · 공통인상분(3.5%) 1,286백만원 · 직원 이주수당 35백만원
4,814	○ 한국고용정보원 운영 : 4,814백만원 가. 일반운영비 (3,679백만원) · 일반운영비 계속 5,112백만원 · 기타운영비 절감 △253백만원 ·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완공 후속 비용(완료) △1,180 나. 여비 (51백만원) · 시내, 시외 출장비 다. 업무추진비 (75백만원) · 업무추진비 라. 자산취득비 (118백만원) · 복합기, 노후 pc 교체 등 마. 시설비 (771백만원) · 국가기반시설 노후 유지보수 등 바. 공공고용서비스 국제협력 (120백만원) · WAPES 총회참석, ILO협력사업, APEC 전문가회의의 참석, 국제은행 등	4,921	○ 한국고용정보원 운영 : 4,921백만원 가. 일반운영비 (3,848백만원) · 일반운영비 계속 3,679백만원 · 경영정보시스템 재구축 ISMP 169백만원 나. 여비 (51백만원) · 시내, 시외 출장비 다. 업무추진비 (75백만원) · 업무추진비 라. 자산취득비 (297백만원) · 복합기, 노후 pc 교체 등 · Windows 11 전환 관련 PC 교체 179백만원 마. 시설비 (530백만원) · 국가기반시설 노후 유지보수 등 · 시설비 절감분 △241백만원 바. 공공고용서비스 국제협력 (120백만원) · WAPES 총회참석, ILO협력사업, APEC 전문가회의의 참석, 국제은행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정원 427명(증원 8명, 수시증원 4명), 공무원 75명(증원 5명), 정원외 무기계약직 9명 * '고용전산망(정보화)'사업의 정원외 무기계약직 및 공무원 인건비를 '한국 고용정보원 운영지원' 인건비로 이관
2023	정원 427명, 공무원 75명, 정원외 무기계약직 9명
2024	정원 429명, 공무원 83명, 정원외 무기계약직 9명
2025	정원 430명, 공무원 83명, 정원외 무기계약직 9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한국고용정보원의 안정적 운영으로 수행사업 및 대국민 고용서비스의 질적 향상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기준 및 지침 수립	고용노동부
↓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한국고용정보원
↓	
운영계획서 검토 및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재배정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고용노동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1,282	-	41,282	41,282	40,988	99.3	99.3	-	294
2023	39,241	-	39,241	39,241	39,230	99.9	99.9	-	11
2024	41,407	-	41,407	41,407	41,400	99.9	99.9	-	7
2025	41,323	-	41,323	41,323	41,323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사유 : 통상임금 소송관련 집행 잔액(39백만원), 혁신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액(234백만원), '21년 경평 결과에 따른 경상경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21백만원)
2023	- 불용사유 : 혁신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액(11백만원)
2024	- 불용사유 : 혁신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액(7백만원)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9) 고용동향조사분석(1040-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정책관	계정명 (계정구분 없을 시 공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0	300
명칭	고용창출	고용동향조사분석	고용동향조사분석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동향 조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미래고용분석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미래고용분석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 분석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미래고용분석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고용정보원

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연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사업시행주체	고용서비스기반과 한국고용정보원
고령자고용정책 연구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사업시행주체	고령사회인력정책과 한국고용정보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동향조사분석	7,026	6,079	6,079	9,725	7,433	1,354	22.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026	7,026	7,026	-	-	6,079	6,079	6,079	0 [49]	0 [32]	7,433
· 고용동향조사	4,066	4,066	4,066	-	-	3,023	3,023	3,023	-	0 [4]	4,371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954	954	954	-	-	1,047	1,047	1,047	-	0 [28]	1,048
· 고용동향분석	363	363	363	-	-	364	364	364	-	-	365
· 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연구	994	994	994	-	-	996	996	996	0 [49]	-	999
· 고령자고용정책연구	649	649	649	-	-	649	649	649	-	-	6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동향조사) 청년층, 중고령자 등 주요 고용정책 대상의 고용구조, 직업이동경로 등 고용실태 전반에 대한 통계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고용노동 정책 수립·집행의 기초자료 제공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노동시장 내의 인력수급 불균형 및 직무불일치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수급전망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과 배분에 기여

- **(고용동향분석)** 고용보험 전산망, 고용안정 정보망(Work-Net) 및 직업훈련 전산망(HRD-Net) 등의 고용행정 통계를 활용하여 고용동향을 분석·모니터링하고 고용노동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및 정책제안 제공
- **(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연구)** 지속적인 빅데이터 수집·생산·분석을 통해 맞춤형 디지털 고용서비스 제공 및 효과적인 고용정책 수립 지원
- **(고령자고용정책연구)** 초고령사회 대비 고용관련 통계 분석, 해외사례 분석 및 연구개발 등 종합적 R&D를 통해 초고령사회 정책 지원 모니터링 및 고령자 노동시장 정보 기반 컨설팅 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고용동향조사, 중장기인력수급전망, 고용동향분석>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고용·직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과 구인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직·구인 정보, 산업별·지역별 고용동향, 노동시장 정보,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 재정 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 및 그 밖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고용·직업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6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인력 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의 동향과 그 전망 등이 포함된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4. 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제공하는 업무

- 직업안정법 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등)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각종 고용정보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구인자, 구직자, 그 밖에 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11조(보험 관련 조사·연구)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 ⑥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장비 등의 지원,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 1. 고용정보의 수집·분석과 직업안정기관에의 제공
 - 4.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중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의 운용

<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연구>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고령자 고용정책 연구>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구인·구직 정보수집)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에 관련된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단체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령자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2.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또는 필요인력의 양성
 6. 고령자고용 강조기간의 설정·추진
 7. 고령자고용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추진경위

<고용동향조사>

- 청년패널조사

- '01년: 인적자원개발회의('00.9월)에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채택된 『인력수급 전망 인프라 구축방안』의 후속조치 세부사업의 하나로 청년패널조사 시작
- '07년: 새로운 청년패널(YP2007) 1만 명 구축 조사(1차) 시작
- '15년: 청년패널(YP2007) 추가패널(3,516명) 구축 및 조사 실시
- '21년: 새로운 청년패널(YP2021) 구축 조사(1차) 실시 및 12,214명 구축 완료
- '23년: 청년패널(YP2021) 3차 조사 실시
- '24년: 청년패널(YP2021) 4차 조사 실시
- '25년: 청년패널(YP2021) 5차 조사 실시

-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06년: 고령화사회('10년)→고령사회('17년)→초고령사회('26년) 진입 전망을 토대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은퇴, 소득변화 등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위하여 신설
- '14년: 고령화연구패널 '62~'63년생 920명 신규패널 구축
- '18~'21년: 고령화연구패널 제7~8차 기본조사 및 특별조사 실시
고령화고용패널(고령화연구패널 부가조사) 1차 신규 구축('21년, 9,362명)
- '22년: 고령화연구패널 9차 기본조사 및 고령화고용패널 2차 기본조사 완료

- '23년: 고령화연구패널 제9차 특별조사 및 고령화고용패널(고령화연구패널 부가조사) 1차 특별조사(직업력) 실시
- '24년: 고령화연구패널 제10차 기본조사 및 고령화고용패널(고령화연구패널 부가조사) 3차 기본조사 실시
- '25년: 고령화연구패널 제10차 특별조사 및 고령화고용패널(고령화연구패널 부가조사) 2차 특별조사(직업력) 실시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07년: 고용정보원(인력수요)과 직업능력개발원(인력공급)이 공동으로 인력수급전망 실시, 제3회 국가인력자원위원회 제1호 안건, 「2006~ 201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과 분석」 대통령 최종보고(12월)
- '12년: 「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실시 및 국무회의 보고
- '14년: 「2013~2023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실시 및 국무회의 보고
 - * 세부 산업·직업 전망 실시(산업 소분류 206개, 직업 세분류 270개 선정)
- '15년: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 실시 및 국무회의 보고, 「2014-2024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테마(섬유, 철강, 서비스업, 고령자, 제조업 고용변동) 전망·분석 및 지역별(광역지역별, 충북 북부권) 전망
 -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모형 방법론」 발간
- '16년: 「2015-2025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 전망」 실시, 주요 업종 반기별 일자리 전망
- '17년: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실시 및 국무회의 보고, 테마(소프트웨어, 의료, 물류, 제조업 등) 전망 및 광역지역별 인력수급 전망(충남), 주요 업종 반기별 일자리 전망
- '18년: 「2016-2030 기술혁신을 반영한 인력수요 전망」 실시 및 국무회의 보고, 「2017~2027 인력수급 전망, 주요 업종 반기별 일자리 전망
- '19년: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2018~2035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전망」 실시 및 국무회의 보고, 테마(유통업, 자영업, 전문기술인적자원 등) 전망, 주요 업종 반기별 일자리 전망
- '20년: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기술혁신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활용서 제작 및 배포, 테마(사물인터넷, 로봇 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전망, 주요 업종 반기별 일자리 전망
- '21년: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기술혁신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테마(청년층,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전망 실시, 주요 업종 반기별 일자리 전망
- '22년: 「2021~2031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기술혁신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테마(공간정보산업, 아동돌봄서비스업 등) 전망 실시, 주요 업종 반기별 일자리 전망
- '23년: 「2022~2032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실시, 디지털 전환 기반 기술과 일자리 변화 등 인력수요 구조 변화 분석

- '24년: 「2023~2033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기술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추가필요인력 추계, 2022~2032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활용서 제작 및 배포, 테마(직업구조, 고령층, 외국인력 등) 전망 실시, 주요 업종 반기별 일자리 전망
- '25년: 「2024~2034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기술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추가필요인력 추계, 테마(이민자, 출산여성, 자동차 등) 전망 실시, 주요 업종 반기별 일자리 전망

<고용동향분석>

- '06년~: 고용과 직업연구, 고용이슈, 행정DB(고용보험, 워크넷, HRD-Net) 통계연보 발간
- '12년~: 고용동향브리프 창간 및 행정DB 심층분석 보고서 및 노동시장 신호등 강화를 위한 심층분석 보고서 발간, 시의적절한 고용동향 정보 제공을 위한 고용동향 포럼 운영
- '14년~: 노동시장 분석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 신설, 체계적인 지역 고용동향 분석 정보 제공을 위한 지역산업별 고용포럼 운영 및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창간
- '23년~: 행정DB 통계연월보, 고용이슈, 고용동향브리프 발간 및 Job to job 이동과 산업별 일자리 전환, 청년 노동시장과 공공고용서비스 성과, 실업급여 수급자 분석, 활동적 고령화를 위한 고용정책 연구, 유통·물류 산업의 생산 양식과 고용의 변화 등 변화하는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에 대응하는 연령별·산업별 행정DB 연구 수행
- '25년: 현장 체감형 노동시장 모니터링 및 분석, 노동시장 구조가 저출산에 미치는 효과, 노동이동과 임금구조 등 변화하는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에 대응하는 연령별·산업별 행정DB 연구 수행

<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연구>

- '21년: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및 고용노동 연구 분석 등을 위한 디지털 기반 전문 조직 “빅데이터센터” 신설(‘2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AI 일자리 매칭 효과성 분석, 스마트 고용서비스 포럼 운영, 빅데이터 해외 연구사례 동향 및 기초자료 수집 등
- '22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AI 일자리 매칭 효과성 분석, 스마트 고용서비스 포럼 운영, 잡케어 실용정보·시각화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사업 수행
- '23년: 취업확률 예측 모델 개발 및 실용정보 고도화 사업, AI일자리매칭 서비스 고도화, 지능형 직업상담 지원서비스(잡케어) 고도화,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 산학협력 기반 고용노동 데이터 활용 활성화, 고용노동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고용서비스 품질 강화, 내외부 전문가 포럼 운영 및 데이터 분석 활성화
- '24년: 빅데이터센터와 일자리정보플랫폼실을 통합하여 디지털고용서비스전략실 확대 개편(‘24.2월~),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고용서비스 연구과제 수행(~‘24.12월),

디지털 고용서비스 중장기('25년~'29년) 전략 수립(~'24.12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고용서비스 포럼을 통한 국내외 선진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24.12월), 플랫폼종사자 규모 추정과 근무실태 연구과제 수행(~'24.12월)

<고령자고용정책연구>

- '21년: 저출산·고령화 시대 국정과제,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7-20 21)」에 기초하여 초고령사회 대비 고용정책 개발·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분석 전담팀 구성 계획에 따라 신설 및 사업추진('21.1)
- '21년: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자 노동시장 분석, 해외사례 분석 및 고령자 고용정책 분석, 정책지원 모니터링 및 컨설팅,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고령사회 인력 정책 포럼」(12회) 운영(1월~12월)
- '22년: 중고령자 노동시장 DB 및 조사자료 분석, 주요 고령자 고용정책 모니터링(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기업의 연령관리를 위한 지표개발 및 인증제 도입 방안 연구, 고령자 대상의 지능형 직업상담지원(잡케어)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 '23년: 고령자 계속고용 운영현황 및 인식 실태조사, 고령층 노동시장 조사자료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자 노동시장 전망 연구, 재취업지원 서비스 추진실태 및 도입 성과 분석, 고령자 실업급여 적용실태와 신규취업자 대상 정책과제 연구, 고령층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정보 및 고용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고령자 대상 잡케어 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 기업 연령관리를 위한 업종별 고령자 고용가이드 개발·보급
- '24년: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연구, 고령자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 중장년내일센터 고용서비스 운영 실태조사, 산업별 고령자 고용 실태와 인력 활용 방안, 40세 이상 기업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실태 및 활성화 연구, 중장년·고령자의 근로시간단축청구권 활성화 방안 연구, 중장년 고용정보 허브기능 개선방안 연구
- '25년: 중장년 잡케어 개선 연구, 중고령층 노동시장 이행 분석, IT/제조업 중고령자 노동시장 특성 및 효율적 인력운용 방안 연구, 2차 베이비부머 노동시장 특성과 정책 과제, 국민연금과 고령자의 근로활동에 대한 연구, 중장년내일센터 역량강화 방안, 중장년내일센터 경력개발 교육콘텐츠 연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0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822	5,939	7,026	6,079	7,43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출연
- 사업시행주체: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정책입안자, 구직자 등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용동향 조사	출연	한국고용 정보원	4,371	10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출연	한국고용 정보원	1,048	10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고용동향 분석	출연	한국고용 정보원	365	10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연구	출연	한국고용 정보원	999	10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고령자고용 정책연구	출연	한국고용 정보원	650	10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고용동향조사: ('25) 3,023백만원 → ('26) 4,371백만원, 1,348백만원 증액>

① 청년패널조사: ('25) 1,883백만원 → ('26) 1,926백만원, +43백만원

- (요구) 처우개선비 3.5% 인상분 반영, 그 외 전년수준 예산으로 편성
- (산출) 조사사업비 1,547백만원, 표본 설계 및 가중치 부여 연구비 15백만원, 자문회의비 및 보고서 인쇄비 55백만원, 학술대회 개최 124백만원 등

<주요 변동 내역>

- (조사사업비) 조사사업 책임연구원, 연구원, 통계조사원 등 인건비에 처우개선비 인상분 3.5% 반영
: ('25) 1,512백만원 → ('26) 1,547백만원(+35백만원)
- (학술대회 개최) 물가상승에 따른 행사진행비 인상 반영
: ('25) 122백만원 → ('26) 124백만원(+2백만원)
- (통계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 통계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비 인상
: ('25) 95백만원 → ('26) 100백만원(+5백만원)

②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5) 1,140백만원 → ('26) 2,445백만원, +1,305백만원

*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격년조사 방식으로 홀수해는 유지조사를 실시하고, 짝수해에는 기본조사 실시

* 고령화연구패널 예산 추이(단위: 백만원)

: ('23 유지조사) 1,140 → ('24 기본조사) 2,192 → ('25 유지조사) 1,140 → ('26 기본조사) 2,445

- (요구) 격년 단위 조사로서 '26년 기본조사로 전환됨에 따라 증액 및 처우개선비 3.5% 인상 반영
- (산출) 고령화연구패널 조사사업비 1,142백만원, 고령화고용패널 조사사업비 1,149백만원, 가중값 무응답 대체 용역 30백만원, 자문회의비 및 보고서 인쇄비 26백만원 등

<주요 변동 내역>

- (고령화연구패널 조사사업비) 격년 단위 고령화패널조사가 기본조사(짝수해)로 전환됨에 따라 증액
: ('25) 268백만원 → ('26) 1,142백만원(+874백만원)
- (고령화고용패널 조사사업비) 격년 단위 고령화패널조사가 기본조사(짝수해)로 전환됨에 따라 증액
: ('25) 719백만원 → ('26) 1,149백만원(+43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23	○ 고용동향조사 : 3,023백만원 ① 청년패널조사 : 1,883백만원 가. 조사사업비 1,512백만원 나. 표본설계 및 가중치 부여 연구비 15백만원 다. 자문회의비 및 보고서 인쇄비 55백만원 라. 학술대회 개최 122백만원 마. 연구보조원 보수 31백만원 바. 여비 7백만원 사. 기타경비 7백만원 아. 분석시스템 운영·개선 40백만원 자. 통계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 95백만원 ②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1,140백만원 가. 고령화연구패널 조사사업비 268백만원 나. 고령화고용패널 조사사업비 719백만원 다. 가중값 무응답 대체 용역 30백만원 라. 자문회의비 및 보고서 인쇄비 27백만원 마. 연구보조원 보수 57백만원 바. 여비 30백만원 사. 기타경비 9백만원	4,371	○ 고용동향조사 : 4,371백만원 ① 청년패널조사 : 1,926백만원 가. 조사사업비 1,547백만원 나. 표본설계 및 가중치 부여 연구비 15백만원 다. 자문회의비 및 보고서 인쇄비 55백만원 라. 학술대회 개최 124백만원 마. 연구보조원 보수 31백만원 바. 여비 7백만원 사. 기타경비 7백만원 아. 분석시스템 운영·개선 40백만원 자. 통계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 100백만원 ②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2,445백만원 가. 고령화연구패널 조사사업비 1,142백만원 나. 고령화고용패널 조사사업비 1,149백만원 다. 가중값 무응답 대체 용역 30백만원 라. 자문회의비 및 보고서 인쇄비 26백만원 마. 연구보조원 보수 59백만원 바. 여비 30백만원 사. 기타경비 9백만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25) 1,047백만원 → ('26) 1,048백만원, 1백만원 증액>

- (요구) 전년수준과 동일한 예산편성, 처우개선비 3.5% 인상분 반영(계약직 보수 항목을 31백만원에서 32백만원으로 1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430백만원, 지역별 인력수급전망 107백만원, 테마 산업직업 인력수급전망 99백만원, 단기 일자리전망 37백만원 등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47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1,047백만원 가. 중장기인력수급전망 430백만원 나. 지역별 인력수급전망 107백만원 다. 테마 산업직업 인력수급전망 98백만원 라. 단기 일자리전망 43백만원 마. 기술변화를 반영한 산업수요 분석 및 전망 126백만원 바. 포럼 및 자문위원회 39백만원 사. 기타운영비 204백만원 (1) 계약직 보수 31백만원 (2) 특근매식비 5백만원 (3) 여비 42백만원	1,048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1,048백만원 가. 중장기인력수급전망 430백만원 나. 지역별 인력수급전망 107백만원 다. 테마 산업직업 인력수급전망 99백만원 라. 단기 일자리전망 37백만원 마. 기술변화를 반영한 산업수요 분석 및 전망 120백만원 바. 포럼 및 자문위원회 42백만원 사. 기타운영비 213백만원 (1) 계약직 보수 32백만원 (2) 특근매식비 5백만원 (3) 여비 42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 자산취득비 18백만원 (5) 직무훈련비 3백만원 (6) 국내외 참고자료 운영 28백만원 (7) 통계분석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비 77백만원		(4) 자산취득비 19백만원 (5) 직무훈련비 3백만원 (6) 국내외 참고자료 운영 28백만원 (7) 통계분석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비 80백만원 (8) 연구지원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비 5백만원

<고용동향분석: ('25) 364백만원 → ('26) 365백만원, 1백만원 증액>

- (요구) 전년수준과 동일한 예산편성, 처우개선비 3.5% 인상분 반영(계약직 보수 항목을 24백만원에서 25백만원으로 1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고용동향 심층분석 강화 153백만원, 고용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25백만원 등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64	○ 고용동향분석 364백만원 가. 고용동향 심층분석 강화 156백만원 (1) 고용동향브리프 39백만원 (2) 고용동향 심층분석보고서 60백만원 (3) 고용이슈 발간 57백만원 나. 고용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25백만원 (1) 행정DB 연보 발간 25백만원 다. 연구용 행정DB 분석 115백만원 (1) 행정DB 심층분석 보고서 발간 32백만원 (2) 고용DB분석 프로그램 라이선스 83백만원 라. 기타운영비 69백만원 (1) 공과금 6백만원 (2) 계약직 보수 24백만원 (3) 자산취득비 5백만원 (4) 특근매식비 9백만원 (5) 여비 22백만원 (6) 교육훈련비 2백만원	365	○ 고용동향분석 365백만원 가. 고용동향 심층분석 강화 153백만원 (1) 고용동향브리프 26백만원 (2) 고용동향 심층분석보고서 70백만원 (3) 고용이슈 발간 57백만원 나. 고용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25백만원 (1) 행정DB 연보 발간 25백만원 다. 연구용 행정DB 분석 119백만원 (1) 행정DB 심층분석 보고서 발간 32백만원 (2) 고용DB분석 프로그램 라이선스 87백만원 라. 기타운영비 68백만원 (1) 공과금 4백만원 (2) 계약직 보수 25백만원 (3) 자산취득비 5백만원 (4) 특근매식비 9백만원 (5) 여비 22백만원 (6) 직무훈련비 2백만원

<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연구 : ('25) 996백만원 → ('26) 999백만원, 3백만원 증액>

- (요구) 전년수준과 동일한 예산편성, 처우개선비 3.5% 인상분 반영(계약직 보수 항목을 94백만원에서 97백만원으로 3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720만원, 빅데이터 연구 분석 및 정보 제공 114백만원, 기타비용 165백만원

<주요 변동 내역>

- (빅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개발) 고용노동 실용정보 서비스 구축 단가 인상 반영 및 고용노동분석 데이터 시각화 단가 프로그램 인상에 따른 예산 요구
: ('25) 210백만원 → ('26) 720백만원(+510백만원)
- (데이터를 활용한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노동 종사자 조사 및 연구) 삭제
: ('25) 510백만원 → ('26) 0원(△510백만원)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96	○ 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연구 996백만원 가.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210백만원 (1) 고용노동 실용정보 서비스 구축 210백만원 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노동 종사자 조사 및 연구 510백만원 (1) 빅데이터를 활용한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노동 종사자 조사 연구 205백만원 (2) 고용노동 분석 데이터 구축 205백만원 (3) 고용노동 분석 데이터 시각화 100백만원 다. 빅데이터 연구 분석 및 정보 제공 114백만원 (1) 고용노동 빅데이터 해외 연구사례 동향 및 기초자료 수집 50백만원 (2) 고용정보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보 제공 64백만원 라. 기타비용 162백만원 · 계약직 보수 94백만원 · 사무용품 구입비 1백만원 · 특근매식비 4백만원 · 교육훈련비 4백만원 · 홍보모니터링비 40백만원 · 여비 16백만원 · 업무추진비 : 4백만원	999	○ 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연구 999백만원 가. 빅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개발 720백만원 (1) 고용노동 서비스 개발 215백만원 (2) 고용노동 분석 데이터 구축 205백만원 (3) 고용노동 분석 데이터 시각화 300백만원 <삭제> 다. 빅데이터 연구 분석 및 정보 제공 114백만원 (1) 고용노동 빅데이터 해외 연구사례 동향 및 기초자료 수집 50백만원 (2) 고용정보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보 제공 64백만원 라. 기타비용 165백만원 · 계약직 보수 97백만원 · 사무용품 구입비 1백만원 · 특근매식비 4백만원 · 교육훈련비 4백만원 · 홍보모니터링비 40백만원 · 여비 16백만원 · 업무추진비 : 4백만원

<고령자고용정책연구: ('25) 649백만원 → ('26) 650백만원, 1백만원 증액>

- (요구) 전년수준과 동일한 예산편성, 처우개선비 3.5% 인상분 반영(계약직 보수 항목을 14백만원에서 15백만원으로 1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초고령화사회 고용실태 분석 190백만원, 초고령사회 고용정책 분석 및 연구개발 80백만원 등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49	○ 고령자 고용정책 연구 649백만원 (1) 초고령사회 고용실태 분석 190백만원 (1-1) 중고령자 경력이동 및 경력개발 실태조사 190백만원 (2) 초고령사회 고용정책 분석 및 연구개발 80백만원 (2-1) 고령자 고용촉진정책 해외 동향 연구 33백만원	650	○ 고령자 고용정책 연구 650백만원 (1) 초고령사회 고용실태 분석 190백만원 (1-1) 중고령자 경력이동 및 경력개발 실태조사 190백만원 (2) 초고령사회 고용정책 분석 및 연구개발 80백만원 (2-1) 고령자 고용촉진정책 해외 동향 연구 33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 고령자 고용정책 연구 39백만원		(2-2) 고령자 고용정책 연구 39백만원
	(2-3) 고령자 해외고용정책 자문료 8백만원		(2-3) 고령자 해외고용정책 자문료 8백만원
	(3) 고령자 고용정책 실태 및 모니터링 278백만원		(3) 고령자 고용정책 실태 및 모니터링 278백만원
	(3-1) 재취업지원 의무화 기업 모니터링 94백만원		(3-1) 재취업지원 의무화 기업 모니터링 94백만원
	(3-2) 고령자 고용장려금 모니터링 100백만원		(3-2) 고령자 고용장려금 모니터링 100백만원
	(3-3) 고령자 일자리 사업 모니터링 84백만원		(3-3) 고령자 일자리 사업 모니터링 84백만원
	(4)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70백만원		(4)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70백만원
	(4-1) 유관기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30백만원		(4-1) 유관기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30백만원
	(4-2) 고령자 고용정책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40백만원		(4-2) 고령자 고용정책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40백만원
	(5) 기타운영비 31백만원		(5) 기타운영비 32백만원
	(5-1) 도서 및 비품비 : 1백만원		(5-1) 도서 및 비품비 : 2백만원
	(5-2) 여비 : 6백만원		(5-2) 여비 : 6백만원
	(5-3) 특근매식비 : 4백만원		(5-3) 특근매식비 : 4백만원
	(5-4) 교육비 : 3백만원		(5-4) 교육비 : 3백만원
	(5-5) 홍보비 : 3백만원		(5-5) 홍보비 : 3백만원
	(5-6) 계약직보수 : 14백만원		(5-6) 계약직보수 : 1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 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15세 포함) / (t-2)년 청년공제 가 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 보험자 전수조사/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고용동향조사 (청년패널조사) - 청년패널2021 1차(2021) 조사 자료 정제(하반기 완료 예정) - 청년패널2021 2차(2022) 조사 기획 및 실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2020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베타버전 자료 오픈('22.2) - 2020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최종버전 자료 오픈(하반기 완료 예정) - 201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발간 및 배포(하반기 완료 예정)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고령화연구패널 2020년 8차 기본조사 자료 정제 및 공개 - 고령화연구패널 2020년 8차 기본조사 기초분석보고서 발간 및 배포 - 고령화연구패널 2022년 9차 기본조사 기획 및 조사용역 계약 체결 - 고령화고용패널 2021년 1차 조사 자료 정제(하반기 완료 예정) - 고령화고용패널 2022년 2차 조사 기획 및 실시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1~2031 실시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8~2028 활용서 4종 제작 및 배포 예정 - 디지털 기술혁신 및 저탄소전환을 반영한 장기 인력수요 전망 실시 - 광역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실시 - 인력수급전망 방법론(케심, AI 등) 연구 실시 - 주요 산업·직업별 정량적 인력수급 전망 실시 · 아동돌봄서비스, 미래차 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 인력수급전망 포럼(4회)과 인력수급자문위원회(1회) 실시 예정 - 주요 업종의 반기별 일자리 전망 발표 · 주요 10개 업종의 반기별 일자리 전망을 실시하여 연2회 발표(1, 7월) ○ 고용동향분석 - 「고용동향 원내 간담회」(4회) 운영 계획 - 「고용동향브리프」(10회), 고용이슈(계간) 발간 계획 - 노동시장 심층분석 보고서 발간 계획(2022 KEIS-고용DB 분석, 공공취업지원서비스 이용자의 경로의존성과 성과의 취약성, 모성보호 제도 개선과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 특수형태노동 및 고용의 다변화와 사회보험 가입,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청년 일자리와 기업성과 분석, 행정DB를 이용한 노동력 변동 분석, 신중년 일자리 분석 및 평가, 사회적 기업의 고용 분석,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이직 과정 연구, DW 연구용 분석자료 구축) - 고용행정DB 자료집 계획(고용보험통계현황 및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매월), 고용보험통계연보 및 워크넷통계연보(1회),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1회)) ○ 빅데이터센터 구축 - 잡케어 실용정보·시각화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사업 진행('22.10월~) -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조사 및 연구('22.7월~) - 22년도 잡케어 전문가 포럼 운영('22.7월~) - 잡케어 서비스 대국민 패널운영 및 모니터링('22.6월~) - 일자리매칭 알고리즘 개선 연구('22.8월~) - 빅리더 AI 아카데미 프로젝트 진행('22.7월~) - 잡케어서비스를 위한 고용보험 임금정보 적합성 검증 연구('22.9월~) - 구인정보 키워드 분석을 통한 직종별 구인 트렌드 분석('22.5월~) ○ 고령자 고용정책 연구 - 중고령자 노동시장 DB 및 조사자료 분석
------	---

	- 주요 고령자 고용정책 모니터링 진행(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친화 지표 개발 및 지표 타당화 검증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 추진 준비 - 고령자 대상의 지능형 직업상담지원(JobCare)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사용성 테스트 진행('22.5~'22.8,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2023	○ 고용동향조사 (청년패널조사) - 청년패널2021 2차(2022) 조사 자료 정제(하반기 완료 예정) - 청년패널2021 3차(2023) 조사 기획 및 조사용역 계약 체결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통계작성 중지승인 신청 진행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고령화연구패널 2023년 9차 특별조사 기획 및 조사용역 계약 체결 - 고령화고용패널 2021년 1차 기본조사 기초분석보고서 발간 및 배포 - 고령화고용패널 2022년 2차 기본조사 자료 정제(하반기 완료 예정) - 고령화고용패널 2022년 1차 특별조사 기획 및 조사용역 계약 체결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2~2032 실시 - 디지털 기반기술 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분석 실시 - 광역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실시 - 주요 산업·직업별 정량적 인력수급 전망 실시 · 농촌지역 고용 특성과 농업 인력수요 전망 - 인력수급전망 포럼(3회)과 인력수급자문위원회(1회) 실시 예정 - 주요 업종의 반기별 일자리 전망 발표 · 주요 10개 업종의 반기별 일자리 전망을 실시하여 연2회 발표(1, 7월) ○ 고용동향분석 - 「고용동향브리프」(10회), 고용이슈(계간) 봄호 및 여름호 발간 - 노동시장 심층분석 보고서 발간 계획(Job to job 이동과 산업별 일자리 전환, 고용노동행정DB를 이용한 노무제공자의 경력변동 분석, 실업급여 수급자 분석: 제도 개편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적 고령화(Active Aging)를 위한 고용정책 연구, 유통·물류 산업의 생산양식과 고용의 변화:ICT의 도입과 활용을 중심으로) - 행정DB 분석 보고서 발간(2023 KEIS-고용DB 분석) 계획 - 고용행정DB 자료집 계획(고용보험통계현황 및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매월), 고용보험통계연보 및 워크넷통계연보(1회),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1회)) ○ 빅데이터센터 구축 - 취업확률 예측모델 개발 및 실용정보 고도화 사업 진행('23.10월~) - 청년 선호 기업 분석('23.7월~12월) ○ 고령자 고용정책 연구 - 고령자 계속고용 운영현황 조사 연구 - 고령층 노동시장 조사자료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 재취업지원서비스 실태와 과제
2024	○ 고용동향조사 (청년패널조사) - 청년패널2021 3차(2023) 조사 자료 정제(하반기 완료 예정) - 청년패널2021 4차(2024) 조사 기획 및 조사용역 계약 체결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고령화연구패널 2024년 10차 기본조사 기획 및 조사용역 계약 체결 - 고령화연구패널 2022년 기초분석보고서 발간 및 배포 - 고령화고용패널 2024년 3차 기본조사 기획 및 조사용역 계약 체결 - 고령화고용패널 2022년 기초분석보고서 발간 및 배포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3~2033 실시 - 광역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실시 - 주요 산업·직업별 정량적 인력수급 전망 실시 · 직업구조, 외국인력, 고령층 등 - 인력수급전망 포럼(3회)과 인력수급자문위원회(1회) 실시 예정 - 주요 업종의 반기별 일자리 전망 발표 · 주요 10개 업종의 반기별 일자리 전망을 실시하여 연2회 발표(1, 7월) ○ 고용동향분석 - 「고용동향브리프」(5회), 고용이슈(계간)(4회) 발간 계획 - 노동시장 심층분석 보고서 발간 (연령계층별 노동이동 분석, 행정통계와 경기 및 고용간 상관성 분석, 고용행정자료를 활용한 고용안정성 연구, 일자리 전환의 노동시장 영향 연구, 고용보험과 사회보장 행정자료의 결합DB 구축 및 활용 연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동시장 분석 통합제공 실행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계획 - 행정DB 분석 보고서 발간(2024 KEIS-고용DB 분석) 계획 - 고용행정DB 자료집 (고용보험통계현황 및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매월), 고용보험통계연보(1회), 워크넷통계연보(1회),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1회)) 계획 ○ 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연구 -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고용서비스 포럼('24.4월~'24.9월) - 디지털 고용서비스 중장기 전략 수립('24.8월~'24.12월) - 노무제공자와 플랫폼종사자 규모추정과 근로실태 조사 및 연구('24.5월~'24.12월) -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24.4월~'24.12월) -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공공고용서비스 연계 전략에 대한 연구('24.4월~'24.12월) - ChatGPT의 고용서비스 활용 방안 연구('24.4월~'24.12월) - 고용24 연차보고서(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24.4월~'24.12월) - 고용보험서비스 사용자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24.4월~'24.12월) - 고용보험 민원신청 데이터 품질 개선방안 연구('24.4월~'24.12월) - MDM 품질 개선 및 서비스 확대 방안 연구('24.4월~'24.12월) -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등 고용보험 표본 데이터셋 구축('24.4월~'24.12월) - 채용확률 예측 모델 기초연구('24.4월~'24.12월) ○ 고령자 고용정책 연구 -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연구 실시 - 고령자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 실시 - 산업별 고령자 고용 실태와 인력 활용 방안 조사 - 중장년·고령자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활성화 방안 연구 실시 - 중장년내일센터 고용서비스 운영 실태조사 - 해외 고령자 친화 인재관리시스템 해외사례 연구 수행(싱가포르)
2025	○ 고용동향조사 (청년패널조사) - 청년패널2021 4차(2024) 조사 자료 정제 - 청년패널2021 5차(2025) 조사 기획 및 조사용역 진행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고령화연구패널 2025년 10차 특별조사 기획 및 조사용역 진행 - 고령화연구패널 개선연구 발간 및 배포 - 고령화고용패널 2025년 2차 특별조사 기획 및 조사용역 완료 - 고령화고용패널을 통한 중장년 노동시장 심층분석 발간 및 배포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4~2034 실시

- 광역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실시
- 주요 산업·직업별 정량적 인력수급 전망 실시(외국인, 여성, 자동차 등)
- 기술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실시
- 단기 고용전망 실시 및 단기 전망 모형 개선
 -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실시하여 연2회(상/하반기) 발표
 - 한국고용정보원의 단기전망분석모형(KEISIM: KEIS Simulation Model)의 개선
- '26년 노동시장 전망 실시(연간, 산업 대분류별)
- **고용동향분석**
 - 「고용동향브리프」(5회), 고용이슈(계간) 봄호 및 여름호 발간
 - 노동시장 심층분석 보고서 발간(현장 체감형 노동시장 모니터링 및 분석, 노동시장 구조가 저출산에 미치는 효과, 노동이동과 임금구조)
 - 행정DB 분석 보고서 발간(2025 KEIS-고용DB 분석)
 - 고용행정DB 자료집 제작(고용보험통계현황 및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매월), 고용보험통계연보(1회), 워크넷통계연보(1회),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1회))
- **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연구**
 - 상담용 잡케어 고용정보 시각화 및 UI/UX 개선 사업('25.7월~12월)
 - 디지털배지 기반 고용 실용정보 서비스 구축 사업('25.8월~'26.2월)
 - (고용24)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사용자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년차 현황 및 데이터 분석('25.3월~'11월)
 - 고용보험과 Qnet의 연계분석을 통한 고용24 맞춤형 서비스 콘텐츠 개발('25.3월~'11월)
 - 채용확률 예측모형 개발 2차 연구('25.4월~'11월)
 - 취업확률 예측모델링을 위한 인과추론 모형 개발 위탁연구('25.7월~'12월)
 - MDB 활용성 강화 연구 조사('25.9월~'12월)
 - MDB를 활용한 구직자 맞춤 서비스 확대 방안 연구('25.3월~11월)
 - MDB 기반 기업서비스(확대) 방안 기초 연구('25.3월~11월)
 - 개인화된 경력개발 서비스 사례분석 및 잡케어 적용 방안 연구('25.3월~11월)
 - 직업훈련(HRD-Net) 현황 및 훈련과정 분석과 상담활용 방안 연구('25.3월~11월)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기반 임금 추정 모델 기초 연구('25.3월~11월)
 - 한국직업정보 재직자 조사 기반 직업 추천 모델 기초 연구('25.3월~11월)
 - 고용부·산하기관 디지털·데이터 공유 포럼 운영('25.5월~10월)
- **고령자 고용정책 연구**
 - 중고령자 잡케어 개선 방안 연구 실시
 - 중장년내일센터 경력개발 교육콘텐츠 연구
 - 중장년내일센터 역량강화 방안 연구
 - IT 및 제조업 중고령자 노동시장 특성 및 효율적 인력운용방안 연구
 - 중장년 퇴직자의 노동시장 이행경로 분석
 - 2차 베이비부머 노동시장 특성과 정책 과제 연구
 - 국민연금과 고령자의 근로활동에 대한 연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고용동향조사 >

-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생산하고 정책분석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한 신규 고용정책 수립 및 노동시장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정책 담당자, 관련기관 연구자들에게 고용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연구

및 관련 고용정책 수립에 기여

- 청년 및 고령자 등 특성별 교육·훈련, 직업이동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고용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
- 조사자료를 활용한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등을 통해 정책 및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
- 고용 관련 현안에 대하여 신속히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자료로 활용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국가인력수급전망의 총량전망(수요전망과 공급전망)과 부문별 전망의 정합성 제고를 통해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 기여
- 광역 지역별 중장기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지역이 겪고 있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방안 제시
- 테마 직업·산업분야 인력수급전망 등에서 시의성 있는 단기 실태조사 진행을 통해 고용정책 기초자료 제공
- 불황업종에 대한 조기경보 등 업종별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대응 기반 구축(업종·직종별 단기(6개월)일자리 예보제 운영)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및 직업의 인력수요 변화 예측을 위한 기술혁신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을 실시하여 향후 동 분야의 인력양성 정책 수립의 정책적 함의 제시
- 경기 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한국고용정보원의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및 구축

<고용동향분석>

- 고용보험,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한고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DB를 정기적으로 분석·제공
- 노동시장 이슈분석, 심층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고용정책수립 및 노동시장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고용지원서비스 및 고용정책의 효과성 제고
- 노동시장의 동향 및 핵심이슈에 대한 분석,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노동정책 수립 기여
- 상시적인 지역·업종별 고용동향을 모니터링하여 고용변동 시 선제적 대응 및 지역의 노동수요 동향 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의 범위 개선을 통한 고용서비스 정책 효과 제고

<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연구>

- 고용노동 관련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맞춤형 고용정보 제공
- 데이터에 근거한 시의적절한 고용노동정책의 개발 및 반영 지원
- 진로상담 지원, 일자리 매칭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서비스의 알고리즘 고도화로 고용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 생성형AI 등 최신 기술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적용 방안 마련
- 고용시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용정보 확대 및 시각화 구축을 통해 잡케어 실용정보 확대, 서비스 사용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추가 콘텐츠 발굴
- 상담사와 대국민을 위한 잡케어 서비스 중장기적 추진전략 수립과 실행과제 정의 및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을 통한 추진 방법 및 체계 방안 제시
- 고용노동과 외부기관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 진로상담 지원, 일자리 매칭 등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과 AI를 활용한 일자리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로 공공 고용서비스의 고도화

- AI윤리 가이드라인 및 AI 거버넌스 기본 체계 마련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AI 오·남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 사전 차단

<고령자고용정책연구>

- 초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정책 연구중심 기능에서 정책 기획 및 실행, 모니터링 및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 고령자 고용정책 허브 기능 확대를 통한 정부 고령자 정책사업 운영에서의 효율성과 고령자 고용정책 창출 성과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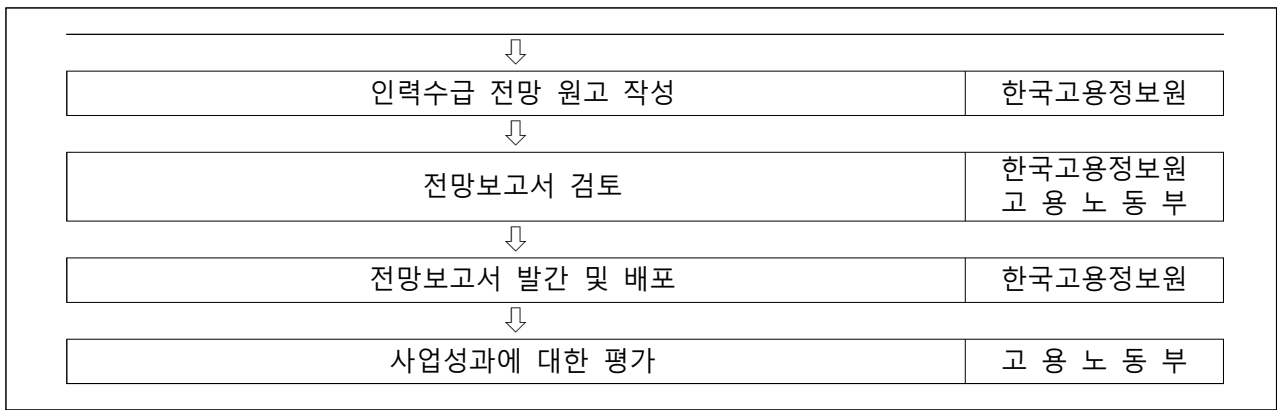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고용동향조사>

연간 사업계획 수립	고 용 노 동 부 한국고용정보원
↓	
운영계획서 검토 및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교부	고 용 노 동 부
↓	
조사표 설계(고용노동부 정책 수요 반영)	한국고용정보원 고 용 노 동 부
↓	
조사 실사업체 선정	한국고용정보원
↓	
조사지침 수립 및 면접원 교육	한국고용정보원 고 용 노 동 부
↓	
조사 실시	조사 실사업체
↓	
조사 결과 확인 및 클리닝	한국고용정보원 고 용 노 동 부
↓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고 용 노 동 부

<중장기인력수급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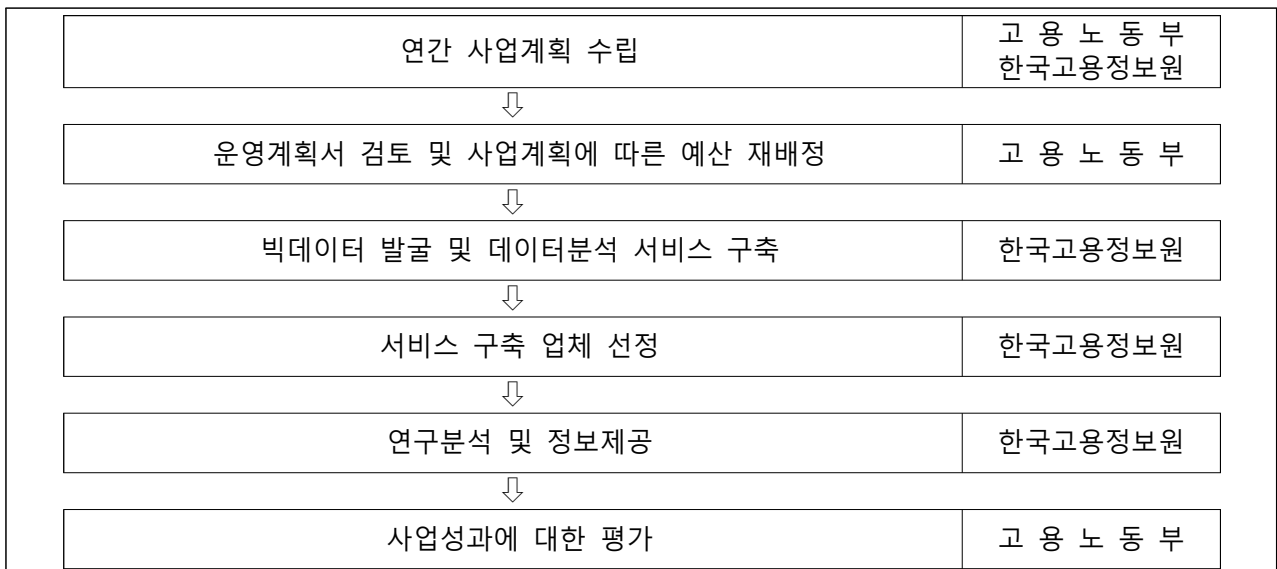
연간 사업계획 수립	고 용 노 동 부 한국고용정보원
↓	
운영계획서 검토 및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교부	고 용 노 동 부
↓	
전망 관련 통계 구축 및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



<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연구>



<고령자 고용정책 연구>

사업기준 및 지침 수립	고 용 노 동 부
↓	
연간 계획서 수립 및 계획서 제출	한국고용정보원
↓	
운영계획서 검토 및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재배정	고 용 노 동 부
↓	
연구방향 및 조사결계(정책 수요 반영)	한국고용정보원
↓	
조사업체 및 공동연구자 선정	한국고용정보원
↓	
문헌 분석 및 국내외 자료 분석, 조사실시	한국고용정보원
↓	
분석 결과 확인 및 보고서 작성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고 용 노 동 부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23년 '양호', '24년 '우수', '25년 미부여(전년 '우수'평가의 경우)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822	-	6,822	6,822	6,822	100.0	100.0	-	-
2023	5,939	-	5,939	5,939	5,939	100.0	100.0	-	-
2024	7,026	-	7,026	7,026	7,026	100.0	100.0	-	-
2025	6,079	-	6,079	6,079	6,079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10) 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3	301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청년고용정책관
	사업시행주체	공정채용기반과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537,609	777,181	802,597	907,959	907,959	130,778	16.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57,680	657,680	537,609		120,071	777,181	791,426	718,819		72,607	907,959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607,780	606,280	487,003		119,277	777,181	791,426	718,819		72,607	907,959
· 빈일자리청년취업 지원금	49,900	51,400	50,606		794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 (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비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에서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체에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여부 외에 불필요한 보고 등 해당 중소기업체의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22년)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등)이 '21년 일괄 종료
⇒ 청년실업 악화·장기화 가능성 등 감안,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청년채용장려금 사업 신설 추진
 - ('25년) 도약장려금 유형Ⅱ 신설을 통한 ①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 및 ②청년의 장기근속 방안 마련으로 중간관리자로의 성장 지원
 - ('26년) 지방 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방 청년 이탈 방지를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 및 해당 기업 취업 청년 지원
-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 우대 지원
(일반 비수도권 지역: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최대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최대 720만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2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42,769	889,078	657,680	802,597	907,95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위탁)
 - 사업시행주체 : 고용센터(고용부), 민간위탁 운영기관
 - 사업 수혜자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취업애로청년* 등
-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소요 예산) ('25) 802,597백만원 → ('26) **907,959백만원, 105,362백만원 증액**
- ① 기업지원금 : ('25) 759,603백만원 → ('26) **791,225백만원, 31,622백만원 증액**
 - 산출: **수도권 5.5만명, 비수도권 5만명 <월별 계산(청년마다 지급 시기 상이) 후 합산>**
(유형1) **522,583백만원** <기존 채용자('23~'25년) 계속 지원금 + '26년 신규 지원금>
 - a. 기존 채용자 계속 기업지원금 454,905백만원
 - b. **(수도권)** '26년 신규 기업지원금 **67,678백만원**
↳ (55,000명/12개월) × 고용유지율* × 지원단가(월 60만원) × 근속기간(월) = **67,678백만원**
* ▲ 고용유지율(6개월: 0.83, 9개월: 0.75 등)
 - (유형2) **268,642백만원** <'25년 계속 지원금 + '26년 신규 지원금>
 - a. '25년 계속 기업지원금 207,117백만원
 - b. **(비수도권)** '26년 신규 기업지원금 **61,525백만원**
↳ (50,000명/12개월) × 고용유지율* × 지원단가(월 60만원) × 근속기간(월) = **61,525백만원**
* ▲ 고용유지율(6개월: 0.83, 9개월: 0.75 등)
- ② 청년 근속 인센티브: ('25) 15,986백만원 → ('26) **89,426백만원, 73,440백만원 증액**
 - 산출: **비수도권 5만명(▲ 일반 비수도권 47,000명 ▲ 우대지원지역 2,250명 ▲ 특별지원지역 750명) <월별 계산(청년마다 지급 시기 상이) 후 합산>**
 - a. '25년 계속 지원 인센티브 72,514백만원
↳ (48,150명/12개월) × 고용유지율* × 120만원 = 72,514백만원
* ▲ 고용유지율(6개월: 0.83, 12개월 0.67, 18개월 0.43) ▲ 24개월 근속 인센티브는 차년도 집행
 - b. **(일반 비수도권)** '26년 신규 계속 지원 인센티브 **15,604백만원**
↳ (47,000명/12개월) × 고용유지율* × 120만원 = **15,604백만원**
* ▲ 고용유지율(6개월: 0.83) ▲ 12개월 근속 인센티브부터는 차년도 집행
 - c. **(우대지원지역)** '26년 신규 계속 지원 인센티브 **934백만원**
↳ (2,250명/12개월) × 고용유지율* × 150만원 = **934백만원**
* ▲ 고용유지율(6개월: 0.83) ▲ 12개월 근속 인센티브부터는 차년도 집행
 - d. **(특별지원지역)** '26년 신규 계속 지원 인센티브 **374백만원**
↳ (750명/12개월) × 고용유지율* × 180만원 = **374백만원**
* ▲ 고용유지율(6개월: 0.83) ▲ 12개월 근속 인센티브부터는 차년도 집행
- ③ 민간위탁사업비: ('25) 25,608백만원 → ('26) **26,108백만원, 500백만원 증액**
 - 산출: **수도권 20만원, 비수도권 30만원 지급**
(유형1) 11,385백만원(**7,000백만원 감액**)
 - a. '25년도 잔여 지원: 58,850명 × 20만원 × 0.5 = 5,885백만원
 - b. **(수도권)** '26년도 신규 지원: 55,000명 × 20만원 × 0.5 = **5,500백만원**
 - (유형2) 14,723백만원(**7,500백만원 증액**)
 - a. '25년도 잔여 지원: 48,150명 × 30만원 × 0.5 = 7,223백만원
 - b. **(비수도권)** '26년도 신규 지원: 50,000명 × 30만원 × 0.5 = **7,500백만원**
- ④ 수용비 등 경상경비: ('25) 1,200백만원 → ('26) **1,000백만원, 200백만원 감액**
 - (일반수용비) **633백만원(△192백만원)**
 - (임차료) 17백만원
 - (일반용역비) 200백만원
 - (국내여비) **60백만원(△3백만원)**
 - (사업추진비) **90백만원(△5백만원)**
- ⑤ 사업출연금: ('25) 200백만원 → ('26) **200백만원**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02,597	○ 기업지원금: 759,603백만원 - 유형1 (700,643백만원) a. '23년 채용자(88,000명), '24년 채용자(104,000명)에 대한 잔여 지원금(628,581백만원) b. '25년 채용자(58,850명) 신규 지원분 (72,062백만원) - 유형2 (58,960백만원) '25년 채용자(48,150명) 신규 지원분(58,960백만원) ○ 청년 근속인센티브: 15,986백만원 - 6개월 근속 청년 대상 인센티브 지원(15,986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 25,608백만원 - 유형1 (18,385백만원) a. '24년도 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잔여분 : 12.5만명 × 20만원 × 0.5 b. '25년도 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신규지원 : 58,850명 × 20만원 × 0.5 - 유형2 (7,223백만원) : 48,150명 × 30만원 × 0.5 ○ 수용비 등 경상경비: 1,200백만원 - 일반수용비 (825백만원) - 임차료 (17백만원) - 일반용역비 (200백만원) - 국내여비 (63백만원) - 사업추진비 (95백만원) ○ 사업출연금: 200백만원	907,959	○ 기업지원금: 791,225백만원 - 유형1 (522,583백만원) a. '23년 채용자(88,000명), '24년 채용자(102,000명), '25년 채용자(58,850명)에 대한 잔여 지원금 (454,905백만원) b. (수도권) '26년 채용자(55,000명) 신규 지원분 (67,678백만원) - 유형2 (268,642백만원) a. '25년 채용자(48,150명) 잔여 지원분(207,117백만원) b. (비수도권) '26년 채용자(50,000명) 신규 지원분 (61,525백만원) ○ 청년 근속인센티브: 89,426백만원 a. '25년 채용자(48,150명) 잔여 지원분(72,514백만원) b. '26년 채용자(50,000명) 신규 지원분(16,912백만원) -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47,000명) 지원분(15,604백만원) -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2,250명) 지원분(934백만원) -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750명) 지원분(374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 26,108백만원 - 유형1 (11,385백만원) a. '25년도 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잔여분 : 58,850명 × 20만원 × 0.5 b. (수도권) '26년도 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신규지원 : 55,000명 × 20만원 × 0.5 - 유형2 (14,723백만원) a. '25년도 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잔여분 : 48,150명 × 30만원 × 0.5 b. (비수도권) '26년도 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신규지원 : 50,000명 × 30만원 × 0.5 ○ 수용비 등 경상경비: 1,000백만원 - 일반수용비 (633백만원) - 임차료 (17백만원) - 일반용역비 (200백만원) - 국내여비 (60백만원) - 사업추진비 (90백만원) ○ 사업출연금: 2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 / 만15~29세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기자 포함) / (t-2)년 청년공제 가입인원(철퇴·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 험피보험자 전수조사/중소 벤처 기업진흥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47,634개 기업에서 113,700명 채용 지원
2023	38,735개 기업에서 88,649명 채용 지원
2024	39,472개 기업에서 101,519명 채용 지원
2025	38,361개 기업에서 105,385명 채용 지원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취업애로청년 등 청년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고용 활성화.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해당 기업 취업 청년을 지원하여 비수도권 청년의 이탈 방지 및 비수도권 인력난 완화에 기여

* '26년 신규 채용 인원 10.5만명 지원 목표(▲수도권 5.5만명 ▲비수도권 5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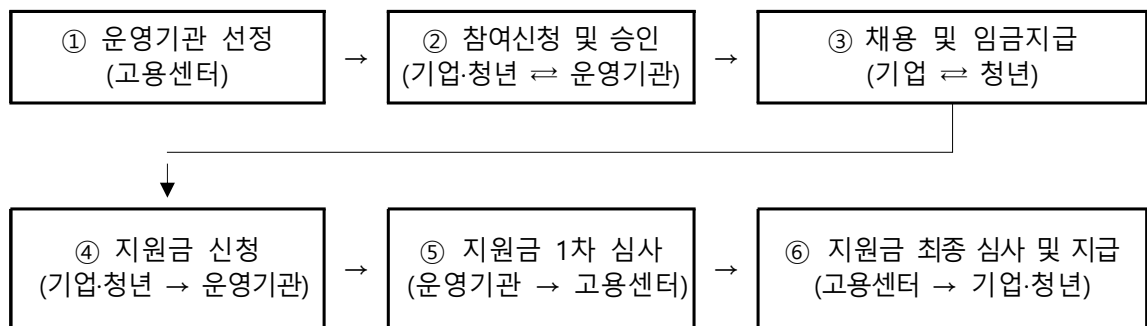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민간운영기관은 참여신청 접수·승인, 요건심사 등 수행,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고용유지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선행 후 예산 편성 필요(예결위, 22, 23, 24결산) → 시정 완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24): 개선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42,820	△ 51	542,769	542,769	233,321	43.0	43.0	-	309,448
2023	889,078	-	889,078	889,078	719,429	80.9	80.9	-	169,649
2024	657,680	-	657,680	657,680	537,609	81.7	81.7	-	120,071
2025	777,181	25,416	802,597	791,426	718,819	90.8	90.8		72,66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사유 청년 채용실적이 목표 대비 다소 부진하고, '22.1월 이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고용유지된 이후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업구조, 지원금 지급 시기가 도래한 기업들의 지원금 신청 지연 등으로 인한 불용 발생
2023	- 불용 사유 전년도 채용자 규모가 목표(14만명) 대비 다소 부진(11.3만명, 80.7%)하고, '22년 참여자의 고용유지율이 예산편성 시 추계보다 낮아 불용 발생
2024	- 이·전용 등 사유 내역사업 간 1,500백만원 변경 - 불용 사유 목표 인원(12.5만명) 대비 채용실적(10.2만명)이 다소 부진하고, 전년도 채용자의 고용유지율이 예산 추계 당시 보다 약 10% 낮아진 이유 등으로 불용 발생
2025	- 추경 편성 사유 경기 불확실성에 의한 신규 채용 유보,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 등으로 구직난과 인력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청년 채용을 독려하고, 청년이 제조업 등 빈자리 업종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경 편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11) 청년내일채움공제(104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4	301
명칭	고용창출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청년내일 채움공제	소관부처	실·국·과(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	113,209	19,854	19,854	1,665	1,665	△18,189	△91.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2,808	162,808	113,209	-	49,599	19,854	19,854	6,869	-	12,985	1,665
·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162,808	162,808	113,209	-	49,599	19,854	19,854	6,869	-	12,985	1,6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

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①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한다.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처리,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6.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정부합동)」의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 청년 취업인턴제'를 개편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결정

- ('16.7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 시행

* 청년취업인턴제 예산·물량 활용하여 총 1만명 지원(인턴제 수료자 1만명)

- ('17.1월) 「청년내일채움공제」 본 사업 시행(참여경로 다양화)

- ('17.8월) 지원금 상향* (추경)

* (청년) 2년간 600만원 → 900만원

(기업) 2년간 500만원(인턴 경로) 또는 600만원(취성패 경로) → 700만원

- ('18.1월) 제도개선(참여경로 폐지)을 통해 참여권 확대
- ('18.3.15.) 「청년일자리대책(정부합동)」의 주요 내용으로 '3년형' 신설 결정
 - * (2년형) 청년 300 + 정부 900(일반회계) + 기업 400(고보기금) = 2년 1,600만원
 - (3년형) 청년 600 + 정부 1,800(일반회계) + 기업 600(고보기금) = 3년 3,000만원
- ('18.6.1.)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개시
- ('21.1.1.) 「청년내일채움공제」 2·3년형 통합 시행
 - * (2년형) 청년 300 + 기업 300(고보기금) + 정부 600(일반회계) = 2년 1,200만원
- ('21.9.8.) 추경을 통해 2만명 지원 확대 및 기업 자부담 일부 정상화
 - * 50인 이상 기업 기업자부담 지원(80%)
- ('22.1.1.) 기업 자부담 지원 축소
 - * (지원율) 30~49인 80%, 50~199인 50%, 200인 이상 미지원
- ('23.1.1.) 재정건전성 및 사중손실 등을 고려한 청년기업적립금 상향 조정, 기업자부담 정상화(미지원) 등 제도 개편
 - *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일반회계 200, 고보기금 200) = 2년 1,200만원
- ('24.1.1.) 신규지원 중단, 기가입자만 계속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계속('24년부터 잔여 지원)
 - *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부터는 신규신청없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잔여 지원금만 지급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75,468백만원	429,586백만원	162,808백만원	19,854백만원	1,665백만원

- 목표(수혜)인원 : ('26년) 기가입자 0.1만명 지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만 15~34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25) 19,854백만원 → ('26) 1,665백만원, △91.6%

① 2년형 정부지원금: ('25) 18,263백만원 → ('26) 997백만원, △94.5%

- (편성) '24년 신규가입자가 없으므로 '23년까지 가입자의 잔여인원 지급시기 도래분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 지원조건 변경 이력>

- ('16.7월~'20년 가입자, 900만원): 1월 75만원, 6월 150만원, 12·18·24월 225만원 지원
- ('21년 가입자 ~, 600만원): 1월 80만원, 6·12월 120만원, 18·24월 140만원 지원
- ('23년 가입자 ~, 200만원): 1월 30만원, 6·12월 35만원, 18·24월 50만원 지원

- (내역) 997백만원

▲ '19~'23년 가입자 중 잔여인원 지급시기 도래분

- * ('23년, 24개월)=684명×50만원=342백만원
- * ('22년, 24개월)=179명×140만원=251백만원
- * ('21년, 24개월)=255명×140만원=357백만원
- * ('20년, 24개월)=20명×225만원=45백만원
- * ('19년, 24개월)=1명×225만원=2백만원

② 3년형 정부지원금: ('25) 78백만원 → ('26) 168백만원, +115.4%

- (편성) '19~'20년 3년형 가입자 중 잔여인원의 도래분 반영('21년부터 신규지원 없음)

* 1월 150만원 6월 175만원 12월 225만원 18월 250만원 24·30월 325만원 36월 350만원

- (내역) 168백만원

▲ '19~'20년 가입자 중 잔여인원 지급시기 도래분

- * ('20년, 36개월)=40명×350만원=140백만원
- * ('19년, 36개월)=8명×350만원=28백만원

③ 청년공제 시스템 운영비: ('25) 1,513백만원 → ('26) 500백만원, △67.0%

- (편성)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 관리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등 위탁사업비

- (내역) 500백만원

○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854	○ 기타보전금(310-04) : 18,341백만원 가. 2년형 청년지원금: 18,263백만원 <기 참여자의 지급시기 도래분> · '23년도 가입자 지급시기 도래분: 2,324백만원 · '22년도 가입자 중 잔여인원 지급시기 도래분: 15,809백만원 · '18~'21년도 가입자 중 잔여인원 지급시기 도래분: 130백만원 나.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78백만원 <기 참여자의 지급시기 도래분> · '18~'20년도 가입자 중 잔여인원 지급시기 도래분: 78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513백만원 가. 청년공제 청약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513백만원	1,665	○ 기타보전금(310-04) : 1,165백만원 가. 2년형 청년지원금: 997백만원 <기 참여자의 지급시기 도래분> · '23년도 가입자 지급시기 도래분: 342백만원 · '22년도 가입자 중 잔여인원 지급시기 도래분: 251백만원 · '18~'21년도 가입자 중 잔여인원 지급시기 도래분: 404백만원 나.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168백만원 <기 참여자의 지급시기 도래분> · '19~'20년도 가입자 중 잔여인원 지급시기 도래분: 168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500백만원 가. 청년공제 청약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5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 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7자 포함) / (t-2)년 청년공제 가 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 보험자 전수조사/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시행('22. 1월, 신규 7만명) ○ '22년 청년 69,489명, 기업 35,538개소 신규가입 * 누적 청년 576,859명, 기업 127,552개소 가입, 249,968명 만기공제금 수령
2023	○ '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시행('23.2월, 신규 2만명) ○ '23.7월 기준 청년 2,493명, 기업 1,965개소 신규가입 * 누적 청년 579,352명, 기업 128,206개소 가입, 297,795명 만기공제금 수령
2024	○ '24년 신규지원 중단(기가입자 7.6만명 계속 지원) * 누적 청년 580,924명, 기업 128,587개소 가입, 355,162명 만기공제금 수령
2025	○ '24년 신규지원 중단(기가입자 0.4만명 계속 지원) * 누적 청년 580,924명, 기업 128,587개소 가입, 377,979명 만기공제금 수령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존 가입자 지속적 관리 및 지원으로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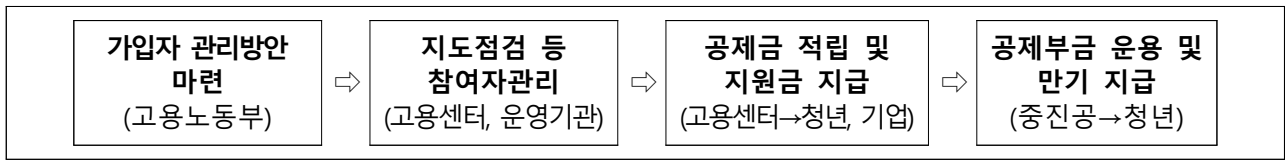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16. 7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의 제도를 개편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사업
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미 실시

* 청년취업인턴제의 물량(5만)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으로 도입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고용노동부는 정부차원에서 청년의 자산형성과 경력개발 관리·지원 등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할 것(예결위, '24결산)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재정사업 자율평가('24) : 미흡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75,468	-	875,468	875,468	841,878	96.2	96.2	-	33,590
2023	429,586	-	429,586	429,586	330,919	77.0	77.0	-	98,667
2024	162,808	-	162,808	157,659	113,209	69.5	71.8	-	44,450
2025	19,854	-	19,854	19,854	6,869	34.6	34.6	-	12,98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사유: 집행잔액
2023	- 불용 사유: 집행잔액
2024	- 고용노동부는 정부차원에서 청년의 자산형성과 경력개발 관리·지원 등 중소기업 장기 근속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할 것(조치 완료)
2025	- 결산 진행 중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12) 고용영향평가사업(104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5	301
명칭	고용창출	고용영향평가사업	고용영향평가사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영향 평가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시장정책관
	사업시행주체	고용정책총괄과 한국노동연구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영향평가사업	1,039	1,339	1,339	1,329	1,329	△10	△0.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39	1,039	1,039	-	-	1,339	1,339	1,334	-	5	1,329
· 고용영향평가사업	1,039	1,039	1,039	-	-	1,279	1,279	1,279	-	-	1,329
· 산업전환 고용안정 영향평가	-	-	-	-	-	60	60	55	-	5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업, 법·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추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규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 중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2.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4.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11년~계속
- 추진배경: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지원을 위해 주요 정부 정책을 고용의 시각에서 분석·평가할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157	3,374	1,039	1,339	1,32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대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영향평가센터(공모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고용영향평가사업 > (2025) 1,339 → (2026) 1,329백만원, △10백만원

(1) 정책 고용영향평가 : (2025) 940 → (2026) 940백만원, 전년동

① 정책 고용영향평가(9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동
- (산출) 60백만원 x 15개

② 평가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지속(40백만원, 전년동)

- (요구) 고용영향평가 연구결과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계속(전년동)
- (산출) 40백만원 = 홈페이지 개편 관련 개발비(20백만원) + 고용영향평가 관련 콘텐츠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20백만원)

(2)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 (2025) 50 → (2026) 100백만원, +50백만원

- (요구) 산출식 개선연구를 '17년~'23년까지 유형별 2~3년 주기로 시행. '22년 재정사업 평가 제도 개편에 따른 산출식 간소화, 산출 방식 변경(고용부 일괄 산출 → 각 부처 스스로 산출) 등으로 정확한 산출식의 필요성 증대. 일자리사업(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유형)의 경우 최근 청년·여성 지원정책 확대 경향 등을 고려하여 관련 산출식 개선 연구 필요

* 연구유형(10개): 일자리사업 4개(직접일자리 제외), SOC 4개, R&D 2개(인력양성/사업화지원 등)

- (산출) 100백만원 = 50백만원 x 2개(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 2개 유형)

(3) 고용영향평가센터 운영비 : (2025) 289 → (2026) 289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동
- (산출) 289백만원

(4) 산업전환 고용안정 영향평가 : (2025) 60 → (2026) 0원, △6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79	< 고용영향평가 >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1,279백만원 가. 정책 고용영향평가(940백만원) · 정책 고용영향평가: 60백만원×15개=900백만원 ·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 개편: 40백만원(신규) 나. 재정사업평가 고용영향평가 산출식 개선 기초 연구(50백만원) · 50백만원×1개 다. 고용영향평가센터 운영비(289백만원) · 289백만원	1,329	< 고용영향평가 >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1,329백만원 가. 정책 고용영향평가(940백만원) · 정책 고용영향평가: 60백만원×15개=900백만원 ·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 개편: 40백만원(신규) 나. 재정사업평가 고용영향평가 산출식 개선 기초 연구(100백만원) · 50백만원×2개 다. 고용영향평가센터 운영비(289백만원) · 289백만원
60	< 산업전환 고용안정 영향평가 >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60백만원 가. 산업전환 고용안정 영향평가(60백만원) · 60백만원 × 1개 업종	-	· '25년 종료사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 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기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 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 보험자 전수조사/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정책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및 평가 진행(24개 과제)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4월), 평가실시 및 기재부·각 부처 전달(6월) ·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12.20.)
2023	· 정책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및 평가 진행(24개 과제)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4월), 평가실시 및 기재부·각 부처 전달(6월) ·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12.18.)
2024	· 정책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및 평가 진행(8개 과제)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4월), 평가실시 및 기재부·각 부처 전달(6월) ·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12.12.)
2025	· 정책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및 평가 진행 중(10개 과제)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5월), 평가실시 및 기재부·각 부처 전달(7.1) ·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12.12.)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재정사업이 일자리 창출 등 고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재정이 소요되지 않더라도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제도 등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 수립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책 고용영향평가
 - 대상선정(고용정책심의회) → 평가실시(평가센터 주관, 6개월 내외) → 평가결과 협의(고용부-부처) → 개선권고 → 개선현황 점검(고용부)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 가이드라인 마련(고용부) → 일자리 창출효과 산출(평가센터→각 부처) → 예산 편성 시 활용(기재부 등)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상임위, '24년 결산 지적사항) 고용영향평가 사업의 중앙부처·지자체 신청과제 비율 제고 및 사업 실효성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① 중앙부처·지자체 신청 및 선정률 제고를 위해 수요조사기간 확대(연1→3회) 및 과제 신청 접수시 고용영향평가센터 사전검토 절차 마련·운영 중
 - ② 「고용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25.10~12월), 개선방안 마련(~'26년)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157	-	4,157	4,157	3,897	93.7	93.7	-	260
2023	3,371	-	3,371	3,371	3,371	100.0	100.0	-	-
2024	1,039	-	1,039	1,039	1,039	100.0	100.0	-	-
2025	1,339	-	1,339	1,339	1,334	99.6	99.6	-	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사유 : 집행잔액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불용사유 :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3) 한국잡월드운영지원(1049-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9	301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청년직업정보제공	한국잡월드운영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수지차보전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잡월드 운영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잡월드
		충청남도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잡월드운영지원	23,019	22,484	22,484	23,363	26,363	3000	17.3
- 한국잡월드 운영	22,519	21,484	21,484	23,363	23,363	-	8.8
-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	500	1,000	1,000	-	3,000	3,000	20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019	23,019	23,019	-	-	22,484	22,484	22,484	-	-	26,363
· 한국잡월드운영지원	22,519	22,519	22,519	-	-	21,484	21,484	21,484	-	-	23,363
· 충남 청소년 직업 체험관 건립	500	500	500	-	-	1,000	1,000	1,000	-	-	3,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잡월드운영지원) 청소년, 청년 등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근로의식을 정립하고, 직업에 대한 다양한 체험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적합한 진로 및 직업선택을 지원
- (충남 청소년직업체험관 건립) 미래세대의 올바른 직업의식 형성 및 지역산업에 특화된 미래직업 체험기회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 근 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한국잡월드를 설립한다. <개정 2021. 5. 18.> 1. 직업 관련 자료·정보의 전시 및 제공 2.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 3. 청소년 및 청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4. 교사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5.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6. 직업 관련 자료·정보의 전시기법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개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한국잡월드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④ 한국잡월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입장료·체험관람료 징수 및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한국잡월드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잡월드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⑥ 한국잡월드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및 기부금 2. 그 밖에 한국잡월드의 수입금 ⑦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한국잡월드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7. 25.]

추진경위	- '03. 9. 2.	대통령 지시(제38회 국무회의)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단기대책 뿐 아니라 청소년의 직업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지시
	- '03. 9.22.	「청년실업현황과 대책」대통령 보고 * 건전한 직업관 형성, 직업탐색 및 직업선택 능력배양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 완성과 이를 위한 Job World(종합직업체험관) 설립 검토
	- '04. 1. 7.	Job World(종합직업체험관) 설립계획 수립
	- '04. 2.~7.	KDI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설립타당성 인정
	- '05.11.29.	대통령 지시(대학특성화 추진방안 보고회의) * 상설 직업체험관을 만들어 어린 학생들에게 미래의 직업세계를 구체적으로 체험토록 하여 미래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 '10. 2. 2.	“제3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간합동협의회”에서 교과부·고용부·복지부 공동 “진로교육종합계획” 보고 * 5월을 ‘진로의 달’로 지정하여 체험위주로 운영하고, 교사용 진로 교육 매뉴얼에 한국잡월드 이용법 등을 포함
	- '11. 7.25.	한국잡월드 설립 근거가 포함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공포
	- '11.11. 3.	한국잡월드 법인 설립
	- '12. 5.15.	한국잡월드 개관(시범운영 5.1.~5.13.)
	- '12.10.29.	기타공공기관 지정
	- '18. 6. 7.	누적 방문객 500만명 돌파
	- '19.11.15.	누적 방문객 600만명 돌파
	- '20.11.11.	숙련기술체험관 개관
	- '22. 6.10.	만들기체험관(메카이브) 개관
	- '25.11.30.	누적입장객 935만명 돌파
	- '26. 1.20.	미래직업관 개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042	21,330	23,019	22,484	26,363

- 기타: 연간 약 100만 명의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직업진로프로그램 및 직업정보 등 제공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잡월드
- 사업 수혜자 : 어린이(만 4세이상) 및 청소년, 청년, 학부모, 교사 등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잡월드운영지원	출연	한국잡월드	23,363 백만원	수지차 보전 (66.3%)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의2
충남청소년직업체험관건립	보조	충청남도	3,000 백만원	정액보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한국잡월드(출연금): ('25) 21,484 → ('26) 23,363백만원(증 1,879백만원)

- (요구) 한국잡월드 운영을 위한 수치자 예산 요구
- (산출) 콘텐츠 개발, 전시체험관 운영 등 **사업비** 27,617백만원(증 893백만원)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등 **기관운영비** 2,689백만원(감 48백만원)
임직원 69명 **인건비** 4,918백만원(증 259백만원)
입장, 광고, 부대, 이월 **자체수입** 11,861백만원(감 775백만원)

■ 사업비 ('25) 26,724 → ('26) 27,617백만원(증 893백만원)

1-1 전시체험콘텐츠 개발: ('25) 2,168 → ('26) 1,468백만원(감 700백만원)

- 어린이청소년창의융합콘텐츠: ('25) 599 → ('26) 1,204백만원(증 605백만원)
- 디지털융합직업진로콘텐츠: ('25) 264 → ('26) 264백만원(전년동)
- 미래직업관 구축: ('25) 1,305백만원 → ('26) 0 (감 1,305백만원)

1-2 전시체험관 운영: ('25) 19,747 → ('26) 20,801백만원(증 1,054백만원)

- 전시체험관 운영용역: ('25) 17,071, → ('26) 17,425백만원(증 354백만원)
- 체험실 재료비: ('25) 947 → ('26) 947백만원(전년동)
- 체험실 유지관리비: ('25) 565 → ('26) 565백만원(전년동)
- 메카이브 운영: ('25) 1,164 → ('26) 1,164백만원(전년동)
- 미래관 운영: ('25) 0 → ('26) 700백만원(증 700백만원)

1-3 숙련기술체험관: ('25) 3,638 → ('26) 3,677백만원(증 39백만원)

- 콘텐츠 개발: ('25) 200 → ('26) 200백만원(전년동)
- 체험관 운영용역: ('25) 1,415 → ('26) 1,454백만원(증 39백만원)
- 재료비 및 유지관리비: ('25) 1,446 → ('26) 1,446백만원(전년동)
- 숙련스타트멘토링 : ('25) 577 → ('26) 577백만원(전년동)

1-4 정보화시스템: ('25) 551 → ('26) 551백만원(전년동)

- 인프라유지관리용역: ('25) 329 → ('26) 329백만원(전년동)
- 정보화 개발비(자산취득비 포함): ('25) 222 → ('26) 222백만원(전년동)

1-5 기타사업비 : ('25) 620 → ('26) 1,120백만원(증 500백만원)

- 마케팅 및 협찬유치: ('25) 135 → ('26) 135백만원(전년동)
- 고객만족 및 기관홍보: ('25) 229 → ('26) 229백만원(전년동)
- 시설안전관리: ('25) 256 → ('26) 256백만원(전년동)
- 노후시설교체: ('25) 0 → ('26) 500백만원(증 500백만원)

■ (기관운영비) 제세공과금, 유지관리용역 등 지속 사업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고정성 비용 등 ('25) 2,737 → ('26) 2,689백만원(감 48백만원)

■ (인건비) 임직원 인건비(69명): ('25) 4,659 → ('26) 4,918백만원(증 259백만원)

- 임직원 69명('25~'26년 증원분 및 공통처우개선): ('25) 4,659 → ('26) 4,918백만원(증 259백만원)

■ (자체수입) 입장·광고·부대·이월 수입: ('25) 12,636 → ('26) 11,861백만원(감 775백만원)

- 입장수입: ('25) 6,076백만원 → ('26) 5,376백만원(감 700백만원)
- 광고수입: ('25) 2,226백만원 → ('26) 1,941백만원(감 285백만원)
- 부대수입: ('25) 1,593백만원 → ('26) 2,237백만원(증 644백만원)
- 이월수입: ('25) 2,741백만원 → ('26) 2,307백만원(감 434백만원)
- ※ 최근3년평균잉여금('22~'24)+(전기 실결산잉여금-전기가결산잉여금('21~'23 평균))

□ 충남 청소년직업체험관 건립: ('25) 1,000 → ('26) 3,000백만원(증 2,000백만원)

- ('25년 추진실적) 국비 교부, 기획 용역 완료
- (변동내역)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 비용 3,000백만원
 - 기본설시설계비 2,850백만원, 건설사업관리용역 150백만원
- (변동요인) '26년 실시설계(토목·건축) 및 운영 세부 설계비 반영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 백만원)

2025년		2026년	
□ 한국잡월드운영(정부출연=총지출-자체수입)	21,484	□ 한국잡월드운영(정부출연=총지출-자체수입)	23,363
<총지출>	34,120	<총지출>	35,224
1. 사업비	26,724	1. 사업비	27,617
1-1. 전시체험 콘텐츠 개발	2,168	1-1. 전시체험 콘텐츠 개발	1,468
가. 비대면 진로콘텐츠 운영	264	가. 디지털융합 직업진로콘텐츠 운영	264
나. 전시체험관 콘텐츠 개발	599	나. 전시체험관 콘텐츠 개발	1,204
다. 미래직업관 구축	1,305	다. 미래직업관 구축	-
1-2. 전시체험관 운영	19,747	1-2. 전시체험관 운영	20,801
가. 전시체험관운영(자회사340명)	17,071	가. 전시체험관운영(자회사340명)	17,425
나. 재료비 : 연간 체험실 재료비	947	나. 재료비 : 연간 체험실 재료비	947
다. 유지관리비 : 체험장비 유지관리비	565	다. 유지관리비 : 체험장비 유지관리비	565
라. 메카이브 운영	1,164	라. 메카이브 운영	1,164
		마. 미래관 운영	700
1-3. 숙련기술체험관	3,638	1-3. 숙련기술체험관	3,677
가. 콘텐츠개발비 : 숙련 스타트멘토링 등	200	가. 콘텐츠개발비 : 숙련 스타트멘토링 등	200
나. 숙련기술 멘토링	577	나. 숙련기술 멘토링	577
다. 운영비	1,446	다. 운영비	1,446
라. 자회사 운영대행 용역(30명)	1,415	라. 자회사 운영대행 용역(30명)	1,454
1-4. 정보화시스템	551	1-4. 정보화시스템	551
가. 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329	가. 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329
나. 개발비(자산취득비 포함)	222	나. 개발비(자산취득비 포함)	222
1-5. 기타 사업	620	1-5. 기타 사업	1,120
가. 마케팅협찬유치(마케팅, 협찬유치, 고객편의시설, 기획공연, 문화행사)	135	가. 마케팅협찬유치(마케팅, 협찬유치, 고객편의시설, 기획공연, 문화행사)	135
나. 고객만족 및 기관홍보(기관홍보, 역명부기 등)	229	나. 고객만족 및 기관홍보(기관홍보, 역명부기 등)	229
다. 시설안전관리(방화스크린, 시설유자보수 등)	256	다. 시설안전관리(방화스크린, 시설유자보수 등)	256
		라. 노후시설 교체사업	500
2. 기관운영비(제세공과, 유지관리, 기타운영)	2,737	2. 기관운영비(제세공과, 유지관리, 기타운영) 공통감액 △137, 공공요금 및 업무용SW +89	2,689
3. 인건비 : 4,659	4,659	3. 인건비 : 4,918	4,918
<자체수입>	12,636	<자체수입>	11,861
1. 입장수입 : 체험관 입장료	6,076	1. 입장수입 : 체험관 입장료(수입현실화)	5,376
2. 광고수입 : 체험관 협찬광고 수입	2,226	2. 광고수입 : 체험관 협찬광고 수입(수입현실화)	1,941
3. 부대수입 : 공연, 대관, 주차수입 등	1,593	3. 부대수입 : 공연, 대관, 주차수입 등(수입현실화)	2,237
4. 이월수입 : 최근3년평균잉여금+전전기이월금	2,741	4. 이월수입 : 최근3년평균잉여금+전전기이월금	2,307
충남 청소년직업체험관	1,000	충남 청소년직업체험관	3,000
설계비	1,000	실시설계(토목 건축) 및 운영 세부 설계비	3,00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 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17자 포함) / (t-2)년 청년공제 가 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 보험자 전수조사/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고객중심 미래직업 콘텐츠 45건, 비대면 콘텐츠 12건 개발 - 직업진로정보제공 신규 웹진 창간 및 운영 - 메이커스페이스 개관('22.6.10) - 명장사관학교 운영 - 개관10주년 기념 제1회 직업체험 심포지움 개최 ('22.5.3)
2023	- 방문객 700만명 돌파('23.5.15) - 숙련기술 스타트멘토링 프로그램 개발·운영(499회, 12,942명) - 인턴IN메타, 메타버스 청년체험 프로그램 개발 - 제5대 이병균 이사장 취임 ('23.7.31)
2024	- '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 등급(91.1점) 달성 - 미래직업관 구축 추진 - 입장객 780만 명 돌파('24.6.30)
2025	- '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 등급(94.4점) 달성 - '24년 고용부 산하공공기관 경영평가 'B' 등급 달성 - '24년 기재부 주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92.4점) 등급 달성 - '24년 귀속 경영평가 'B등급' 달성(7개 기관 중 3위) - 미래직업관 1차 오픈(5월 1일자) - 입장객 935만 명 돌파('25.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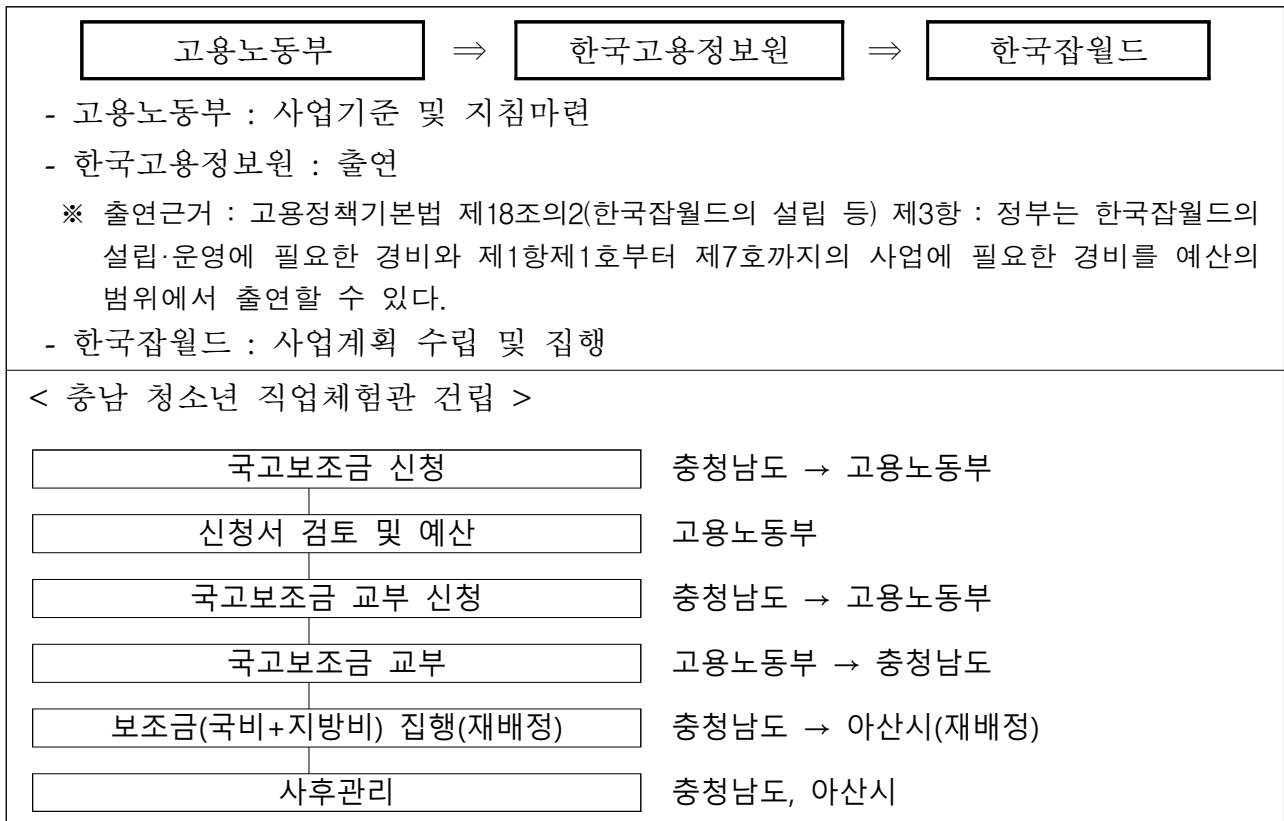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과학기술 발전 및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직업생태계에 대응하여, 청소년·학부모 등 고객 특성을 고려한 창의융복합형 미래 직업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직업·진로 교육 및 정보 제공 체계를 확대
- 혁신적 미래 유망기술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미래직업관 구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안정적인 운영 체계 확립(미래직업관 '26년 1월 개관, 16종 미래직업 체험 가능)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 계획 수립 및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 수혜 대상자 확대 및 지역 연계 사회공헌 활동 확대 방안 모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결위, 22 회계연도 결산) 자체수입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조치완료
 - (환노위, 23 회계연도 결산)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 사고이월 최소화
→ 조치완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24): 우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042	-	20,042	20,042	20,042	100	100	-	-
2023	21,330	-	21,330	21,330	21,330	100	100	-	-
2024	23,019	-	23,019	23,019	23,019	100	100	-	-
2025	22,484	-	22,484	22,484	22,484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협찬사 유치 등 자체수입 확대방안 모색(환노위)
2023	- 사고이월을 통한 예산집행을 최소화(환노위)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14) 해외취업지원(1051-304)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51	304
명칭	고용창출 및 훈련	청년진로 및 취업지원	해외취업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해외취업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운영 (해외취업촉진인프라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사업시행주체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해외취업지원	55,535	47,116	47,116	44,128	44,128	△2,988	△6.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정)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57,540	57,540	55,535		2,005	47,116	47,116	47,109		7	44,128
· 해외취업지원	49,132	49,132	47,132		2,000	39,288	39,288	39,288		-	36,583
· 해외취업운영	8,408	8,408	8,403		5	7,828	7,828	7,821		7	7,5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해외취업지원
- (내역사업명) 해외취업지원
 - (K-Move스쿨)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 생활문화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연수) 과정 제공 후 해외취업 연계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 (국내재취업지원) 해외취업 후 국내 복귀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세미나 및 멘토단 운영, 이력서 첨삭 및 모의 면접 등 1:1컨설팅, 취업 박람회·만남의 장 등 운영
- (내역사업명) 해외취업운영
 - (해외통합정보망) 해외취업 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청년들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운영·관리(월드잡플러스 사이트)
 - (국내해외취업센터 운영) 온라인 상담센터 구축,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국가별 트렌드 및 유망직종 등을 반영한 해외취업 컨설팅 실시
 - (해외취업촉진인프라지원)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우수한 해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외 K-Move센터 운영, 글로벌취업상담회 등)
 - (국내재취업지원) 해외취업 후 국내 복귀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세미나 및 멘토단 운영, 이력서 첨삭 및 모의 면접 등 1:1컨설팅, 취업 박람회·만남의 장 등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① 정부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 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을 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사업)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해외취업지원 등 고용촉진사업

-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업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8.3월 “실업문제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공공해외 취업업무 재개 추진
 - '99.10월 공공해외 취업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담당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 시달(국조실)
 - '06.3.22 해외취업촉진을 위하여 해외취업연수사업 확대키로 결정(제4차 일자리 만들기 당정공동특위)
 - '08.3월 '글로벌청년리더 양성'사업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
 - '08.4.29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종합계획 확정
 - '10.6.8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실무협의회)
 - '11.1.11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해외취업활성화 정부·민간 합동회의)
 - '12.2.24 중동지역 전문인력 진출 활성화 방안(제11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 '13.3.29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추진(국정과제)
 - '13.10.24 'K-Move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대외경제장관회의)
 - '14.7.23. 교육부와 '세계로 프로젝트' 통합 MOU 체결('15년~)
 - '14.11.21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발표(대외경제장관회의)
 - '15.11.27 '청년 해외취업 촉진 대책' 발표(대외경제장관회의)
 - '16.12.14 '청년 해외취업 성과 및 계획'(경제관계장관회의)
 - '18.3.15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방안' 발표(청년일자리대책)
 - '22.3월 청년 취업애로계층 참여 확대를 위한 “대학연합과정”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5,074백만원	46,786백만원	57,540백만원	47,116백만원	44,128백만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사업 수혜자 :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15세~34세 미만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외취업지원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40,211	1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해외취업촉진 인프라지원	보조	대한무역 투자진흥 공사	3,878	1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3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해외취업지원] 36,583백만원

① K-Move스쿨: ('25) 21,420 → ('26) 24,273백만원 (2,853백만원, 15.4%)

- (편성) 해외취업연수(K-Move 스쿨) 지원인원 2,700명, 연수숙박비* 1,385명

* 연수기관과 소재지를 달리하여 참여하는 연수생의 경우 생계 안정을 위해 숙박비 일부 지원(월 20만원)

** 출연기관의 반복적 이월을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5년 후지원금을 '26년 편성

- (내역) 24,273백만원 = ['25년 후지원①] 5,282백만원 + ['26년 선지원②] 18,991백만원

①['25년 후지원] (트랙Ⅰ 2,000명*8백만원*0.3, 트랙Ⅱ 500명*13.5백만원*0.3,

대학연합과정 200명*12백만원*0.3)*0.7=5,282백만원

*취업률·수료율에 따른 성과평가 반영 지급비율

⊕

②['26년 선지원금] 트랙Ⅰ 2,000명*8백만원*0.7, 트랙Ⅱ 500명*13.5백만원*0.7,

신청해진 200명*12백만원*0.7, 연수생숙박비 1,385명*1백만원=18,991백만원

※ 연수생 숙박비 지원: (지원인원*지급비율57%*수료율90%)*20만원*5개월=1,386만원

② 해외취업정착지원금: ('25) 16,868 → ('26) 11,310백만원 (△5,558백만원, △32.9%)

- (편성) 지원인원 2,000명(취업자 1인당 500만원 지원)

- (내역) 11,310백만원(㉗+㉘)

· ㉗ '25년 취업자(5,460백만원) + ㉘ '26년 취업자(5,850백만원)

<정착지원금 지급 금액>

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차 지원금
500만원	250만원	100만원	150만원

③ 국내재취업지원: ('25) 1,000 → ('26) 1,000백만원 (전년 동)

- (편성) 국내 복귀자 대상 국내 재취업 지원을 위한 세미나, 1:1컨설팅, 취업 박람회 및 멘토단 운영 등

- (내역) 1,000백만원(프로그램 개발·운영 650백만원, 글로벌 인재 매칭 지원 200백만원, 국내복귀자관리 등 운영 150백만원)

[해외취업운영] 7,545백만원

① 해외통합정보망: ('25) 911 → ('26) 911백만원 (전년 동)

- (편성)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필수솔루션 구입, 콘텐츠 관리
- (내역) 911백만원(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704백만원, 필수솔루션 구입 86백만원, 콘텐츠 관리 121백만원)

② 국내해외취업지원: ('25) 994 → ('26) 994백만원 (전년 동)

- (편성) 국내해외취업센터(서울,부산) 운영, 사업안내 등 정보제공
- (내역) 994백만원(국내해외취업센터 운영 584백만원, 사업안내 등 정보제공 410백만원)

③ 해외취업촉진인프라지원: ('25) 4,560 → ('26) 4,278백만원 (△282백만원, △6.2%)

- (편성) 해외 K-Move 센터 운영 및 글로벌취업상담회, 해외현지인재채용설명회 및 재외공관 해외취업지원 협업사업 등
- (내역) 4,278백만원(해외 K-Move 센터 운영 3,528백만원, 글로벌취업상담회 350백만원, 해외현지인재채용설명회 200백만원, 재외공관 해외취업지원 협업사업 200백만원)

④ 사업운영비: ('25) 1,363 → ('26) 1,362백만원 (△1백만원, △0.07%)

- (편성) 해외취업지원사업 운영 등
- (내역) 1,362백만원(고용노동부 운영비 39백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운영비 1,323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7,116 백만원	[해외취업지원]	44,128 백만원	[해외취업지원]
	① K-Move스쿨 : 21,420백만원		① K-Move스쿨 : 24,273백만원
	['25년 선지원]		['25년 후지원] 5,282백만원
	가. 트랙 I: 11,200백만원(2,000명*5.6백만원)		가. 트랙 I: 3,360백만원(2,000명*1.68백만원)
	나. 트랙II: 4,725백만원(500명*9.45백만원)		나. 트랙II: 1,418백만원(500명*2.835백만원)
	다. 대학연합: 1,680백만원(200명*8.4백만원)		다. 대학연합: 504백만원(200명*2.52백만원)
	라. 연수장려금: 2,430백만원(2,430명*20만원*5개월)		['26년 선지원] 18,991백만원
	마. 연수숙박비: 1,385백만원(1,385명)		가. 트랙 I: 11,200백만원(2,000명*5.6백만원)
			나. 트랙II: 4,725백만원(500명*9.45백만원)
			다. 신청해진: 1,680백만원(200명*8.4백만원)
			라. 연수숙박비: 1,386백만원(1,385명)
	② 해외취업정착지원금: 16,868백만원		② 해외취업정착지원금: 11,310백만원
	가. '24년 취업자: 5,460백만원		가. '25년 취업자: 5,460백만원
	나. '25년 취업자: 11,408백만원		나. '26년 취업자: 5,850백만원
	③ 국내재취업지원 : 1,000백만원		③ 국내재취업지원 : 1,000백만원
	가. 프로그램 개발·운영: 650백만원		가. 프로그램 개발·운영: 650백만원
	나. 글로벌 인재 매칭 지원: 200백만원		나. 글로벌 인재 매칭 지원: 200백만원
	다. 국내복귀자관리 등 운영: 150백만원		다. 국내복귀자관리 등 운영: 150백만원
	[해외취업운영]		[해외취업운영]
	① 해외통합정보망: 911백만원		① 해외통합정보망: 911백만원
	가.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704백만원		가.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704백만원
	나. 필수솔루션 구입: 86백만원		나. 필수솔루션 구입: 86백만원
	다. 콘텐츠 관리: 121백만원		다. 콘텐츠 관리: 121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② 국내해외취업지원: 994백만원 가. 국내해외취업센터(서울, 부산) 운영: 584백만원 나. 사업안내 등 정보제공: 410백만원 ③ 해외취업촉진인프라지원: 4,560백만원 가. 해외 K-Move 센터 운영: 3,800백만원(16개소) 나. 글로벌취업상담회: 360백만원 다. 해외현지인재채용설명회: 200백만원 라. 재외공관 해외취업지원 협업사업: 200백만원 ④ 사업운영비: 1,363백만원 가. 고용노동부 운영비: 40백만원 - 일반수용비: 9백만원 - 국내업무여비: 5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18백만원 - 사업추진비: 8백만원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운영비: 1,323백만원		② 국내해외취업지원: 994백만원 가. 국내해외취업센터(서울, 부산) 운영: 584백만원 나. 사업안내 등 정보제공: 410백만원 ③ 해외취업촉진인프라지원: 4,278백만원 가. 해외 K-Move 센터 운영: 3,528백만원(28개소) 나. 글로벌취업상담회: 350백만원 다. 해외현지인재채용설명회: 200백만원 라. 재외공관 해외취업지원 협업사업: 200백만원 ④ 사업운영비: 1,362백만원 가. 고용노동부 운영비: 39백만원 - 일반수용비: 9백만원 - 국내업무여비: 5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17백만원 - 사업추진비: 8백만원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운영비: 1,32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 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15~29세) / (t-2)년 청년공제 가 입인원(철퇴·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 보험자 전수조사/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해외취업 5,024명(연수 1,700명, 알선취업 등 3,324명)
2023	- 해외취업 5,463명(연수 1,707명, 알선취업 등 3,756명)
2024	- 해외취업 5,720명(연수 1,605명, 알선취업 등 4,115명)
2025	- 해외취업 6,607명(연수 1,599명, 알선취업 등 5,00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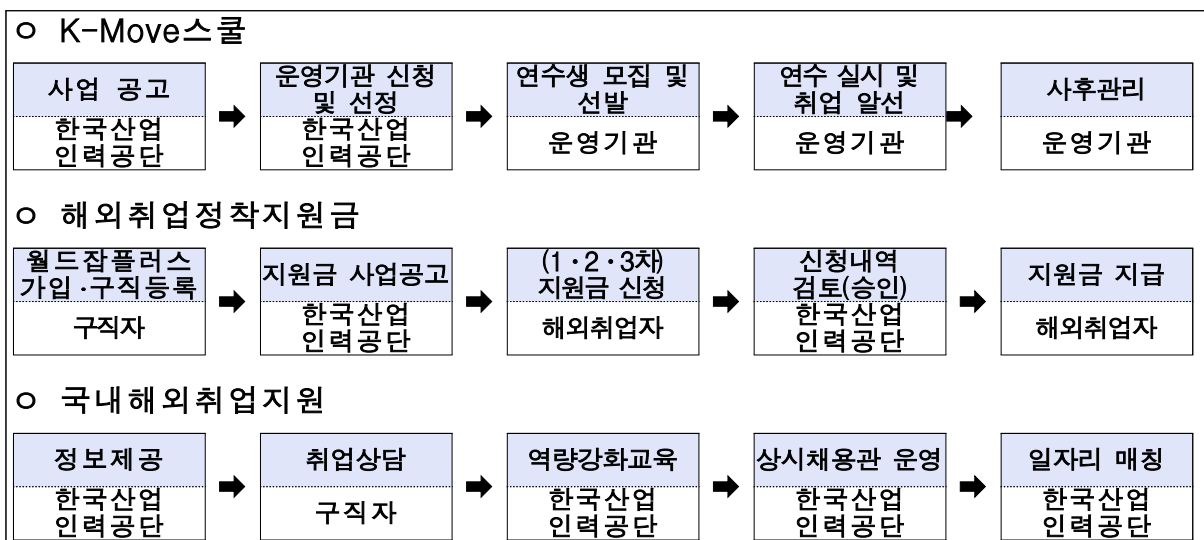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코로나19 종식 이후, 청년층의 해외진출 수요 확대 및 활성화에 따른 적극적인 해외 취업 지원(글로벌 인재 육성체계 구축 및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등)
- 해외 구인처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 인재로 양성하는 K-Move스쿨 (2,700명) 지속 추진
 - * 연수숙박비('26년 1,385명) 지원으로 지역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 정착지원금('26년 2,000명)을 통해 청년의 성공적인 현지 정착 및 근속 지원
- 국내재취업지원('26년 900명)을 통해 국내 복귀자 등 지원 및 사후관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년 환노위 결산) 민간해외취업알선사업은 다양한 국가로 취업 알선하는 기관 양성 필요 → 알선 대상 국가가 미국에 편중되고 사중손실 우려가 있어 '23년 사업 종료
 - ('23년 환노위 결산) K-Move스쿨 운영기관의 취업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24년 이·전직 현황 보고 의무화 등 개선 완료
 - ('23년·'24년 예결위 결산) K-Move스쿨 사업은 실집행 단계에서 연례적인 이월 발생 → '25년 예산 편성시 선지원금(전체 예산의 70%) 예산만 편성, 후지원금(전체 예산의 30%) 예산은 실집행률을 반영하여 익년도 예산으로 편성
 - (24년 예결위 결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고액연봉자 지원 문제 개선 필요 → '26년 지원 요건 개선 완료(가구소득 8분위 이하 → 3분위 이하)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24): 개선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5,074	-	55,074	55,074	55,057	99.9	99.9	-	17
2023	46,786	-	46,786	46,786	46,742	99.9	99.9	-	44
2024	57,540	-	57,540	57,540	55,535	96.5	96.5	-	2,005
2025	47,116	-	47,116	47,116	47,109	99.9	99.9	-	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15)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105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51	305
명칭	고용창출	청년진로 및 취업지원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청년일경험 지원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위탁기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위탁기관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운영비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236,772	291,779	291,779	284,752	284,752	△7,027	△2.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4,113	245,052	236,772	1,498	6,781	291,779	293,277	288,829	1,110	3,338	284,752
· 청년일경험지원	171,820	172,759	170,105	1,498	1,156	214,090	215,588	212,245	1,110	2,233	207,610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690	690	690	-	-	800	800	800	-	-	800
· 청년도전지원	70,933	70,933	65,360	-	5,922	71,653	71,653	71,124	-	529	75,783
· 운영비 청년고용정책 통합 홍보	670	670	617	-	53	636	636	578	-	58	559
· 직장적응지원	-	-	-	-	-	4,600	4,600	4,082	-	518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청년일경험지원)** 수시·경력직 채용경향 심화에 대응하여 직무경험이 필요한 미취업 청년에게 민·관협업 기반으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의 직무 탐색 및 진로 설정, 직무역량 강화 지원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을 위해 청년 고용 실적, 기업 경쟁력 등을 토대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홍보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역 내 구직단념 청년, 미취업 청년 등의 자신감 회복,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쉬었음 전환 방지
- **(운영비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청년 고용 정책 대상이 다양화되고 정책이 점차 세분화됨에 따라 유관 정책·기관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홍보역량을 집중하여 청년고용에 대한 정책의 수용도 및 효과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2조,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12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2. 공공부문과 민간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그 사업의 위탁
 4.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인증
- ② 직업안정기관과 민간기관은 고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시설·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제공) ① 정부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① 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학 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① 정부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이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6년: 매년 강소기업 등으로부터 신청받아 결격요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 등을 반영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 * '24년 선정규모 축소(1,000여개소→500여개소) 및 유효기간 확대(1년→3년)
- '17년: '06년부터 추진된 대학 취업·진로 지원사업과 중소기업탐방·청년친화강소기업 등 청년층 일경험 사업 등이 '17년부터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에 포함되어 추진
 - * '15.10월 「청년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15.7월)」 일환으로 대학일자리센터 도입(상명대 등 21개교), '17년 '강소기업탐방', '중소기업 취업연수지원'을 통합하여 '중소기업탐방' 도입
- '22년: 청년친화형기업 ESG 지원과 공정채용 인프라구축 사업 포함
 - * '19.11월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정채용 민간확산을 위한 지원 추진(컨설팅, 모델 개발, 분위기 조성 등)
 - *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능력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 선정 → 공정채용 법질서 확립 및 민간 확산 가속화 필요
- '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 예산'이 '청년센터 운영'으로 이관되고 '청년도전지원사업(21년 추경을 통한 신규 추진)' 이관,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이 새로운 내역사업인 '청년일경험지원'에 포함
 - *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발표 및 추경 확정('21.3), 청년일자리 정책 방향 발표('23.9)
- '23년: 청년도전지원 세부사업 변경(청년센터→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유입이 확대('21년, +5만), 비경제활동 사유 중 '쉬었음'이 증가하는 추세('24년 이후 쉬었음 청년 40만 명대 지속)
 -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경제 성장잠재력 저하, 미래 핵심 근로계층의 부양 부담 가중 우려
 - 이에, 구직 장기화, 경제활동 포기 전에 개입, 구직단념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복지 집중 지원 필요 → '21년도 시범사업으로 도입
- '24년: '청년 친화형기업 ESG지원사업'을 '청년일경험지원사업'으로 통합, 청년성장프로젝트 신설
- '25년: 고용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제도와 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통합하여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으로 개편(공동선정)
 -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을 토대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요건 등 추가·보완
- '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내 직장적응지원 사업 별도 내역 분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6,571	126,293	244,113	291,779	284,75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출연 등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민간운영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만 15세 ~ 34세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청년일경험 지원	보조, 출연	민간운영기관, 한국산업인력 공단, 한국 고용정보원	200,965 백만원	50-100%	사업 시행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청년도전 지원사업	보조	지자체 보조	73,990 백만원	80%	사업 시행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령(별표 1)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청년일경험지원 : ('25) 214,090 → ('26) 207,610백만원, △6,480백만원(△3.0%)

- (편성) 청년의 일경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의 직무 탐색 및 진로 설정, 직무역량 강화 지원
- (내역)
 - (프로그램 지원) 198,265백만원, 43,000명
 - 프로젝트형 27,000백만원(2,700천원×10,000명)
 - 인턴형(국내) 131,100백만원(5,700천원×23,000명)
 - 인턴형(해외) 5,165백만원(10,330천원×500명)
 - ESG지원형 35,000백만원(35개*1,000백만원, 9,500명)
 - (용역비) 6,025백만원
 - * 통합지원센터 운영,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 권역별 지원센터 운영, 홍보 등
 - (플랫폼 구축·운영) 2,700백만원
 - (사업운영비) 620백만원

②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 ('25) 800 → ('26) 800백만원, (0%)

- (편성) 중기부와 함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300여개소를 공동 선정하고, 인지도 제고 등 지원
- (내역) 선정·지원 위탁 800백만원

③ 청년도전지원사업: ('25) 71,653백만원 → ('26) 75,783백만원, +4,130백만원(+5.8%)

- 도전프로그램 58,633백만원
 - (편성) 구직단념 청년 등의 노동시장 진입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제공
 - (내역) 단기프로그램 3,900백만원(3,000명) + 중기프로그램 28,015백만원(6,500명) + 장기프로그램 26,075백만원(3,500명) + 운영비 643백만원(수용비 57, 공공요금및제세 30, 일반용역비 500, 여비 28, 사업추진비 28)
- 성장프로그램 17,150백만원
 - (편성) 쉬었음 전환, 장기화 예방을 위해 미취업 청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수용비 130, 일반용역비 1,150, 여비 10, 사업추진비 10		- 수용비 100, 공공요금및제세 30, 일반용역비 1,000, 여비 10, 사업추진비 10
④	운영비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 636백만원 - 일반수용비 94백만원, 일반용역비 500백만원, 국내여비 9백만원, 사업추진비 6백만원, 연구용역비 27백만원	④	운영비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 559백만원 - 일반수용비 94백만원, 일반용역비 450백만원, 국내여비 9백만원, 사업추진비 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 적 및 변동 추세를 중 합적으로 고려하 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 인구 수 / 만15~29 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1자 포 함)/(t-2)년 청년공 제 가입인원(철 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 피보험자 전수조 사/중소벤처 기업 진흥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중소기업청년직무체험프로그램) 11,020명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1,000개소 선정 - (청년친화형 기업ESG 지원) 20개 프로그램 지원, 2,943명 참여 - (공정채용인프라구축) 채용모델 개발·고도화 10개 분야 개발 완료, 공공 및 민간기업 담당자 등 능력중심채용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 (청년도전지원) 28개 지자체, 5,795명 청년 지원
2023	- (청년일경험지원) 20,836명 실시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533개소 선정 - (청년친화형기업ESG지원) 25개 프로그램 지원, 7,595명 참여 - (공정채용인프라구축) 공정채용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및 151개 컨설팅 실시 완료, 채용모델 개발·고도화 20개 분야 완료 - (공정채용전산시스템운영) ISP 수립 완료 - (청년도전지원) 49개 지자체, 7,147명 청년 지원
2024	- (청년일경험지원) 50,551명 실시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280개소 선정, '24년 9월 고용부-중기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개편 - (청년도전지원) (도전) 72개 지자체, 9,811명 청년 지원 (성장) 46개 지자체, 청년카페 63개소 운영, 청년 65,841명 지원
2025	- (청년일경험지원) '25.12월말 기준 61,344명 실시 (사업기간: ~'26.2월)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224개소 선정 - (청년도전지원) (도전) 86개 지자체, 12,132명 청년 지원 (성장) 54개 지자체, 청년카페 88개소 운영, 청년 52,969명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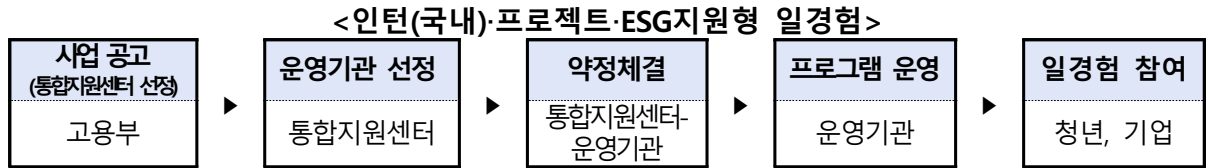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층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일경험에 대한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 일경험을 활성화하여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 도모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홍보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도모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와 협업하여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취업역량강화 등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실업 초기 청년 조기개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니트(NEET) 상태로 전환되지 않도록 지원
- **(운영비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청년고용정책으로 통합 브랜드화, 청년 특성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홍보, 공익광고 등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취업의욕 고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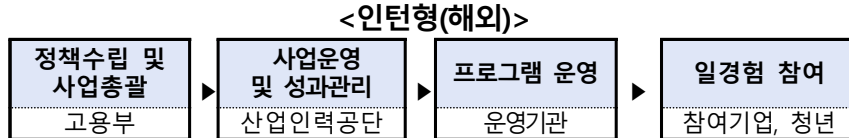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청년일경험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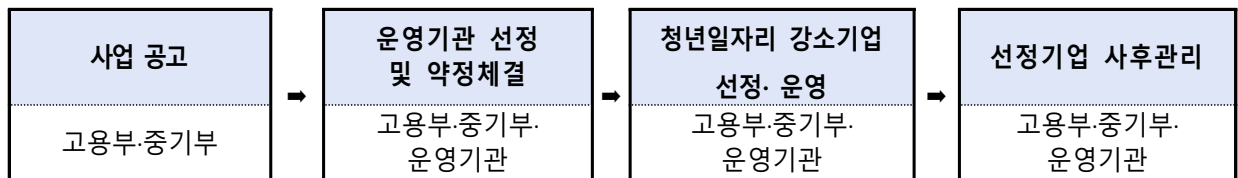


- 정책수립 및 사업총괄(고용부) → 운영기관 선정 및 상담·컨설팅 지원 등 운영총괄(통합지원센터) → 프로그램 기획·관리, 청년·기업 지원금 지급(운영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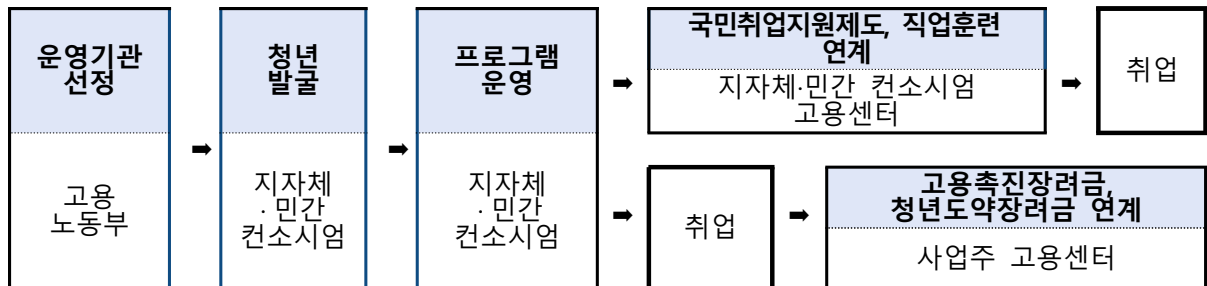


- <인턴(해외)> 정책수립 및 사업총괄(고용부) →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산업인력공단) → 프로그램 운영(운영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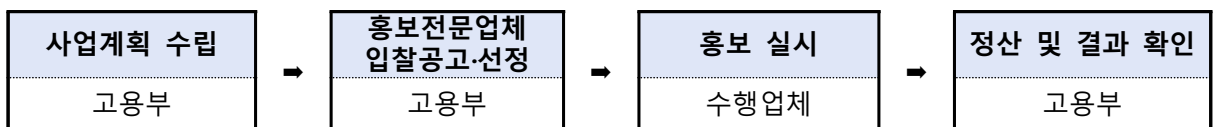
②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③ 청년도전지원사업



④ 운영비(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24)
 : (청년일경험) 양호, (청년도전지원) 양호, (청년성장프로젝트) 감액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6,571	-	56,571	56,571	56,353	99.6	99.6	-	218
2023	126,293	-	126,293	126,293	117,280	93.0	93.0	939	8,074
2024	244,113	-	244,113	245,052	236,772	96.9	96.6	1,498	6,781
2025	291,779	-	291,779	293,277	288,829	98.9	98.5	1,110	3,33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액 218백만원은 집행잔액
2023	- 이월액 939백만원은 계약 잔금, 불용액 8,074백만원은 집행잔액
2024	- 청년일경험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전산용역) 용역비 집행을 위한 전용 3,340백만원 - 이월액 1,498백만원은 계약 잔금, 불용액 6,781백만원은 집행잔액
2025	- 불용액 3,338백만원은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16)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105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51	306
명칭	고용창출	청년진로 및 취업지원(일반)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소관부처	실·국·과(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한국고용정보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5,378	4,559	4,559	4,327	4,327	△ 232	△ 5.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5,378	5,378	5,378	-	-	4,559	4,559	4,559	-	-	4,327
· 직업정보제공	1,027	1,027	1,027	-	-	770	770	770	-	-	740
· 직업지도	4,351	4,351	4,351	-	-	3,789	3,789	3,789	-	-	2,380
· 청년고용지원	-	-	-	-	-	-	-	-	-	-	1,20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직업정보제공)
 - 청소년 및 성인들의 진로 및 경력설계, 진로상담, 구인·구직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직업정보(한국직업정보,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사전 등) 개발·보급
 - 디지털 기술혁신 및 생태환경 변화, 경제사회 구조 변동에 따른 미래직업세계 연구, 청년층·신중년 등 수요자 맞춤형 직업정보 개발 및 효율적 보급
 - VR(가상직업체험) 및 신직업 동영상을 통한 대국민 직업정보 제공 강화, 변화하는 직업세계 이해를 도모하고 일자리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합리적인 직업선택 지원
- (직업지도)
 - 직업심리검사를 개발·보급하여, 청소년 및 성인 구직자의 진로인식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진로선택을 지원
 - 생애주기별 진로·경력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 생애 단계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전환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에 기여
 - 동영상, e-learning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를 개발·보급하여 직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성, 능력에 따른 직업 선택의 용이성 제고
 - 세미나, 포럼, 웹진 등을 수단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진로지도 콘텐츠 보급망 확대 및 고용서비스 전반의 인프라 강화에 기여
- (청년고용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및 참여자 유형 개선안 도출, 운영기관 설문조사 및 FGI 실시, 성과관리 도구 관련 AHP 조사 및 관리도구 고도화 등 청년정책 실행 지원
 - 청년도약장려금의 고용성과 분석 및 청년고용의무제 이행실태 시계열 분석 등 청년고용관련 정부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발전 방안 연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지 원 근 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1항 제1호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고용·직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과 구인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직·구인 정보, 산업별·지역별 고용동향, 노동시장 정보,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 및 그 밖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고용·직업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2.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고용안정정보망,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 운영 4.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23조(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가 그 적성·능력·경험 등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자 개개인의 적성·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구직자에게 적합하도록 체계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적합한 근로자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구직자 정보의 제공, 상담·조언, 그 밖에 구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추 진 경 위	- '79 : 효율적인 취업알선, 직업지도 및 직업연구를 위해 국립중앙직업안정소 설립 - '83 : 직업세계 전달 및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선택 지원 사업 시작 - '95 : 고용보험전산망관리 등 기능변화에 따라 중앙고용정보관리소로 개편 - '00 : 인적자원개발회의('00.9월)에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채택된『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방안』의 세부사업 - '01 : 중앙고용정보관리소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여 고용정보 운영사업 지정 - '05 : '05년까지 일반회계였으나, '06년도부터는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성 - '06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독립·출연기관화→한국고용정보원으로 출범 - '13 : "新직업, 新산업 발굴 육성"으로 국내외 직업 비교 분석을 통한 신직업 발굴 - '15 : 제2차 정부육성 신직업 발표(12.14)

- '16 : 정부 청년고용대책('16.4) 수립 및 실행 지원
- '16 :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16.4월)
- '16 : 장년고용서비스 강화방안('16.10월)
- '16 : 고용서비스 인력 역량강화를 주요 업무로 지정
- '17 : 41개 대학일자리센터 평가 실시('17.4월), '청년고용정책참여단' 3, 4기 운영
- '18 :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18.3월)
- '19 : 서울시 청년허브와 MOU 체결 및 청년정책포럼 개최('19.12)
- '20 : 관계부처 합동 「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20.08.13)
- '20 : 청년기본법 제정('20.2),
- '21: 「청년고용활성화방안」 발표('21.3), 「청년특별대책」 발표('21.8)
- '22: 새 정부 국정과제(90-2) 청년취업지원 혁신) 관련 대학생 취업·경력설계 지원
- '23: 국정과제(90-2) 청년취업지원 혁신) 관련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지원 등
- '24: 신성장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가능 직업 발굴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0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811	6,082	5,378	4,559	4,32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출연
- 사업시행주체: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구직자, 청소년, 실업자, 구인업체, 진로지도 담당자 등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직업정보제공	출연	한국고용 정보원	740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및 제40조(위탁)
직업지도	출연	한국고용 정보원	2,380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및 제40조(위탁)
청년고용지원	출연	한국고용 정보원	1,207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및 제40조(위탁)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직업정보제공 : ('25) 770 → ('26) 740백만원(△30)

(1-1) 직업정보 조사 및 직업연구 ('25) 740 → ('26) 740백만원(전년동)

- (편성) 변화하는 직업환경을 반영한 신뢰성 높은 직업정보 제공과 경력개발 중심의 디지털기반 고용서비스 제공
(내역) 한국직업정보 재직자조사 및 활용가이드 개정 (500백만원)
한국직업사전 발간 및 직종별 직무분석 (60백만원)
일자리 전망 연구 및 직업정보 개발 (120백만원)
고용직업분류 및 취업알선직업분류 관리 (20백만원)
미래직업세계 변화 연구 (40백만원)

(1-2) 신직업·미래직업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5) 30 → ('26) 순감(청년고용지원' 내역사업으로 이관)

(2) 직업지도 : ('25) 2,612 → ('26) 2,380백만원(△232)

(2-1) 직업심리검사 개발·보급: ('25) 932백만원 → ('26) 932백만원 (전년동)

- (요구) 직업심리검사 온·오프라인 보급 등을 통한 효과적인 진로 및 경력 개발 지원
(산출) 직업심리검사 개정(100백만원), 온라인검사 개정(146백만원), 직업심리검사 보급(686백만원)

(2-2) 생애주기별 진로·경력 콘텐츠 개발: ('25) 790백만원 → ('26) 558백만원 (△232)

- (요구) 전생애에 구직자 대상 취업역량 및 구직 의욕 향상 지원
(산출) 맞춤형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정(558백만원, 사업개편 및 효율화 △232)

(2-3)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운영 및 콘텐츠 개발: ('25) 578백만원 → ('26) 578백만원 (전년동)

- (요구) 맞춤형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 및 안정적인 학습 서비스 제공
(산출)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운영 및 콘텐츠 개발(578백만원)

(2-4) 진로지도 활성화 민관 협력체제 구축: ('25) 312백만원 → ('26) 312백만원 (전년동)

- (요구) 직업진로지도 역량 강화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진로·경력개발 콘텐츠 확산
(산출) 직업진로지도 전문가 양성(232백만원), 진로·경력개발 협력강화 및 홍보(80백만원)

(3) 청년고용지원 : ('25) 1,177 → ('26) 1,207백만원(+30)

(3-1) 진로·경력개발 자료 제작 : ('25) 730백만원 → ('26) 73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공별 경력가이드 제공, 고용센터 진로·경력개발 매뉴얼 자료 개발
(산출) 전공별 경력가이드(10종) 개발(600백만원), 진로·경력개발 자료 제작 및 보급(130백만원)

(3-2) 청년 진로·경력개발 현장 연구 : ('25) 270백만원 → ('26) 27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채용 동향에 따른 기업채용 변화를 조사하고 고용센터 진로·경력 개발 제도 개선
(산출) 기업채용동향조사(연 2회, 200백만원), 진로·경력 개발 현장 연구(70백만원)

(3-3) 신직업·미래직업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26) 30백만원 (순증) ('직업정보제공' 내역사업에서 이관)

(3-4) 청년정책 효과성 분석, 정책과제 발굴 : ('25) 177백만원 → ('26) 177백만원 (전년동)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직업지도	□ 직업정보제공 : 770,000천원	직업지도	□ 직업정보제공 : 740,000천원
	○ 신직업·미래직업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30,000천원 가. 청년 미래직진프로그램 개정 (30,000천원) · 프로그램 세부 내용 개정비 : 25,000,000원×1식=25,000천원 · 신직업 수록직업 콘텐츠 업데이트 : 50,000,000원×1식=5,000천원 ○ 직업정보 조사 및 직업연구 : 740,000천원 가. 한국직업정보 재직자조사 및 심층분석(500,000천원) · 재직자조사 용역 18,000원×545개직업×30표본=294,300천원 · 재직자조사 답례품 5,000원×545개직업×30표본=81,750천원 · 기초분석 보고서 활용성(분석)연구=10,000천원 · 조사항목별 심층분석 연구(결과물제작 포함)=100,000천원		○ 신직업·미래직업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내내역 변경 ○ 직업정보 조사 및 직업연구: 740,000천원 가. 한국직업정보 재직자조사 및 심층분석(500,000천원) · 재직자조사 용역 20,000원×545개직업×30표본=327,000천원 · 재직자조사 답례품 5,000원×545개직업×30표본=81,750천원 · 재직자조사 조사방법 개선연구 30,000,000원×1식=30,000천원 · 조사항목별 심층분석 연구 50,000,000원×1식=50,000천원 · 자료회의 수당 150,000원×5명×4회=3,000천원 · 자료회의 경비 33,000원×10명×4회=1,320천원 · 보고서 인쇄 6,930원×1,000부=6,930천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자문회의 수당 150,000원×5명×7회=5,250천원 - 자문회의 경비 33,000원×15명×7회=3,465천원 - 보고서 인쇄 5,235원×1,000부=5,235천원 나. 한국직업사전 직무조사(산업별/직종별) (60,000천원) - 기초직무조사비 55,920,000원×1회=55,920천원 - 자문회의 수당 150,000원×5명×1회=750천원 - 자문회의 경비 33,000원×10명×1회=330천원 - 온라인 DB화 및 업데이트 3,000,000원×1식=3,000천원 다. 일자리 전망연구 및 정성조사 (120,000천원) - 기초직무조사비 35,025,000원×1회=35,025천원 - 일자리전망 정성조사 50,000,000원×1식=50,000천원 - 자문회의 수당 150,000원×10명×5회=7,500천원 - 자문회의 경비 33,000원×15명×5회=2,475천원 - 책자인쇄비 10,000원×2,500부=25,000천원 라. 고용직업분류 및 취업알선직업분류 운영 (20,000천원) - 현장 기초조사비 6,275,000원×1회=6,275천원 - 취업알선직업분류 설명교육 25,000원×200명=5,000천원 - 자문회의 수당 150,000원×5명×5회=3,750천원 - 자문회의 경비 33,000원×15명×5회=2,475천원 - 교육자료비 5,000원×500부=2,500천원 마. 직업세계 변화에 따른 직무역량 변화연구(40,000천원) - 이전직 현장직무조사 및 직업콘텐츠 개발=30,000천원 - 콘텐츠 개발 및 제작(웹 및 오프라인 책자 등)=7,255천원 - 자문회의 수당 150,000원×5명×3회=2,250천원 - 자문회의 경비 33,000원×5명×3회=495천원 □ 직업지도: 2,612,000천원 ○ 직업심리검사 개발·보급 : 932,000천원 가. 직업심리검사 개정 (100,000천원) - 표본조사비 : 55,000천원 - 온·오프라인 검사개발비 : 28,000천원 - 검사 실시 및 해석자료 개발비 : 15,000천원 - 회의비 : 30,000원×8명×5회=1,200천원 - 자문수당 : 100,000원×4명×2회=800천원 나. 온라인 검사 개정 (146,000천원) - 컨설팅 및 조사비 : 50,000천원 - 모바일 전환 직업심리검사 개발 : 30,000천원 - 동영상 개발비 : 30,000천원 - 빅데이터 분석결과 제공 개발 : 23,500천원 - 자료제작 및 인쇄비 : 10,000천원 - 회의비 : 30,000원×10명×5회=1,500천원 - 자문수당 : 100,000원×5명×2회=1,000천원 다. 직업심리검사 보급 (686,000천원) 1) 웹기반 결과처리시스템 개정보급 (154,000천원) - 자문수당 : 100,000원×10명×2회=2,000천원 - 회의경비 : 25,000원×10명×2회=500천원 - 웹기반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추가개발비 : 51,500천원 - 상담자 인건비 : 15,000원×6,000건=90,000천원 - 상담자 모니터링 : 10,000천원 2) 검사결과 양식 개선 (54,000천원) - 검사양식(검사지, 응답표, 결과표) 인쇄 : 100원×36,000부×15회=54,000천원 3) 직업심리검사 지필 프로세스 중앙화 (478,000천원) - 작업환경 구축비(작업서버, 컴퓨터 등) : 180,000천원 - 장소 임대비 : 30,000천원 - 운영 인건비 : 200,000천원 - 물류 및 통신비용 : 68,000천원 ○ 생애주기별 진로·경력 개발 콘텐츠 개발 : 790,000천원 - 맞춤형 프로그램 개정·개발 : 100,000천원×4종=400,000천원 - 프로그램 동영상 개발 : 50,000천원×2종=100,000천원 - 구도패 상담프로그램 사례 및 자료 개발 : 100,000천원 - 표본조사비 : 20,000천원×4종=80,000천원 - 공동연구진 인건비 : 5,000천원×2명×4종=40,000천원 - 자료 제작 및 유인비 : 10,000천원×4종=40,000천원		나. 한국직업사전 직무조사 (60,000천원) - 기초직무조사비 50,850,000원×1회=50,850천원 - 자문회의 수당 150,000원×10명×5회=7,500천원 - 자문회의 경비 33,000원×15명×5회=2,475천원 다. 일자리 전망연구 및 정성조사 (120,000천원) - 직업별 현장전문가 기초조사비 30,000,000원×1식=30,000천원 - 일자리전망 정성조사 50,000,000원×1식=50,000천원 - 일자리전망 콘텐츠 제작 30,000,000원×1식=30,000천원 - 자문회의 수당 150,000원×5명×5회=3,750천원 - 자문회의 경비 33,000원×10명×5회=1,650천원 - 인쇄비(정보서/보고서 등) 10,000원×460부=4,600천원 라. 고용직업분류 및 취업알선직업분류 운영 (20,000천원) - 현장 기초조사비 6,275,000원×1회=6,275천원 - 취업알선직업분류 설명교육 25,000원×200명=5,000천원 - 자문회의 수당 150,000원×5명×5회=3,750천원 - 자문회의 경비 33,000원×15명×5회=2,475천원 - 교육자료비 5,000원×500부=2,500천원 마. 미래직업세계 변화 연구 (40,000천원) - 직종별 AI 사용자 심층인터뷰 200,000원×50명=10,000천원 - 직종별 설문조사 50,000원×10개 직업×40명=20,000천원 - 공동연구비(AI직무역량변화) 6,000,000원×1명=6,000천원 - 전문가 자문 및 회의비 800,000원×5식=4,000천원 □ 직업지도: 2,380,000천원 ○ 직업심리검사 개발·보급 : 932,000천원 가. 직업심리검사 개정 (100,000천원) - 표본조사비 : 55,000천원 - 온·오프라인 검사개발비 : 28,000천원 - 검사 실시 및 해석자료 개발비 : 15,000천원 - 회의비 : 30,000원×8명×5회=1,200천원 - 자문수당 : 100,000원×4명×2회=800천원 나. 온라인 검사 개정 (146,000천원) - 컨설팅 및 조사비 : 50,000천원 - 모바일 전환 직업심리검사 개발 : 30,000천원 - 동영상 개발비 : 30,000천원 - 빅데이터 분석결과 제공 개발 : 23,500천원 - 자료제작 및 인쇄비 : 10,000천원 - 회의비 : 30,000원×10명×5회=1,500천원 - 자문수당 : 100,000원×5명×2회=1,000천원 다. 직업심리검사 보급 (686,000천원) 1) 웹기반 결과처리시스템 개정보급 (154,000천원) - 자문수당 : 100,000원×10명×2회=2,000천원 - 회의경비 : 25,000원×10명×2회=500천원 - 웹기반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추가개발비 : 51,500천원 - 상담자 인건비 : 15,000원×6,000건=90,000천원 - 상담자 모니터링 : 10,000천원 2) 검사결과 양식 개선 (54,000천원) - 검사양식(검사지, 응답표, 결과표) 인쇄 : 100원×36,000부×15회=54,000천원 3) 직업심리검사 지필 프로세스 중앙화 (478,000천원) - 작업환경 구축비(작업서버, 컴퓨터 등) : 180,000천원 - 장소 임대비 : 30,000천원 - 운영 인건비 : 200,000천원 - 물류 및 통신비용 : 68,000천원 ○ 생애주기별 진로·경력 개발 콘텐츠 개발 : 558,000천원 - 맞춤형 프로그램 개정·개발 : 100,000천원×4종=400,000천원 - 프로그램 동영상 개발 : 50,000천원×2종=100,000천원 - 구도패 상담프로그램 사례 및 자료 개발 : 100,000천원 - 표본조사비 : 20,000천원×4종=80,000천원 - 공동연구진 인건비 : 5,000천원×2명×4종=40,000천원 - 자료 제작 및 유인비 : 10,000천원×4종=40,000천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표본조사비 : 20,000천원x4종=80,000천원 - 공동연구진 인건비 : 5,000천원x2명x4종=40,000천원 - 자료 제작 및 유인비 : 10,000천원x4종=40,000천원 - 프로그램 개발 결과물 외부 검토료 : 15,000천원 - 자문수당 : 100,000원x10명x10회=10,000천원 - 회의경비 : 30,000원x10명x10회=3,000천원 - 자료구입비 : 2,000천원 ○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운영 및 콘텐츠 개발 : 578,000천원 - 사이트 유지보수 및 개발 : 300,000천원 - 시스템 기능개선 및 확대 : 100,000천원 - 콘텐츠 개정 및 개발 : 100,000천원 - 콘텐츠 재생서비스(CDN) 확대 : 70,000천원 - 자문수당 : 100,000원x10명x5회=5,000천원 - 회의비 : 30,000원x10명x10회=3,000천원 ○ 진로지도 활성화 민관 협력체제 구축 : 312,000천원 가. 직업진로지도 전문가 양성 (232,000천원) 1) 고용센터교육 진행자 양성과정(190,000천원) 100,000원 x 25명 x 4일 x 19회 2) 민간기관 진행자 양성과정 (42,000천원) 42,000원 x 25명 x 4일 x 10회 나. 진로-경력개발 협력강화 및 홍보 (80,000천원) 1) 취업지원 웹진 발간 (60,000천원) - 콘텐츠 개발 : 22,000천원 - 웹구현 및 발간사이트 기능개선 : 38,000천원 2) 진로지도 세미나 (20,000천원) - 원고작성 및 발표비 : 200,000원x10과제=2,000천원 - 장소임차료 : 5,000천원 - 책자 및 홍보자료 인쇄 및 발송 : 8,000천원 - 행사준비비 : 5,000천원	- 프로그램 개발 결과물 외부 검토료 : 15,000천원 - 자문수당 : 100,000원x10명x10회=10,000천원 - 회의경비 : 30,000원x10명x10회=3,000천원 - 자료구입비 : 2,000천원 ○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운영 및 콘텐츠 개발 : 578,000천원 - 사이트 유지보수 및 개발 : 300,000천원 - 시스템 기능개선 및 확대 : 100,000천원 - 콘텐츠 개정 및 개발 : 100,000천원 - 콘텐츠 재생서비스(CDN) 확대 : 70,000천원 - 자문수당 : 100,000원x10명x5회=5,000천원 - 회의비 : 30,000원x10명x10회=3,000천원 ○ 진로지도 활성화 민관 협력체제 구축 : 312,000천원 가. 직업진로지도 전문가 양성 (232,000천원) 1) 고용센터교육 진행자 양성과정(190,000천원) 100,000원 x 25명 x 4일 x 19회 2) 민간기관 진행자 양성과정 (42,000천원) 42,000원 x 25명 x 4일 x 10회 나. 진로-경력개발 협력강화 및 홍보 (80,000천원) 1) 취업지원 웹진 발간 (60,000천원) - 콘텐츠 개발 : 22,000천원 - 웹구현 및 발간사이트 기능개선 : 38,000천원 2) 진로지도 세미나 (20,000천원) - 원고작성 및 발표비 : 200,000원x10과제=2,000천원 - 장소임차료 : 5,000천원 - 책자 및 홍보자료 인쇄 및 발송 : 8,000천원 - 행사준비비 : 5,000천원	
청년 고용지원	□ 청년고용지원: 1,177,000천원 ○ 진로-경력개발 자료 제작 (730,000천원) 가. 전공기반 경력가이드 개발 (600,000천원) - 조사실시비 : 500,000천원 - 인쇄비 : 10,000원x1,000부x10개 전공=100,000천원 나. 진로-경력개발 자료 제작 및 보급 (130,000천원) - 자문수당 : 100,000원x10명x7회=7,000천원 - 회의경비 : 30,000원x10명x10회=3,000천원 - 콘텐츠 개발 및 공동연구진 인건비 : 40,000천원 - 자료제작비 및 유인비 : 20,000천원 ○ 생애주기별 진로-경력개발 현장 연구 (270,000천원) 가. 기업채용동향조사 (200,000천원) - 조사실시비 : 100,000천원x 2회=200,000천원 나. 진로-경력 개발 현장 연구 (70,000천원) - 공동연구진 인건비 : 5,000천원x4명=20,000천원 - 조사비 : 30,000천원 - 자료제작비 및 유인비 : 10,000천원 - 자문수당 : 100,000원x10명x7회=7,000천원 - 회의경비 : 30,000원x10명x10회=3,000천원 ○ 청년정책 효과성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177,000천원) 가. 청년고용정책 효과성 분석 및 심층 모니터링 : 57,000천원 (1) 청년 고용동향 분석 및 고용정책 모니터링 (57,000천원) - 공동 연구비 5,000천원x7명 = 35,000천원 - 정책모니터링비 2개 = 10,000천원 - 회의비 30,000원x10명x20회 = 6,000천원 - 인쇄비(우수사례집 등) = 6,000천원 나.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현장중심 정책 발굴 : 25,000천원 (1)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현장중심 정책 발굴 (25,000천원) - 청년 정책 아이디어 수렴비 = 22,000천원 - 회의비 30,000원x10명x10회 = 3,000천원 다. 청년정책 연구개발 및 정책과제 발굴 : 95,000천원 (1) 취약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 분석 (30,000천원) - 공동 연구비 = 20,000천원 - 회의비 30,000원x20명x5회 = 3,000천원	□ 청년고용지원: 1,207,000천원 ○ 진로-경력개발 자료 제작 (730,000천원) 가. 전공기반 경력가이드 개발 (600,000천원) - 조사실시비 : 500,000천원 - 인쇄비 : 10,000원x1,000부x10개 전공=100,000천원 나. 진로-경력개발 자료 제작 및 보급 (130,000천원) - 조사실시비 : 50,000천원 - 콘텐츠 개발비 : 40,000천원 - 공동연구진 인건비 : 5,000천원x2명=10,000천원 - 자료제작비 및 인쇄비 : 20,000천원 - 자문수당 : 100,000원x10명x7회=7,000천원 - 회의경비 : 30,000원x10명x10회=3,000천원 ○ 생애주기별 진로-경력개발 현장 연구 (270,000천원) 가. 기업채용동향조사 (200,000천원) - 조사실시비 : 100,000천원x 2회=200,000천원 나. 진로-경력 개발 현장 연구 (70,000천원) - 공동연구진 인건비 : 5,000천원x4명=20,000천원 - 조사비 : 30,000천원 - 자료제작비 및 유인비 : 10,000천원 - 자문수당 : 100,000원x10명x7회=7,000천원 - 회의경비 : 30,000원x10명x10회=3,000천원 ○ 신직업미래직업 콘텐츠 개발 및 보급 (30,000천원) 가. 청년 미래직진프로그램 내용 개정 (20,000천원) - 프로그램 세부 내용 개정 15,000,000원x1식=15,000천원 - 신직업 수록직업 콘텐츠 업데이트 5,000,000원x1식=5,000천원 나. 프로그램 수록 신규 콘텐츠 개발 (10,000천원) - 콘텐츠 개발비 : 7000천원 - 자문수당 : 2,000천원 - 회의경비 : 1,000천원 ○ 청년정책 효과성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177,000천원) 가. 청년고용정책 효과성 분석 및 심층 모니터링 : 57,000천원 (1) 청년 고용동향 분석 및 고용정책 모니터링 (57,000천원) - 공동 연구비 5,000천원x7명 = 35,000천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인쇄비 = 7,000천원 (2) 청년정책 통계 관리 및 지표 개발 (40,000천원) - 조사 용역비 = 20,000천원 - 공동 연구비 5,000천원x2명 = 10,000천원 - 회의비 30천원x20명x10회 = 6,000천원 - 인쇄비 = 4,000천원 (3) 청년정책 국내외사례 분석 및 정책 모형 개발 (25,000천원) - 사례 조사비 = 10,000천원 - 해외현지 조사비 = 8,000천원 - 회의비 = 3,000천원 - 국제 세미나 개최비 = 2,000천원 - 인쇄비(세미나 자료집 등) = 2,000천원		- 정책모니터링비 2개 = 10,000천원 - 회의비 30,000원x10명x20회 = 6,000천원 - 인쇄비(우수사례집 등) = 6,000천원 나.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현장중심 정책 발굴 : 25,000천원 (1)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현장중심 정책 발굴 (25,000천원) - 청년 정책 아이디어 수렴비 = 22,000천원 - 회의비 30,000원x10명x10회 = 3,000천원 다. 청년정책 연구개발 및 정책과제 발굴 : 95,000천원 (1) 취약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 분석 (30,000천원) - 공동 연구비 = 20,000천원 - 회의비 30,000원x20명x5회 = 3,000천원 - 인쇄비 = 7,000천원 (2) 청년정책 통계 관리 및 지표 개발 (40,000천원) - 조사 용역비 = 20,000천원 - 공동 연구비 5,000천원x2명 = 10,000천원 - 회의비 30천원x20명x10회 = 6,000천원 - 인쇄비 = 4,000천원 (3) 청년정책 국내외사례 분석 및 정책 모형 개발 (25,000천원) - 사례 조사비 = 10,000천원 - 해외현지 조사비 = 8,000천원 - 회의비 = 3,000천원 - 국제 세미나 개최비 = 2,000천원 - 인쇄비(세미나 자료집 등) = 2,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 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1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 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 보험자 전수조사/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직업정보제공> ○ 일자리 창출 가능 신직업 발굴 - 45개의 후보직업 발굴 및 29개 직업 타당성 검토 ○ 직업연구강화 및 정보제공 활성화 - 2023 한국직업전망 발간 -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직업콘텐츠 및 결과물 보급·확산 <직업지도> ○ 직업심리검사,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 진로·경력개발 자료 제작
2023	<직업정보제공> ○ 직업연구강화 및 정보제공 활성화 - 2024 한국직업전망 발간 - 온라인 직업정보 콘텐츠 개발(VR포함) - 미래지향적 진로탐색(청년미래직진프로그램 개발) <직업지도> ○ 직업심리검사,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 진로·경력개발 자료 제작 ○ 중소기업 청년고용 실태 분석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부 등 정부 부처의 청년고용 정책 인지도, 참여도 및 만족도, 대플센터 이용 현황, 만족도, 개선 요구사항 등 조사 ○ 세대상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연구 - 국내외 주요 사례 분석에 근거하여 청년층의 진로탐색 및 경력개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
2024	<직업정보제공> ○ 직업연구강화 및 정보제공 활성화 - 2025 한국직업전망 발간 - 온라인 직업정보 콘텐츠 개발(VR포함) <직업지도> ○ 직업심리검사 개발·보급 ○ 생애주기별 진로·경력개발 콘텐츠 개발 ○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운영 및 콘텐츠 개발
2025	<직업정보제공> ○ 일자리전망 콘텐츠 개발 ○ 온라인 직업정보 콘텐츠 개발 ○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6판 5차년도 조사 ○ 직업별 활용 기술(소프트웨어) 및 도구(기기·장비) 목록 개발 2차년도 ○ 한국직업정보 재직자조사 및 심층분석 ○ 미래직업세계 연구: AI 시대의 업무환경 변화와 혁신 전략 연구 수행 중 ○ 청년미래직진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청년 맞춤형 직업 정보 개발 <직업지도> ○ 직업선호도검사 2차년도 개정 ○ 취업취약계층(소상공인·청년 등)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상담프로그램 사례·자료 개발 ○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중장년 대상 교육과정 개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직업정보제공>

- 직업조사 체계화를 통한 직업연구 및 직업정보 개발 내실 강화
 - 537개 대표직업 중심 한국직업정보(KNOW) 재직자조사 및 한국직업전망 정성조사 등 직업조사 체계화 및 조사 효율화, 활용 제고
 - * 한국직업정보 대표 직종의 정량·정성조사 및 직업사전 활용 직무조사 연계 확대
- 온라인 직업콘텐츠 확대 보급 및 활용 강화

<직업지도>

- 직업심리검사 개정 및 운영 개선을 통한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
- 전 생애 구직자 대상 취업역량 및 구직 의욕 향상 지원
- 스마트 환경에 대응하는 진로·경력개발 콘텐츠 전달체계 다양화로 국민 활용 증가
 - 사이버진로교육센터 e-러닝 콘텐츠 개발·개정
-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육성으로 고용서비스 전달 품질 개선

<청년고용지원>

- 청년 진로·경력 개발을 위한 자료 구축 및 현장 정책 지원
- 청년고용정책 운영 모니터링 및 사업지원
 - 청년고용 관련 조사 및 분석실시
 - 컨설팅·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신규 프로그램·도구 개발을 통한 청년층 대상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① 사업기준 및 지침 수립	고용노동부
↓	
②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한국고용정보원
↓	
③ 운영계획서 검토 및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재배정	고용노동부
↓	
④ 사업수행	한국고용정보원
↓	
⑤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고용노동부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성과평가('25년) 양호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811	-	3,811	3,811	3,811	100.0	100.0	-	-
2023	6,082	-	6,082	6,082	6,082	100.0	100.0	-	-
2024	5,378	-	5,378	5,378	5,378	100.0	100.0	-	-
2025	4,559	-	4,559	4,559	4,559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17) 공정채용문화확산(1051-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51	307
명칭	고용창출 및 훈련	청년진로 및 취업지원	공정채용문화확산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정채용 인프라구축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공정채용문화확산	5,304	2,774	2,774	1,150	1,150	△1,624	△58.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631	5,631	5,304	-	327	2,774	2,774	1,237	-	1,537	1,150
· 공정채용인프라구축 지원	3,821	3,821	3,821	-	-	2,600	2,600	1,064	-	1,536	900
·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1,810	1,810	1,483	-	327	174	174	173	-	1	2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정채용문화확산)** 불공정채용을 근절하고 능력중심의 공정채용문화가 민간부문에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공정채용 인프라구축 지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채용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투명한 채용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 구축 지원
-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 운영 업무(점검, 제재 부과 등) 전산시스템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② 추진경위
 - 공공·민간의 불공정채용 근절 및 공정한 채용질서 및 문화 확립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사업’에서 ‘22년부터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업으로 이관)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 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16	3,904	5,631	2,774	1,15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구인·구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정인프라 구축 지원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640백만원	1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지원: ('25) 2,600 → ('26) 900백만원, △65.4%

- (편성) 민간기업 등에 자율적 공정 채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민간기업·공공기관 채용제도 운영 실태조사 ▲기업 인사담당자, 평가위원 양성 및 교육 실시 ▲공정채용 우수기업 사례 확산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 지원 필요
- (내역) 공정채용 운영실태조사: 240백만원(4,000개소), 공정채용 기업교육: 400백만원(200회), 공정채용문화 확산지원: 260백만원(홍보 200백만원, 공정채용매뉴얼 60백만원)

② 공정채용 전산시스템 운영: ('25) 174 → ('26) 250백만원, +43.7%

- (편성)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운영 업무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관리 운영 비용 필요
- (내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관리용역비 250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74 백만원	①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지원 : 2,600백만원 - 중소기업 채용관리솔루션 활용지원 사업(신규): 4,000개소X0.5백만원X0.8(자부담 0.2)+운영비 100백만원=1,700백만원 - 기업교육사업: 400백만원 - 공정채용 운영 실태조사: 240백만원 * 공정채용 실태조사 40백만원 * 공공·민간 모니터링 200백만원 - 공정채용 문화확산 지원: 260백만원 * 공정채용 문화확산 홍보: 200백만원 * 공정채용 매뉴얼 개편 및 활용지원: 60백만원 ②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 174백만원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74백만원	1,150 백만원	①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지원 : 900백만원 - 기업교육사업: 400백만원 - 공정채용 운영 실태조사: 240백만원 * 공정채용 실태조사 40백만원 * 공공·민간 모니터링 200백만원 - 공정채용 문화확산 지원: 260백만원 * 공정채용 문화확산 홍보: 200백만원 * 공정채용 매뉴얼 개편 및 활용지원: 60백만원 ②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 250백만원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2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 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만기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 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 보험자 전수조사/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공정채용인프라구축) 채용모델 개발·고도화 10개 분야 개발 완료, 공공 및 민간 기업 담당자 등 능력중심채용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2023	- (공정채용인프라구축) 공정채용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및 151개 컨설팅 실시 완료, 채용모델 개발·고도화 20개 분야 완료 - (공정채용전산시스템운영) ISP 수립 완료('24년 시스템 개발 예정)
2024	- (공정채용인프라구축) 공정채용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및 컨설팅 실시 완료(400개소), 채용모델 개발·고도화 20개 분야 완료 - (공정채용전산시스템운영) 계약 체결 완료, 전산시스템 개발 착수
2025	- (공정채용전산시스템운영) 전산시스템 개발완료('25.2월) - (채용관리 솔루션 지원) 중소기업이 채용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채용관리솔루션(ATS) 도입을 지원(255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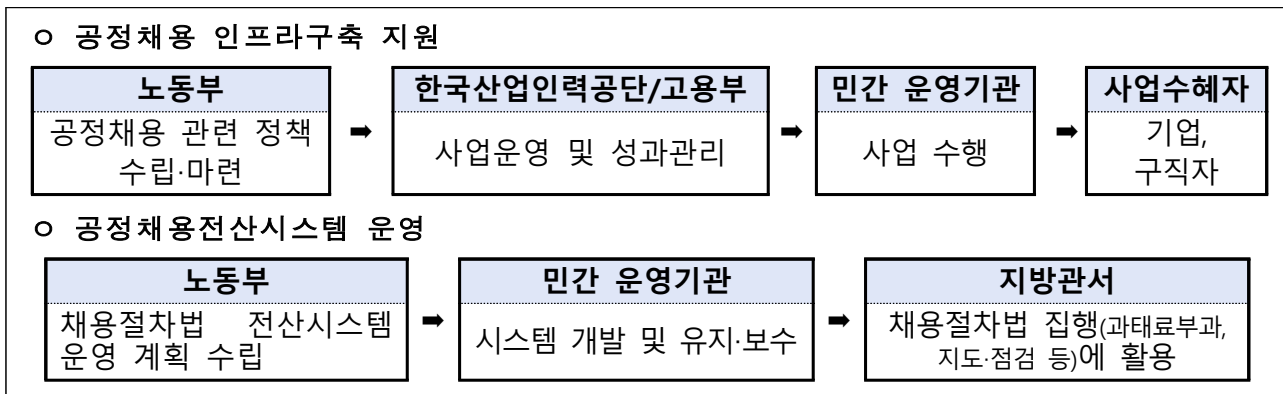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공정채용 인프라구축 지원) 공정·투명한 채용관행을 정착시켜 기업의 적합 인재 채용
및 청년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
-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채용절차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데이터 분석능력
향상을 통한 업무 효율화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500억 미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공정채용인프라구축 사업을 통해 양성된 평가위원을 민간기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 편중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환노위 임이자, 전용국 의원 '22년 결산시 시정요구) → 인력풀 확대 및 민간기업 활용방안 마련('24년 시정완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성과평가('24): 양호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316	-	1,316	1,316	1,316	100	100	-	-
2023	3,904	-	3,904	3,904	3,901	99.9	99.9	-	3
2024	5,631	-	5,631	5,631	5,304	94.2	94.2	-	327
2025	2,774	-	2,774	2,774	1,237	44.6	44.6	-	1,53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집행액 1,316백만원, 집행률 100%
2023	- 집행액 3,901백만원, 집행률 99.9%
2024	- 집행액 5,304백만원, 집행률 94.2%
2025	- 집행액 1,237백만원, 집행률 44.6%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18) 청년 미래플러스(1051-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51	308
명칭	고용창출 및 훈련	청년진로 및 취업지원	청년 미래플러스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청년 미래플러스	소관부처	실·국·과(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청년 미래플러스	-	2,000	2,000	4,400	4,060	2,060	10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청년 미래플러스	-	-	-	-	-	2,000	2,000	1,992	-	8	4,0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업별 협회 또는 ISC가 회원사인 대·중견기업과 협업하여 구직청년의 취업 지원 및 재직청년의 산업 내 성장까지 청년고용 쉼 주기 지원
- (구직청년) 취업 컨설팅+직무교육+멘토링 등 산업(직무) 특화 취업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 → 회원사 취업 연계
- (재직청년)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산업별 성장로드맵에 근거한 맞춤형 경력설계·멘토링·OJT·온보딩 등을 지원하여 산업 내 관리자로 성장 지원
- (CEO·중간관리자·인삼담당자)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지원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8조의3, 제8조의4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①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정부는 대학 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 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11.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 내 대·중소기업 격차, 기업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에 따라,

- 졸업 이후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는 한편, 구직단념 청년과 쉬었음 청년의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

* 졸업 후 구직기간 11.5개월('24), 쉬었음 청년 39.8만명('24.5), 구직단념청년 11만명('24.5)

○ 취업 이후 청년들의 잦은 이·전직으로 인해 청년이 산업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은 초기 인력양성 비용 손실 발생

* 1년 이내 조기 퇴사한 직원 있다는 기업<사람인>: ('22) 74.6% → ('23) 84.7%

→ 청년의 취업+입직 초기 적응+산업 내 성장까지 쏠 주기 토달 케어로 청년성장 및 산업인재 육성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5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2,000	4,06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15세~34세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청년 미래플러스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4,060 백만원	1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청년 미래플러스 : ('25) 2,000백만원 → ('26) 4,060백만원

- (편성) 구직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청년 대상 산업(직무) 특화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 필요 ('26년부터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內 '직장적응지원 사업' 통합)
- (내역) (사업비) 3,960백만원 = 660백만원×6개 운영기관
(운영비) 1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 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사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 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 보험자 전수조사/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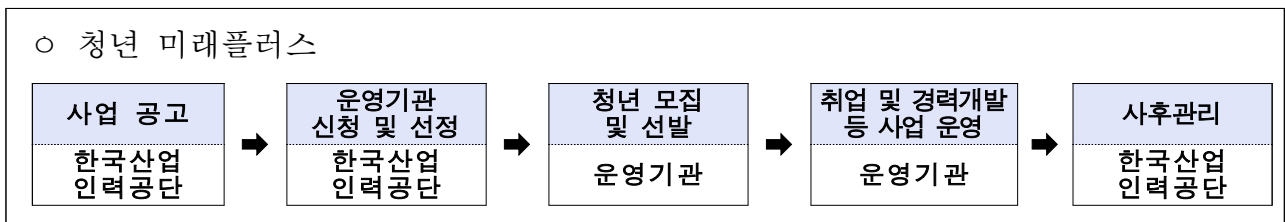
2022	-
2023	-
2024	-
2025	5개 운영기관 지원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중견기업과 협업하여 산업(직무) 특화 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및 산업 내 전문가로 성장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2023	-	-	-	-	-	-	-	-	-
2024	-	-	-	-	-	-	-	-	-
2025	2,000	-	2,000	2,000	1,992	99.6	99.6	-	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1,950	1,950	1,950	1,950	-	1,950	1,920	-	30	98.5

2) 주요 결산사항: 해당 없음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변경 (2025.3.5.)	청년미래 플러스 (1051-308)	210-01	40	청년미래 플러스 (1051-308)	210-14	사업 실적정보관리시스템 마련·운영을 통해 내실 있게 관리·추진

사 업 명
(19) 건설근로자고용지원(1060-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0	301
명칭	고용창출	건설근로자고용지원	건설근로자고용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건설근로자고용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건설근로자공제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건설근로자고용지원	-	-	-	2,940	1,480	1,48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1,480
·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	-	-	-	-	-	-	-	-	-	200
·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	-	-	-	-	-	-	-	-	-	1,2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건설경기 변동 및 고용여건 등 인력수급 파악을 통해 훈련사업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인력수급전망에 따라 청년·여성 등이 선호하는 직종에 대한 기능훈련을 실시하고, 현장실습도 지원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기능인력 양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4.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 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취업지원사업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5.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인력·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6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

② 추진경위

- 건설업은 他산업에 비해 취업자 규모(5번째 규모)가 크고, 취업유발계수(10억원 당 10.5명)가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나,
 - * 업종별 취업자 규모('24년, 만명): 제조 445.5 > 도소매 321.5 > 보건복지 294.1 > 숙박음식 232.2 > 건설업 206.5
 - 최근 건설현장은 고령화와 숙련기능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 * 진입연령: ('20) 36.6세 → ('24) 39.4세, 주연령대: ('20) 49.3세 → ('24) 51.2세
 - 특히 향후 내국인 건설인력은 매년 35만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청년·여성 등의 건설업 진입을 위한 지원 사업의 부재로 숙련기능인력 공급이 부족
 -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5~'29)」 수립·추진('25.2월, 관계부처 합동)
 -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중장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고용안정·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 ☞ 건설업 인력수급 전망,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 일자리 전망을 제시하고, 건설업에 청년·여성 등 신규 인력 유입 촉진 및 숙련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지원 사업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48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위탁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 사업 수혜자 : 건설(일용)근로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 (2025 예산) 0 → (2026 예산) 200백만원, 순증

- (요구) 건설경기 및 고용여건 모니터링을 통한 건설근로자 인력수급 전망을 위해 '26년 예산 신규 반영
- (산출) 조사·연구비 20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0		200	○ 일반연구비(260-01) : 200백만원 가.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및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연구비 200백만원

②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 (2025 예산) 0 → (2026 예산) 1,280백만원, 순증

- (요구) 인력수급 전망 및 훈련수요를 파악하여 내국인 기능인력 부족 및 청년·여성 선호 직종 등 특화 훈련사업 실시
- (산출) ①실생활공간 구성과정 356백만원, ②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540백만원, ③특성화고 연계 청년건설 인력 양성과정 130백만원, ④실습비 등 154백만원 ⑤운영비 10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0		1,280	○ 일반용역비(210-14) : 1,280백만원 가. 실생활공간 구성과정 : 훈련비 275백만원(55백만원 × 5회) 훈련장려금 81백만원(27천원 × 15명 × 40일 × 5회) 나. 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 훈련비 378백만원(63천원 × 300명 × 20일) 훈련장려금 162백만원(27천원 × 300 × 20일) 다. 특성화고 연계 청년건설인력 양성과정 : 훈련비 130백만원(55백만원 × 2개교) 라. 실습비 : 150백만원((실습생 150천원 × 9명) + (멘토 50천원 × 3명)) × 20일 × 5회 마. 네트워크 지원 : 4백만원(200천원 × 5개팀 × 4회) 바. 운영비 : 사업평가,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1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 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17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 입인원(철퇴·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 보험자 전수조사/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
20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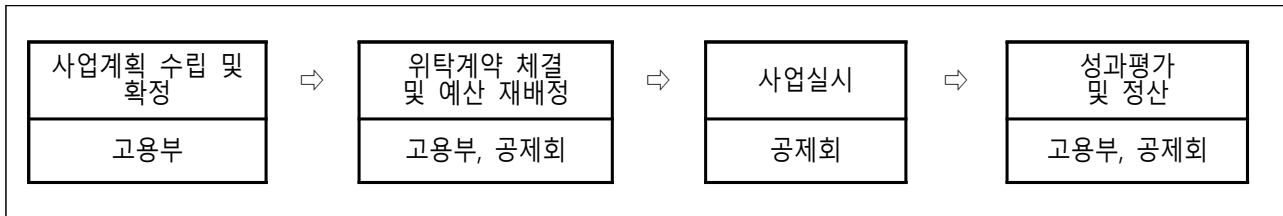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건설근로자 고용, 복지, 근로개선 등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 및 건설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한 건설산업 발전 및 체질 개선
-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인력 공급이 부족한 건설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26년 목표 훈련인원 375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0)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1070-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70	300
명칭	고용창출및훈련	취약계층취업촉진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사업시행주체	고용서비스정책과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5,918	9,199	11,199	11,904	11,904	2,705	29.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185	6,185	5,918	24	243	9,199	11,223	11,119	-	104	11,904
· 심리안정지원	1,920	1,920	1,896	24	-	3,817	3,841	3,841	-	-	4,915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4,231	4,231	3,993	-	238	5,348	5,348	5,245	-	103	5,132
· 지역특화 취업박람회	-	-	-	-	-	-	2,000	2,000	-	-	-
· 구직자 취업지원	-	-	-	-	-	-	-	-	-	-	309
· 기업 채용지원	-	-	-	-	-	-	-	-	-	-	798
· 기타 운영비	34	34	30	-	4	34	34	33	-	1	7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고용서비스 핵심기관인 고용센터의 채용·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적극적 구직활동 지원을 통한 (재)취업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심리안정지원) 실직·구직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 계층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 및 자신감 회복 지원(민간위탁)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역량향상 지원을 위한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직접운영, 민간위탁)
 - (구직자 취업지원) 1:1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지도, 경력설계, 취업컨설팅 등 취업 소과정을 지원하고,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 및 취업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 (기업 채용지원)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적합구직자 발굴, 채용대행·채용행사 등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여건 향상 지원
 - (기타운영비) 취업·채용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홍보, 취약계층취업촉진 위탁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1항제5호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지원 등)

-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그 사업의 위탁
- ② 직업안정기관과 민간기관은 고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시설·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 ① 국가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취업취약계층의 능력·적성 등에 대한 진단
 2.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3.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 업무
 5.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
 7.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는 업무
 8.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연계·협력과 고용서비스 시장의 육성에 관한 업무

② 추진경위

- ('06) '05년 '국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 마련 이후, '06년 채용박람회로 시작으로 '08년 집단상담프로그램, '09년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쌍용차 해고자 지원) 등 민간 위탁 확대 실시

* 채용박람회는 '96년부터 실시, '04년 고령자(실버)취업박람회로 확대, '06년 동 사업에 편입되어 전국 16개 시도(북지부, 자치단체 합동)에서 개최

- ('16) '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자율시정, 신고포상금 등)' 사업이 동 사업에 편입*

* 일반회계인 「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사업은 고용서비스우수인증기관 보조금 지급의 타당성 문제로 보조 사업 평가를 통해 '15년을 끝으로 폐지되고 세부내역이 변경되어 '16년부터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

- ('19) 고용보험기금(~18년)에서 일반회계로 사업 이관

- (26) 고용센터의 구직자 취업지원, 기업 채용지원 예산이 직업안정기관운영에서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으로 이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799	11,654	6,185	11,199	11,90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센터, 민간기관,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 및 구직자, 구인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심리안정지원	보조	지자체	40	10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 제3항 (직업안정에 관한 특례)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보조 (제주)	81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 (2025 추경) 11,199백만원 → (2026 예산) 11,904백만원, 705백만원 증액
(2025 본예산 9,199백만원 → 제2회 추경 11,199백만원)

※ "직업안정기관운영(1032-301)"의 내내역사업 중 고용센터의 취업·채용지원서비스 관련 예산을 "취약계층취업촉진(1070-300)"으로 이관하고, 세부사업명을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으로 변경

① 심리안정지원 : (2025 추경) 3,817백만원 → (2026 예산) 4,915백만원, 1,098백만원 증액

※ 내역사업명 변경 :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위탁운영 → 심리안정지원

- (요구) 쉬었음청년 등 심리지원 확대(63,618회 → 64,680회, +2%), 지원단가 현실화(6 → 7.2만원), 편안하고 독립적인 상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담실 환경개선

- (산출) 4,915백만원 = 심리안정지원 4,657백만원(64,680회 × 72,000원)
+ 상담실 환경개선 258백만원(15개소 × 17.2백만원)

②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2025 추경) 5,348백만원 → (2026 예산) 5,132백만원, △216백만원

※ 내역사업명 통합변경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위탁운영+직접운영 →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 (요구) 쉬었음청년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확대*, 지원단가 합리화**

* 프로그램 운영횟수 확대: ('25) 8,460회(집단상담 2,460회 취업특강등 6,000회) → ('26) 8,660회(집단상담 2,460회 취업특강등 6,200회)

** 1회당 지원단가(직접) : ❶ 집단상담 ('25) 96만원 → ('26) 88만원, ❷ 취업특강등 ('25) 20만원 → ('26) 15만원

- (산출) 5,132백만원 = 집단상담 위탁운영 3,348백만원(1,860회 × 180만원) + 직접운영 528백만원(600회 × 88만원)
+ 취업특강등 위탁운영 560백만원(2,000회 × 28만원) + 직접운영 625백만원(4,200회 × 15만원)
+ 직접운영비 71백만원(101개소 × 70만원)

③ 구직자 취업지원 : (2025 추경) 0 → (2026 예산) 309백만원, 309백만원 증액(이관)

- (요구)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1:1 심층상담 서비스 강화 및 예산 이관

- (산출) 309백만원 = 67개소* × 4.6백만원

*기존 운영센터 48개소 + 확대 센터 19개소(구직자 맞춤형 상담 미운영 53개소의 30% 수준)

④ 기업 채용지원 : (2025 추경) 0 → (2026 예산) 798백만원, 798백만원 증액(이관)

- (요구) 소규모 채용행사(고용센터 직접 개최)를 통한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지원 및 기업통합 서비스 운영비

- (산출) 798백만원 = ① 채용행사 운영(신규) : 406백만원 = 2,705회 × 15만원

② 기업 맞춤형 서비스(이관) : 392백만원 = 협업추진 및 기업사례관리 207백만원
(48개소 × 4.3백만원) + 태블릿PC통신비 185백만원(48개소 × 32만원 × 12개월)

⑤ 기타 운영비 : (2025 추경) 34백만원 → (2026 예산) 750백만원, 716백만원 증액(일부이관)

- (요구) 취업·채용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사업홍보, 취약계층취업촉진 위탁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 (산출) 750백만원 = ① 취업·채용지원 운영경비(이관): 716백만원 = 101개소 × 7.1백만원

② 위탁사업 운영경비: 30백만원 = 48개소 × 63만원

③ 신고포상금 4백만원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199	① 심리안정지원: 3,817백만원 = 심리안정지원 3,817백만원(63,618회 × 60,000원) ②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5,348백만원 = 집단상담 [위탁운영 3,348백만원(1,860회×180만원) + 직접운영 570백만원(600회×96만원)] + 취업특강등 [위탁운영 560백만원(2,000회×28만원) + 직접운영 794백만원(4,000회×20만원)] + 운영비 76백만원(101개소 × 75만원) ③ 기타운영비 34백만원 = 위탁사업 운영경비 30백만원	11,904	① 심리안정지원: 4,915백만원(+1,098백만원) = 심리안정지원 4,657백만원(64,680회 × 72,000원) + 상담실 환경개선 258백만원(15개소 × 17.2백만원) ②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5,132백만원(△216백만원) = 집단상담 [위탁운영 3,348백만원(1,860회×180만원) + 직접운영 528백만원(600회×88만원)] + 취업특강등 [위탁운영 560백만원(2,000회×28만원) + 직접운영 625백만원(4,200회×15만원)] + 운영비 71백만원(101개소×70만원) ③ 기타운영비 750백만원(+716백만원, 일부이관) = 위탁사업 운영경비 30백만원(전년동)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신고포상금 4백만원 (추경 증액) 지역 특화 취업박람회 2,000백만원(신설) = 5개 권역 × 4억원		+ 신고포상금 4백만원(전년동) + 취업·채용지원 운영경비(이관) 716백만원 ④ 구직자 취업지원(이관): 309백만원(순증) = 67개소 × 4.6백만원 ⑤ 기업 채용지원(이관): 798백만원(순증) = 채용행사 운영(신규) 406백만원 + 기업 맞춤형 서비스(이관) 39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 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심리안정지원 64,100회,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10,498회, 채용박람회 8회, 직업 소개소 전문컨설팅 145개소, 온라인컨설팅 455개소, 신고포상금 5건 지급 등
2023	심리안정지원 63,184회,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10,686회, 채용박람회 1회, 직업 소개소 전문컨설팅 200개소, 온라인컨설팅 500개소, 유료직업소개사업 실태조 사 2,500개소, 신고포상금 6건 지급 등
2024	심리안정지원 32,140회,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9,842회, 신고포상금 5건 지급 등
2025	심리안정지원 63,839회,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12,060회, 신고포상금 9건 지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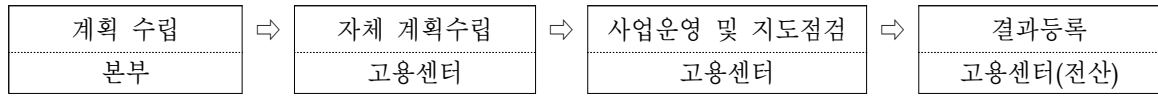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센터의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심리안정, 직업선택, 취업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조기 취업 기반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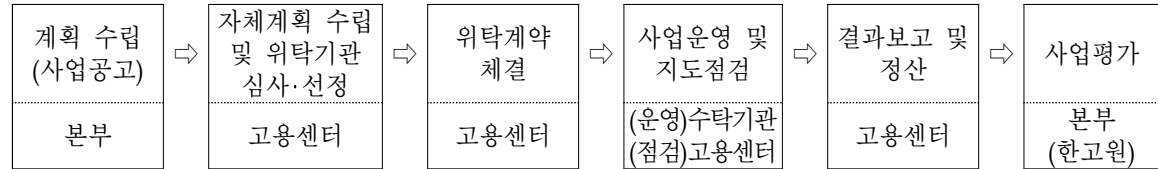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운영: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채용지원



- 위탁운영: 심리안정지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일부)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일자리 사업평가 (25.5 고용부)	○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 (최종의견 및 점수) 전년도 “우수” 등급으로 평가 제외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 (최종의견 및 점수) 개선필요 - (결과 요약) 예산삭감 상황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 노력을 기울여 전년도에 비해 양적·질적 성과 향상을 이루었으나, 장단기적 단점에서 사업방향 수립 체계 강화 및 고용센터 직접 운영에 대한 긍정적 유인 강화 등 필요
---------------------------	--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849	△50	11,799	11,818	11,416	96.8	96.6	-	402
2023	11,654	-	11,654	11,654	11,389	97.7	97.7	-	265
2024	6,185	-	6,185	6,185	5,918	95.7	95.7	24	243
2025	9,199	2,000	11,199	11,223	11,119	99.3	99.1	-	10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해당없음 - (이월/불용) 집행잔액 불용
2023	- (이/전용) 해당없음 - (이월/불용) 집행잔액 불용
2024	- (이/전용) 해당없음 - (이월/불용)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위탁비 이월, 집행잔액 불용
2025	- (이/전용) 해당없음 - (이월/불용) 집행잔액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5.)	취약계층 취업촉진 (1070-300)	일반 수용비 (210-01)	1	취약계층 취업촉진 (1070-300)	포상금 (310-03)	거짓 구인광고 신고접수 건의 공소제기 증가로 부족분 발생

사 업 명
(21)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정보화)(1075-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75	302
명칭	고용창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운영(정보화)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주체	한국고용정보원
AI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온톨로지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	8,216	7,507	7,507	9,601	11,101	3,594	47.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216	8,216	8,216	-	-	7,507	7,507	7,507	-	-	11,101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2,047	2,047	2,047	-	-	2,136	2,136	2,136	-	-	2,136
· AI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599	599	599	-	-	617	617	617	-	-	5,356
· 온톨로지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1,411	1,411	1,411	-	-	1,411	1,411	1,411	-	-	1,411
· 일자리 정보플랫폼 운영지원	4,159	4,159	4,159	-	-	3,343	3,343	3,343	-	-	2,19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 개별 고용전산망에 분산된 일자리 관련 정보 및 외부 연계 데이터를 통합·구축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기반으로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분석 지원 및 맞춤형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구축·제공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각 고용전산망과 외부기관에 분산된 일자리 관련 정보를 통합·표준화하여 관리하는 ①MDB(Master DataBase)*, ②구직정보·훈련·고용이력 등 개인 및 사업장 단위로 통합 정보를 조회하는 시스템(바로원), ③고용·노동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합DW, ④데이터 표준 및 품질 관리 시스템, ⑤외부기관과 데이터를 연계하는 인프라 등의 운영·관리
- *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등 개별 시스템별 데이터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하여 구축한 기준정보
- (AI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구직자·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애경력 설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①AI 기반 개인·기업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구축·제공하고 고용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및 공공 고용서비스의 품질과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②AI 행정지원 서비스 구축

- (온톨로지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직무역량 분석 등 맞춤형 AI 고용서비스 제공 기반인 ❶ 직무온톨로지*의 구축·운영·관리 및 ❷ 신규 AI 고용서비스 발굴, 개념검증(PoC) 업무 등을 위탁
 - * 컴퓨터가 이력서나 구인공고를 해석하고, 알맞은 직무역량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컴퓨터 언어 사전
- (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지원) 일자리정보플랫폼 및 AI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SW/HW의 유지보수 및 솔루션 도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고용·직업정보의 수집·관리)

제15조(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고용·직업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 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40조(위탁)

제40조(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제15조의5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② 추진경위

- '18.1 ~ : 머신러닝기반의 일자리매칭시스템 구축 ISP 추진
- '18.12: 기업사업장, 개인, 서비스에 대한 마스터 DB 구축 및 서비스 개시
- '19.3: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 ISP 완료
- '19.7: 국가일자리플랫폼 기반의 AI 고용서비스 구축
(머신러닝 기반 일자리매칭 시스템 구축, 국가일자리정보 기반 바로원시스템 재구축 및 통합연계허브 구축)('19.7~'20.7)
- '20.6: 국가일자리플랫폼 기반의 데이터포탈관리시스템 구축('20.6~'20.12)

- '20.8: 머신러닝 기반 일자리매칭 시스템 2차 구축('20.8~'21.7)
- '20.9: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고용·노동 통합 DW, 데이터공동이용시스템 구축)('20.9~'21.9)
- '21.9: 취업지원제도시스템, 고용·노동 통합DW시스템 등 신규(재구축) 시스템의 표준적용
- '21.9: 데이터프로파일링 통계자료 구축
- '21.9: 지능형 직업상담지원(잡케어) 서비스 구축
- '21.12: 고용노동 통합 DW 및 고용노동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
- '22.12: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 시범실시
- '23.3: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 전면오픈
- '23.7: 고용노동데이터분석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 '24.6: 일자리정책관리시스템, 데이터관리포털, DQ, META 개편
- '24.6: 고용행정포털 고용안정지원금 구축에 따른 지원금 DW 개편
- '24.12: 고용AI 과제 시범 적용(구인공고 작성, 구인공고 검증)
- '25.1: 고용AI 과제 확대 적용(취업확률모델, 직업훈련 추천)
- '25.7: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위원회 및 TF 운영
- '25.11: AI 고용상담 시범 적용(고용24 행정 실업급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431	7,853	8,216	7,507	11,101

- 기타: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AI서비스, 온톨로지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구직자, 재직자, 청소년 등 전국민, 구인업체, 진로지도담당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일자리정보 플랫폼 기반 AI고용서비스 지원(정보화)	출연	한국고용 정보원	11,101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및 제40조(위탁)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고용서비스 지원

: (2025 예산) 7,507백만원 → (2026 예산) 11,101백만원, 3,594백만원 증액

①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2025 예산) 2,136백만원 → (2026 예산) 2,136백만원, 전년동

- (요구)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 MDB, 통합연계허브 운영, 바로원시스템, 고용행정통합DW, 고용행정데이터분석시스템, 데이터관리포털 운영, SW 기술자 평균임금 증가분 반영

- (산출)

- MDB 운영 : ('25) 301 → ('26) 301백만원(전년동)

(1) 결합 데이터셋의 지속적 발굴

- ① (필요성) 행정처리에 국한된 단편적 정보로 인하여 정책 수립 목적 활용 및 적용 한계. 구직도약 패키지 등 정책사업평가 연구과제 수행과 고용24 성과분석을 위한 결합 데이터셋에 대한 대내외 요구 증가 ('23년 데이터셋 243종 → '24년 299종)
- ② (기대효과) 연구과제 지원 및 고용정책담당자 데이터리터러시를 위한 데이터기반체계 구축. 국민이 사용가능한 다양한 융합·결합 데이터셋을 통해 민간경제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강화
 - * (24년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공모전 수상작 '잡생각(JOB THINKING)' →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③ (변동사항)

- MDB 운영 : ('25) 301 → ('26) 301백만원(전년동)

* 일반용역비(MDB 유지관리) : 301백만원

산출 근거				금액(원)
구 분	평균임금	투입공수(MM)	투입률	
MDB 유지관리 등	7,751,183	12.09	100%	93,711,802
직접인건비 합계				93,711,80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4%)				134,944,996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45,731,360
합계(VAT별도)				274,388,158
합계(VAT포함)				301,826,973

- 통합연계허브 운영 : ('25) 225 → ('26) 225백만원(전년동)

(2) 연계 기관 및 연계 항목의 지속적 증가

- ① (필요성) 고용24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관과의 추가적 서비스 연계 필요('23년 60개 기관 1,140종 서비스 → '25년 61개 기관 1,176종 서비스)
- ② (기대효과) 지속적인 연계 추가로 국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제공하며 추가적 서류 제출·검증에 소요되는 비용 감축 등

③ (변동사항)

- 데이터연계관리시스템 운영 : ('25) 103 → ('26) 103백만원(전년동)

- 통합연계허브관리 : ('25) 122 → ('26) 122백만원(전년동)

* 개발SW유지관리(데이터연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103백만원

계산식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857,459,331원 × 11.00% + 0 = 94,320,526원
합계(VAT포함)	103,752,579원

* 일반용역비(통합연계허브관리) : 122백만원

산출 근거				금액(원)
구 분	평균임금	투입공수(MM)	투입률	
통합연계HUB 관리	6,943,457	5.5	100%	38,189,014
직접인건비 합계				38,189,014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4%)				54,992,179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18,636,239
합계(VAT별도)				111,817,432
합계(VAT포함)				122,999,175

■ 바로원시스템 운영 : ('25) 287 → ('26) 287백만원(전년동)

(3) 국가 핵심시스템(2등급)에 부합하는 서비스 안전성 확보

- ① (필요성) 고용관련 모든 정보망에서 지원금 지급시 사전에 지원요건 확인을 위해 활용해야 하는 중요시스템(2등급)임에도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산정됨
 - * 고용24 서비스 개시로 바로원 사용량이 증가하여 부하로 장애가 간헐적 발생, 2013년에 도입된 노후화 된 서버의 증설에 제약이 있어 재구축을 위한 행안부 컨설팅 사업에 신청
 - 바로원은 행안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컨설팅 사업에 선정되어(25.3월) 행안부에서 컨설팅 사업이 진행중임에 따라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2027년에 재구축 예산을 요구할 예정 따라서, 2026년에는 전년 수준의 유지관리 비용만 요구
- ② (기대효과) 바로원은 정부의 지침을 준수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하여 2등급 정보망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③ (변동사항)

○ 바로원시스템 운영 : ('25) 287 → ('26) 287백만원(전년동)

* 개발SW 유지관리(바로원시스템 유지관리) : 287백만원

계산식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1,826,240,978원 × 14.28% + 0 = 260,787,212원
합계(VAT포함)	286,865,933원

■ 고용행정통합DW 운영 : ('25) 713 → ('26) 713백만원(전년동)

(4) 고용행정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업무시스템 제도 확대·개편에 따른 고용 행정데이터 운영 및 유지보수

- ① (필요성) 고용보험, HRD-NET 등 국가고용전산망 업무 시스템의 제도 확대·개편에 따른 시스템 변경 시 DW에 적기 반영하여 업무시스템과 동일한 기준의 정확한 통계 제공 필요
- ② (기대효과) 고용부 및 고용센터 업무 지원, 연구자료 활용, 각종 고용정책 발굴 지원
- ③ (변동사항)

○ 고용행정 통합 DW 운영 : ('25) 713 → ('26) 713백만원(전년동)

* 개발SW 유지관리(고용행정통합DW 유지관리) : 713백만원

계산식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5,168,184,049원 × 12.55% + 0 = 648,607,098원
합계(VAT포함)	713,467,808원

■ 고용행정데이터분석시스템 운영 : ('25) 271 → ('26) 271백만원(전년동)

(5) 신규 데이터셋 추가 발굴 및 안정적인 분석환경 제공

- ① (필요성) 고용행정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개방 데이터셋 추가 구축 및 사용편의성 제고를 통해 고용동향 및 정책과제 등 다양한 연구분석 지원, 각종 SW 라이선스 관리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 분석 환경 제공을 위해 필요
- ② (기대효과) 민간 연구활동 활성화, 안정적인 분석환경 제공
- ③ (변동사항)

○ 고용행정데이터분석시스템 운영 : ('25) 127 → ('26) 127백만원(전년동)

○ 데이터 분석 라이선스 갱신 : ('25) 144 → ('26) 144백만원(전년동)

* 일반용역비(고용노동데이터분석시스템 유지관리) : 127백만원

산출 근거				금액(원)
구 분	평균임금	투입공수(MM)	투입률	
포털 및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등	직무별 평균임금	5.75	직무별 투입공수	39,588,066
직접인건비 합계				39,588,066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4%)				57,006,81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19,318,976
합계(VAT별도)				115,913,856
합계(VAT포함)				127,505,242

* SW 구매비(데이터 분석 라이선스 갱신) : 144백만원

구 분	상 세	수 량	단 가	금 액
분석솔루션	SAS(Unix 24 Core)	1	97,477,600	97,477,600
분석솔루션 (동시접속자 10USER)	STATA 연구분석(1EA)	1	28,600,000	28,600,000
분석환경 OS	Windows 10 VDA (100EA)	1	18,700,000	18,700,000
합계(VAT 포함)				144,777,600

■ 데이터관리포털, 표준-품질관리시스템 운영 : ('25) 339 → ('26) 339백만원(전년동)

(6) 전자적 표준-품질관리 솔루션 도입 및 공공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 ① (필요성) 전자적 표준-품질 관리 및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오픈API의 관리
- ② (기대효과) 지속적, 일원화된 표준화-품질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국가고용전산망 데이터 품질 향상,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성 향상
- ③ (변동사항)

○ 데이터관리포털 및 표준-품질관리시스템 운영 : ('25) 339 → ('26) 339백만원(전년동)

* 일반용역비(데이터관리포털 및 표준-품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339백만원

산출 근거				금액(원)
구분	평균임금	투입공수(MM)	투입률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발 등	직무별 평균임금	14.65	직무별 투입공수	105,477,571
직접인건비 합계				105,477,571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4%)				151,887,702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51,473,055
합계(VAT별도)				308,838,328
합계(VAT포함)				339,722,161

② AI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 (2025 예산) 617백만원 → (2026 예산) 5,356백만원, 4,739백만원 증액

- (요구)

■ 일자리매칭시스템 운영

- *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 AI 고용서비스 로드맵의 단계적 수행 및 국민 경력개발 설계 지원을 위한 잡케어 경력 로드맵 개발, 시장정보 개발, 일자리 추천 알고리즘 개선 및 AI인프라 확충 추진
- 연관 국정과제 : (국정96)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 신규 AI 고용서비스 개발 및 운영

- * AI 고용서비스 로드맵 관련 인공지능 기반 개인, 기업 맞춤형 구직(잡케어+), 구인 서비스(펌케어)

구현 및 인공지능(AI) 기반 민원·행정 서비스 구축

- (산출)

■ 일자리매칭시스템 운영 : ('25) 617 → ('26) 617백만원(전년동)

(1) 잡케어 경력개발 정보 구축

- ① (필요성) '디지털고용서비스고도화' 국정과제 관련 고용정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인 생애 단계별 직업선택과 경력개발 지원을 AI기반으로 고도화하여 대국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 해외 사례 : 핀란드 정부의 오로라 AI 프로그램 및 생애 이벤트 시나리오별 서비스
- ② (기대효과) 직무능력에 기반한 일자리, 자격, 훈련 등을 추천하여 개인별 맞춤형 경력개발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고, 고용센터 등 취업알선기관의 직업상담 업무를 보완
- ③ (변동사항)
○ 잡케어 경력개발정보 개발 : ('25) 268 → ('26) 268백만원(전년동)
○ 잡케어 유지관리 : ('25) 58 → ('26) 58백만원(전년동)

* 일반용역비(잡케어 경력개발정보 개발) : 268백만원

산출 근거				금액(원)
구 분	평균임금	투입공수(MM)	투입률	
경력개발정보 개발	직무별 평균임금	9.66	직무별 투입공수	83,459,570
직접인건비 합계				83,459,570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4%)				120,181,780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40,728,270
합계(VAT별도)				244,369,620
합계(VAT포함)				268,806,582

* 개발SW 유지관리(잡케어 유지관리) : 58백만원

계산식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414,483,769원 × 12.9% + 0 = 53,468,406원
합계(VAT포함)	58,815,247원

(2) 추천 알고리즘 개선 및 유지관리

- ① (필요성)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워크넷, 취업지원/고용안정 전산망을 통해 일·훈련·자격 및 각종 정책, 기업, 심리검사 등의 정보를 정교하게 추천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선·강화하고 서비스 수요자 의견을 신속히 반영
* 해외 사례 : SkillSync 솔루션의 기계학습 기반 맞춤형 일자리 추천시스템, LinkedIn의 개인화된 일자리 추천 시스템
- ② (기대효과) 지속적인 추천정보 품질 향상, 추천 일자리정보의 이용편의성 및 일자리 품질 제고
- ③ (변동사항)
○ 추천알고리즘 개선 및 유지관리 : ('25) 256 → ('26) 256백만원(전년동)

* 일반용역비(추천알고리즘 개선 및 유지관리) : 256백만원

산출 근거				금액(원)
구 분	평균임금	투입공수(MM)	투입률	
일자리 추천 알고리즘 개선 및 유지	직무별 평균임금	10.26	직무별 투입공수	79,527,138
직접인건비 합계				79,527,138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4%)				114,519,078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38,809,243
합계(VAT별도)				232,855,459
합계(VAT포함)				256,141,005

(3) 직무데이터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 ① (필요성) 직무 데이터 사전 구축을 위한 단계별 모니터링 기능 개선 필요
* 해외 사례 : 유럽 직업안전보건청의 스마트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 ② (기대효과) 데이터 수집, 키워드 추출, 형태소 분석 등 직무데이터사전 구축 단계별 모니터링 강화로 직무데이터 품질 향상

③ (변동사항)

○ 직무데이터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 ('25) 35 → ('26) 35백만원(전년동)

* 개발SW 유지관리(직무데이터 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 35백만원

계산식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259,351,658원 × 12.50% + 0 = 32,418,957원
합계(VAT포함)	35,660,853원

■ 신규 AI 고용서비스 개발 및 운영 : ('25) 0 → ('26) 4,739백만원(순증)

(1) 신규 AI 고용서비스 개발

① (필요성 및 시급성) '24년 구인·구직 등 국민체감 효과가 매우 높은 서비스 중심의 'AI 고용서비스 시범과제 7종'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개발 추진 중이나,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프로토타입 개발, 개념검증·보완 필요

* 해외 사례 : 벨기에 플랑드르 공공서비스(VDAB)의 다양한 AI기반 도구 개발

② (기대효과) AI·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추진, 공공분야 AI 기술 내재화 및 확산

③ (변동사항)

○ 신규 AI 고용서비스 개발 및 운영 : ('25) 0 → ('26) 2,744백만원(순증)

- (총 투입공수) '26년 95.44M/M(순증)

※ 총 투입공수 : 투입인원 X 투입기간 X 투입률, '25년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 일반용역비(신규 AI고용서비스 개발 및 운영) : 2,744백만원

산출 근거				금액(원)
구분	평균임금	투입공수(MM)	투입률	
신규 AI 고용서비스 개발	직무별 평균임금	116.56	직무별 투입공수	852,104,602
직접인건비 합계				852,104,60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4%)				1,227,030,628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415,827,046
합계(VAT별도)				2,494,962,276
합계(VAT포함)				2,744,458,504

(2) AI 인프라 확충

① (필요성 및 시급성) 증가하는 고용AI 추진 과제 수행을 위해 고사양 데이터 분석 및 추론, 연산 작업 수행에 적합한 GPU 자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AI기술과 대용량 데이터 처리로 인해 기존 장비 활용의 어려움으로 AI 인프라 확충이 시급

② (기대효과) 부족한 AI 인프라 자원 확충으로 대국민 및 상담사에게 지속적인 고용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

③ (변동사항)

○ GPU 장비 임대 비용 : ('25) 0 → ('26) 1,195백만원(순증)

○ HCI 클라우드 서버 등 HW/SW 도입 비용 : ('25) 0 → ('26) 800백만원(순증)

* 임차료(GPU 장비) : 1,195백만원

구분	용도	금액(원)
HW	GPU 장비 임대	1,195,000,000
합계(VAT포함)		1,195,000,000

* HW/SW 구매비(HCI 클라우드 서버 등) : 800백만원

구분	용도	금액(원)
HW	HCI 클라우드 서버 도입	200,000,000
SW	서버 및 보안 관련 솔루션	600,000,000
합계(VAT포함)		800,000,000

③ 온톨로지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 (2025 예산) 1,411백만원 → (2026 예산) 1,411백만원, 전년동

- (요구)

- AI 고용서비스 로드맵 수행과제와 일자리매칭 서비스 등 기존 AI 서비스를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직무 관련 데이터 수집기관 확대 및 새로운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발굴 추진

- (산출)

- 온톨로지센터 운영 : ('25) 1,411 → ('26) 1,411백만원(전년동)

(1) 온톨로지센터 위탁운영

- ① (필요성) 직무 중심의 일자리매칭과 상담서비스 등 국민 개인별 정교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직무 데이터사전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이를 활용한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발굴 추진
- ② (기대효과) 직무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 성능, 직무 온톨로지 품질 및 매칭률 향상으로 잡케어 서비스 및 고용서비스 만족도 향상 도모하고 고품질의 고용 데이터 개방 지원

○ 온톨로지센터 운영 : ('25) 1,411 → ('26) 1,411백만원(전년동)

* 위탁운영비(온톨로지센터 운영) : 1,411백만원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직접 인건비 (A)	단가(월, 100%)	7,411,808	5,683,276	3,799,078	2,849,404
	투입인원	1	6	7	6
	투입개월	11.3	12	12	11
	소계 (단가x인원x개월)	83,753,430	409,195,872	319,122,552	188,060,664
재경비(B) (직접인건비x10%)		8,375,343	40,919,587	31,912,255	18,806,066
소계(C=A+B)		92,128,773	450,115,459	351,034,807	206,866,730
일반관리비(D) 소계(C) x 6%		5,527,726	27,006,928	21,062,088	12,412,004
이윤(E) ((C+D) x 10%)		9,765,650	47,712,239	37,209,690	21,927,873
합계(부가세제외) (C + D + E)		107,422,150	524,834,625	409,306,585	241,206,608
부가세(10%)		10,742,215	52,483,463	40,930,659	24,120,661
합계(부가세포함)		118,164,365	577,318,088	450,237,244	265,327,268
총 합계		1,411,046,965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5)를 기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 제2항), 1개월을 22일로 산정)

④ 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지원

: (2025 예산) 3,343백만원 → (2026 예산) 2,198백만원, 1,145백만원 감액

- (요구)

- 도입장비 임차료 및 유지보수료 요구
 - * 도입장비 임차료 : '20년 도입 장비 리스계약 만기에 따른 감액 및 금리 인상분 반영
- 시스템 및 SW 라이선스 유지관리비 요구
- 정보화 사업 감리용역 및 조달 수수료 등 기타 운영비 요구

- (산출)

- 장비 임차료 : ('25) 1,921 → ('26) 287백만원(△1,634백만원)

(1) 장비 임차

- ① (필요성) 장비 노후화 및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주기적으로 장비를 최신화 하고 최신 장비 도입으로 행정처리 속도와 정확성 향상에 필요
- ② (기대효과) 최신 장비 도입으로 인한 국가고용전산망의 안정적 운영
- ③ (변동사항)

○ 장비 임차료: ('25) 1,921 → ('26) 287백만원(△1,634백만원)

※ '20년 도입 장비 리스계약 만기에 따른 감액

* 장비 임차료 : 287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임차료	3,281,000,000	1,920,217,228	287,427,288
합 계	3,281,000,000	1,920,217,228	287,427,228

■ 시스템 유지보수료 : ('25) 853 → ('26) 1,158백만원(+305백만원)

(2) 시스템 유지보수

- ① (필요성) HW의 권장 유지보수 요율인 6~8% 중 7%로 적용, 상용SW 권장 유지보수 요율인 12~20% 중 12%로 적용
- ② (기대효과) 장애 발생 대비 사전점검 및 기술지원, 안정적인 부품 수급
- ③ (변동사항)

○ 시스템 유지보수: ('25) 853 → ('26) 1,158백만원(+305백만원)

* 시스템 유지보수료

구분	도입비	요율	요율적용예산
HW	7,839,000,000	7%	549,000,000
SW	5,074,000,000	12%	609,000,000
계	12,913,000,000		1,158,000,000

■ 일자리플랫폼 SW 라이선스 유지관리 : ('25) 234 → ('26) 418백만원(+184백만원)

(3) SW 라이선스 유지관리

- ① (필요성) 브로드컴의 VMware 인수 후 영구라이선스 판매 중단 및 서브스크립션 기반 라이선스로 전환함에 따라 '26년부터 VMware 구독 라이선스 추가 및 라이선스 비용 상승 반영 (184백만원)
- ② (기대효과) AI 일자리매칭시스템 구축 2차 사업에서 최초 VMware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활용하여, 향후 안정적인 운영 및 패치/보안 등 기술지원 기대
- ③ (변동사항)

○ SW 라이선스 유지관리 : ('25) 234 → ('26) 418백만원(+184백만원)

* SW 라이선스 유지관리 : 418백만원

구 분	설명	단가	개수	금액(원)
시스템SW 사용권	OS(RHEL) (16EA)	34,287,360	1	34,287,360
	OS(RHEL) Virtual Datacenters (9EA)	59,148,360	1	59,148,360
	WAS(JBoss WAS 16Core) (3EA)	63,986,040	1	63,986,040
	WAS(JBoss WAS 64Core) (1EA)	76,787,880	1	76,787,880
	WEB(JBoss 16Core) (1EA)	4,001,160	1	4,001,160
	VMware vSphere 8 (9노드)	158,400,000	1	158,400,000
	DBMS(MariaDB)	21,600,000	1	21,600,000
합 계(VAT포함)				418,210,800

■ 기타 운영비 : ('25) 335 → ('26) 335백만원(전년동)

(4)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고용서비스 지원 운영비

- ① (필요성) 사업의 품질 확보 및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행정안전부 지침 등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감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② (기대효과) 공공사업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 향상, 정보화사업의 품질과 완성도 향상
- ③ (변동사항)

○ 감리용역비 및 조달수수료 : ('25) 335 → ('26) 335백만원(전년동)

※ 감리용역비 및 조달수수료 부족분에 대해서는 낙찰차액 활용

④ (대상 사업)

* MDB운영 일반용역비(301백만원), 통합연계허브운영 개발SW유지관리(225백만원), 바로원시스템 운영 개발SW유지관리(287백만원), 고용행정통합DW운영 개발SW유지관리(713백만원), 고용행정데이터분석시스템 운영 일반용역비(271백만원), 데이터관리포털 운영 일반용역비(339백만원), 일자리매칭시스템 운영 개발SW유지관리(617백만원), 신규 시고용서비스 개발 일반용역비 및 임차료 (3,239백만원), 온톨로지(데이터센터) 운영 (1,411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507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7,507,000천원			11,101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11,101,000천원		
	1.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2,136,000천원				1.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2,136,000천원		
	가. MDB 운영 301,000천원				가. MDB 운영 301,000천원		
	· 일반용역비 9.55MMx28.65백만원 x1.1부가세 301,000천원				· 일반용역비 12.09MMx22.663백만원x1.1부가세 301,000천원		
	나. 통합연계허브 운영 225,000천원				나. 통합연계허브 운영 225,000천원		
	· 개발 SW 유지관리 0.11요율x847.5백만원 x1.1부가세 103,000천원				· 개발 SW 유지관리 0.11요율x851.2397백만원x1.1부가세 103,000천원		
	· 일반용역비 5.32MMx20.85백만원 x1.1부가세 122,000천원				· 일반용역비 5.5MMx20.2백만원 x1.1부가세 122,000천원		
	다. 바로원시스템 운영 287,000천원				다. 바로원시스템 운영 287,000천원		
	· 개발 SW 유지관리 0.1425요율x1,829백만원x1.1부가세 287,000천원				· 개발 SW 유지관리 0.1428요율x1,826백만원x1.1부가세 287,000천원		
	라. 고용행정통합DW 운영 713,000천원				라. 고용행정통합DW 운영 713,000천원		
	· 개발 SW 유지관리 0.1225요율x5,288백만원x1.1부가세 713,000천원				· 개발 SW 유지관리 0.1255요율x5,164.8백만원x1.1부가세 713,000천원		
	마. 고용행정데이터분석시스템 운영 271,000천원				마. 고용행정데이터분석시스템 운영 271,000천원		
	· 일반용역비 5.52MMx20.92백만원 x1.1부가세 127,000천원				· 일반용역비 5.75MMx20.079백만원x1.1부가세 127,000천원		
	· SW라이선스갱신비 1회x144백만원 144,000천원				· SW구매비 1회x144백만원 144,000천원		
	바. 데이터관리포털 운영 339,000천원				바. 데이터관리포털 운영 339,000천원		
	· 일반용역비 12.92MMx23.82백만원 x1.1부가세 339,000천원				· 일반용역비 14.65MMx21.05백만원 x1.1부가세 339,000천원		
	2. AI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617,000천원				2. AI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5,356,000천원		
	가. 일자리매칭시스템 운영 617,000천원				가. 일자리매칭시스템 운영 617,000천원		
	· 일반용역비 21MMx22.68백만원 x1.1부가세 524,000천원				· 일반용역비 19.92MMx23.9백만원 x1.1부가세 524,000천원		
	· 개발 SW 유지관리 0.11975요율x706백만원 x1.1부가세 93,000천원				· 개발 SW 유지관리 0.125요율x673.84백만원 x1.1부가세 93,000천원		
	3. 온톨로지(데이터센터) 운영 1,411,000천원				3. 온톨로지(데이터센터) 운영 1,411,000천원		
	가. 온톨로지 센터 운영 1,411,000천원				가. 온톨로지 센터 운영 1,411,000천원		
	· 일반용역비 15MMx85.52백만원 x1.1부가세 1,411,000천원				· 일반용역비 20MMx64.136백만원 x1.1부가세 1,411,000천원		
	4. 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지원 3,343,000천원				4. 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지원 2,198,000천원		
	가. 도입장비 유지관리 및 임차료 3,008,000천원				가. 도입장비 유지관리 및 임차료 1,863,000천원		
	· 임차료 1회x1,921백만원 1,921,000천원				· 임차료 1회x287백만원 287,000천원		
· 시스템 유지보수로 0.0661요율x1,2904.69백만원 853,000천원			· 시스템 유지보수로 0.095요율x12,190백만원 1,158,000천원				
· 시스템SW 유지관리 1회x234백만원 234,000천원			· 시스템SW 유지관리 1회x418백만원 418,000천원				
나. 기타 운영비 335,000천원			나. 기타 운영비 335,000천원				
· 일반수용비 1회x335백만원 335,000천원			· 일반수용비 1회x335백만원 335,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기자 포함) / (t-2)년 청년공제 가입인원(철회 · 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보험자 전수조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국가일자리플랫폼(MDB) 및 통합연계 허브, 바로원 운영 - 데이터포털,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고용노동데이터 공동이용시스템 운영 - 머신러닝기반 일자리 매칭 시스템 운영
2023	- 대국민 잡케어 서비스
2024	- 일자리정책관리시스템, 데이터관리포털, DQ, META 개편 - 고용행정포털 고용안정지원금 구축에 따른 지원금 DW 개편
2025	- 상담용 잡케어 ui/ux 전면개편 - 고용24 행정 실업급여관련 AI 고용상담 시범 적용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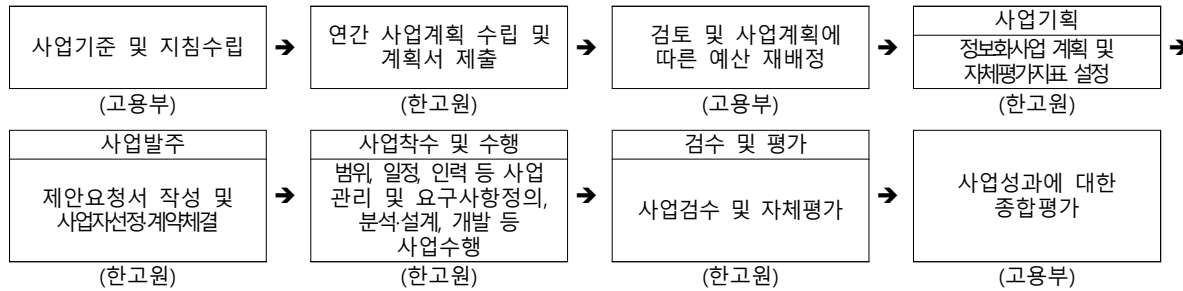
- **(통합적 고용서비스 창출)**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통합적 고용서비스 창출 가능
- **(효과적인 정책수립 지원)** 고용·노동 통합 DW를 활용한 정책분석 고도화 및 연구 활성화 지원
- **(행정업무 효율화)** 시스템의 단절성으로 인한 정보검색 등 행정업무처리의 중복 최소화 및 필요정보 즉시 제공으로 인한 정보 접근성 강화로 업무효율성 증대, 고객 접점 및 지원 이력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고객 응대 시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고객 정보 활용 강화로 제도 및 지원사업의 세부적 개선 기회 확대
- **(시스템 운영 효율화)** 계정·권한관리의 통합 및 체계 일원화로 운영의 편리성 및 효율성 강화, 시스템별 Silo적 인프라 운영이 통합되어 IT자원의 효율화 및 보안성 강화
- **(핵심정보 생산·개방)** 고용정책 및 전략수립을 위한 고객(기업·개인), 고용현황, 근로조건 등 공통된 기준의 핵심정보를 생산 → 공유·개방함으로써 고용정보 생태계 조성에 기여
- 직무역량 중심 일자리 매칭 서비스로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및 직무역량 중심 의사소통 원활화로 직무역량 기반 채용 확산, 직무데이터 기반 지능형 고용서비스 기반 확보
- **(지능형 진로지도 상담서비스 제공)** 고용복지+센터 상담사에게 구직자의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진로지도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 서비스 구축
- **(대국민 서비스 향상)** 대국민 생애주기 지원 및 대상별 종합일괄(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증대, MDB 기반 고객분석역량 확보로 행정 서비스 다양화를 실현하여 대국민 신뢰도 향상, 고용노동 데이터 공유채널 통합 및 일원화로 인해 고용노동 데이터 활성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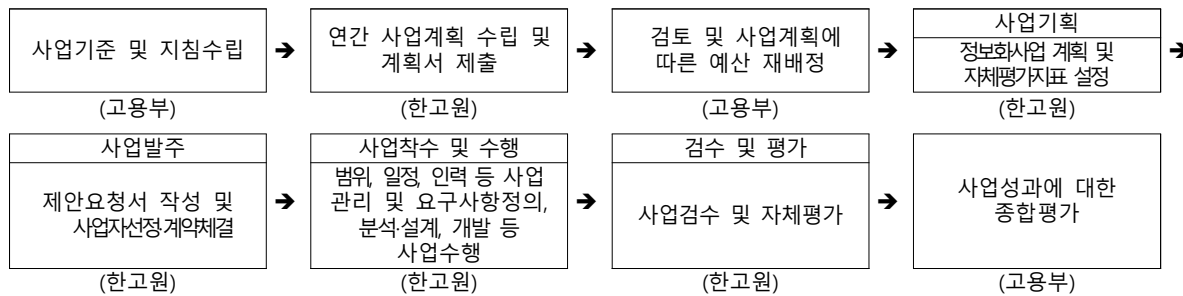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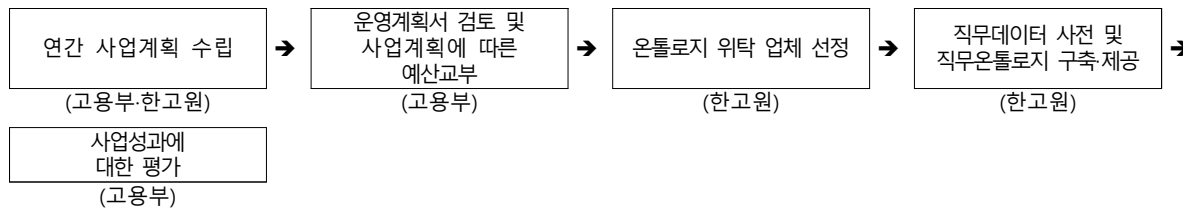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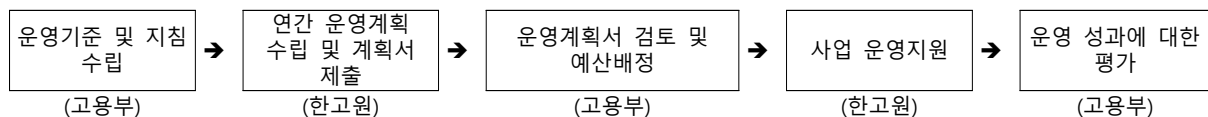
- AI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 온톨로지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 일자리정보플랫폼 운영지원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24년 성과)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431	-	8,431	8,431	8,431	100	100	-	-
2023	7,853	-	7,853	7,853	7,853	100	100	-	-
2024	8,216	-	8,216	8,216	8,216	100	100	-	-
2025	7,507	-	7,507	7,507	7,507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2)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지원(정보화)(1075-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75	303
명칭	고용창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운영(정보화)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지원(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지원 (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
고용24 대민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주체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 통합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지원 (정보화)	5,714	6,047	6,047	7,523	7,523	1,476	24.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714	5,714	5,714	-	-	6,047	6,047	6,047	-	-	7,523
· 고용24 대민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1,562	1,562	1,562	-	-	1,671	1,671	1,671	-	-	2,712
· 고용행정 통합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1,406	1,406	1,406	-	-	1,354	1,354	1,354	-	-	1,484
· 디지털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2,746	2,746	2,746	-	-	3,022	3,022	3,022	-	-	3,3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24 대민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①고용관련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②민원신청 및 수혜이력 서비스 단일화 ③고용서비스에 대한 비대면·디지털화 지원
④통합데이터 기반 개인·기업 맞춤형서비스 고용통합서비스 제공
- (고용행정 통합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①5대 주요 고용행정서비스를 통합·효율성이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 ②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각종 솔루션 적용 및 서비스 운영
③정책수립부터 집행, 검증까지 정책의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하는 프로세스 운영관리 등
고용행정통합포털 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고용·직업정보의 수집·관리)

제15조(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고용·직업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 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40조(위탁)

제40조(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제15조의5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② 추진경위

-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확충) 고용정보시스템의 통합정보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한국판 뉴딜) 개인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추천·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경력·훈련·자격 등)를 통합·디지털화
-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존 정보망으로 분산 제공되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통합·일원화한 ‘고용24’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2021년) 고용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24 구축방안 수립 ISP 사업(‘21.3.~11.)
- (2022년)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 구축사업 추진(‘22.10.~’23.12.)
- (2023년)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3단계) 표준API 구축사업 추진(‘23.5.~’24.2.)
- (2024년) 고용24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시범)(‘24.5.)
- (2024년) 고용24 대민포털 정식서비스 개시(‘24.9.)
- (2025년) 행안부 Any-ID 로그인 연계(‘25.6)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942	5,218	5,714	6,047	7,523

- 기타: 통합고용 민원 시스템 '고용24' 및 '고용행정통합포털' 운영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구직자, 청소년, 실업자, 구인업체, 진로지도담당자 등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지원 (정보화)	출연	한국고용 정보원	7,523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제5항 및 제40조(위탁)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지원

: (2025 예산) 6,047백만원 → (2026 예산) 7,523백만원, 1,476백만원 증액

① 고용24 대민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 (2025 예산) 1,671백만원 → (2026 예산) 2,712백만원, 1,041백만원 증액

- (요구)

■ 고용24 운영

* (고용24 대민포털 유지관리) 취업알선, 고용보험, 직업훈련, 고용허가, 국민취업 등 고용분야 민원신청·신고 통합 서비스 유지관리, 일자리·훈련·제도 검색, 정보제공 서비스 유지관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 따른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24.2)' 단계적 적용

■ 고용24 대민포털 고도화 및 서비스 확대

* (상담 예약관리시스템) 사용자의 경험을 고려하여 편리하고 체계적인 고객상담 관리를 위한 온라인 상담예약 시스템 구축(민원인의 지속적인 요청 사항)

- (산출)

■ 고용24 대민포털 유지관리 : ('25) 1,671 → ('26) 2,276백만원(+605백만원)

(1) 기 개발된 대민포털의 안정적 유지는 물론 다양한 고객의견을 서비스 운영에 반영

① (필요성) 다수의 차세대 국가정보망 오픈 차질(NEIS('23년, 교육부), 복지로('22년, 복지부) 등)에도 불구하고 '24년 고용24 대민포털 조기 안착 성공, 서비스에 대한 품질과 사용의 편의성 지원 등 수요자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

→ 고용24는 현재('25.7월) 일평균 방문수 373%('24.3월 대비), 회원수 53.5%('24.3월 대비) 지속적 증가 추세,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화 필요

* 고용24 일평균 방문수: ('24.3월) 22.3만 → ('24.12월) 64.8만 → ('25.7월) 105.4만

* 고용24 누적 회원수: ('24.3월) 762만 → ('24.12월) 1,023만 → ('25.7월) 1,170만

② (기대효과) 사용자 간담회, VoC 등을 통해 요청하는 프로그램 개선 요구사항을 검토 후 신속히 서비스에 반영함으로써 구직자의 취업률 향상 및 구인기업의 인력수급 문제 해결에 기여

③ (변동사항)

○ 고용24 대민포털 운영 : ('25) 1,397 → ('26) 2,276백만원(+879백만원)

- (FP) '25년 18,151.9 → '26년 23,623.1(+5,471.2)

- (FP 단가) '25년 553,114원 → '26년 605,784원(+52,670원)

- (요율) '25년 10.05% → '26년 12.0%(+1.95%p)

○ 디지털 플랫폼 정부 API 연계서비스 구축 : ('25) 274백만원 → ('26) 0원(순감)

* 개발SW 유지관리(고용24 대민포털 유지관리) : 2,276백만원

계산식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17,242,501,985원 × 12% + 0 = 2,069,100,238원
총액(VAT포함)	2,276,010,000원

■ 고용24 대민포털 고도화 및 서비스 확대 : ('25) 0 → ('26) 436백만원(순증)

(1) 상담 예약관리시스템

① (필요성 및 시급성) 현재 고용센터는 내방자가 직접 방문하여야만 상담이 가능하여 접근성 및 편의성이 현저히 낮고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화상상담과 예약상담 요구가 많음에도 상담 예약 관리시스템 부재로 민원인의 불만이 높음

② (기대효과) 실시간 온라인 상담예약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의 접근성 향상과 상담 대기 시간 감소가 예상되며 또한, 상담사 개인 스케줄링 관리로 예약 중복 누락방지로 행정부담은 감소되어 상담업무의 효율성 제고

③ (변동사항)

○ 상담예약시스템 : ('25) 0 → ('26) 90백만원(순증)

- (총 투입공수) '25년 0M/M → '26년 3.25M/M(순증)

※ 총 투입공수 : 투입인원 × 투입기간 × 투입률

※ '25년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 HW/SW 구매비 : ('25) 0 → ('26) 346백만원(순증)

* 일반용역비(상담예약시스템) : 90백만원

산출 근거				금액(원)
구 분	평균임금	투입공수(MM)	투입률	
상담예약시스템	직무별 평균임금	3.25	직무별 투입공수	27,972,539
직접인건비 합계				27,972,539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4%)				40,280,457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13,650,599
합계(VAT별도)				81,903,595
합계(VAT포함)				90,093,954

* HW/SW구매비: 346백만원

구 분	용 도	대 수	단 가	금 액
HW	HCI 서버 증설	1	100,000,000	100,000,000
	스위치 증설	1	17,000,000	17,000,000
	소 계			117,000,000
SW	서버보안	2	3,000,000	6,000,000
	채팅상담 솔루션	1	192,000,000	192,000,000
	소 계			198,000,000
합 계				315,000,000
부가세				31,500,000
총 계(부가세 포함)				346,500,000

② 고용행정통합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 (2025 예산) 1,354백만원 → (2026 예산) 1,484백만원, 130백만원 증액

- (요구)

■ 고용행정통합포털 안정적 운영

- * (고용행정통합포털 유지관리) 취업알선, 고용보험, 직업훈련, 고용허가, 국민취업지원 등 고용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기관(고용센터, 자치단체, 민간위탁기관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처리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 * (유관기관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워크투게더(장애인공단), 중장년내일센터(노사발전재단), 고용복지플러스(고용부) 등 고용관련 정보망을 고용행정통합포털로 일원화하기 위한 비용

- (산출)

■ 고용행정통합포털 안정적 운영 : ('25) 1,354 → ('26) 1,484백만원(130백만원 증)

(1) 개별 운영 중인 취업지원시스템 고용행정통합포털로 통합 확대

- ① (필요성) 고용행정통합포털 구축 당시 제한된 예산 내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중요도가 낮은 시스템은 고용행정통합포털로 통합하지 않고 개별 운영 중

* 통합하지 못한 유사서비스(워크투게더, 중장년내일센터, 고용복지플러스 등)

→ 정부의 3~4등급 시스템 통폐합 정책에 따라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폐지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고용행정통합포털로 단계적 통합 추진

- ② (기대효과) 개별 시스템에서 처리했던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어 업무효율성이 향상되고 시스템별 구매했던 정보자원(SW, 라이선스)의 비용도 절감

③ (변동사항)

○ 고용행정 통합포털 유지관리 : ('25) 1,354 → ('26) 1,484백만원(+130백만원)

- (FP) '25년 17,603.5 → '26년 15,407.7(△2,195.8)

- (FP 단가) '25년 553,114원 → '26년 605,784원(+52,670원)

- (요율) '25년 10.50% → '26년 12.00%(+1.5%p)

* 개발SW 유지관리(고용행정 통합포털 유지관리) : 1,484백만원

계산식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산정된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직접경비
합계(VAT별도)	11,246,081,075원 × 12.00% + 0 = 1,349,529,729원
총액(VAT포함)	1,484,482,000원

③ 디지털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 (2025 예산) 3,022백만원 → (2026 예산) 3,327백만원, 305백만원 증액

- (요구)

■ 도입장비 임차료 및 유지보수료

* HW/SW 임차료 및 도입장비 유지보수료, 클라우드 시스템 SW 사용권 등 시스템 운영비 반영

■ 본인인증 및 정보 알림 서비스

* 고용24 신규회원 가입의 본인인증 및 민원신청 정보 알림 SMS 비용

■ 고용24 대민 서비스 콜센터(전산 문의) 위탁운영비

■ 정보화사업 감리용역 및 조달청 수수료, 웹사이트 품질관리 등 운영성 경비

- (산출)

■ 도입장비 임차료 및 유지보수로 : ('25) 1,982 → ('26) 2,287백만원(+305백만원)

(1) 장비 임차

① (필요성) 장비 노후화 및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주기적으로 장비를 최신화하고 최신 장비 도입으로 행정처리 속도와 정확성 향상에 필요

② (기대효과) 최신 장비 도입으로 인한 국가고용전산망의 안정적 운영

③ (변동사항)

○ 장비 임차 : ('25) 1,091 → ('26) 603백만원(△488백만원)

※ '21년 도입 장비 리스계약 만기에 따른 감액

* 장비 임차료 : 603백만원

(단위 : 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임차료	1,091,000,000	1,091,000,000	603,200,000
합 계	1,091,000,000	1,091,000,000	603,200,000

(2) 시스템 유지보수

① (필요성) HW의 권장 유지보수 요율인 6~8% 중 7%로 적용, 상용SW 권장 유지보수 요율인 12~20% 중 12%로 적용

② (기대효과) 장애 발생 대비 사전점검 및 기술지원, 안정적인 부품 수급, 업무 연속성 확보

③ (변동사항)

○ 시스템 유지보수 : ('25) 551 → ('26) 1,111백만원(+560백만원)

* 시스템 유지보수로 : 1,111백만원

구분	도입비	요율	요율적용예산
HW	3,499,289,900	7%	244,950,293
SW	7,220,793,460	12%	866,495,215
계	10,720,083,360		1,111,445,508

(3) 시스템SW 유지관리

① (필요성) WEB, WAS, DB 등 서버 운영을 위한 필수 OS, 미들웨어 SW 사용료 필요

② (기대효과)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등 안정적인 기술지원

③ (변동사항)

○ 시스템SW 유지관리 : ('25) 340 → ('26) 573백만원(+233백만원)

* 클라우드 SW 유지관리 : 573백만원

구분	설명	단가	개수	금액(단위: 원)
시스템SW 사용권	[MM0232248] 16Core Standard per core Red Hat JBoss Web Server, 16-Core Standard Subscription	3,600,000	1	3,600,000
	[MM0290056] 64Core Standard per core Red Hat JBoss Web Server, 64-Core Standard Subscription	12,800,000	1	12,800,000
	Redhat Enterprise Linux for Server_Standard(1yr Sub)	43,560,000	1	43,560,000
	VMware vSphere 8 Foundation(680 Core)	403,040,000	1	403,040,000
	VMware vSAN(36TB)	31,680,000	1	31,680,000
기능SW 사용권	RPA 운영 소프트웨어	78,540,000	1	78,540,000
계				573,220,000

■ 본인인증 및 알림 서비스 : ('25) 886 → ('26) 886백만원(전년동)

(4) 본인인증 및 알림 서비스

- ① (필요성) 고용24 신규회원 가입 및 기본정보 변경 시 소요되는 본인인증 비용 반영, 민원처리 단계별(신청, 처리중, 보완, 처리완료 등)로 알림서비스 제공 확대
- ② (기대효과) 민원신청 단계별 알림서비스 원활한 운영
- ③ (변동사항)
 - 고용24 본인인증 서비스 사용료 : ('25) 644 → ('26) 644백만원(전년동)
 - 민원신청 단계별 알림서비스 확대 : ('25) 242 → ('26) 242백만원(전년동)

■ 기타 운영비 : ('25) 154 → ('26) 154백만원(전년동)

(6)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지원 운영비

- ① (필요성) 사업의 품질 확보 및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행정안전부 지침 등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감리 비용 요구, 안정적인 웹사이트 품질 제공을 위한 품질 진단 금액 필요
- ② (기대효과) 공공사업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 향상, 정보화사업의 품질과 완성도 향상
- ③ (변동사항)
 - 정보화사업 감리용역 및 조달청 수수료 : ('25) 104 → ('26) 104백만원(전년동)
 - * 고용24대민포털안정적운영 개발SW유지관리(2,276백만원), 고용24대민포털고도화 및 서비스확대 개발SW유지관리비(436백만원), 고용행정통합포털안정적운영 개발SW유지관리비(1,484백만원)
 - 웹사이트 관리 : ('25) 50 → ('26) 50백만원(전년동)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047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6,047,000천원			7,523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7,523,000천원		
	1. 고용24 대민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1,671,000천원				1. 고용24 대민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2,712,000천원		
	가. 고용24 대민포털 안정적 운영 1,671,000천원				가. 고용24 운영 2,276,000천원		
	· 개발 SW 유지관리 0.105요율x12,097백만원x1.1부가세 1,397,000천원				· 개발 SW 유지관리 0.12요율x17,242백만원x1.1부가세 2,276,000천원		
	· SW 개발비 249백만원x1.1부가세 274,000천원				나. 고용24대민포털 고도화 및 서비스 확대 436,000천원		
	2. 고용행정통합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1,354,000천원				· SW개발비 3.25MMx25,201백만원x1.1부가세 90,000천원		
	가. 고용행정통합포털 안정적 운영 1,354,000천원				· HW/SW 구매비 314.5백만원x1.1부가세 346,000천원		
	· 개발 SW 유지관리 0.10495요율x11,731백만원x1.1부가세 1,354,000천원				2. 고용행정통합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1,484,000천원		
	3. 디지털고용서비스 운영지원 3,022,000천원				가. 고용행정통합포털 안정적 운영 1,484,000천원		
	가. 도입장비 임차료 및 유지보수료 1,982,000천원				· 개발 SW 유지관리 0.12요율x11,246백만원x1.1부가세 1,484,000천원		
· 임차료 1호x1,091백만원 1,091,000천원			3. 디지털고용서비스 운영지원 3,327,000천원				
· 시스템 유지보수료 0.0522요율x10,565백만원 551,000천원			가. 도입장비 유지관리 및 임차료 2,287,000천원				
· 시스템SW 유지관리 1호x340백만원 340,000천원			· 임차료 1호x603백만원 603,000천원				
나. 본인인증 및 알림서비스 886,000천원			· 시스템 유지보수료 0.1036요율x10,720백만원 1,111,000천원				
· 일반수용비 12개월x73.8백만원 886,000천원			· 시스템SW 유지관리 1호x573백만원 573,000천원				
다. 기타운영비 154,000천원			나. 본인인증 및 알림서비스 886,000천원				
· 일반수용비 1호x154백만원 154,000천원			· 일반수용비 12개월x73.8백만원 886,000천원				
			다. 기타운영비 154,000천원				
			· 일반수용비 1호x154백만원 154,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기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입인원(철회· 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 험피보험자 전수조사/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 구축 사업 추진 중('22.8)
2023	- 고용24 시범 서비스 실시('23.12)
2024	- 고용24 정식 서비스 오픈('24.9)
2025	- 행안부 Any-ID 로그인 연계('25.6)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국민 측면

- (민원인 접근성 향상) 정부기관 방문 등을 통한 별도의 증빙서류 발급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음
- (민원서비스 편의성 향상) 지원금 선제 추천으로 민원인은 지원금 탐색, 요건 충족여부 판단 등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대국민 생애주기 지원 및 대상별 종합일괄(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증대

○ 업무담당자 측면

- (행정업무 효율화) 기존 시스템의 정보연계단절로 인한 정보검색 등 복잡한 행정업무를 단순화하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의 실시간화로 정보접근성 강화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
- (고객정보 통합제공) 고객접점 및 지원이력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고객응대 시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 (업무처리 담당자) 지원금 요건 판단, 정보 입력 등 단순 업무 감축으로 취업 지원 상담 등 본연 업무에 집중
- (긴급상황 대응) 고용서비스의 비대면·온라인화 지원으로 코로나19 등 팬데믹 재발 시 대응 능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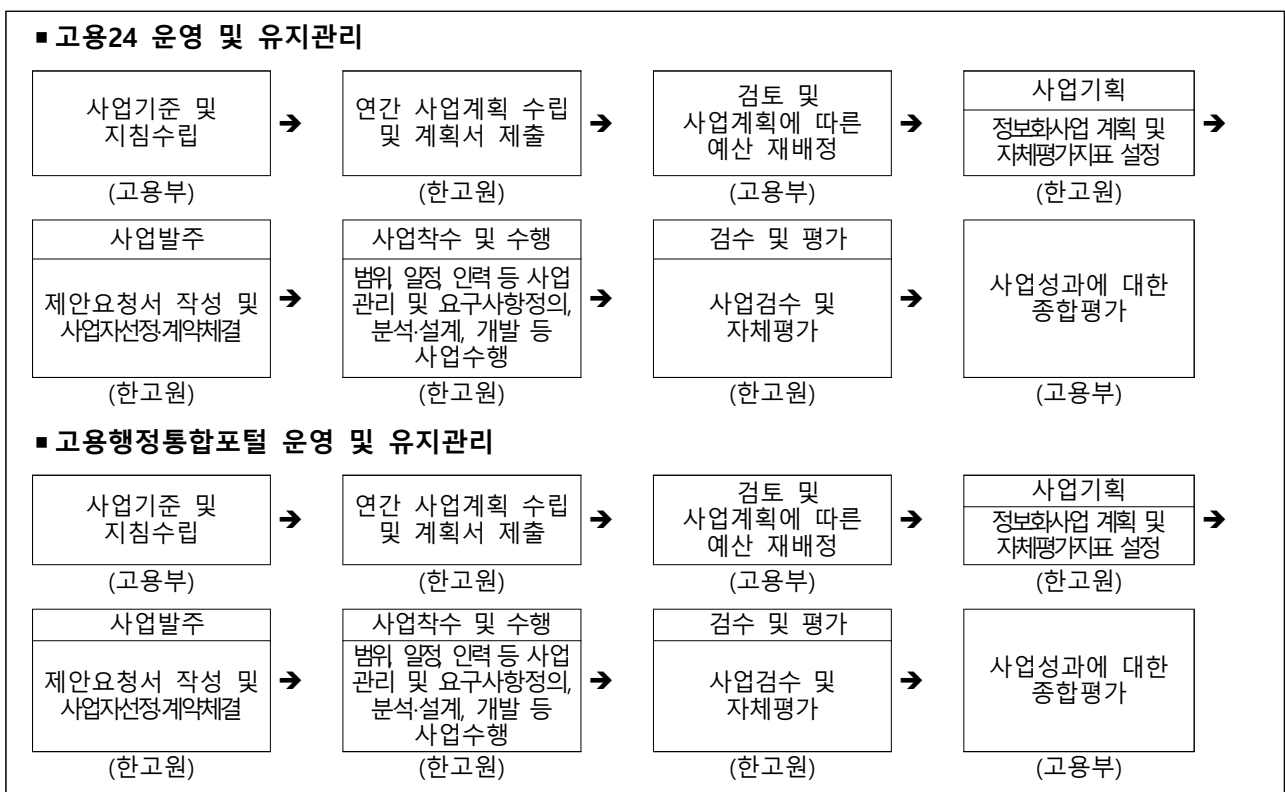
○ 정책입안자 측면

- (재정 효과성 증대) 기존 및 신규 지원사업 용어, 검토항목 표준화를 통한 유사 사업군 내 중복지원 가능성을 줄이고 누락 방지대상 확대 등 관리를 통한 재정관리 효과성 증가
- (제도 효율 연계분석) 고객정보활용 강화로 제도 및 지원사업의 세부적 개선 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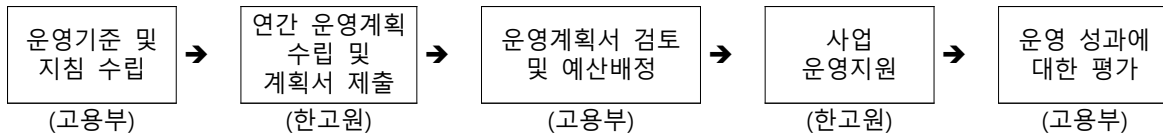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디지털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24년 성과) :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8,942	-	18,942	18,942	18,942	100	100	-	-
2023	5,218	-	5,218	5,218	5,218	100	100	-	-
2024	5,714	-	5,714	5,714	5,714	100	100	-	-
2025	6,047	-	6,047	6,047	6,047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3) 내일배움카드(일반)(11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0
명칭	직업능력개발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내일배움카드(일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돌봄서비스 훈련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일반고 특화훈련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내일배움카드(일반)	577,838	580,161	596,161	627,325	627,325	47,164	8.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84,906	591,270	577,838	-	13,432	580,161	596,161	593,909	38	2,214	627,325
·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	-	-	-	-	-	498,116	497,616	496,590	-	1,026	541,313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473,188	475,688	475,499	-	189	478,116	477,616	477,065	-	551	521,313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	-	-	-	20,000	20,000	19,525	-	475	20,000
· 돌봄서비스 훈련	35,000	27,000	15,707	-	11,293	33,100	33,600	33,566	-	34	29,440
· 일반고 특화훈련	49,230	49,230	48,818	-	412	45,557	61,557	60,627	-	930	55,383
· 평생크레딧	25,000	32,117	31,576	-	541	-	-	-	-	-	-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	4,447	3,959	-	488	-	-	-	-	-	-
·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1,000	1,300	1,300	-	-	900	900	900	-	-	-
· 운영비 등	1,488	1,488	979	-	509	2,488	2,488	2,226	38	224	1,18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 내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민간 혁신훈련기관,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 대학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 내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노동시장 참여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기초훈련 지원
- (돌봄서비스 훈련) 노인돌봄, 보육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제도적으로 양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특화훈련을 신설하여 체계적 관리
- (일반고 특화훈련)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확대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②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

2.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직업·진로상담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98년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자 취·창업훈련 및 고학력 미취업자 대상 취업유망분야 훈련 실시
- '08.9월 공급자 중심의 기존 직업훈련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물량배정방식 실업자훈련
• 공급자(정부, 훈련기관) 중심 • 고용센터 훈련상담 미실시 • 배정물량에 따라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모집·실시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수요자(실업자, 기업) 중심 • 고용센터 훈련상담 실시 • 훈련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좌를 발급받은 실업자 스스로 적합훈련과정 선택·수강

- '11년 계좌제 훈련 전면 실시(물량배정방식 실업자훈련 폐지)
- '15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방식 통합
- '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일반회계), 전직실업자 등능력개발지원(고보기금), 근로자능력개발지원(고보기금) 사업 간 통·폐합
- '21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본사업 시행
- '22년 「K-디지털 크레딧」(고보기금)을 「평생크레딧」(일반회계)으로 이관 및 사업 확대·개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26,290	518,815	584,906	580,161	627,325

- 기타: '25년 훈련규모 206,905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업 수혜자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모든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

■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 (2025 예산) 478,116백만원 → (2026 예산) 521,313백만원, 43,197백만원 증액

- (요구) 훈련비 자부담 부과 및 훈련장려금 개편, AI 훈련 강화를 위한 지원 규모 확대

㉠ 자부담 10% 부과(AI과정 제외)

㉡ 훈련장려금 인상(月 116 → 200천원), AI과정 및 선도기업 특별훈련수당 차등 지급*

* AI과정(수도권 20만원, 비수도권 40만원, 인구감소지역 60만원), 선도기업 등(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20만원, 인구감소지역 30만원)

- (산출)

㉢ 훈련비, 훈련장려금 등 : 520,353백만원(49,500명×10,512천원)

㉣ 운영비 : 960백만원(16개 기관×60,000천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78,166	○ 기타보전금(310-04) : 476,906백만원 가. 훈련비, 훈련수당(훈련장려금·특별훈련수당) 476,906,000천원 • 45,125명×10,569천원=47,926,125천원 • 조정재원(△20,125천원) ○ 일반용역비(210-04) : 1,260백만원 가. 운영비 1,260,000천원 • 21개 기관×60,000천원=1,260,000천원	521,313	○ 기타보전금(310-04) : 520,353백만원 가. 훈련비, 훈련수당(훈련장려금·특별훈련수당) 520,353,000천원 • 49,500명×10,512천원=520,353,000천원 나. 조정재원(9,000천원) ○ 일반용역비(210-04) : 960백만원 가. 운영비 960,000천원 • 16개 기관×60,000천원=960,000천원

■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2025 예산) 20,000백만원 → (2026 예산) 20,0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전공자 등을 위한 기초·예비 과정을 원격으로 제공

- (산출) 훈련비 등 20,00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000	○ 기타보전금(310-04) : 20,000백만원 가. 훈련비 20,000,000천원 • 66,600명×300천원=19,980,000천원 • 조정재원 (20,000천원)	20,000	○ 기타보전금(310-04) : 20,000백만원 가. 훈련비 20,000,000천원 • 66,600명×300천원=19,980,000천원 • 조정재원 (20,000천원)

② 돌봄서비스 훈련

: (2025 예산) 33,100백만원 → (2026 예산) 29,440백만원, 3,660백만원 감액

- (요구) 노인돌봄, 보육 등 중앙정부의 제도적 양성이 필요한 돌봄서비스 분야에 대한 체계적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 공급

*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전년동, 훈련인원 목표 인원 감소 (90,000명→80,000명)

- (산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훈련비 환급 포함) 29,44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3,100	○ 기타보전금(310-04) : 33,100백만원 가.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등 33,100,000천원 · 훈련비 21,797,000천원(환급금 포함) · 훈련장려금 11,303백만원	29,440	○ 기타보전금(310-04) : 29,440백만원 가.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환급금 포함) : 29,440,000천원 · 368천원 × 80,000명 = 29,440,000천원

③ 일반고 특화훈련

(2025 본예산) 45,557백만원 → (제2회 추경) 61,557백만원 → (2026 요구) 55,383백만원, 9,826백만원 증액

- (요구) 비진학 일반고 재학생의 원활한 훈련지원을 위해 예산 요구

*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전년동, 훈련인원 증가(5,180명 → 6,300명)

- (산출) 훈련비 42,783백만원

훈련장려금 12,600백만원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1,557	○ 기타보전금(310-04) 61,557백만원 : 45,557백만원(본예산)+16,000백만원(추경) 가. 훈련비(35,177,380천원) · 5,180명×6,791천원=35,177,380천원 나. 훈련장려금(10,360백만원) · 5,180명×2,000천원=10,360,000천원 · 조정재원 (20,000천원) 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16,000,000천원)	55,383	○ 기타보전금(310-04) : 55,383백만원 가. 훈련비(42,783,300천원) · 6,300명×6,791천원=42,783,300천원 · 조정재원(△300천원) 나. 훈련장려금(12,600,000천원) · 6,300명×2,000천원=12,600,000천원

④ 운영비

: (2025 예산) 2,488백만원 → (2026 예산) 1,189백만원, 1,299백만원 감액

- (요구) 정책연구비 예산 감액(350→50백만원) 및 일부 세목 예산 조정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88	○ 일반수용비(210-01) : 507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55백만원 ○ 임차료(210-07) : 2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314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55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48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350백만원 ○ 포상금(310-03) : 50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1,000백만원 ○ 공사비(420-03) : 29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60백만원	1,189	○ 일반수용비(210-01) : 508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55백만원 ○ 임차료(210-07) : 2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314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55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48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50백만원 ○ 포상금(310-03) : 50백만원 ○ 공사비(420-03) : 29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6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Digital Training 수료율 (단위: %)	목표	88.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9.7	-	-	-	-			
	달성도	101.9	-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수 (단위: 명)	목표	13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132,005	-	-	-	-			
	달성도	101.5	-	-	-	-			
K-Digital Training 취업률 (단위: %)	목표	(신규)	6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57.5	-	-	-			
	달성도	-	84.3	-	-	-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취업률 (단위: %)	목표	73.0	80.3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1.7	80.1	-	-	-			
	달성도	111.9	99.8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료율 (단위: %)	목표	(신규)	7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78.6	-	-	-			
	달성도	-	99.7	-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인원 (단위: 명)	목표	(신규)	(신규)	786,000	690,258	(삭제)	-	-	-
	실적	-	-	664,955	-	-			
	달성도	-	-	84.5	-	-			
훈련 양성률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9.3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2) 88.8 (23) 89.7 (24) 89.5	$\frac{\text{내일배움카드 수료 인원}}{\text{훈련실사인원}} \times 08(\text{가중치})$ $+ \frac{\text{폴리텍 훈련 수료 인원}}{\text{훈련실사인원}} \times 02(\text{가중치})$	전수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실시인원 44,550명, 322,799백만원 지원
2023	· 실시인원 270,005명, 460,033백만원 지원
2024	· 실시인원 208,456명, 577,838백만원 지원
2025	· 실시인원 184,343명(2025.11월말 기준), 593,909백만원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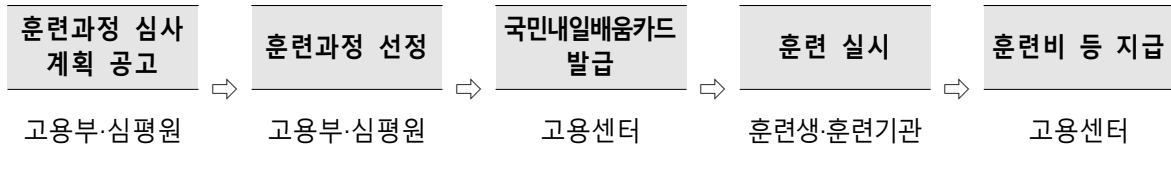
- 신기술 분야 훈련 확대 및 개인의 생애에 걸쳐 훈련이력을 직접 관리하는 평생 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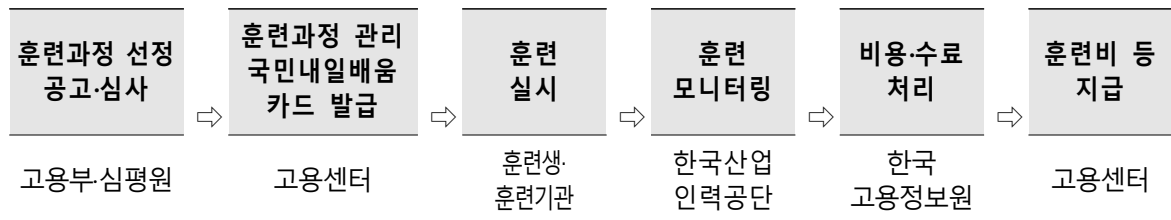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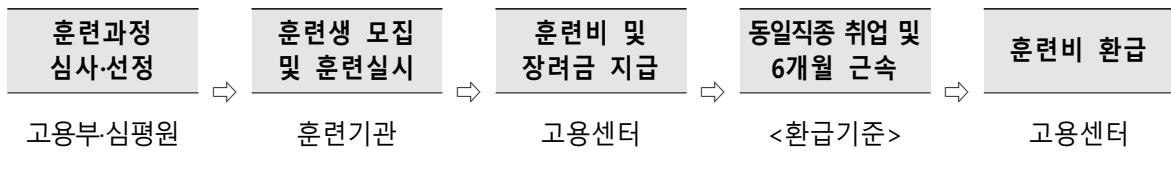
-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 내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훈련과정 선정 → 훈련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 참여 → 훈련비 등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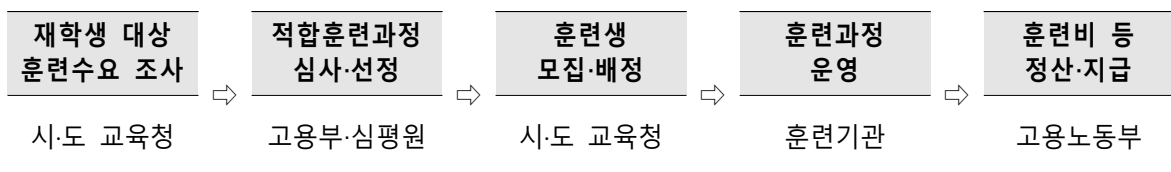
-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 내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훈련과정 선정 → 훈련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참여 → 훈련비 등 지급



- (돌봄서비스 훈련) 노인 돌봄, 보육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제도적으로 양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특화훈련을 신설하여 훈련비 등 지원



- (일반고 특화훈련) 비진학 일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훈련과정 선정 및 훈련비 등 지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의 집행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나 훈련기관 선정이 지연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동 사업의 참여 저조 원인을 파악할 것(예결위, '22결산)
-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참가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예결위, '22결산)
-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의 신속한 훈련과정 공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획 인원을 체계적으로 설정할 것(예결위, '22결산)
- 예산 편성 시 사업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 금액을 반영하고, 예산을 함부로 과다편성한 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예결위, '22결산)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예산상 지원대상과 지원단가를 산정할 때 연내 집행 가능한 인원과 집행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참여자가 후속 교육과 연계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저조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예결위, '22결산)
-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예정된 훈련과정 미개설 방지 및 실시율 제고 방안 마련(예결위, '23결산)
- 일반고 특화훈련 학교 유형별 사업참여자 등 실적 관리 및 수요조사 체계화(예결위, '23결산)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수료생의 취업률 하락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취업률 제고 방안 마련할 것(예결위, '24결산)
-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의 훈련 수요를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할 것(예결위, '24결산)
-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의 목표 인원 및 선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취업 연계성 강화,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훈련 참여율과 동일 직종 취업률을 높일 것(예결위, '24결산)
-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 등 제도개선하여 포상금 집행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예결위, '24결산)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26,294	△4	426,290	425,071	322,799	75.7	75.9	228	102,044
2023	518,815	-	518,815	519,043	460,033	88.6	88.6	6,364	52,646
2024	584,906	-	584,906	591,270	577,838	98.8	97.7	-	13,432
2025	580,161	1,600	596,161	596,161	593,909	99.7	99.7	38	2,21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추경 편성 사유) 감액추경, 경상경비 지출구조 조정 필요 - (불용 사유) ①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훈련의 목표 달성을 위해 훈련과정의 조기확보가 필요했으나, 수차례 과정 공모에도 불구하고 연초 충분한 훈련규모를 확보하지 못하여 예산 불용 발생 ②평생크레딧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및 신규사업인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인지도 부족 및 훈련과 비용 지급 사이의 시차 발생 등으로 집행 부진
2023	- (불용 사유)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서 확보한 과정 중 일부 미개설·미운영으로 불용액 발생
2024	- (불용 사유) 돌봄서비스 훈련 자부담 환급 등 제도개편에 따른 불용 발생
2025	- (추경 편성 사유) 일반고 특화훈련 훈련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 추경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24)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1131-3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15
명칭	직업능력개발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미래유망분야고졸인력양성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11,823	12,942	12,942	12,942	12,492	△450	△3.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823	11,823	11,823	-	-	12,942	12,942	12,942	-	-	12,492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11,823	11,823	11,823	-	-	12,942	12,942	12,942	-	-	12,49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신산업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들을 직업계고와 민간 전문훈련기관이 협업하여 3년간 체계적인 훈련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 6. 산학협동의 실시
- 제14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특성화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법인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계의 변화로 미래유망분야에서의 고졸인력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등직업교육 단계에서부터 이를 대비할 필요
- 그럼에도 미래유망분야에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이 전무한 상황이며, 이에 '18년부터 고용부-교육부 합동으로 특성화고-훈련기관의 고졸인력 육성체계 구축 지원(국정과제)
 - * '18~'19년: 학과 개편 지원, '20~'22년: 학과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SW인력 양성 대책('21.6월, 관계부처 합동) 수행 과제(고졸인력양성) 선정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 수혜대상 확대(8개학과→40개학과)
- '22년 새정부에서도 디지털,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지속되어 국정과제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이 추진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를 추진 중('23년 55개 학과 → '24년 75개 학과 → '25년 85개 학과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200	7,503	11,823	12,942	12,49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미래유망분야로 학과개편하거나 지원필요성이 있는 직업계고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미래유망분야고졸인력양성	보조	미래산업과학 고 등 95개학과	11,542	100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① 훈련운영: ('25) 12,902 → ('26) 11,542백만원, △4.6%

- (요구) 지원학과 확대 85개 학과 → 95개 학과(+10개 학과)
 - * '22~'23년 선정 학과의 졸업생 배출에 따라 감소되는 예산을 활용하여 신규 학과 지원확대(학급 수가 '25. 183개 → '26. 168개로 축소)
- (산출)
 - 훈련 프로그램 운영 : 8,400백만원 [(1학년 40개 학과 (신규 10개 포함) × 50백만) + (2학년 53개학과(기존) × 50백만) + (3학년 75개 학과(기존) × 50백만)]

(단위: 개, 백만원)

선정년도	운영학과	지원예산	운영학년			예산총액
			1학년	2학년	3학년	
22년	32	50			◎	1,600
23년	23	100		◎	◎	2,300
24년	20	150	◎	◎	◎	3,000
25년	10	100	◎	◎		1,000
26년	10	50	◎			500
합계	95					8,400

■ 교원연수비 : 950백만원(95개 학과*10백만)

* ('22)32개+('23)23개+('24)20개+('25년)15개+('26년신규)10개학과 = 총 95개 학과

■ 사업관리비 : 2,192백만원 [(1개 학년 42개 학과×20백만)+(2개 학년 33개 학과×24백만)+(3개 학년 20개 학과×28백만)]

* (1개 학년 운영) 기본 20백만원 → 학년 추가 운영시 +4백만원(최대 28백만원)

② 운영지원: ('25) 850→ ('26) 950백만원, +11.8%

- (요구) 경진대회 운영 및 운영지원기관 사업관리비

- (산출) 95개 학과×10백만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942	○ 일반용역비(210-14) : 850백만원 · 운영 및 성과관리지원 85개학과 × 1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12,092백만원 가. 훈련프로그램 운영 : 9,150백만원(183개×50백만원) · (1학년 53개 학과×50백만) + (2학년 75개학과×50백만) + (3학년 55개 학과×50백만) 나. 교원연수비 : 850백만원 · 85개 학과×10백만 다. 사업 관리비 : 2,092백만원 · 23개 학과×28백만(1·2·3학년)+52개 학과×24백만(1·2학년)+10개 학과×20백만(1학년))	12,492	○ 일반용역비(210-14) : 950백만원 · 운영 및 성과관리지원 95개학과 × 1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11,542백만원 가. 훈련프로그램 운영 : 8,400백만원(168개×50백만원) · (1학년 40개 학과×50백만) + (2학년 53개학과×50백만) + (3학년 75개 학과×50백만) 나. 교원연수비 : 950백만원 · 95개 학과×10백만 다. 사업 관리비 : 2,192백만원 · 20개 학과×28백만(3개학년)+33개 학과×24백만(2개학년)+42개 학과×20백만(1개학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Digital Training 수료율 (단위: %)	목표	88.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9.7	-	-	-	-			
	달성도	101.9	-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수 (단위: 명)	목표	13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132,005	-	-	-	-			
	달성도	101.5	-	-	-	-			
K-Digital Training 취업률 (단위: %)	목표	(신규)	6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57.5	-	-	-			
	달성도	-	84.3	-	-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취업률 (단위: %)	목표	73.0	80.3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1.7	80.1	-	-	-			
	달성도	111.9	99.8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료율 (단위: %)	목표	(신규)	7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78.6	-	-	-			
	달성도	-	99.7	-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인원 (단위: 명)	목표	(신규)	(신규)	786,000	690,258	(삭제)	-	-	-
	실적	-	-	664,955	-	-			
	달성도	-	-	84.5	-	-			
훈련 양성률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9.3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2) 88.8 (23) 89.7 (24) 89.5	$\frac{\text{내일배움카드 수료 인원}}{\text{훈련실사인원}} \times 0.8(\text{가중치})$ $+ \frac{\text{폴리텍 훈련 수료 인원}}{\text{훈련실사인원}} \times 0.2(\text{가중치})$	전수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미래유망분야고졸인력 운영 대상 8개 학과→ 40개 학과 확대(30개교, 839여명) 등
2023	미래유망분야고졸인력 운영 대상 40개 학과→ 55개 학과 확대(45개교, 1,738명)
2024	75개 학과(58개교) 운영 및 3,138명 훈련 실시
2025	85개 학과(66개교) 운영 및 3,521명 훈련 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신산업 관련 직업계고 학과에서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전문성을 갖춘 고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 구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서 심사	고용노동부	○ 당해연도 보조사업자 사업심사 및 보완		
↓				
② 예산교부	고용노동부	○ 교부신청 예산 1차 지원		
↓				
③ 학과 및 훈련프로그램 운영	직업계고	○ 미래유망분야 학과 및 훈련프로그램 운영		
↓				
④ 지도점검 및 2차 예산교부	고용노동부	○ 지도점검 및 2차 예산교부		
↓				
⑤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	한국기술교육대	○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		
⑥ 정산 등	고용노동부	○ 보조금 정산 등		
부처		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
고용노동부 (12,092)	=> (12,092)	직업계고(학과) (9,066)	=>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참여학과가 없는 일부 지역(울산·세종·강원·제주)의 사업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23년 예결위 결산)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200	-	4,200	4,200	4,200	100.0	100.0	-	-
2023	7,503	-	7,503	7,503	7,503	100.0	100.0	-	-
2024	11,823	-	11,823	11,823	11,823	100.0	100.0	-	-
2025	12,942	-	12,942	12,942	12,942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25)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11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0
명칭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훈련기관평가 훈련과정심사 훈련과정평가 미래형 직업훈련 전환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직업훈련 모니터링, 첨단 전략분야 인력양성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부정훈련 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	18,394	19,802	19,802	23,024	23,024	3,222	16.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394	18,394	18,394	-	-	19,802	19,802	19,466	-	-	23,024
▪ 심사평가	10,799	10,745	10,745	-	-	11,262	11,262	10,866	-	-	14,282
· 훈련기관평가	2,844	2,844	2,844	-	-	3,140	3,140	3,005	-	-	3,000
· 훈련과정심사	3,500	3,500	3,500	-	-	3,500	3,500	3,500	-	-	3,640
· 훈련과정평가	2,145	2,145	2,145	-	-	2,145	2,145	2,143	-	-	2,145
· 미래형 직업훈련전환 지원	1,350	1,326	1,326	-	-	1,350	1,350	1,329	-	-	1,350
· 직업훈련 모니터링	900	870	870	-	-	590	590	463	-	-	660
· 부정훈련관리	60	60	60	-	-	210	210	148	-	-	140
· 첨단·전략분야 인력 양성	-	-	-	-	-	327	327	278	-	-	327
· 국민내일배움카드 AI 심사평가 도입 (신규,한시)	-	-	-	-	-	-	-	-	-	-	1,870
· 원격훈련 콘텐츠 심 사 및 과정적정성 심 사 AI 도입 효율화 (신규,한시)	-	-	-	-	-	-	-	-	-	-	1,150
▪ 심사평가 운영	7,595	7,649	7,649	-	-	8,540	8,540	8,600	-	-	8,742
· 인건비	5,431	5,485	5,485	-	-	5,776	5,776	5,836	-	-	5,978
· 운영비	2,164	2,164	2,164	-	-	2,764	2,764	2,764	-	-	2,7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 훈련기관 평가, 훈련과정 심사, 훈련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을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직업훈련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효율성을 제고
- (심사평가)
 - (훈련기관 평가) 동 사업은 정부지원훈련 참여 희망 기관의 기관건전성, 훈련성과 및 훈련실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훈련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실기관 진입을 차단하는 것임
 - (훈련과정 심사) 동 사업은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기반 훈련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훈련내용, 시설·장비, 교·강사 등 적정성을 심사하여 양질의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훈련과정 평가) 동 사업은 직업훈련과정의 평가 체계 및 평가실행의 적정성(훈련생 학업성취도 포함)을 검증하여 훈련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 (미래형 직업훈련전환 지원) 동 사업은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신교수법 및 디지털 전환 기술 적용 등 미래지향적 훈련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임
 - (직업훈련 모니터링) K-디지털 트레이닝사업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훈련 품질을 제고하는 것임
 - (부정훈련 관리) 동 사업은 합동 지도·감독 및 공표제를 통해 부정·부실 훈련기관의 훈련시장 퇴출을 유도하고, 건전한 훈련시장을 조성하는 것임
 - (첨단·전략분야 인력양성) 첨단분야 인력수요 급증에 따라 부처별 인력양성 사업을 체계적 관리 및 인력공급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훈련기관 평가, 훈련과정 평가, 부정훈련 관리(부정훈련기관 명단 공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53조, 제56조의2, 제60조
- 훈련과정 심사, 스마트융합훈련 전환 지원, 부정훈련 관리(합동 지도·감독):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8조, 제59조

② 추진경위

- 훈련기관 평가('99년~) 및 훈련과정 심사('08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現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통한 훈련기관 평가, 과정심사 실시('99년 ~ '14년)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한경제연구원, 한얼경제사회연구원('99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얼경제사회연구원('00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01 ~ '03년)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04 ~ '06년) → 한국직업능력개발('07 ~ '14년)
 -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 도입 관련 훈련과정 심사 추진현황 : 계획수립('08. 7월) → 대구·광주지역 시범운영('08. 9월)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거규정 마련('08. 12월) → 전국 단위 시범실시 및 적합훈련과정 공고('09. 3월) → '10년 이후 매년 적합훈련과정 공고('10~)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심사·평가 기능 통합('15년~)
 - 고용복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14.12월, 기획재정부) 결과에 따라 훈련사업 심사·평가 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로 통합('15년~)
- 훈련과정 평가<훈련이수자평가> 실시('15년~)
- 혼합훈련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활용 맞춤형 컨설팅 실시('21년~)
- 부정훈련기관 명단 공표, 훈련직종별 전문가를 활용한 합동 지도·감독 실시('21년~)
- 직업훈련 모니터링사업 실시('24~)
- 첨단·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실시('2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366	19,469	18,394	19,802	23,024

- 기타: ('25년 기준) 훈련기관 평가(1,880개소), 훈련과정 심사(44,885개 과정), 훈련과정 평가(1,300개 과정), 미래형 직업훈련전환 지원(3,000건), 부정훈련 관리(300개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한국기술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위탁)
- 사업 수혜자 : 직업훈련 참여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사업: ('25) 19,802 → ('26) 23,024백만원, 3,222백만원 증액

(1) 심사평가 : ('25) 11,262 → ('26) 14,282백만원, 3,020백만원 증액

① 훈련기관 평가 ('25) 3,140 → ('26) 3,000백만원, 140백만원 감액

- 요구: 정부지원 민간훈련운영 위탁자격 인증을 위해 훈련기관의 기관건전성과 훈련실시 역량 등 평가에 필요한 비용

○ 산출내역

가. 기존기관: 1,200개소×1.975백만원=2,370백만원(2025년) →

1,079개소×1.975백만원-(조정)1.025백만원=2,130백만원(2026년)

나. 신규기관: 680개소×1.132백만원+(조정)0.24백만원=770백만원(2025년) → 전년동(2026년)

다. 기관평가 효율화: 신규(2025년) → 심사평가위원 관리시스템 고도화 1식×100백만원(2026년)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140	○ 일반용역비(210-14): 3,140,000천원 가. 기존기관 2,370,000천원 • 1,200개소×1.975백만원=2,370,000천원 나. 신규기관 770,000천원 • 680개소×1.132백만원=769,760천원 • 조정재원 240천원	3,000	○ 일반용역비(210-14): 3,000,000천원 가. 기존기관 2,130,000천원 • 1,079개소×1.975백만원=2,370,000천원 • 조정재원 △1025천원 나. 신규기관 770,000천원 • 680개소×1.132백만원=769,760천원 • 조정재원 240천원 다. 기관평가 효율화 • 1식×100백만원=100,000천원

② 훈련과정 심사 ('25) 3,500 → ('26) 3,640백만원, 140백만원 증액

- 요구: 실업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훈련과정을 선정하고,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트레이닝) 공급자 발굴 및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 기반 훈련과정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훈련의 목표 및 내용, 훈련시설 장비, 훈련 교·강사의 적정성 등)에 필요한 비용

○ 산출내역

가. 훈련과정: 44,170개 과정×0.057백만원+(조정)0.31백만원=2,518백만원(2025년) → 전년동(2026년)

나. 첨단산업·디지털신기술핵심실무인재양성훈련 공급자 발굴 및 과정심사:

715개 과정×1.374백만원-(조정)0.41백만원=982백만원(2025년) → 전년동(2026년)

다. 과정심사 효율화: 신규(2025년) → 1식×140백만원=140백만원(2026년)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00	○ 일반용역비(210-14) : 3,500,000천원 가. 훈련과정 2,518,000천원 • 44,170개 과정×0.057백만원=2,517,690천원 • 조정재원 310천원 나.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공급자 발굴 및 과정심사 982,000천원 • 715개 과정×1.374백만원=982,410천원 • 조정재원 △410천원	3,640	○ 일반용역비(210-14) : 3,640,000천원 가. 훈련과정 2,518,000천원 • 44,170개 과정×0.057백만원=2,517,690천원 • 조정재원 310천원 나.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공급자 발굴 및 과정심사 982,000천원 • 715개 과정×1.374백만원=982,410천원 • 조정재원 △410천원 다. 과정심사 효율화 140,000천원 • 1식×140백만원=140,000천원

③ 훈련과정 평가 ('25) 2,145 → ('26) 2,145백만원, 전년동

- 요구: 직업능력개발훈련 성과 제고를 위해 훈련기관의 평가체계 및 평가실행, 평가결과관리 등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훈련참여 훈련생을 대상 훈련성과 검증에 필요한 비용
- 산출내역: 1,300개과정×1.65백만원=2,145백만원(2025년) → 전년동(2026년)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145	○ 일반용역비(210-14) : 2,145,000천원 가. 훈련과정 평가 2,145,000천원 · 1,300개 과정×1.65백만원=2,145,000천원	2,145	○ 일반용역비(210-14) : 2,145,000천원 가. 훈련과정 평가 2,145,000천원 · 1,300개 과정×1.65백만원=2,145,000천원

④ 미래형 직업훈련전환 지원 ('25) 1,350 → ('26) 1,35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직업훈련의 미래형 훈련방식으로의 전환, 훈련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맞춤형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
- 산출내역: 3,000건×0.450백만원=1,350백만원(2025년) → 전년동(2026년)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50	○ 일반용역비(210-14) : 1,350,000천원 가. 미래형 직업훈련전환 지원 1,350,000천원 · 3,000건×0.45백만원=1,350,000천원	1,350	○ 일반용역비(210-14) : 1,350,000천원 가. 미래형 직업훈련전환 지원 1,350,000천원 · 3,000개 과정×0.45백만원=1,350,000천원

⑤ 직업훈련 모니터링 ('25) 590 → ('26) 660백만원, 70백만원 증액

- 요구: K-디지털 트레이닝 및 특화훈련과정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산업현장성 제고를 위해 훈련 운영 모니터링에 필요한 비용
- 산출내역
가. (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1식×130백만원=130백만원(2025년) → 순감(2026년)
나. (모니터링 및 현업 적용도 조사) 1식×360백만원=360백만원(2025년) → 1식×500백만원=500백만원(2026년)
다. (기타 운영비) 1식×100백만원=100백만원(2025년) → 1식×160백만원=160백만원(2026년)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90	○ 일반용역비(210-14) : 590,000천원 가. 관리시스템 구축 130,000천원 · 1식×130백만원=130,000천원 나. 모니터링 및 현업 적용도 조사 360,000천원 · 1식×360백만원=360,000천원 다. 기타 운영비 100,000천원 · 1식×100백만원=100,000천원	660	○ 일반용역비(210-14) : 660,000천원 가. 모니터링 및 현업 적용도 조사 500,000천원 · 1식×500백만원=500,000천원 나. 기타 운영비 160,000천원 · 1식×160백만원=160,000천원

⑥ 부정훈련 관리 ('25) 210 → ('26) 140백만원, 70백만원 감액

1) 부정훈련기관 명단 공표

- 요구: 상습적·고의적 부정훈련기관의 훈련시장 퇴출을 위한 부정훈련기관 명단 공표에 따른 분석 및 위원회 개최 등에 필요한 비용
- 산출내역: 1회×20백만원=20백만원(2025년) → 전년동(2026년)

2) 합동·지도감독

- 요구: 훈련시장의 훈련품질 관리를 위해 직종별 전문가를 활용한 합동 지도·감독 실시 등에 필요한 비용
- 산출내역
가. (합동·지도감독) 300개소×0.4백만원=120백만원(2025년) → 전년동(2026년)
나. (수강평 사전분석 시스템 개발) 1식×70백만원=70백만원(2025년) → 순감(2026년)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10	○ 일반용역비(210-14) : 210,000천원 가. 부정훈련기관 명단 공표 20,000천원 · 1회×20백만원=20,000천원 나. 합동 지도감독 120,000천원 · 300개소×0.4백만원=120,000천원 다. 수강평 사전분석 시스템 개발 70,000천원 · 1식×70백만원=70,000천원	140	○ 일반용역비(210-14) : 140,000천원 가. 부정훈련기관 명단 공표 20,000천원 · 1회×20백만원=20,000천원 나. 합동 지도감독 120,000천원 · 300개소×0.4백만원=120,000천원

⑦ 첨단·전략분야 인력양성 ('25) 327백만원 → ('26) 327백만원, 전년동

- 요구: 첨단·전략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부처별 인력양성 사업 실태조사, 협업지원, 품질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한 비용
- 산출내역
가. (인력양성사업 실태조사 및 성과품질 관리체계 마련) 1식×266백만원=266백만원(2025년) → 전년동(2026년)
나. (사업추진단 운영) 1식×61백만원=61백만원(2025년) → 전년동(2026년)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7	○ 일반용역비(210-14) : 327,000천원 가. 인력양성사업 실태조사 및 성과품질 관리체계 마련 266,000천원 · 1식×266백만원=266,000천원 나. 사업추진단 운영 61,000천원 · 1식×61백만원=61,000천원	327	○ 일반용역비(210-14) : 327,000천원 가. 인력양성사업 실태조사 및 성과품질 관리체계 마련 266,000천원 · 1식×266백만원=266,000천원 나. 사업추진단 운영 61,000천원 · 1식×61백만원=61,000천원

⑧ 국민내일배움카드 AI 심사평가 시스템(한시) ('25) 신규 → ('26) 1,870백만원, 1,870백만원 순증

- 요구: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심사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 산출내역: 신규(2025년) → 1식×1,870백만원=1,870백만원(2026년)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신규	1,870	○ 일반용역비(210-14) : 1,870,000천원 가. 국민내일배움카드 AI 심사평가 시스템 1,870,000천원 · 1식×1,870백만원=1,870,000천원

⑨ 원격훈련 콘텐츠 심사 및 과정 적정성 심사 AI 심사평가 시스템(한시) ('25) 신규 → ('26) 1,150백만원, 1,150백만원 순증

- 요구: 인공지능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 심사자료 검토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심사평가 시스템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 산출내역: 신규(2025년) → 1식×1,150백만원=1,150백만원(2026년)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신규	1,150	○ 일반용역비(210-14) : 1,150,000천원 가. 원격훈련 콘텐츠 심사 및 과정 적정성 심사 AI 심사평가 시스템 1,150,000천원 · 1식×1,150백만원=1,150,000천원

(2) 심사평가 운영 : ('25) 8,540백만원 → ('26) 8,742백만원, 202백만원 증액

① 인건비 ('25) 5,776 → ('26요구) 5,978백만원, 202백만원 증액

- 요구: 평가지원 인력 인건비 편성 반영(정규직 58명, 공무원 37명)
- 산출내역: 60.8백만원(평균 1인당)×95명=5,776백만원(2025년) → 60.8백만원(평균 1인당)×3.5%×95명=5,978백만원(2026년)

② (기관)운영비 ('25) 2,764백만 → ('26) 2,764백만원, 전년동

- 요구: 사무공간 임차 및 관리비, 수도전기료, 직원 교육비 등 기관에 필요한 경비
- 산출내역: 1식×2,764백만원=2,764백만원(2024년) → 전년동(2026년)
- 2025년도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540	○ 일반용역비(210-14) : 8,540,000천원 가. 인건비 5,776,000천원 · 95명×60.8백만원=5,776,000천원 나. (기관)운영비 2,764,000천원 · 1식×2,764백만원=2,764,000천원	8,742	○ 일반용역비(210-14) : 8,742,000천원 가. 인건비 5,978,000천원 · 95명×60.8백만원×3.5%=5,978,000천원 나. (기관)운영비 2,764,000천원 · 1식×2,764백만원=2,764,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Digital Training 수료율 (단위: %)	목표	88.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9.7	-	-	-	-			
	달성도	101.9	-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수 (단위: 명)	목표	13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132,005	-	-	-	-			
	달성도	101.5	-	-	-	-			
K-Digital Training 취업률 (단위: %)	목표	(신규) 68.2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57.5	-	-	-			
	달성도	-	84.3	-	-	-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취업률 (단위: %)	목표	73.0	80.3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1.7	80.1	-	-	-			
	달성도	111.9	99.8	-	-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요율 (단위: %)	목표	(신규)	7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78.6	-	-	-			
	달성도	-	99.7	-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인원 (단위: 명)	목표	(신규)	(신규)	786,000	690,258	(삭제)	-	-	-
	실적	-	-	664,955	-	-			
	달성도	-	-	84.5	-	-			
훈련 양성률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9.3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2) 88.8 (23) 89.7 (24) 89.5	(내일배움카드 수요 인원/훈련실사인원) x 08(가중치) + (폴리텍 훈련 수요 인원/훈련실사인원) x 02(가중치)	전수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훈련기관 평가(4,557개소) · 훈련과정 심사 - 집계 : 40,988개 과정(32,535개 적합), 원격: 21,676개(17,005개 적합) - K-디지털 트레이닝 : 733개 과정(476개 적합) · 훈련과정 평가 - 훈련이수자 평가 : 4,305개 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426과정 · 중앙부처 훈련 실태조사(54개 기관, 354개 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성과평가(211개 사업), 일학습병행 성과평가(228개 사업), 디지털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사업(143개 사업) · 스마트훈련 전환 지원(732개소, 3,428과정) · 부정훈련 관리(합동 지도·감독 130개소)
2023	· 훈련기관 평가(4,929개소) · 훈련과정 심사 - 집계 : 36,443개 과정(25,957개 적합), 원격 : 23,741개 과정(14,357개 적합) - K-디지털 트레이닝: 693개(448개 적합) · 훈련과정 평가 - 훈련이수자 평가 : 1,085개 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685개 과정 · 중앙부처 훈련 실태조사(21개 기관, 372개 사업), 디지털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사업(142개 사업) · 미래형 직업훈련 전환 지원(3,674과정) · 부정훈련 관리(합동 지도·감독 294개소)
2024	· 훈련기관 평가(4,946개소) · 훈련과정 심사 - 집계 : 34,050개 과정(24,091개 적합), 원격 : 27,091개 과정(17,250개 적합) - K-디지털 트레이닝 : 792개 과정(559개 적합) · 훈련과정 평가 - 훈련이수자 평가 : 1,341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954과정 · 미래형 직업훈련 전환 지원(3,192과정) · 직업훈련 모니터링(9,774건) · 부정훈련 관리(합동 지도·감독 465개소)

2025	· 훈련기관 평가(4,955개소, 진행 중) · 훈련과정 심사 - 집계 : 32,068개 과정, 원격 : 10,284개 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 402개 과정 등 진행 중 · 훈련과정 평가 - 훈련이수자 평가 : 519개 과정(1~8차), K-디지털 트레이닝: 196개 과정 등 진행 중 · 미래형 직업훈련 전환 지원 : 2,375건 진행 · 부정훈련 관리 : 합동 지도·감독 274건 진행
------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훈련기관 인증평가, 훈련과정 심사, 훈련과정 평가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직업훈련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심사평가 업무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강화
- 훈련기관 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과 디지털 전환 지원(PBL, 생성형 AI 등 신교수법 적용)을 제공하여 훈련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 심사평가 과정에 AI 심사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처리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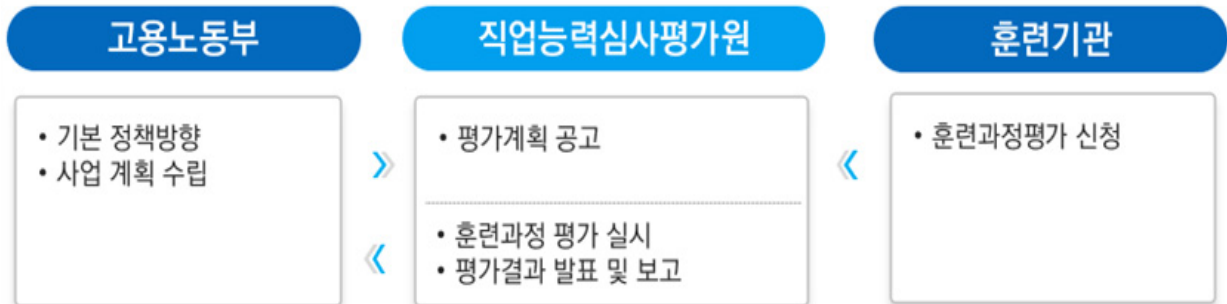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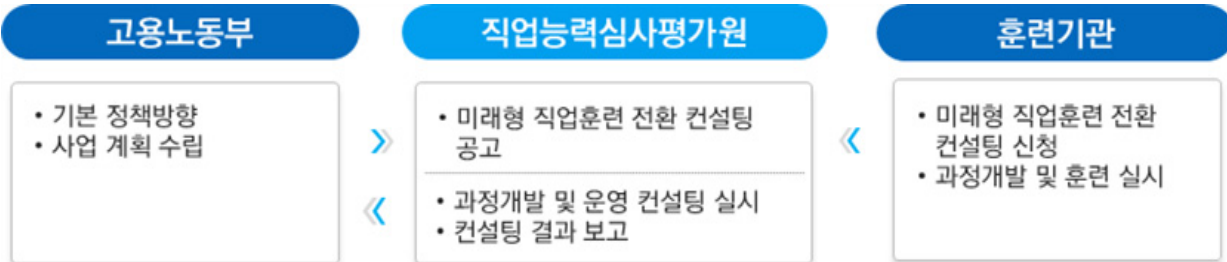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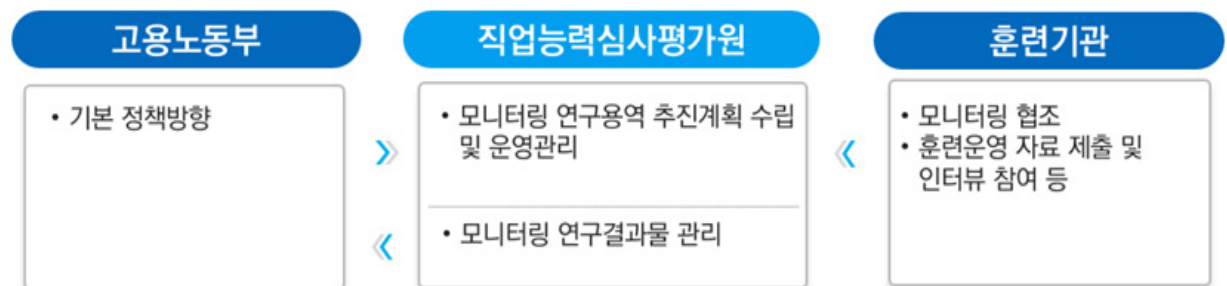
< 훈련과정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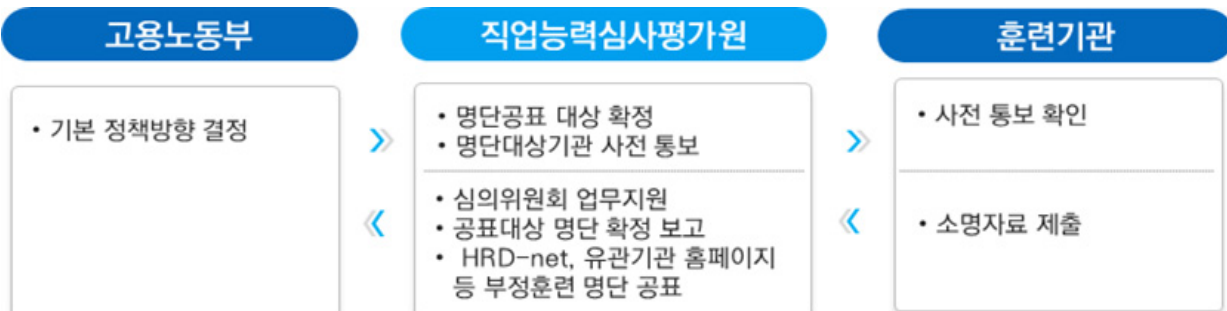
< 미래형 직업훈련 전환 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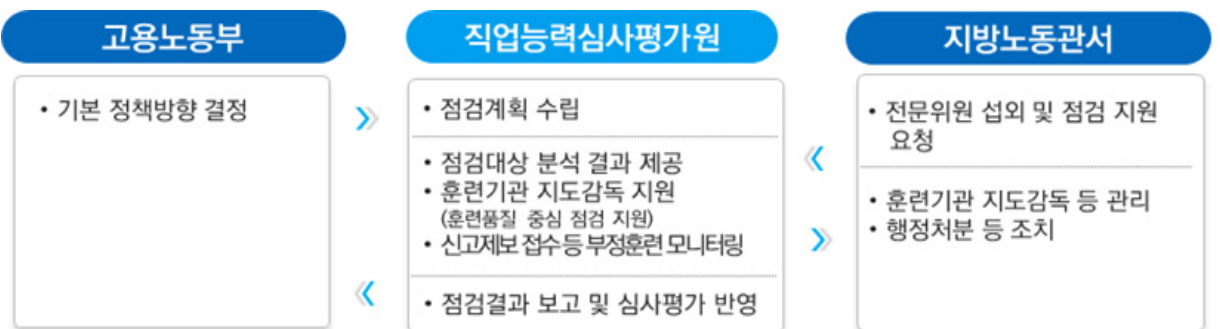
< 직업훈련 모니터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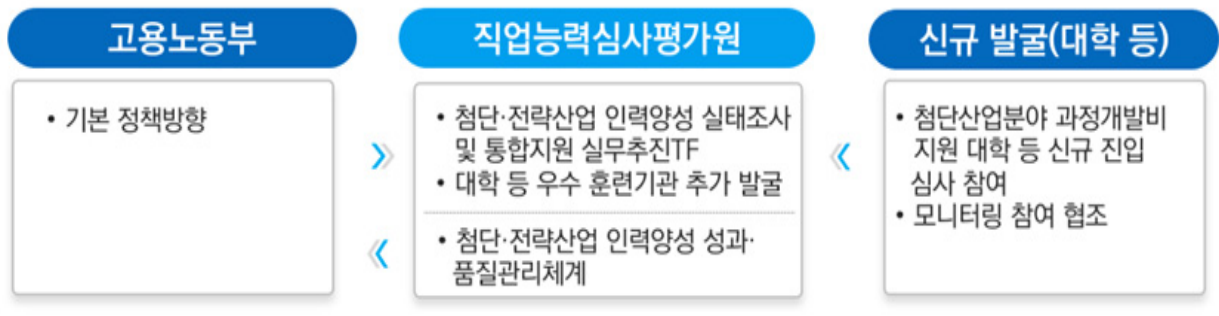
< 부정훈련기관 명단공표 >



< 부정훈련 관리 합동·지도감독 >



< 첨단·전략분야 인력양성 >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1,366	-	21,366	21,366	19,520	91.4	91.4	-	1,846
2023	19,469	-	19,469	19,469	18,825	96.7	96.7	-	644
2024	18,394	-	18,394	18,394	18,394	100.0	100.0	-	-
2025	19,802	-	19,802	19,802	19,802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26)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1134-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4	307
명칭	직업능력개발	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산업 인력공단 운영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직업능력정책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175,582	182,333	182,333	193,723	193,723	11,390	6.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4,482	183,814	175,582	-	-	182,333	182,333	180,333	-	2,000	193,723
· 자격검정사업	132,989	132,321	124,089	-	-	137,506	137,506	136,005	-	1,501	138,544
· 외국인고용관리사업	25,641	25,641	25,641	-	-	32,492	32,492	32,492	-	-	22,893
· HRD확산	1,843	1,843	1,843	-	-	1,843	1,843	1,843	-	-	2,045
· 국제교류협력	504	504	504	-	-	504	504	504	-	-	504
· 경상운영비	136,945	136,945	136,945	-	-	139,971	139,971	139,472	-	499	146,180
· 자체수입	△113,440	△113,440	△113,440	-	-	△129,983	△129,983	△129,983	-	-	△116,4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국제교류협력, 국가자격검정 시행, 외국인고용관리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배분을 도모하여 국가 경제발전 및 고용안정 기여
- (자격검정사업) 자격의 현장성 및 통용성을 강화하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전문인력 배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세계기술 선도
- (외국인고용관리사업) 외국인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HRD확산)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이슈와 정부정책, 공단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 국민의 평생능력개발 확산 노력
- (국제교류협력) NCS, 자격검정, 기능경기 등 한국의 선진 HRD시스템을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개도국에 지원하는 등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 (경상운영비) 직원 인건비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공통 경비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조(설립목적) 및 제6조(사업)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의 4(국제협력증진) 및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 세무사법 등 30개 관계법령(권한의 위임·위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업무의 위탁)

② 추진경위

- '81년 국가기간산업분야의 기능인력양성 및 직업안정 활성화 방안 실천 계획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설립('82년 3월 설립)
- '95년부터 한·독 교류협력사업을 시작한 이래 '00년 한·중, '04년 한·베, '09년 한·UAE, '11년 한·몽골 교류협력사업 지속적 추진
- '03.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입·출국지원 및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실시
- '05년부터 ILO(국제노동기구)와 매년 협력사업(Skills Network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회의(APEC Working Group 회의)등에 참석
- '06. 3월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에 따라 기능대학으로 19개 직업전문학교 이관 및 한국고용정보원 별도 법인 설립
- '08. 1월 국가자격통합관리 및 외국인고용허가제 일원화에 따른 신규 및 추가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직 재설계
- '10. 12월 제1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협의
- '11. 6월 외국인고용허가제 UN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부패방지 및 척결” 분야
- '11. 11월 특별한국어시험 제도 마련, 베트남 및 태국의 귀국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11.12월)
- '12. 7월 성실근로자 재입국취업 특례제도 시행(취업활동 기간 만료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숙련인력의 계속 사용 지원)
- '12. 9월 제1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13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 의결
- '12. 12월 제3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13~'17) 확정
- '14. 5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과정평가형자격제도 시행
- '18. 11월 제4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18~'22) 확정
- '21. 4월 외국인근로자 최초 고용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 의무화 개정('21.10.14 시행)
- '24. 1월 제5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23~'27) 확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0,840	155,099	184,482	182,333	193,723

- 기타: (사업규모)

- (자격검정사업) 기술자격 488종목 3,759천명, 전문자격 37개 종목 645천명
- (외국인고용관리) 입국지원 98천명, 취업교육 22천명, 국외 EPS센터 17개국 운영, 한국어능력시험 440천명, 귀국예정자재정착교육 1.1천명, 사업장내애로해소지원 50천명, EPS기업지원단 2천5백개 사업장
- (HRD확산) 일자리, 능력중심채용 등 정부정책, 공단 사업 정보서비스 제공, HRD컨퍼런스 개최, HRDK미래교육원 운영 등
- (국제교류협력) 기술교류 4개국, 국제기능경기대회 홍보관, 국가 간 협력사업 2개국, 국제 HRD포럼, 파독근로자기념관 운영 및 기념사업 수행
- (경상운영비) 직원 인건비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공통 경비 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기업과 근로자, 입직자, 학생 등 전 국민 및 외국인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자격검정사업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138,544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공단의 수입·지출)
외국인고용 관리사업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22,893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공단의 수입·지출)
HRD확산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2,045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공단의 수입·지출)
국제교류 협력사업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504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공단의 수입·지출)
경상운영비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146,180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공단의 수입·지출)
자체수입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116,443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공단의 수입·지출)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 ('25) 182,333 → ('26) 193,723백만원(11,390백만원)

① 자격검정사업 : ('25) 137,506 → ('26) 138,544백만원(+1,038백만원)

□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25) 99,608 → ('26) 101,942백만원(+2,334백만원)

○ 검정시행 및 관리: ('25) 90,182 → ('26) 91,020백만원(+838백만원)

■ 검정시행비: ('25) 68,443 → ('26) 70,966백만원(+2,523백만원)

- (산출) ① 검정시행 : 3,759천명×18,208원+시험위원 수당 3,264백만원=71,707백만원(+3,264백만원)

② DTC 지출 효율화 : 3개소×△247백만원=△741백만원

■ 기술자격관리: ('25) 21,739 → ('26) 20,054백만원(△1,685백만원)

- (산출) ① 검정시행 지원 : 9,777백만원(전년동)

② 차세대국가자격정보시스템구축 4차년 : 11,962 → 10,277백만원(△1,685백만원)

○ 출제관리: ('25) 5,196 → ('26) 6,692백만원(+1,496백만원)

■ 문제출제 및 발간: ('25) 4,920 → ('26) 6,416백만원(+1,496백만원)

- (산출) ① 문제출제 및 발간 : 97천문항×47,433원+출제·검토료 1,496백만원=6,097백만원(+1,496백만원)

② 출제기준정비 : 246종목×1,296천원=319백만원(전년동)

■ 출제관리지원: ('26) 276백만원(전년동)

- (산출) 1식×276백만원

○ 채점관리 : ('26) 3,993백만원(전년동)

- (산출) 582천명×6,861원=3,993백만원

○ 자격증 발급 : ('26) 237백만원(전년동)

- (산출) 430천명×551원=237백만원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 ('25) 10,574 → ('26) 11,736백만원(+1,162백만원)

○ 과정평가형 자격시행 및 관리 : ('25) 6,471 → ('26) 7,633백만원(+1,162백만원)

- (산출) ① 과정평가형 자격 시행 및 관리 1,357과정×4.8백만원 + 시행비 현실화 111백만원+출제·검토료 751백만원=7,333백만원(+862백만원)

② 플러스자격 운영 300백만원(순증)

○ 과정평가형 정보시스템 운영 : ('26) 473백만원(전년동)

- (산출) 1식×473백만원

○ 과정평가형자격 운영기관 지원 : ('26) 3,630백만원(전년동)

- (산출) 796과정×4.6백만원=3,630백만원

□ 국가자격시험장 확충: ('25) 11,824 → ('26) 12,024백만원(+200백만원)

○ 국가자격시험장 확충 : ('26) 8,904백만원(전년동)

- (산출) ① 디지털 국가자격시험센터 3개소 구축 : 3개소×1,248백만원=3,744백만원(전년동)

② 디지털 국가자격시험센터 운영비 : 13개소 운영×397백만원=5,160백만원(전년동)

○ 노후 시설·장비 보강 : ('25) 2,920 → ('26) 3,120백만원(+200백만원)

- (산출) ① 노후시설장비보강 : 25검정장×116.8백만원+발간센터 보수 200백만원=3,120백만원(+200백만원)

□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 : ('25) 15,500 → ('26) 12,692백만원(△2,808백만원)

○ 검정시행 및 관리 : ('25) 5,762 → ('26) 5,993백만원(+231백만원)

- (산출) ① 전문자격 시행 645천명×8,933원+시설사용료 231백만원=5,993백만원(+231백만원)

○ 출제관리 : ('25) 8,738 → ('26) 5,699백만원(△3,039백만원)

- (산출) ① 전문자격 출제 : 37자격×137,810천원=5,099백만원(전년동)

② 차세대 출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600백만원(전년동)

③ 출제관리시스템 통합구축(3차년도) : △3,039백만원(순감)

○ 채점관리 : ('26) 1,000백만원(전년동)

- (산출) 48,477명×20,628원=1,000백만원(전년동)

□ 기업자격 정부인정 : ('26) 150백만원(순증)

○ 기업자격 정부인정 운영 : ('26요구) 150백만원(순증)

- (산출) 기업자격 운영 50개 기업×3백만원=150백만원

② 외국인고용관리사업 : ('25) 32,492 → ('26) 22,893백만원(△9,599백만원)

□ 입국 및 체류지원 : ('25) 9,370 → ('26) 5,029백만원(△4,341백만원)

- 입국 및 체류지원 : ('25) 7,307 → ('26) 3,331백만원(△3,976백만원)
 - (산출) (입국지원) 16.5만명×29,315원 = 4,837백만원+(애로해소) 5만명×49,400원 = 2,470백만원
→ ('26) 9.8만명×33,985*원=3,331백만원(△3,976백만원)
- * '25년 입국지원 및 애로해소지원 예산의 가중평균을 단가로 반영

- 외국국적동포(H-2)취업교육: ('26) 1,005백만원(전년동)

- (산출) 22천명 ×45,682원 = 1,005백만원

- EPS기업지원단: ('25) 1,058 → ('26) 693백만원(△365백만원)

- (산출) 3,820개소×277천원 → 2,500개소×277천원=693백만원(△365백만원)

□ 외국인력선발: ('25) 15,880 → ('26) 10,704백만원(△5,176백만원)

- 외국인력선발시행: ('25) 15,880 → ('26) 10,704백만원(△5,176백만원)

- (산출) 66만명×24,061원=15,880백만원 → ('26) 44만명×24,328원=10,704백만원(△5,176백만원)

* 한국어능력시험, 기능수준평가 통합 및 단가 현실화

□ EPS센터운영 및 송출국사업협력: ('25) 4,161 → ('26) 4,428백만원(+267백만원)

- EPS센터운영: ('25) 3,796 → ('26) 4,040백만원(+244백만원)

- (산출) 16개소×220백만원 + 1개소 신설 282백만원

→ ('26) 17개소×220백만원 + 처우개선 300백만원=4,040백만원(+244백만원)

- 송출국가사업협력: ('25) 365 → ('26) 388백만원(+23백만원)

- (산출) 16개국×22.8백만원 → ('26) 17개국×22.8백만원=388백만원(+23백만원)

□ 외국인고용관리교육 : ('25) 2,234 → ('26) 1,885백만원(△349백만원)

- 외국인근로자훈련: ('26) 1,038백만원(전년동)

- (산출) 재직자훈련 1,425천명×436천원 + 귀국예정자훈련 1,140명×366천원

- 사용자교육: ('25) 260 → ('26) 139백만원(△121백만원)

- (산출) 1식×139백만원

- 한국어교육: ('25) 859 → ('26) 708백만원(△151백만원)

- (산출) 1식×708백만원

- 사업장변경자취업적응교육 : ('25) 77 → ('26) 0백만원(순감)

□ 귀국지원 : ('26) 847백만원(전년동)

- 귀국지원방문 등: ('26) 95백만원(전년동)

- (산출) 1식×95백만원

- 자발적 귀환 및 불법고용예방 캠페인 : ('26) 550백만원(전년동)

- (산출) 1식×550백만원

- 휴면보험금관리 : ('26) 202백만원(전년동)

- (산출) 1식×202백만원

③ HRD확산 : ('25) 1,843 → ('26) 2,045백만원(+202백만원)

□ HRD확산 : ('26) 1,103백만원(전년동)

- HRD확산 : ('26) 900백만원(전년동)

- (산출) 1식×900백만원

- HRD컨퍼런스 : ('26) 203백만원(전년동)

- (산출) 1식×203백만원

□ HRD확산기반조성 : ('25) 740 → ('26) 942백만원(+202백만원)

- (산출) ① 교육원운영 : 740백만원+온라인플랫폼 유지·관리 202백만원=940백만원(+202백만원)

④ 국제교류협력 : ('26) 504백만원, 전년동

□ 기술교류 및 국제행사 등 : ('26) 200백만원(전년동)

- (산출) 4개국(국제기구)×25백만원+국제기능경기대회 홍보관 100백만원

- ☐ 국가간 협력사업 : ('26) 129백만원(전년동)
 - (산출) 2개국×50백만원 + 신규협력국 발굴 29백만원
- ☐ 국제HRD포럼 : ('26) 51백만원(전년동)
 - (산출) 1식×51백만원
- ☐ 파독근로자기념관 운영 및 기념사업 수행 : ('26) 124백만원(전년동)
 - (산출) 기념관 운영 1식 × 124백만원

⑤ 경상운영비 : ('25) 139,971 → ('26) 146,180백만원(+6,209백만원)

- ☐ 기관운영비 : ('25) 9,045 → ('26) 9,297백만원(+252백만원)
 - '25년 Base 9,045백만원
 - '26년 공통감액 △452백만원
 - '26년 특이소요 등 704백만원
- ☐ 인건비 : ('25) 128,384 → ('26) 134,258백만원(+5,874백만원)
 - '25년 Base 128,384백만원
 - '26년 인건비 상승분 5,874백만원
- ☐ 예비비 : ('25) 2,542백만원 → ('26) 2,625백만원(+83백만원)

⑥ 수입 : ('25) 129,983 → ('26) 116,443백만원(△13,540백만원)

- ☐ 자격검정수입 : ('26) 80,704백만원(전년동)
 - 국가기술자격 수수료(3,759천명) : ('26) 68,779백만원(전년동)
 - (산출) ① 기술자격 수수료 : 3,759천명 × 24,384원 = 91,663백만원
 - ② 청년 응시료 지원 : 78.7만명×24,624원×2.5회×50% = △24,210백만원
 - 자격증 발급(430천명) : ('26) 1,326백만원(전년동)
 - (산출) 430천명 × 3,167원 = 1,326백만원
 - 국가전문자격 수수료(645천명) : ('26) 11,925백만원(전년동)
 - (산출) 645천명 × 18,488원 = 11,925백만원
- ☐ 외국인고용관리 수입 : ('25) 37,729 → ('26) 24,920백만원(△12,809백만원)
 - 외국인근로자 도입위탁비 : ('25) 13,342 → ('26) 7,925백만원(△5,417백만원)
 - (산출) 165천명×80,865원 = 13,342 → 98천명× 80,865원 = 7,925백만원(△5,417백만원)
 - 동포취업교육비 : ('26) 2,211백만원(전년동)
 - (산출) 22천명 × 100,485원 = 2,211백만원
 - 한국어능력시험 접수수수료 : ('25) 22,176 → ('26) 14,784백만원(△7,392백만원)
 - (산출) 660천명×33,600원 = 22,176 → 440천명 × 33,600원 = 14,784백만원(△7,392백만원)
- ☐ 사업외 수입 : ('25) 3,698 → ('26) 5,086백만원(+1,388백만원)
 - 이자수입(3년 결산평균) : ('25) 1,679 → ('26) 2,896백만원(+1,217백만원)
 - (산출) 3년('22-'24) 결산 평균 반영
 - 잡수입(3년 결산평균) : ('25) 2,019 → ('26) 2,190백만원(+171백만원)
 - (산출) 3년('22-'24) 결산 평균 반영
- ☐ 이월결산잉여금 : ('25) 7,852 → ('26) 5,733백만원(△2,119백만원)
 - 전기이월금(3년 결산평균) : ('25) 4,975 → ('26) 5,378백만원(+403백만원)
 - (산출) 3년('22-'24) 결산 평균 반영
 - 전전기이월금 : ('25) 2,877 → ('26) 355백만원(△2,522백만원)
 - (산출) 기재부 심의결과 반영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2,333	○ 사업출연금(350-02) : 182,333백만원	193,723	○ 사업출연금(350-02) : 193,723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백만원	① 자격검정사업 137,506백만원 -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99,608백만원 - 과점평가형 자격제도 운영 10,574백만원 - 국가자격시험장 확충 11,824백만원 -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 15,500백만원 ② 외국인고용관리사업 32,492백만원 - 입국 및 체류지원 9,370백만원 - 외국인력선발 15,880백만원 - EPS센터운영 및 송출국사업 협력 4,161백만원 - 외국인고용관리교육 2,234백만원 - 귀국지원 847백만원 ③ HRD확산 1,843백만원 - HRD확산 1,103백만원 - HRD확산기반조성 740백만원 ④ 국제교류협력 504백만원 ⑤ 경상운영비 139,971백만원 ⑥ 자체수입 △129,983백만원	백만원	① 자격검정사업 138,544백만원 -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101,942백만원 - 시험위원 수당, DTC 지출 효율화, 출제·검토료 등 +838백만원 - 과점평가형 자격제도 운영 11,736백만원 - 시행비 현실화, 출제·검토료, 플러스자격 운영 등 +1,162백만원 - 국가자격시험장 확충 12,024백만원 - 출제발간센터 보수 +200백만원 -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 12,692백만원 - 시설장비 사용료, 출제시스템 통합구축 완료 등 △2,808백만원 ② 외국인고용관리사업 22,893백만원 - 입국 및 체류지원 5,029백만원 - 입국지원 인원 및 EPS기업지원단 축소 등 △4,341백만원 - 외국인력선발 10,704백만원 - 한국어 시험 대상인원 축소 등 △5,176백만원 - EPS센터운영 및 송출국사업 협력 4,428백만원 - EPS센터 운영 및 송출국 확대(1개국), 주재원 처우개선 등 +267백만원 - 외국인고용관리교육 1,885백만원 - 사용자교육, 한국어교육, 사업장변경자 취업적응교육 축소 등 △349백만원 - 귀국지원 847백만원 ③ HRD확산 2,045백만원 - HRD확산 1,103백만원 - HRD확산기반조성 942백만원 - 온라인플랫폼 유지보수 비용 +202백만원 ④ 국제교류협력 504백만원 ⑤ 경상운영비 146,180백만원 - 인건비 +5,874백만원, 기관운영비 +252백만원, 예비비 +83백만원 ⑥ 자체수입 △116,443백만원 - 외국인고용관리사업 물량 변동 반영 등 △13,54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Digital Training 수료율 (단위: %)	목표	88.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9.7	-	-	-	-			
	달성도	101.9	-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수 (단위: 명)	목표	13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132,005	-	-	-	-			
	달성도	101.5	-	-	-	-			
K-Digital Training 취업률 (단위: %)	목표	(신규) 68.2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57.5	-	-	-			
	달성도	-	84.3	-	-	-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취업률 (단위: %)	목표	73.0	80.3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1.7	80.1	-	-	-			
	달성도	111.9	99.8	-	-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료율 (단위: %)	목표	(신규)	7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78.6	-	-	-			
	달성도	-	99.7	-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인원 (단위: 명)	목표	(신규)	(신규)	786,000	690,258	(삭제)	-	-	-
	실적	-	-	664,955	-	-			
	달성도	-	-	84.5	-	-			
훈련 양성률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9.3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2) 88.8 (23) 89.7 (24) 89.5	$\frac{\text{내일배움카드 수료 인원} / \text{훈련실사 인원}}{0.8(\text{가중치})} + \frac{\text{폴리텍 훈련 수료 인원} / \text{훈련실사 인원}}{0.2(\text{가중치})}$	전수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구분	국제기술교류/회의참가	한국어 능력시험 접수	기능평가	외국인 근로자 입국지원	외국국적 동포 취업교육	국가 기술자격 수험인원	국가 전문자격 수험인원
2022	3회 1,183명	287,244명	110,597명	88,012명	14,116명	3,630,894명	628,343명
2023	3회 535명	552,274명	194,118명	100,148명	19,174명	3,943,790명	546,730명
2024	3회 244명	771,328명	138,624명	78,025명	18,623명	3,906,896명	498,380명
2025	3회 408명	303,276명	46,898명	61,184명	11,647명	3,982,715명	460,830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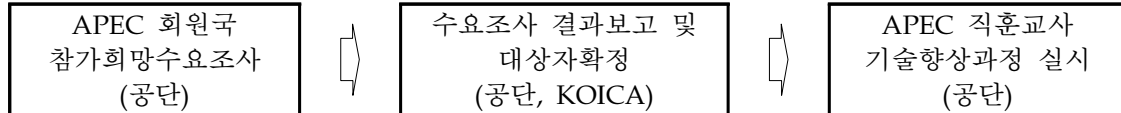
- (국가자격검정사업)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국가-민간 자격체계 구축 및 취득 경로 다양화를 위해 연간 국가기술자격 3,759천명, 전문자격 645천명 대상 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자격취득자를 배출하여 국가자격에 현장성과 통용성을 제고하며 디지털 국가자격시험센터 구축 확대 등('27년 32개소 목표) 국가기술자격 검정 운영 관리 혁신을 통해 노동시장 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체계 구축
- (외국인고용관리사업)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한 외국인력 선발시스템 선진화로 한국어능력시험 44만명, 사업주 필요인력 9.8만 적기 도입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의 안정적 도모,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업장내 애로해소 지원 서비스 강화 5만명, 취업활동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의 성공적인 귀국 및 본국 재정착을 지원하여 무자격체류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 (HRD확산) '능력중심사회 구현' 핵심과제 성과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대국민 인식개선 강화를 통해 전 국민의 평생능력개발 중요성 인식 확산,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연 1회 개최 및 HRDK미래교육원 1개소 운영
- (국제교류협력) 양자간(국가간), 다자간(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공단의 고유 사업(일학습병행, NCS, 자격검정, 기능경기 등)을 꾸준히 개도국에 전파하는 한편,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해 선진 HRD정책 소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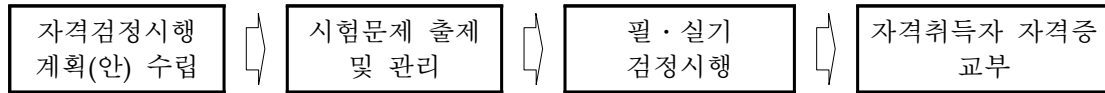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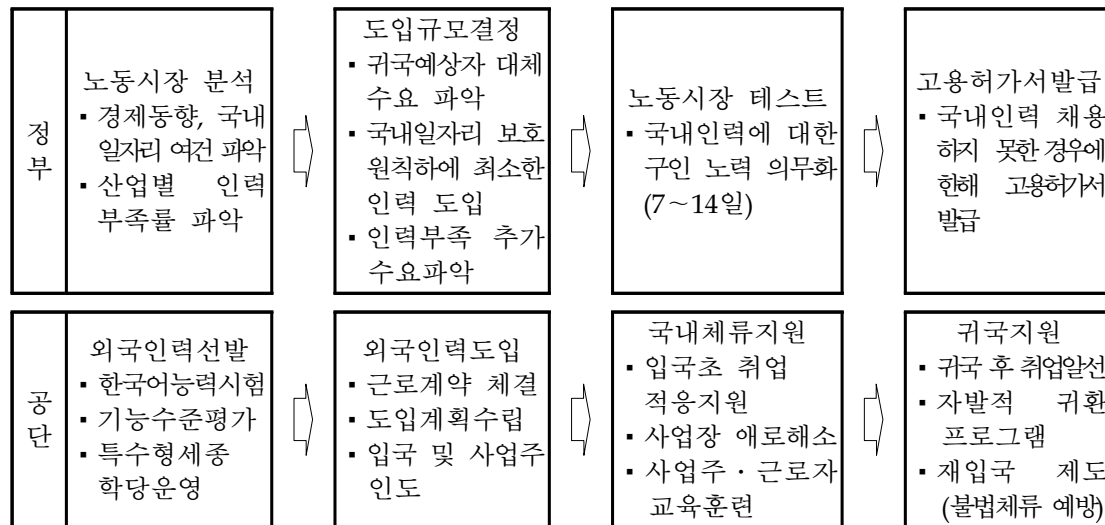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 사업기준 및 지침 마련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 국제교류협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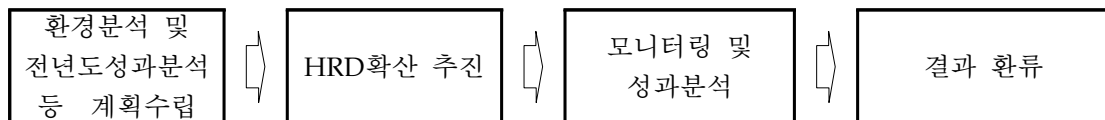
- 자격검정사업



- 외국인고용관리사업



- HRD확산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세무사 시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22. 국정감사)
 - 답안지 파쇄·분실 사고 재발방지 방안 마련 필요('23. 국정감사)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40,841	-	140,841	140,673	140,673	99.9	100.0	-	-
2023	155,099	-	155,099	155,099	155,099	100.0	100.0	-	-
2024	184,482	-	184,482	183,814	175,582	95.2	95.5	-	8,232
2025	182,333	-	182,333	182,333	180,333	98.9	98.9	-	2,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7)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1134-31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4	316
명칭	직업능력개발	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및 활용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조사분석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포털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공유및확산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직업능력개발 인프라구축	12,502	11,007	11,007	10,427	10,427	△580	△5.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502	12,502	12,502	-	-	11,007	11,007	11,007	-	-	10,427
· 온라인플랫폼활용 직업정보제공	1,100	1,100	1,100	-	-	1,000	1,000	1,000	-	-	-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7,287	7,287	7,287	-	-	6,230	6,230	6,230	-	-	6,080
· 국제성인역량조사	138	138	138	-	-	-	-	-	-	-	-
· 직업능력개발조사분석	1,677	1,677	1,677	-	-	1,477	1,477	1,477	-	-	1,647
· 능력개발포털운영	900	900	900	-	-	900	900	900	-	-	900
· HRD 공유 및 확산	465	465	465	-	-	465	465	465	-	-	865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	935	935	935	-	-	935	935	935	-	-	9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능력개발에 관한 다양한 정보 및 HRD 콘텐츠 제공을 통하여 취약계층(청년구직자·여성·장애인·준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전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시장수요에 적합한 국가 HRD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제공
-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활용) 산업현장의 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을 통해 일·교육훈련·자격·현장경험 연계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확산을 통한 직무중심 노동시장 전환을 지원
- (직업능력개발 조사·분석)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 및 조사분석을 통하여 훈련 제도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훈련기관의 훈련환경을 향상시키며, 부정·부실훈련을 사전 예방하는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의 질 관리 제고
- (능력개발포털 운영) 능력개발전담주치의, S-OJT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직업능력의 달 행사 안내 등 전국민 HRD문화 확산 지원

- (HRD공유 및 확산) 4차 산업혁명, 고령사회 등 HRD 최신 트렌드 및 우수사례 공유의 장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직업능력개발 발전방향 모색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 일학습병행, 사업주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확대로 고객 수 증가 및 고객의 다양한 Needs 충족을 위하여 전문콜센터 설치 등 직업능력개발 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매체의 개발·편찬과 보급사업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6조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제공,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경력의 관리 및 직업능력개발과 자격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7조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호환·인정·교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자원·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공공단체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교육·홍보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보급 사업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내용 및 시설·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자격기본법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① 정부는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개선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의 평생학습지원
 - 5의2.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
 7.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11.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활용

- '01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0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직무능력표준개발에 착수, 이후 계속사업으로 추진
- 국가정책조정회의('10.5.7)에서 NCS 효율화 관련 조정결과, 공단이 NCS 개발 전담기관으로 결정 → NCS 개발 및 활용·확산 수행
- 산업현장 전문가 참여로 만든 1,100개 NCS 확정·고시('24.12)

- 직업능력개발 조사·분석

- '03년 원격훈련 모니터링 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
- '04~현재 고용노동부 및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 사업 수행
- '11년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정, 모니터링 업무 실시 근거 확립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집체·원격훈련 모니터링 수행기관으로 결정
- '12년 집체·원격훈련 모니터링 전담 조직으로 “훈련품질향상센터” 설립하여 정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분석 및 연구, 원격훈련 부정·부실 관리 수행
- '13~'19년 원격훈련 부정감시 캡차(CAPTCHA) 인증 시스템, 훈련생 본인인증 시스템(OTP) 및 이상훈련 감지 시스템(FDS) 도입하여 부정훈련 예방 기능 강화
- '20~'22년 모바일 기반 훈련생 본인인증시스템(MOTP), API 기반 훈련데이터 수집 체계 고도화, 적용 추진

- 능력개발포털 운영

- 직업능력지식포털(portal.hrd.go.kr) 공식 개통, 서비스 개시('10.9월)
- 기업학습지원시스템(학습조직화 시스템)(bizhrd.net) 개통('12.1월)

- 기업학습네트워크 운영, 일학습병행제 대표포털 구축, 사이트 통칭을 『기업일학습』으로 명명('14.9월)
-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기업학습네트워크』 개편('15.1월)
- HRD콘텐츠네트워크 운영(www.hrdbank.net)으로 사업 명칭 변경('18.1월)
- 능력개발 전문가 인력풀 시스템 도입 및 청년취업아카데미 통합 등 직업능력개발 통합 플랫폼 구축('19.12월)
- HRD4U(www.hrd4u.or.kr) 시스템 명칭 변경('20.11월)
- 국정과제(능력개발전담주치의, S-OJT 등) 수행 위한 기업직업훈련 지원시스템, 능력개발사업 빅데이터플랫폼 등 구축('23.12월)
- 빅데이터 기반 기업훈련 추천 AI 서비스 개시('24.2.월)

- 직업능력개발 경진대회

- 우수교육훈련프로그램('08년 개최), 일학습병행제('14년 개최), 블라인드 채용('18년 개최) 등 3개 사업의 경진대회를 직업능력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통합 개최하여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863	25,787	12,502	11,007	10,427

- 기타: (사업규모)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활용패키지 신규개발(6직무), 개선(55직무),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운영
 - 직업능력개발 조사·분석(국내외 HRD 조사연구(4종), 집체훈련 모니터링(6개 사업), 원격훈련모니터링((OTP인증 600만건)
 - 능력개발포털 운영: 시스템운영
 - 직업능력개발 경진대회 통합 개최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HRD담당자,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6,080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직업능력개발 조사·분석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1,647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능력개발 포털운영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900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HRD공유 및 확산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465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직업능력개발 사업지원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935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직업능력개발 인프라구축 : ('25) 11,007백만원 → ('26) 10,427백만원(△580백만원)

(1) 온라인플랫폼활용직업정보제공: ('25) 1,000 → ('26) 0백만원(순감)

(2)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활용 : ('25) 6,230 → ('26) 6,080백만원(△150백만원)

○ NCS개발: ('26) 400백만원(전년동)

- (요구) ① (부처협업개발) 미래산업 육성 및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부처 협업 개발 3직무
② (융·복합직무) 신기술·신산업분야의 융·복합 직무 증가에 따른 ISC 간 협업 개발 3직무
- (산출) ① 3직무×66.6백만원=200백만원
② 3직무×66.6백만원=200백만원

○ NCS개선: ('26) 1,645백만원(전년동)

- (요구) NCS 개선 55직무
 - ① (NCS 보완) 개발·개선 후 5년이 도래하여 점검이 필요한 NCS(247개, '26년 기준) 중 'NCS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활용도가 높은 59개 NCS 우선 선정·개선
 - ② (직업기초능력 개편) 기술·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한 직무적응 및 요구역량 확보를 위해 직업기초능력 개편 및 학습·지도를 위한 가이드개발·콘텐츠정비 추진
- (산출) ① 55직무×27백만=1,485백만원
② 직업기초능력개편 2영역×80백만=160백만원

○ 산업별역량체계 구축: ('25) 1,262 → ('26) 1,112백만원(△150백만원)

- (요구) ① (SQF 개발 및 역량인정) 산업현장의 직무를 기반으로 교육·훈련·자격·학위 등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틀(SQF)을 마련하기 위해 SQF개발 직무 확대(8분야), 역량인정 방안 마련 (5분야)
- ② (SQF 활용 체계 강화) 교육·훈련 현장에서 SQF 활용을 위해 SQF 기반 훈련가이드 개발(3분야), SQF 기반 대학교육과정 등 인정사업 운영(3개 ISC)
- (산출) ① (SQF 개발 및 역량인정) SQF 개발 8분야×54백만원=432백만원(전년동) + 역량인정 방안 5분야×100백만원=500백만원(+100백만원)
- ② (SQF 활용체계 강화) 훈련가이드 3분야×30백만원=90백만원(전년동) + 대학교육과정 인정 3분야×30백만원=90백만원(전년동)
- ③ (SQF 정보제공 시스템 개편 완료) ('25) 1식×250백만원 →('26) 0백만원(순감)

- 직무능력은행제: ('26) 1,648백만원(전년동)
 - (요구) ① (시스템 연계확장) '국가공인 민간자격 확대+숙련기술 경력정보+한기대 스마트직업 훈련플랫폼(STEP)+군 경력정보(병사)' 연계 확장 및 시스템 고도화 · 유지보수 요구
 - ②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인정 및 컨설팅) 전문대학·4년제 대학의 직무기반 교육과정 이수정보의 직무능력은행 저축을 통한 제도 안착 및 활용성 제고
 - (산출) ① 직무능력은행제 시스템 운영 1식×800백만원=800백만원
 - ② '국가공인 민간자격+사업주 자격' 연계확장 1식×800백만원=500백만원
 - ③ NCS기반 교과인정 80개교과×1.6백만원=128백만원
 - ④ NCS기반 교과인정컨설팅 40교과×5.5백만원=220백만원
- NCS 활용실태조사: ('26) 500백만원(전년동)
 - (요구) ① (NCS 홈닥터) NCS활용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NCS개발 및 개선 수요 조사
 - ② (정량적 실태조사) NCS활용 데이터('26년 약 1,500만건)를 조사하여 교육·훈련·자격·기업 활용분야별 활용성과 분석
 - ③ (정량적 실태조사) NCS활용 표본기관을 선정하여 NCS활용의 유용성, 적합성, 효과성, 만족도 등을 조사
 - (산출) ① NCS 펌닥터 120세분류×3.33백만원=400백만원
 - ② NCS활용 데이터기반(정량적) 실태조사 4영역×12.5백만원=50백만원
 - ③ NCS활용 실증적(정성적) 실태조사 261소분류×191천원=50백만원
- NCS활용확산: ('26) 180백만원(전년동)
 - (요구)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확산을 위한 대외 홍보,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및 포럼 등 운영
 - (산출) 4분기×45백만=180백만원
- NCS 정보망 운영: ('26) 495백만원(전년동)
 - (요구) NCS 정보망 운영 및 유지
 - (산출) 정보시스템 운영 1식×495백만=495백만원
- NCS기반 국가기술자격 평가방법 개발: ('26) 100백만원(전년동)
 - (요구) NCS 기반 자격 신설·개편('27년 이후 2개 종목 신설, 8개 종목 개편 예정)에 따라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발 필요
 - (산출) 5분야×20백만=100백만원

(3) 직업능력개발 조사·분석 : ('25) 1,477 → ('26) 1,647백만원(+170백만원)

- 국내외 HRD 동향 조사 : ('26) 370백만원(전년동)
 - (요구)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국내외 HRD 심층 연구 결과 기반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기획 및 실행 필수, 기존 정책의 효과성 진단 및 개선, 신사업 발굴을 위한 선제적 연구의 부재는→정책 설계 및 사업 운영의 품질 저하→직업능력 개발훈련 전반의 신뢰도 및 효과성 약화 야기
 - (산출) 1식×370백만=370백만원
- 직업훈련 모니터링 및 조사분석: ('26) 172백만원(전년동)
 - (요구)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현장 중심의 정책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 필수, 특히 다각적 직업훈련 이해관계자 협업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과 훈련 현장을 이어주는 훈련 품질관리 모니터링 운영 필요

- (산출) ① 정책·현장 동향 모니터링 1식×100백만원=100백만원
- ②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1식×72백만원=72백만원
- 원격훈련 모니터링 : ('25) 200 → ('26) 370백만원(+170백만원)
 - (요구)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원격훈련 시장 정상화와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 (산출) 1식×370백만=370백만원(+170백만원)
-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 ('26) 735백만원(전년동)
 - (요구) 공동훈련센터의 보조금 활용에 따른 재정적·사업성과 평가 운영
 - (산출) 공동훈련센터 200개* × 3.675백만원** = 735백만원
 - * '26년도 상반기에 '25년 성과평가를 진행함에 따라 '25년 평가사업(유형) 기준으로 개소 산정
 - ** 성과평가 임차료, 수당, 여비, 전산시스템 고도화 등(2.5백만원)+성과평가 컨설팅 수당, 여비, 연구용역 등 (1.175백만원)

(5) 능력개발포털 운영 : ('26) 900백만원(전년동)

- (산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식 × 900백만원 = 900백만원
- * 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1식 × 500백만원 = 500백만원
- * 능력개발사업 챗봇 유지보수 1식 × 200백만원 = 200백만원
- * 능력개발사업 DB 운영 및 보강 1식 × 200백만원 = 200백만원

(6) HRD 공유 및 확산 : ('25) 465 → ('26) 865백만원(+400백만원)

- 직업능력개발 경진대회 : ('26) 465백만원(전년동)
 - (요구) 우수교육훈련프로그램, 일학습병행제, 블라인드 채용 등 3개 사업 경진대회 개최
 - (산출) 직업능력개발 경진대회 1식 × 465백만원 = 465백만원(전년동)
- 직업능력개발 홍보 및 인식개선 : ('26) 400백만원(+400백만원)
 - (산출) 직업능력개발 홍보 및 인식개선 1식 × 400백만원 = 400백만원

(7)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26) 935백만원(전년동)

- (요구)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문 HRD콜센터 등 운영비
- (산출) 1식 × 935백만원 = 935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007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11,007백만원 가. 온라인플랫폼활용직업정보제공 : 1,000백만원 · 콘텐츠 제작 및 운영 : 90편x 11백만 나.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및 활용 : 6,230백만원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 6직무×66.6백만=400백만원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선 : 55직무×27백만=1,645백만원 · 산업별역량체계(SQF) 구축 : 1,262백만원 · 직무능력은행제 운영(시스템 고도화 등) 1,648백만원 · NCS 활용 실태조사 및 홈페이지 사업 운영 : 500백만원 · NCS 활용 확산 및 정보망 운영 : 675백만원 · NCS기반국가기술자격평가방법 개발 : 10분야×10백만=100백만원 다. 직업능력개발조사분석 : 1,477백만원 · 국내외HRD동향 370백만원	10,427 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400백만원 바. HRD공유 및 확산 : 400백만원 · 직업능력개발 홍보 및 인식개선 : 1식×400백만원=400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10,027백만원 가. 온라인플랫폼활용직업정보제공 : 0백만원(순감) 나.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및 활용 : 6,080백만원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 6직무×66.6백만=400백만원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선 : 55직무×27백만=1,645백만원 · 산업별역량체계(SQF) 구축 : 1,112백만원 · 직무능력은행제 운영(시스템 고도화 등) 1,648백만원 · NCS 활용 실태조사 및 홈페이지 사업 운영 : 500백만원 · NCS 활용 확산 및 정보망 운영 : 675백만원 · NCS기반국가기술자격평가방법 개발 : 10분야×10백만=100백만원 다. 직업능력개발조사분석 : 1,647백만원 · 국내외HRD동향 370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훈련비 지원체계 연구 등 1식 370백만원 • 직업훈련 모니터링 및 조사분석: 6개사업×28.6백만원=172백만원 • 원격훈련 모니터링 : 원격훈련 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200백만원 •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 735백만원 라. 능력개발포털 운영 : 900백만원 • 시스템 운영 : 500백만원 • HRD종합플랫폼 고도화 : 400백만원 마. HRD공유 및 확산 : 465백만원 • 직업능력개발경진대회 : 1식×465백만원=465백만원 바.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 : 935백만원		: 훈련비 지원체계 연구 등 1식 370백만원 • 직업훈련 모니터링 및 조사분석: 6개사업×28.6백만원=172백만원 • 원격훈련 모니터링 : 원격훈련 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370백만원 •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 735백만원 라. 능력개발포털 운영 : 900백만원 • 시스템 운영 : 500백만원 • HRD종합플랫폼 고도화 : 400백만원 마. HRD공유 및 확산 : 865백만원 • 직업능력개발경진대회 : 1식×465백만원=465백만원 • 직업능력개발 홍보 및 인식개선 : 1식×400백만원=400백만원 바.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 : 93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Digital Training 수료율 (단위: %)	목표	88.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9.7	-	-	-	-			
	달성도	101.9	-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수 (단위: 명)	목표	13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132,005	-	-	-	-			
	달성도	101.5	-	-	-	-			
K-Digital Training 취업률 (단위: %)	목표	(신규)	6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57.5	-	-	-			
	달성도	-	84.3	-	-	-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취업률 (단위: %)	목표	73.0	80.3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1.7	80.1	-	-	-			
	달성도	111.9	99.8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료율 (단위: %)	목표	(신규)	7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78.6	-	-	-			
	달성도	-	99.7	-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인원 (단위: 명)	목표	(신규)	(신규)	786,000	690,258	(삭제)	-	-	-
	실적	-	-	664,955	-	-			
	달성도	-	-	84.5	-	-			
훈련 양성률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9.3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2) 88.8 (23) 89.7 (24) 89.5	$\frac{\text{내일배움카드 수료 인원}(\text{훈련실사인원})}{08(\text{가중치})} \times$ $+ \frac{\text{폴리텍 훈련 수료 인원}(\text{훈련실사인원})}{02(\text{가중치})} \times$	전수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직업방송 제작 및 운영: 능력개발향상지원 프로그램 제작(2,192편)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활용패키지 신규개발(11직무), 개선(132직무),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확산(740건) · 국제성인역량조사(국제분담금 납부 및 연구개발) · 능력개발포털 운영(이용자 수 누계) 515,901명 · 직업능력개발 조사·분석: 국내외 HRD 조사연구(4종), 집체훈련 모니터링(6개 사업), 원격훈련모니터링 OTP 조회수(1,319만건) · HRD전문가 포럼 개최(4회), HRD컨퍼런스 개최(1회), 직업능력개발 경진대회(1회)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직능사업 전담 콜센터 운영 및 노후시설 보강)
2023	· 직업방송 제작 및 운영: 능력개발향상지원 프로그램 제작(2,204편)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활용패키지 신규개발(10직무), 개선(110직무),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확산(740건) · 국제성인역량조사(국제분담금 납부 및 연구개발) · 능력개발포털 운영(이용자 수 누계) 685,809명 · 직업능력개발 조사·분석: 국내외 HRD 조사연구(4종), 집체훈련 모니터링(6개 사업), 원격훈련모니터링 OTP 조회수(815만건) · HRD전문가 포럼 개최(3회), HRD컨퍼런스 개최(1회), 직업능력개발 경진대회(1회)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직능사업 전담 콜센터 운영 및 노후시설 보강)
2024	· 온라인플랫폼활용직업정보제공: 능력개발향상지원 콘텐츠 제작(100편)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7직무) 및 개선(105직무) · 국제성인역량조사(국제분담금 납부 및 연구개발) · 능력개발포털 운영(이용자 수 누계) 1,144,396명 · 직업능력개발 조사·분석: 국내외 HRD 조사연구(4종), 직업훈련 모니터링(6개 사업), 원격훈련 모니터링 OTP 조회수(560만건),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202개소 · 직업능력개발 경진대회 개최(1회)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직능사업 전담 콜센터 운영 및 노후시설 보강)
2025	· 온라인플랫폼활용직업정보제공: 능력개발향상지원 콘텐츠 제작(93편)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6직무) 및 개선(57직무) · 능력개발포털 운영 1,570,992명 · 직업능력개발 조사·분석: 국내외 HRD 조사연구(2종), 직업훈련 모니터링(6개 사업),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기관 205개,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199개소 · 직업능력개발 경진대회 개최(1회)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직능사업 전담 콜센터 운영 및 노후시설 보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및 활용·확산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6직무) 및 개선(55직무)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변화 등 산업현장의 수요 반영
- NCS 우수활용사례 확산, NCS 누리집 고도화를 통한 국가직무능력 활용·확산 강화
- 정기적 NCS 활용 정량적, 정성적 실태조사(전체 직무대상)를 통한 NCS 품질관리 및 환류 체계 구축

- 개인별 직무능력의 관리·인정체계인 '직무능력은행제' 운영을 통해 평생 직무능력 관리 및 노동시장 통용성 확대
- 56개 IS소관 분야 중심 산업별 역량체계(SQF) 구축을 통해 산업현장의 직무를 표준화 하고, 개인의 다양한 역량을 상호 인정·활용함으로써 직무중심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전환을 지원
- 직업능력개발 조사·분석
 -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 향상 및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중심 모니터링 강화, 훈련기관 컨설팅 도입 및 정책이슈에 대한 조사·분석 및 심층 연구기능 강화
 - OTP인증 815만 건 등 부정·부실훈련 사전 예방기능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확충하여 올바른 직업훈련 문화조성에 기여
 - 성과평가 신규지표 개발 프로세스 마련을 통한 지표 보완·개선 및 평가 결과 공유 및 환류 기능 점진으로 평가 적시성·적합성 강화
- 능력개발포털 운영
 - 능력개발사업 참여 One-Stop 행정서비스를 위해, AI기반의 「기업HRD이음컨설팅」 지원 및 능력개발사업 챗봇 도입으로 심플·스마트한 능력개발포털 운영
- HRD 공유 및 확산
 -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직업능력개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에 대해 관심도 제고 및 기업의 HRD 동기 유도
 - 정책 수요자와 소통 및 참여형 홍보, 사례 중심 완결적 홍보를 강화하여 직업능력 개발 사업 참여 및 인식개선 유도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일학습병행제, 사업주직업훈련사업, 블라인드채용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확대에 의한 고객 수 증가 및 고객의 다양한 Needs 충족을 위하여 전문콜센터 운영 등 직업능력개발 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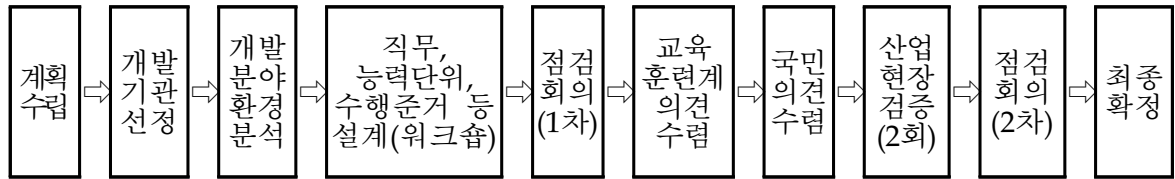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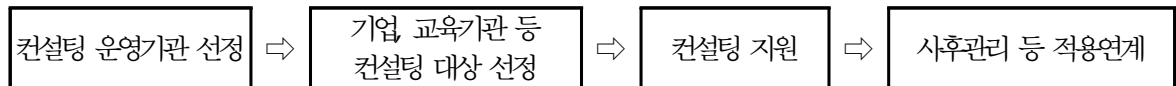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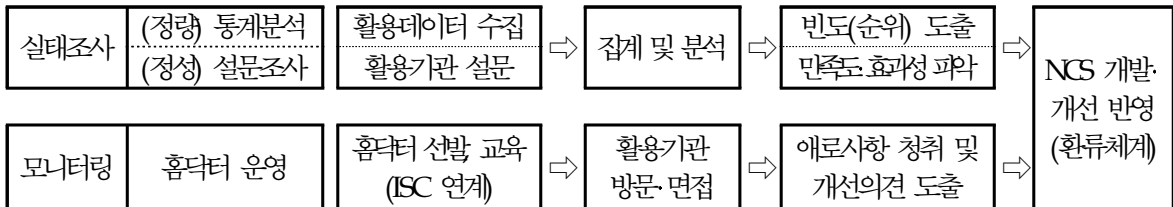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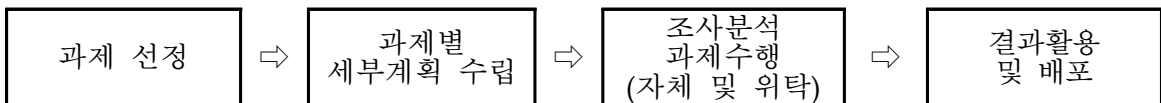
- 국가직무능력표준 컨설팅 지원(교과인정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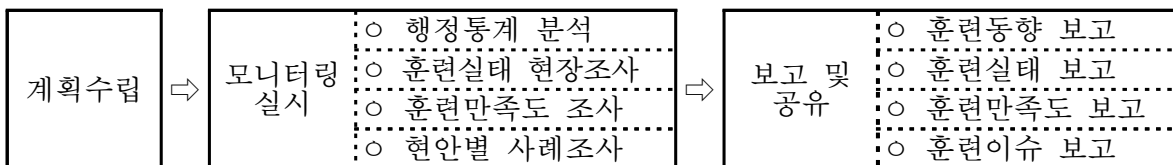
- NCS활용 실태조사 및 품질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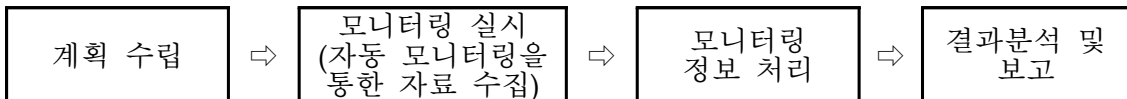
○ 국내외 HRD 조사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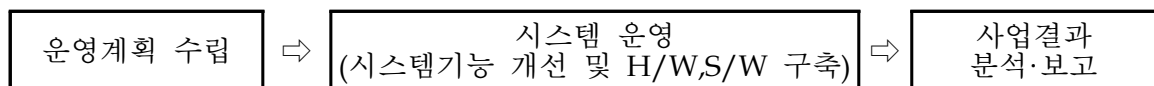
○ 집체훈련 모니터링 및 조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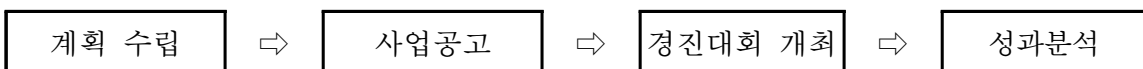
○ 원격훈련 모니터링 및 조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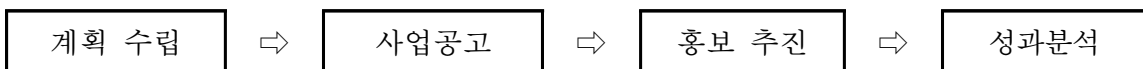
○ 능력개발포털운영



○ 직업능력개발 경진대회



○ 직업능력개발 홍보 및 인식개선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4,863	-	24,863	24,803	24,803	99.8	100.0	-	60
2023	25,787	-	25,787	25,753	25,753	99.9	100.0	-	34
2024	12,502	-	12,502	12,502	12,502	100.0	100.0	-	-
2025	11,007	-	11,007	11,007	11,007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8) 숙련기술장려사업(1134-3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4	317
명칭	직업능력개발	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	숙련기술장려사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숙련기술 장려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직업능력평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숙련기술장려사업	40,725	33,744	24,555	35,005	35,405	1,661	4.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0,057	40,725	40,725	-	-	33,744	24,555	24,555	-	-	35,405
· 숙련기술장려	22,497	22,497	22,497	-	-	19,201	10,012	10,012	-	-	18,765
· 기능경기대회	17,560	18,228	18,228	-	-	14,543	14,543	14,543	-	-	16,6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숙련기술장려) 숙련기술장려 활성화로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숙련기술자가 존중받는 능력위주 사회 풍토 조성
- (기능경기대회) 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통해 우수숙련기술자 발굴·육성으로 청소년 등에게 숙련기술 습득을 장려하여 제조업분야 청소년 취업촉진 및 기능강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을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③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 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매월 전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①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기능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①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숙련기술장려

② 추진경위

- '82년 정부의 "기능인력양성 및 직업안정활성화방안"에 의해 인력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기능경기를 통한 기능의 저변확대와 기능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
- '91년 기능장려우수사업체 선정 시작
- '95년 고용보험법 제정으로 동법에 의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99년 기능장려기금 폐지로 동 사업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10년 기능장려법을 숙련기술장려법으로 개정함('11.1.1 시행)
- '12년 정부의 "제1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발표
- '18년 정부의 "제2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발표
- '24년 정부의 "제3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발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36,562백만원(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설)
- 사업기간 : '82년 ~ 계속 (총사업비 사업 2023~2028)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261	29,153	40,057	24,555	35,405

- 기타:
 - (숙련기술장려) 대한민국명장 30명, 우수숙련기술자 100명, 숙련기술전수자 10명,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20개 각 선정, 계속종사장려금 지원 등
 - (기능경기대회) 국내대회(지방, 전국) 846직종 7,092명, 국제대회 50개 직종 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직업계고 학생, 산업체 근로자 등 숙련기술인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숙련기술장려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18,765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기능경기대회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16,640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숙련기술장려사업 : ('25 추경) 24,555 → ('26) 35,405백만원(+10,850백만원)
(2025 본예산 33,744백만원 → 제2회 추경 24,555백만원)
- ① 숙련기술장려 : ('25 추경) 10,012 → ('26) 18,765백만원(+8,753백만원)
-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및 우대지원 : ('26) 1,066백만원(전년동)
 - (산출) 1회×1,066백만원=1,066백만원
 - 숙련기술인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 : ('26) 100백만원(전년동)
 - (산출) 1회×100백만원=100백만원
 - 숙련기술 정책지원 : ('26) 132백만원(전년동)
 -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 ('26) 50백만원(전년동)
 - (산출) 1회×50백만원=50백만원
 - 우수숙련기술인 종합포털 유지보수 : ('26) 82백만원(전년동)
 - (산출) 12개월×6.8백만원=82백만원
 - 계속종사장려금 지원 : ('26) 7,078백만원(전년동)
 - (산출) 1,242명×7.13백만원×0.8=7,078백만원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활용사업 : ('26) 1,200백만원(전년동)
 - (산출) 1식×1,200백만원=1,200백만원
 -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 ('25 본예산) 9,625 → ('25 추경) 436 → ('26) 9,189백만원(+8,753백만원)
 - (산출) ① 공사비 8,626백만원 ② 감리비 550백만원 ③시설부대비 13백만원
- ② 기능경기대회 : ('25) 14,543 → ('26) 16,640백만원(+2,097백만원)
- 국내기능경기대회 : ('25) 10,051 → ('26) 10,451백만원(+400백만원)
 - (산출) 846직종×11.9백만원 → 846직종×12.35백만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 ('25) 4,055 → ('26) 5,752백만원(+1,697백만원)
 - (산출) ① 국제대회 참가 및 포상금 3,111백만원, ② 강화훈련 938백만원
③ 훈련수당 1,004백만원, ④ 회원국분담금 91백만원 ⑤ 신규장비 608백만원
 - 기능경기지원 및 과제출제 : ('26) 437백만원(전년동)
 - (산출) 258과제×1.7백만원=437백만원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555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24,555백만원 ① 숙련기술장려 : 10,012백만원 ·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및 우대지원 : 1,066백만원 ·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 100백만원 · 직업능력개발 기념식 등 : 132백만원 · 계속중사장려금지원 : 7,078백만원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활용사업 : 1,200백만원 ·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 436백만원 ② 기능경기대회 : 14,543백만원 · 국내기능경기대회 : 10,051백만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 4,055백만원 · 기능경기지원 및 과제출제 : 437백만원	35,405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35,405백만원 ① 숙련기술장려 : 18,765백만원 ·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및 우대지원 : 1,066백만원 ·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 100백만원 · 직업능력개발 기념식 등 : 132백만원 · 계속중사장려금지원 : 7,078백만원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활용사업 : 1,200백만원 ·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 9,189백만원 ② 기능경기대회 : 16,640백만원 · 국내기능경기대회 : 10,451백만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 5,752백만원 · 기능경기지원 및 과제출제 : 43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Digital Training 수료율 (단위: %)	목표	88.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9.7	-	-	-	-			
	달성도	101.9	-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수 (단위: 명)	목표	13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132,005	-	-	-	-			
	달성도	101.5	-	-	-	-			
K-Digital Training 취업률 (단위: %)	목표	(신규)	6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57.5	-	-	-			
	달성도	-	84.3	-	-	-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취업률 (단위: %)	목표	73.0	80.3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1.7	80.1	-	-	-			
	달성도	111.9	99.8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료율 (단위: %)	목표	(신규)	7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78.6	-	-	-			
	달성도	-	99.7	-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인원 (단위: 명)	목표	(신규)	(신규)	786,000	690,258	(삭제)	-	-	-
	실적	-	-	664,955	-	-			
	달성도	-	-	84.5	-	-			
훈련 양성률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9.3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2) 88.8 (23) 89.7 (24) 89.5	(내일배움카드 수료 인원/훈련실사인원) x 08(가중치) + (폴리텍 훈련 수료 인원/훈련실사인원) x 02(가중치)	전수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명장 등 선정) 1회, (지방대회) 4,986명 참가, (전국대회) 1,797명 참가, (기능과제출제) 281과제
2023	(명장 등 선정) 1회, (지방대회) 4,793명 참가, (전국대회) 1,691명 참가, (기능과제출제) 258과제
2024	(명장 등 선정) 1회, (지방대회) 4,711명 참가, (전국대회) 1,755명 참가, (기능과제출제) 272과제
2025	(명장 등 선정) 1회, (지방대회) 4,649명 참가, (전국대회) 1,725명 참가, (기능과제출제) 272과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숙련기술장려) 우수숙련기술인 선정을 통해 숙련기술의 습득 장려 및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대한민국명장 30명, 우수숙련기술자 100명 선정)
- (계속종사장려금 지원) 대한민국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전문 숙련기술자의 계속종사 유도하여 숙련기술 역량의 사회적 확산 도모(1,242명 지원)
- (국내기능경기대회) 기능경기를 통한 예비숙련기술인의 숙련기술 향상
 - 공동메달제 및 우수상입상자 전국대회 참가를 통한 우수기술인력 배출 및 저변 확대
 - 스마트 채점관리시스템 전 직종(50개) 도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환경 구축
- (국제기능올림픽) 국제대회 수준에 부합하는 훈련장 개선 및 시설·장비·재료 지원, 대면·비대면 전지훈련 활성화 등 국제 기술·정보교류 강화, 직종별 수준 분석 및 취약직종 집중 관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인 경우 작성

☐ 총사업비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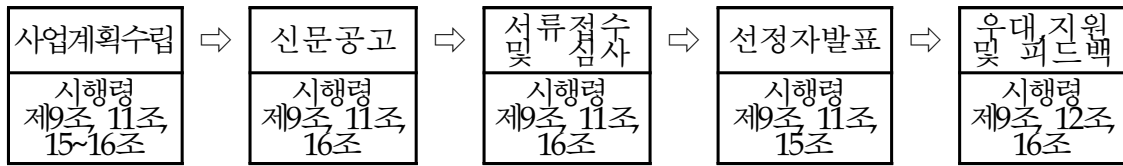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3~2028	-	19	126	4	92	124	365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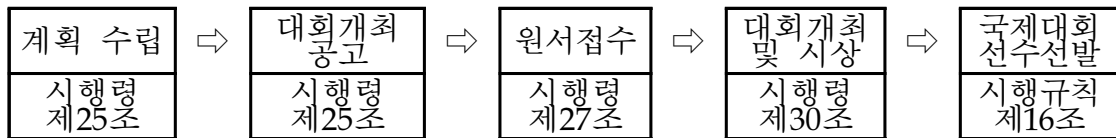
○ 숙련기술장려(우수숙련기술인 선정·우대사업)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9조 ~ 16조



○ 기능경기대회 개최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5, 27, 30조, 시행규칙 제16조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8,261	-	28,261	30,939	30,939	109.5	100.0	-	-
2023	29,153	-	29,153	29,153	29,153	100.0	100.0	-	-
2024	40,057	-	40,057	40,725	40,725	100.0	100.0	-	-
2025	33,744	△9,189	24,555	24,555	24,555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9)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1134-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4	500
명칭	직업능력개발	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산업 인력공단 (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직업능력정책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화)	5,134	5,597	5,597	6,608	6,608	1,011	18.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134	5,134	5,134	-	-	5,597	5,597	5,597	-	-	6,608
· 정보시스템운영관리	5,134	5,134	5,134	-	-	5,597	5,597	5,597	-	-	6,6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능력개발·능력평가·외국인고용지원·해외취업지원·국제교류협력·숙련기술진흥 등 기관사업의 적시적기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국민에게 신속·정확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조(목적) 및 제6조(사업)
-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② 추진경위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13~'17년과 '18~'22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739	5,732	5,134	5,597	6,608

- 기타:

- Q-Net(국가자격·전문자격·과정평가형 등), 국가직무능력표준, 월드잡+(해외취업·연수), 마이스터넷(숙련기술·기능경기), 고용허가제통합서비스(한국어능력시험·취업교육·귀국지원), 한국직업방송·HRD4U(기업·일학습) 등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및 핵심사업 수행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17종, 12개 대국민 웹사이트)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국가기술자격 및 전문자격 수험자(근로자, 학생, 주부 등), 해외취업 희망자 등 전국민 및 외국인근로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6,608	10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 ('25) 5,597 → ('26) 6,608백만원(+1,011백만원)

①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5) 5,597 → ('26) 6,608백만원(+1,011백만원)

①-1)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25) 3,442 → ('26) 4,453백만원(+1,011백만원)

(①-1-1) HW유지보수 : ('25) 1,052 → ('26) 1,580백만원(+528백만원)

· (산출) 물량 26,346백만원(도입비) × 6%(유지보수 요율) = 1,580백만원

(①-1-2) SW유지보수 : ('25) 1,855 → ('26) 2,338백만원(+483백만원)

· (산출) 물량 29,230백만원(도입비) × 8%(유지보수 요율) = 2,338백만원

(①-1-3) 자격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 ('26) 286백만원(전년동)

· (산출) (중급기술자 3명 × 239,748원 × 20.8일 × 12월) + (초급기술자 2명 × 215,681원 × 20.8일 × 12월) = 286백만원

(①-1-4) 경영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 ('26) 76백만원(전년동)

· (산출) 고급기술자 1명 × 305,433원 × 20.8일 × 12월 = 76백만원

(①-1-5) 웹사이트 유지보수 : ('26) 173백만원(전년동)

· (산출) (중급기술자 2명 × 239,748원 × 20.8일 × 12월) + (초급기술자 1명 × 215,681원 × 20.8일 × 12월) = 173백만원

①-2) 사무용 SW 구매 : ('26) 396백만원(전년동)

(①-2-1) 한글SW(ILA) : 720명×94.5천원 = 68백만원(전년동)

(①-2-2) MS제품군(GAS) : 720×238천원 = 171백만원(전년동)

(①-2-3) 백신프로그램(V3) : 2,000명×35,946원 = 70백만원(전년동)

(①-2-4) 망분리라이선스(VM-ware) : (333명 X 207천원) + (262명 X 207천원 X 1/3(4개월)) = 87백만원(전년동)

①-3) 사무용 전산장비 교체 : ('26) 278백만원(전년동)

(①-3-1) 사무용 PC : 200대 × 1,100천원 = 220백만원

(①-3-2) 노트북 : 20대 × 1,200천원 = 24백만원

(①-3-3) 프린터 : 34대 × 1,000천원 = 34백만원

①-4) 정보화사업 운영지원 : ('26) 1,215백만원(전년동)

(①-4-1)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 80회선 × 950천원 × 12월 = 912백만원(전년동)

(①-4-2) 인터넷 회선 사용료 : 2회선 × 9백만원 × 12월 = 216백만원(전년동)

(①-4-3) SMS 사용료 : 420만건 × 12.43원 = 52백만원(전년동)

(①-4-4) 정보화교육 및 운영비 : 35백만원(전년동)

웹페이지 보안 등 인증비 : 1식 × 10백만원 = 10백만원

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 1식 × 25백만원 = 25백만원

①-5) 데이터센터 노후 통신장비 교체 : ('26) 266백만원(전년동)

· (산출) 노후 통신장비 교체 : 1식 × 266백만원 = 266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597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5,597백만원 ①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5,597백만원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3,442백만원 · 한글, 백신 등 SW 구매 : 396백만원 · 사무용 전산장비 교체 : 278백만원 · 정보화사업 운영지원 : 1,215백만원 · 데이터센터 노후 통신장비 교체 : 265백만원	6,608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6,608백만원 ①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6,608백만원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4,453백만원 · 한글, 백신 등 SW 구매 : 396백만원 · 사무용 전산장비 교체 : 278백만원 · 정보화사업 운영지원 : 1,215백만원 · 데이터센터 노후 통신장비 교체 : 26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Digital Training 수료율 (단위: %)	목표	88.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9.7	-	-	-	-			
	달성도	101.9	-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수 (단위: 명)	목표	13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132,005	-	-	-	-			
	달성도	101.5	-	-	-	-			
K-Digital Training 취업률 (단위: %)	목표	(신규)	6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57.5	-	-	-			
	달성도	-	84.3	-	-	-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취업률 (단위: %)	목표	73.0	80.3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1.7	80.1	-	-	-			
	달성도	111.9	99.8	-	-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료율 (단위: %)	목표	(신규)	7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78.6	-	-	-			
	달성도	-	99.7	-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인원 (단위: 명)	목표	(신규)	(신규)	786,000	690,258	(삭제)	-	-	-
	실적	-	-	664,955	-	-			
	달성도	-	-	84.5	-	-			
훈련 양성률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9.3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2) 88.8 (23) 89.7 (24) 89.5	$\frac{\text{내일배움카드 수료 인원} / \text{훈련실사인원} \times 0.8(\text{가중치}) + (\text{폴리텍 훈련 수료 인원} / \text{훈련실사인원}) \times 0.2(\text{가중치})}{\text{전수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식 - 전산장비가동률 100% - DB복구 모의훈련 실시 5회 - 정보화 고객만족도 조사 1회 -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점수 100점 - 공공데이터 신규개방 20종 - 기관 공동 활용 데이터 발굴 11건 - 정보자원관리 수준진단 평가점수 100점
2023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식 - 전산장비가동률 100% - DB복구 모의훈련 실시 4회 - 정보화 고객만족도 조사 1회 -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점수 100점 - 공공데이터 신규개방 23종 - 기관 공동 활용 데이터 발굴 30건 - 업무망 분리구축 100%
2024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식 - 전산장비가동률 100% - DB복구 모의훈련 실시 4회 - 정보화 고객만족도 조사 1회 -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점수 100점 - 공공데이터 신규개방 23종 - 디지털정부혁신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 데이터 인재양성 선도기관 행정안전부 인증 - 전자정부 수준진단 98.33점(공공기관 평균 91.75점)
2025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식 - 전산장비가동률 100% - DB복구 모의훈련 실시 4회 - 해킹메일 대비훈련 4회 - 노후통신장비(L3 2대, L4 2대) 교체 - 공공데이터 신규개방 22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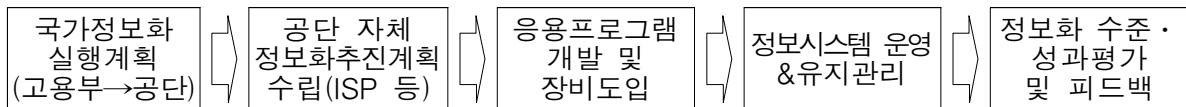
- (공공데이터 신규 개방) 연 20건 이상의 기관보유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하여 국민 및 기업 경제활성화 기여
- (전산장비 가동률) 99% 이상의 전산장비가동으로 무중단 공공서비스 실현
- (DB 복구 모의훈련) 연 4회(분기별 1회)의 DB 복구 훈련을 통해 기관 주요 데이터의 안정적 운영환경 확보
- (전자정부 성과관리)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99점 이상 획득으로 정보자원 운영관리 및 성과목표 관리 우수성 확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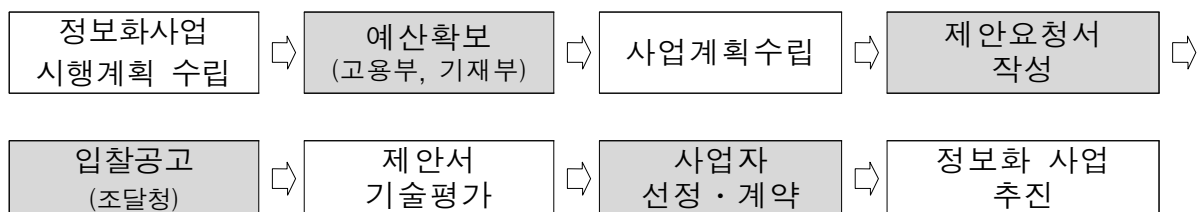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용노동부 : 정보화사업 기준 및 지침 마련(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집행



- 공단 정보화사업 구축 추진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재정사업자율평가('24회계연도) 미흡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739	-	5,739	5,739	5,739	100.0	100.0	-	-
2023	5,732	-	5,732	5,732	5,732	100.0	100.0	-	-
2024	5,134	-	5,134	5,134	5,134	100.0	100.0	-	-
2025	5,597	-	5,597	5,597	5,597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0)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1136-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0
명칭	직업능력개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직업훈련 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사업시행주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사업시행주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사 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사업시행주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직업능력개발담당자 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75,138	75,778	75,778	78,970	82,080	6,302	8.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5,138	75,138	75,138	-	-	75,778	75,778	75,778	-	-	82,080
·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양성	22,795	22,795	22,795	-	-	23,207	23,207	23,207	-	-	23,527
·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23,645	23,645	23,645	-	-	23,690	23,690	23,690	-	-	27,980
· 평생능력개발 온라인훈련사업	28,698	28,698	28,698	-	-	28,881	28,881	28,881	-	-	30,57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국가산업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고급 기술·기능인력의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을 담당할 우수 직업능력개발담당자(훈련교사, 실천공학기술자(기업현장교사), 인력개발담당자 등) 양성 및 재·향상훈련과 첨단훈련매체를 활용한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 양성) 직업능력개발담당자 및 전문가, 기업연계형 현장 실습 운영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담당자(훈련교사, 실천공학기술자, 인력개발담당자) 양성
-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직업훈련교사 및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 신기술개발 연수, 첨단신산업분야 인력양성 등 훈련교원 양성 및 재교육 과정
- (평생능력개발 온라인훈련사업) 근로자, 구직자 등 전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온라인 훈련콘텐츠 개발 및 보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52조의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훈련 또는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계좌적합훈련과정
3.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한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수교육 등 사업의 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의 요건·내용·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2(기술교육대학의 설립·운영)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실천공학기술자·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공학교육에 관한 선도모형의 개발·운영 및 보급사업
3. 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
4.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5. 다른 법령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시행령)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시행령)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제2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훈련직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
2.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 기법
3. 훈련생에 대한 지도 및 상담
4. 훈련성과 및 훈련생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보수교육의 시간은 24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7조의2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사업
2. 훈련매체, 훈련과정, 훈련방법 등의 개발·보급사업
3.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4. 조사·연구사업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제26조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 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관리를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

제26조(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2. 3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직업훈련교사 양성 목적 대학교)
 - '95. 7월 고용보험법 제정 동법에 근거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주의 직업훈련의무제도 폐지
 - '98년 직업훈련기본법 폐지.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훈련 촉진 사업을 위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하고 지원재원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규정
 - '99년 직업훈련촉진기금 폐지로 피보험자 등의 위탁·훈련사업비와 교육지원비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 기관운영비와 경상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등
 - '19년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
 - '20년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9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6,560	80,226	75,138	75,778	82,08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학부생(직업능력개발담당자) 및 대학원생(직업능력개발전문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기관, 재직 근로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직업훈련 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	출연	한국기술 교육 대학교	23,527	100.0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3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27,980		
평생능력개발 온라인 훈련사업			30,573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 (2025 예산) 75,778백만원 → (2026 예산) 82,080백만원, +6,302백만원

①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양성

: (2025 예산) 23,207백만원 → (2026 예산) 23,527백만원, +320백만원

- (요구) 직업능력개발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필수소요 요구, 공무원 및 산학교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 (산출) 직업능력개발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 15,969백만원
 - 기업연계형 현장실습제도(IPP) 2,021백만원
 - 학부(과) 교과과정 개편 및 4년제 대학용 NCS 교육과정 개발 운영 722백만원
 - 글로벌 TVET 프로그램 운영 203백만원
 - 학부과실험실습장비비 4,612백만원

②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 (2025 예산) 23,690백만원 → (2026 예산) 27,980백만원, +4,290백만원

- (요구) 직업훈련교사 양성 및 직업훈련교·강사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법제화 된 의무 보수교육 운영비, 교직향상교육 물량 축소(45,000명→40,327명), 전공분야 AI 보수교육 5천명 단가 인상(30만원→77만원), 직업훈련교·강사 대상의 AI 특화 인재 500명 양성, 공무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 (산출) 직업훈련교원 교직향상교육 10,237백만원
 - 직업훈련교원 전공향상교육 10,490백만원
 - 교육원 실험실습 장비비 2,483백만원
 - 직업훈련 신교수법 개발 1,500백만원
 - K-DT 강사 아카데미 500백만원
 - AI 특화 인재양성 2,770백만원

③ 평생능력개발온라인 훈련사업

: (2025 예산) 28,881백만원 → (2026 예산) 30,573백만원, +1,692백만원

- (요구) 전 국민의 온라인 기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필수소요, STEP LMS 보급 확대(60개소), AI 접목 STEP 고도화 ISP 수립, 디지털트윈 훈련과정(1개 분야) 개발·운영, 공무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 (산출) 온·오프라인 연계 평생학습체제 구축·운영 2,572백만원
 - 온라인훈련 운영 1,500백만원
 - 온라인훈련 콘텐츠 개발 19,300백만원
 - 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3,001백만원
 - 온라인훈련 장비비 1,600백만원
 - 에듀테크 기반 직업훈련 Test-Bed 및 확산 1,840백만원
 - 디지털트윈 훈련과정 개발·운영 76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5,778	○ 사업출연금(350-02) : 75,778백만원 ①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양성 23,207백만원 가. 직업능력개발 담당자 양성 (15,669백만원) · 학부(과) 및 대학원 양성비 3,830명×4,091천원 나. 기업연계형 현장실습제도(IPP) (2,006백만원) · 380명×5,278.9천원 다. 학부(과) 교육과정 개편 (413백만원) · 3전공×4과목×19,500천원 · 4차 산업혁명 관련 11과목×16.3백만원 라. 4년제 대학용 NCS 교육과정 개발 운영 (309백만원) · 25전공×12.4백만원 마. 글로벌 TVET 프로그램 운영 (198백만원) · 국제 컨퍼런스(TVET-CAMPUS)×90백만원 · 한·ILO(국제노동기구) 교류프로그램 운영×108백만원 바. 학부과실험실습장비비 (4,612백만원) · 학부(8학부19전공) 및 대학원(10학과20전공)×4,612백만원	82,080	○ 사업출연금(350-02) : 82,080백만원 ①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양성 23,527백만원 가. 직업능력개발 담당자 양성 (15,969백만원) · 학부(과) 및 대학원 양성비 3,830명×4,169천원 나. 기업연계형 현장실습제도(IPP) (2,021백만원) · 380명×5,278.9천원 다. 학부(과) 교육과정 개편 (413백만원) · 3전공×4과목×19,500천원 · 4차 산업혁명 관련 11과목×16.3백만원 라. 4년제 대학용 NCS 교육과정 개발 운영 (309백만원) · 25전공×12.4백만원 마. 글로벌 TVET 프로그램 운영 (203백만원) · 국제 컨퍼런스(TVET-CAMPUS)×90백만원 · 한·ILO(국제노동기구) 교류프로그램 운영×113백만원 바. 학부과실험실습장비비 (4,612백만원) · 학부(8학부19전공) 및 대학원(10학과20전공)×4,612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②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23,690백만원	② 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27,980백만원	
	가. 직업훈련교원 교직향상교육 (11,214백만원)	가. 직업훈련교원 교직향상교육 (10,237백만원)	
	· 교직훈련과정 1,200명×0.564백만원 = 676백만원	· 교직훈련과정 1,200명×0.564백만원 = 676백만원	
	· 신증년 과정 500명×0.982백만원 = 491백만원	· 신증년 과정 500명×0.982백만원 = 491백만원	
	· 향상훈련 과정 200명×0.79백만원 = 158백만원	· 향상훈련 과정 200명×0.79백만원 = 158백만원	
	· 교직보수교육 이수 45,000명×0.214백만원 = 9,630백만원	· 교직보수교육 이수 40,327명×0.214백만원 = 8,630백만원	
	· 스타훈련교사 선발 10명×2.5백만원 = 25백만원	· 스타훈련교사 선발 10명×2.5백만원 = 25백만원	
	· 연수사업운영비 12월×19.5백만원 = 234백만원	· 연수사업운영비 12월×21.4백만원 = 257백만원	
	나. 직업훈련교원 전공향상교육 (7,993백만원)	나. 직업훈련교원 전공향상교육 (10,490백만원)	
	· 전공분야 보수교육 15,000명×0.3백만원 = 4,500백만원	· 전공분야 보수교육 10,000명×0.3백만원 = 3,000백만원	
· 연수사업운영비(신기술) 12월×36.25백만원 = 435백만원	· 전공분야 보수교육 5,000명×0.77백만원 = 3,850백만원		
· 연수사업운영비(첨단신산업) 12월×122.6백만원 = 1,471백만원	· 연수사업운영비(신기술) 12월×36.25백만원 = 435백만원		
· 직업계고교원현장기술연수 750명×1.55백만원 = 1,163백만원	· 연수사업운영비(첨단신산업) 12월×134.8백만원 = 1,618백만원		
· 과정평가형 자격운영 컨설팅 5개교×59백만원 = 295백만원	· 직업계고교원현장기술연수 750명×1.55백만원 = 1,163백만원		
· 해외 전문가 초빙 8명×13.88백만원 = 111백만원	· 과정평가형 자격운영 컨설팅 5개교×59백만원 = 295백만원		
· 교원 신기술향상 훈련 3명×6백만원 = 18백만원	· 해외 전문가 초빙 8명×13.88백만원 = 111백만원		
		· 교원 신기술향상 훈련 3명×6백만원 = 18백만원	
다. 교육원 실험실습 장비비 (2,483백만원)	다. 교육원 실험실습 장비비 (2,483백만원)		
· 노후교체 장비 148점×6.76백만원 = 1,000백만원	· 노후교체 장비 148점×6.76백만원 = 1,000백만원		
· 신기술 장비 447점×3.32백만원 = 1,483백만원	· 신기술 장비 447점×3.32백만원 = 1,483백만원		
라. 직업훈련신교수법 개발 (1,500백만원)	라. 직업훈련신교수법 개발 (1,500백만원)		
· 14분야×107.14백만원 = 1,500백만원	· 14분야×107.14백만원 = 1,500백만원		
마. K-DT 강사 아카데미 운영 (500백만원)	마. K-DT 강사 아카데미 운영 (500백만원)		
· 연수운영 50명×1개 직종× 9백만원 = 450백만원	· 연수운영 50명×1개 직종× 9백만원 = 450백만원		
· 클라우드 교육장비 1식×50백만원 = 50백만원	· 클라우드 교육장비 1식×50백만원 = 50백만원		
	바. AI 특화 인재양성 (2,770백만원)		
	· 교육과정운영비 500명×3백만원 = 1,500백만원		
	· AI 학습분석실 구축 7실×181.4백만원 = 1,270백만원		
③ 평생능력개발온라인 훈련사업 28,881백만원	③ 평생능력개발온라인 훈련사업 30,573백만원		
가. 온오프라인 연계 평생학습체제 구축·운영 (2,341백만원)	가. 온오프라인 연계 평생학습체제 구축·운영 (2,572백만원)		
· (플랫폼 구축) STEP 유지보수 등 2,011백만원	· (플랫폼 구축) STEP 유지보수 등 2,011백만원		
· (플랫폼 운영 및 확산) STEP 운영 등 330백만원	· (플랫폼 운영 및 확산) STEP 운영 등 430백만원		
	· (AI 접목 STEP 고도화 ISP) 1식×131백만원		
나. 온라인 훈련 운영 (1,500백만원)	나. 온라인 훈련 운영 (1,500백만원)		
· 13.4만명×11,200원	· 13.4만명×11,200원		
다. 온라인 훈련 콘텐츠 개발 (19,300백만원)	다. 온라인 훈련 콘텐츠 개발 (19,300백만원)		
· (이러닝 콘텐츠) 320×50백만원	· (이러닝 콘텐츠) 320×50백만원		
· (가상훈련 콘텐츠) 15×220백만원	· (가상훈련 콘텐츠) 15×220백만원		
마. 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2,900백만원)	마. 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3,001백만원)		
· 54명×53.7백만원	· 54명×55.57백만원		
바. 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 장비비 (1,000백만원)	바. 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 장비비 (1,600백만원)		
· 서버 장비 4ea×250백만원	· 서버 장비 4ea×250백만원		
	· STEP 인프라 분양 60개×10백만원		
사. 에듀테크 기반 직업훈련 Test-Bed 및 확산 (1,840백만원)	사. 에듀테크 기반 직업훈련 Test-Bed 및 확산 (1,840백만원)		
·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3종×200백만원	·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3종×200백만원		
· (직업훈련 전용 메타버스플랫폼 구축) 1식×480백만원	· (직업훈련 전용 메타버스플랫폼 구축) 1식×480백만원		
· (3D 스캔·볼류 스튜디오 구축·운영) 1식×300백만원	· (3D 스캔·볼류 스튜디오 구축·운영) 1식×300백만원		
· (메타버스 기반 훈련 운영) 18회×20백만원	· (메타버스 기반 훈련 운영) 18회×20백만원		
· (교수·학습 모델 고도화 연구) 1과제×100백만원	· (교수·학습 모델 고도화 연구) 1과제×100백만원		
	아. 디지털트윈 훈련과정 개발·운영 (760백만원)		
	· 1개 분야×76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Digital Training 수료율 (단위: %)	목표	88.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9.7	-	-	-	-			
	달성도	101.9	-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수 (단위: 명)	목표	13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132,005	-	-	-	-			
	달성도	101.5	-	-	-	-			
K-Digital Training 취업률 (단위: %)	목표	(신규)	6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57.5	-	-	-			
	달성도	-	84.3	-	-	-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취업률 (단위: %)	목표	73.0	80.3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1.7	80.1	-	-	-			
	달성도	111.9	99.8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료율 (단위: %)	목표	(신규)	7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78.6	-	-	-			
	달성도	-	99.7	-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인원 (단위: 명)	목표	(신규)	(신규)	786,000	690,258	(삭제)	-	-	-
	실적	-	-	664,955	-	-			
	달성도	-	-	84.5	-	-			
훈련 양성률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9.3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2) 88.8 (23) 89.7 (24) 89.5	(내일배움카드 수료 인원/훈련실사인원) x 0.8(가중치) + (폴리텍 훈련 수료 인원/훈련실사인원) x 0.2(가중치)	전수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한국대학평가원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취득(5개 평가영역 평가준거 모두 만족) - '22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교육중심대학 1위(14년 연속) - '22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정보통신공학전공' 최우수 - [정규 양성과정] 4,698명(학부 4,133명+대학원 565명) - [재·향상 연수] 91,822명(교직향상 70,500명, 전공향상 21,322명) - [온라인훈련] 225,900명, 훈련콘텐츠 430과정 개발(이러닝 400+VT 30) 등
2023	- 취업률 80.3%(교육부 공시기준, 졸업생 500명 이상 4년제 대학 중 2위) - '23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학생교육 우수대학 평가' 1위 - '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기재부 주관) '우수 등급(85.6점)' - [정규 양성과정] 4,681명(학부 4,111명+대학원 570명) - [재·향상 연수] 83,010명(교직향상 60,656명, 전공향상 22,231명, KDT 123명) - [온라인훈련] 238,561명, 훈련콘텐츠 421과정 개발(이러닝400+VT15+메타버스6) 등
2024	- 취업률 80.1%(교육부 공시기준, 졸업생 500명 이상 4년제 대학 중 3위) - 전국 4년제 "지방 소재 대학 중 수시 경쟁률 상위 10위권 이내(8.94:1)" - '24년 국민권익위 "종합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평가분류기관 중 최고 등급) - [정규 양성과정] 4,785명(학부 4,215명+대학원 570명) - [재·향상 연수] 80,718명(교직향상 56,092명, 전공향상 24,477명, KDT 149명) - [온라인훈련] 260,336명, 훈련콘텐츠 342과정 개발(이러닝321+VT15+메타버스6) 등
2025	- 2026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대전·세종·충청권 4년제 대학 최고(11.2:1)" - 특허청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통령상(연속 2회) 등 수상 - [정규 양성과정] 4,737명(학부 4,157명+대학원 580명) - [재·향상 연수] 64,948명(교직향상 40,756명, 전공향상 24,101명, KDT 91명) - [온라인훈련] 249,439명, 훈련콘텐츠 338과정 개발(이러닝320+VT15+메타버스3)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우수 직업능력개발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연간 3,830명(정원)) 양성을 통해 고도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
- 훈련교·강사의 보수교육(전공, 교직) 추진(연 55,327명) 및 직업훈련교사(연 1,900명), KDT 훈련교강사(50명), AI 특화 인재(500명)를 양성하여 직업훈련교원의 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질 제고에 기여
- 공공 온라인직업훈련플랫폼 STEP 고도화 및 공공콘텐츠 개발(이러닝 320개, VT 15개, 메타버스 3개)을 통하여 전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기회(연간 265,000명)를 확대 제공하고, 민간 직업훈련기관 등의 新 훈련방식 도입 지원 등 직업 훈련 선진화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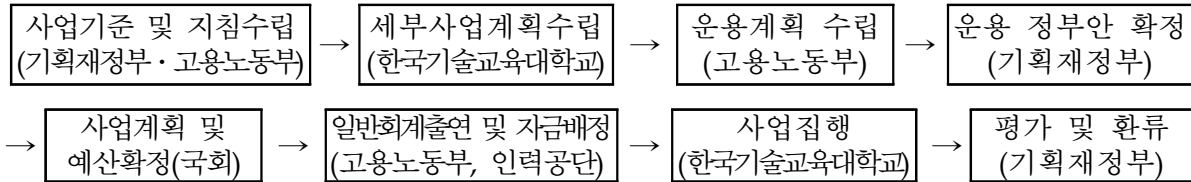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집행절차 : 정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학습지도능력을 갖춘 실천공학기술자 및 인력개발담당자 양성사업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위탁실시하고, 재원은 정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학교법인에 재출연

- 사업추진 흐름도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가상훈련에 필요한 장비 확충 등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방안과 장비의 공동 활용을 위한 인프라 지원 방안 마련(환노위,'22결산)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이 보다 많은 강의 정보를 수강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훈련 추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예정처,'23결산)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6,560	-	86,560	86,560	86,560	100.0	100.0	-	-
2023	80,226	-	80,226	80,226	80,226	100.0	100.0	-	-
2024	75,138	-	75,138	75,138	75,138	100.0	100.0	-	-
2025	75,778	-	75,778	75,778	75,778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 실집행 불용사유: 구매예산 낙찰차액 및 사업비 절감운용 등 일부예산 불용
2023	- 특이사항 없음 - 실집행 불용사유: 구매예산 낙찰차액 및 사업비 절감운용 등 일부예산 불용
2024	- 특이사항 없음 - 실집행 불용사유: 구매예산 낙찰차액 및 사업비 절감운용 등 일부예산 불용
2025	- 특이사항 없음 - 「고등교육법」에 따라 회계기간을 3월 ~ 익년 2월말로 운영 중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31)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2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4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80D
명칭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0
명칭	고용안전망 확충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878,863	885,130	910,880	944,265	944,265	59,135	6.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37,516	878,868	878,863			885,130	910,880	910,878			944,265
가. 사회보험사각 지대해소	836,243	876,795	876,795			882,899	907,899	907,898			940,929
· 보험료지원금	813,594	854,146	854,146			860,136	885,136	885,136			918,572
· 운영비	22,649	22,649	22,649			22,763	22,763	22,762			22,357
- 고용부 직접	339	339	339			339	339	338			289
- 공단 위탁	22,310	22,310	22,310			22,424	22,424	22,424			22,068
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지원	1,273	2,073	2,068		5	2,231	2,981	2,980			3,336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608	1,408	1,408			1,596	2,346	2,346			2,441
· 가사서비스 전산시스템 운영	75	75	75			165	165	165			165
· 제공기관 인증 등 제도운영	590	590	585		5	470	470	469			7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가사서비스 시장의 공식화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시행('22. 6. 16.)
 - 정부인증제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등 규정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내내역))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80%)를 지원

- (가사서비스 전산시스템(내내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정부인증 등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내·외부망 전산시스템 운영
- (제공기관 인증 등 제도운영(내내역))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제공기관 인증, 제공기관 관리·감독 업무 수행, 제도 홍보 및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2) 사업개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같은 법 제48조의 2제8항제3호(예술인의 고용보험 특례), 같은 법 제48조의3제8항제3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 2012.7월~ 계속
 - 추진배경
 -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발생 지속
 - 특히, 소규모사업의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이들 취약 계층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시행('12.7월~)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2.7월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46,594	1,076,405	876,795	907,899	940,92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 지원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② 추진경위 : 21대 국회 정부안 및 의원안(3건) 발의, 국회 본회의('21.5.21) 의결 및 법률 공포('21.6.15), 시행('22.6.16)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2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97	7,669	1,273	2,981	3,336

* '22년 신규사업, '24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내역 사업으로 이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① (사회보험료) 고용노동부,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 ② (전산)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③ (제도운영) 고용노동부(인증, 관리·감독 등), 민간위탁기관(센터운영 등)
- 사업 수혜자 : 「가사근로자법」상 인증받은 업체 및 소속 가사근로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가사근로자고용 개선지원 (가사서비스 전산시스템)	출연	한국고용 정보원	165백만원	100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25 추경) 907,899백만원 → ('26 예산) 940,929백만원
(2025 본예산 882,899백만원 → 제2회 추경 907,899백만원)

- (요구) 지원인원(107.6만명 → 108.3만명) 및 최저임금 상승(2.9%) 등에 따른 보험료 지원 금액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 (산출) 사회보험료 지원 918,572백만원(증 58,436백만원)
운영비 22,357백만원(△406백만원)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07,899	○ 보험료 지원금(기타보전금 310-04): 885,136백만원 가. 일반근로자 : 850,580백만원 ㉠ 고용보험료 지원: 149,967백만원 $434,090 \text{명} \times 176 \text{만원} \times 2.05\% \times 80\% \times 12 \text{개월} \div 149,967 \text{백만원}$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700,613백만원 $445,965 \text{명} \times 185 \text{만원} \times 9\% \times 80\% \times 12 \text{개월} \div 700,613 \text{백만원}$ 나. 일용근로자 : 13,270백만원 ㉠ 고용보험료 지원: 11,245백만원 $90,890 \text{명} \times 62.8 \text{만원} \times 2.05\% \times 80\% \times 12 \text{개월} = 11,245 \text{백만원}$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2,026백만원 $1,990 \text{명} \times 117.8 \text{만원} \times 9\% \times 80\% \times 12 \text{개월} = 2,026 \text{백만원}$ 다. 예술인 : 438백만원 ㉠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396백만원 $2,438 \text{명} \times (105.6 \text{만원} \times 1.6\% \times 80\%) \times 12 \text{개월} \div 396 \text{백만원}$ ㉡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42백만원 $520 \text{명} \times (104.7 \text{만원} \times 0.8\% \times 80\%) \times 12 \text{개월} = 42 \text{백만원}$ 라. 노무제공자 : 20,848백만원 ㉠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4,638백만원 $18,059 \text{명} \times 167 \text{만원} \times 1.6\% \times 80\% \times 12 \text{개월} \div 4,638 \text{백만원}$ ㉡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16,210백만원 $129,017 \text{명} \times 163.5 \text{만원} \times 0.8\% \times 80\% \times 12 \text{개월} \div 16,210 \text{백만원}$ ○ 운영비: 22,763백만원 가. 고용부 직접운영비: 339백만원 나.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22,424백만원	940,978	○ 보험료 지원금(기타보전금 310-04): 918,572백만원 가. 일반근로자 : 885,526백만원 ㉠ 고용보험료 지원: 147,464백만원 $420,270 \text{명} \times 181 \text{만원} \times 2.05\% \times 80\% \times 12 \text{개월} \div 147,464 \text{백만원}$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700,613백만원 $426,838 \text{명} \times 190 \text{만원} \times 9.5\% \times 80\% \times 12 \text{개월} \div 738,062 \text{백만원}$ 나. 일용근로자 : 12,169백만원 ㉠ 고용보험료 지원: 10,777만원 $85,702 \text{명} \times 63.9 \text{만원} \times 2.05\% \times 80\% \times 12 \text{개월} = 10,777 \text{백만원}$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1,392백만원 $1,375 \text{명} \times 111 \text{만원} \times 9.5\% \times 80\% \times 12 \text{개월} = 1,392 \text{백만원}$ 다. 예술인 : 372백만원 ㉠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340백만원 $2,472 \text{명} \times (89.6 \text{만원} \times 1.6\% \times 80\%) \times 12 \text{개월} \div 340 \text{백만원}$ ㉡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32백만원 $392 \text{명} \times (105.9 \text{만원} \times 0.8\% \times 80\%) \times 12 \text{개월} = 32 \text{백만원}$ 라. 노무제공자 : 20,505백만원 ㉠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4,798백만원 $18,068 \text{명} \times 172.9 \text{백만원} \times 1.6\% \times 80\% \times 12 \text{개월} \div 4,798 \text{백만원}$ ㉡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15,707백만원 $146,181 \text{명} \times 159.6 \text{만원} \times 0.8\% \times 80\% \times 12 \text{개월} \div 15,707 \text{백만원}$ ○ 운영비: 22,357백만원 가. 고용부 직접운영비: 289백만원 나.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22,068백만원

□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25 추경) 2,981백만원 → ('26 예산) 3,336백만원
(2025 본예산 2,231백만원 → 제2회 추경 2,981백만원)

- (요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 금액 증액,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확대를 통한 가사근로자 지원 강화

- (산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2,441백만원(증 845백만원)

가사서비스 전산시스템운영 165백만원

제공기관 인증 등 제도운영 730백만원(증 260백만원)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981	①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2,346백만원 - 기타보전금(310-14) 2,326,000,000원 = (기존 1,525명×1,230,000원×0.0884×12개월) + (외국인 300명×1,230,000원×0.0164×12개월) + ('25 신규입사자 335명×1,230,000원×0.0884×6개월) + ('25 신규입사자 140명×1,230,000원×0.0432×6개월) + (단수조정)650,440원 * (1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사업장 지원 **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지원 - 일반용역비(210-14) 20,000,000원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10,000,000원×2개소 ② 가사서비스 전산시스템 운영 : 165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유지보수비 165,000,000원 ③ 제공기관 인증 등 제도운영 : 470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20,000,000원 가. 홍보리플렛 제작 등 9,600,000원 = 240원×40,000부 나. 인증제도 홍보(직업소개기관 안내 등) 10,400,000원 = (본부)10,000원×20개×5회 + (지방관서)10,000원×47개소×2회×10개 - 일반용역비(210-14) 380,000,000원 =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190,000,000원×2개소 - 국내여비(220-01) 10,000,000원 = (본부)50,000원×3명×4회 + (지방관서)50,000원×47개소×1명×4회 - 연구용역비(260-01) 60,000,000원 =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1회	3,336	①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2,441백만원 - 기타보전금(310-14) 2,421,000,000원 = (고용보험) 연인원 30,458명×1,454,000원×2.05%×80% + (국민연금) 연인원 15,336명×1,454,000원×9.5%×80% - 일반용역비(210-14) 20,000,000원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10,000,000원×2개소 ② 가사서비스 전산시스템 운영 : 165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유지보수비 165,000,000원 ③ 제공기관 인증 등 제도운영 : 730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20,000,000원 가. 홍보리플렛 제작 등 9,600,000원 = 240원×40,000부 나. 인증제도 홍보(직업소개기관 안내 등) 10,400,000원 = (본부)10,000원×20개×4회 + (지방관서)10,000원×48개소×2회×10개 - 일반용역비(210-14) 700,000,000원 =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250,000,000원×2개소+200,000,000원×1개소 - 국내여비(220-01) 10,000,000원 = (본부) 50,000원×3명×4회 + (지방관서) 50,000원×48개소×1명×4회 △ (단수조정) 200,000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용보험가입자수 (단위: 천명)	목표	15,640	15,710	15,993	16,188	16,317	'25년 목표치 대비 0.8% 상향	연도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	고용보험 전산망
	실적	15,555	15,835	16,060	-	-			
	달성도	99.5	100.8	100.4	-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 (단위: %)	목표	56	56	-	-	-	-	-	-
	실적	53.4	57.9	-	-	-			
	달성도	95.4	103.4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수 (단위: 명)	목표	470,000	376,000	-	-	-	-	-	-
	실적	207,258	212,873	-	-	-			
	달성도	44.1	56.6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2021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월평균 지원자수 80.5만명
2022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월평균 지원자수 77.9만명
2023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월평균 지원자수 97.5만명
2024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월평균 지원자수 111만명
2025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월평균 지원자수 103.5만명('25.11월말 기준)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2022	○ 제도도입 홍보·안내, 제도안착 노력 및 정부인증 컨설팅(100개소) 등을 통해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35개소 인증 (가사근로자 약 370명)
2023	○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88개소 (가사근로자 1,190여명)
2024	○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122개소 (가사근로자 3,600여명)
2025	○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129개소 (가사근로자 4,000여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소규모사업의 저임금 근로자 및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신규가입 확대 (일반근로자 86만명, 일용근로자 9.3만명, 예술인 0.3만명, 노무제공자 12만명)를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 (법 실효성 확보) 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주휴·퇴직금 등 노무비용 상승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여 정부인증 전환을 유인하는 효과 기대
- (근로조건 보호) 직접 고용을 통한 휴일·휴가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및 사회 보험 적용 등을 통해 실직·산재·질병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
-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정의 가사서비스 이용 촉진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사업주 피보험자	공단	공단	사용자	공단	공단
보험료지원금 신청	지원여부 확인/결정	보험료 부과 고지 (지원금액을 공제한 금액 고지)	원천징수 후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확인	보험료지원금 지원

②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주	공단	공단
보험료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여부 확인	보험료(보험료 지원금 공제 금액) 부과
4단계	5단계	6단계
사업주	정부	공단
부과된 보험료 납부	보험료 지원금 공단 지급	사업주 부과 보험료와 정부 보험료 지원금의 납부 확인 (보험료 100%)

8) 각종 평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년 결산) 적정한 지원대상을 설정함으로써 예산규모를 추계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추계 오차로 인한 집행실적 부진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 지원 강화방안」 마련 및 보고(상임위, '23.11.8.)
 - '24년 예산은 실제 보험가입자수, 지원 인원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였고, '24.12월 기준 집행을 100.0% 달성
 - ('23년 결산) 사업 인식 제고 및 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 사업 인식도 제고를 위해 보험가입조사원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사업장 안내 실시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년 국정감사) 가사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증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추진, 가사근로자 실태조사 실시
 - ('22년 결산) 적정 규모 예산편성 필요 및 정부인증기관 전환 활성화 추진 필요
 - 현장상황에 맞게 '24년 예산안 편성(사회보험료 지원, 6억원) 및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
 - ('23년 결산) 가사근로자 시장 현황 분석 후 지원목표 적정성, 인센티브 효과성 분석에 활용 및 공식 노동시장에서 가사서비스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실태조사 및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등을 통해 가사관리사 현황을 파악하고 인센티브 효과성 검토 및 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추진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46,594	0	1,046,594	1,019,700	688,184	65.8	67.5	0	331,516
2023	1,076,405	0	1,076,405	1,076,405	861,232	80.0	80.0	0	215,173
2024	837,516	0	837,516	878,868	878,863	105.0	100.0	0	5
2025	885,130	25,750	910,880	910,880	910,878	100.0	100.0	0	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2022	- 이·전용, 이월 :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중 26,894백만원을 사업목적이 유사(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한 실업크레딧지원사업으로 전용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331,516백만원(보험료지원금, 운영비), 코로나19 이후 고용 증가를 예상하여 전년대비 29.2%(2,356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2023	- 이·전용, 이월 : 해당 없음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15,173백만원(보험료지원금, 운영비), 국회 지적(사중손실 최소화)에 따른 신규가 입자 중심의 사업 개편으로 지원 제외자가 증가하는 등 지원실적 증가폭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발생
2024	- 이·전용, 이월 : 해당 없음 - 불용 사유 : 해당 없음
2025	- 이·전용, 이월 : 해당 없음 - 불용 사유 : 해당 없음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2022	- 이·전용, 이월: ☐ 전용: 사회보험료 환수업무 관련, 공단(근복·연금공단)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용(사회보험료 지원금 내에서 80백만원<비목 변경: 기타보전금→일반용역비>, 기재부 승인) ☐이월: 사회보험료 환수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전용 예산(80백만원)을 공단(근복·연금공단)의 사업 일정에 맞춰 이월하여 시스템 구축 진행(계약기간: '22.12월~'23.11월) - 불용 사유: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1,468백만원: 가사관리사 직접 고용에 따른 비용 증가·사용자 책임 부담으로 정부인증이 더딘 상황('22.12월말, 인증기관 35개소) ☐가사서비스 전산시스템 낙찰차액 2백만원 ☐제공기관 인증 등 제도 운영 집행 잔액 2백만원
2023	- 이·전용, 이월: 해당 없음 - 불용 사유: 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증가 등의 이유로 정부 인증이 저조하여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금 등 4,905백만원 불용
2024	- 이·전용, 이월 :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근로자 증가로 인해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부족으로 800백만원 전용(실업크레딧지원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자체전용) - 불용사유: 일반수용비 및 여비 등 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2025	- 이·전용, 이월 : 해당 없음 - 불용 사유: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32) 실업크레딧지원(일반)(1232-3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51
명칭	고용안전망확충	실업크레딧지원	실업크레딧지원(일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실업크레딧지원(일반)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실업크레딧지원 (일반)	32,406	31,972	31,972	33,486	33,486	1,514	4.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3,910	33,110	32,406	-	704	31,972	31,972	31,972	-	-	33,486
· 운영비	252	252	250	-	2	252	252	252	-	-	252
· 기타보전금	33,658	32,858	32,157		701	31,720	31,720	31,720	-	-	33,2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려는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하여 실업자 노후소득 보장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일반회계, 고보기금, 국민연금기금 각 25% 지원, 자부담 25%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후략)

- ② 추진경위 - 2014년 4월~5월 실업크레딧 도입 여·야·정 합의

- 2014년 12월 19일 국민연금법 개정, 2015년 7월 1일 시행
- 2016년 5월 29일 고용보험법 개정, 2016년 8월 1일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6년 8월 1일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7,200	34,739	33,110	31,972	33,48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동 수행
- 사업 수혜자 : 보험료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실업크레딧 신청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실업크레딧지원 기타보전금

: (2025년 예산) 31,972백만원 → (2026년 예산) 33,486백만원, 1,514백만원 증액

○ 지원인원: 554천명

- '24년 예산서상 지원인원(563천명)에 '23년 및 '24년의 60세 이하 수급자 비율 감소분(1.4%p) 반영
- * 실업크레딧은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지원

○ 지원금액: 16,435명

- '26년 국민연금 보험료를 상승분(9.0→9.5%)에 따른 지원단가 반영
- * 국민연금법 개정('25.4.2.): '26. 1. 1.부터 시행

○ 지원기간: 3.65개월

- '23년 및 '24년 예산서상 평균 지원기간

○ 산출액: 554천명×1개월 지원금액 16,435원×3.65개월=33,234백만원

② 일반수용비: (2025년 계획) 252백만원 → (2026년 계획) 252백만원, 전년 동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1,972	○ 일반수용비(210-01) 252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31,720백만원 가. 실업크레딧지원: 31,720백만원 · 563,362명×15,640원×3.6개월=31,720백만원	33,486	○ 일반수용비(210-01) 252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33,234백만원 가. 실업크레딧지원: 33,234백만원 · 554천명×16,435원×3.65개월=33,23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용보험가입자수 (단위: 천명)	목표	15,640	15,710	15,993	16,188	16,317	'25년 목표치 대비 0.8% 상향	연도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	고용보험 전산망
	실적	15,555	15,835	16,060	-	-			
	달성도	99.5	100.8	100.4	-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 (단위: %)	목표	56	56	-	-	-	-	-	-
	실적	53.4	57.9	-	-	-			
	달성도	95.4	103.4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수 (단위: 명)	목표	470,000	376,000	-	-	-	-	-	-
	실적	207,258	212,873	-	-	-			
	달성도	44.1	56.6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584,351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343억원 지원
2023	563,362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320억원 지원
2024	564,191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322억원 지원
2025	570,348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319억원 지원('25년 12월말 기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재산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실업크레딧 신청자 55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332억원을 지원하여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 및 사회 보험 사각지대 해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실업크레딧 신청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	수급자 → 고용센터/국민연금공단
재산 및 소득요건 검토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	국민연금공단 → 수급자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자 확정 및 납입고지서 송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제2항	국민연금공단 → 수급자
자부담분 25% 납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3항	수급자 → 국민연금공단
자부담분 납부한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지원금 예산 요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국민연금공단 →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보험료지원금 예산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2항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	국민연금공단 → 수급자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회계연도 결산, 환노위) 연례적 예산 부족에 따른 집행 지연 방지 필요
 - (후속조치) '22년 예산 부족분을 전용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해소하였고, 향후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
- 2) 대외공개 평가
 - ('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청년층의 낮은 신청률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연금제도 인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홍보전략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후속조치) 현재 고용센터 현장 등에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실업크레딧 사업을 안내하는 홍보 게시물 게재 및 안내 중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0,306	-	30,306	57,200	56,181	185.4	98.2	-	1,019
2023	34,739	-	34,739	34,739	32,228	92.8	92.8	-	2,511
2024	33,910	-	33,910	33,110	32,406	95.6	97.9	-	704
2025	31,972	-	31,972	31,972	31,972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에서 전용 +26,894백만원 - 이·전용 등 사유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실업크레딧 지원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예산 부족분이 커졌으며, 예산 소진 시기가 앞당겨져서 '22년 4월에 예산을 모두 집행하였고, 지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예산 확보 필요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잔액
2023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없음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잔액
2024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8. 2.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사업 예상 조기소진이 전망됨에 따라 실업크레딧 지원에서 △600백만원 전용, 12. 24.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사업 예상 조기소진이 전망됨에 따라 실업크레딧 지원에서 △200백만원 전용 - 이·전용 등 사유 :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과 실업크레딧지원 사업의 목적이 유사한 사유로 전용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잔액
2025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없음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사 업 명
(3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12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0
명칭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일자리안정자금지원	2,205	2,051	2,051	2,022	2,022	△ 29	△ 1.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69	2,269	2,205	0	64	2,051	2,051	2,025	0	0	2,022
· 일자리안정자금지원	2,269	2,269	2,205	0	64	2,051	2,051	2,025	0	0	2,022
(지원금)	211	211	148	0	63	86	86	60	0	0	39
(운영비)	2,058	2,058	2,057	0	1	1,965	1,965	1,965	0	0	1,9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 ('18.~'22.6. 신규 지원종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보조금 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고용유지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이하 "일자리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 **보조금 관리법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② 추진경위

- '17.7.15.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의결
 - * '17년 최저임금(6,470원) 대비 16.4%(1,060원) 인상
- '17.7.16.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하나로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발표
- '17.8.2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운영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 * 사업수행기관(근로복지공단), 시행시기('18.1월부터 시행) 등
- '17.1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행계획(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 '18.1.2.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접수 개시(사업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19년~'21년 소상공인·영세사업주 부담 고려, 일자리안정자금 계속 지원
- '22년 최저임금 인상을 및 경기회복세 고려, 6개월 지원('22.6.30. 신규 지원종료)
- '22.7. ~ 현재. 정산·환수 등 사후관리 업무 수행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8년 ~ 2022.6월(한시)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73,531	5,984	2,269	2,051	2,022

* [2022년] 추경(△90,007백만원) 포함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영세사업주 및 저임금 노동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보조	근로복지 공단	39	국고100%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최저임금법 제24조, 보조금 관리법 제5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51 백만원	○ 지원금: 86백만원 가. 지원금 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금 · '23년 집행추세 고려한 지급금 편성 - '23년 실행액 86백만원) ○ 운영비: 1,965백만원 가. 고용노동부 운영비 109백만원 · 일반수용비 14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90백만원 · 국내여비 2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 3백만원 나. 근로복지공단 운영비 1,856백만원 · 일자리안정자금 이의심사위원회 운영 1백만원 · 사후관리 우편요금 33백만원 · 공공요금 12백만원 ·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6백만원 · 인건비 942백만원 - 정규직(20명) 942백만원 ('24년 대비 3% 인상을 반영) · 특근매식비 1백만원 · 임차료 22백만원 · 복리 후생비 18백만원 · 기타 운영비 27백만원 · 업무추진비 4백만원 · 여비 22백만원 · 지원금 시스템 운영비 768백만원	2,022 백만원	○ 지원금: 39백만원 가. 지원금 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금 · '24년 집행추세 고려한 지급금 편성 - '24년 실행액 39백만원 ○ 운영비: 1,983백만원 가. 고용노동부 운영비 94백만원 · 일반수용비 14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75백만원 · 국내여비 2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 3백만원 나. 근로복지공단 운영비 1,889백만원 · 일자리안정자금 이의심사위원회 운영 1백만원 · 사후관리 우편요금 31백만원 · 공공요금 17백만원 ·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5백만원 · 인건비 975백만원(정규직 20명) - '25년 대비 처우개선비 등 반영 33백만원 · 특근매식비 1백만원 · 임차료 20백만원 · 복리 후생비 18백만원 · 기타 운영비 30백만원 · 업무추진비 4백만원 · 여비 19백만원 · 지원금 시스템 운영비 76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용보험가입자수 (단위: 천명)	목표	15,640	15,710	15,993	16,188	16,317	'25년 목표치 대비 0.8% 상향	연도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	고용보험 전산망
	실적	15,555	15,835	16,060	-	-			
	달성도	99.5	100.8	100.4	-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 (단위: %)	목표	56	56	-	-	-	-	-	-
	실적	53.4	57.9	-	-	-			
	달성도	95.4	103.4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수 (단위: 명)	목표	470,000	376,000	-	-	-	-	-	-
	실적	207,258	212,873	-	-	-			
	달성도	44.1	56.6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지원 노동자 239만명(사업장 63만개소)에 대해 3,214억원 집행
2023	'22.6월 신규 지원금 지급 종료됨에 따라 정산·환수 등 사후관리 업무수행중 으로 사업실적 작성 불가
2024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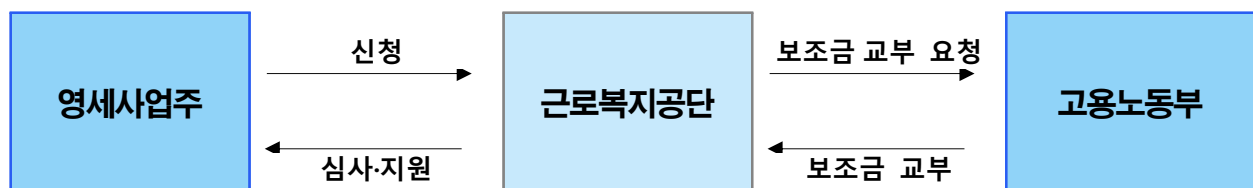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2022.6월 신규 지원 종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 타당성조사 비해당: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제2항10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17.8월)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63,538	△90,007	373,531	373,531	321,438	86.1	86.1	-	52,093
2023	5,984	-	-	5,984	5,984	100.0	100.0	-	-
2024	2,269	-	-	2,269	2,205	97.2	97.2	-	64
2025	2,051	-	-	2,051	2,025	98.7	98.7	-	2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추경 편성 사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요 지원업종인 '음식·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의 고용 회복이 둔화되고, '22년 지원 금액 및 기간이 줄어들어 지원신청 감소로 90,007백만원 감액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불용 사유) 집행잔액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4)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12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4	300
명칭	고용안전망확충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1,002,899	845,709	1,010,865	1,012,830	1,012,830	167,121	19.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42,515	1,003,391	1,002,899	-	492	845,709	1,010,865	920,975 [920,975]	-	89,890	1,012,830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762,373	842,794	842,767	-	27	714,087	864,842	817,948 [817,948]	-	46,894	873,62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103,193	88,084	87,808	-	276	130,657	145,058	102,062 [102,062]	-	42,996	138,245
· 일경험프로그램	75,984	71,548	71,360	-	188	-	-	-	-	-	-
· 전산망 강화	965	965	965	-	-	965	965	965 [965]	-	-	9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0.6.9.제정)
- ② 추진경위
 -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17.5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의 조기 도입 및 제도 기본 골격 등에 대한 노사정 합의 도출(‘18.8월, ‘19.3월)
 - 사회적 합의 등을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마련, 제11차 일자리위원회 의결·발표(‘19.6.4)
 -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안 마련, 국회 제출(‘19.9.16) → 국회 본회의 통과(‘20.5.20)
 - 법률 부칙 제1조에 따라 ‘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1.1.1)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96,351	1,225,455	942,515	1,010,865	1,012,83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혜자 : (I 유형) 15~69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취업경험 등 미충족자는 선발형으로 지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15~34세 청년 중위소득 120%, 재산 5억 이하)
(II 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 중위소득 120% 초과하는 15~34세 청년 및 결혼이민자 등 취업취약계층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산망강화	출연	한국고용 정보원	965	10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2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5 추경) 1,010,865백만원 → ('26) 1,012,830백만원, +1,965백만원

* (목표인원) ('25) 30.5만명 ('25추경) 36만명 → ('26) 35만명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25 추경) 853,100 → ('26) 873,620백만원, + 20,520백만원

* I 유형 ('25 추경) 24.2만명 → ('26) 24.2만명(전년동)

↳ 요건심사형 11.7만명, 선발형(청년) 10.5만명, 선발형(비경활) 2만명

- 구직촉진수당 718,248백만원
- * 구직촉진수당 인상(월): ('25) 50만원 → ('26) 60만원

- 취업성공수당 82,293백만원

- 민간위탁비 70,977백만원

- 운영비 2,102백만원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25 추경) 156,800 → ('26) 138,245백만원, △18,555백만원

* II 유형 ('25 추경) 11.8만명 → ('26) 10.8만명(△1만명)

↳ 특정계층 1.2만명, 청년 7.8만명, 중장년 1.8만명(건설업퇴직자 △1.0만명)

- 참여자수당 38,963백만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폐지

- 취업성공수당 22,475백만원

- 민간위탁비 76,807백만원

③ 전산망 강화: ('25 추경) 965→ ('26) 965백만원, 전년동

· 출연금 96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용보험 가입자수 (단위: 천명)	목표	15,640	15,710	15,993	16,188	16,317	'25년 목표치 대비 0.8% 상향	연도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	고용보험 전산망
	실적	15,555	15,835	16,060	-	-			
	달성도	99.5	100.8	100.4	-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 (단위: %)	목표	56	56	-	-	-	-	-	-
	실적	53.4	57.9	-	-	-			
	달성도	95.4	103.4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 (단위: 명)	목표	470,000	376,000	-	-	-	-	-	-
	실적	207,258	212,873	-	-	-			
	달성도	44.1	56.6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국민취업지원제도 28.5만명 참여(I 유형 22.0만명, II 유형 6.5만명) · 일경험프로그램 2.2만명 연계
2023	· 국민취업지원제도 29.9만명 참여(I 유형 22.9만명, II 유형 7.0만명) · 일경험프로그램 1.8만명 연계
2024	· 국민취업지원제도 31.5만명 참여(I 유형 25.0만명, II 유형 6.5만명) · 일경험프로그램 1.4만명 연계
2025	· 국민취업지원제도 30.9명 참여(I 유형 22만명, II 유형 8.9만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로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위해 취업지원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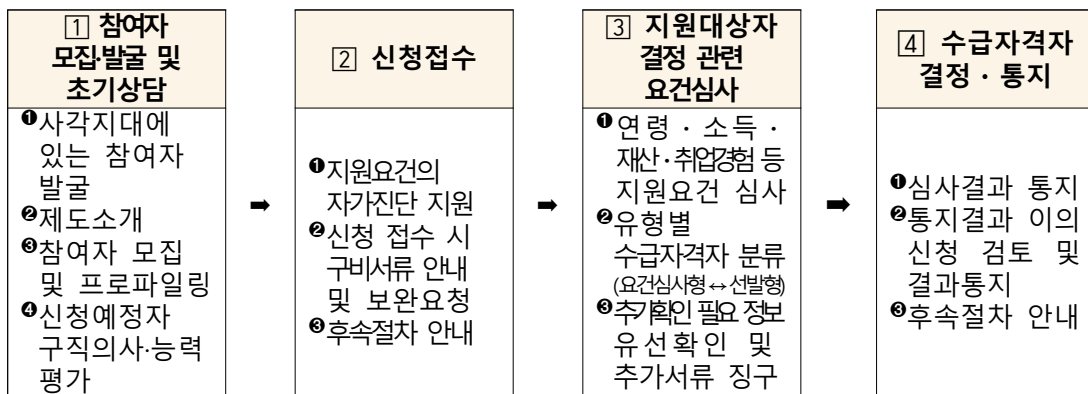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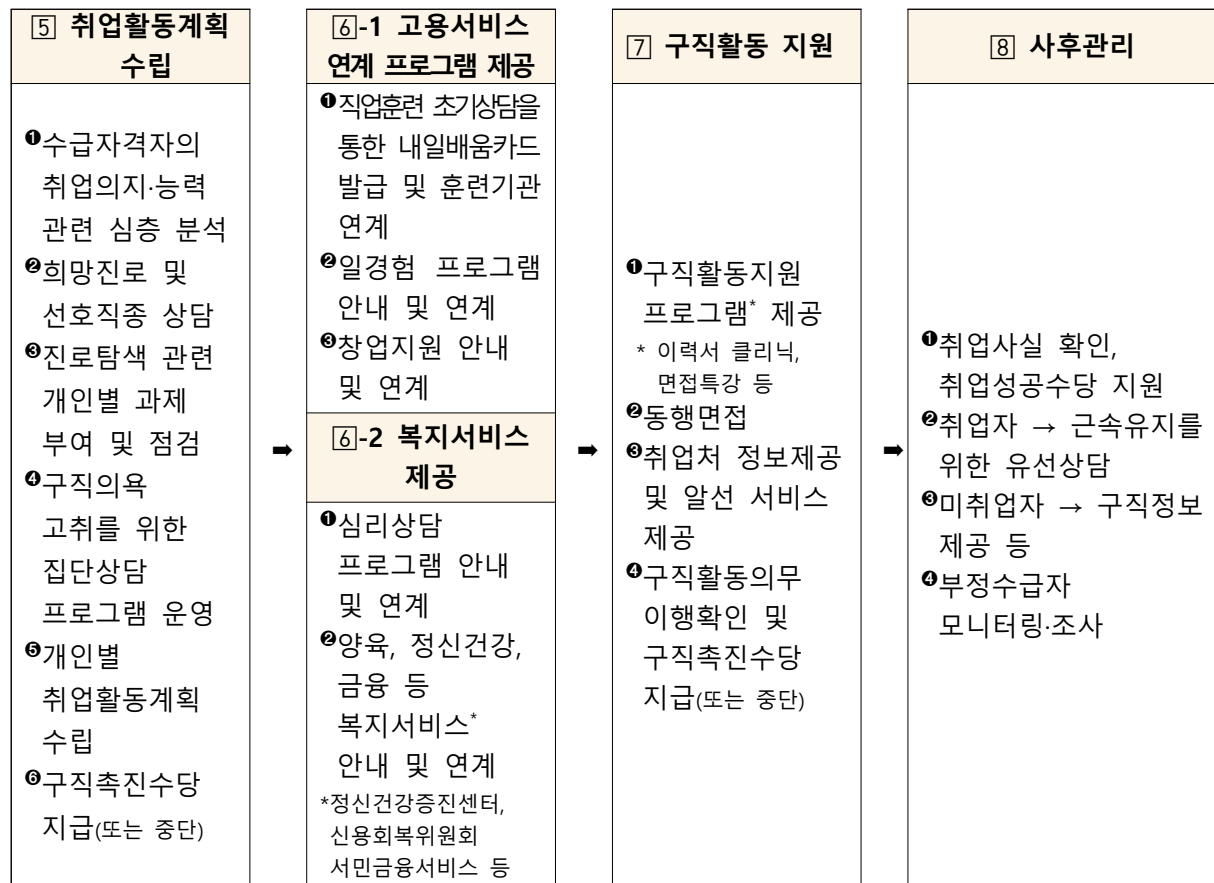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①지원대상자 선정 → ②취업지원서비스

① (지원대상자 선정) 참여자 모집·발굴 및 신청자 초기상담 → 신청접수 → 수급자격자 결정 관련 요건심사 → 수급자격자 선발·통지



②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복지 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지원 → 사후관리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2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집행 부진 개선필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선 필요
- 출연금 분기별 지급 필요

<'23년>

- 적정 수준의 지원 목표 설정, 참여 저조 원인 파악 및 참여 확대 방안 모색 필요
- 구직촉진수당 지원의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24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자의 취업률 제고 필요
- 최근 실적치를 반영하는 등 예산추계의 정확성 제고
- 구직촉진수당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 필요
-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 제고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496,473	△122	1,496,351	1,496,391	883,377	59.0	59.0	160	612,854
2023	1,225,455	-	1,225,455	1,225,615	925,569	75.5	75.5	40	300,006
2024	942,515	-	942,515	1,003,391	1,002,899	106.4	99.9	-	492
2025	845,709	165,156	1,010,865	1,010,865	920,975	91.1	91.1	-	89,89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불용) - 목표물량 대비 집행 부진으로 참여자 수당 및 민간위탁비 불용
2023	○(불용) - 목표물량 대비 집행 부진으로 참여자 수당 및 민간위탁비 불용
2024	○(예비비 편성 및 전용) '24년 연계·협업 강화 및 제도개선 등에 따라 참여 인원이 확대되어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해 전용 및 예비비 편성
2025	○(불용) - 추정편성 목표물량 대비 집행 부진으로 참여자 수당 및 민간위탁비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5)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13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300
명칭	고용평등실현	고용평등환경개선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남녀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사업시행주체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직접/보조

* '25년 내역사업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이관('25.10월 노동부→성평등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평등환경 개선지원	1,733	1,876	1,876	1,374	1,442	434	△23.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90	1,790	1,733	-	57	1,876	1,614	1,594	-	20	1,442
· 남녀고용평등환경 개선지원	663	663	606	-	57	874	904	884	-	20	1,442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지원	1,127	1,127	1,127	-	-	1,002	710	710	-	-	-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지원사업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25.10월, 262백만원)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남녀고용평등환경개선

-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선정·포상하고,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을 통해 사회전반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
- (고용평등상담지원)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근로자에 대한 직접 및 민간위탁 방식의 (심층)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등 고용평등한 노동시장 조성
 - * '23년까지 민간위탁 → ('24)사업방식변경(직접) → ('26년)직접수행 및 민간위탁 병행
- (고용평등업무지원) 지방관서 고용평등업무 지원(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운영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남녀고용평등환경개선>

-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운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정책의 수립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제4조(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 등)
- (고용평등상담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2조의5제1항(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23조(상담지원),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27조의2(권리구제 지원팀 운영)

② 추진경위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 '95년부터 정부제2장관실과 노동부 공동 주관으로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를 개최, '98년부터 노동부 단독 주관
- '01년부터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4월 첫째 주를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으로 정하여 기념식, 토론회 개최 및 언론사 특집기사 게재 등 홍보
- '13년부터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5.25~5.31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으로 변경(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2.8월)하여 시행

<고용평등상담지원>

- '00년,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시범 실시(10개소)
 - * '01.4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확대설치 추진·결정
- '01년,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확대 지원(10→15개소, 증 5개소)
- '18년,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확대 지원(15→21개소, 증 6개소),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및 사업장 교육 실시
- '24년, 전달체계 변경(민간경상보조→직접수행,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연계·지원)
- '26년, 운영방식 변경(고용노동부 직접 수행과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위탁 병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46	2,480	1,790	1,876	1,442

- 기타:
 -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및 고용평등업무지원: 본부 및 49개 지방관서
 - 고용평등상담지원: 청·대표지청(8개소), '26년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위탁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지원: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 포함), 전체 공공기관 및 전체 지방공사·공단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및 고용평등업무지원: 직접수행
 - 고용평등상담지원: 직접 및 위탁수행
- 사업시행주체
 -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및 고용평등업무지원: 고용노동부(청 및 관내 지청 등)
 - 고용평등상담지원: 고용노동부(청·대표지청 8개소) 및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위탁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지원: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위탁, '25.10월 성평등부 이관)
- 사업 수혜자 : 사업주, 근로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용평등 상담실운영	보조	민간단체 고용평등 상담실	450백만원	예산 범위 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상담지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민간단체의 선정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남녀고용평등환경개선

: ('25) 874백만원 → ('26) 1,442백만원, 568백만원 증액

1)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운영 100백만원(전년동)

2) 고용평등상담지원 1,330백만원

· 고용평등상담관 임금 및 처우개선(636백만원),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244백만원

· '26년 고용평등상담실 민간위탁 병행을 위한 소요예산 반영 450백만원(순증)

3) 고용평등업무지원 12백만원(전년동)

②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25.10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76	☐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 일반용역비(210-14) : 100백만원 가. 남녀고용평등기념식 위탁사업 및 행사운영비 · 100백만원	1,442	☐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 일반용역비(210-14) : 100백만원 가. 남녀고용평등기념식 위탁사업 및 행사운영비 · 100백만원
	☐ 고용평등상담지원 ☒ 상용임금(110-03) : 461백만원		☐ 고용평등상담지원 ☒ 상용임금(110-03) : 502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가. 고용평등상담지원관 인건비 461백만원 • 고용평등상담지원관 급여 416백만원 • 급식비 27백만원 • 명절상여금 18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76백만원 가.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운영 수용비 156백만원 • 8개소×13명×10회×150,000원 나. 리플릿·교육자료 등 제작·홍보 수용비 20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8백만원 • 복지포인트 8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3백만원 • 교육출장 국내여비 3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90백만원 • 사회보험료 52백만원 • 퇴직충당금 38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24백만원 • 책상·의자·PC·프린터 등 24백만원		가. 고용평등상담지원관 인건비 502백만원 • 고용평등상담지원관 급여 433백만원 • 급식비 27백만원 • 명절상여금 42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44백만원 가.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운영 수용비 224백만원 • 17개소×11명×8회×150,000원 나. 리플릿·교육자료 등 제작·홍보 수용비 20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8백만원 • 복지포인트 8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3백만원 • 교육출장 국내여비 3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450백만원 가. 고용평등상담실 민간위탁 운영 450백만원 • 9개소×50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99백만원 • 사회보험료 56백만원 • 퇴직충당금 43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24백만원 • 책상·의자·PC·프린터 등 24백만원
	☐ 고용평등업무지원 ○ 일반수용비(210-01) : 12백만원 가. 고용평등업무지원(성희롱, 성차별 전문위원 운영 등) * 49개소×1.6명×150,000원+240,000원 = 12백만원		☐ 고용평등업무지원 ○ 일반수용비(210-01) : 12백만원 가. 고용평등업무지원(성희롱, 성차별 전문위원 운영 등) * 49개소×1.6명×150,000원+240,000원 = 12백만원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 일반용역비(210-14) : 947백만원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 위탁사업비 947백만원 ○ 기타운영비(210-16) : 55백만원 가. 적극적 고용개선 관련 단체 및 사업장 교육, 회의 운영 및 강사수당 55백만원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성평등가족부 이관)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용평등 상담실적(건)	목표	11,588	12,146	13,110	7,000	11,500	'23~'24년 상담실적 '26년 민간위탁 예산을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24년 실적 ×20%(민간위탁명 행 감소율) + '23년 실적× 40%('23년 대비 '26년 예산비중)	고용평등상담실 제출 상담실적 (내부문서)
	실적	13,198	9,533	9,612	-	-			
	달성도	113.9	78.5	73.3	-	-			
30~40대 여성고용률 (%)	목표	신규	63.8	67.0	69.0	69.1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26년에는 취업자 증가세 둔화 등 고용위축이 예상되는 제약 요인이 존재하므로 '25년 목표치(69.0%)보다 0.1%p 상향하여 목표 설정	30~40대 여성취업자 수/ 30~40대 여성인구 × 100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조사
	실적	64.5	66.9	68.9	-	-			
	달성도	-	104.9	102.8	-	-			

* (고용평등상담실적) '24년도 사업방식변경(위탁→직접)이후 고용평등분야 상담건에 대해서만 실적계상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22.5.27) 및 전문가 포럼('22.5.31) 개최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선정·시상(36점) - 남녀고용평등 의식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언론 홍보 등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 상담실적(13,198건) -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171명, 968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306개소, 9,795명) - '23년도 고용평등상담실 홍보 리플릿(60,000부) 제작('22.12월) - 「고용평등상담실-관계기관 간 연계·협업 방안」 구축 간담회('22.9.15., 9.28.) - 고용평등상담실 '22년도 운영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22.9.) - '22년도 고용평등상담실 성과평가 등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22.7.) - 고용평등상담실-지방관서 간 연계·협업 활성화 간담회('22.6.1.~6.30., 8개 권역 고용평등전담감독관 54명, 상담인력 39명 참석) - '22년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전담인력 대상 교육('22.5., 21개소 31명)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개정('22.3.) - 고용평등상담실 우수사례집 제작 및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22.2.) - 고용평등상담실 현장 방문(10개소), 권역별 간담회(8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애로사항 청취·지도 및 개선방안 마련 추진으로 효율성 도모('22.1.~3.)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실태점검('21.12.27~'22.1.6., 21개소)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익명신고 창구 운영 지속 - 사업장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 운영 등 - 노동委 고용상 성차별 등 구제절차 시행('22.5) -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업무처리 지침 마련('22.6) - 직장 내 성희롱 무료강사 지원 및 자가진단 앱 운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임금현황 조사체계 정비(법령개정, 22.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운영 보완방안 마련('22.4) ▲ 신규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유예 등 행정부담 완화 ▲ 컨설팅 참여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에 따른 효과성 제고 ▲ 전산시스템(aa-net) 전면 개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33개사, '22.5) <고용평등업무 지원> -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운영, 고용평등분야 지도·점검 등
------	--

2023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23.5.26) 및 전문가 포럼('23.5.31) 개최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선정·시상(36점) - 남녀고용평등 의식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언론 홍보 등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 상담실적(9,533건) -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119명, 932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218개소, 7,143명) - '23년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기관 설명회('22.12.22., 20개소, 30여명)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실태점검('22.12.26~'23.1.27., 21개소) - '23년도 고용평등상담실 홍보 리플릿(60,000부) 배포 등 홍보('23.1.)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국고보조 사업 자체감사 실시('23.1.25.~3.15.)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실태 및 현안 논의 간담회 개최('23.2.) - 현안 논의를 위한 간사단체 간담회 개최('23.4.) - '23년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전담인력 대상 교육(19개소, 31명, '23.5.) - 고용평등상담실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23.6.) - 고용평등상담실-지방관서 간 연계·협업 활성화 간담회('23.7.6.~7.27., 6회, 총 63명 참석(고용평등전담감독관 37명, 상담인력 26명))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관련 지방관서 업무협의('23.9~10, 6차) - 고용평등상담지원 전문가TF 회의 실시('23.11~12, 4차)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익명신고 창구 운영 지속 - 사업장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 운영 등 - 성별근로공시제 도입방안 마련 추진 - 직장 내 성희롱 무료강사 지원 계속 -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 운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43개사, '23.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운용 전산시스템(aa-net) 전면 개편을 통한 편의성 확보 및 자료 보완 강화 ('23.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고용평등업무 지원> -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운영, 고용평등분야 지도·점검 등
2024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 남녀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 개최('24.5.28.)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선정·시상(37점) - 남녀고용평등 의식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언론 홍보 등

	<고용평등상담 지원> - 상담실적(9,612건),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281명, 889회) - 고용평등상담 지원 관련 현장 방문(8개청, '24.1~2)를 통한 고용평등 상담 지원 운영방식 변경 안내 및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 도모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실태점검('24.2~3) 및 추가 점검('24.5, 20개소) - 고용평등상담지원 관련 현장방문('24.1, 3회) -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공무직) 순차적 채용 - 고용평등심층상담 업무매뉴얼 제작·배포('24.1) - 고용평등상담지원관 기초직무교육(1.25~26) 및 심화교육(7.18~19) - 네이버 '직장 내 성희롱' 검색 시 고용평등 대표번호 표출, 고용평등 심층상담 홍보 리플릿 배포('24. 7월, 15만부) - 고용평등상담 우수사례 공모('24. 9월) - 고용평등 심층상담 홍보 리플릿 배포('24. 10월, 3만부) - 고용평등전담감독관, 일·육아동행플래너 등 권역별 공동 워크숍('24. 10월, 8회) - 고용평등과 일·육아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성과공유회('24. 12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32개사, '24.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고용평등업무 지원> -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운영, 고용평등분야 지도·점검 등
--	--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남녀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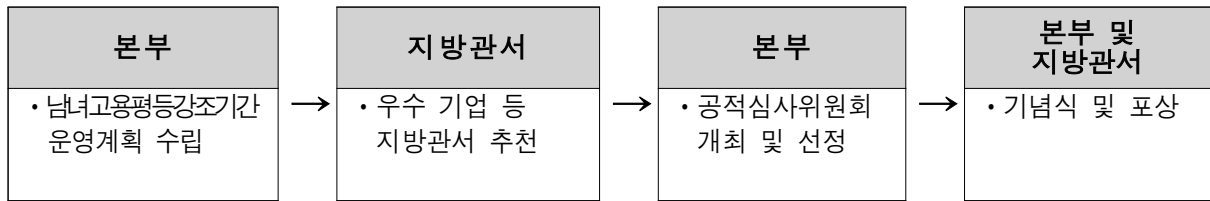
-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기념식 개최일 전후로 다양한 행사 등을 유기적으로 실시하여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제고
- 지방관서 고용평등상담지원관 배치를 통해 '상담 ↔ 사건조사·근로감독'의 유기적 연계·협업 및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위탁을 병행하여 민원인 접근성 제고 및 민간부문의 전문성 활용으로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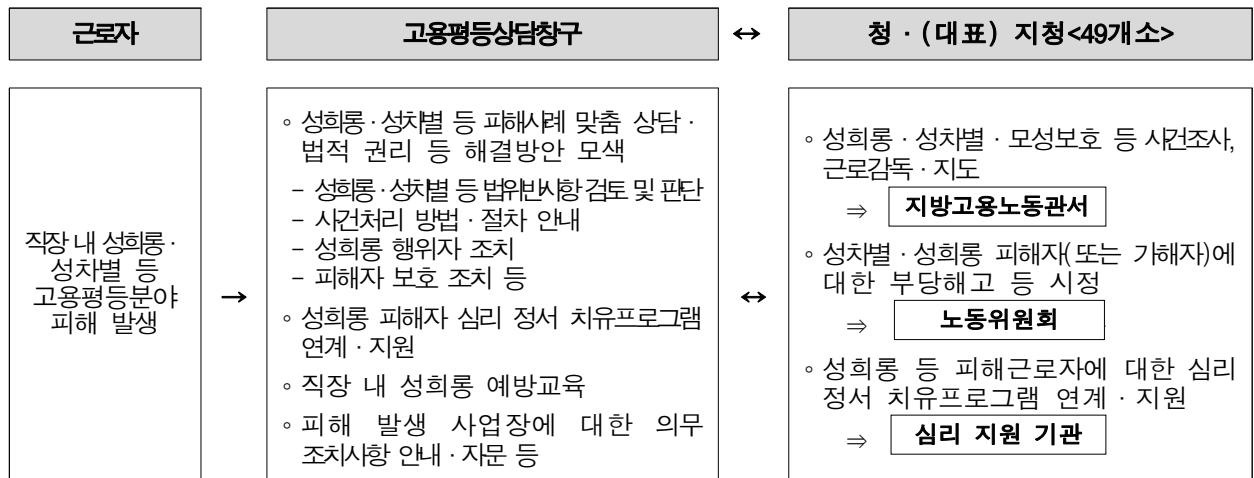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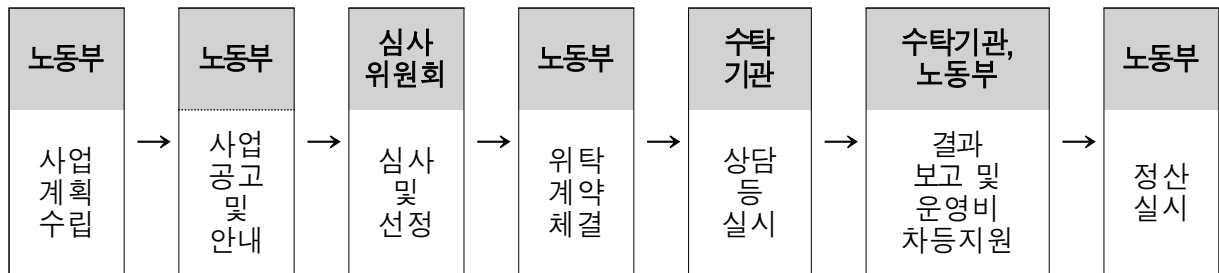


<고용평등상담지원>

○ 고용평등상담관



○ 고용평등상담실(26년)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024년 상임위 결산심사>
 - 고용평등상담의 민간 전문성 활용방안 마련필요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846	△19	2,827	2,827	2,805	99.2	99.5	-	22
2023	2,480	-	2,480	2,480	2,470	99.6	99.6	-	10
2024	1,790	-	1,790	1,790	1,733	96.8	96.8	-	57
2025	1,876	-	1,876	1,614	1,594	84.9	98.8	-	20

*이·전용등(292백만원): 성평등가족부 사무이관 262백만원(적극적고용개선조치, '25.10), 전용:30백만원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고용평등상담의 민간 전문성 활용방안 마련(제도개선, '24년 결산)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체 (2025.10.1)	고용평등환경 개선 (1331-300)	210-14 210-16	237 25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1235-330)	210-14 210-16	정부조직법 개편, 사무이관 (노동부→성평등부)

사 업 명
(36) 중장년 경력지원제(1336-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6	305
명칭	고용평등증진	장년희망찾기지원	중장년 경력지원제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중장년 경력지원제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중장년 경력지원제	-	3,640	7,930	8,500	8,417	4,777	131.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중장년 경력지원제						3,640	7,930	7,907		23 [23]	8,417
·참여자수당						2,621	5,760	7,295		1	5,760
·프로그램운영수당						699	1,536			[1]	1,536
·위탁기관기본금						91	200	249		15	300
·위탁기관과정관리비						29	64			[15]	128
·운영비						150	370	363		7	69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추진경위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폐지('24년)
- 경력전환형 일자리 수요에 대한 대응 및 중장년층 지원 일경험 사업 부재로 인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25년)

- 2차 베이비부머('64~'74년, 954만명) 은퇴에 대비한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강화 필요성 증대
- 퇴직 중장년 중 사무직·서비스직·판매직은 70%가 타 직종으로의 이직하는 등 중장년의 경력전환형 일자리 수요 증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7,930	8,41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50대 이상 중장년 및 사업주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중장년 경력지원제 : (2025 추경) 7,930백만원 → (2026 예산) 8,417백만원, +487백만원

① 참여자 수당 : (2025 추경) 5,760백만원 → (2026 예산) 5,76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수준으로 예산 요구
- (산출) 150만원(지원단가) × 2,000명 × 2.4개월(지원기간) × 0.8(금년도 지급분) = 5,760백만원

② 프로그램 운영 수당 : (2025 추경) 1,536백만원 → (2026 예산) 1,536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수준으로 예산 요구
- (산출) 40만원(지원단가) × 2,000명 × 2.4개월(지원기간) × 0.8(금년도 지급분) = 1,536백만원

③ 위탁기관 기본금 : (2025 추경) 200백만원 → (2026 예산) 300백만원, +100백만원

- (요구) 전년 대비 지원단가 인상(10만원→15만원)
- (산출) 15만원(지원단가) × 2,000명 = 300백만원

④ 위탁기관 과정관리비 : (2025 추경) 64백만원 → (2026 예산) 128백만원, +64백만원

- (요구) 전년 대비 지원단가 인상(5만원→10만원)
- (산출) 10만원(지원단가) × 2,000명 × 0.8(2개월이상 비율) × 0.8(수료율) = 128백만원

⑤ 사업운영비 : (2025 추경) 370백만원 → (2026 예산) 693백만원, +323백만원

- (요구) 전산개발에 필요한 사업출연금 493백만원 반영
- (산출) 일반수용비 60 + 공공요금및제세 60 + 일반용역비 80 + 사업 출연금 493 = 693백만원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930 백만원	가. 참여자 수당 5,760백만원 $150\text{만원(지원단가)} \times 910\text{명} \times 2.4\text{개월(지원기간)} \times 0.8(\text{금년도 지급분}) = 2,621\text{백만원}$ $+ (1\text{차 추경안}) 150\text{만원(지원단가)} \times 1,090\text{명} \times 2.4\text{개월(지원기간)} \times 0.8(\text{금년도 지급분}) = 3,139\text{백만원}$ 나. 프로그램 운영 수당 1,536백만원 $40\text{만원(지원단가)} \times 910\text{명} \times 2.4\text{개월(지원기간)} \times 0.8(\text{금년도 지급분}) = 699\text{백만원}$ $+ (1\text{차 추경안}) 40\text{만원(지원단가)} \times 1,090\text{명} \times 2.4\text{개월(지원기간)} \times 0.8(\text{금년도 지급분}) = 837\text{백만원}$ 다. 위탁기관 기본금 200백만원 $10\text{만원(지원단가)} \times 910\text{명} = 91\text{백만원}$ $+ (1\text{차 추경안}) 10\text{만원(지원단가)} \times 1,090\text{명} = 109\text{백만원}$ 라. 위탁기관 과정 관리비 64백만원 $5\text{만원(지원단가)} \times 910\text{명} \times 0.8(2\text{개월이상 비율}) \times 0.8(\text{수료율}) = 29\text{백만원}$ $+ (1\text{차 추경안}) 5\text{만원(지원단가)} \times 1,090\text{명} \times 0.8(2\text{개월 이상 비율}) \times 0.8(\text{수료율}) = 35\text{백만원}$ 마. 수용비 등 사업운영비 370백만원 일반수용비 50 + 공공요금및제세 50 + 일반용역비 50 + 사업 출연금 50 = 200백만원 $+ (1\text{차 추경안}) \text{일반수용비 } 100 + \text{일반용역비 } 70 = 170\text{백만원}$	8,417 백만원	가. 참여자 수당 5,760백만원 $150\text{만원(지원단가)} \times 2,000\text{명} \times 2.4\text{개월(지원기간)} \times 0.8(\text{금년도 지급분}) = 5,760\text{백만원}$ 나. 프로그램 운영 수당 1,536백만원 $40\text{만원(지원단가)} \times 2,000\text{명} \times 2.4\text{개월(지원기간)} \times 0.8(\text{금년도 지급분}) = 1,536\text{백만원}$ 다. 위탁기관 기본금 300백만원 $15\text{만원(지원단가)} \times 2,000\text{명} = 300\text{백만원}$ 라. 위탁기관 과정 관리비 128백만원 $10\text{만원(지원단가)} \times 2,000\text{명} \times 0.8(2\text{개월이상 비율}) \times 0.8(\text{수료율}) = 128\text{백만원}$ 마. 수용비 등 사업운영비 693백만원 일반수용비 60 + 공공요금및제세 60 + 일반용역비 80 + 사업 출연금 493 = 69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추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중장년 고용률(40~60대)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72.1	24년 실적(72.0%) 대비 목표 0.1%p 상향	(40~60대 취업자수)/(40~60 대 인구) × 10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실적	71.5	72.0	72.0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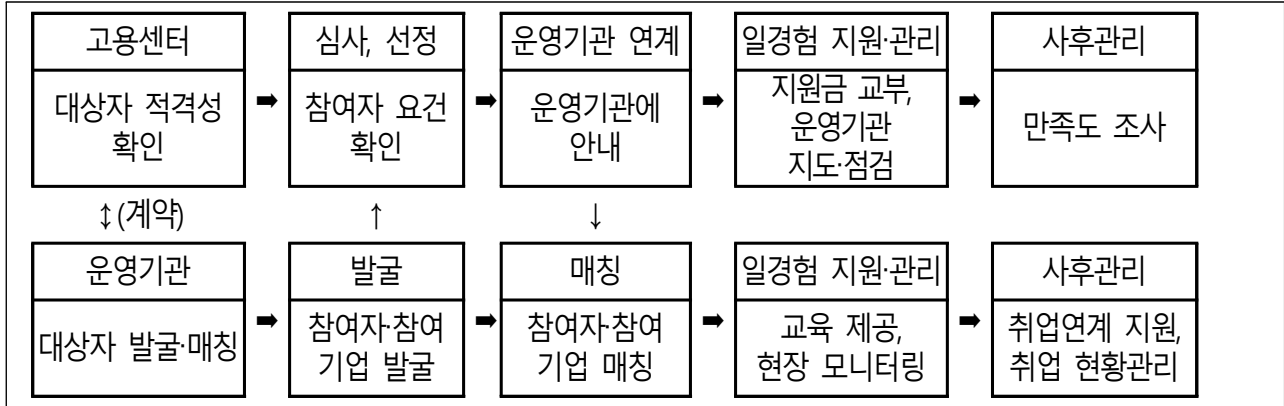
2022	-
2023	-
2024	-
2025	859개 사업장, 1,679명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26년 목표인원 2,000명 달성을 통해 퇴직한 중장년의 경력전환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5	3,640	4,290	7,930	7,930	7,907	99.7	99.7		23

2) 주요 결산사항

-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해당사항 없음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7)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339-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9	301
명칭	고용평등증진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보험 미적용자출산급여	17,647	21,789	34,561	28,289	28,289	6,500	29.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676	17,676	17,647	-	29	21,789	34,561	33,440	-	1,121	28,289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7,676	17,676	17,647	-	29	21,789	34,561	33,440	-	1,121	28,28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7.7월 국정과제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출산지원금 도입방안 검토
- '18.7.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대책」의 핵심추진 과제로 발표
 - * (기초연구)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저출산위·보건사회연구원, '18.1~11월)
- '18.8월 예비타당성 심사 ⇨ 심사결과 : 면제
 - * (면제사유)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예타면제
- '18.8~9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회 협의
 - * (협의결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 취지에 부합
- '19.7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 7. 1.(신규) ~ 계속(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776	15,572	17,676	34,561	28,28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보조	고용센터	27,831백만원	100%	
		지자체 보조	458백만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2025 추경) 34,561백만원 → (2026 예산) 28,289백만원, △6,272백만원
(2025 본예산 21,789백만원 → 제2회 추경 34,561백만원)

- ▲ (요구) 최근 3년간 지원 인원 증가 추이 반영하여 예산 요구
- ▲ (산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28,289백만원 = 18,859명 × 150만원
 - 지원인원: '25년 2~7월 월평균 지원인원(1,602명) 감안하여 산정
 - 지원단가: 1.5백만원(전년동)
 - * '26년은 '25년 예산과 달리 예산 부족분 미반영('24년 예산 부족분 4,113백만원)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4,561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1,789백만원 - 11,784명 × 150만원 = 17,676백만원 - '24년 예산부족분 4,113백만원 ○ (2차 추경) '25년 예산부족분 12,772백만원 - 8,515명 × 150만원 = 12,772백만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8,289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8,289백만원 - 18,859명 × 150만원 = 28,28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급자수 (명)	목표	8,484	10,368	11,784	11,784	18,859	최근 3년간 평균 지원인원 추이를 반영하여 편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급자수	고용보험 시스템
	실적	10,451	10,492	12,622	19,170	-			
	달성도	123.2	101.2	107.1	162.7	-			
30~40대 여성고용률 (%)	목표	신규	63.8	67.0	69.0	69.1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26년에는 취업자 증가세 둔화 등 고용위축이 예상되는 제약 요인이 존재하므로 '25년 목표치(69.0%)보다 0.1%p 상향하여 목표 설정	30~40대 여성취업자 수/ 30~40대 여성인구 × 100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적	64.5	66.9	68.9	-	-			
	달성도	-	104.9	102.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제도 홍보 달력 제작·배포 등 정책인지도 제고 노력
2023	- 제도안내 리플렛 제작·배포 및 온라인 홍보 등 정책인지도 제고 계획
2024	- 제도안내 리플렛 제작·배포 및 온라인 홍보 등 정책인지도 제고 계획
2025	- 제도안내 리플렛 제작·배포 및 온라인 홍보 등 정책인지도 제고 계획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사각지대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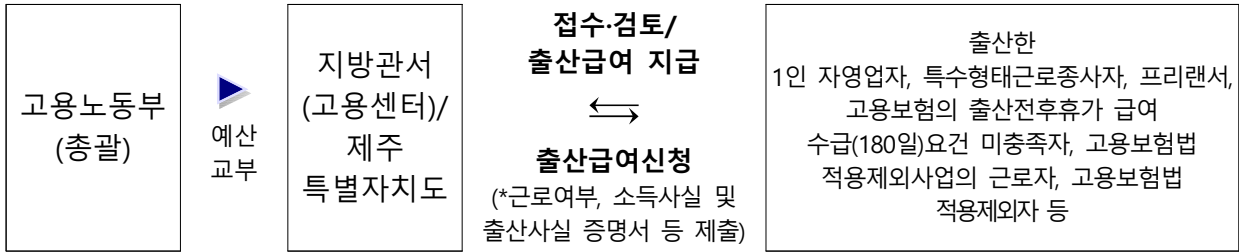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18.8월) :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10호)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사업 대상자 규모를 보다 면밀히 추산하고 그 규모에 부합하는 예산액을 편성하는 한편, 사업예산 부족 시 당해연도 이·전용 등 재원 충당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출산급여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24년 결산, 환노위 검토보고서)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776	-	12,776	12,776	12,775	99.9	99.9	-	1
2023	15,572	-	15,572	15,572	15,560	99.9	99.9	-	12
2024	17,676	-	17,676	17,676	17,647	99.8	99.8	-	29
2025	21,789	12,772	34,561	34,561	33,440	96.8	96.8	-	1,12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사유: 집행 잔액
2023	- 불용 사유: 집행 잔액
2024	- 불용 사유: 집행 잔액
2025	- 추경 편성 사유: '25년 예산 부족분 12,772백만원* 추경 편성 * 8,515(명) × 1.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38) 중장년층취업지원(1340-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40	300
명칭	고용평등증진	중장년층취업지원	중장년층취업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중장년층 취업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사업시행주체	노사발전재단한국고용정보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중장년층취업지원	20,052	18,443	18,443	24,844	24,844	6,401	34.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052 (20,052)	20,067	20,067	-	-	18,443	18,443	18,443	-	-	24,844
· 중장년내일이음 패키지 (구, 중장년내일센터)	15,737 (15,737)	15,737	15,737	-	-	18,343	18,343	18,343	-	-	22,923
· 고령자고용지원 서비스역량강화	80 (80)	80	80	-	-	100	100	100	-	-	121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	-	-	-	-	-	-	-	-	-	1,800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4,235 (4,235)	4,235	4,235	-	-	-	-	-	-	-	-
· 장년고용연구지원	-	15	15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중장년취업지원) 40세 이상 중장년 대상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제공
 -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40세 이상 중장년(재직자 및 구직자)이 제2의 근로생애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을 통한 생애경력설계, 재취업지원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역량강화) 중장년내일센터 업무 담당자가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적극적 구인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미충원을 높은 일손부족 일자리와 50대 이상 퇴직자를 매치, 장기근속을 유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 센터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등
- ② 추진경위
 - '93. 7. 1.부터 고령자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고령자인재은행 지원, '96.7.29.부터 퇴직한 고급·중견경력인력의 취업알선과 상담·자문 활동 지원을 위해 고급인력정보센터 설치·운영

-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07~'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6~'10): 고령자인재은행 확대, 경력인력에 대한 종합 취업서비스기관으로 확대개편 등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방안 포함
- '09년 국정과제 「고령자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고령자인재은행을 '훈련-고용-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확대 개편
- '12년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년 고용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장년고용연구지원사업 추진
- 중장년층 전직지원사업 개편 방안('12.9.)을 마련, '13.1월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15개소)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6개소)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로 통합·개편
- '14. 9. 24. 「장년고용 종합대책」에 따라 '15년부터 준비 없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장년의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생애설계서비스 사업 시행
- '17. 8. 8.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및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17~'21)을 통해 생애경력설계를 토대로 인생 3모작 지원을 위한 경로별 맞춤형 서비스 방안 제시
- 국정과제 18-4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를 통해 신중년의 인생 3모작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
- '20. 5. 1. 「고령자고용법」 개정 시행에 따라 1,000인 이상 사업주는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 '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안착을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 시행
- '23. 1. 1.부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중장년내일센터로 명칭 변경
- '23년 국정과제 52-① 일자리 지원의 효과성 제고와 고용서비스 고도화(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전달체계 간 연계·협업을 통한 대상별 특화 서비스) 및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3~'27년)을 통해, 고용센터 중심의 연계협업 및 중장년 특화 취업지원 강화
- '23. 12. 31. 지자체 등 고령자 취업지원 전달체계와 유사·중복 등으로 '고령자인재은행' 민간보조 사업 종료
- '23. 12. 31. 연구사업 통폐합 등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장년고용연구지원'사업 종료
- '24년 고용노동부 컨설팅 사업 통합 추진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 이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2039-300)' 사업으로 통합)
- '26년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신설하여,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24년부터 2차 베이비부머 퇴직 본격화, 50대 고용률 지속 감소추세)에 따른 50대 취업 지원제도 시범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306	22,281	20,052	18,443	24,84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출연 등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민간,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 사업 수혜자 : 40세 이상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구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중장년 내일이음패키지	직접	고용센터	26	10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1조의4
	보조	노사발전재단 등 40개소	21,434	100	
	출연	한국고용정보원	1,463	100	
고령자고용지원 서비스역량강화	직접	용역 수행기관	121	100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직접	고용센터	1,800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중장년층취업지원 : ('25) 18,443백만원 → ('26) 24,844백만원 <전년 대비 +6,401백만원(+34.7%)>

①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 ('25) 18,343백만원 → ('26) 22,923백만원 <전년 대비 +4,580백만원(25.0%)>

- (요구) 중장년 고용서비스 수요 증가 대응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하여 중장년내일센터 인프라 확충(민간 센터 2개소 추가 지정), 생애경력설계 등 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 기반 중장년 채용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5년 대비 4,580백만원(25.0%) 증액

- (산출) ^가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사업운영 9,145백만원 + ^나중장년내일센터 인프라 13,777백만원 = 22,923백만원
가.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9,145백만원 = 중장년 고용네트워크 186백만원* +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8,959백만원**

* 일자리협의체 운영 160백만원(4백만원×중장년내일센터 40개소)
+ 중장년 고용네트워크 26백만원(지방관서 수용비, 1백만원×관할 (지)청 26개소)

** 생애경력설계 4,303백만원(기준 단가 77,400원 × 55,600명)
+ 중소·중견기업 중장년 고용지원 960백만원(12개소×운영 비용 등 80백만원)
+ 전직지원서비스 3,196백만원(79.9백만원×40개소)
+ 지역 채용수요 연계형 수시교육 500백만원(80개 과정×6.25백만원)

나. 중장년내일센터 인프라 13,777백만원 = 인건비 11,018백만원(39.35백만원×10명×민간 28개소) + 운영비 1,296백만원 (46.3백만원×민간 28개소) + 고용24 내 신규 관리자 페이지 개발 등 1,463백만원

②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 ('25) 100백만원 → ('26) 121백만원 <전년 대비 +21백만원(21%)>

- (요구) 중장년내일센터 컨설턴트 대상 사례 중심 수준별 역량강화 교육 실시 위해 전년 대비 21백만원 증액
- (산출) 121백만원=377명×320,000원

③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 ('26) 1,800백만원 <시범>

- (요구) 적극적 구인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미충원을 높은 일손부족 일자리(제조·운수창고업)와 50대 이상 퇴직자를 매치, 취업 후 장기근속 유도하는 인센티브(6·12개월 근속 시 각 180만원씩 연 최대 360만원) 제공
- (산출) 1,800백만원 = 인센티브 지급 1,000명×300천원×6개월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343	○ 중장년내일센터(320-01) : 18,343백만원 가. 중장년내일패키지(7,125백만원) · 생애경력설계 4,089백만원(77,400원 × 52,826명) + 전직·재취업지원 서비스 3,036백만원(79.9백만원×38개소) 나. 중소중견기업 중장년 고용지원(960백만원) · 80백만원×12개소 다. 인프라(10,258백만원) · 민간센터 인건비 9,054백만원(38.0173백만원×9.16명×민간 26개소) + 운영비 1,204백만원(46.3백만원×민간 26개소)	22,923	○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 22,923백만원 가. 중장년내일패키지 사업운영(9,145백만원) · 일자리협의체 운영 160백만원(4백만원×40개소) + 중장년고용네트워크 26백만원(지방관서 수용비, 1백만원×26개소) · 생애경력설계 4,303백만원(77,400원 × 55,600명) + 전직·재취업지원서비스 3,196백만원(79.9백만원×40개소) + 중소중견기업 중장년 고용지원 960백만원(80백만원×12개소) + 지역 채용수요 연계형 수시교육 500백만원(6.25백만원×80개 과정) 나. 인프라(13,777백만원) · 민간센터 인건비 11,018백만원(39.35백만원×10명×민간 28개소) + 민간센터 운영비 1,296백만원(46.3백만원×민간 28개소) + 고용24 신규 관리자 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1,400백만원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전산 개발 63백만원
100	○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역량강화(210-14) : 100백만원 가. 역량강화사업 · 355명×281,690원	121	○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역량강화(210-14) : 121백만원 가. 역량강화사업 · 377명×320,000원
-	-	1,800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 1,800백만원 가. 인센티브 지급 (1,000명×300천원×6개월)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중장년 고용률(40~60대)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72.1	24년 실적(72.0%) 대비 목표 0.1%p 상향	(40~60대 취업자수)/(40~60 대 인구) × 10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실적	71.5	72.0	72.0	-*	-			
	달성도	-	-	-	-	-			

* '26. 1월 중순 이후 발표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고령자인재은행 취업알선 185,273건 - 중장년내일센터 취업자 수 53,284명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수료자 41,451명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컨설팅 420개소
2023	- 고령자인재은행 취업알선 189,723건 - 중장년내일센터 취업자 수 58,855명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수료자 50,207명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컨설팅 410개소
2024	- 중장년내일센터 취업자 수 65,147명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수료자 56,102명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컨설팅 360개소
2025	- 중장년내일센터 취업자 수 74,094명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수료자 60,236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중장년내일센터 인프라를 추가 확충*하여 생애경력설계,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일자리로의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장년의 신속한 이·전직 지원

* 민간 중장년내일센터 2개소 추가 지정(총 40개소) 및 개소 당 컨설턴트 인원을 10명으로 증원

** '26년 중장년내일센터 추진 목표: 생애경력설계 55,600명, 취업지원 58,623명

- 훈련 및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신규로 일손부족 업종(제조·운수·창고업)에 취업하여 장기 근속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장년층 재취업 활성화 및 기업 인력난 해소

* '26년 지원목표: 1,000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고용노동부 (22,923백만원)	=> (26백만원)	없음	=> (26백만원)	고용센터
	=> (21,434백만원)	없음	=> (21,434백만원)	노사발전재단 등 29개소
	=> (1,463백만원)	한국고용정보원 (1,463백만원)	=> (1,463백만원)	용역 수행기관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강화>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고용노동부 (121백만원)	=> (121백만원)	없음	=> (121백만원)	용역 수행기관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고용노동부 (1,800백만원)	=> (1,800백만원)	없음	=> (1,800백만원)	고용센터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1,306	-	21,306	21,306	21,084	99.0	99.0	-	222
2023	22,281	-	22,281	22,281	22,128	99.3	99.3	15	138
2024	20,052	-	20,052	20,067	20,067	100	100	-	-
2025	18,443	-	18,443	18,443	18,443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39) 경계선지능청년지원(134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43	300
명칭	고용평등증진	고용평등사각지대보호	경계선지능청년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8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경계선지능청년 지원	-	-	-	260	260	260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260
· 경계선지능청년 지원	- (-)	-	-	-	-	-	-	-	-	-	2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경계선지능(IQ 71~84)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경계선지능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청년의 특성·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① 국가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취업취약계층의 능력·적성 등에 대한 진단
2.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3.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

- ② 추진경위

- (추진배경)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계획*」(‘23~’27년) 법정 장애인 아니지만 직업생활이 어려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취업지원 제공 방안 수립 필요성 검토
- (공약 4-10) 장애인의무고용 확대 및 고용활성화 제도 개선,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 및 학업·노동·일상생활 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6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26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18세~39세 경계선지능 청년 200명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 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경계선지능청년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260	8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 (2025 예산) - → (2026 예산) 260백만원, 순증

- (요구) 경계선 지능인 청년의 특성·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①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비 160백만원
 - ②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일반 연구비 70백만원
 - ③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운영비 30백만원
-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260,00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60,000천원 가.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비(160,000천원) · 200명×단가100만원(참여수당 20만원+운영비 80만원)×80%(보조율) ○ 연구용역비(260-01) : 70,000천원 가. 일반연구비(7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0,000천원 가.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사업 홍보 등(20,000천원) · 사업홍보물제작 등 : 20,000천원×1식=20,000천원 나. 사업 관련 자료 인쇄 등(5,000천원) 다. 회의수당 및 자문수당 등(5,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경계선지능청년 지원 사업 이수자수	목표					140	사업 특성 고려, 사업목표 대비 70%를 목표치로 설정	경계선지능청년 지원 사업 이수자수	지자체 운영실적
	실적					-			
	달성도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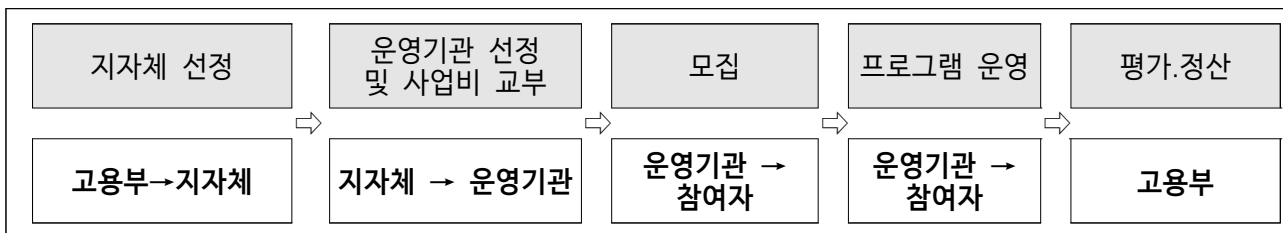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경계선지능청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구직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경계선지능청년 직업능력개발 200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40) 상생협력 확산지원(20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080	08E
명칭			노동정책관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301
명칭	노사정책	노사협력	상생협력 확산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50% 등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총괄>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상생임금 확산지원	소관부처	노동정책총괄과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소관부처	노동정책관
		노동정책총괄과
		고용노동부
	사업시행주체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사업시행주체	노동정책총괄과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상생협력 확산지원	20,415	8,542	8,542	11,251	11,751	3,209	37.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010	21,010	20,415	-	595	8,542	8,542	8,521	-	21	11,751
· 상생임금확산지원	9,725	9,725	9,712	-	13	5,918	5,918	5,918	-	-	7,818
· 상생연대형성지원	5,000	5,000	5,000	-	-	-	-	-	-	-	-
· 상생의노사문화구축	2,873	2,873	2,742	-	131	2,624	2,624	2,603	-	21	3,933
·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	3,412	3,412	2,961	-	451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노사 및 노노 간의 상생과 협력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지원
 - (상생임금 확산지원) 민간에서 임금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직무 분석 등에 기반한 업종별 자율적 임금체계 개선 가이드 및 교육 동영상 개발·배포, 산업·규모·근속 등에 따른 임금정보 제공, 임금체계 관련 연구 추진 등 현장 지원
 -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노사갈등 예방·관리, 노사 협력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중 략)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제49조(국가의 책무)
 - * 국가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직무 중심의 합리적 임금체계, 원하청 협력, 상생의 노사관계,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등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상생협력 확산지원사업' 신설('24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21,010	8,542	11,75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위탁,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지자체, 수탁기관, 한국고용정보원 등
- 사업수혜자 : 기업 및 노동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상생임금 확산지원	출연	한국고용 정보원	500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보조	지자체 보조	2,060	광역 50 ± 5% 기초 80 ± 5% 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제122호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상생협력 확산지원 : (2025) 8,542백만원 → (2026) 11,751백만원, 3,209백만원 증액

① 상생임금 확산지원: ('25) 5,918 → ('26) 7,818백만원, +1,900백만원

- 업종별 임금체계 확산지원 : (25) 4,800 → (26예산) 6,400백만원(+1,600백만원)
 - (요구) 업종 단위에서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증액 요구
 - (산출) 6,400백만원 = 4개 업종×1,600백만원(25년 3개업종 → 26년 4개업종)
- 임금정보 등 제공 : (25) 635 → (26예산) 635백만원(전년동)
 - (요구) 업종별 임금실태조사, 임금체계 및 인력 운영 실태 조사 등 25년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635백만원 = 업종별 시장임금 실태조사 500백만원 + 임금체계 및 인력운영 실태조사(주제조사) 1년 ×70백만원 + 임금정보브리프 5회×2백만원 + 의견수렴 55백만원
- 인프라 운영·개선 : (25) 200 → (26예산) 500백만원(+300백만원)
 - (요구) 임금직업포털(25.4월 신규개설) 운영 및 기업과 구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증액 요구
 - (산출) 500백만원 = 유지·보수 370백만원 + 콘텐츠 개발 130백만원
- 운영비 : (25) 283 → (26예산) 283백만원(전년동)

②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25) 2,624 → ('26) 3,933백만원, +1,298백만원

-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지원: (25) 1,200 → (26예산) 2,110백만원(+ 910백만원)
 - (요구) 노동자 이해대변 확대 및 지역 현안 해결 추진을 위한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자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확대 요구
 - (산출)
 - ㉠ 지자체 경상보조 2,060백만원 = (광역) 17개소×70백만원 + (기초) 30개소×29백만원
 - ㉡ 운영비 50백만원
-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25) 150 → (26예산) 150백만원(전년동)
 - (요구)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인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의 원활한 평가 등을 위해 25년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 ㉠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사업 용역비 150백만원
 - 평가위원 수당 및 위탁사업비 150백만원
-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 지원: (25) 250 → (26예산) 219백만원(△31백만원)
 - (요구)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유지보수, 노조 회계투명성 인식 제고 및 제도 안착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등 감액 요구
 - (산출)
 - ㉠ 시스템 유지보수 99백만원
 - ㉡ 회계감사 교육 및 컨설팅 지원 120백만원
-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인식 확산: (25) 40백만원 → (26예산) 0백만원(△40백만원)
 - (요구)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등 전액 감액 요구
-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기반 구축: (25) 984백만원 → (26예산) 854백만원(△130백만원)
 - (요구)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등 감액 요구
 - (산출)
 - ㉠ 노사협력 및 갈등 예방을 위한 매뉴얼, 교육자료 발간 등 일반수용비 397백만원
 -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발간, 노사 협력체계 구축 관련 자료 유인 등 200백만원
 - 노동정책 설명자료집, 취약업종 노사관계 가이드, 우수기업협의회 사례집 발간 등 197백만원
 - ㉡ 노사문화 우수기업, 근로자의 날 등 포상·행사 등 일반용역비 및 임차료 228백만원
 - 노사문화 우수기업, 근로자의 날 등 정부 포상 일반용역비 221백만원
 - 노사정책 등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관련 임차료 7백만원
 - ㉢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정책 개선방안 연구 등 정책연구비 100백만원
 - ㉣ 전문가 회의, 간담회 및 노사분규 현장 지도 등 사업추진비 및 국내여비 91백만원
 - 노사, 노노 현장의견 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회의 등 사업추진비 82백만원
 - 노사갈등 예방 및 조정 등 현장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9백만원
 - ㉤ 기타 운영비 등 38백만원
 -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교육자료 송부 등 공공요금및제세 15백만원

- 특근매식비(21백만원), 자산취득비(2백만원) 등 23백만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현장안착 지원: (25) 0백만원 → (26예산) 100백만원(+100백만원)
 - (요구) 개정 노조법의 현장안착 지원을 위한 증액 요구
 - (산출) 매뉴얼 및 해설서 제작·배포 50백만원, 전문가 자문단 운영 50백만원
- 노동절 기념행사: (25) 0백만원 → (26예산) 200백만원(+200백만원)
 - (요구) 62년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노사정이 함께 기념하고, 온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국가적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증액 요구
 - (산출) 기념행사 용역비 150백만원, 행사 홍보 등 운영비 50백만원
-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 등: (25) 0백만원 → (26예산) 300백만원(+300백만원)
 - (요구) 현행보다 고도화된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정책연구비 증액 요구
 - (산출)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 비용 120백만원, 공공부문 임금체계 모델 개발 등 연구비 18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542	○ 상생임금 확산지원: 5,918백만원 - 정보제공 기능 635백만원 : 업종별 임금실태조사 500백만원 임금체계 및 인력운용실태조사 70백만원(1,000개소×7만원) 임금정보브리프 발간 10백만원(5회×2백만원) 전문가 의견 수렴 55백만원 - 임금·직무 인프라 확충 200백만원 : 통합형 임금·직무 정보시스템 운영 70백만원 임금·직무정보 콘텐츠개발 및 연구강화 130백만원 - 운영비 283백만원 - 임금체계 개선 지원 4,800백만원(3개업종×1,600백만원) ○ 상생의 노사문화구축: 2,624백만원 -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150백만원 -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지원 250백만원 -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인식 확산 40백만원 -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기반 구축 984백만원 -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1,200백만원	11,751	○ 상생임금 확산지원: 7,818백만원 - 정보제공 기능 635백만원 : 업종별 임금실태조사 500백만원 임금체계 및 인력운용실태조사 70백만원(1,000개소×7만원) 임금정보브리프 발간 10백만원(5회×2백만원) 전문가 의견 수렴 55백만원 - 인프라 운영·개선 500백만원 : 시스템 운영 370백만원 콘텐츠개발 및 연구강화 130백만원 - 운영비 283백만원 - 임금체계 개선 지원 6,400백만원(4개업종×1,600백만원) ○ 상생의 노사문화구축: 3,933백만원 -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150백만원 -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지원 219백만원 -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기반 구축 854백만원 -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2,110백만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현장안착 지원 100백만원 - 노동절 기념행사 및 홍보 200백만원 -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 등 3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일터혁신 실태조사(점)	목표	-	-	55.5	55.6	55.7	'25년 목표(55.6) 대비 0.1점 상향 설정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항목을 점수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외부 전문 연구 기관
	실적	-	-	55.9	54.5	-			
	달성도	-	-	100.7	98.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4	○ 상생임금 확산지원 사업 - 임금·직무 정보 제공(임금정보브리프, 임금체계 및 인력운용 실태조사 등) -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지원(3개 업종 지원) - 임금직무정보시스템 운영 ○ 상생연대 형성지원 - 참여기업 4개 선정, 기업출연금 및 보조금 총 116억원 재원 형성 ○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 56개 지자체 1,160백만원 지원 ○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근로자이음센터 전국 6개소 개소 및 오프라인 13,690건, 온라인 1,731건 상담 - 취약근로자 교육, 법률구조상담 등 위해 28개 지자체 1,009백만원 지원
2025	○ 상생임금 확산지원 사업 - 임금·직무 관련 정보 제공(임금정보브리프, 산업·규모 등에 따른 임금정보 등) -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4개 업종 지원) - 임금직업포털 운영('25.4월 개설) ○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 49개 지자체 1,160백만원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합리적인 임금체계 자율 개선 확산
- 지역노사민정 협력 및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 활성화
- 노동절 기념행사 등을 통해 노동의 가치 체감 및 노동존중문화 확산
- 개정 노조법 현장안착을 통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정착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상생임금확산지원 ○ 업종별 임금체계 확산 지원	
사업 공고 및 선정	고용노동부
↓	
위탁계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고용노동부, 수탁기관
↓	
사업 수행	수탁사업자
↓	
이행점검	고용노동부, 수탁사업자

○ 임금정보 등 제공

사업계획 수립	고용노동부
↓	
위탁계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	
사업 수행	한국노동연구원

○ 인프라 운영·개선

사업계획 수립	고용노동부
↓	
출연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수행	한국고용정보원

▪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공모 및 선정	고용노동부
↓	
보조금 신청	지자체
↓	
보조금 교부	고용노동부
↓	
사업 수행	지자체
↓	
중간 점검	고용노동부
↓	
실적 및 정산 보고	지자체
↓	
정산 확인 및 평가	고용노동부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4	21,010	-	-	21,010	20,415	97.2	97.2	-	595
2025	8,542	-	-	8,542	8,521	99.8	99.8	-	99.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4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전용 60백만원, 세목조정 40백만원 - 이·전용 등 사유 : 국내여비(전용), 임차료(세목조정), 일반용역비(세목조정) 부족분 충당 - 불용 사유: '23.12월 예산안 심사시 국회에서 편성된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사업'은 준비, 홍보기간의 부족 및 지자체의 예산(지방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집행률 다소 저조
2025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전용 70백만원, 세목조정 6백만원 - 이·전용 등 사유 : 일반연구비(전용), 국내여비(전용), 임차료(세목조정) 부족분 충당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7.8.)	상생협력 확산지원 (2031-301)	210-01 (수용비)	19	상생협력 확산지원 (2031-301)	260-01 (일반연구)	AI기반 노동행정 서비스 시스템 운용 부족분 충당
전용 (25.11.14.)	상생협력 확산지원 (2031-301)	210-01 (수용비)	40	상생협력 확산지원 (2031-301)	220-01 (국내여비)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5.12.11.)	상생협력 확산지원 (2031-301)	210-02 (공공요금)	6	상생협력 확산지원 (2031-301)	210-07 (임차료)	임차료 부족분 충당
전용 (25.12.11)	상생협력 확산지원 (2031-301)	210-02 (공공요금)	2	상생협력 확산지원 (2031-301)	220-01 (국내여비)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전용 (25.12.11)	상생협력 확산지원 (2031-301)	210-05 (특근매식)	9	상생협력 확산지원 (2031-301)	220-01 (국내여비)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사 업 명						
(41) 취약노동자지원(20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080	08E
명칭			노동정책관		보건·복지·고용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303
명칭	노사정책	노사협력	취약노동자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50% 등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취약노동자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취약노동자 참여·소통 활성화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소관부처	노무제공자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사업시행주체	노무제공자지원과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
	사업시행주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취약노동자 보호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노동행정인공 지능혁신과
	사업시행주체	
취약노동자 보호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노동정책총괄과
	사업시행주체	
취약노동자 보호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취약노동자 보호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
	사업시행주체	
취약노동자 보호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취약노동자지원	-	15,989	15,989	14,795	25,345	9,356	58.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5,989	15,989	13,431	6	2,550	25,345
· 취약노동자 참여·소통 활성화 지원	-	-	-	-	-	4,446	4,446	4,446	-	-	2,248
·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	-	-	-	-	-	-	-	-	-	1,325
·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	-	-	-	-	-	-	-	-	-	-	200
·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	-	-	-	-	-	2,063	2,063	1,879	6	178	2,500
· 취약노동자 상생 복지지원	-	-	-	-	-	6,632	6,632	4,277	-	2,355	-
· 취약노동자 보호	-	-	-	-	-	2,848	2,848	2,829	-	17	3,292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	-	-	-	-	-	-	-	-	-	15,7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등 현행 노동관계법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 (취약노동자 참여·소통 활성화 지원) 이음센터, 타운홀 미팅을 통해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교육, 현장소통, 정책의제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근로자 이음센터 운영) 전통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노동관서와 달리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에 대한 특화된 고충 해결 및 교육, 고용노동정책 연계를 수행, '26년부터는 민간 노동센터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 병행
 - (취약노동자 타운홀 미팅)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취약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직종별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현장의 니즈를 정책에 반영하는 프로그램

-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권익 상담·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을 갖춘 현장 밀착형 지원기구로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최일선 기관 지원
-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보증보험 지원 등 체불 구제제도가 미흡한 특고·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해 미수금 분쟁 관련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실시 (법률구조공단 수행)
-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무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쉼터 설치 및 복지 물품·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터개선 지원사업 운영
- (취약노동자 보호)
 - (AI 기반 영세사업장 노동법 준수 자율점검) 사업주·인사담당자가 웹사이트 상에서 AI와 대화를 통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의무, 최저임금 등 기초 노동질서를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AI 서비스 개발·실증·시범운영
 -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규모가 영세하여 노동법 준수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이 HR 플랫폼을 이용하여 인사 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여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
 -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취약노동자 교육·상담·법률구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요되는 사업 비용 일부 지원
 -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파견법 준수 등 지도·점검, 정책연구 등 실시
 -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1년)에 따라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 국가의 책무 이행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노동단체,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정책개발, 교육·상담 등 다양한 사업 비용 일부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취약노동자 참여·소통 활성화 지원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
-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보조할 수 있다.

○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

- 「법률구조법」 제4조, 제21조, 제24조(공단의 재원)

○ 취약노동자 보호(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 지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지도·조언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자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또는 적정한 파견근로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 취약노동자 보호(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취약노동자 참여·소통 활성화 지원**

- '24. “상생협력 확산지원” 세부사업 내의 내역사업으로 신규 편성
(내역사업명: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 '02.~'05. 한국노총('76년~)에 노조간부교육, 상담, 정책개발, 국제교류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민주노총에 건물임차료를 일부 지원
- '06. 공모·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및 사업비 중심 지원
- '24. 보조금 개편에 따라 사업 폐지
- '26.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사업 복원

○ **취약노동자 보호(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 지원)**

- '01.7.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관련 논의
- '07.6. 비정규직보호법률 하위법령 공포, '07.7.1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 '09.4.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위원회 「비정규직 입법 효과 평가체계 구축 관련 합의문」 채택
- '11.9. 차별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 '12.8. 고용노동부장관 시정요구권 도입, 차별시정 신청기간 연장(3→6개월), 불법파견 '즉시' 고용의무 발생 법개정(舊 불법파견 2년 초과 시 고용의무)
- '14.9.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등 법개정
- '17.10.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로드맵 발표
- '17.12. 비정규직 TF 운영
- '20.1. 민간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 활성화 위한 고용구조개선 지원단 운영
- '20.11.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 '23.12.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 **취약노동자 보호**(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

- '21.05.18.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1.11.19.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시행
- '22.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구성
- '22.7. 산불재난에 대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 '22.~'23. 「필수업무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해당없음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등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등
 - 사업 수혜자 : 취약노동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	보조	지자체	1,521백만원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보조	기업 등	374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	출연	대한법률 구조공단	200백만원	100%	법률구조법 제4조, 제21조, 제24조
노동단체 및 비영리 법인 지원	보조	노동단체	3,680백만원	8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보조	비영리법인	1,800백만원	8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보조	한국노총	5,100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보조	민주노총	5,100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취약노동자 보호	보조	기업	900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보조	지자체	1,060백만원	70%~9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취약노동자지원 : (2025 예산) 15,989백만원 → (2026 예산) 25,345백만원, +9,356백만원

① 취약노동자 참여·소통 활성화 지원 : (2025) 4,446백만원 → (2026) 2,248백만원, △2,198백만원

- (요구) 전통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노동관서와 달리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에 대한 특화된 고충 해결 및 교육, 고용노동정책 연계를 수행하는 근로자 이음센터 운영 비용, 취약노동자들의 소통·의견수렴을 위한 타운홀미팅 운영 비용 등 요구
- (산출) ① 근로자 이음센터 운영 1,950백만원
- ② 취약노동자 타운홀 미팅 운영 298백만원

- ②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 **(2026 예산) 1,325백만원, 순증**
- (요구) 전통적 근로관계가 아닌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동법 상담, 분쟁 예방부터 권리 구제 및 각종 정부 정책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노동센터 지원 비용 등 요구
 - (산출) 민간 노동센터 활성화 지원 1,325백만원
- ③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 : **(2026 예산) 200백만원, 순증**
- (요구) 특고·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보수 미지급 등 법적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미수금 회수 법률구조 비용 요구
 - (산출) 출연금 200백만원
- ④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 : **(2025) 2,063백만원 → (2026) 2,500백만원, +437백만원**
- (요구)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무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쉼터 설치 및 복지 물품·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터개선 지원사업 운영, 노무제공자 등 취약노동자 국내외 실태조사·연구 및 전문가 자문 강화
 - (산출) ①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사업 보조 1,925백만원
② 취약노동자 실태조사·연구 550백만원
③ 취약노동자 전문가 자문회의 25백만원
- ⑤ 취약노동자 보호 : **(2025) 2,848백만원 → (2026) 3,292백만원, +444백만원**
- (요구) AI 기반 영세사업장 노동법 준수 자율점검,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 지원 및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지원
 - (산출)
 - ① AI 기반 영세사업장 노동법 준수 자율점검 844백만원
: AI 이용료(148백만원) + GPU 등 임차료(360백만원) + 전문작업비(236백만원) + 기타경비(100백만원)
 - ②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930백만원
: HR 플랫폼 이용 지원금 900백만원(500개소×1개소 최대 이용료 180만원), 운영비 30백만원
 - ③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1,100백만원
: 지자체경상보조 1,060백만원, 운영지원 용역비 40백만원
 - ④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지원 378백만원
: 비정규직 근로감독 활동(지방관서) 등 운영경비 378백만원
 - ⑤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40백만원
: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40백만원
- ⑥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 **(2026 예산) 15,780백만원, 순증**
- (요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노동단체,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정책개발, 교육·상담 등 다양한 사업 비용 일부 지원
 - (산출)
 - ① 노동단체 지원 3,73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3,680백만원(92백만원×40개소), 일반용역비 50백만원
 - ②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1,85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1,800백만원(60백만원×30개소), 일반용역비 50백만원
 - ③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시설개선 지원 민간자본보조 5,100백만원
 - ④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지원 민간자본보조 5,10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989	○ 노동약자 참여·소통 활성화 지원 : 4,446백만원 - 근로자 이음센터 인력·시설 운영비 1,556백만원(10개소) - 이음센터 內 분쟁조정협의회 신설 235백만원 · 조정위원 수당 및 운영비 85백만원(100회) · 화해 성공수당 150백만원(50회)	14,795	○ 취약노동자 참여·소통 활성화 지원 : 2,248백만원 - 근로자 이음센터 인력·시설 운영비 1,550백만원(10개소) - 노무제공자 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320백만원(50회×10개소) - 근로자 이음센터 홍보비 80백만원 - 취약노동자 타운홀 미팅 298백만원(4회)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이음센터 內 특화프로그램 신설 2,277백만원 - 노무제공자 케어 프로그램 305백만원(10회×10개소) - 일반근로자 특화 프로그램 160백만원(40회×10개소) - 참여형 프로그램 112백만원(40회×7개소) - 스텝업 프로그램 500백만원(350명) - 노동약자 유관단체 협업 교육상당 프로그램 1,200백만원(교육상당 10,000건, 법률구조지원 400건) - 이음센터 홍보비 80백만원 - 노동약자 타운홀 미팅 298백만원(4회) ○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 2,063백만원 - 노동약자 일터개선 사업 보조 1,838백만원 - 지자체경상보조 1,189백만원(35개소) - 민간경상보조 649백만원(10개소) - 노동약자 실태조사·연구 200백만원 - 노동약자 전문가 자문기구 25백만원 - 위원회 수당 24백만원(20만×10인×12회) - 운영비 1백만원 ○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 6,632백만원 - 업종별 상생 복지지원 보조금 6,532백만원(4개 업종) - 운영비 1백만원 ○ 불법·부당 노동관행 등 개선 지원 : 2,848백만원 -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930백만원 -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금 900백만원(500개소) - 운영비 30백만원 -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당 지원 1,500백만원 - 지자체경상보조 1,460백만원(20개소) - 운영지원 용역비 40백만원 -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지원 378백만원 - 비정규직 근로감독 활동(지방관서) 등 운영경비 378백만원 -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40백만원	○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 1,325백만원 - 민간 노동센터 활성화 지원 1,325백만원 - 민간 노동센터 상담사 교육 75백만원(2.5백만원×30개소) - 노동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1,050백만원(35백만원×30개소) - 운영비 200백만원 ○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 : 200백만원 - 출연금 200백만원(40만원×500건) ○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 : 2,500백만원 -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사업 보조 1,925백만원 - 지자체경상보조 1,521백만원(30개소) - 민간경상보조 374백만원(6개소) - 현장소통·점검 등 용역비 30백만원 - 취약노동자 실태조사·연구 550백만원 - 취약노동자 전문가 자문기구 25백만원 - 위원회 수당 24백만원(20만×10인×12회) - 운영비 1백만원 ○ 취약노동자 보호 : 3,292백만원 - AI 기반 영세사업장 노동법 준수 자율점검 844백만원 - AI 이용료 148백만원 - GPU 등 임차료 360백만원 - 전문작업비 236백만원 - 기타경비 100백만원 -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930백만원 -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금 900백만원(500개소) - 운영비 30백만원 -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당 지원 1,100백만원 - 지자체경상보조 1,060백만원(15개소) - 운영지원 용역비 40백만원 -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지원 378백만원 - 비정규직 근로감독 활동(지방관서) 등 운영경비 378백만원 -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40백만원 -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40백만원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 15,780백만원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경상보조 5,480백만원 - 노동단체 경상보조 3,680백만원(40개소) -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경상보조 1,800백만원(30개소) - 운영지원 용역비 100백만원 -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시설개선 지원 5,100백만원 -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지원 5,1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일터혁신 실태조사(점)	목표	-	-	55.5	55.6	55.7	'25년 목표(55.6) 대비 0.1점 상향 설정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항목을 점수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외부 전문 연구 기관
	실적	-	-	55.9	54.5	-			
	달성도	-	-	100.7	98.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파견·사내하도급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한 비정규직 제도의 적정 운영 지도 - 비정규직 증가 업종 중심 기간제 쪼개기·차별 감독 규모 확대* 추진 * ('21년) 430개소 → ('22년) 1,150개소
2023	- 파견·사내하도급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제도의 적정 운영 지도(465개소 감독 실시) - 기간제 등 비정규직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한 차별 감독 705개소 실시
2024	- 기간제 등 비정규직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한 릴레이 차별 감독 실시 * ①저축은행 등, ②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사업장 등, ③식품제조업, ④차별 익명신고 사업장 - 산단지역 내 제조업체 등 비정규직 사용 사업장 파견법 준수 감독 실시 - 비정규직 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7월)
2025	- 근로자 이음센터 10개소 운영 - 자치단체의 경우 수혜대상을 영세소규모사업장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취약 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감독 (550개소 예정) 실시 - 비정규직 근로감독관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집합,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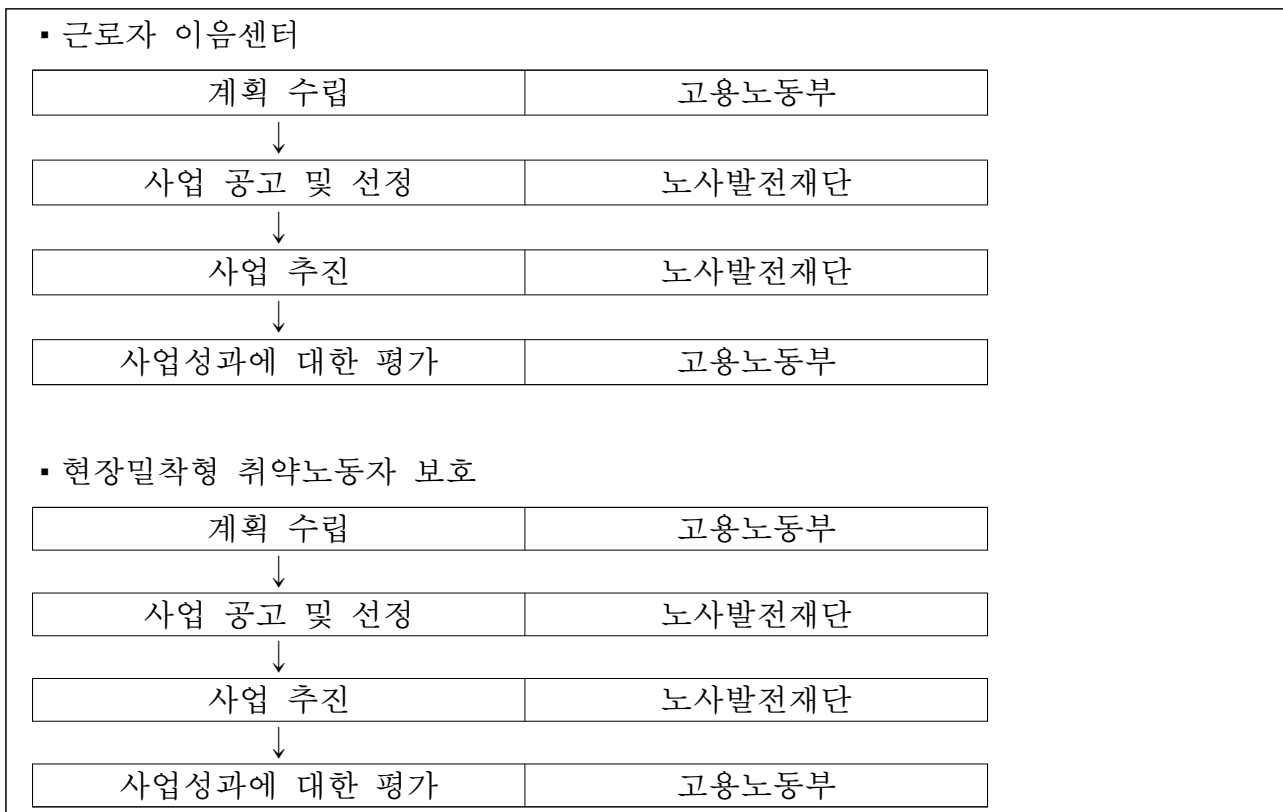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권리 밖 노동자의 실질적 권익 보호 +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장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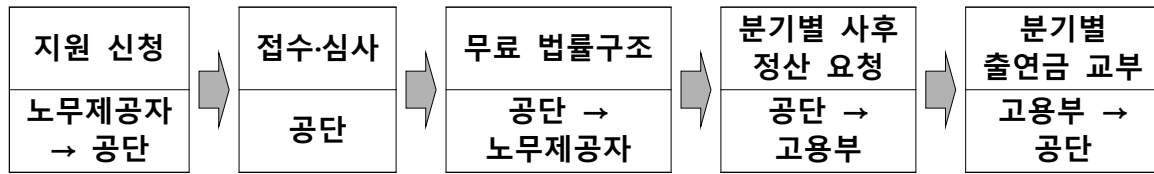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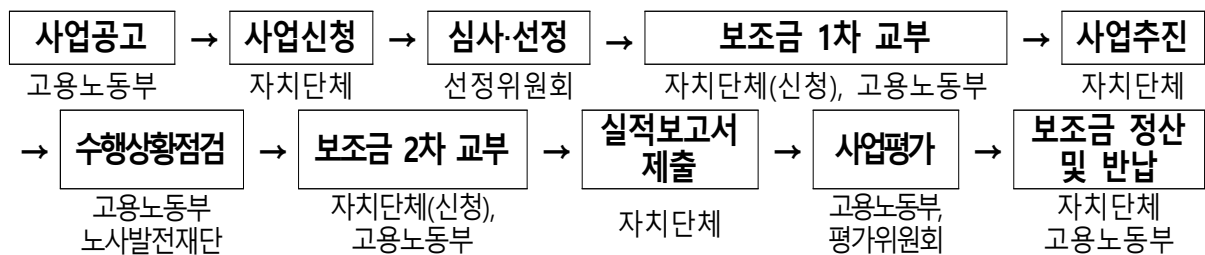
▪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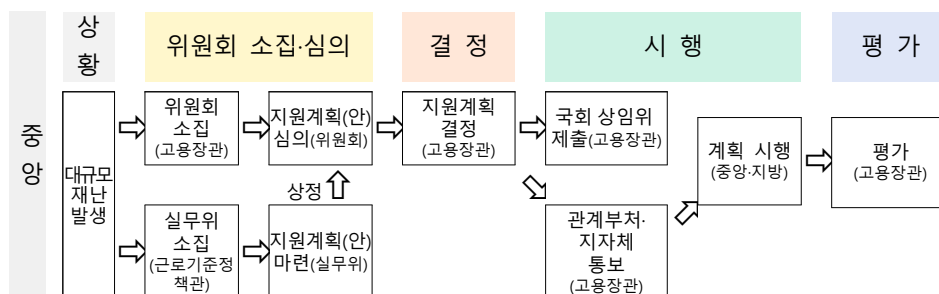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 → HR 플랫폼 → 영세사업장

▪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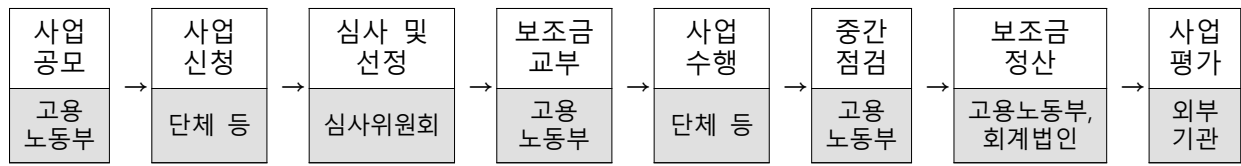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재난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42) 한국고용노동교육원운영지원(20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한국고용노동 교육원)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305
명칭	노사정책	노사협력	한국고용노동교육원운영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운영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사업시행주체	노사협력정책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19,654	18,763	18,763	21,166	21,105	2,342	12.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19,654	19,654	19,654	-	-	18,763	18,763	18,763	-	-	21,105
· 고용노동교육	7,967	7,967	7,967	-	-	7,967	7,967	7,180	-	-	8,206
· 고용노동행정업무 종사자교육	2,729	2,729	2,729	-	-	2,929	2,929	2,929	-	-	2,929
·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	-	-	-	-	-	-	-	-	-	-	900
· 정보시스템구축	1,594	1,594	1,594	-	-	1,594	1,594	1,594	-	-	1,534
· 노후건축보수	694	694	694	-	-	500	500	500	-	-	638
· 지역거점센터운영	443	443	443	-	-	443	443	443	-	-	443
· 인건비	8,837	8,837	8,837	-	-	9,106	9,106	9,106	-	-	9,425
· 경상비	1,166	1,166	1,166	-	-	1,147	1,147	1,147	-	-	1,141
· 수입	△3,776	△3,776	△3,776	-	-	△4,923	△4,923	△4,136	-	-	△4,1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조)
- ① **(고용노동교육)** 고용노동환경분석·교육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적 고용노동교육 사업방향·교육체계를 수립하고 노사관계 및 고용교육, 노동인권교육의 실시와 전문가양성을 통한 고용노동교육활성화 지원사업
- ② **(고용노동행정업무종사자교육)** 고용노동행정업무종사자 대상 직무분야별·단계별 교육으로 개인 및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과 미래역량을 갖춘 현장 전문가양성
- 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노동교육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한 전 국민 대상 노동교육 활성화
- ④ **(정보시스템 구축)** 고용노동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국민 고용노동교육 확산과 고용노동 허브기관 역할수행 및 평생교육 차원의 국민고용노동교육 서비스 제공
- ⑤ **(거점센터 운영)** 전국민 고용노동교육 및 산업안전감독관 수사·감독 교육 강화 등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2개소)
- ⑥ **(노후건축보수)** '99년 신축한 노후화된 건물 및 설비를 적시에 유지·보수하여 건물 안전성 및 내구성 증진
- ⑦ **(인건비,경상비)** 직원 인건비, 교육원 운영·관리를 위한 소요 재원 마련
- ⑧ **(수입)** 자체수입(교육수입, 이자수입, 잡수입)과 이월결산잉여금으로 구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법률 제18930호)

제6조(사업)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2.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청소년, 청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4. 교육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5.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6.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7.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8.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9.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관련 부대사업
 11.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 ② 교육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89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전문노동교육기관으로 출범하였으나, '08년 근거법률 폐지로 한국기술교육대 부속기관으로 운영('09.3월~)
- 한기대-연수원 간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 미비 및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수요 확대 등 급변하는 교육수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부작용 발생
- 연수원 독립기관화 방안 마련('18.2월), 법안 공포('20.3월)

구 분	내 용
'89.08.22.	노사정대표 간담회, 노사정 공동출연의 전문노동교육기관 설립 합의
'89.10.24.	(재)한국노사교육본부 설립(경기도 과천시)
'90.08.01.	한국노동교육원법 공포(법률 제4253호)
'90.09.21.	한국노동교육원 설립((재)한국노사교육본부 승계) * 재단법인에서 특별공법인으로 전환
'99.02.08.	한국노동교육원법 개정(법률 제5879호) * 고용부 산하 노동연수원 폐지에 따라 노동행정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인수
'99.07.01.	신청사 이전(과천시 → 경기도 광주시 오폭읍)
'03.12.31.	한국노동교육원법 개정(법률 제7044호) * 사업영역 및 교육대상 확대 (노사관계당사자, 노동행정공무원 → 일반국민)
'08.12.31.	한국노동교육원법 폐지법률 공포(법률 제9318호) ['09.3.1시행] * 민간부문 교육은 민간자율, 공공부문 교육은 한기대로 이관 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9320호) ['08.12.31 시행] * 공공부문 교육과 노동행정업무 종사자 직무교육 시행근거 반영
'09.03.0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 「노동행정연수원」 개원
'11.03.0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 「고용노동연수원」으로 명칭변경
'18.11.22.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 발의
'20.03.31.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공포(법률 제17189호)
'20.10.01.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출범 '20.10.5)
'21.01.29.	기타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
'22.06.10.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8930호) *교육대상에 청년 포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894	19,153	19,654	18,763	21,10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사업 수혜자 :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고용 노동교육원 운영지원	출연	한국고용 노동교육원	21,105	100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제1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운영지원 : (2025 예산) 18,763백만원 → (2026 예산) 21,105백만원, 2,342백만원 증액

- (요구) 수지차보전기관으로 지출예산에서 수입예산을 차감한 금액을 정부출연금 요구
- (산출) '26년도 지출예산 25,216백만원 - 수입예산 4,111백만원 = 21,105백만원

○ 지출예산 : (2025 예산) 23,686백만원 → (2026 예산) 25,216백만원, 1,530백만원 증액

- (요구) 사업비, 인건비, 경상비 반영
- (산출) 사업비(14,650), 인건비(9,425), 경상비(1,141) = 25,216백만원

가. 사업비 : (2025 예산) 13,433백만원 → (2026 예산) 14,650백만원, 1,217백만원 증액

① 고용노동교육: (2025 예산) 7,967백만원 → (2026 예산) 8,206백만원, 239백만원 증액

- (요구) 복잡한 노사관계 갈등에 대처 가능한 현장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사관계전문가과정 예산 요구(300백만원), 새일센터 교육 성평등부 이관에 따른 예산 감액(△61백만원)
- (산출) (노사관계전문가과정) 5개 권역×30명×2백만원 = 300백만원,
(새일센터 교육) 265,217원×230명=61백만원

구분	'25년도		'26년도 요구(안)	
	인원(명)	예산(백만원)	인원(명)	예산(백만원)
고용노동교육	118,340	7,967	118,260	8,206
노사관계교육	17,140	1,645	17,290	1,945
고용서비스담당자교육	8,230	2,172	8,000	2,111
노사권리보호교육	92,520	1,182	92,520	1,182
전문강사양성교육	450	497	450	497
연구개발 등	-	2,471	-	2,471

② 고용노동행정업무종사자교육: (2025 예산) 2,929백만원 → (2026 예산) 2,929백만원, 전년 동

- (요구) 고용노동행정업무종사자 대상 직무분야별·단계별 교육 등 전년수준 예산 요구
- (산출) 10,130명×평균단가 289,141원 = 2,929백만원

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 (2026 예산) 900백만원, 900백만원 순증

- (요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을 언제,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요구(900백만원)
- (산출) 콘텐츠 개발 620백만원 = 10종×62백만원
 전문가 양성 100백만원 = 200명×500천원
 협의체 구축 180백만원 = 중앙단위 84백만원 + 지역단위(3개) 96백만원

④ 정보시스템구축: (2025 예산) 1,594백만원 → (2026 예산) 1,534백만원, 60백만원 감액

- (요구) 중장기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이행과제 추진을 위한 정보시스템구축 예산 요구
- (산출) 5식×307백만원 = 1,534백만원

'25년도		'26년도 요구(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94	• 1,594백만원= 319백만원 × 5식 ①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 : 258 ② 양방향 화상강의 시스템 구축 : 348 ③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348 ④ 민원응대 시스템 구축 : 257 ⑤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 : 383	1,534	• 1,594백만원= 319백만원 × 5식 ① AI 학습추진 : 298 ② 표준 연계 강화 : 338 ③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 : 275 ④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 : 343 ⑤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 : 280

⑤ 노후건축보수: (2025 예산) 500백만원 → (2026 예산) 638백만원, 138백만원 증액

- (요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화 설비 개·보수비 60백만원, 내진보강을 위한 설계비 78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노후건축보수(3개소×187백만원)+내진보강 설계(78백만원) = 638백만원

⑥ 지역거점센터운영: (2025 예산) 443백만원 → (2026 예산) 443백만원, 전년 동

- (요구) 지역거점센터 2개소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비 소요에 따른 전년수준 예산 요구
- (산출) 2개소×221.5백만원 = 443백만원
 · 2개소 임차료 189백만원, 2개소 공공요금 및 제세 254백만원

나. 인건비 : (2025 예산) 9,106백만원 → (2026 예산) 9,425백만원, 319백만원 증액

① 공통 처우개선 반영 (319백만원)

- (요구) '26년도 임금인상률 반영 요구
- (산출) '24년도 인건비 9,106백만원 x 3.5% = 319백만원 ('26년 공통 처우개선)

다. 경상비 : (2025 예산) 1,147백만원 → (2026 예산) 1,141백만원, 6백만원 감액

① 경상비 공통감액 (△100백만원)

- (산출) 경상비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공통감액 △100백만원

② 공공요금 인상분 및 제세 부족분 반영 (+91백만원)

- (요구) 공공요금 기준 단가 인상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 반영 요구
- (산출) 공공요금 인상분 및 제세 부족분 증액 반영 91백만원

③ 증원인력 수반경비 반영 (+3백만원)

○ 수입예산 : (2025 예산) 4,923백만원 → (2026 예산) 4,111백만원, 812백만원 감액

- (요구) 자체수입, 이월결산잉여금 반영
- (산출) 자체수입 2,478백만원+이월결산잉여금 1,633백만원 = 4,111백만원

가. 자체수입 : (2025 예산) 2,847백만원 → (2026 예산) 2,478백만원, 369백만원 감액

- (요구) 사업수입(고용노동교육), 사업외수입(이자수입, 잡수입) 반영
- (산출) 사업수입: 16,400명×평균단가 140,853원= 2,310백만원,
 사업외수입: 168백만원 * (이자수입) 75백만원, (잡수입) 93백만원

나. 이월결산잉여금 : (2025 예산) 2,076백만원 → (2026 예산) 1,633백만원, 443백만원 감액

- (요구) 전기이월금, 전전기이월금 반영
- (산출) 전기이월금 1,281백만원+전전기이월금 352백만원 = 1,633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763	○ 사업비 : 13,433백만원 가. 고용노동교육사업 : 7,967백만원 • 7,967백만원 = 118,340명 × 평균단가 67,322원 나. 고용노동행정증사자교육 : 2,929백만원 • 2,929백만원 = 15,062명 × 평균단가 194,462원 다. 정보시스템 구축 : 1,594백만원 • 1,594백만원 = 319백만원 × 5식 라. 거점센터 운영 : 443백만원 • 443백만원 = 221.5백만원 × 2개소 마. 노후건축보수 : 500백만원 • 500백만원 = 166백만원 × 3개소 ○ 인건비 : 9,106백만원 ○ 경상비 : 1,147백만원 ○ 수입 : △4,923백만원 • 사업수입 : 2,608백만원 • 이자수입 : 42백만원 • 잡수입 : 197백만원 • 전기이월금 : 1,038백만원 • 전전기이월금 : 1,038백만원	21,166	○ 사업비 : 14,711백만원 가. 고용노동교육사업 : 8,206백만원 • 8,206백만원 = 118,260명 × 평균단가 69,389원 나. 고용노동행정증사자교육 : 2,929백만원 • 2,929백만원 = 10,130명 × 평균단가 289,141원 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노동교육 : 900백만원 • 콘텐츠 개발 620백만원, 전문가 양성 100백만원, 협의체 구축 180백만원 라. 정보시스템 구축 : 1,534백만원 • 1,534백만원 = 307백만원 × 5식 마. 거점센터 운영 : 443백만원 • 443백만원 = 221.5백만원 × 2개소 바. 노후건축보수 : 638백만원 • 638백만원 = (187백만원 × 3개소) + 78백만원 ○ 인건비 : 9,425백만원 ○ 경상비 : 1,141백만원 ○ 수입 : △4,111백만원 • 사업수입 : 2,310백만원 • 이자수입 : 75백만원 • 잡수입 : 93백만원 • 전기이월금 : 1,281백만원 • 전전기이월금 : 35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단위: 명, %)	목표	83,550	83,550	87,240	87,440		2025년 고용노동교육 사업계획	2025년 고용노동교육 수료인원 실적 (사이버교육 제외)	교육원 자체 관리 실적
	실적	89,002	89,494	88,800	-	-			
	달성도	106.5	107.1	101.8	-	-			
지표명 (단위: 점, %)	목표	4.30	4.30	4.30	4.36		2025년 고용노동교육 수강생 대상 5점 척도 만족도 평균	2024년 목표치 + '22~'24년 만족도 실적 증가분의 평균	교육원 자체 관리 실적
	실적	4.41	4.47	4.53	-	-			
	달성도	102.6	104	105.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고용노동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B등급 - 지역거점센터(현장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2개소) - 노사관계 현안 및 이슈에 대한 탄력적 교육제공 및 대상별 노사관계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재편(공공기관 노동이사제교육, 소방 및 경찰공무원노동교육 등)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S등급
2023	- 고용노동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B등급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교육 확대로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 집중교육(총 673회) - 국정과제인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 적극 이행을 위한 기업·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과정 신설 및 혁신성과 공유회 최초 개최(총 33회 1,036명)
2024	- 고용노동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B등급 - 종합교육연수원 운영평가 우수기관(A등급) 선정에 따른 표창장 수상(교육부) - 특고·플랫폼 권리보호교육 수요 직종 확대(6개→8개)를 통한 정부 정책(노동약자 지원법) 대응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우수 등급
2025	-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갱신)('26.1.1~'28.12.31) - 국정과제인 전 생애 노동교육 추진을 위한 TF 운영(총 6회 회의 개최), 노동교육 발전협의회 개최, 홍보 카드뉴스 SNS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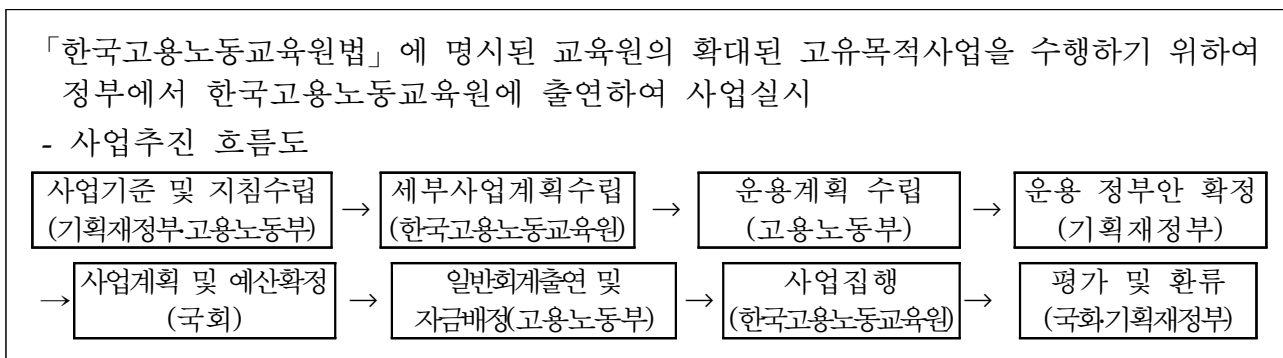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노동교육)**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적 교육사업 확대·강화, 양질의 교육인프라 확충, 교육운영 내실화, 교육프로그램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고용노동교육 선도 (118,260명)
- **(고용노동행정업무종사자교육)** 대국민 고용노동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실무역량 강화 및 직무전문성 제고, 특별민원 대응능력 및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내용 다변화 (10,130명)
-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동교육)**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콘텐츠 개발 10종, 전문강사 양성 200명, 협의체 구축)
-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라 AI학습 추천도입, 통계 분석 시스템 구축 등 정보 시스템 고도화로 전 국민 균형있는 맞춤형 고용노동교육 서비스 제공 (총 5개 과제 이행)
- **(노후건축보수)** 노후 건물 및 설비 개·보수로 안전성 및 내구성 향상(3개소), 교육원 건물 내진보강 설계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초석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7,894	-	17,894	17,894	17,894	100	100	-	-
2023	19,153	-	19,153	19,153	19,153	100	100	-	-
2024	19,654	-	19,654	19,654	19,654	100	100	-	-
2025	18,763	-	18,763	18,763	18,763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예비비 배정, 추경 편성, 이월, 불용 해당사항 없음
2023	- 이·전용, 예비비 배정, 추경 편성, 이월, 불용 해당사항 없음
2024	- 이·전용, 예비비 배정, 추경 편성, 이월, 불용 해당사항 없음
2025	- 이·전용, 예비비 배정, 추경 편성, 이월, 불용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3) 노사발전재단 지원(2036-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6	311
명칭	노사정책	노사발전재단지원	노사발전재단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노사발전 재단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사협력정책관
	사업시행주체	노사발전재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노사발전재단지원	20,144	20,559	20,559	25,257	25,257	4,698	22.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144	20,144	20,144	0	0	20,559	20,559	20,559	0	0	25,257
· 노사상생협력교육	91	91	91	0	0	91	91	91	0	0	91
· 글로벌노사관계지원	200	200	200	0	0	400	400	400	0	0	400
· 노사협의회 구축 및 활성화	-	-	-	-	-	100	100	100	0	0	100
· 정보시스템통합유지 보수	-	-	-	-	-	220	220	220	0	0	220
· 일반관리비	19,434	19,434	19,434	0	0	19,748	19,748	19,748	0	0	21,546
·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	-	-	-	-	-	-	-	-	-	2,900
· 차별없는노동자지원사업	419	419	419	0	0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노사발전재단이 노사상생협력, 글로벌노사관계지원, 상생파트너십 종합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일반관리비 편성
- (노사상생협력교육) 고용·노동현안 및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노사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중립적 노사관계 교육 실시
- (글로벌노사관계지원) 해외진출 우리기업이 진출국의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도록 노동법 및 제도, 현지 고용이슈 관련 노무관리 자료 제작·배포
- (노사협의회 구축 및 활성화 지원) 노조 미조직 사업장 및 영세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협의 기구인 노사협의 채널설치 및 활성화 지원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노사발전재단의 정보화 통합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산장비에 대한 예방점검 및 신속한 장애 조치를 통하여 기능을 개선하고 성능 유지 추진
-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일터의 다양한 현안 문제를 대화 기반으로 자율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 내, 업종·지역 등 초기업 단위 사회적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노사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① 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2.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3. 노사관계 진단·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노사 협력에 기반한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5.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6. 노사 협력적 근로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
7.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보조하는 사업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2006년 노사정 합의(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 한국경총)에 의해 노사공동의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
- (노사상생협력교육) 2010년 「노사파트너십 확산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노사관계교육사업」으로 명칭 변경 후 2014년 「노사상생협력교육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어 현재까지 사업 추진
- (글로벌노사관계지원) 한국국제노동재단 설립에 따라 199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 재단 통합 이후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2025년 ‘글로벌노사관계지원’ 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노사협의회 구축 및 활성화 지원) 2025년 노사협의회 구축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신설하여 운영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2025년 기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위해 신설하여 운영
-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2026년 초기업 단위 상생파트너십 종합 지원을 통한 사회적 대화 기반 구축을 위해 신설하여 운영(예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557	23,141	20,144	20,559	25,257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노사발전재단
- 사업 수혜자 : 근로자, 노사단체, 사용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노사발전재단지원	보조	노사발전재단	25,257	100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노사발전재단 지원 : (2025 예산) 20,559백만원 → (2026 예산) 25,257백만원, 4,698백만원 증액

- 노사상생협력교육: (2025 예산) 91 → (2026 예산) 91백만원, 전년동
 - (요구) 고용·노동현안 및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노사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지원하는 중립적 노사관계 교육을 위한 전년도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91백만원(상생협력프로그램 32백만원(300명×0.1백만원) + 갈등해결프로그램 45백만원(300명×0.15백만원) + 교육프로그램 개선 등 14백만원)
- 글로벌노사관계지원: (2025 예산) 400 → (2026 예산) 4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해외진출 우리기업이 진출국의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도록 노동법 및 제도, 현지 고용이슈 관련 노무관리 자료 제작·배포를 위한 전년도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400백만원(노무관리 자료 발간 300백만원(8국×33백만원+1회×36백만원) + 한·일 노동협력 100백만원(4회×25백만원))
- 노사협의회 구축 및 활성화 지원: (2025 예산) 100 → (2026 예산) 1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중소기업 근로자 고충 처리를 위한 노사협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년도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100백만원(자문 및 코칭 30개소×3백만원 + 10회×1백만원)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2025 예산) 220 → (2026 예산) 22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안정적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위한 전년도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220백만원(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1건×220백만원)
- 일반관리비: (2025 예산) 19,748 → (2026 예산) 21,546백만원, +9.1%
 - (요구) 금년도 분부 사무실 임차건물 매각으로 인한 사무실 이전이 확실시됨에 따라 기관 정상 운영을 위한 사무실 이전비용 975백만원 및 정원 증원(직원 처우개선 포함) 인건비 요구
 - (산출) 인건비 16,370백만원(+679백만원) + 경상경비 5,176백만원(+1,119백만원)
-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2026 예산) 2,900백만원, 신설
 - (요구) 원·하청, 지역, 업종 단위의 노사협력과 노동격차 해소를 위하여 산업·지역·직종 단위에서 사회적 대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코칭, 프로그램 등 종합지원
 - (산출) 2,900백만원(코칭 100개소×3백만원 + 프로그램 지원 100개소×26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559	○ 민간경상보조(320-01) : 20,559백만원 ① 노사상생협력교육 91백만원 · 노사상생협력 프로그램: 300명×0.1백만원=32백만원 · 노사갈등해결 프로그램: 300명×0.15백만원=45백만원 · 교육 프로그램 개선: 4건×1.25백만원=5백만원 · 교육 효과성 평가 및 연구용역: 1건×5백만원=5백만원 · 홈페이지 유지 및 보수: 1건×4백만원=4백만원	25,257	○ 민간경상보조(320-01) : 25,257백만원 ① 노사상생협력교육 91백만원 · 노사상생협력 프로그램: 300명×0.1백만원=32백만원 · 노사갈등해결 프로그램: 300명×0.15백만원=45백만원 · 교육 프로그램 개선: 4건×1.25백만원=5백만원 · 교육 효과성 평가 및 연구용역: 1건×5백만원=5백만원 · 홈페이지 유지 및 보수: 1건×4백만원=4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② 글로벌 노사관계 지원(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 400백만원 • 노무관리 자료 발간: 8개국×33백만원+1회×36백만원=300백만원 • 한일 노동협력: 100백만원 ③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노사협의회 구축 및 활성화 지원 100백만원 • 자문 및 코칭: 30개소×300만원+10회×1백만원=100백만원 ④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220백만원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220백만원 ⑤ 일반관리비 19,748백만원 • 인건비 15,691백만원(218명×56.2백만원+73명×47.2백만원) • 경상운영비 4,057백만원		② 글로벌 노사관계 지원(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 400백만원 • 노무관리 자료 발간: 8개국×33백만원+1회×36백만원=300백만원 • 한일 노동협력: 100백만원 ③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노사협의회 구축 및 활성화 지원 100백만원 • 자문 및 코칭: 30개소×300만원+10회×1백만원=100백만원 ④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220백만원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220백만원 ⑤ 일반관리비 21,546백만원 • 인건비 16,370백만원(+679백만원) • 경상운영비 5,176백만원(+975백만원) ⑥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2,900백만원 • 코칭 100개소×3백만원=300백만원 • 프로그램 지원 100개소×26백만원=2,6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일터혁신 실태조사(점)	목표	-	-	55.5	55.6	55.7	'25년 목표(55.6) 대비 0.1점 상향 설정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항목을 점수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외부 전문 연구 기관
	실적	-	-	55.9	-	-			
	달성도	-	-	100.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노사상생협력교육(1,492명) • 노사파트너십 지원(109개소) • 외투기업(세미나 2회, 자료발간 1종), 해투기업(포럼 2회, 세미나 2회, 현장지원파견 3회, 자료발간 10종) • 일생활균형확산지원사업 교육(606명) •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사업(자율진단 352개소, 개선지원 298개소, 개선상담 626회, 교육 9,305명)
2023	• 노사상생협력교육(1,496명) • 노사파트너십 지원(105개소) • 외투기업(세미나 및 간담회 3회, 고용노동 뉴스레터 발간 4회, 노사관계 실태조사 1회), 해투기업(세미나 3회, 현장지원반 파견 2국, 자료발간 10종) • 일생활균형확산지원사업 교육(515명) •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사업(자율진단 356개소, 개선지원 255개소, 개선상담 639회, 교육 13,585명)
2024	• 노사상생협력교육(652명) • 해투기업 지원자료 발간(7종), 전문가 자문단 운영(4회) •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사업(자율진단 353개소, 개선지원 276개소, 개선상담 627회, 교육 13,628명)
2025	• 노사상생협력교육(881명) • 해투기업 지원자료 발간(10종), 전문가 자문단 운영(3회) • 노사협의회 구축 및 활성화 자문 및 코칭(30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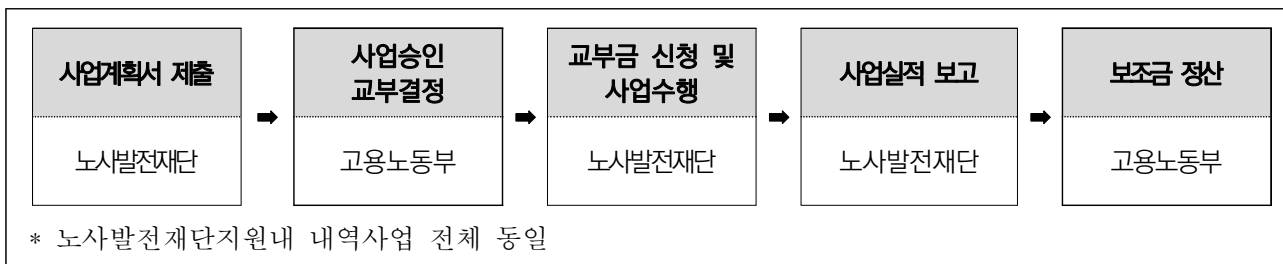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노사상생협력교육사업) 신규사업 연계를 통한 교육 수요 반영 및 롤플레이닝 등 교육 확대를 통한 통해 노사 자율적 문제 해결 역량 강화 및 노사상생문화 구축 기대
- (글로벌노사관계지원) 해외진출기업이 진출국의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 및 안정적 노사관계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국제협력사업 신규 발굴을 통해 해외진출기업 지원 확대
- (노사협의회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지원사업장 증가를 통한 노사협의회 활성화 사업장 확대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안정적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추진
-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사업 운영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노사 자치 확립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기협력적 노사관계 및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모범사례 발굴·확산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2,557	0	22,557	22,557	22,557	100	100	0	0
2023	23,141	0	23,141	23,141	23,141	100	100	0	0
2024	20,144	0	20,144	20,144	20,144	100	100	0	0
2025	20,559	0	20,559	20,559	20,559	100	100	0	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4) 일터혁신 상생컨설팅(2039-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9	300
명칭	노사정책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컨설팅>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
	사업시행주체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특화프로그램>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	40,756	40,756	44,321	42,456	1,700	4.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40,756	40,756	40,398	-	358	42,456
· 컨설팅	-	-	-	-	-	36,631	36,631	36,435	-	196	38,331
· 특화프로그램	-	-	-	-	-	3,025	3,025	2,863	-	162	3,025
· 총괄관리	-	-	-	-	-	500	500	500	-	-	500
· 인프라 구축 및 인식확산	-	-	-	-	-	600	600	600	-	-	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공정한 일터 조성, 직장문화 개선, 공정채용 확산 등 노사참여 기반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고용부 내 유사 컨설팅 통합* 지원

* ①일터혁신 지원, ②NCS기업활용 컨설팅, ③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④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지원단, ⑤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운영, ⑥특화프로그램, ⑦공정채용컨설팅

- (총괄관리/인프라 구축 및 인식확산) 컨설팅 지원사업장 심사·선정, 컨설팅 과정 및 수행기관 관리, 우수사례 발굴·확산, 정보시스템 운영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의 고용, 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6년) 고성과근무체계개선, 내일희망일터혁신, 시간선택제일자리,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으로 통합
- ('17년) 장년고용안정 컨설팅 이관통합, 일가정양립 컨설팅 신설 통합
- ('24년) 일터혁신, NCS기업활용, 공동주택경비원 근무체계개편, 장시간근로현장지원단 방문 컨설팅을 「노동시장 법제도 현장 안착 지원」으로 통합
- ('25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NCS기업활용 컨설팅,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비정규직고용구조개선지원단,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운영, 특화프로그램(구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공정채용컨설팅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으로 신설 통합

- 추진배경

-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3.5.22),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2.28), 비정규직 종합대책('14.12.29), 노사정 대타협('15.9.15), 근로기준법 개정('18.2.28)

- 국정과제

- 주 4.5일제와 실노동시간 단축 및 포괄임금제 금지
- 정년연장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년(7개 사업 신설 통합)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40,756	42,45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위탁,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공모를 통해 선정된 컨설팅 수탁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기업 및 근로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총괄관리	보조	노사발전 재단	500	100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8호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컨설팅: (2025 예산) 36,631백만원 → (2026 예산) 38,331백만원, 1,700백만원 증액

(1) 진단컨설팅 : (2025 예산) 4,400백만원 → (2026 예산) 4,4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사업장 상황 진단 및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도출 컨설팅 지원
 - * 중기부(스마트공장구축 지원사업, 사업전환 지원사업), 산업부(사업재편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요 발굴 협업
- (산출) (민간 1,800개소×2백만원=3,600백만원) + (노사발전재단 800개소×1백만원=800백만원)

(2) 일반컨설팅 : (2025 예산) 29,713백만원 → (2026 예산) 29,713백만원, 전년동

- (요구) 장시간 근로, 임금체계, 고용문화 및 차별개선 등 공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일반 컨설팅 지원
- (산출) (민간 1,714개소×18백만원=30,852백만원) + (노사발전재단 170개소×2.5백만원=425백만원)** - (기업 자부담 1,884개소×16.6백만원×5%=1,564백만원)
 - * 2.1건(일터혁신 컨설팅 기준 평균 지원 건수)×8.5백만원
 - ** 노사발전재단 컨설팅 인건비는 노사발전재단지원(일반회계)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민간 컨설팅 수행 단가와 별도 책정(2.1건×1.2백만원)

(3) 기업 활동비 지원 : (2025 예산) 1,668백만원 → (2026 예산) 1,668백만원, 전년동

- (요구) 재정이 열악한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관련 소요비용(워크숍 개최, 장비 구매 등)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 참여 독려 및 제도 이행 촉진
- (산출) 1,390개소×1.2백만원=1,668백만원
 - * 1,984개소(일반+특화컨설팅 지원사업장 수)×'23년 일터혁신 컨설팅 기준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70%)

(4) 특화컨설팅 : (2025 예산) 850백만원 → (2026 예산) 2,550백만원, 1,700백만원 증액

- (요구) 중점추진 정책 위주의 특화 컨설팅 지원
- (산출) 300개소×8.5백만원=2,550백만원

②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 : (2025 예산) 3,025백만원 → (2026 예산) 3,025백만원, 전년동

- (요구)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지원을 위한 제도설계·보급 지원
- (산출) ▲제도설계·보급 300개소×8.5백만원=2,550백만원,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 950명×0.5백만원=475백만원
 - * 구 사후관리비용 지원 개편하여 운영 중

③ 총괄관리 : (2025 예산) 500백만원 → (2026 예산) 500백만원, 전년동

- 사업운영 경비:
 - (요구) 컨설팅 지원사업장 심사·선정 등 운영경비
 - (산출) 운영경비 500백만원

④ 인프라 구축 및 인식확산 : (2025 예산) 600백만원 → (2026 예산) 600백만원, 전년동

- 정보시스템 운영 : (2025 예산) 400백만원 → (2026 예산) 4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컨설팅 행정지원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 (산출) 1식×400백만원=400백만원
- 인식확산 : (2025 예산) 200백만원 → (2026 예산) 2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컨설팅 실행기반 구축 및 우수사례 확산 등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산출) TV, 라디오, 지면광고 및 리플릿, 우수사례집 발간 등 홍보비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756	○ 민간경상보조(320-01) : 500백만원	42,456	○ 민간경상보조(320-01) : 500백만원
	가. 사업장 선정 심사, 수행기관 관리 등 경상경비 : 500백만원		가. 사업장 선정 심사, 수행기관 관리 등 경상경비 : 500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40,256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41,956백만원
	가. 진단컨설팅(4,400백만원) · (민간 1,800개소×2백만원=3,600백만원)+(노사발전재단 800개소		가. 진단컨설팅(4,400백만원) · (민간 1,800개소×2백만원=3,600백만원)+(노사발전재단 800개소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백만원=800백만원)		×1백만원=800백만원)
나. 일반컨설팅 29,713백만원	· (민간 1,714개소×18백만원=30,852백만원)+(노사발전재단 170개소×2.5백만원=425백만원)-(기업 자부담 1,884개소×16.6백만원×5%=1,564백만원)	나. 일반컨설팅 29,713백만원	· (민간 1,714개소×18백만원=30,852백만원)+(노사발전재단 170개소×2.5백만원=425백만원)-(기업 자부담 1,884개소×16.6백만원×5%=1,564백만원)
다. 기업 활동비 지원 1,668백만원	· 1,390개소×1.2백만원=1,668백만원	다. 기업 활동비 지원 1,668백만원	· 1,390개소×1.2백만원=1,668백만원
라. 특화컨설팅 850백만원	· 100개소×8.5백만원=850백만원	라. 특화컨설팅 2,550백만원	· 300개소×8.5백만원=2,550백만원
마. 특화프로그램 3,025백만원	· 제도설계·보급 280개소×8.5백만원=2,380백만원 · 사후관리 비용 지원 950명×0.5백만원=475백만원 · 총괄운영 170백만원	마. 특화프로그램 3,025백만원	· 제도설계·보급 300개소×8.5백만원=2,550백만원 ·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 950명×0.5백만원=475백만원
바. 인프라 구축 및 인식확산 600백만원	· 정보시스템운영 400백만원 · 홍보비 200백만원	바. 인프라 구축 및 인식확산 600백만원	· 정보시스템운영 400백만원 · 홍보비 2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일터혁신 실태조사(점)	목표	-	-	55.5	55.6	55.7	'25년 목표(55.6) 대비 0.1점 상향 설정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항목을 점수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외부 전문 연구 기관
	실적	-	-	55.9	54.5	-			
	달성도	-	-	100.7	98.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5	<컨설팅 지원> - 자문형 358개소, 전문형 1,108개소, 심화·특화형 컨설팅 1,564개소 컨설팅 지원
------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시간근로 개선, 주 4.5일제 도입 및 포괄임금제 폐지 지원, 임금격차 해소, 차별 개선, 고용문화 개선, 중장년 재취업 활성화 등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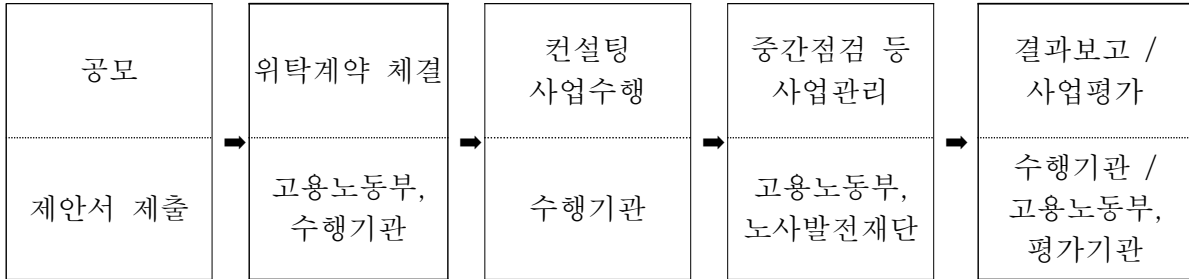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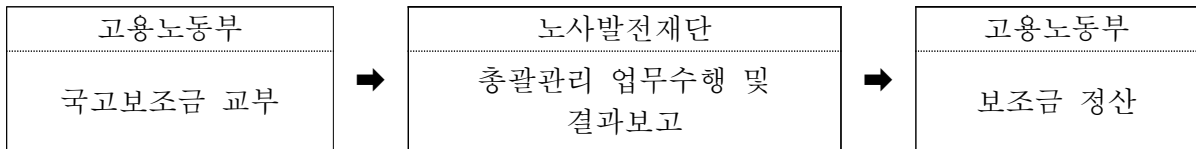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1) 컨설팅/특화프로그램



※ 컨설팅 진행절차 : 사업장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컨설팅 → 종료 및 보고 → 사후관리

2) 총괄관리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2023	-	-	-	-	-	-	-	-	-
2024	-	-	-	-	-	-	-	-	-
2025	40,756	-	-	40,756	40,398	99.1	99.1	-	35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5) 근로조건개선지원(30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080	08E
명칭			노동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302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근로조건보호	근로조건개선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권리구제 지원팀 운영,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협력과
	사업시행주체	-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사업시행주체	-
최저임금 준수 지도·홍보,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근로조건개선지원	11,779	10,402	10,402	10,907	10,907	505	4.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896	11,926	11,779	9	138	10,402	10,411	10,183	-	227	10,907
·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7,063	7,063	7,048	-	16	7,256	7,256	7,154	-	102	7,964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1,375	1,362	1,263	-	99	1,375	1,375	1,255	-	119	1,122
· 장시간근로개선 지원	983	983	971	-	12	424	424	419	-	5	454
· 최저임금 준수 지도·홍보	-	12	12	-	-	-	-	-	-	-	-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1,613	1,682	1,671	-	11	933	933	933	-	1	933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862	824	814	9	1	414	423	423	-	-	4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장 감독 및 자율개선, 안내·교육·지원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하고 노동시장 약자 보호 및 근로권익 향상을 지원
-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현장 경험이 많은 노동권익지원관을 통해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에 대한 신속한 상담 및 청산지원 서비스 제공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소규모 사업장이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개선하도록 지원
-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OECD 평균보다 151시간 높은 우리나라의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청소년·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으로 청소년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교육·홍보를 통해 노동관계법령 인지도 제고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판단전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업무처리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27조의2(권리구제 지원팀 운영) 취약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불 청산 등 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관서에 권리구제 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권리구제 지원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부에서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

-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25조(근로조건 자율개선) ① 이 훈령에서 ‘근로조건 자율개선’이란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근로기준정책관 또는 지방관서장은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실시하도록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율점검을 거부하거나, 미개선 사업장 등에 대하여 사업장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장시간근로개선 지원)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추진경위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 임금체불, 근로자성, 비정규직, 파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노동사건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노동관계법 전문인력 필요성 증대
- '04~'11년까지 임금체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퇴직공무원·기업체 직원 등으로 체불근로자 상담·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체불제로서비스팀' 운영
- '체불제로서비스팀'을 변호사·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노동분쟁해결지원팀'으로 개편('12년) → '권리구제지원팀'으로 확대·개편('14년)
- '16.1월 '권리구제지원팀'을 전체 관서로 확대(기존 40개 → 현재 48개 관서 운영)
- '21~'22년 업무절차 개선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운영 효율화, 교육제도 개편 및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 '08.4월 사업장의 근로조건 보호방식을 기존 근로감독관의 현장방문 감독 방식과 함께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식도 병행할 수 있도록 변경

* 근로조건자율개선 세부시행지침 시달('08.5.15), '09년부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시행

<연도별 근로조건 자율개선 실시 사업장 수>

연도	'18	'19	'20	'21	'22	'23	'24	'25
실시(개소)	5,940	7,558	7,951	8,468	8,487	8,985	7,691	7,297

- '15년부터 근로조건 자율개선 전산화 등 사업체계 효율화 추진
- '17년부터 '업종별 자율준수 지원사업' 진행
- '23년부터 '업종별 자율준수 지원사업'을 '직장 내 괴롭힘' 등 취약분야(업종포함)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노동환경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지원하는 '취약분야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개편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 노사정합의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조에 「장시간근로개선분과위원회」 등 운영·논의

- 실태조사, 기업사례 파악, 개선방안 추진('09.7~) 등 결정
- '10.6.8,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에 대해 노사정합의(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 장시간 근로 관행의 해소와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10.6.8, 노사정위원회) → '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 1,800시간대 단축
- '10.10.14, 근로시간줄이기 대책 수립 대통령 지시(고용전략회의)
- '15.1월~4월 노사정위원회 노사정 구조개선 특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이견 조율
-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 * '16년 495개 → '17년 495개 → '18년 604개 → '19년 303개 → '20년 157개 → '21년 498개 → '22년 798개
- '18.2.28 근로시간 단축법안(근로기준법) 국회 통과, '18.3.20 공포
- * '18.7월부터 단계적 주 52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적용,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26 → 5개)
- '19.7,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 기업 주52시간제 적용
- '19년 하반기부터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전국 48개 관서) 설치·운영
- '20.1,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적용, 300인 이상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 '21.1, 30~299인 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 '21.7,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적용, 공휴일법 제정
- '22.1, 5~29인 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 '22.5, 국정과제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중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추진 등 포함
- '23.3,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
- '23.11,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 '24.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발족, 근로시간 제도 개선 전반에 관한 사회적 대화 진행
- '25.9, 국정과제 95번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중 실노동시간 단축 등 포함
- '25.12,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공동선언 및 대국민 보고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 '03.2월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수립(청소년보호위원회, 국무회의보고)
- '06.3월 사회 취약계층 생계침해 부조리 근절 대책
- * 청소년아르바이트 관련 다각적인 교육·안내 및 지도·점검 추진 포함

- '08.6월 연소근로자 보호대책
- '12.11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 '14.5월「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수립·발표
 - *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 교육 확대 및 찾아가는 교육 실시 포함
- '15.9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개소
 - *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피해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16.2월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시행
- '18년부터는 권역별 거점센터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로 통합 운영
- '23년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지원 대상을 청년층(~34세)으로 확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18.7.18.)」 수립·시행
- 또한, 근로기준법을 개정('19.1.15. 공포, '19.7.16. 시행)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발생 시 조치사항,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 포함 등 제도 법제화 및 시행
- 근절대책 및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안내, 상담, 사업장 지도·감독 등 실시
- '21.10월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21.4.13. 공포)하여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618	16,675	11,896	10,402	10,90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노동관계법 위반 피해 우려 취약근로자 및 노동시장 약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 (2025 예산) 7,256백만원 → (2026 예산) 7,964백만원, 708백만원 증액

- (요구)

(권리구제지원팀 업무 지속 증가) 근로자의 권리의식 향상, 노동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상담수요 및 진정 증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전문 상담 추가 수행('24년~) 등으로 권리구제지원팀 업무량 과중

- 권리구제지원팀에서 심층상담을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의 보수 등 처우가 민간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채용 및 장기근속이 어렵고, 이로 인해 노동권익지원관의 업무부담도 지속 증가

→ 신속한 임금체불 청산 해결을 지원하고, 현장 밀착형의 체감도 높은 노동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권리구제지원팀 내 변호사, 노무사, 노동권익지원관의 처우개선 필요

<권리구제지원팀 주요 업무>

구분	주요 업무
노동변호사	노동분쟁 관련 민형사 법률 쟁점 법리 검토 및 자문, 심층 상담, 법률 관련 교육 등
공인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근로자성 및 해고, 집단 노사관계 분야 심층 상담 및 쟁점 검토, 노동관계법 교육 등
노동권익지원관	임금체불 사건 청산지원 업무 전담, 전화·방문 민원인 초기·심층상담 수행

- (산출) 7,964백만원(+708백만원)

■ 상용임금 6,486백만원(+579백만원)

- * 기본급 5,598백만원
- * 급식비 311백만원
- * 명절상여금 578백만원

■ 복지포인트 93백만원(전년동)

■ 고용부담금 1,284백만원(+129백만원)

- * 4대보험료 744백만원, 퇴직적립금 540백만원

■ 권리구제 교육자료 제작·배포 등 76백만원(전년동)

■ 권리구제 지원 전문가 회의 등 20백만원(전년동)

- * 권리구제지원 전문가 회의·워크숍 사업추진비 10백만원(전년동),
권리구제지원 여비 10백만원(전년동)

■ 실적 우수 포상금 5백만원(전년동)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256	○ 상용임금(110-03) : 5,907백만원 가. 변호사, 노무사, 노동권익지원관 인건비: 5,907백만원 · 변호사, 노무사, 노동권익지원관 급여 5,393백만원 · 급식비 311백만원 · 명절상여금 203백만원	7,964	○ 상용임금(110-03) : 6,486백만원 가. 변호사, 노무사, 노동권익지원관 인건비: 6,486백만원 · 변호사, 노무사, 노동권익지원관 기본급 5,598백만원 · 급식비 311백만원 · 명절상여금 578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일반수용비(210-01) : 76백만원 가. 권리구제 교육자료 제작·배포 등: 76백만원 · 체불정산 관련 교육자료 등 제작 50백만원 · 수범사례집 발간 등 23백만원 · 위원수당 3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92백만원 가. 복지포인트 92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0백만원 가. 권리구제 지원 여비 10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10백만원 가. 권리구제 지원 전문가 회의 등 10백만원 ○ 포상금(310-03) : 5백만원 가. 권리구제지원팀 운영실적 우수기관 포상 5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3) 1,155만원 가. 사회보험료 663백만원 나. 퇴직충당금 492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76백만원 가. 권리구제 교육자료 제작·배포 등: 76백만원 · 체불정산 관련 교육자료 등 제작 50백만원 · 수범사례집 발간 등 23백만원 · 위원수당 3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93백만원 가. 복지포인트 93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0백만원 가. 권리구제 지원 여비 10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10백만원 가. 권리구제 지원 전문가 회의 등 10백만원 ○ 포상금(310-03) : 5백만원 가. 권리구제지원팀 운영실적 우수기관 포상 5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3) 1,284만원 가. 사회보험료 744백만원 나. 퇴직충당금 540백만원

②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

: (2025 예산) 1,375백만원 → (2026 예산) 1,122백만원, 253백만원 감액

- (요구)

(근로개선자율점검) 국정과제인 임금체불 대폭 감축, 노동존중 사회 실현 등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달성을 위해서는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할 필요

* 실행전략 ⑥ 공정 임금 실현과 일터 기본권 보장

- 2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 사업장 스스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인 사전지도와 현장 지원 필요. 다만, 근로감독관 노무관리지도 강화 등 감독 확대와 제도 개선에 따른 사업 효율화를 고려하여 요구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신고사건이 집중되는 영세 사업장*이 스스로 법 위반을 개선토록 하여, 근로감독 시각지대 해소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을 수행**

* 20인 미만 사업장 사건이 전체 노동관계법 신고사건의 78.3% 차지('24년)

** '25년 1,619개 사업장에 2,127건 법 위반 적발 → 2,050건(96.4%) 법 위반 자율개선 달성

- '24년 임금체불액이 2조 448억원으로, 2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임금체불 피해가 집중되고 있고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발생률이 높은 점 등을 감안 시, 사업의 지속 운영을 통한 기업의 부담완화 및 노동자 권익 보호 지원 필요

- (산출) 1,122백만원(253백만원 감액)

■ 근로개선 자율점검 및 개선이행 지원 1,083백만원(249백만원 감액)

* 근로개선 자율점검(기초노동질서) 993백만원(△249백만원)

* 근로개선 자율점검(취약분야 자율개선 지원) 90백만원(전년동)

■ 근로조건자율개선 사업 운영 지원 39백만원(4백만원 감액)

- * 자율개선 점검표 제작 및 배포 16백만원(△4백만원)
- * 자율개선 진행상황 확인·점검 여비 6백만원(전년동)
- * 수탁사업자 및 사업주 간담회 17백만원(전년동)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75	○ 일반수용비(210-01) : 20백만원 가. 자율개선 점검표 제작·배포 2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1,332백만원 가. 근로개선 자율점검(기초노동질서) 1,242백만원 나. 근로개선 자율점검(취약분야 지원) 90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6백만원 가. 자율개선 진행상황 확인·점검 여비 6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17백만원 가. 수탁사업자 교육 및 사업주 간담회 17백만원	1,122	○ 일반수용비(210-01) : 16백만원 가. 자율개선 점검표 제작·배포 16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1,083백만원 가. 근로개선 자율점검(기초노동질서) 993백만원 나. 근로개선 자율점검(취약분야 지원) 90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6백만원 가. 자율개선 진행상황 확인·점검 여비 6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17백만원 가. 수탁사업자 교육 및 사업주 간담회 17백만원

③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 (2025 예산) 424백만원 → (2026 예산) 454백만원, 30백만원 증액

- (요구) 공약 및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정책연구 및 홍보 필요

- (산출) 454백만원, +30백만원

- 노동시간 단축 등 실태조사 100백만원(전년동)
- 노동시간 제도 관련 정책연구 30백만원(+30백만원)
- 장시간근로 개선 및 근로시간 제도 개편 홍보 309백만원(전년동)
- 장시간근로 지도감독 및 관계자 회의 15백만원(전년동)

* 관계부처 회의 및 장시간 근로감독 여비 13백만원(전년동)

*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전문가 등 관계자 회의 2백만원(전년동)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24	○ 일반수용비(210-01) : 309백만원 가. 장시간근로 개선 및 근로시간 제도 개편 홍보 309백만원 · 안내 리플릿 제작 및 배부 20백만원 · 근로시간 관련 책자·설명자료 제작 54백만원 · 지하철 및 KTX역사 안내 송출 50백만원 · 버스외벽 광고 50백만원 · 라디오, TV 광고 85백만원 ·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 5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100백만원 가. 노동시간 단축 실태조사 등 100백만원 · 근로시간 관련 실태조사 등 100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3백만원 가. 관계부처 회의 및 장시간 근로감독 13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2백만원 가.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관련 전문가 등 관계자 회의 2백만원	454	○ 일반수용비(210-01) : 309백만원 가. 장시간근로 개선 및 근로시간 제도 개편 홍보 309백만원 · 안내 리플릿 제작 및 배부 20백만원 · 근로시간 관련 책자·설명자료 제작 54백만원 · 지하철 및 KTX역사 안내 송출 50백만원 · 버스외벽 광고 50백만원 · 라디오, TV 광고 85백만원 ·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 5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100백만원 가. 노동시간 단축 실태조사 등 100백만원 · 근로시간 관련 실태조사 등 100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30백만원 가. 노동시간 제도 관련 정책연구 등 30백만원 · 노동시간 제도 관련 정책연구 등 30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3백만원 가. 관계부처 회의 및 장시간 근로감독 13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사업추진비(240-01) : 2백만원 가.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관련 전문가 등 관계자 회의 2백만원

④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 (2025 예산) 933백만원 → (2026 예산) 933백만원, 전년동

- (요구)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사업)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권익 향상을 위한 보호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필요
- (청소년 근로자 보호 현장활동 지원)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장 지도 감독 등 현장 활동 지원 필요
- (청소년 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청소년 근로자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필요

- (산출) 933백만원(전년동)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280백만원
 - * 정책광고 제작 25백만원
정책광고 송출 150백만원
청소년 근로자 근로권익 보호교육 100백만원
청소년 근로자 보호 전문가 회의수당 5백만원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사업 600백만원
 - * 온라인 상담 및 민원 해결 400백만원
권리구제(무료진정대리) 지원 200백만원
- 청소년 근로자 보호 현장활동 지원 23백만원
 - * 청소년 근로자 취약업종 사업장 지도감독 여비 17백만원
유관기관 및 사업주 간담회 등 6백만원
- 청소년 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30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33	○ 일반수용비(210-01) : 255백만원 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255백만원 · 정책광고 송출 150백만원 · 청소년 근로자 근로권익 보호교육 100백만원 · 청소년 근로자 보호 전문가 회의수당 5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625백만원 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600백만원 · 온라인 상담 및 민원해결 400백만원 · 권리구제(무료 진정대리) 지원 200백만원 나. 정책광고 제작 25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7백만원 가. 청소년 근로자 취약업종 사업장 지도감독 여비 17백만원	933	○ 일반수용비(210-01) : 255백만원 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255백만원 · 정책광고 송출 150백만원 · 청소년 근로자 근로권익 보호교육 100백만원 · 청소년 근로자 보호 전문가 회의수당 5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625백만원 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600백만원 · 온라인 상담 및 민원해결 400백만원 · 권리구제(무료 진정대리) 지원 200백만원 나. 정책광고 제작 25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7백만원 가. 청소년 근로자 취약업종 사업장 지도감독 여비 17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사업추진비(240-01) : 6백만원 가. 청소년 근로자 보호 관련 유관기관 및 사업주 간담회 등 6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6백만원 가. 청소년 근로자 보호 관련 유관기관 및 사업주 간담회 등 6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30백만원 가. 청소년 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30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30백만원 가. 청소년 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30백만원

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지원

: (2025 예산) 414백만원 → (2026 예산) 434백만원, 20백만원 증액

- (요구)

- (직장 내 괴롭힘 인식개선)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 정착 지원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인식개선 필요
-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운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등 관련 업무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관서의 판단 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필요

- (산출) 434백만원(+20백만원)

- 직장 내 괴롭힘 인식개선 270백만원(전년동)
 - * 교육영상 제작 50백만원
교육책자 제작 50백만원
TV 공익광고 제작 30백만원
TV 공익광고 송출 120백만원
온라인 홍보 20백만원
-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운영비 등 144백만원(전년동)
 - *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운영비 144백만원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등 20백만원(순증)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14	○ 일반수용비(210-01) : 334백만원 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교육 및 인식개선 190백만원 · 교육책자 제작 50백만원 · TV공익광고 송출 120백만원 · 온라인 홍보 20백만원 나.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운영비 144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80백만원 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교육 및 인식개선 80백만원 · 교육영상 제작 50백만원 · TV공익광고 제작 30백만원	434	○ 일반수용비(210-01) : 334백만원 가. 직장 내 괴롭힘 인식개선 190백만원 · 교육책자 제작 50백만원 · TV공익광고 송출 120백만원 · 온라인 홍보 20백만원 나.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운영비 144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80백만원 가. 직장 내 괴롭힘 인식개선 80백만원 · 교육영상 제작 50백만원 · TV공익광고 제작 30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20백만원 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등 2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	목표	75.1	78.5	81.5	84.3	84.5	외부환경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3개년 평균실적 대비 상향	(지도해결근로자수+ 대지급금자급근로자수 +체불사업주용 자지원근로자수)/ 체불근로자수*100	내부 전산시스템
	실적	81.9	83.9	85.0	85.7	-			
	달성도	109.1	106.9	104.3	101.7	-			
②신고사건 기한내 처리율(%)	목표	85.8	89.0	-	-	-	-	신고사건 기한 내처리건수/신고 사건총처리건수*100	내부 전산시스템
	실적	89.6	95.5	-	-	-			
	달성도	104.4	107.3	-	-	-			
③용자지원율(%)	목표	93.0	93.4	-	-	-	-	생활안정자금 용자실행액 / 생활안정자금 용자예산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실적	96.3	97.1	-	-	-			
	달성도	103.5	104.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권리구제지원팀(변호사·공인노무사·노동권익지원관)을 구성·운영하여 임금체불 청산 지원('14.2월~) - (업무 효율화) 청산지원 시스템(내부 업무 시스템) 운영('22.1월~) - (우수사례 공유) 간담회 등을 통한 상담 및 청산지원 우수사례 공유 - (성과제도 확대) 실적에 따른 개인·팀별 표창 및 포상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소규모 사업장 8,468개소 점검 지원 * 공인노무사회 등 23개 수행기관 참여 → 자치단체 3개소 참여(① 경기도 111개소, ② 인천시 59개소, ③ 경남도 106개소) - (업종별 자율개선) 지역의 노무관리 취약 업종 실태 파악, 개선방안 마련 * 경상북도 참여(경북경충·동부경영자협회 컨소시엄) → 경북 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종 300개소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매뉴얼 제작·보급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 근로시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전문가(노무사)가 방문하여 1:1로 '상황진단-해법 제시-정부지원'을 패키지로 컨설팅 제공(1,600개소) - 중앙단위·지역단위(48개 지방노동관서) 별로 취약 업종과 산단지역 등을 중심으로 설명회·간담회 집중 추진(중앙 34회, 지방 394회) -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을 위한 컨설팅 실시(200개소)
------	---

	- 장시간 근로에 취약한 돌봄 업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감독 실시(800여개소) -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성과 및 휴일·휴가 활성화 등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자료*, 카드뉴스(8회)·유튜브(1회) 등 제작·배포 *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홍보책자(10천부), 휴일휴가 활성화 리플렛(25만부), 특별연장근로 업무지침(3천부) 제작 - 근로시간 운영현황 조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시간 실태조사 실시 - 근로시간 제도 관련 정책연구* 실시 * 「근로환경 변화 등에 따른 근로시간 제도의 운영방안」,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성과 및 평가」 (최저임금 준수 지도·안내 및 서면근로계약 확산·지원) - '23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7개소), 사업장 현장방문(3개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진행 -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무관리지도 실시 - 최저임금 홍보 및 현장안착을 위해 생활매체(TV, 라디오, 버스·지하철·KTX·SRT, 아파트 등), 전광판 및 SNS 등을 통한 정책캠페인 전개 - 임금명세서 등과 함께 '기초노동질서 확립' 측면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 당위성 및 취지를 홍보(TV, 라디오, 지하철, KTX)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 공인노무사 등 민간 법률 전문가가 1:1 심층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지원 * ('22년) ▲상담 19,028건, ▲무료권리구제 610건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 특화된 노동환경 개선 교육·홍보 실시 * ('22년) ▲찾아가는 교육 771건, ▲홍보(카드뉴스 등 웹 콘텐츠 제작, 서포터즈 활동) - 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심으로 기초 노동질서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 실시 * ('22년) 6,333개소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권역별 개편 및 전국 10개소 운영 * ('22년) 15,173건 상담 - 실태조사 등을 통한 인식개선 활동 실시 및 사업장 교육 실시(~12월), 직장 내 괴롭힘 전문 강사 양성·보수 교육 * ('22년) 강사 양성 150명, 사업장 459개소 교육 지원 - 상호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 및 교육 영상 제작 및 송출 * (영상홍보) KBS, 유튜브 등 정책 광고 영상 송출 및 업로드 - 상호존중 문화 확산 포스터 및 온라인 배너 제작 및 홍보 * (온라인홍보) 네이버, 카카오, 블라인드 등 매체에 포스터 및 배너 홍보 및 홍보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지원 사업 안내 리플렛 사업장 30,000개소 배포 - 각 지방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로자의 권리구제 도모('22년 63회)
2023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권리구제지원팀(변호사·공인노무사·노동권익지원관)을 구성·

	운영하여 임금채불 청산 지원 지속('14.2월~) - (업무효율화 및 서비스 강화) 스마트노사누리 개편을 통해 청산지원 시스템(내부 업무 시스템) 개선, 노동포털오픈 등을 통해 노동행정 서비스 질 제고('23.3월~) - (역량 강화) 기본 직무교육 과정 외 심화 직무교육 과정의 신설·운영을 통해 노동권익지원관의 노동법 전문성 및 민원 응대 역량 강화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20인 미만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공인노무사가 방문하여 18개 노동관계법령 자율점검 및 개선을 지원('23년 8,985개소) * 병무청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 협업 강화로 취약 사업장 선제적 발굴, 괴롭힘 취약 분야 집중지원 등 사업 효과성 제고('23.5.23. 병무청-수행기관 기초노동질서 점검 업무협약 체결) -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교육) 영세 사업주, 신설기업 사업주가 노동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초노동법 교육 지원('23년 10,036개소) * 강원도, 충청남도 등 지자체의 사업참여 및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23.4.26. 한국공인노무사회-병무청 사업주 노동법교육 업무협약 체결)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 근로시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전문가(노무사)가 방문하여 1:1로 '상황진단-해법 제시-정부지원'을 패키지로 컨설팅 제공(기초 1,155개소, 심층 200개소) -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을 위한 컨설팅 실시(200개소) -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근절 관련 홍보 실시 * 버스·지하철 광고(5주), SNS 공유 홍보(3주) - 장시간근로에 따른 건강권 보호 관련 설명자료 등 제작·배포 *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리플렛(100천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자가진단 홍보 리플렛(170천부) 제작 - 근로시간 제도 관련 정책연구 실시 * 「근로시간의 기록·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최저임금 준수 지도·안내 및 서면근로계약 확산·지원) - '2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업장 현장방문(4개소)를 통한 의견수렴 진행 - 최저임금 홍보 및 현장안착을 위해 생활매체(TV, 라디오, 버스·지하철·KTX·SRT, 아파트 등), 전광판 및 SNS 등을 통한 정책캠페인 전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 공인노무사 등 민간 법률 전문가가 1:1 심층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지원 * ('23년) ▲상담 37,733건, ▲무료권리구제 1,105건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등 통해 청소년에 특화된 노동환경 개선 교육·홍보 실시 * ('23년) ▲찾아가는 교육 100,245명, ▲홍보(카드뉴스 등 웹 콘텐츠 제작, 서포터즈 활동) - 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심으로 기초 노동질서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전국 10개소(통합번호 1522-9000) 운영 * ('23년) 17,930건 상담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사업장 무료 지원 및 사내 전문 강사 양성 교육 * ('23년) 사업장 교육 지원 564회, 사내 강사 양성 202명
--	--

	- 상호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 영상 및 포스터 송출 * (영상) 유튜브, 등 정책 광고 영상 송출, (포스터) KTX 및 주요 지하철 역사 등 정책 광고 포스터 송출 - 각 지방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로자의 권리구제 도모('23년 113회) - 지방관서 및 근로복지공단·고용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관련 업무 개선을 위한 협업 프로그램 진행('23.6월) * 권역별 개최 및 운영(총 3회, 126명 참여)
2024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권리구제지원팀(변호사·공인노무사·노동권익지원관)을 구성·운영하여 임금체불 청산 지원 지속('14.2월~) * ('24년) ▲(청산지원) 46,660건 약 504억 청산 지원(전체 민원 대비 12.5%), ▲(상담실적) 임금체불 등 140여만건 상담 - (업무효율화 및 서비스 강화) 스마트노사누리 개편을 통해 청산지원 시스템(내부 업무 시스템) 개선, 노동포털오픈 등을 통해 노동행정 서비스 질 제고('23.3월~) - (역량 강화) 기본 직무교육 과정 외 심화 직무교육 과정의 신설·운영을 통해 노동권익지원관의 노동법 전문성 및 민원 응대 역량 강화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20인 미만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공인노무사가 방문하여 10개 노동관계법령 자율점검 및 개선을 지원(7,691개소) - (취약분야 자율개선 지원) 노무관리가 취약한 분야(직장내 괴롭힘, 근로시간)의 조직 문화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근로환경 개선 지원(400개)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 사업장을 위한 설명자료 등 제작·배포 * 근로시간제도 리플렛(68,000부), 안내책자(120,000부) - 근로시간 매뉴얼 제작(3,600부) - 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하철·KTX 등 정책 홍보 광고 실시(4주) - 근로시간 준수 공모전 - 근로시간 운영현황 조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시간 실태조사 실시 - 근로시간 제도 관련 정책연구 실시 * 「장시간근로 개선 관련 해외법제 연구」, 「업종별 근로시간 운영 실태 연구」 등 - 장시간 감독 428개소 실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 공인노무사 등 민간 법률 전문가가 1:1 심층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지원 * ('24년) ▲상담 40,682건, ▲무료권리구제 1,132건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등 통해 청소년에 특화된 노동관계법 교육·홍보 실시 - 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심으로 기초 노동질서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 상호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 영상 및 포스터 송출

	* (영상) 유튜브, 등 정책 광고 영상 송출, (포스터) KTX 및 주요 지하철 역사 등 정책 광고 포스터 송출 - 각 지방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로자의 권리구제 도모 - 지방관서 및 근로복지공단·고용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관련 업무 개선을 위한 협업 프로그램 진행('24.6월)
2025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권리구제지원팀(변호사·공인노무사·노동권익지원관)을 구성·운영하여 임금채불 청산 지원 지속('14.2월~) * ('25년) ▲(청산지원) 35,328건 약 488억 청산 지원(전체 민원 대비 10%), ▲(상담실적) 임금채불 등 116여만건 상담 - (업무효율화 및 서비스 강화) 스마트노사누리 개편을 통해 청산지원 시스템(내부 업무 시스템) 개선, 노동포털오픈 등을 통해 노동행정 서비스 질 제고('23.3월~) - (역량 강화) 기본 직무교육 과정 외 심화 직무교육 과정의 신설·운영을 통해 노동권익지원관의 노동법 전문성 및 민원 응대 역량 강화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20인 미만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공인노무사가 방문하여 10개 노동관계법령 자율점검 및 개선을 지원(7,297개소) - (취약분야 자율개선 지원) 노무관리가 취약한 분야(직장내 괴롭힘, 근로시간,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근로환경 개선 지원(400개)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 (광고 송출) 스크린도어, 오피스빌딩 엘리베이터, 유튜브, (온라인) 유명 일러스트 작가 릴레이 게시, 대국민 참여형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 (오프라인) 휴가 활성화 커피트럭 -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 반복 제조업체·주요 항공사 대상 장시간 기획감독 실시(50개소) -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 실노동시간 실태조사 홍보,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공동선언 및 대국민 보고회, 어른들이 일찍 온 날 그림일기 대회, SNS 이벤트 등 - 근로환경 분석 등 근로시간 실태조사 실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 공인노무사 등 민간 법률 전문가가 1:1 심층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지원 * ('25년) ▲상담 42,270건, ▲무료권리구제 1,236건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등 통해 청소년·청년 고용 사업주에 특화된 노동관계법 온라인 교육·홍보 실시 - 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심으로 기초 노동질서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판단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판단의 객관성·전문성 확보('25년 총 126회) - TV, 지하철, KTX 역사,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실시('25.1월 및 11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이 복잡·다양해짐에 대응하여, 권리구제 지원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취약 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 기대
- 특히, 권리구제지원팀의 전문성 및 청산지원 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사건 청산지원 해결률 상승 및 신고사건 처리 일수의 지속적 단축 기대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 전문가가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점검·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 지원하고 기초노동 질서 확립을 통해 노동 약자 보호 및 노사 분쟁 감소 등 달성에 기여
- 유사 사업을 연계·통합하여 집중·효율적 사업 운영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분포된 소규모 사업장의 효과적 노동권의 보호 추진

○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 OECD 평균보다 151시간 높은 우리나라의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청년 근로자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및 실태조사 실시
- 사업장 지도·감독을 통해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권익 보호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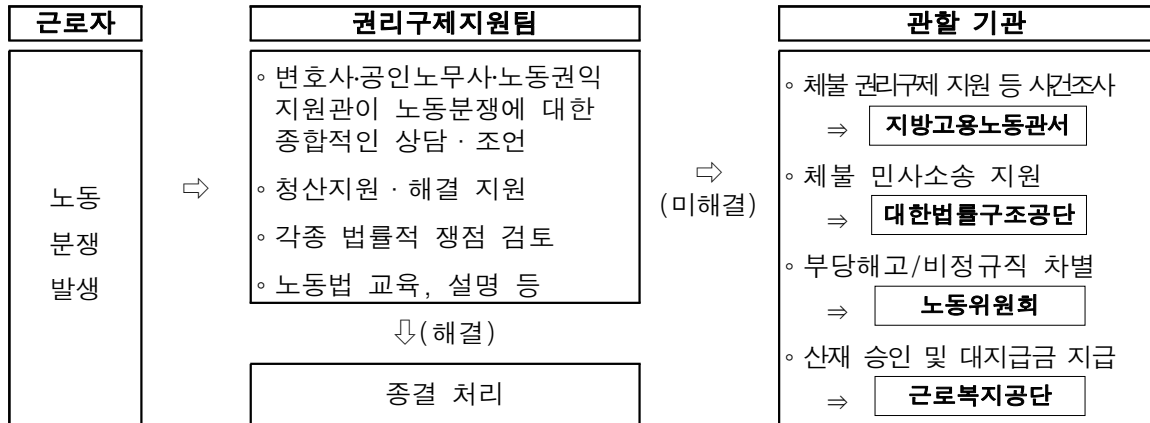
- 직장문화 개선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주력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식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충 등 추진
-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콘텐츠 제작 등 상호존중의 문화 정착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원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고사건 판단의 전문성 및 당사자의 처리결과 수용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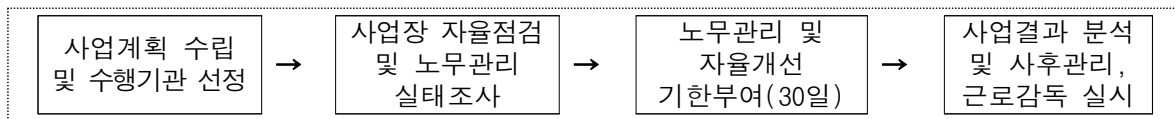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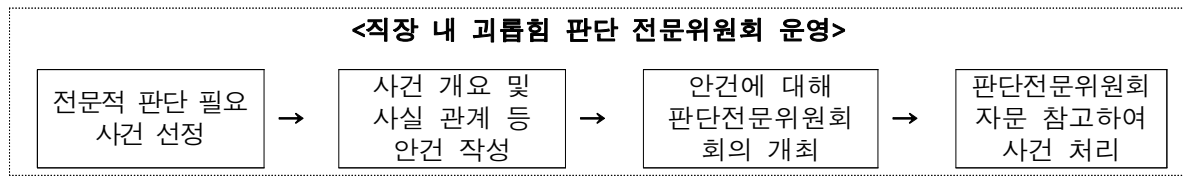
■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지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근로조건 자율개선에 대한 참여 수요가 저조, 개별 사업장 여건 및 현장 노동자들의 상황을 파악하여 사업 참여 수요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환노위, '22결산)
⇒ 근로조건 자율개선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 근로감독관 및 수행기관, 경영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 후 신청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사업홍보 강화 등 개선안 마련 추진
- 근로시간 제도개편 설문조사 및 FGI 연구용역 명목으로의 전용·조정으로 인해 추가적인 전용·조정을 야기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하였으므로 주의할 것 (환노위·예결위, '23년 결산)
⇒ 전용·조정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함
- 권리구제지원팀 업무범위를 명확화하고,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환노위·예결위, '23년도 결산)
⇒ 노동변호사,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 중심으로 조정하고, 업무량 분석을 토대로 지방관서별 정원조정, 사기진작 등 추진
- 권리구제지원 업무에 투입되는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의 결원을 충원할 근본적인 방안을 기획하고, 전반적인 예산 과소편성 문제를 해결할 것(환노위·예결위, '24년도 결산)

⇒ '25년 관서별 업무량 대비 적정 인력 배치, 인건비 인상 등 조치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2023년도('22회계연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 취약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사업구성이 적정하며, 신속한 처리를 통한 권리구제가 성과의 우수성으로 돋보임

○ 2024년도('23회계연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통해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에 기여 인정됨. 청산지원해결률, 신고사건 기간내 처리율, 권리구제율 등이 매년 상승

○ 2025년도('24회계연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기본적인 노동현장의 질서 확립을 통해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 인정됨. 신속한 권리구제, 체불청산 성과 등을 종합 판단하여 성과우수성 평가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818	△200	15,618	15,630	15,421	98.7	98.7	52	157
2023	16,675	0	16,675	16,727	16,559	99.3	99.0	30	138
2024	11,896	0	11,896	11,926	11,779	99.0	98.8	9	138
2025	10,402	0	10,402	10,411	10,183	97.9	97.8	0	22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직장 내 괴롭힘 등 연구 용역계약 미완료로 잔금 52백만원 이월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57백만원 - 재정건전성 확보 및 지출효율화 등을 위한 경상경비 감액(△200백만원) 추경
2023	- 직장 내 괴롭힘 연구 용역계약 미완료로 잔금 30백만원 이월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38백만원
2024	- 직장 내 괴롭힘 등 연구 용역계약 미완료로 잔금 9백만원 이월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38백만원 발생
2025	- 정상 사업추진 및 집행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26)	근로조건 개선지원 (3031-302)	110-03	600	근로조건 개선지원 (3031-302)	320-09	공무직 퇴직연금 납부
세목조정 (2025.12.24)	근로조건 개선지원 (3031-302)	210-14	25	근로조건 개선지원 (3031-302)	210-01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소책자 제작
세목조정 (2025.12.5)	근로조건 개선지원 (3031-302)	210-14	80	근로조건 개선지원 (3031-302)	210-01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홍보
세목조정 (2025.12.2)	근로조건 개선지원 (3031-302)	210-01	35	근로조건 개선지원 (3031-302)	210-07	실노동시간 단축로드맵 추진단 운영 등
전용 (2025.9.17)	근로조건 개선지원 (3031-302)	210-01	10	근로조건 개선지원 (3031-302)	260-02	청소년 등 근로조건 보호 포럼·연구용역
전용 (2025.9.17)	근로조건 개선지원 (3031-302)	210-14	30	근로조건 개선지원 (3031-302)	260-02	청소년 등 근로조건 보호 포럼·연구용역
세목조정 (2025.8.6)	근로조건 개선지원 (3031-302)	210-01	30	근로조건 개선지원 (3031-302)	210-14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포럼운영

사 업 명						
(46) 근로감독역량강화(3032-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2	306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근로감독행정	근로감독역량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7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근로감독 역량강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 활동지원	사업시행주체	근로감독기획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제도혁신	소관부처	실·국·과(팀)
		근로감독정책단
	사업시행주체	근로감독기획과
		고용노동부
	소관부처	실·국·과(팀)
		근로감독정책단
	사업시행주체	근로감독협력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지방위임	소관부처	실·국·과(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협력과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근로감독역량강화	12,783	13,311	13,311	55,113	54,453	41,142	309.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980	12,980	12,783	15	182	13,311	13,326	13,116	-	210	54,453
· 근로감독역량강화	1,063	1,063	1,030	15	18	1,063	1,083	1,077	-	6	1,106
· 근로감독활동지원	11,917	11,917	11,753	-	164	12,248	12,243	12,039	-	204	12,848
· 근로감독제도혁신	-	-	-	-	-	-	-	-	-	-	39,536
· 근로감독지방위임	-	-	-	-	-	-	-	-	-	-	96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근로감독역량강화)** 근로감독 인프라 및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춘 근로기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관계법 수사 및 사업장 감독 등 근로감독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근로감독역량강화)**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지원, 근로감독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변화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근로기준 제도·관행 개선을 통해 근로기준의 현실 적합성 향상
- **(근로감독활동지원)** 체불임금 청산·예방, 노동관계법 위반혐의 수사 및 사업장 근로감독, 임·단협 교섭 등 노사지도, 노동정책의 교육·홍보 등 근로감독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근로감독제도혁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예방감독, ILO수준으로 감독 확대 등 차별과 배제가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에 필요한 여건 마련
- **(근로감독지방위임)** 중앙-지방 협력 모델 구축(국정 93-4)을 위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 추진에 따라, 법적 근거 마련 후 지방 위임 시 지방 근로감독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수행경비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근로감독역량강화)

- 「근로기준법」 제11장(근로감독관 등)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 「국정과제」 (93번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임금체불 근절 등 취약근로자 보호·지원 강화, 근로감독관 대응역량 강화 등 시스템 혁신

(근로감독활동지원)

- 「근로감독관규정(대통령령)」 제6조(활동비 지급) 근로감독관과 근로감독관을 보조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률 등

(근로감독제도혁신)

- 「근로기준법」 제11장(근로감독관 등)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등
- 「국정목표」 (기본이 튼튼한 사회) 및 「국정과제」 (93번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를 실천하기 위해 ILO수준 감독확대, 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 혁신 추진

(근로감독지방위임)

-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 상임위 회부(“25.12.10.)
- 「국정목표」 (기본이 튼튼한 사회) 및 「국정과제」 (93번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를 실천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내 사각지대 없이 감독 실시

② 추진경위

(근로감독역량강화)

- 근로감독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 지속 추진
- '03년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 발족 및 방안 마련
- '05.5월 근로기준선진화연구회 구성·운영

- '08~'09년 고용·임금·근로시간제도 선진화 국정과제 추진
- '15.6~12월 근로감독업무개선 TF를 통한 업무 효율화·역량 강화 과제 마련 및 개선 추진
- '16~'18년 디지털 증거분석팀 신설 및 확대 운영(6개청)
- '19.9월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방안 마련, 시행
- '20년~ 교육과정 개편 및 계획수립·시행

(근로감독활동지원)

- 근로감독 및 수사활동에 대한 지원 지속 추진
- '73년~ 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근로감독관 활동비 지급
- '22년~ 신속한 권리구제 및 체불예방, 사업장 감독 등을 위한 수사 차량 지원

(근로감독제도혁신)

- '26년 신규 내역사업
- 현 정부 국정과제를 위해 감독물량 확대 및 감독관 증원 등 근로감독 혁신 추진

(근로감독지방위임)

- '26년 신규 내역사업
- 현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을 통한 지역 내 사각지대 없는 감독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7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059	11,175	12,980	13,311	54,45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다만, 內근로감독지방위임: 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다만, 內근로감독지방위임: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노동시장 약자, 노·사 당사자 및 근로감독관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근로감독역량강화

: (2025 예산) 1,063백만원 → (2026 예산) 1,106백만원, 43백만원 증액

- (요구)

- **(근로감독관 역량강화)** 민원인의 권리의식 향상,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건 심화 및 노동현장 쟁점의 다변화로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 가중
 - 민원 응대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장 밀착형 사례 연구 중심의 학습모임 등을 구성하여 사건별 쟁점 토론, 민원 사례별 모의훈련 등 대응역량 강화 필요
- **(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 최근 노동사건 수사과정에서 복잡·다양한 자료분석을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 활용이 급증하고 있음
 - 최상의 디지털 증거분석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S/W의 주기적인 업데이트 및 라이선스 갱신(사용권 연장) 등의 소요가 매년 발생되므로, 최신 S/W 유지를 위한 소요예산 반영 필요
- **(근로기준법제 운영 선진화)** 그간 근로감독 정책의 추진 내용들이 당초 예상했던 성과를 도출했는지 살펴보고, 향후 근로감독 행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비용 필요

- (산출) 1,106백만원(+43백만원)

■ (근로감독관 역량강화) 540백만원(전년동)

- * 근로감독관 교육경비(여비) 지원(신규자) 114백만원
- * 근로감독관 교육경비(여비) 지원(재직자) 28백만원
- * 현장 중심 업무역량 제고 멘토링 운영 200백만원
- * 근로기준법 및 법령 홍보·안내사례집 발간 등 85백만원
- * 업무편람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발간 100백만원
- * 노동사범 수사실무 교육 자료 지원 13백만원

■ (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 478백만원(43백만원 증액)

- * 디지털 증거분석 분석용 소프트웨어 등 구매 463백만원
 - ↳ 안티바이러스 시큐리티 등 8품목 34개 증거분석 S/W의 계약갱신 필요
- * 하드디스크 등 소모성 물품구매 15백만원

■ (근로기준법제 운영 선진화) 88백만원(전년동)

- * 근로기준 제도·관행 등 근로기준법제 개선 연구용역비 50백만원
- * 근로기준법 전문가 간담회 임차료 3백만원
- * 근로기준법 전문가 간담회 참석 여비 4백만원
- * 근로기준법 전문가 간담회 업무추진비 3백만원
- *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식비 2백만원
- *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임차료 3백만원
- *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참석 여비 3백만원
- *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업무추진비 2백만원
- * 매뉴얼 등 자료 발송비 8백만원
- * 인사노무 담당자 회의 업무추진비 3백만원

* 노사정 간담회 사업추진비 7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63	○ 일반수용비(210-01) : 213백만원 가. 근로감독 역량강화 198백만원 · 근로기준법 및 법령 홍보·사례집 발간 85백만원 · 업무편람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발간 100백만원 · 노동사범 수사실무 교육자료 지원 13백만원 나. 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 15백만원 · 노동사범 디지털증거분석 소모품 등 구매 15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8백만원 가. 매뉴얼 등 자료 발송비 8백만원 ○ 특근매식비: 2백만원 가. 근로기준법제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등 2백만원 ○ 임차료(210-07) : 6백만원 가. 근로기준법제 전문가 간담회 3백만원 나.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3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200백만원 가. 현장 중심 업무역량 제고 멘토링 운영 200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49백만원 가. 근로감독관 교육 여비 142백만원 나.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참석 3백만원 다. 근로기준법제 전문가 간담회 4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15백만원 가. 근로기준법제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2백만원 나. 근로기준법 전문가 간담회 3백만원 다. 인사노무담당자 회의 3백만원 라. 노사정 간담회 7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50백만원 가. 근로기준제도 개선 연구 5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420백만원 가. 디지털 증거분석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매 420백만원	1,106	○ 일반수용비(210-01) : 213백만원 가. 근로감독 역량강화 198백만원 · 근로기준법 및 법령 홍보·사례집 발간 85백만원 · 업무편람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발간 100백만원 · 노동사범 수사실무 교육자료 지원 13백만원 나. 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 15백만원 · 노동사범 디지털증거분석 소모품 등 구매 15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8백만원 가. 매뉴얼 등 자료 발송비 8백만원 ○ 특근매식비: 2백만원 가. 근로기준법제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등 2백만원 ○ 임차료(210-07) : 6백만원 가. 근로기준법제 전문가 간담회 3백만원 나.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3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200백만원 가. 현장 중심 업무역량 제고 멘토링 운영 200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49백만원 가. 근로감독관 교육 여비 142백만원 나.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참석 3백만원 다. 근로기준법제 전문가 간담회 4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15백만원 가. 근로기준법제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 2백만원 나. 근로기준법 전문가 간담회 3백만원 다. 인사노무담당자 회의 3백만원 라. 노사정 간담회 7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50백만원 가. 근로기준제도 개선 연구 5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463백만원 가. 디지털 증거분석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매 463백만원

② 근로감독활동지원:

: (2025 예산) 12,248백만원 → (2026 예산) 12,848백만원, 600백만원 증액

- (요구)

- (근로감독관 수사활동비) '17년 이후 근로감독관 정원이 65.0% 증원되었고, 취약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해 증원을 또한 지속 제고되고 있는 상황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중대재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강화 등, 충실한 수사 지원을 위해 정원 및 충원율에 맞는 수사활동비 예산 필요
- (현장지도·감독 및 수사 경비) 현 정부 과제목표인 일터 기본권 보장 및 임금체불 감축을 위해 사전 예방형 선제적 근로감독 전환 등 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
-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노동현장에 대한 활동 강화가 필요하고, 영세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및 청년층 노동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등을 위해 적정 예산편성이 필요
- (수사업무 지원 차량) 체포 등 강제수사, 사업장 근로감독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신속한 출장을 통한 업무수행이 필요
- (인프라 개선) 급증하고 있는 임금체불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원활한 노동관계법 상담을 위해 민원인이 편리하게 고객지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 고객지원실 표준안 마련 및 개선 필요
- (산출) 12,848백만원(+600백만원)
 - (근로감독관 수사활동비) 9,216백만원(전년동)
 - (근로개선 업무지원) 3,632백만원(+600백만원)
 - * 현장점검 및 근로감독, 수사 출장 여비 1,853백만원
 - * 노동정책 홍보 및 노사협력 지도(관서업무추진비) 65백만원
 - * 지방관서 운영 공공요금(공공요금및제세) 286백만원
 - * 수사실 설치 등 비용 203백만원
 - ↳ 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 37백만원+공사비 166백만원
 - *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른 매뉴얼 제작 등 수용비 증액 185백만원
 - * 노동사범 수사업무 지원차량 임차 및 유지 440백만원
 - ↳ 임차료 411백만원+유류비 29백만원
 - * 고객지원실 업무환경 개선(공사비) 450백만원
 - * 고객지원실 업무환경 개선(자산취득비) 150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248	○ 일반수용비(210-01) : 185백만원 •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른 매뉴얼 제작 등 수용비 185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86백만원 ○ 임차료(210-07) : 411백만원 • 노동사범 수사업무 지원차량 411백만원 ○ 유류비(210-08) : 29백만원 • 노동사범 수사업무 지원차량 29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853백만원 • 현장지도·감독 및 수사 업무 출장 여비 1,853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65백만원 • 노동정책 홍보 및 노사협력 지도 65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50-03): 9,216백만원 • 근로감독관 활동비 지원 9,216백만원 ○ 공사비(420-03) : 166백만원 • 수사실 설치 등 공사비 166백만원	12,848	○ 일반수용비(210-01) : 185백만원 •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른 매뉴얼 제작 등 수용비 185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86백만원 ○ 임차료(210-07) : 411백만원 • 노동사범 수사업무 지원차량 411백만원 ○ 유류비(210-08) : 29백만원 • 노동사범 수사업무 지원차량 29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1,853백만원 • 현장지도·감독 및 수사 업무 출장 여비 1,853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65백만원 • 노동정책 홍보 및 노사협력 지도 65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50-03): 9,216백만원 • 근로감독관 활동비 지원 9,216백만원 ○ 공사비(420-03) : 616백만원 • 수사실 설치 등 공사비 166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자산취득비(430-01) 37백만원 · 수사실 설치 등 자산 37백만원		· 고객지원실 업무환경 개선 공사비 45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187백만원 · 수사실 설치 등 자산 37백만원 · 고객지원실 업무환경 개선 자산 150백만원

③ 근로감독제도혁신

: 신설, (2026 예산) 39,536백만원(순증)

- (요구) 국정과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6년 근로감독관 증원 및 감독 물량 ILO 수준으로 확대 예정, 이에 수반되는 수사활동비, 현장지도·감독 및 수사 경비, 수사업무 지원 차량, 인프라(청사 임차, 공사, 사무가구 및 전산장비 등)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 요구

- (산출)

■ (근로감독혁신운영) 18,899백만원(순증)

- * 토너 등 소모품 구매 569백만원
- * 근로감독관 근무복 제작 341백만원
- * 노동사범 수사업무 지원차량 임차 729백만원
- * 노동사범 수사업무 지원차량 유류비 97백만원
- *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교육 용역비 7,593백만원
- * 근로감독혁신 현장점검 및 근로감독, 수사 출장여비 2,011백만원
- *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교육여비 1,041백만원
- * 근로감독관 수사활동비 2,900백만원
- * 근로감독관 전산장비 및 사무가구 구매 3,618백만원

■ (근로감독혁신 인프라 구축) 20,637백만원(순증)

- * 신규청사 임차 이사비 544백만원
- * 부서운영 소모품 구매 115백만원
- * 신규 청사 임차 중개 수수료 348백만원
- * 신규 임차 청사 공공요금 1,414백만원
- * 신규 청사 임차료 4,307백만원
- * 신규 임차 청사 관리비 326백만원
- * 신규 임차 청사 경비용역비 104백만원
- * 부서 운영 전산장비 및 사무가구 취득비 1,995백만원
- * 신규 임차 청사 통신공사 등 공사비 6,844백만원
- * 신규 임차청사 임차보증금 4,64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신설 내역사업임	39,536	○ 일반수용비(210-01: 1,576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토너 등 소모품 구매(569백만원) • 신규청사 임차 이사비 544백만원 • 부서운영 소모품 구매 115백만원 • 신규 청사 임차 중개 수수료 348백만원 ○ 공공요금(210-02): 1,414백만원 • 신규 임차 청사 공공요금 1,414백만원 ○ 피복비(210-03): 341백만원 • 신규 근로감독관 근무복 제작 341백만원 ○ 임차료(210-07): 5,036백만원 • 노동사범 수사업무 지원차량 임차 729백만원 • 신규 청사 임차료 4,307백만원 ○ 유류비(210-08): 97백만원 • 노동사범 수사업무 지원차량 유류비 97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326백만원 • 신규 임차 청사 관리비 326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7,593백만원 • 신규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등 교육 용역비 7,593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104백만원 • 신규 임차 청사 경비 용역비 104백만원 ○ 국내여비(220-01): 3,052백만원 • 근로감독혁신 현장점검 및 근로감독, 수사 출장비 2,011백만원 •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교육여비 1,041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50-03): 2,900백만원 • 근로감독관 수사활동비 2,900백만원 ○ 공사비(420-03): 6,844백만원 • 신규 임차 청사 통신공사 등 공사비 6,844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5,613백만원 • 근로감독관 전산장비 및 사무가구 구매 3,618백만원 • 부서 운영 전산장비 및 사무가구 취득비 1,995백만원 ○ 무형자산(440-00): 4,640백만원 • 신규 임차청사 임차보증금 4,640백만원

④ 근로감독지방위임

· 신설, (2026 예산) 963백만원(순증)

- (요구) 중앙-지방 협력 모델 구축(국정 93-4)을 위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위임 추진에 따라, 법적 근거 마련 후 지방 위임 시 지방감독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 * 지방정부 현장지도·감독 업무경비(여비) 326백만원
- *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활동비 지원 191백만원
- * 지방정부 운영 공공요금 50백만원
- * 지방정부 수사업무 차량 지원 7백만원
- * 지방정부 사업장 대상 교육 및 홍보비 280백만원
- *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근무복 제작 107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신설 내역사업임	963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963백만원 가. 지방정부 현장지도·감독 업무경비(여비) 326백만원 나.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활동비 지원 191백만원 다. 지방정부 운영 공공요금 50백만원 라. 지방정부 수사업무 차량 지원 7백만원 마. 지방정부 사업장 대상 교육 및 홍보비 280백만원 바.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근무복 제작 10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근로감독역량강화) - (전문과정 운영) 현장형 전문과정 및 리더 전문과정 도입 운영 * ▲ 현장형(4.8.~7.22.): 감독관 17명, 3.5개월(매주 금요일), 102시간 ▲ 리더 과정(4.22.~7.22.): 부서장 20명, 3개월(매주 금요일), 90시간 ▲ 현장형(9.23~12.9): 부서장+감독관 30명, 3개월(매주 금요일) 94시간 - (신규자 교육) 신규 근로감독관 418명 직무교육 실시(신규자 227명 12주, 업무전환자 191명 4~12주) - (재직자 교육) 재직자 2,004명을 대상으로 기본, 심화, 전문, 현장 과정 등 34개 교육 과정을 경력·단계별로 운영 - 근로기준 법제 개선 연구 및 매뉴얼 제작 등 * 노동관계법 주요 법령집, 노무관리 가이드북, 4대 기초노동질서 리플렛 등 - (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 디지털 증거분석팀(근로기준 분야) 휴대전화 증거수집·분석 및 영상분석 S/W 라이선스 갱신 - (중대재해 수사의 과학화) 디지털 증거 분석팀(산업안전 분야) 담당자 분석용 PC 및 전산 소모품 등 구매 (근로감독활동지원) - 근로감독 수사활동비 및 근로감독 업무 여비 지원, 노동법령 교육, 정책설명회 개최 등 사업 추진
2023	(근로감독역량강화) - (전문과정 운영) 근로감독행정 전문과정(장기전문과정)을 근로감독관+부서장으로 일원화하여 관리자와 실무자 간의 상호 이해 제고 등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주 1일 교육으로 개편 * ('23.上) 감독관+부서장 28명 대상 통합 과정 운영 ('23.4.21.~7.14., 주 1일, 3.5개월)

	- (신규자 교육) 신규 근로감독관 262명 직무교육 실시(업무전환자 196명 교육완료, 신규자 66명), 실무 배치 전 적응훈련 강화 * (신규자) 12주 직무교육+12주 현장 적응훈련, (업무전환자) 4주 직무교육+8주 현장 적응훈련 - (재직자 교육) 재직자 2,283명을 대상으로 경력·단계별로 기본-심화-전문과정의 2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사경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사 핵심역량 7개 과정 신설·운영 - 근로기준 법제 개선 연구 및 매뉴얼 제작 등 * 노동관계법 주요 법령집, 노무관리 가이드북 등 제작 및 배포 - (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근로계약서, 임금 산정 근거 등 노무관리 자료 조작 및 증거인멸에 대비하고, 복잡·다양한 노동법위반 수사지원을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 담당 근로감독관의 직무역량별로 기초, 전문과정 운영 * (기초과정) <1차, 3.6.~3.10.> 12명 수료, <2차, 9.18.~9.22.> 8명 수료 (전문과정) <1차, 6.20.~6.29.> 7명 수료, <2차, 10.24.~11.2.> 5명 수료 (근로감독활동지원) - 노사 법치 주의 확립,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노동시장 약자 보호 현장활동 강화 - 근로감독 수사활동비 및 근로감독 업무 여비 지원, 노동법령 교육, 정책설명회 개최 등 사업 추진
2024	(근로감독역량강화) - (신규자 교육) 신규 근로감독관 255명 직무교육 실시(신규자 31명 및 업무전환자 234명), 실무 배치 전 적응훈련 강화 * (신규자) 12주 직무교육+12주 현장 적응훈련, (업무전환자) 4주 직무교육+8주 현장 적응훈련 - (재직자 교육) 재직자 2,260명을 대상으로 경력·단계별로 기본-심화-전문과정의 34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사경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사 핵심역량 6개 과정 신설·운영 (2,118명 실시) - 근로기준 법제 개선 연구 및 매뉴얼 제작 등 * 노동관계법 주요 법령집, 노무관리 가이드북 등 제작 및 배포 - (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근로계약서, 임금 산정 근거 등 노무관리 자료 조작 및 증거인멸에 대비하고, 복잡·다양한 노동법위반 수사 지원을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 담당 근로감독관의 직무역량별로 기초, 전문과정 운영 (근로감독활동지원) - 노사 법치 주의 확립,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노동시장 약자 보호 현장활동 강화 - 근로감독 수사활동비 및 근로감독 업무 여비 지원, 노동법령 교육, 정책설명회 개최 등 사업 추진
2025	(근로감독역량강화) - (신규자 교육) 신규 근로감독관 263명 직무교육 실시(신규자 10명 및 업무전환자 253명), 실무 배치 전 적응훈련 강화 * (신규자) 12주 직무교육+12주 현장 적응훈련, (업무전환자) 4주 직무교육+8주 현장 적응훈련 - (재직자 교육) 재직자 2,099명을 대상으로 경력·단계별로 기본-심화-전문과정의 27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사경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사 핵심역량 8개 과정 신설·운영 - 근로기준 법제 개선 연구 및 매뉴얼 제작 등 * 노동관계법 주요 법령집, 노무관리 가이드북 등 제작 및 배포 - (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근로계약서, 임금 산정 근거 등 노무관리 자료 조작 및 증거인멸에 대비하고, 복잡·다양한 노동법위반 수사지원을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 담당 근로감독관의 직무역량별로 기초, 전문과정 운영 (근로감독활동지원) - 노사 법치 주의 확립,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노동시장 약자 보호 현장활동 강화 - 근로감독 수사활동비 및 근로감독 업무 여비 지원, 노동법령 교육, 정책설명회 개최 등 사업 추진
--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지원 강화, 업무수행 매뉴얼 개정 배포 등을 통해 **노동법 위반 사건 수사 및 노동행정 집행과 관련된 직무역량과 전문성 강화**
-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활용하여 신속·정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 및 분석**하고 근로자 권익보호를 강화
- 「국정목표」(기본이 튼튼한 사회) 및 「국정과제」(93번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를 실천하기 위해 ILO수준 감독 확대, 근로감독관 증원, 중앙·지방간 노동행정 분야 협력 등 근로감독을 혁신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정 지원함으로써 **노동 존중 사회 도약 및 신속한 권리구제, 노사관계 안정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059	0	11,059	11,059	10,640	96.2	96.2	0	419
2023	11,175	0	11,175	11,175	11,006	98.5	98.5	0	169
2024	12,980	0	12,980	12,980	12,783	98.5	98.5	15	182
2025	13,311	0	13,311	13,326	13,116	98.5	98.4	0	21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근로감독 행정 연구 비용, 사업장 지도·점검 등 출장소요 증가에 따른 여비 등 327백만원 전용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419백만원 발생
2023	- 근로감독관 교육 비용, 사업장 지도·점검 등 출장소요 증가에 따른 여비 등 505백만원 전용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169백만원 발생
2024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182백만원 발생
2025	- 정상 사업추진 및 집행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15)	근로감독 역량강화 (3032-306)	250-03	96	근로감독 역량강화 (3032-306)	220-01	사업장 지도·점검 등 출장소요 증가에 따른 여비 예산 부족
전용 (2025.9.22.)	근로감독 역량강화 (3032-306)	210-01	10	근로감독 역량강화 (3032-306)	260-01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 및 노동자 인식 조사 연구용역 추진
전용 (2025.9.2.)	근로감독 역량강화 (3032-306)	210-01	10	근로감독 역량강화 (3032-306)	260-01	중앙-지방의 근로감독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세목조정 (2025.11.26)	근로감독 역량강화 (3032-306)	210-01	4	근로감독 역량강화 (3032-306)	210-07	근로감독체계 개편 간담회 등을 위한 임차료 부족

사 업 명
(47)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3034-31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4	313
명칭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퇴직급여정착지원제도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소관부처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347	346	346	480	480	134	38.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58	365	347	-	18	346	346	324	11	11	480
· 퇴직급여제도 정착 지원	358	365	347	-	18	346	346	324	11	11	4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퇴직급여제도 정착지원)

○ 사업목적

-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축소되는 국민연금**에 대응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재원 마련을 위해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인 퇴직연금 확산 지원

* 우리나라는 '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7%)에 진입한 이후, '17년 8월 고령사회(14%) 진입, '26년
초고령사회(20%) 진입 예상('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요 국가들은 국가 재정부담으로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 우리나라도 기금소진 연도 연장
('47년→'60년)을 위해 급여수준 축소(소득대체율 60%→40%)

○ 사업내용

- 퇴직연금제도에 대한全社会적인 공감대 형성·인식 확대를 위한 홍보사업, 퇴직
연금제도 수익률 제고를 위한 사전지정운영제도 심의위원회 운영, 근로자의 퇴직
급여 수급권 확보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사업장 지도·점검 등 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제1항(정부의 책무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14(국가의 지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2(사전지정운영제도의 설정)

② 추진경위

- 퇴직금 체불 위험으로 수급권 보장기능이 미흡하고 일시금 수령으로 노후소득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고, 잦은 이직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확산 필요

- '05. 12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시행
- '11. 7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
- '18. 6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 '21.3월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국회통과('22.4.14. 시행)
- '21.12월 : 사전지정운용제도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국회통과('22.7.12. 시행)
- 대통령 공약사항: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대상 확대
- 국정과제(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 전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임금채불 근절을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확대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19	585	358	346	48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퇴직급여제도 정착지원

: (2025 예산) 346백만원 → (2026 예산) 480백만원, 134백만원 증액

- 퇴직연금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미가입 사업장 등 대상 교육 실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및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위해 전년 대비 예산 증액 요구

- ① 퇴직연금 인식개선 및 제도개선 사업: 391백만원(134백만원 증액)

- (요구) 퇴직연금제도 대국민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국제회의 참석, 사전지정제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퇴직연금 교육
- (산출) 매체 광고 40백만원, 홍보물 제작 30백만원, 질의회시집·업무매뉴얼 제작 30백만원, 사전지정운영제도운영 96백만원, 연구용역 50백만원, 퇴직연금TF 및 작업반 임차료 18백만원, 국외여비 10백만원, 사업추진비 17백만원, 퇴직연금 교육사업 100백만원
- ②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지도·점검 89백만원(전년동)
 - (요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신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되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수요 증가 및 과태료 부과 대상 관리를 위하여 기존 퇴직연금 취급실적 시스템 추가 기능 개선 필요
 - (산출) 사업장 지도점검 여비(64백만원): 2만원×2명×1,600개소, 퇴직연금취급실적 전산망 유지·보수(25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퇴직급여 제도 정착지원 346,000	○ 일반수용비(210-01) : 149,525천원	퇴직급여 제도 정착지원 480,000	○ 일반수용비(210-01) : 196,000천원
	1. 공익광고(64,125천원)		1. 인식개선 광고 홍보 및 캠페인(100,000 천원)
	가. 질의회시집, 법령집, 매뉴얼제작 : 50,000원*680분= 34,000천원		가. 온라인 광고 제작 : 10,000,000원*1회=10,000천원
	나.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25,000원*1,200매= 30,000천원		나. 공익광고 제작 : 30,000,000원*1회=30,000천원
	다. .단수조정 +125천원		다. 질의회시집, 법령집, 매뉴얼제작 : 50,000원*600부=30,000천원
	2. 퇴직연금관련 회의운영(85,400천원)		라.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 17,000원*1,760매=29,920천원
	가. 퇴직연금관련 업무회의 : 10,000원*2명*12회= 2,400천원		마. .단수조정 +80천원
	나. 사전지정운영제도 위원회 운영(83,000천원)		2. 사전지정운영제도 운영비(96,000천원)
	1)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 25,000원*12명*12회=36,000천원		가.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 25,000원*12명*12회=36,000천원
	2) 실무위원회 위원수당 : 25,000원*12명*12회=36,000천원		나. 실무위원회 위원수당 : 25,000원*12명*12회=36,000천원
퇴직급여 제도 정착지원 480,000	3) 인쇄비 및 소모품구입 : 50,000원*220권=11,000천원		다. 인쇄비 및 소모품구입 : 50,000원*240권=12,000천원
	○ 임차료(210-07) : 18,000천원		라. 사전지정운영제도 위원회 여비 : 50,000원*12명*20회=12,000천원
	가. 회의장 대여료 등 : 500,000원*36회=18,000천원		○ 임차료(210-07) : 18,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25,000천원		가. 회의장 대여료 등 : 500,000원*36회=18,000천원
	가. 퇴직연금 취급실적 전산망 유지보수 : 2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00,000천원
	○ 국내업무여비(220-01) : 75,971천원		가. 퇴직연금교육사업 : 1,000,000원*100회 = 100,000천원
	가. 사업장 지도·점검 : 20,000원*2명*1,600개소=64,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25,000천원
	나. 사전지정운영제도 위원회 여비 : 50,000원*12명*20회=12,000천원		가. 퇴직연금 취급실적 전산망 유지보수 용역 : 25,000,000원*1회 =25,000천원
	다. 단수조정 : -29천원		○ 국내업무여비(220-01) : 64,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0,254천원		가. 사업장 지도·점검 : 20,000원*2명*1,600개소=64,000천원
퇴직급여 제도 정착지원 480,000	가. OECD 국제회의(사전연금작업반) 참석		○ 국외업무여비(220-02) : 10,000천원
	· 항공료 : 1,860,000원*3명=5,580천원		가. OECD 국제회의(사전연금작업반) 참석
	· 일비 : \$30×3명×6일=745천원		· 항공료 : 2,000,000원*3명=6,000천원
	· 숙박비 : \$145×3명×5일=3,002천원		· 일비 : \$30×6일×3명=745천원
	· 식비 : \$80×3명×6일=1,987천원		· 숙박비 : \$145×5일×3명=3,002천원
	나. 단수조정 : -1,060천원		· 식비 : \$80×6일×3명=1,987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7,250천원		나. 단수조정 : -1,734천원
	가. 정책포럼 등 운영 : 25,000원*12명*12회=3,6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7,000천원
	나. 퇴직연금활성화 회의 : 25,000원*20명*12회=6,000천원		1. 퇴직연금 활성화 회의 : 9,600천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다. 사전지정운용제도 위원회 운영 : 7,650천원 • 심의위원회 운영 : 25,000원*12명*13회=3,900천원 • 실무위원회 운영 : 25,000원*12명*13회=3,900천원 라. 단수조정 -150천원 ○ 연구용역비(260-01) : 50,000천원 가. 퇴직연금정착을 위한 연구용역비 : 50,000,000원*1회= 50,000천원		가. 퇴직연금포럼 운영 : 25,000원*12명*12회=3,600천원 나. 퇴직연금활성화 TF 운영 25,000원*20명*12회=6,000천원 2. 사전지정운용제도 위원회 운영 : 7,400천원 가. 심의위원회 운영 25,000*12명*13회=3,900천원 나. 실무위원회 운영 25,000*12명*13회=3,900천원 다. 단수조정 -400천원 ○ 연구용역비(260-02) : 50,000천원 가.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이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 : 50,000,000원 *1회= 5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개정추진 ▪ 공적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및 사업주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통과('21.3.24.) ▪ 하위법령 정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준비('22.4.14.시행) ▪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디폴트옵션 시행('22.7.12.시행)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100인 이하 중소기업장에 한정하여 퇴직연금 제도소개 및 도입 절차별 이행방법, 관련 세제 등 교육 ▪ 퇴직연금 교육사업 실적(4월~7월): 139회(집체: 29회, 방문: 110회) ▪ 퇴직연금제도 장·단기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퇴직연금연구센터 운영 ▪ 퇴직연금 정책연구회를 중심으로 디폴트옵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 운용·연금화 등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정책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포럼 개최, 성장기국면의 퇴직연금 가입기간 연장, 적립금 확대, 생애 주기별 운용전략 등 제도개선과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수행, 국내 퇴직연금 금융상품 분석·평가·공시제도 운영, 국내·외 주요 이슈와 주요국가의 퇴직연금 법령, 세제, 운용현황, 변화동향 등 심층분석을 제공하는 퇴직연금브리프 발간,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회의 참석,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등 정책 지원업무 수행 ▪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국내외 사례연구('22.8월 ~ 12월)
202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개정추진(~7월) ▪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의무 폐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 ▪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정 ▪ 안정적인 퇴직연금 정책연구를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 ▪ 가입자 서비스 제고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정비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100인 이하 중소기업장에 대상 퇴직연금제도 교육(~3월)

	▶ 단계적 의무화에 따른 가입 절차·관련 세제교육 및 법 개정사항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사전지정운용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의무 설치(30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금의 IRP 이전 의무화 등 제도 변동 사항 교육 ▶ 퇴직연금 교육사업 실적(4월~7월): 61회(집체: 20회, 방문: 41회) ▪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퇴직연금 연금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제도 설계('23. 4.28. ~ 9.27.) ▶ 다층적 연금체계 하 퇴직연금기능강화를 위한 세부제도개선 방안('23.3.8 ~ 11.7) ▪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추진 ▶ 퇴직연금실적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계약 추진(7월~) ▶ 통계정비 방안 마련(7월~)
202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개정(~2월) ▶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의무 폐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 ▶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정비 ▶ 안정적인 퇴직연금 정책연구를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 ▶ 가입자 서비스 제고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정비 ▪ 新제도 안착 지원 및 퇴직연금제도 개선 ▶ 적립금운용위원회 의무 설치(300인 이상 사업장)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금 미충족 사업장 대상 지도·점검 계획 수립 ▪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디폴트옵션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 마련을 위한 연구('24. 6 .28. ~ 10. 30.) ▶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시 중소·영세 사업주 부담 경감 및 조시 도입촉진 방안 연구('24. 6. 25 ~ 11. 24) ▪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추진 ▶ 퇴직연금실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계약(7월~) ▶ 통계정비 방안 마련(7월~)
2025	▪ 제도 안착 지원 및 퇴직연금제도 운영 내실화 노력 ▶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 및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문화' 형성을 위해 카드뉴스, 숏폼콘텐츠 등 활용· SNS 홍보 실시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금 미충족 사업장 대상 자율시정기간 운영 및 적립의무 미이행 사업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 퇴직연금실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계약('25.6월~11월) ▪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디폴트옵션 운용현황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연구('25.6.20.~12.12.)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수탁자책임 확보 등을 위한 방안 연구('25.11.10.~ '26.2.9.) ▪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추진 ▶ 퇴직연금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운영('25.10월~12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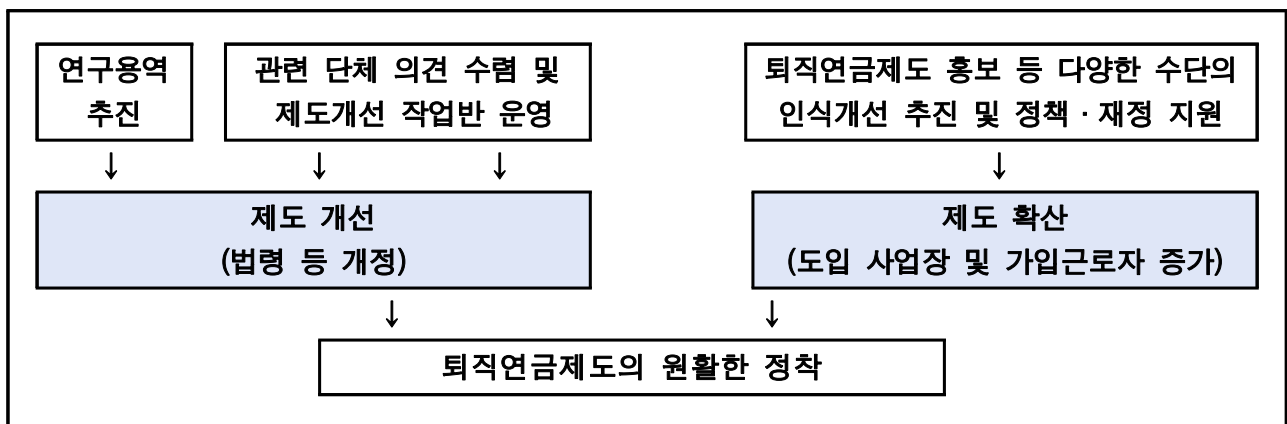
- 퇴직연금제도의 단계적 확대에 대비, 전국민 홍보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 사업주 대상 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안착 및 운영 내실화 유도

-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 대한 적립 의무 이행 독려 및 지도·점검 등으로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적립금운용위원회, 사전지정운영제도 등을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여 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퇴직연금교육의 교육시간이 짧고, 집체교육 이후 방문교육의 신청, 방문교육 실시 이후 실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비율이 낮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 저조(환노위 결산 소위 심사보고, '23년)
 - ⇒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하여 교육 대상을 폭넓게 발굴 및 방문교육 비중 확대 추진
 - * '24년 퇴직연금교육사업 예산 전액 삭감(사업폐지)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19	-	719	719	687	95.5	95.5	-	32
2023	585	-	585	585	570	97.4	97.4	8	8
2024	358	-	358	366	347	96.8	94.8	-	18
2025	346	-	346	346	323.6	93.5	93.5	11.4	1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불용: 32백만원(예산절감 및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1회 실시 및 집행잔액)
2023	불용: 7.5백만원(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이월: 8백만원(연구용역 계약기간 연내 미도래로 잔액 차년도 이월)
2024	불용: 18백만원(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25	불용: 11백만원(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이월: 11.4백만원(연구용역 계약기간 연내 미도래로 잔액 차년도 이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48) 최저임금위원회전문성강화(30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6	301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최저임금제도지원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성 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최저임금 위원회 전문성강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최저임금위원회
	사업시행주체	사무국
		최저임금위원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성 강화	460	581	581	566	566	△15	△2.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76	576	460	0	116	581	581	535	0	46	566
· 최저임금 연구활동 및 기능강화	141	141	107	0	34	170	170	156	0	14	185
· 현장의견 수렴	94	94	53	0	41	94	94	67	0	27	66
· 최저임금 결정 관련 안내자료 제작 등	75	75	70	0	5	77	77	77	0	0	75
· 최저임금 심의·제도 개선 관련 심층연구	266	266	230	0	36	240	240	235	0	5	2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최저임금 관련 심층 연구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결정 시 노·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민 등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최저임금의 수용도 제고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최저임금법 및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사무국) ②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 하게 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86년 제6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 최저임금제 본격 도입
- '86년 최저임금법 제정·공포, '88년 최저임금제 실시
- '87년 최저임금위원회 신설
- '19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견수렴 및 과정 관리 강화 추진 (VIP 지시사항)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01백만원	586백만원	576백만원	581백만원	566백만원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최저임금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성 강화: ('25)581백만원 → ('26)566백만원, △15백만원

○ 최저임금 연구활동 및 기능강화 : ('25)170백만원 → ('26)185백만원, +15백만원

- 조사연구원(통계·경제·사회분야 3명) : ('25)161백만원 → ('26)176백만원, +15백만원
 - 상용임금(공무직) : ('25)133.5백만원 → ('26)146백만원, +12.5백만원
 - 복리후생비 : ('25)1.5백만원 → ('26)2백만원, +0.5백만원
 - 고용부담금 : ('25)26백만원 → ('26)28백만원, +2백만원
- 전문가 자문료, 업무조력자 사례금 예산 : 9백만원 (전년동)
- 일반수용비(자문료 등) : 9백만원 (전년동)

○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 : ('25)94백만원 → ('26)66백만원, △28백만원

- 현장방문(6회): ('25)70백만원 → ('26)48백만원, △22백만원
 - 일반수용비: ('25)24백만원 → ('26)13백만원, △11백만원
 - * 참석수당 10,800천원, 기념품 900천원, 자료유인 1,500천원
 - 임차료: 6백만원(전년동, 1,000천원×6회)
 - 국내여비: ('25)34백만원 → ('26)23백만원(△11백만원, 3,900천원×6회)
 - 업무추진비: 6백만원(전년동, 30천원×30명×6회)
- 공청회(2회): ('25)24백만원→('26)18백만원, △6백만원
 - 일반수용비: ('25)13백만원 → ('26)9백만원(△4백만원)
 - * 참석수당 5,600천원, 자료 유인 1,000천원, 발제비 2,400천원
 - 임차료: 6백만원(전년동, 3,000천원×2회)

- 국내여비: ('25)3백만원 → ('26)1백만원(△2백만원, 450천원×2회)
- 업무추진비: 2백만원(전년동, 30천원×30명×2회)

○ 최저임금 결정 관련 안내자료 제작 등 : ('25)77백만원 → ('26)75백만원, △2백만원

- 안내 리플릿·전단지·물품 등 제작·배포: 75백만원
- 일반수용비: 75백만원 *옥외온라인 등 4백만원, 리플릿·전단지·물품 67백만원, 포장·발송 4백만원

○ 최저임금 발전 등 관련 심층연구 : 240백만원, 전년동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 240백만원, 전년동
- 일반연구비 : 240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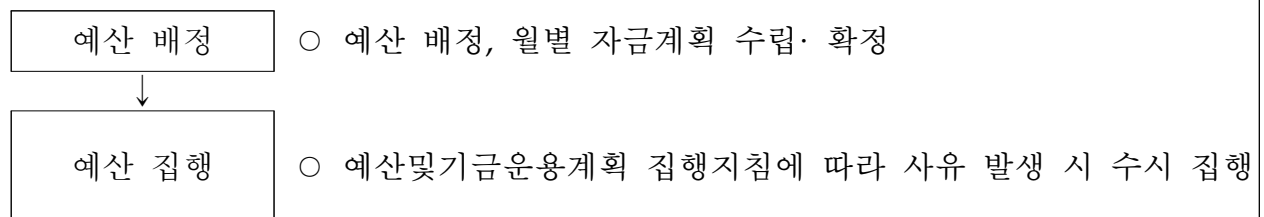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최저임금 결정의 수용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01	0	601	601	572	95.2	95.2	0	29
2023	586	0	586	586	538	91.8	91.8	0	48
2024	576	0	576	576	460	79.9	79.9	0	116
2025	581	0	581	581	535	92.1	92.1	0	46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23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홍보 물품 제작비 부족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성강화 국내여비에서 수용비로 43백만원 전용
2023	- '24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홍보 물품 제작비 부족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성강화 국내여비에서 수용비로 30백만원 전용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49) ILO 분담금(ODA)(3050-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국제협력 담당관실	-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50	300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국제고용노동협력	ILO분담금(ODA)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ILO 분담금 (ODA)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 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국제노동기구 (IL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ILO분담금(ODA)	14,308	15,926	15,926	18,358	18,358	2,432	15.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308	14,308	14,308	-	-	15,926	15,926	15,926	-	-	18,358
· ILO 분담금(ODA)	14,308	14,308	14,308	-	-	15,926	15,926	15,926	-	-	18,35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ILO 회원국으로서 원활한 ILO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분담금을 성실히 납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ILO 헌장 제13조* 상의 분담금 납부의무(ILO 헌장 수락동의안 국회의결, '91.11월)

* (제3항) 국제노동기구의 경비는 회원국이 부담

(제4항) 연체액이 지난 만 2년 동안 그 나라가 지불하여야 할 분담금의 금액과 동액이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은 총회, 이사회 등에서 투표권 상실

② 추진경위

- '05년 외교부로부터 ILO 분담금을 이관*받아 이후 매년 당해연도 분담금 납부 중

* '05년까지는 외교부가 국제기구 분담금을 총괄 관리·납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2년부터 계속('05년 외교부에서 이관)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088	13,044	14,308	15,926	18,35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제부담금)
- 사업시행주체 : 국제노동기구(ILO)
- 사업 수혜자 : ILO 회원국(우리나라 포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ILO분담금(ODA) : (2025) 15,926백만원 → (2026) 18,358백만원(+15.3%)

○ '26년 납부 필요액: $10,972,977\text{CHF}^* \times 1,673\text{원}(25\text{년 재정환율}) = 18,358\text{백만원}$

* '26년 의무 분담금 14,866백만원(8,885,387CHF) + '24년 末 기준 미납금 3,492백만원(2,087,590CHF)

구분	편성시점 (재정환율)	집행시점 (송금환율)	미납금	합계
'23년	9,881,359CHF×1,320원	8,644,527CHF×1,509원	1,236,832CHF	2,087,590CHF
'24년	10,038,086CHF×1,425.33원	9,187,328CHF×1,557.36원	850,758CHF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ILO분담금 120억원 납부, ILO 이사국으로 활동
2023	ILO분담금 130억원 납부, ILO 이사국으로 활동
2024	ILO분담금 143억원 납부, ILO 이사국으로 활동
2025	ILO분담금 159억원 납부, ILO 이사국으로 활동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ILO의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노동 분야 발전 경험을 토대로 한 국제정책 교류·협력 활동 강화 기대, 이를 토대로 개도국 경제개발 계획 등에 참여 확대 가능
- 향후 ① ILO 협약 비준 확대, ②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 종결, ③ 한-ILO 협력사업을 통한 개도국 지원 확대, ④ ILO 사무국 내 한국인 직원 확대 등을 통해 우리 노동 외교 역량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ILO 총회에서 ILO 총예산 규모, 국가별 분담률*을 기반으로 국가별 분담금 규모 결정(2년 단위) → 회원국은 매년 분담금 납부

* UN 분담률, 회원국 국민소득(GNI), 회원국 수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국가별 분담률 결정

- 원-CHF 환율 상황을 고려하여 연도 중 분담금을 ILO 사무국에 직접 납부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088	-	12,088	12,088	11,762	97.3	97.3	-	326
2023	13,044	-	13,044	13,044	13,044	100	100	-	-
2024	14,308	-	14,308	14,308	14,308	100	100	-	-
2025	15,926	-	15,926	15,926	15,926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환율변동 및 분담금 인센티브(조기납부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불용(326백만원)
2023	- 해당없음(전액집행)
2024	- 해당없음(전액집행)
2025	- 해당없음(전액집행)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50)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3050-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실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50	301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국제고용노동협력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제협력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
한-OECD 공동연구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제개발협력팀
	OECD	-
국제성인 역량조사 (PIACC)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과
	OECD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699	2,989	2,989	1,215	1,215	△1,774	59.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55	755	699	-	56	2,989	2,989	2,937	-	52	1,215
(1)고용노동분야 국제 기구 및 다자교류 협력 강화	125	231	231	-	-	2,386	2,386	2,386	-	-	758
(2)고용노동분야 통상 협정 대응	630	468	469	-	56	603	603	551	-	52	4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교류협력 강화)** 선진국의 고용노동정책 경험 공유·활용, 국내 고용노동정책의 국제사회 홍보 및 국제기구 등과의 다자교류 협력을 통한 국가 위상 강화
-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FTA 등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 및 협정 이행에 적극 대응하여 국익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협력교류 강화]

- **(한-OECD 공동연구 사업)** '04년 한-OECD간 노동시장 공동연구사업 수락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

- **(고용노동분야 국제정보 교류)** 국정홍보 업무운영규정('07.5.16. 대통령령 제20053호)
 - * 관련규정: 제1조(목적),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제7조(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9조(정기간행물의 발간), 제10조(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 **(국제성인력량조사(PIAAC))** 제107차 OECD/ELSAC(고용노동사회위원회) 정례회의 시 노동부의 국제 성인능력 프로젝트(PIAAC) 참여를 요청받음('05.11월)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 제4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선진통상국가 추진과제」 확정('05.4.6.)
- 제4차 WTO 각료회의('01.11.14.)에서 '02년 DDA 출범에 합의함에 따라 WTO/DDA 범정부 대응체계 구성(노동분야는 인력알선 등 노동서비스 시장개방 포함)
- 「FTA추진에 대한 정부 로드맵」 확정('03.8.30.) 및 VIP의 적극적 협상 지시('05.4.6.)에 따라 동시다발적 FTA 추진
 - * 노동 Chapter(한미, 한-캐나다, 한-EU FTA 등): 국제노동기준 준수 관련 내용, 서비스 Chapter(한미 제외 모든 FTA): 노동서비스 시장개방 관련 내용 포함
- '08.6월 신정부 FTA 추진계획 수립(외교부)
 - *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FTA 추진키로 함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교류협력 강화]

- **(한-OECD협력지원)** '04년 공동연구사업 수락 이후 매년 연구 프로젝트 참여
- **(고용노동 분야 국제정보 교류)** '09년 OECD 모니터링 종료를 계기로 한국 고용노동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시작
 - * '16년부터 우리나라 고용노동 정책의 대외홍보뿐 아니라, 적극적이고 쌍방향적인 정보교류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명칭 등을 개편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 '05.9월 국제협상팀 신설(FTA, WTO/DDA협상 전담부서)
- '06년 한·미, 한·캐, 한·ASEAN FTA협상 등 수행
- '07년 협상대상국·협상수 증가에 따라 신규 사업예산 6억원 반영

- '24년 12월 기준, 26개 FTA 협정 발효 및 타결

· 한·칠레('04.4), 한·싱가포르('06.3), 한·EFTA('06.9), 한·ASEAN('09.9), 한·인도('10.1), 한·미국('12.3), 한·EU('11.7), 한·페루('11.8), 한·터키('13.5), 한·호주('14.12), 한·캐나다('15.1), 한·콜롬비아('15.12), 한·뉴질랜드('15.12), 한·중국('15.12), 한·베트남('15.12), 한·중미('19.10월), 한·영('21.1월), RCEP(아세안+6, '22.2월), 한·이스라엘('22.12월), 한·캄보디아('22.12월), 한·인니('23.1월), 한·필리핀('23.9월), 한·에콰도르('23.10월), 한·GCC('23.12월), 한·UAE('24.5월), 한·조지아('24.11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년부터 계속

* 세부사업 통폐합 이전: 한-OECD 협력지원('04년~계속),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 대책 추진('07년~계속), 고용노동분야 국제정보 교류('09년~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93	793	755	2,989	1,21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한-OECD 공동연구사업 해외이전, OECD PIAAC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직접, OECD,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국가나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협력교류 강화: ('25) 2,386 → ('26) 758백만원, 감 1,628백만원(△59.4%)

- ① 한-OECD 공동연구사업: ('26) 200백만원 (전년동)
 - (산출) 200백만원(125,470유로×1,594원)
- ② 고용노동분야 국제정보교류: ('25) 118 → ('26) 128백만원 (+10백만원)
 - (요구) 국제기구, 국제노동단체, 국제평가 기관 등 논의 참여 여비 증액
 - (산출)
 - * 법령, 정책, 보도자료 및 주요 기사 번역 31백만원(2.6×12월)
 - * 영문 홍보책자 발간 및 발송 10백만원(10×1건)
 - * 국제기구, 국제노동단체, 국제평가기관 등 논의 참여 80백만원(국장급, 4~5급 4명, 3회, 3박5일, 스위스)
 - * OECD 정책연구보고서 등 중요 해외발간자료 번역 4백만원(2×2회)
 - * 국제고용노동 관련 전문가 간담회 업무추진 3백만원(0.03×10명×10회)
- ③ APEC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포럼 개최: ('25) 1,938 → ('26) 300백만원 (△1,638백만원)
 - (요구) APEC 인적자원개발 회의 의장국 수임 종료('25)이후, 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후속조치로서 「APEC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포럼」 개최
 - (산출) APEC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포럼 및 부대행사 300백만원(포럼 1식×300)
- ④ 국제성인역량조사(OECD PIAAC): ('26) 130백만원 (전년동)
 - (산출) 국제분담금 70백만원(분담금 1식×70), 연구개발비 60백만원(연구개발 1식×60)

(2)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 대응: ('25) 603 → ('26) 457백만원, 감 146백만원(△24.2%)

- ① 협상인프라 구축: ('25) 44 → ('26) 43백만원 (감 1백만원)
 - (요구) 업무추진비 감액 조정
 - (산출)
 - * FTA협상쟁점 및 대응방안의견수렴 1.5백만원(0.03×10명×5회)
 - * FTA대책간담회 1.5백만원(0.03×10명×5회)
 - * 고용노동분야 협상 대응전략 마련 연구용역 40백만원(40×1건)
- ② FTA, IPEF 등 협상 참석: ('26) 50백만원 (전년동)
 - (산출)
 - * 한-칠레 등 FTA 협상 20백만원(4~5급 2명, 1회, 4박7일)
 - * 한-태국 EPA 협상 10백만원(4~5급 2명, 2회, 5박6일)
 - * IPEF 「노동권 자문위」 및 「필러 4 이행점검회의」 개최 및 참석 20백만원(4~5급 3명, 3회, 3박 4일, 호주)
- ③ 노동협정 이행: ('25) 429 → ('26) 323백만원 (감 106백만원)
 - (요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국외여비·국내외 법률자문료 감액 편성
 - (산출)
 - * 협정이행 분쟁해결 74백만원
 - 영문예디터 통·번역 33백만원(2.71×인×12월=33)
 - 고용노동분야 협정이행방안 마련 연구용역 40백만원(40×1건)
 - *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 이행 64백만원
 - 한-EU FTA 시민사회포럼 사무국 일반용역 30백만원(30×1건)
 - 한-EU FTA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참석 26백만원(자문단 7인, 1회, 3박5일)

- 자문단 회의수당 1백만원(0.01×5명×2회)
- 자문단 안전검토비 1백만원(0.01×5명×2회)
- 자료유인비 3백만원(0.03×50부×2회)
- 전문가 패널 사전세미나 및 심포지엄 회의장 임차 3백만원(1.5×2회)
- * 노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20백만원
 - 한-영 FTA 노동협의회 참석 14백만원(4~5급 3명, 1회, 3박4일)
 - 한-EU, 한-영 노동협의회 관련 정액경비, 연회비, 선물비 2백만원
 - 노동 협정 이행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간담회 등 4백만원
- * 한-영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 이행 35백만원
 - 한-영 FTA 시민사회포럼 사무국 일반용역 30백만원(30×1건)
 - 자문단 회의수당 1백만원(0.01×5명×2회)
 - 국내자문단 회의장 임차 4백만원(2×2회)
- * 한-EU FTA 협정 이행 대응 78백만원
 - 국내법률자문 16백만원(0.4×39시간)
 - 국외법률자문 41백만원(750유로×39시간×1,380원)
 - 한-EU FTA 협정 이행 관련 논의를 위한 회의 참석 21백만원(국장, 4~5급 3명, 3박4일, 벨기에)
- * 한-미 FTA 협정 이행 대응 52백만원
 - 국내법률자문 30백만원(0.2×150시간)
 - 국외법률자문 22백만원(400달러×39시간×1,380원)

④ 노동분야 협력사업 수행: ('25) 80 → ('26) 41백만원 (감 9백만원)

- (요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연구비 및 임차료 감액 편성
- (산출)
 - * FTA 협력사업 대응 22백만원
 - FTA협력사업 정부간협의회 참석 6백만원(4~5급 2명, 1회, 4박6일)
 - FTA협력사업 전문가워크숍 2백만원(0.01×10명×2회=2)
 - FTA협력사업 국제기구 논의 참여를 위한 정액경비, 연회비 등 사업 추진비 2백만원
 - 협력사업 의견수렴 1.9백만원(0.03×9명×7회)
 - 협력사업 연구용역 10백만원(10×1건)
 - * 한-미 협력사업 추진 19백만원
 - 협력사업 안전 전문가 검토 수당 4백만원(200천원×10명×2회)
 - 워크숍 개최 관련 기념품, 유인물인쇄 6백만원(3×2회)
 - 협력사업 추진 장소 임차 9백만원(4.5×2회)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고용노동 고용노동 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교류 협력 강화 2,386 백만원	<한-OECD 공동연구사업 200백만원> 가. 한 · OECD 공동연구사업 200 (135,135유로x1,480원) <고용노동분야 국제정보교류 118백만원> 가. 법령, 정책, 보도자료 및 주요 기사 번역 31 (2.6x12월) 나. 영문 홍보책자 발간 및 발송 10(10x1건) 다. 국제기구, 국제노동단체, 국제평가기관 등 논의 참여 70 (국장급, 4~5급 5명, 2회, 3박5일, 스위스) 라. OECD 정책연구보고서 등 중요 해외발간자료 번역 4 (2x2회) 마. 국제고용노동 관련 전문가 간담회 업무추진 3 (0.03x10명x10회)	고용노동 고용노동 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교류 협력 강화 2,386 백만원	<한-OECD 공동연구사업 200백만원> 가. 한 · OECD 공동연구사업 200 (135,135유로x1,480원) <고용노동분야 국제정보교류 128백만원> 가. 법령, 정책, 보도자료 및 주요 기사 번역 31 (2.6x12월) 나. 영문 홍보책자 발간 및 발송 10(10x1건) 다. 국제기구, 국제노동단체, 국제평가기관 등 논의 참여 70 (국장급, 4~5급 5명, 2회, 3박5일, 스위스) 라. OECD 정책연구보고서 등 중요 해외발간자료 번역 4 (2x2회) 마. 국제고용노동 관련 전문가 간담회 업무추진 3 (0.03x10명x10회)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APEC 회의 개최 1,938백만원> 가.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 1,040 (장관회의 1식×1,040) 나. 인적자원개발 실무회의 798 (실무회의 1식×798) 다. 국제장애포럼 100 (포럼 1식×100) <국제성인역량조사(OECD PIAAC)> 가. 국제분담금 80(분담금 1식×80) 나. 연구개발비 50 (연구개발 1식×50)		<APEC 회의 개최 1,938백만원> 가. APEC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포럼 및 부대행사 300 (포럼 1식×300) <국제성인역량조사(OECD PIAAC)> 가. 국제분담금 70(분담금 1식×70) 나. 연구개발비 60 (연구개발 1식×60)
고용노동 분야 통상협정 대응 603 백만원	<협상인프라 구축 44백만원> 가. FTA협상쟁점 및 대응방안의견수렴 1.6(0.03×9명×6회) 나. FTA대책간담회 1.8 (0.03×10명×6회) 다. 고용노동분야 협상 대응전략 마련 연구용역 40 (40×1건) <FTA, IPEF 등 협상 참석 50백만원> 가. 한·칠레 등 FTA 협상 20 (4~5급 2명, 1회, 4박7일) 나. 한·태국 EPA 협상 10(4~5급 2명, 2회 5박6일) 다. IPEF 「노동권 자문위」 및 「필라 4 이행점검회의」 개최 및 참석 20 (4~5급 3명, 3회, 3박 4일, 호주) <노동협정 이행 429백만원> 가. 협정이행 분쟁해결 74 · 영문에디터 통번역 33 (2.71×인×12월=33) · 자문위원회 및 분쟁해결패널 구성 및 운영 1 (0.03×5명×7회) · 고용노동분야 협정이행방안 마련 연구용역 40 (40×1건) 나.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 이행 64 · 한·EU FTA 시민사회포럼 사무국 일반용역 30 (30×1건) · 한·EU FTA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참석 26 (자문단 7인, 1회, 3박5일) · 자문단 회의수당 1 (0.01×5명×2회) · 자문단 안전검토비 1 (0.01×5명×2회) · 자료유인비 3 (0.03×50부×2회) · 전문가 패널 사전세미나 및 심포지엄 회의장 임차 3 (1.5×2회) 다. 노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24 · 한·영 FTA 노동협의회 참석 18 (4~5급 3명, 1회, 3박4일) · 한·EU, 한·영 노동협의회 관련 정액경비, 연회비, 선물비 2 · 노동 협정 이행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간담회 등 4 라. 한·영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 이행 35 · 한·영 FTA 시민사회포럼 사무국 일반용역 30 (30×1건) · 자문단 회의수당 1 (0.01×5명×2회) · 국내자문단 회의장 임차 4 (2×2회) 마. 한·EU FTA 협정 이행 대응 132 · 국내법률자문 29 (0.4×36시간×2회) · 국외법률자문 65 (750유로×2시간×2회×1,350원) · 한·EU FTA 협정 이행 관련 논의를 위한 회의 참석 38 (국장(2회), 4~5급 5명(1회), 3박4일, 벨기에) 바. 한·미 FTA 협정 이행 대응 100 · 국내법률자문 60 (0.2×150시간×2회) · 국외법률자문 40 (400달러×39시간×2회×1,290원) <노동분야 협력사업 수행 80백만원> 가. FTA 협력사업 대응 52 · FTA협력사업 정부간협의회 참석 6 (4~5급 2명, 1회, 4박6일) · FTA협력사업 전문가워크숍 2 (0.01×10명×2회=2) · FTA협력사업 국제기구 논의 참여를 위한 정액경비, 연회비 등 사업 추진비 2 · 협력사업 의견수렴 1.9 (0.03×9명×7회) · 협력사업 연구용역 40 (40×1건) 나. 한·미 협력사업 추진 28 · 협력사업 안전 전문가 검토 수당 4 (200천원×10명×2회) · 워크숍 개최 관련 기념품, 유인물인쇄 6 (3×2회) · 협력사업 추진 장소 임차 18 (9×2회)	고용노동 분야 통상협정 대응 457 백만원	<협상인프라 구축 43백만원> 가. FTA협상쟁점 및 대응방안의견수렴 1.5(0.03×10명×5회) 나. FTA대책간담회 1.5 (0.03×10명×5회) 다. 고용노동분야 협상 대응전략 마련 연구용역 40 (40×1건) <FTA, IPEF 등 협상 참석 50백만원> 가. 한·칠레 등 FTA 협상 20 (4~5급 2명, 1회, 4박7일) 나. 한·태국 EPA 협상 10(4~5급 2명, 2회 5박6일) 다. IPEF 「노동권 자문위」 및 「필라 4 이행점검회의」 개최 및 참석 20 (4~5급 3명, 3회, 3박 4일, 호주) <노동협정 이행 323백만원> 가. 협정이행 분쟁해결 74 · 영문에디터 통번역 33 (2.71×인×12월=33) · 자문위원회 및 분쟁해결패널 구성 및 운영 1 (0.03×5명×7회) · 고용노동분야 협정이행방안 마련 연구용역 40 (40×1건) 나.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 이행 64 · 한·EU FTA 시민사회포럼 사무국 일반용역 30 (30×1건) · 한·EU FTA 국내자문단 시민사회포럼 참석 26 (자문단 7인, 1회, 3박5일) · 자문단 회의수당 1 (0.01×5명×2회) · 자문단 안전검토비 1 (0.01×5명×2회) · 자료유인비 3 (0.03×50부×2회) · 전문가 패널 사전세미나 및 심포지엄 회의장 임차 3 (1.5×2회) 다. 노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20 · 한·영 FTA 노동협의회 참석 14 (4~5급 3명, 1회, 3박4일) · 한·EU, 한·영 노동협의회 관련 정액경비, 연회비, 선물비 2 · 노동 협정 이행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간담회 등 4 라. 한·영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 이행 35 · 한·영 FTA 시민사회포럼 사무국 일반용역 30 (30×1건) · 자문단 회의수당 1 (0.01×5명×2회) · 국내자문단 회의장 임차 4 (2×2회) 마. 한·EU FTA 협정 이행 대응 78 · 국내법률자문 16 (0.4×39시간) · 국외법률자문 41 (750유로×39시간×1,380원) · 한·EU FTA 협정 이행 관련 논의를 위한 회의 참석 21 (국장, 4~5급 3명, 3박4일, 벨기에) 바. 한·미 FTA 협정 이행 대응 52 · 국내법률자문 30 (0.2×150시간) · 국외법률자문 22 (400달러×39시간×1,380원) <노동분야 협력사업 수행 41백만원> 가. FTA 협력사업 대응 22 · FTA협력사업 정부간협의회 참석 6 (4~5급 2명, 1회, 4박6일) · FTA협력사업 전문가워크숍 2 (0.01×10명×2회=2) · FTA협력사업 국제기구 논의 참여를 위한 정액경비, 연회비 등 사업 추진비 2 · 협력사업 의견수렴 1.9 (0.03×9명×7회) · 협력사업 연구용역 10 (10×1건) 나. 한·미 협력사업 추진 19 · 협력사업 안전 전문가 검토 수당 4 (200천원×10명×2회) · 워크숍 개최 관련 기념품, 유인물인쇄 6 (3×2회) · 협력사업 추진 장소 임차 9 (4.5×2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상 대책 추진 건수(건, %)	목표	13	-	-	-	-	-	(협상전) 협상대응방안 관련 보고서 확인	내부자료 (대외비 자료)
	실적	13	-	-	-	-		(협상후) 협정문 이행 체계 및 후속 조치 방안 관련 보고서 확인	
	달성도	100	-	-	-	-			
한국 노동상황 대외홍보 만족도 (점, %)	목표	4.3	-	-	-	-	-	PCRM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실적	4.21	-	-	-	-		5개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달성도	97.9	-	-	-	-			
신고사건 기한 내 처리율(%)	목표	85.8	89.0	-	-	-	-	신고사건 기한	내부 전산시스템
	실적	89.6	95.5	-	-	-		내처리건수/신 고사건 총 처리 건수*100	
	달성도	104.4	107.3	-	-	-			
임금채불 피해 근로자 권리 구제율(%)	목표	75.1	78.5	81.5	84.3	-	-	(지도해결근로자수 +대지급금지급 근로자수+채불사업주 용자지원근로자수) /채불근로자수*100	내부 전산시스템
	실적	81.9	83.9	85.0	-	-			
	달성도	109.1	106.9	104.3	-	-			
용자지원율(%)	목표	93.0	93.4	-	-	-	-	생활안정자금 용자실행액 / 생활안정자금 용자예산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실적	96.3	97.1	-	-	-			
	달성도	103.5	104.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간 교류협력 강화] - 한-OECD 협력사업으로 ‘사람과 일자리 연계’ 참여 - 각종 국제기구 논의(ILO 이사회 및 총회, 아태총회)에 일자리 창출 등 의제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논의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는 등 고위급 노동 외교 전개 - 고용노동부 영문홈페이지에 보도자료, 통계 등을 게시, 우리의 노동시장 현황·정책 등을 적극적 대외 안내,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등에 자료 배포 등 - 고위급 인사 방한 및 면담 시(베트남 공산당 상임서기 면담, 캄보디아 노동부 차관보, 네팔 노동부 차관) 고용노동 분야 정책 교류 및 상호 이해를 통한 우리 노동정책에 대한 대외 안내 추진
------	---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 양자·다자 FTA 등의 통상협상에 참가하여, 노동 분야(노동챕터 및 인력이동 등) 협상에 대응 ▶ 한-GCC FTA 협상 재개 관련 인력이동 협정문안 검토<1월> ▶ CPTPP 가입 추진 관련 인력이동 협정문 검토<2월> ▶ 한-에콰도르 SECA 제6차 협상 노동분과 대응<7월> ▶ WTO 국내 서비스규제 협상 타결 관련 국내법 합치 검토<7월> ▶ IPEF 각료선언문 협상 노동분야 대응<7월~9월> ▶ 한-인도 CEPA 제9차 협상 서비스분과 대응<11월> ▶ 한-에콰도르 SECA 제7차 협상 노동분과 대응<11월> ▶ IPEF 1차 협상 필러 1~4 노동분야 대응<12월> - FTA 노동챕터 이행(정부간 협의회 운영,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한 양국간 고용노동협력 강화 ▶ 한-미 FTA 제2차 노동협의 개최 대비 실무협의<3월> ▶ 한-미 FTA 제2차 노동협의회 개최<4월> ▶ 한-영 FTA 제1차 무역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개최<5월> ▶ 한-EU FTA 공동위원회 노동분야 안건 대응<6월> ▶ 한-EU FTA 제8차 무역과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최<9월> ▶ 한-미 FTA 이행 관련 미노동부 방한 실무협의<10월> ▶ 한-EU FTA 제10차 무역위원회 노동분야 안건 대응<11월>
2023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간 교류협력 강화] - 한-OECD 협력사업으로 ‘사람과 일자리 연계’ 참여 - 각종 국제기구 논의(ILO 이사회 및 총회)에 적극 참여하여 논의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는 등 고위급 노동 외교 전개 ▶ 제111차 ILO 총회 및 제347차·제349차 ILO 이사회 참석<3월, 6월, 11월> ▶ 제8차 ILO 기준검토작업반 회의 참석<9월> ▶ UN 자유권 규약 심의 참석<10월> - 고용노동부 영문홈페이지에 보도자료, 통계 등을 게시, 우리의 노동시장 현황·정책 등을 적극적 대외 안내,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등에 자료 배포 등 - 고위급 인사 방한 및 면담 시(일본 후생성 대신정무관 등) 정책 노동 분야 정책 교류 및 상호 이해를 통한 우리 노동정책에 대한 대외 안내 추진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 양자·다자 FTA 등의 통상협상에 참가하여, 노동 분야(노동챕터 및 인력이동 등) 협상에 대응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특별협상<2월>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협상<3월>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3차 협상<5월> ▶ 한-칠레 FTA 7차 협상<5월>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7월>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5차 협상<9월> ▶ 제9차 한-EU FTA 시민사회포럼 참석<9월>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6차 협상<10월> ▶ 한-칠레 FTA 회기간 회의<11월>
2024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간 교류협력 강화] - 한-OECD 협력사업으로 '사람과 일자리 연계: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연구사업 추진('24.6월, 최종보고서 발간) ▶ 우리나라의 공공 고용서비스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시사점 및 정책 보완을 위한 권고 도출 - 각종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ILO 내에서 한국 정부의 지위를 제고하기 위해 고위급 노동 외교 전개 ▶ 제112차 ILO 총회 참석[ILO 총회 정부 수석대표(장관) 연설, 정이사국(6번째) 및 이사회 의장직(2번째) 진출, ILO 사무총장과 면담, 4개국(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네팔) 면담 등]<6월> ▶ 제350차~제352차 ILO 이사회 참석<3월, 6월, 10월: 주요 이슈 논의 참여·주제 발표 및 사무국 간부 면담 등> - 우리의 노동시장 현황·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대외 안내 ▶ 고용노동부 영문 홈페이지에 뉴스 및 통계 자료 등 게시 ▶ 영문 고용노동정책 홍보자료 제작 및 게시·배포(영문 홈페이지 게시, ILO·노무관·파견관 배포, 외교부 통한 대사관 배포 등) - 해외 인사 방한 시(독일연방 고용인협회장, IMF 미션단, OECD 미션단 등) 노동 분야 정책 교류 및 상호 이해를 통한 우리 노동정책에 대한 대외 안내 추진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 양자·다자 FTA 등의 통상협상에 참가하여, 노동 분야(노동챕터 및 인력이동 등) 협상에 대응 ▶ 한-영국 FTA 1차 개선협상<2월> ▶ 한-영국 FTA 2차 개선협상<3월> ▶ 한-칠레 FTA 9차 개선 협상<4월>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1 협상<5월>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노동권자문위 회의<7월>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4 노동 및 네트워크 회의<8월>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1 협상<9월>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노동권자문위 운영규칙 작성 관련 협의<9~12월, (총 12회)> ▶ 한-EU FTA 제10차 무역과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최<9월> ▶ 한-태 EPA 2차 공식협상<10월> ▶ 한-영 FTA 3차 개선협상<11월> ▶ 한-태 EPA 3차 공식협상<12월>

2025	[고용노동분야 국제기구 및 다자간 교류협력 강화] - 한-OECD 협력사업으로 '인재 격차에 대응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정책' 연구사업 추진 - 2025년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 개최하여 21개 회원 경제체 합의로 장관회의 공동선언문(제1호) 채택 및 후속 포럼 신설(2026년) - 각종 국제기구 논의(ILO 이사회 및 총회)에 적극 참여하여 논의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는 등 고위급 노동 외교 전개 ▶ UN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참석<4월> ▶ UN 제2차 사회개발정상회의 참석<11월> ▶ 제113차 ILO 총회 참석[ILO 총회 정부 수석대표 연설, 아태지역정부그룹(ASPAG) 장관회의(공동성명 채택)]<6월> ▶ 제353차~355차 ILO 이사회 참석<3월, 6월, 10월: 주요 이슈 논의 참여, 주제 발표 및 사무국 간부 면담 등> - 고용노동부 영문홈페이지에 보도자료, 통계 등을 게시, 우리의 노동시장 현황·정책 등을 적극적 대외 안내(수시),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등에 자료 배포 등 - 고위급 인사 방한 및 면담 시(독일연방 고용인협회장 등) 정책 노동 분야 정책 교류 및 상호 이해를 통한 우리 노동정책에 대한 대외 안내 추진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 양자·다자 FTA 등의 통상협상 및 이행 대응(노동챕터 및 인력이동 등) ▶ 한-태국 EPA 5차 개선 협상 <4월> ▶ 한-미 관세협상 줄라이패키지 관련 회의 <6월> ▶ 한-영국 FTA 개선협상 회기간회의 <6월> ▶ 한-영국 FTA 5차 개선협상 <7월> ▶ 한-미 FTA 이행 관련 전문가 회의 <7월> ▶ 한미 관세협상 노동 관련 공동설명서 문안 협의<8월~11월> ▶ 한-EU FTA 이행 관련 제11차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및 시민사회 포럼 참석 <9월>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노동권자문위 회의<1월> ▶ IPEF 소위원회 회의<3월> ▶ IPEF 노동권자문위 및 소위원회 회의<5월> ▶ IPEF 분야별 기술보고서 선정 기준 관련 소위원회 회의<6월> ▶ IPEF 분야별 기술보고서 주제선정 관련 소위원회 회의<7~9월 총 3회> ▶ IPEF 노동권 불일치 신고체계 가이드라인 제정 관련 소위원회 회의 <7~12월 총 7회> ▶ IPEF 분야별 기술보고서 주제선정 관련 수석대표 회의<11월 총 2회> ▶ IPEF 노동권자문위 및 소위원회 회의<12월>
------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OECD와의 공동연구사업을 통해 고용노동정책 정책역량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
- 고용·노동 분야 국제 안내 활동 및 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격 제고
- 진행 중인 FTA 협상(고용노동 또는 인력이동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익을 제고하고 기체결 FTA 노동장 내 협력사업을 발굴·이행하여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국가 위상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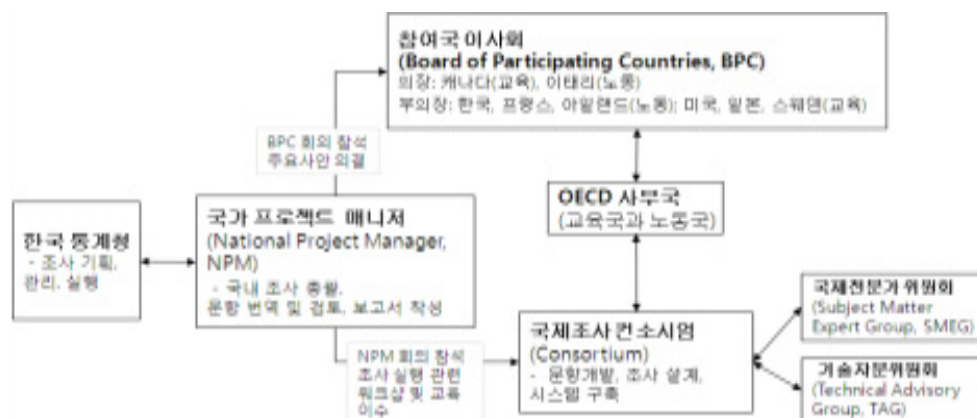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한-OECD 공동연구 사업)** OECD 사업제안서 송부→ 고용노동부 검토·채택→ OECD에 참여의사 통보→ 사업비 송금→ 연구결과보고서 발간(세미나 개최 포함)·배포, 국내정책 활용 등
- **(고용노동 분야 국제정보 교류)** 국내외 노사관계 법·제도 및 주요 고용노동정책 동향 파악 → 전문가 및 관계자 검토→ 주요 노동정책 영문자료 작성·배포, 국제기구, 국제노동단체, 국제평가기관 등 논의 대응→ 주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에 활용
- **(고용노동분야 통상협정 대응)** FTA 자문단·이해관계자 간담회, 협상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협상인프라 구축 및 대책 수립→ 노동 분야 통상협상 참여 → FTA 협정 발효→ 협정(노동 장)에 명시된 노동 chapter 이행기구 운영 및 당사국 간 노동 분야 협력사업 수행

-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상임위, 예결위 결산보고서, '23년) 사업내용을 반영한 성과 측정 지표를 마련할 것, 예산편성 시 각 내역사업별로 국외업무여비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여 반영할 것
 - (상임위, 결산보고서, '24년) 최근 3년간 일반연구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한 경우를 전수조사하여 정책연구에 적용되는 절차를 회피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연구 성격에 맞게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를 구별하여 편성·집행할 것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93	0	793	793	634	95.3	95.3	-	38
2023	793	0	793	793	788	99.4	99.4	-	5
2024	755	0	755	755	699	92.6	92.6	-	56
2025	2,989	0	2,989	755	2,937	98.3	98.3	-	5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국제회의(ILO 이사회, ILO 아태총회)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가 부족하여 수용비에서 자체 전용(110백만원) - 불용: 집행잔액(국외여비 18백만원, 수용비 15백만원, 임차료 4백만원, 일반용역비 1백만원)
2023	- 전용: 영문 에디터 통·번역비용이 부족하여 국외여비에서 자체 전용(12백만원) - 불용: 집행잔액(임차비 3백만원, 일반용역비 1백만원, 국외업무여비 1백만원)
2024	- 불용: 집행잔액(일반수용비 26백만원, 임차료 16백만원, 국외여비 14백만원)
2025	- 불용: 집행잔액(일반수용비 25백만원, 임차료 17백만원, 일반용역비 9백만원, 국외여비 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51)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3050-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5	국제협력관		080	08E
명칭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50	302
명칭	근로복지보호및복지증진	국제고용노동협력	개도국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제협력관
		국제개발협력팀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한·ILO 협력사업	소관부처 사업시행주체	실·국·과(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10,175	10,325	10,325	8,599	8,599	△1,726	△16.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175 (-)	10,175	9,361	16	798	10,325	10,341	10,330	-	11	8,599
· 개도국 고용노동 분야 정책역량강화	5,671 (-)	5,671	4,857	16	798	3,803	3,819	3,808	-	11	2,320
· 다자금융기구 및 지역협의체를 통한 고용노동정책교류	293 (-)	293	293	-	-	243	243	243	-	-	-
· 한-ILO 협력사업	4,211 (-)	4,211	4,211	-	-	6,279	6,279	6,279	-	-	6,27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분야(직업훈련,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 정책발전경험 공유·전수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한국의 정책모델 확산
- (한-ILO 협력사업)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촉진 및 국제 노동기준 이행 역량강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산업안전 등 고용노동분야에서의 ILO 협력사업 지원,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역할, 위상 제고 및 국가 간 협력기반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10.10.25.,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 국제개발협력(ODA) 직업훈련 사업모델개발 추진계획, 국가협력전략('11.8.25., 제10차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의결)
- 한-ILO 특별기술협력사업 양해각서('03.10.1.) 체결 이후 국제부담금 송부

② 추진경위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 '12.02. 「'12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신규사업 추진계획」 수립 이후 매년 외교부 주관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맞춰 사업계획 수립·추진

연도	사업대상국(자문분야)
'25	캄보디아(노동법), 우즈베키스탄(노동법), 인도네시아(산업안전분야)
'24	캄보디아(산재·재활, 노동법), 라오스(노동법), 우즈베키스탄(노동법), 인도네시아(산업안전분야)
'23	캄보디아(산업안전보건, 산재·재활, 노동법), 라오스(노동법)
'22	캄보디아(산업안전보건, 산재·재활), 라오스(노동법)
'21	캄보디아(산업안전보건), 미얀마(직업능력개발)
'20	라오스(직업능력개발), 스리랑카(고용서비스), 페루(고용서비스)
'19	라오스(직업능력개발), 스리랑카(고용서비스), 페루(고용서비스)
'18	라오스(직업능력개발), 스리랑카(고용서비스), 페루(고용서비스)
'17	라오스(직업능력개발), 스리랑카(고용서비스), 페루(고용서비스)
'16	베트남(직업훈련), 캄보디아(직업훈련), TVET 국제포럼
'15	베트남(고용서비스 정책), 몽골(산안법 하위규정 개정), 캄보디아(근로기준 개선)
'14	베트남(고용법 하위법령 제정), 몽골(산안법 개정), 우즈베크(직업분야 마스터플랜)
'13	베트남(고용법 제정), 몽골(인력수급전망시스템 구축), 미얀마(산안법 제정)
'12	베트남(고용법 제정), 필리핀(산업안전보건분야), 스리랑카(직업능력개발분야)

- '17년부터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사업, 직업훈련분야 역량강화 사업 등 우리나라의 발전모델·시스템을 개도국에 전수·확산하는 공공행정 ODA 사업 강화
 - △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베트남('17~'20년, 34억원), 캄보디아('18~'21년, 34억원), 몽골('19~'22년, 30.5억원))
 - △ 개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21년~'23년, 라오스, 아제르바이잔, 필리핀 등 3개국 대상, 23.5억원), △ ASEAN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역량강화(연수)('19년~'23년, 10억원), △ ASEAN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역량강화(학위)('20년~'21년, 14.6억)
 - △ 베트남 호치민 산업안전보건 교육역량강화 사업('20년~'22년, 30억원)

<한-ILO 협력사업>

- '00년 한·일 노동장관 『공동사업』 실시 합의
- '02년 ILO/한·일 『아동노동』 공동세미나 개최
- '03년 정의용 대사, ILO 집행이사회 의장 선출을 계기로 한-ILO 협력사업 양해각서 체결(양기관간 지원규모 및 범위 확대 합의)
- '04년 ~ '14년 매년 한-ILO 협력사업 관련 약정(LoA) 체결 및 사업 점검·평가를 위한 집행위원회 및 사업점검회의 개최
- '15년부터 3년 단위로 한-ILO 협력사업(중기) 협력 약정(LoA) 체결 및 사업점검회의 개최
- '18년~'20년 한-ILO 협력사업(중기) 협력 약정(LoA) 체결
- '19년 ILO 본부의 사회적 경제 분야 사업 수요에 따라, “아시아의 사회적 경제 정책 역량 강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
- * 사업 기간 : 2년('19.4.~'21.3) / 사업 예산 : 60만불(연간 30만불)
- '21년~'23년 한-ILO 협력사업(중기) 협력 약정(LoA) 체결
- '24~'26년 한-ILO 협력사업(중기) 협력 약정(LoA) 체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353	7,615	5,671	3,803	2,320

<한-ILO 협력사업>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92	2,236	4,211	6,279	6,279

② 사업추진체계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 사업시행방법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직접수행, 출연
 - 개도국 직업훈련분야 역량강화: 출연
 - 개도국 산업안전보건분야 역량강화: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개도국 직업훈련분야 역량강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재출연)
 - 개도국 산업안전보건분야 역량강화: 근로복지공단
- 사업수혜자 : 개발도상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출연	근로복지 공단	100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5항(정부는 예산의 범 위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할 수 있다.)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1,780	10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국가나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출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150	1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3조(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 한-ILO 협력사업>

- 사업시행방법: 해외경상이전
- 사업시행주체: ILO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개도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25) 3,803백만원 → (‘26) 2,320백만원, 1,483백만원 감액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

(‘25) 590백만원 → (‘26) 440백만원, 150백만원 감액

- (요구) 정책자문 지원사업 감소(3→2개 사업)로 ‘24년 대비 ▲25.4%

○ (산출)

- ①정책자문 300백만원(150백만원×2개국(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②제도구축지원사업 정책협의 및 자료 발간 70백만원, ③사업평가 70백만원

□ 개도국 직업훈련분야 역량강화

(‘25) 3,213백만원 → (‘26) 1,780백만원, 1,433백만원 감액

① 개도국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기능경기 역량강화(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24~‘26)

(‘25) 600백만원 → (‘26) 6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다년도 사업(3년)으로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 요구(전년동)
- (산출) 전문가 파견 84백만원, 초청연수 416백만원, 워크숍 70백만원, 연구용역비 30백만원

② 개도국 직업기술교육훈련 정책역량강화 석사과정 (계속)

(‘25) 359백만원 → (‘26) 600백만원, 241백만원 증액

- (요구)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 요구(241백만원 증액)
- (산출) 연수운영비 233백만원, 연수생 지원비 367백만원

③ 캄보디아 귀국 이주노동자 노동시장 재통합 지원사업(‘24~‘27)

(‘25) 1,890백만원 → (‘26) 500백만원, 1,390백만원 감액

- (요구) 전년대비 1,390백만원 감액
- (산출) 전문가 투입 380백만원, 직업훈련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 109백만원, 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5백만원, 행정지원 6백만원,

④ 네팔 해외취업 근로자 직업역량 강화(‘25~‘28)

(‘25) 364백만원 → (‘26) 80백만원, 284백만원 감액

- (요구) 전년대비 284백만원 감액
- (산출) 훈련시설 인프라 구축 80백만원

□ 신규개도국 산업안전보건분야 역량강화

(‘26) 100백만원, 100백만원 증액

① 신규파키스탄 산재근로자 재활보조기 제작기술 역량강화

(‘26) 100백만원, 100백만원 증액

- (요구) 수원국 요구에 부합한 사업 발굴 및 지원
- (산출) 인건비 17백만원, 전문가 파견 및 역량강화 70백만원, 경비 간접비 13백만원

2) 한-ILO 협력사업:

(‘25) 6,279백만원 → (‘26) 6,279백만원, 전년동

- (요구) ILO 정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ILO 내 한국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 규모 유지 필요 → 기존사업 내실화 및 신규사업 협의

- (산출) 455만불×1,380원=6,279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325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5,896천원 1.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지원 정책협의(25,896) 가. 자료발간 : 35,900원*180부*4개국=25,848 나. 단수조정 : 48,000원= 48 ○ 일반용역비(210-14) : 243,000천원 1. ASEAN 발전경험 및 노하우 전수사업(243,000) 가. 항공료 : 1,500,000원*60명=90,000 나. 숙박비 : 300,000원*60명*3일=54,000 다. 식비 : 30,000원*100명*3일=9,000 라. 강사료 : 10,000,000원*1식=10,000 마. 교재유인 및 임차료, 시설설치 등 : 80,000,000원*1식=80,000 ○ 국외업무여비(220-02) : 39,543천원 1.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지원사업 추진 정책협의(39,543) 가. 항공료 : 1,150,000원*4명*4회=18,400 나. 일비 : 36,570원*5명*6일*4회=4,388 다. 숙박비 : 128,990원*5명*4일*4회=10,319 라. 식비 : 53,636원*5명*6일*4회=6,436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4,561천원 1.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지원사업 추진 정책협의(4,561) 가. 협의추진 비용(4,561) 1)업무추진비 : 22,500원*25명*4개국*2회=4,500 2)단수조정 : 61,000원=61 ○ 일반연구비(260-01) : 370,000천원 1.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370,000) 가.고용노동분야제도구축지원정책컨설팅(300,000) 1)인건비((73,606) 가)책임연구원 : 3,622,585원*1명*10개월*21%*2개국=15,215 나)공동연구원 : 2,777,750원*3명*10개월*22%*2개국=36,666 다)연구보조원 : 1,856,832원*1명*9개월*22%*2개국=21,725 2)경비(226,396) 가)전문가파견(67,600) 1>항공료(전문가) : 2,000,000원*5명*1회*2개국=20,000 2>항공료(행정지원) : 2,000,000원*2명*1회*2개국=8,000 3>체재비(전문가) : 230,000원*5명*6일*1회*2개국=13,800 4>체재비(행정지원) : 175,000원*2명*6일*1회*2개국=4,200 5>통역비 : 1,000,000원*4일*1회*2개국=8,000 6>기타운영비(번역비, 인쇄비 등) : 6,800,000원*1회*2개국=13,600 나)현지세미나(21,000) 1>통역비 : 1,000,000원*2일*1회*2개국=4,000 2>번역비 : 1,000,000원*2일*1회*2개국=4,000 3>전문가활동수당 : 200,000원*5명*2일*1회*2개국=4,000 4>대관료 : 1,500,000원*2일*2개국=6,000 5>기타운영비 : 1,500,000원*2개국=3,000 다)초청연수(78,400) 1>항공료 : 2,000,000원*8명*1회*2개국=32,000 2>체재비 : 150,000원*8명*5일*2개국=12,000 3>통역비 : 1,000,000원*5일*2개국=10,000	8,599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5,896천원 1.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지원 정책협의(25,896) 가. 자료발간 : 35,900원*180부*4개국=25,848 나. 단수조정 : 48,000원= 48 ○ 일반용역비(210-14) : 243,000천원 1. ASEAN 발전경험 및 노하우 전수사업(243,000) 가. 항공료 : 1,500,000원*60명=90,000 나. 숙박비 : 300,000원*60명*3일=54,000 다. 식비 : 30,000원*100명*3일=9,000 라. 강사료 : 10,000,000원*1식=10,000 마. 교재유인 및 임차료, 시설설치 등 : 80,000,000원*1식=80,000 ○ 국외업무여비(220-02) : 39,543천원 1.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지원사업 추진 정책협의(39,543) 가. 항공료 : 1,150,000원*4명*4회=18,400 나. 일비 : 36,570원*5명*6일*4회=4,388 다. 숙박비 : 128,990원*5명*4일*4회=10,319 라. 식비 : 53,636원*5명*6일*4회=6,436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4,561천원 1.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지원사업 추진 정책협의(4,561) 가. 협의추진 비용(4,561) 1)업무추진비 : 22,500원*25명*4개국*2회=4,500 2)단수조정 : 61,000원=61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번역비 : 800,000원*5일*2개국=8,000 5>전문가활동수당 : 500,000원*5명*1회*2개국=5,000 6>기타운영비 : 5,700,000원*2개국=11,400 라)화상회의 및 세미나 : 1,812,500원*8회*2개국=29,000 마) 원고료 : 15,198,000원*2개국=30,396 3)단수조정 : -2,000원=△2 나.개도국고용노동분야제도구축지원사업평가 :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70,000		○ 정책연구비(260-02) : 70,000천원 1. 개도국고용노동분야제도구축지원사업평가 : 4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70,00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50,000천원 1.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지원(150,000) 가. 고용노동분야제도구축지원정책컨설팅(150,000) 1) 인건비(36,674) 가)책임연구원: 3,705,904원*1명*9.5개월*22%=7,745 나)연구원: 2,841,638원*3명*9.5개월*22%=17,817 다)보조연구원: 1,899,539원*1명*9개월*65%=11,112 2) 경비(88,826) 가)전문가 파견(31,922) 1>항공료 : 1,800,000원*7명=12,600 2>체재비 : 287,100원*4명*5일=5,742 3>체재비(행정지원) : 501,700원*1명*5일+287,100원*2명*5일=5,380 4>통역비 : 900,000원*4일=3,600 5>번역비 : 140원*15,000자=2,100 6>교통료 : 500,000원*5일=2,500 나)현지 세미나(3,100) 1>장소 임차료 : 1,000,000원*1일=1,000 2>통역비 : 900,000원*1일=900 3>식비, 다과비 등 : 30,000원*20명=600 4>유인물 제작 : 600,000원*1회=600 다)초청연수(33,100) 1>항공료 : 1,800,000원*6명=10,800 2>체재비 : 250,000원*6명*5일=7,500 3>통역비 : 900,000원*5일=4,500 4>번역비 : 140원*20,000자=2,800 5>임차료 : 700,000원*5일=3,500 6>유인물 제작 : 50,000원*20부=1,000 7>전문가활동수당 : 200,000원*10명=2,000 8>기타 운영비 : 1,000,000원*1회=1,000 라)온라인 세미나(6,200) 1>통역비 : 900,000원*1명*2일=1,800 2>번역비 : 140원*10,000자*2회=2,800 3>전문가활동수당 : 200,000원*2시간*2명*2회=1,600 마)최종보고회(3,160) 1>통역비 : 900,000원*1명*1일=900 2>번역비 : 140원*10,000자=1,400 3>식비, 다과비 : 30,000원*12명=360 4>인쇄비 및 유인비 : 500,000원*1회=500 바)기타 자문활동 및 최종보고서(11,344) 1>번역비 : 140원*60,000자=8,400 2>책자 등 유인비 : 2,943,787원*1회=2,944 3)연구개발비(20,000) 4)일반관리비(4,500) ○ 국제부담금(340-02) : 6,279,000천원 가. 한-ILO 협력사업 : \$4,550*1,380원=6,279,000 ○ 사업출연금(350-02) : 3,363,000천원 1.개도국고용노동분야제도구축지원(150,000) 가.개도국정책자문사업(인도네시아,산안법)(150,000) 1)전문가파견(40,000) 가)항공료 : 2,500,000원*6명=15,000 나)체재비 : 300,000원*6명*5일=9,000 다)외부전문가 위촉수당 : 2,187,500원*4명*8개월*0.22=15,400 라)보험료 : 100,000원*6명=600 2)초청연수(33,000) 가)항공료 : 1,500,000원*5명=7,500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나)체제비: 숙박비250,000원*5명*4박+식비45,000원*5명*5일=6,125 다)연수운영비: 통역비 1,500,000원*5일+임차료 2,000,000원*5일+인쇄비 1,875,000원=19,375 3)세미나 개최(20,000) 가)통역비: 1,500,000원*3일=45,000 나)번역비: 1,000,000원*1식=1,000 다)임차료: 1,500,000원*3일*3회=13,500 라)국내여비: 20,000원*5명*10회=1,000 4)사업관리(57,000) 가)번역비: 14,000,000원*1식=14,000 나)국내여비: 75,800원*3인*24회+20,000원*3인*10.7회=6,100 다)국외여비: 항공료1,500,000원*7명+체제비268,000원*7명*5일+보험60,000원*7명=20,300 라)평가회의: 200,000원*20회=4,000 마)업무협의 등: 200,000원*10회=2,000 바)외부전문가 위촉수당: 200,000원*20명*2.65회=10,600 2.개도국직업훈련분야역량강화(3,213,000) 가.개도국기술격차해소를위한기능경기역량강화(600,000) 1)전문가파견(254,340) 가)직접인건비: 컨설팅전문가(330,000원*1명*17일*2개국)+직종전문가(330,000원*8명*17일*2개국)+통역(200,000원*9명*17일*2개국)=162,180 나)항공료: 1,500,000원*9명*2개국=27,000 다)체제비: 숙박비 (120,000원*9명*16박*2개국)+일식비(100,000원*9명*17일*2개국)=65,160 2)초청연수(204,500) 가)직접인건비: 직종별전문가(400,000원*5명*14일*2개국)+통역(400,000원*5명*14일*2개국)=112,000 나)항공료: 1,250,000원*10명*2개국=25,000 다)체제비: (숙박비100,000*10명*13박*2개국)+(식비50,000*10명*14일*2개국)=40,000 라)과정운영비: 교재제작((1,700,000원*5직종*1개국)+(2,000,000원*5직종*2개국))+훈련장소임차((1,000,000원*2개*1개국)+(1,000,000원*5개*1개국))+피복(100,000원*10명*2개국)=27,500 3)훈련재료(61,600) 가)공구비: (1,200,000원*8직종*1개국)+(1,500,000원*8직종*1개국)=21,600 나)재료비: 2,500,000원*8직종*2개국=40,000 4)워크숍(45,100) 가)항공료: (1,250,000원*8명*1개국)+(1,250,000원*6명*1개국)=17,500 나)운영비: 강사수당(200,000원*8명*1개국)+(200,000원*6명*1개국))+행사장소임차((5,000,000원*1회*1개국)+(3,000,000원*1회*1개국))+숙식비((200,000원*8명*6일*1개국)+(200,000원*6명*6일*1개국))=27,600 5)사업관리(34,000) 가)자료제작: 3,500,000원*2식*2개국=14,000 나)번역료: 10,000,000원*1식*2개국=20,000 6)단수조정: 460,000원=460 나.ASEAN직업기술교육훈련(TVET)역량강화(학위과정)(359,000) 1)연수운영비(126,000) 가)강사료(보조강사포함): 5,400,000원*7과목=37,800 나)교재개발비: 5,000,000원*1과목=5,000 다)연구비: 20,000,000원*1식=20,000 라)인건비: 3,000,000원*8개월=24,000 마)기타운영비(집기,소모품등): 2,000,000원*8개월=16,000 바)출장비및회의비(임시등): 16,000원*1식=16,000 사)시설사용료: 5,500,000원*1식=5,500 아)예비비등: 339,000,000원*0.5%=1,695 자)단수조정: 5,000원=5 2)연수생 지원비(233,000) 가)항공료: 1,650,000원*20명*1회=33,000 나)체제비(생활비): 500,000원*20명*8개월=80,000 다)기숙사비: 1,500,000원*20명*2학기=60,000 라)기타 학생지원비(산업현장 견학 등): 60,000,000원*1식=60,000 다.개도국귀국이주노동자노동시장재통합지원(캄보디아)(1,890,000)	다)연수운영비: 통역비 1,500,000원*5일+임차료 2,000,000원*5일+인쇄비 1,200,000원+통역비 5,000,000원=23,700 3)세미나 개최(14,500) 가)통역비: 1,500,000원*3일=4,500 나)번역비: 1,000,000원*1식=1,000 다)임차료: 1,500,000원*3일*2회=9,000 4)사업관리(47,874) 가)번역비: 14,000,000원*1식=14,000 나)국내여비: 75,800원*3인*10회=2,274 다)국외여비: 항공료1,500,000원*8명+체제비268,000원*8명*5일+보험60,000원*8명=23,200 라)평가회의: 200,000원*20회=4,000 마)업무협의 등: 200,000원*10회=2,000 바)외부전문가 위촉수당: 200,000원*3명*4회=2,400 5)단수조정(26) 2.개도국직업훈련분야역량강화(1,780,000) 가.개도국기술격차해소를위한기능경기역량강화(600,000) 1)전문가파견(83,400) 가)직접인건비: (전문가수당 330,000원*6명*5일*2개국)+(통역수당 400,000원*6명*5일*2개국)=43,800 나)항공료: (항공 및 보험 1,500,000명*6명*2개국)=18,000 다)체제비: (체제비 207,000원*6명*7일*2개국)=17,388 라)운영비: (기타 운영비 1,000,000원*2개국)+(사무 및 의료용품 206,000원*2개국)+(국내운임 150,000*6명*2개국)=4,212 2)초청연수(416,200) 가)직접인건비: (강사수당 400,000원*5명*5일*2개국*2회)+(강사수당 280,000원*5명*5일*2개국*2회)+(통역수당 400,000원*5명*10일*2개국*2회)=148,000 나)항공료: (항공 및 보험 1,500,000원*15명*2개국*2회)=90,000 다)체제비: (숙박 100,000원*15일*15박*2회)+(식비 90,000원*15명*16일*2회)=88,200 라)운영비: (문화체험 50,000원*2회*15명*2개국*2회)+(행사보험 500,000원*2개국*2회)+(회의비 1,000,000원*2개국*2회)+(사무 및 의료용품 1,000,000원*2개국*2회)+(책자인쇄, 현수막 제작 1,000,000원*2개국*2회)+(공항공업샌딩 150,000원*5직종*4회)+(숙소훈련장이동 50,000원*5직종*14일*2회)=30,000 마)훈련재료비: (훈련재료비 3,000,000원*5직종*2개국*2회)=60,000 3)워크숍 개최(70,400) 가)직접인건비: (통역수당 400,000원*3명*7일)+(강연비 1,500,000원*2개국)=11,400 나)항공료: (항공 및 보험 1,500,000원*10명)=15,000 다)체제비: (숙박 및 식비 300,000원*10명*7일)=21,000 라)운영비: (국내운임 1,000,000원*7일)+(문화체험 50,000원*2회*10명*3일)+(회의비 1,000,000원*2개국)+(책자인쇄, 현수막 제작 500,000원*2개국)=13,000 마) 임차비: 10,000,000원=10,000 4) 연구운영비: 30,000,000원=30,000 나.개도국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역량강화(학위과정)(600,000) 1)연수운영비(233,400) 가)강사료(보조강사포함): 5,400,000원*7과목*2학기=75,600 나)교재개발비: 5,000,000원*2과목=10,000 다)연구비: 10,000,000원*1식=10,000 라)인건비(사업조교): 3,000,000원*12개월=36,000 마)기타운영비(집기,소모품등): 5,000,000원*4개학위=20,000 바)출장비및회의비: 32,000,000원*1식=32,000 사)시설사용료: 30,000,000원*1식=30,000 아)예비비등: 600,000,000원*3.3%=19,800 2)연수생 지원비(366,600) 가)항공료: 2,000,000원*20명*1회=40,000 나)체제비(생활비): 500,000원*20명*12개월=120,000 다)기숙사비: 2,000,000원*20명*2학기=80,000 라)기타 학생지원비(산업현장 견학 등): 126,600,000원*1식=126,600 다.개도국귀국이주노동자노동시장재통합지원(캄보디아)(500,000)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정책관리자 및 실무지역량강화(394,302) 가)정책관리자 초청연수(160,000) 1>체제비: 3,000,000원*40명=120,000 2>운영비: 1,000,000원*40명=40,000 나)시스템개선 컨설팅 및 자문(314,942) 1>전문가인건비: PM(270,000원*1명*22일*12달)+PAO(120,000원*1명*22일*12달)=102,960 2>체제비: PM(153,400원*365일)+PAO(153,400*1명*365일)=111,982 다) 귀국 이주노동자 지원 서비스 운영(19,360) 1>서비스 기획조사: 10,000,000원*1식=10,000 2>담당자 수당: 780,000원*1명*12달=9,360 2)직업훈련 및 창업 프로그램 개발(242,431) 가)전문가 인건비: 220,000원*1명*22일*12달=58,080 나)전문가 체제비: 153,400원*1명*365일=55,991 다)담당자 수당: 780,000원*6명*12달=56,160 라)창업 컨설팅: 15,000,000원*1식=15,000 마)직업훈련과정 운영비: 57,200,000원*1식=57,200 3)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1,181,500) 가)공간인테리어: 50,000,000원*8개소=400,000 나)기자재및장비: PC컴퓨터(2,500,000원*160대)+소프트웨어(6,00,000원*5종)+기타 기자재 및 장비(1,000,000원*10개*8개소)=510,000 다)역량강화교육: 200,000원*20일*5명=20,000 라)기타행정비용(251,500) 1>기자재운송료, 통역비: 201,500,000원*1식=201,500 2>업체 인력 항공료, 체제비 등: 10,000,000원*5명=50,000 4)성과관리 및 행정지원(72,534) 가)성과관리: 70,000,000원*1식=70,000 나)기타 행정비용: 2,534,000원*1식=2,534 5) 단수조정: -767,000원=△767 라. 해외취업 근로자 직업역량 강화(네팔)(364,000) 1)해외취업 근로자 역량 강화(183,000) 가) 훈련시설 역량강화 컨설팅(39,560) 1> 인건비: 국내(270,000원*1명*50일)+국외(270,000원*1명*22일*3달)=31,320 2>항공료: 2,000,000원*1명=2,000 3>체제비: 2,080,000원*3달=6,240 나)현지 수요조사 및 분석(125,112) 1> 인건비: 270,000원*4명*22일*4달=95,040 2>체제비: 153,400원*4명*20일=12,272 3>통역비: 65,000원*1명*20일=1,300 4>항공권: 2,000,000원*4명=8,000 5>기타운영비: 8,500,000원*1식=8,500 다)강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18,850) 1> 인건비: 270,000원*1명*47일=12,690 2>항공료: 2,000,000원*1명=2,000 3>체제비: 2,080,000원*1명*2달=4,160 2)정책관리자 역량 강화(180,440) 가) 정책 개선 컨설팅(86,000) 1> 인건비: 270,000원*2명*120일=64,800 2>항공료: 2,000,000원*2명=4,000 3>체제비: 2,080,000원*2명*4달=16,640 나) 관리자 초청연수(95,000) 1>항공료: 2,000,000원*10명=20,000 2>체제비: 250,000원*10명*14일=35,000 3>연수및기획경비: 20,000,000원*1식=20,000 4>강사및통역수당: 20,000,000원*1식=20,000 3)단수조정: 38,000원=38		1)전문가 투입(380,115) 가)파견전문가 인건비: (PM 270,000원*1명*22일*11달)+(직업훈련팀장 220,000원*1명*22일*11달)+(PAO 120,000원*1명*22일*11달)=147,620 나)파견체제비: (PM 218,400원*30일*11달*70%)+(직업훈련팀장, PAO 190,400원*2명*30일*11달*70%)=138,415 다)현지전문가 인건비: 1,120,000원*7명*12달=94,080 2) 직업훈련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108,840) 가)직업훈련 강사비: 700,000원*6개월*9개과정=37,800 나)직업훈련 재료비: 5,600,000원*2회*5개과정=56,000 다)직업훈련 운영비: 280,000원*2회*9개과정=5,040 라)창업 컨설팅 운영: 10,000,000원*1식=10,000 3) 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5,000) 가)귀국 이주노동자 지원 서비스 운영:5,000,000원*1식=5,000 4) 행정지원(6,045) 가)기타 행정비용: 6,045,000원*1식=6,045 라. 해외취업 근로자 직업역량 강화(네팔)(80,000) 1)해외취업 근로자 역량 강화(80,000) 가) 훈련시설 인프라 구축: 80,000,000원*1식=80,000
			3. 개도국 산업안전보건분야 역량강화(100,000) 가. 산재근로자 재할보조기 제작기술 역량강화(파키스탄)(100,000) 1) 인건비(17,360) 가) 책임연구원: 310,000원*140일*1명*40%=17,360 2) 경비(69,657) 가) 전문가파견(48,657) 1>항공료(외부 및 내부연구원): 2,000,000원*5명*2회=20,000 2>체제비(외부 및 내부연구원): 281,520원*7일*5명*2회=19,706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교통비: 220,800원*7일*2회=3,091 4>현지행사비: 1,380,000원*2회=2,760 5>자문회의비: 310,000원*5명*2회=3,100 나) 역량강화(교육 커리큘럼 개발)(21,000) 1> 전문가 자문활동비(보조기 등 재할분야 전문가): 310,000원*10명*4회=12,400 2> 회의운영비(대관료, 회의비 등): 500,000원*12회=6,000 3> 국내여비: 200,000원*13회=2,600 3) 경비간접비: (17,360,000원+69,657,600원)*15%=13,053 4) 단수조정: -70,240원(-7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임금채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	목표	75.1	78.5	81.5	84.3	84.5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을 고려하여 평균실적(83.6%) 대비 0.4%p 상향	(지도해결근로 자수+대지급금 지급근로자수+ 채불사업주용 자지원근로자 수)/채불근로자 수*100	내부 전산시스템
	실적	81.9	83.9	85.0	-	-			
	달성도	109.1	106.9	104.3	-	-			
②신고사건 기한내 처리율(%)	목표	85.8	89.0	-	-	-	-	신고사건 기한 내처리건수/신 고사건 총 처리 건수*100	내부 전산시스템
	실적	89.6	95.5	-	-	-			
	달성도	104.4	107.3	-	-	-			
③용자지원율(%)	목표	93.0	93.4	-	-	-	-	생활안정자금 용자실행액 / 생활안정자금 용자예산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실적	96.3	97.1	-	-	-			
	달성도	103.5	104.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 강화

- 개도국의 기능경기대회 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한국의 기능경기시스템 모델을 전수하고 동시에 기능강국으로서 국제사회 위상 제고
- 우리나라의 직업기술훈련분야 발전경험과 기술을 아세안 국가에 전수, 아세안의 숙련 기술인력 양성 촉진 및 정책교류 활성화
- 우리나라의 직업기술훈련분야 발전경험과 기술을 아세안 국가에 전수, 아세안의 숙련 기술인력 양성 촉진 및 정책교류 활성화

○ 한-ILO 협력사업

- 개도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 도모(국가직무기술표준 개발 및 상호기술자격인정 촉진,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등), 양질의 일자리 증진 도모
- 국제기구 다자협력 플랫폼을 활용하여 한국형 모델·시스템 확산, 국가 간 협력기반 확대
- 국가 위상에 걸맞는 선진 공여국으로서 ILO 내 역할 강화 및 국제사회 위상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 수원국 요청을 토대로 지원대상 국가 발굴 → 무상원조 시행계획 외교부 제출 →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외교부) → 기재부 예산 심의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총리 주관) 및 국회 최종 의결

<한-ILO 협력사업>

- ILO와 사업 수요 발굴·협의(정례협의회 등) → ILO에 사업제안서 제출 가이드라인 송부 → ILO의 사업제안서 제출 → 제안서 검토 및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약정서(LoA)체결) → 기여금 송금 → 협력사업 수행 → 사업 점검 및 평가 (사업점검회의 개최, 보고서 제출 등)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① '23년 상임위 결산보고서

-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전년도 교부금 대부분이 이월되었음에도, 1~2월에 출연금을 전액교부하여 집행부진 누적을 초래하였음

② '24년 상임위 결산보고서

- ①ODA 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집행 과정 관리감독 필요, ②기재부 예산집행 지침을 준수하고, 행사 통·폐합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미흡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555	-	7,555	7,675	7,585	100	98.8	-	90
2023	9,961	-	9,961	9,961	9,961	100	100	-	-
2024	10,175	-	10,175	10,175	9,361	92	86.8	16	798
2025	10,325	-	10,325	10,341	10,314	99.9	99.9	-	1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 사유 및 불용사유 · (이월) 없음 · (불용) 수원국(미얀마) 정세 불안으로 사업종료됨에 따라 90백만원 불용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사유 · (이월) 없음 · (불용) 없음
2024	- 이월 사유 및 불용사유 · (이월)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16백만원 이월 · (불용) ①스리랑카 정부의 공식사업 중단 요청 등으로 763백만원 불용, ②기타 집행잔액 35백만원 불용
2025	- 이월 사유 및 불용사유 · (이월) 없음 · (불용) ①기타 집행잔액 11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해당없음)

사 업 명						
(52)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3051-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4	기획조정실		080	08E
명칭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고용노동부)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51	308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외국인력관리지원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외국인 취업자 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외국인력 상담센터	소관부처	실·국·과(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 시설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 수급대응TF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7,554	9,195	9,195	11,499	13,837	4,642	50.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934	7,954	7,554	0	400	9,195	9,195	8,989	0	206	13,837
· 외국인취업자관리	4,163	4,183	3,783	0	400	5,073	5,073	4,867	0	206	5,229
· 외국인력상담센터	1,971	1,971	1,971	0	0	2,022	2,022	2,022	0	0	2,030
·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1,800	1,800	1,800	0	0	1,800	1,800	1,800	0	0	2,900
·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0	0	0	0	0	300	300	300	0	0	3,6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외국인취업자관리)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 함으로써 내국인 일자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력수급을 조절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
- (외국인력상담센터)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화상담(콜센터)을 통해 신속히 고충을 해결하도록 지원
-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역 특성에 맞는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대상 체류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용비용 일부 지원
-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주거시설 설치 및 숙소 개보수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7조, 제21조, 제28조 및 시행령 제31조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실업증가 등 고용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
 3.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제공사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외국인취업자관리>

- '02. 7월: 외국인력 제도개선 방안 마련 후, 국무조정실 기획단 설치·운영
- '03. 8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제6967호)
- '04. 8월: 고용허가제 시행(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 '07. 1월: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외국인력제도 고용허가제로 단일화
- '07. 3월: 외국국적 동포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방문취업제 시행
- '09. 5월: 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 취업등록제 시행
- '12. 4월: 외국인근로자 배정방식 '점수제' 도입
- '12. 7월: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시행
- '19. 1월: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도 고용보험(고안·직능)을 당연가입하도록 개정
- '24.12월: 2025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 13만명 결정
- '25.12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운영

<외국인력상담센터>

- '10.10월: 국정감사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시스템 부재 지적(환노위)
- '10.12월: 외국인력 콜센터 설치 등 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보고
- '11. 7월: 경기 안산시에 외국인력상담센터 개소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 '23.10월: 2024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결위 증액 논의를 통해 신설
- '24. 2월: 9개 지자체와 지원약정 체결[인천, 대구, 광주, 경남(창원, 김해, 양산), 충남, 부산, 전북]
- '24. 3월: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운영
- '26. 1월: 지원 개소 확대(9→19개소)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 '24.12월: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사업 신규 편성(기숙사 2개소 건립)
- '25. 1월: 사업 운영(경남 김해시, 사천시)
- '25.12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추가 편성(숙소 개보수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외국인취업자관리) '04년~
(외국인력상담센터) '11년~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24년~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2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645	4,641	7,934	9,195	13,83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외국인취업자관리) 직접,
(외국인력상담센터) 위탁,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보조(지자체)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2,900 백만원	5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 시설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3,678 백만원	25~4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외국인취업자관리: ('25) 5,073 → ('26) 5,229백만원, 증 156백만원(+3.1%)

① 외국인력제도운영: ('25) 480 → ('26) 465백만원 (감 15백만원)

- (요구)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운영 등 고용허가제 정책 추진을 위한 운영 예산

- (산출)

- * 매뉴얼, 법령집, 리플릿, 안내책자 제작 등 117백만원 (감 7백만원)

· 매뉴얼, 법령집 등 제작 89백만원(10,000원x8,900부), 감 7백만원

· 리플릿, 안내책자 등 제작 20백만원[(600원x20,000부)+(4,000원x2,000부)]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운영자료 제작 4백만원(10,000원x400부)

· 국가별 문화행사 지원 4백만원(1,200,000원x4개국)

-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등 공고 및 운영 49백만원 (감 8백만원)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등 공고 36백만원[(6,000,000원x2개x2회)+(3,000,000원x2개x2회)], 감 8백만원

·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회의수당 6백만원(100,000원x10명x6회)

·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운영비 7백만원

[(30,000원x23명x2회)+(30,000원x45명x2회)+(30,000원x23명x2회)+(30,000원x18명x2회)]

- * 공공요금 5백만원 및 임차료 15백만원

- * 송출국 관리·점검 등 57백만원

- * 외국인근로자 업무부서 자산지원 42백만원(900,000원x48개소)

- * 외국인력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 30백만원(고용허가제 10백만원+지역정착 20백만원) (순증)

- * 외국인력정책 연구분석 150백만원 (감 30백만원)

② 외국인력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25) 558 → ('26) 548백만원 (감 10백만원)

- (요구) 외국인력 체류 규모 지속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 해소를 위해 이해관계자 및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 활성화, 사업장 변경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전문가 현장조사 등 지속 지원

- (산출)

- * 외국인사업장 지도점검 223백만원 (증 20백만원)

· 사업장지도점검여비 190백만원(4,750회x40,000원), 증 10백만원

· 사업주, 근로자, 인권단체 등 간담회(업무추진비) 33백만원(12,000원x15명x182회), 증 10백만원

- * 권익보호협의회 및 사업장변경 분쟁예방지원 325백만원 (감 30백만원)
- 권익보호협의회 등 회의수당 242백만원(230회x150,000원x7명), 감 30백만원
- 권익보호협의회 간담회 3백만원(10,000원x7명x48개관서)
- 전문가 지원단 현장조사 80백만원(400건x200,000원)

③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25) 4,035 → ('26) 4,216백만원 (증 181백만원)

- (요구) 지방관서 통역원 배치, 다국어상담원 상담에 따른 인건비(처우개선비 3.8%반영) 및 경비
- (산출)
 - * 지방관서 통역원 배치 1,830백만원(20,000원x11시간x52주x160명)
 - * 다국어상담원 인건비 1,881백만원 (증 152백만원)
 - 기본급 1,571백만원[2,111,489원('25년 기본급*1.038)x12개월x62명]
 - 급식비 108백만원[145,320원('25년 급식비*1.038)x12개월x62명]
 - 명절상여금 157백만원[2,533,787원(기본급 120%)x62명x1회]
 - 법정제수당 45백만원[60,744원('25년 법정제수당*1.038)x62명x12개월]
 - * 다국어상담원 복지포인트 31백만원(500,000원x62명)
 - * 다국어상담원 고용부담금 372백만원 (증 34백만원)
 - 사회보험료 216백만원(1,881,354,215원x11.47%), 증 22백만원
 - 퇴직충당금 156백만원(1,881,354,215원x8.33%), 증 12백만원
 - * 주말상담 경비구역 92백만원(220,000원x8개소x52주)
 - * 다국어상담원 업무 여비 10백만원(20,000원x62명x8.2회)

(2) 외국인력상담센터: ('25) 2,022→ ('26) 2,030백만원, 증 8백만원(+0.4%)

- (요구) 상담원 처우개선비(3%) 반영
- (산출) 인건비 1,765백만원 + 운영비 265백만원

① 인건비: ('25) 1,757 → ('26) 1,765백만원(증 8백만원)

- * 현지어상담원 1,535백만원(52명x2,460,400원x12월)
- * 전문상담원 160백만원(5명x2,660,090원x12월)
- * 시스템 및 통계관리원 70백만원[(2명x2,660,090원x12월)+6]

② 운영비: 265백만원(전년동)

- * 관리비 84백만원(7,000,000원x12월)
- * 상담시스템 유지보수 72백만원(6,000,000원x12월)
- * 공공요금 60백만원(5,000,000원x12월)
- * 물품구입 9백만원(750,000원x12월)
- * 안내사업 20백만원(100원x200,000장)
- * 고객만족도조사 20백만원

(3)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25) 1,800→ ('26) 2,900백만원, 증 1,100백만원(+61.1%)

- (요구) 지역별 외국인지원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원 대상 확대
- (산출) '25년: 11개소 x 200백만원 → '26년: [(13개소 x200백만원) + (6개소x50백만원)]

(4)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25) 300→ ('26) 3,678백만원, 증 3,378백만원(+1,126%)

- (요구)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비 요구,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숙소 개보수비 지원 사업 신설
- (산출) ① 공공주거시설 지원: 총 공사비 5,100백만원의 40% 반영
② 주거환경개선 지원: [임차(20백만원x147개소x45%) + 자가(20백만원x63개소x25%)]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외국인 취업자 관리 5,073 백만원	<외국인력제도운영 480백만원> 가. 매뉴얼, 법령집, 리플릿, 안내책자 제작 등 124백만원 · 매뉴얼, 법령집 제작 96백만원(15,000원x6,350부) · 리플릿, 안내책자 제작 20백만원[(600원x20,000부)+(4,000원x2,000부)]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운영자료 제작 4백만원(10,000원x400부) · 국가별 문화행사 지원 4백만원(1,200,000원x4개국) 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등 공고 및 운영 57백만원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등 공고 44백만원[(7,000,000원x2개x2회)+(4,000,000원x2개x2회)] ·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회의수당 6백만원(100,000원x10명x6회) ·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운영비 7백만원 [(30,000원x23명x2회)+(30,000원x45명x2회)+(30,000원x23명x2회)+(30,000원x18명x2회)] 다. 공공요금 5백만원 및 임차료 15백만원 라. 송출국 관리·점검 등 57백만원 마. 외국인근로자 업무부서 자산지원 42백만원(900,000원x48개소) 바. 외국인력정책 연구분석 180백만원(100백만원+80백만원) <외국인력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558백만원> 가. 외국인사업장 지도점검 203백만원 · 사업장지도점검 여비 180백만원(4,500회x40,000원) · 사업주, 근로자, 인권단체 등 간담회 23백만원(12,000원x15명x130회) 나. 권익보호협의회 및 사업장변경 분쟁예방지원 220백만원 · 사업장변경 소위원회 운영 140백만원(200명x100,000원x7명) · 전문가 지원단 현장조사 80백만원(400건x200,000원), 다. 권익보호협의회 운영 135백만원 · 권익보호협의회 회의수당 132백만원(48개소x98,000원x4회x7명) · 권익보호협의회 간담회 3백만원(10,000원x7명x48개소)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4,035백만원> 가. 지방관서 통역원 배치 1,830백만원(20,000원x11시간x52주x160명) 나. 다국어상담원 인건비 1,729백만원 · 기본급 1,513백만원[2,034,190원('25년 기본급)x12개월x62명] · 급식비 104백만원[140,000원x12개월x62명] · 명절상여금 68백만원(550,000원x62명x2회) · 법정제수당 44백만원[58,520원x62명x12개월] 다. 다국어상담원 복지포인트 31백만원(500,000원x62명) 라. 다국어상담원 고용부담금 338백만원 · 사회보험료 194백만원(1,729,338,000원x11.22%) · 퇴직충당금 144백만원(1,729,338,000원x8.33%) 마. 주말상담경비용역 92백만원(220,000원x8개소x52주) 바. 다국어상담원 업무 여비 10백만원(20,000원x62명x12개월x1회) 사. 다국어상담가이드 매뉴얼 제작 5백만원(10,000원x500부)	<외국인력제도운영 465백만원> 가. 매뉴얼, 법령집, 리플릿, 안내책자 제작 등 117백만원 · 매뉴얼, 법령집 등 제작 89백만원(10,000원x8,900부) · 리플릿, 안내책자 제작 20백만원[(600원x20,000부)+(4,000원x2,000부)]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운영자료 제작 4백만원(10,000원x400부) · 국가별 문화행사 지원 4백만원(1,200,000원x4개국) 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등 공고 및 운영 49백만원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등 공고 36백만원[(6,000,000원x2개x2회)+(3,000,000원x2개x2회)] ·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회의수당 6백만원(100,000원x10명x6회) ·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운영비 7백만원 [(30,000원x23명x2회)+(30,000원x45명x2회)+(30,000원x23명x2회)+(30,000원x18명x2회)] 다. 공공요금 5백만원 및 임차료 15백만원 라. 송출국 관리·점검 등 57백만원 마. 외국인근로자 업무부서 자산지원 42백만원(900,000원x48개소) 바. 외국인력정책 연구분석 150백만원 사. 외국인력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 30백만원 · 고용허가제 만족도 10백만원+지역정착지원사업 만족도 20백만원 <외국인력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548백만원> 가. 외국인사업장 지도점검 223백만원 · 사업장지도점검 여비 190백만원(4,750회x40,000원) · 사업주, 근로자, 인권단체 등 간담회 33백만원(12,000원x15명x182회) 나. 권익보호협의회 및 사업장변경 분쟁예방지원 325백만원 · 권익보호협의회 등 회의수당 242백만원(230회x150,000원x7명) · 권익보호협의회 간담회 3백만원(10,000원x7명x48개관서) · 전문가 지원단 현장조사 80백만원(400건x200,000원)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4,216백만원> 가. 지방관서 통역원 배치 1,830백만원(20,000원x11시간x52주x160명) 나. 다국어상담원 인건비 1,881백만원 · 기본급 1,571백만원[2,111,489원('25년 기본급*1.038)x12개월x62명] · 급식비 108백만원[145,320원('25년 급식비*1.038)x12개월x62명] · 명절상여금 157백만원(2,553,787원('기본급120%)x62명x1회) · 법정제수당 45백만원(60,744원('25년 법정제수당*1.038)x62명x12개월) 다. 다국어상담원 복지포인트 31백만원(500,000원x62명) 라. 다국어상담원 고용부담금 372백만원 · 사회보험료 216백만원(1,881,354,215원x11.47%) · 퇴직충당금 156백만원(1,881,354,215원x8.33%) 마. 주말상담경비용역 92백만원(220,000원x8개소x52주) 바. 다국어상담원 업무 여비 10백만원(20,000원x62명x8.2회)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외국인력 상담센터 2,022 백만원	가. 인건비: 1,757백만원 · 현지어상담원 1,535백만원(52명×2,460,400원×12월) · 전문상담원 155백만원(5명×2,582,610원×12월) · 시스템 및 통계관리원 67백만원[(2명×2,582,610원×12월)+5] 나. 운영비: 265백만원 · 관리비 84백만원(7,000,000원×12월) · 상담시스템 유지보수 72백만원(6,000,000원×12월) · 공공요금 60백만원(5,000,000원×12월) · 물품구입 9백만원(750,000원×12월) · 안내사업 20백만원(100원×200,000장) · 고객만족도조사 20백만원	외국인력 상담센터 2,030 백만원	가. 인건비: 1,765백만원 · 현지어상담원 1,535백만원(52명×2,460,400원×12월) · 전문상담원 160백만원(5명×2,660,090원×12월) · 시스템 및 통계관리원 70백만원[(2명×2,660,090원×12월)+5] 나. 운영비: 265백만원 · 관리비 84백만원(7,000,000원×12월) · 상담시스템 유지보수 72백만원(6,000,000원×12월) · 공공요금 60백만원(5,000,000원×12월) · 물품구입 9백만원(750,000원×12월) · 안내사업 20백만원(100원×200,000장) · 고객만족도조사 20백만원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1,800 백만원	가. 9개소×200백만원=1,800백만원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2,900 백만원	가. (13개소×200백만원) + (6개소×50백만원) = 2,900백만원
외국인 근로자 공공주거 시설 지원 300 백만원	가. 공공주거시설 지원 · 설계비 300	외국인 근로자 공공주거 시설 지원 3,678 백만원	가. 공공주거시설 지원: 2,040백만원 · 공사비(5,100백만원) 40% = 2,040백만원 나. 주거환경개선 지원: 1,638백만원 · 임차(20백만원×147개소×45%) + 자가(20백만원×63개소×25%)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임금채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	목표	75.1	78.5	81.5	84.3	84.5	외부환경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3개년 평균 실적 대비 상향	(지도해결근로자수+ 대지급금채불근로자수 +채불사업주용 자지원근로자수)/ 채불근로자수*100	내부 전산시스템
	실적	81.9	83.9	85.0	-	-			
	달성도	109.1	106.9	104.3	-	-			
신고사건 기한내 처리율(%)	목표	85.8	89.0	-	-	-	-	신고사건 기한 내처리건수/신고 사건총처리건수*100	내부 전산시스템
	실적	89.6	95.5	-	-	-			
	달성도	104.4	107.3	-	-	-			
용자지원율(%)	목표	93.0	93.4	-	-	-		생활안정자금 용자실행액 / 생활안정자금 용자예산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실적	96.3	97.1	-	-	-			
	달성도	103.5	104.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2년도 업종별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69,000명(68,000+a) ○ 외국인근로자 체류현황: 373,980명(E-9 268,413명, H-2 105,567명) ○ 상담·안내업무 통역원 활용: 51개 고용센터 157명 ○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3,015개소, 주거시설 특별점검 200개소 ○ 고용허가제 관련 고용센터 민원 업무 처리: 412,067건 ○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내방상담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상담 365,524건(전화 316,833건, 내방 13,696건, 3자통화 등 34,995건)
2023	○ 2023년도 업종별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120,000명 ○ 외국인근로자 체류현황: 414,806명(E-9 310,825명, H-2 103,981명) ○ 상담·안내업무 통역원 활용: 51개 고용센터 152명 ○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3,005개소 ○ 고용허가제 관련 고용센터 민원 업무 처리: 371,912건 ○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내방상담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상담 406,443건(전화 353,618건, 내방 11,180건, 3자통화 등 41,645건)
2024	○ 2024년도 업종별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165,000명 ○ 외국인근로자 체류현황: 430,581명(E-9 337,279명, H-2 93,302명) ○ 상담·안내업무 통역원 활용: 46개 고용센터 140명 ○ 다국어상담원 채용: 26개 지청 57명 ○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3,000개소 ○ 고용허가제 관련 고용센터 민원 업무 처리: 353,650건 ○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내방상담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상담 432,911건(전화 371,585건, 내방 10,873건, 3자통화 등 50,453건) ○ 지역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 상담 93,859건, 한국어 등 교육 73,716건
2025	○ 2025년도 업종별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130,000명 ○ 외국인근로자 체류현황: 428,928명(E-9 343,632명, H-2 85,296명) ○ 상담·안내업무 통역원 활용: 42개 고용센터 136명 ○ 다국어상담원 채용: 28개 지청 58명 ○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8,000개소(목표) ○ 고용허가제 관련 고용센터 민원 업무 처리 ○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내방상담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상담 403,400건(전화 341,513건, 내방 10,416건, 3자통화 등 51,471건) ○ 지역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9개소) ○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을 통해 기숙사 2개소 건립 신규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외국인취업자 관리)** 고용관리 및 체류지원을 강화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조기 적응 및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 지방관서 통역 서비스 제공을 통해 현장 밀착형 체류지원 및 고용관리 강화
 -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고용허가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
-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의 신속한 상담을 지원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기업의 외국인력 활용에 기여
 - 3자 통화 서비스 활성화 등 상담환경 개선 및 언어별 상담원 상담역량 강화를 통해 통역 상담의 질 제고
 - 상담 인입콜 증대 및 응대율 제고를 통한 상담 품질 및 민원 만족도 제고
-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상담, 교육 및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
 - 지자체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시설 신설·확대를 유도하여 지역의 주요 인적자원인 외국인력에 대한 지자체의 체류지원 주도성을 강화
-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체류지원, 영세 사업주의 주거비 부담 감소 등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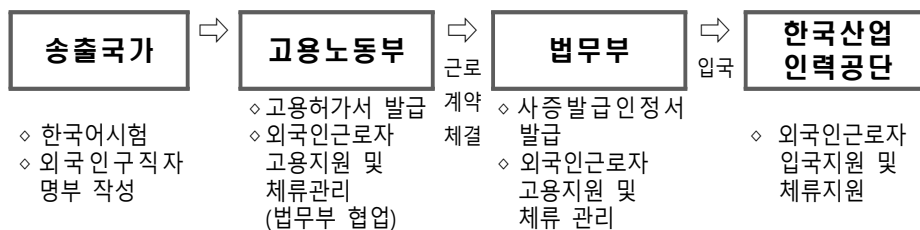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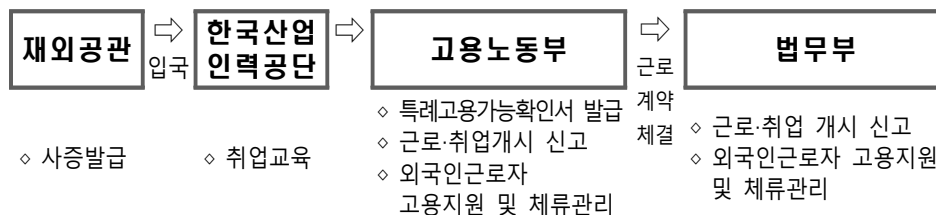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외국인취업자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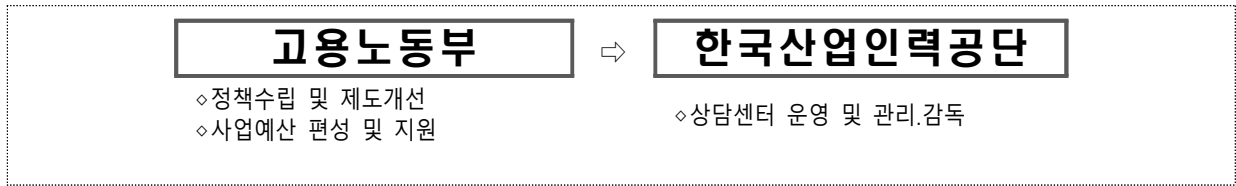
《 고용허가제(E-9) 》 * 입국전 근로계약 체결 후 사증발급 및 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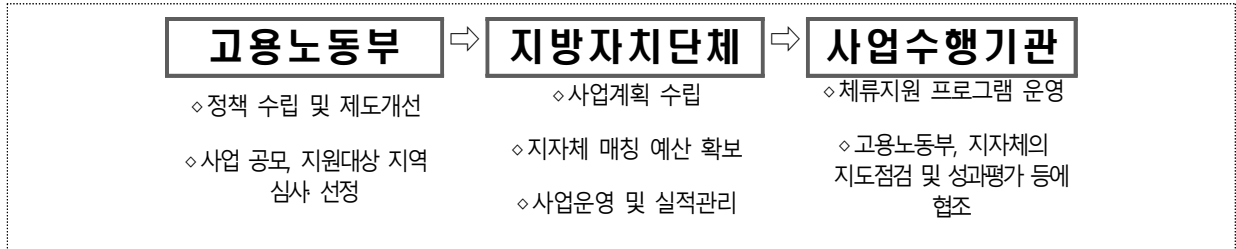
《 방문취업제(H-2) 》 * 입국전 사증 발급, 입국후 취업사실 신고



▪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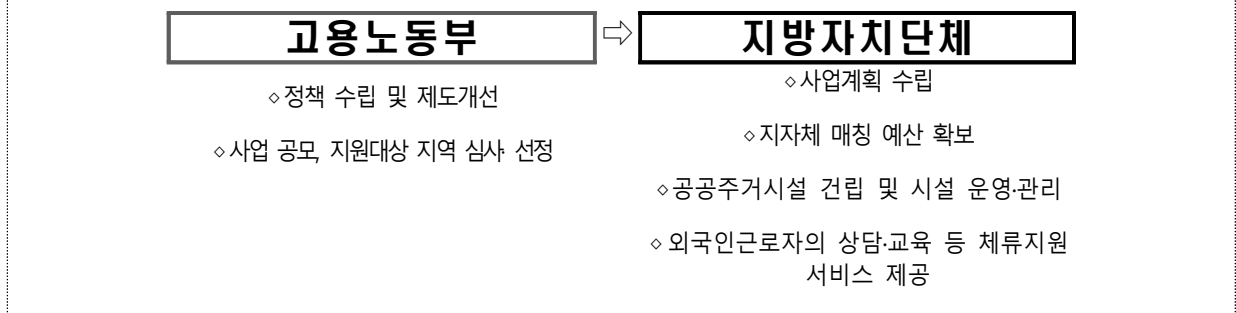


▪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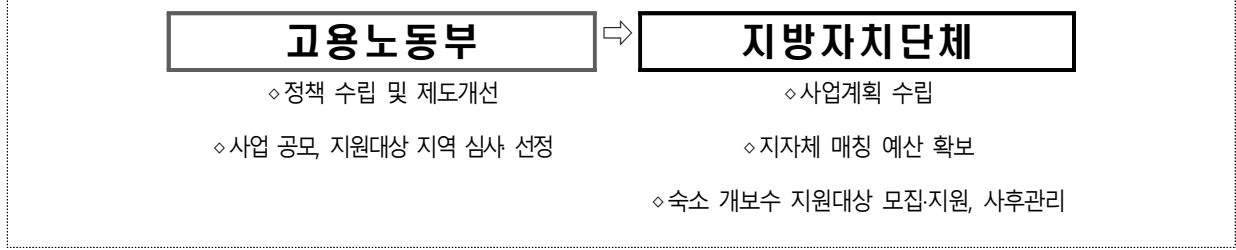


▪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 공공주거시설 지원 》



《 주거환경개선 지원 》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3 환노위 결산보고서) 일반수용비 적정액 편성하고 비목에 맞게 집행할 것
 - ('24 환노위 결산보고서) 사업취지에 맞게 홍보물을 구매·제작 필요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24~'25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782	△137	4,645	4,645	4,469	96.2	96.2	30	146
2023	4,641	0	4,641	4,671	4,585	98.8	98.2	20	66
2024	7,934	0	7,934	7,954	7,554	95.2	95.0	0	400
2025	9,195	0	9,195	9,195	8,989	97.8	97.8	0	20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국외여비 미집행액 등 운영비 집행잔액 불용
2023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금 회계정산을 위한 이월(20백만원)
2024	- 다국어상담원 일부 미채용으로 인건비, 고용부담금 불용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9.2.)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3051-308)	210-01	74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3051-308)	210-02 210-14	외국인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안내문 발송작업 및 우편발송비
조정 (2025.9.18.)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3051-308)	210-01	10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3051-308)	210-02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등 관련 안내 문자 발송비
조정 (2025.10.10.)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3051-308)	210-01	63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3051-308)	210-14	타운홀미팅 및 만족도 조사 용역비
전용 (2025.12.26.)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3051-308)	110-03	50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3051-308)	320-09	퇴직연금 적립금 납부

사 업 명
(53)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41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808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5	300
명칭	산업재해예방	산업안전감독행정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	소관부처	실·국·과(팀)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 중대재해 수사 과학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안전보건감독국
		중대산업재해수사과
- 중대재해 예방 및 수사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안전보건감독국
		중대산업재해수사과
- 산업안전감독관 특수보호장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 증원 수사인력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안전보건감독국
		중대산업재해수사과
- 근로감독제도혁신	소관부처	실·국·과(팀)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2,267	3,930	3,930	57,464	56,192	52,262	1,329.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82	2,308	2,267	0	41	3,930	3,930	3,750	0	180	56,192
·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	408	408	406	0	2	408	410	405	0	5	408
· 중대재해 수사 과학화	986	826	826	0	0	986	986	911	0	75	798
· 중대재해 예방 및 수사 지원	888	1,074	1,035	0	39	875	947	887	0	60	1,044
· 산업안전감독관 특수보호장비	-	-	-	-	-	158	161	161	0	0	158
· 증원 수사인력 지원	-	-	-	-	-	1,503	1,426	1,386	0	40	534
· 근로감독 제도혁신	-	-	-	-	-	-	-	-	-	-	53,2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동 세부사업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수사 등의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하여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기반이 되는 사업임
-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 동 내역사업은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지식 함양,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감독관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지원하는 것임

- **(중대재해 수사 과학화)** 동 내역사업은 수사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디지털자료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디지털증거분석장비(HW, SW) 구매 및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임
- **(중대재해 예방 및 수사 지원)** 동 내역사업은 **수사지원차량 지원, 증거확보 활동 지원, 통계 홈페이지 운영,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을 지원**하여 현장 중심의 중대재해 예방 활동과 수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산업안전감독관 특수보호장비)** 동 내역사업은 기계·기구·설비, 화학물질·방사선·원재료·가스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감독·수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이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호장비를 충분히 지원하는 것임
- **(증원 수사인력 지원)** 동 내역사업은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등을 지원**하여 증원('24년 수시직제)된 수사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근로감독 제도혁신)** 동 내역사업은 '25년 수시 및 '26년 정기직제로 증원된 산업안전감독관의 사무공간 마련 등 업무 여건 구축 및 교육, 출장 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

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장

2. 제2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88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사무소

4.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② 근로감독관은 기계·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② 추진경위

- '21.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 및 산업안전감독관 증원('21년 110명)

- '22.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50인(역) 이상) 및 '24.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5인 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등에 필요한 교육비, 시설개선비 등의 산업안전감독관 전문성 강화 및 수사여건 개선 예산이 필요
-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사업 신설('23년 예산 반영)
- '24.6월 광역중대재해수사와 추가 설치 및 산업안전감독관 증원('24년 6과 신설, 75명 증원)
- 국정과제 93(차별과 배제없는 일터)의 추진 일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3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4,629	2,282	3,930	56,19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산업안전감독관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

- : (2025 예산) 408백만원 → (2026 예산) 408백만원, 전년 동
- (요구) 체험·실습·문제해결 중심의 산업안전감독관 교육 지속·확대를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비 298백만원
산업안전감독관 교육여비 11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8 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298백만원(298,100천원) · 5,420일×55,000원=298,100천원 ○ 교육여비(220-01) : 110백만원(109,880천원) · 1,340일×82,000원=109,880천원	408 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298백만원(298,100천원) · 5,420일×55,000원=298,100천원 ○ 교육여비(220-01) : 110백만원(109,880천원) · 1,340일×82,000원=109,880천원

② 중대재해 수사 과학화

- : (2025 예산) 986백만원 → (2026 예산) 798백만원, △188백만원

- (요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디지털자료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및 수요가 증가하여 이를 위한 디지털 증거분석 장비 구매 및 업무담당자 교육예산 등 요구
사업운영 효율화를 통한 경비 절감으로 △188백만원 감액 요구
- (산출) 디지털증거분석 소모품 18백만원, 디지털증거분석팀 역량강화 44백만원
디지털증거분석장비 구매 736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86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8백만원(18,000천원) 가. 디지털증거분석 소모품(18,000천원) · 7개소x2,571,000원=18,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44백만원(44,000천원) 가. 디지털증거분석팀 역량강화(44,000천원) · 7명x6,285,000원=44,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924백만원(924,000천원) 가. 디지털증거분석장비 라이선스 구매(924,000천원) · 모바일 포렌식 솔루션 769,000천원 5식x17,600,000원+4식x33,000,000원+3식x160,000,000원 +3식x23,000,000원=769,000천원 · 디스크 포렌식 솔루션 83,900천원 4식x7,900,000원+2식x2,000,000원+7식x6,900,000원 =83,900천원 · 영상파일 포렌식 솔루션 62,500천원 2식x5,400,000원+2식x19,800,000원+2식x6,050,000원 =62,500천원 · 문서파일 획득, 분석 솔루션 4,950천원 2식x2,475,000원=4,950천원 · 음성 문서화 솔루션 3,564천원 3식x1,188,000원=3,564천원	798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8백만원(18,000천원) 가. 디지털증거분석 소모품(18,000천원) · 8개소x2,250,000원=18,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44백만원(44,000천원) 가. 디지털증거분석팀 역량강화(44,000천원) · 8명x5,500,000원=44,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736백만원(736,000천원) 가. 디지털증거분석장비 라이선스 구매(736,000천원) · 모바일 포렌식 솔루션 320,000천원 8개소x40,000,000원=320,000천원 · 디스크 포렌식 솔루션 40,000천원 8개소x5,000,000원=40,000천원 · 영상파일 포렌식 솔루션 120,000천원 8개소x15,000,000원=120,000천원 · 기타 포렌식 솔루션 256,000천원 8개소x32,000,000원=256,000천원

③ 중대재해 예방 및 수사 지원

: (2025 예산) 875백만원 → (2026 예산) 1,044백만원, +169백만원

- (요구) 수사지원차량 운영, 통계 홈페이지 유지·보수, 스마트 감독·점검 장비, 형사절차 전자문서화 장비, 위험 상황신고 장비 도입,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169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❶ 예방·수사 활동 지원
· 수사·점검 출장 여비 500 · 증거확보활동 지원 95 · 수사지원차량 운영 18
·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운영 76
- ❷ 중대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 통계 홈페이지 유지·보수 29 · 전자문서화 장비 143 · 위험상황신고 전화 30
- ❸ 스마트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 장비
· 스마트 감독·점검 장비 153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75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95백만원(95,000천원) · 증거확보활동 지원(95,000천원) 9개소x10,555,000원=95,000천원	1,044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90백만원(190,000천원) · 증거확보활동 지원(95,000천원) 15개소x6,333,000원=95,000천원 · 드론 유지·보수 및 영상편집 프로그램 비용 19,000천원 (유지·보수) 300천원 x 50대 = 15,000천원 (영상편집) 87천원 x 50대 = 4,000천원 ·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수당(76,000천원) 633건 x 20% x 150,000원 x 4명 = 76,000천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4백만원(4,000천원) · 보험료(4,000천원) 9대x444,000원=4,000천원 ○ 유류비(210-08) : 12백만원(12,000천원) · 유류비(12,000천원) (6대x12개월x133,000원)+(3대x6개월x133,000원) =12,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500백만원(500,000천원) - 출장여비(500,000천원) · 법 위반 수사 관련 출장여비(295,000천원) (402건x18회x37,500원)+(100건x20회x10,000원) =295,000천원 · 현장점검의 날 출장여비(205,000천원) 150건x21회x2명x32,000원=205,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49백만원(249,000천원) · 수사지원차량 구매(249,000천원) 3대x83,000,000원=249,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15백만원(15,000천원) ·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15,000천원) 1식x6개월x2,500,000원=15,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58백만원(58,000천원) · 수사지원 차량 보험료(6,000천원) 9대x666,700원=6,000천원 · 위험상황신고 통신요금(18,000천원) 49개관서x30,000원x12월=18,000천원 · 스마트 감독·점검 장비(드론) 보험료(34,000천원) 50대x670,000원=34,000천원 ○ 유류비(210-08) : 12백만원(12,000천원) · 유류비(12,000천원) 9대x111,100원x12개월 = 12,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500백만원(500,000천원) 가. 출장여비(500,000천원) · 법 위반 수사 관련 출장여비(295,000천원) (402건x18회x37,500원)+(100건x20회x10,000원) =295,000천원 · 현장점검의 날 출장여비(205,000천원) 150건x21회x2명x32,000원=205,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55백만원(255,000천원) · (스마트 감독·점검 장비) 드론 구매(100,000천원) 28대 x 3,570천원 = 100,000천원 · 형사절차 전자문서화 장비 (143,000천원) (고속스캐너) 2,000천원 x 69대 + (그래픽 소프트웨어) 300천원 x 15식 = 143,000천원 · 위험상황신고 장비 (12,000천원) (스마트폰) 230천원 x 49대 = 12,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29백만원(29,000천원) ·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29,000천원) 1식x12개월x2,420,000원=29,000천원	

④ 산업안전감독관 특수보호장비

: (2025 예산) 158백만원 → (2026 예산) 158백만원, 전년동

- (요구) 위험에 노출되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생명을 보호하고 신속한 조사 및 감독·점검을 위해 보호장비 구입 지속
- (산출) 방독·방진마스크, 절연장갑, 보호복 등 33백만원
복합가스 측정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보호장비함 등 125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8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33백만원(33,000천원) ·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절연장갑, 보호복 구입(33,000천원) $1,650,000원 \times 20개소 = 33,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125백만원(125,000천원) · 복합가스측정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보호장비함(125,000천원) $6,250,000원 \times 20개소 = 125,000천원$	158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33백만원(33,000천원) ·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절연장갑, 보호복 구입(33,000천원) $1,650,000원 \times 20개소 = 33,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125백만원(125,000천원) · 복합가스측정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보호장비함(125,000천원) $6,250,000원 \times 20개소 = 125,000천원$

⑤ 증원 수사인력 지원

: (2025 예산) 1,503백만원 → (2026 예산) 534백만원, △969백만원

- (요구) 증원된 수사인력('24년 수시직제 결과 75명 증원, 6과 신설)이 근무하는 사무실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비 요구
- (산출) 사무실 임차료 374백만원, 임차사무실 관리비 150백만원, 임차사무실 경비용역 1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03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82백만원(82,000천원) · 부서운영 및 증거확보활동 지원(82,000천원) $6개소 \times 13,666,000원 = 82,000천원$	534 백만원	○ 임차료(210-07) : 374백만원(374,000천원) · 사무실 임차료(374,000천원) $5개소 \times 12개월 \times 6,233,000원 = 374,000천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4백만원(24,000천원) · 부동산 중개 수수료(24,000천원) 4개소x6,000,000원=24,000천원 ○ 임차료(210-07) : 374백만원(374,000천원) · 사무실 임차료(374,000천원) 5개소x12개월x6,233,000원=374,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50백만원(150,000천원) · 임차사무실 관리비(150,000천원) 5개소x12개월x2,500,000원=150,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10백만원(10,000천원) · 임차사무실 경비용역(10,000천원) 5개소x12개월x166,000원=10,000천원 ○ 공사비(420-03) : 472백만원(472,000천원) · 임차사무실 공사비(472,000천원) 4개소x118,000,000원=472,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41백만원(141,000천원) · 사무가구·전산장비 등 구매(141,000천원) 6개소x23,500,000원=141,000천원 ○ 무형자산(440-00) : 250백만원(250,000천원) · 임차사무실 보증금(250,000천원) 4개소x62,500,000원=250,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50백만원(150,000천원) · 임차사무실 관리비(150,000천원) 5개소x12개월x2,500,000원=150,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10백만원(10,000천원) · 임차사무실 경비용역(10,000천원) 5개소x12개월x166,000원=10,000천원

⑥ 근로감독 제도혁신

: (2025 예산) -원 → (2026 예산) 53,250백만원, 순증

- (요구) '25년 수시직제 및 '26년 정기직제로 증원된 산업안전감독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①전산장비·사무가구 등의 구매, ②임차 사무공간 마련 등의 업무 여건을 구축하고 증원된 산업안전감독관의 ③출장여비, ④교육비 및 교육여비, ⑤점검복 지원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교육) 산업안전감독관(노동부+지방자치단체) 교육비 8,183백만원, 산업안전감독관 교육여비 842백만원 (사무실 마련) 신규 사무실 마련 29,627백만원, 사무실 운영비 3,109백만원 (경비) 사무용품 및 전산장비 6,613백만원, 산업안전감독관 출장여비 4,273백만원, 피복비 603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53,250 백만원	53,250백만원(53,25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2,496백만원(2,496,000천원) · 사무용품 및 소모품 899,000천원 · 이사비 863,000천원 · 복합기 토너 등 182,000천원 · 사무실 중개 수수료 등 552,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243백만원(2,243,000천원) · 공과금 2,243,000천원 ○ 피복비(210-03) : 603백만원(603,000천원) · 점검복 603,000천원 ○ 임차료(210-07) : 6,831백만원(6,831,000천원) · 사무실 임차료 92개소x74,250,000원=6,831,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518백만원(518,000천원) · 사무실 관리비 518,000천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일반용역비(210-14) : 8,183백만원(8,183,200천원) · 교육비(노동부 1,284명+지방자치단체 260명) 8,183,2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166,000백만원(166,000천원) · 임차사무실 경비용역 166,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5,115백만원(5,115,000천원) · 교육여비 842,000천원 · 출장여비 4,273,000천원 ○ 공사비(420-03) : 10,856백만원(10,856,000천원) · 임차사무실 공사비 10,856,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8,879백만원(8,879,000천원) · 사무가구·전산장비 등 구매 8,879,000천원 ○ 무형자산(440-00) : 7,360백만원(7,360,000천원) · 임차사무실 보증금 7,36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는 '23년 신규사업, '24년 성과관리 비대상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 (하향지표) (단일지표)	목표	신규	0.54	0.50	0.45	0.4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정한 전체 사업장의 사고 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 하여 목표치 설정	○ 측정산식 :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 =A/B×10,000 A: 공단 지원 사업장* 사고 사망자수(명) * 재해발생사업장 (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등) 지원 실적은 제외 B: 공단 지원 사업장 근로자 수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실적	신규	0.51	0.48	-	-	* '25. 0.31 → '26. 0.29 (△6.5%) ** '25 목표치 0.45 에 6.6% 감소 반영 하여 0.42 산출		
	달성도	-	105.9	104.0	-	-			
② 중상해사고 재해율(%) (하향지표)	목표	0.090	0.084	삭제	삭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실적	0.084	-	-	-	-			
	달성도	93.3	-	-	-	-			
③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 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연계율(%)	목표	77.6	79.8	삭제	삭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1프로그램 1성과 지표 원칙에 따른 지표 삭제
	실적	66.2	-	-	-	-			
	달성도	85.3	-	-	-	-			

* '25년 실적은 '26.3월말 집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산업안전감독관 1,747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직무교육 실시 ○ 디지털증거분석실 설치 및 확장 공사, 디지털증거 분석팀 장비구매 및 운영, 디지털증거 분석팀 담당자 교육 실시 등 ○ 영상녹화조사실(20개소) 설치, 수사지원차량(4대) 제작·운용 등 중대재해 수사 기반 마련
2024	○ 산업안전보건 전문이론 및 현장을 반영한 실습·체험 교육과정 운영, 신규 산업안전감독관 105명 등 총 928명 직무교육 이수 ○ 디지털증거분석 장비 라이선스 갱신·신규 구매, 디지털증거분석 담당자 교육 실시 등 ○ 수사지원차량 제작(2대)·운용(6대), 통계 홈페이지 구축('24.8월~), 신설 광역중대재해수사과(6과) 임시 근무 여건 마련 등
2025	○ 산업안전보건 전문이론 및 현장을 반영한 실습·체험 교육과정 운영, '25년 신규산업안전감독관 201명 등 총 1,012명 직무교육 이수 ○ 디지털증거분석 장비 라이선스 갱신·신규 구매, 디지털증거분석 담당자 교육 실시 등 ○ 수사지원차량 제작(3대)·운용(9대), 중대재해 통계 홈페이지 운영, 신설 광역중대재해수사과(6과) 근무 여건 지원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산업안전감독관이 중대재해 수사, 산업안전 예방을 위한 감독·점검, 신고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하는 데 여건을 조성하여 사업장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중대재해 수사를 지원
- 신규 산업안전감독관이 감독·수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기반을 마련하여 산재예방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유류비 과다계상 및 수사지원차량의 운행 저조 (환노위·예결위, 23결산)
 - 수사지원차량 운행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및 실 사용량을 반영하여 예산을 축소·편성
 - 국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부합되도록 예산 집행 (환노위, 23결산)
 -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예산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
 - 드론 도입·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필요 (환노위 검토보고서, 26예산)
 - 촬영 사진 등의 정보관리 철저, 항공안전법에 따른 조종자 안전수칙 준수, 드론 활용 감독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사고 예방 노력
 - 산업안전감독관 대규모 증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동 업무는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직렬별 채용계획·지방관서별 배치 계획 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예정처 검토보고서, 26예산)
 - 직렬별 채용계획 및 지방관서별 배치계획 등 면밀히 수립하여 증원된 인력이 효과적인 감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24 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 우수(82.9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2023	4,629	0	4,629	4,629	4,406	95.2	95.2	26	197
2024	2,282	0	2,282	2,308	2,267	99.3	98.2	0	41
2025	3,930	0	3,930	3,930	3,750	95.4	95.4	0	18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2023	[전용] - 중대재해 발생 현황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전산개발 등 지식 기반의 조사 및 연구 관련'에 해당하여 '일반연구비'에서 집행 필요 →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4135-300) 일반용역비(210-14) 130백만원을 일반연구비(260-01)로 전용
2024	[내역변경] - '24.6월 신설된 광역중대재해수사과(6과)의 임시 사무공간 마련을 위하여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 내역 변경
2025	[전용] - 사무공간 마련 과정에서 자산취득에 추가 비용이 소요되어 부족분을 무형자산(440-00)에서 50백만원 전용 - 산업안전감독관 출장여비 부족으로 '증원 수사인력 지원'의 임차료(210-07) 50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0백만원을 국내여비로 전용 [내역변경] - (일반수용비) '중대재해 예방 및 수사지원'에서 '산업안전감독관 특수보호장비'로 3백만원 내역 변경 - (공공요금 및 제세) '증원 수사인력 지원'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수사지원'로 2백만원 내역 변경 - (임차료) '증원 수사인력 지원'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수사지원'로 3백만원 내역 변경 '증원 수사인력 지원'에서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으로 1.5백만원 내역 변경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5.20.)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4135-300)	440-00	50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4135-300)	430-01	사무공간 마련 과정에서 자산취득에 추가 비용 소요
전용 ("25.12.22)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4135-300)	210-02	20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4135-300)	220-01	산업안전감독관 여비 부족
전용 ("25.12.22)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4135-300)	210-07	50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4135-300)	220-01	산업안전감독관 여비 부족
내역변경 ("25.11.19.)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4135-300) (중대재해 예방 및 수사지원)	210-01	3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4135-300) (산업안전감독관 특수보호장비)	210-01	특수보호장비(장화) 구매를 위해 수용비 내역변경
내역변경 ("25.9.23.)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4135-300) (증원 수사인력 지원)	210-02	2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4135-300) (중대재해 예방 및 수사지원)	210-02	신규 도입 수사지원차량 보험료 납부
내역변경 ("25.5.14.)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4135-300) (증원 수사인력 지원)	210-07	3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4135-300) (중대재해 예방 및 수사지원)	210-07	중대법 수사 처리 속도 제고를 위한 수사 실무 교육
내역변경 ("25.12.4.)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4135-300) (증원 수사인력 지원)	210-07	2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4135-300)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	210-07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운행을 위한 버스 임차 필요

사 업 명
(54) 본부인건비(7001-1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080	086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인건비	본부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재무계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본부인건비	70,862	63,652	63,652	68,108	65,616	1,964	3.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8,178	70,912	70,862	-	50	63,652	73,185	73,021	-	164	65,616
· 본부인건비	68,178	70,912	70,862	-	50	63,652	73,185	73,021	-	164	65,6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본부인건비)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봉급(연봉) 및 제수당 등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대통령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6,460	67,803	68,178	63,652	65,616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일반회계 전문위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본부 인건비(65,616백만원)
 - 보수 : 63,962백만원(고용노동부 본부,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직제상 정원 기준으로 편성)
 - 기타직 보수 : 1,161백만원 (고용노동부 본부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일반회계 전문위원 인건비 편성)
 - 연가보상비 : 493백만원(고용노동부 본부,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직제상 정원 기준으로 편성)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6,562	△102	66,460	66,460	65,868	99.1	99.1	-	592
2023	67,803	-	67,803	67,775	67,584	99.7	99.7	-	191
2024	68,178	-	68,178	70,912	70,862	103.9	99.9	-	50
2025	63,652	-	63,652	73,185	73,021	99.8	99.8	-	16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 해당없음 - 불용 : 집행잔액 592백만원
2023	- 전용 : 신규 공무원 복지포인트 부족으로 본부인건비에서 본부기본경비로 28백만원 전용 - 불용 : 집행잔액 191백만원
2024	- 이·전용 : 본부인건비 부족으로 사회복지요원(총액) 등에서 본부인건비로 2,734백만원 이·전용 - 불용 : 집행잔액 50백만원
2025	- 이·전용 : 수시공채 예산 부족으로 본부인건비에서 본부 기본경비로 114백만원 전용 본부인건비 부족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인건비 등에서 본부인건비로 9,706백만원 이·전용 - 불용 : 집행잔액 164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체 (2025.10.10)	본부인건비 (7001-100)	110-01	59	인건비 (7101-100)	110-01	성평등가족부로 업무이관에 따른 인건비 이체
자체전용 (2025.11.7.)	지방고용노동 관서 인건비 (7007-107)	110-01	4,500	본부인건비 (7001-100)	110-01	본부인건비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025.11.11)	본부인건비 (7001-100)	110-05	114	본부기본경비 (7011-100)	210-16	7급 수시공채 예산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025.12.11.)	사회복무요원 운용 (7011-211)	110-03	410	본부인건비 (7001-100)	110-01	본부인건비 부족분 충당
승인이용 (2025.12.11.)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1043-301)	310-04	4,796	본부인건비 (7001-100)	110-01	본부인건비 부족분 충당

사 업 명						
(55) 노동위원회인건비(7002-1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2	104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노동위원회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노동위원회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노동위원회 인건비	29,390	29,957	29,957	32,054	31,452	1,495	4.9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841	29,412	29,390	0	23	29,957	31,673	31,627	0	47	31,452
· 노동위원회인건비	28,841	29,412	29,390	0	23	29,957	31,673	31,627	0	47	31,45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연봉) 및 각종수당 등의 노동위원회 인력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보수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지침
-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7,082	27,821	28,841	29,957	31,45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공무원 인건비: 29,957백만원('25년) → 31,452백만원('26년)

- 보수: 29,727백만원('25년)→ 31,213백만원('26년)
- 연가보상비: 230백만원('25년)→ 239백만원('26년)
- (산출근거) 노동위원회 직제상 정원 및 인건비 인상률 고려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노동위원회인건비 26,587백만원 집행
2023	- 노동위원회인건비 27,545백만원 집행
2024	- 노동위원회인건비 29,390백만원 집행
2025	- 노동위원회인건비 31,627백만원 집행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7,124	△42	27,082	27,082	26,587	98.2	98.2	0	495
2023	27,821	0	27,821	27,669	27,545	99.0	99.5	0	124
2024	28,841	0	28,841	29,412	29,390	101.9	99.9	0	23
2025	29,957	0	29,957	31,673	31,627	105.6	99.9	0	4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내역: 해당없음 ○ 불용내역: 집행잔액 495백만원
2023	○ 이·전용 내역: 지방노동관서 인건비 부족으로 전용(감 152백만원) ○ 불용내역: 집행잔액 124백만원
2024	○ 이·전용 내역 - 보수 부족으로 이용(증 518백만원), 연가보상비에서 보수(증 87백만원)로 세목조정 - 12월 공무원 초과수당 선지급분 부족으로 전용(증 54백만원) ○ 불용내역: 집행잔액 23백만원
2025	○ 이·전용 내역 - 보수 부족으로 이용(증 1,689백만원), 연가보상비에서 특근매식비(감 64백만원)로 전용 ○ 불용내역: 집행잔액 47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025.12.12)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1043-301)	기타보전금 (310-04)	1,689	노동위원회 인건비 (7002-104)	보수 (110-01)	공무원 인건비 부족
전용 (2025.10.21)	노동위원회 인건비 (7002-104)	연가보상비 (110-05)	64	노동위원회 기본경비(총액) (7018-222)	특근매식비 (210-05)	특근매식비 부족
전용 (2025.12.12)	노동위원회 기본경비(총액) (7018-222)	상용임금 (110-03)	11	노동위원회 인건비 (7002-104)	보수 (110-01)	인건비 부족
	노동위원회 청사관리 (7036-306)	상용임금 (110-03)	30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7039-309)	상용임금 (110-03)	50			

사 업 명
(5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건비(7002-1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2	15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관리과
	사업시행주체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관리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인건비	1,297	1,519	1,519	1,625	1,579	60	3.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80	1,480	1,297	0	183	1,519	1,519	1,417	0	102	1,579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건비	1,480	1,480	1,297	0	183	1,519	1,519	1,417	0	102	1,57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건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회의체의 논의사항과 관련된 전문적 조사·연구 및 회의체 운영을 위해 고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인건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법률 제 17864호, '21.1.5.)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9150호, '18.9.11.)

② 추진경위

- '97년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지원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98.1.15 노사정 3자 협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출범
- '98년에는 대통령령에 설치근거를 두었으며, '99년에는 법률에 설치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사회적 대화체제를 제도화(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 '06.04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 개편방안에 합의
- '07.01.26.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07.4.27 시행)
- '09.02.2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전문 및 64개 항목) 체결
- '11.06.10. 「베이비붐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중소기업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13.07.17. 「청년고용증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

- '14.12.23.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15.0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17.09.13.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한 권고문」 채택
- '17.11.06. 「노동시장 외주화와 격차 해소방안」 채택
- '18.06.12.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전면개정('18.9.13. 시행)
- '18.08.21.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
- '19.02.18.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합의」 채택
- '19.02.19.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 채택
- '19.03.05.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
- '19.05.03.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위원 권고문 발표
- '19.06.03. 「사람중심 스마트공장 협약식」 노사정 업무협약 체결
- '19.08.30.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문」 발표
- '20.02.20. 「해운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운산업위원회 합의문」 발표
- '20.03.02.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발표
- '20.03.0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 발표
- '20.03.19.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합의문」 발표
- '20.04.27.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합의문」 발표
- '20.05.13. 「플랫폼 경제활성화 및 노동종사자 지원방안에 관한 합의문」 발표
- '20.07.28.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합의문」 발표
- '20.08.18.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 발표
- '20.09.08.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20.10.08.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실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20.10.16.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 의결
- '20.10.27.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 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 의결
- '20.10.29. 「지속가능한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 합의안」 채택
- '20.11.18.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채택
- '21.11.05.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발표
- '22.06.09. 「가사·아이돌봄 산업생태계 조성가 종사자 보호 확대를 위한 합의문」 발표
- '22.06.10. 「대리운전업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가 대리운전 종사자 보호 확보를 위한 합의문」 발표
- '23.03.15.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24.02.06.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 채택
- '24.10.22. 공무원 근무면제한도 심의·의결
- '24.10.28. 교원 근무면제한도 심의·의결
- '25.05.08.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건비

(‘25년) 1,519백만원 → (‘26년) 1,579백만원 (+60백만원)

- 전문임기제공무원 19명 인건비(가급 4명·나급 8명·다급 6명·라급 1명)

* 전문임기제공무원 처우개선율(3.97%) 반영 편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93	0	1,193	1,193	1,108	92.9	92.9	0	85
2023	1,204	0	1,204	1,204	978	81.2	81.2	0	226
2024	1,480	0	1,480	1,480	1,297	87.6	87.6	0	183
2025	1,519	0	1,519	1,519	1,417	93.3	93.3	0	10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57)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7007-1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7	107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인건비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지방고용노동관서 인건비	414,281	436,770	436,770	570,011	570,011	133,241	30.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11,583	414,626	414,281	-	345	436,770	436,550	436,303	-	-	570,0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게 봉급(연봉) 및 각종수당 등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② 추진경위
 - 법령에 의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게 봉급(연봉) 및 각종수당 등 지급 필요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지방고용노동관서 인건비: 570,011백만원
- 보수 : 556,064백만원
 - 기타직보수 : 9,919백만원
 - 연가보상비 : 4,028백만원
- *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제상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재배정 ⇒ 지방관서별 예산집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75,954	△628	375,326	374,071	370,512	98.7	99.0	-	3,559
2023	394,919	-	394,919	394,157	393,110	99.5	99.7	-	1,047
2024	411,583	-	411,583	414,626	413,659	100.5	99.8	-	967
2025	436,770	-	436,770	436,550	436,303	99.9	99.9	-	247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0.17.)	지방고용노동 관서인건비 (7007-107)	연가 보상비 (110-05)	△38	서울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7024-225)	특근 매식비 (210-05)	단가 인상에 따른 지방관서 특근매식비 지급 예산 부족
			△68	부산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7024-226)	특근 매식비 (210-05)	
			△23	대구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7024-227)	특근 매식비 (210-05)	
			△148	중부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7024-228)	특근 매식비 (210-05)	
			△24	광주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7024-229)	특근 매식비 (210-05)	
			△41	대전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7024-230)	특근 매식비 (210-05)	
전용 (2025.11.10.)	지방고용노동 관서인건비 (7007-107)	보수 (110-01)	△4,500	본부인건비 (7001-100)	보수 (110-01)	정·현원 차이 등에 따른 본부 인건비 예산 부족
이용 (2025.12.2.)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1043-301)	기타 보전금 (310-04)	4,684	지방고용노동 관서인건비 (7007-107)	보수 (110-01)	정·현원 차이 등에 따른 지방관서 인건비 예산 부족
전용 (2025.12.3.)	지방고용노동 관서인건비 (7007-107)	연가 보상비 (110-05)	△62	기본경비 (본부기관운영, 총액) (7011-212)	복리 후생비 (210-12)	정·현원 차이 등에 따른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 예산 부족

사 업 명
(58) 사회복지무요원운용(본부, 총액)(7011-2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080	086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사회복지무요원운용(본부, 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운영지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사회복지무요원운용 (본부, 총액)	1,130	1,636	1,636	1,681	1,681	45	2.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46	1,138	1,130	0	7	1,636	1,226	1,220	0	6	1,681
· 인건비	1,346	1,138	1,130	0	7	1,636	1,226	1,220	0	6	1,68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노동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요원 운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병역법」 제31조 및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
- ② 추진경위 - 병역자원을 우리부 행정업무 지원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96	1,046	1,346	1,636	1,68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인건비(110-03): (2025년) 1,636백만원 → (2026년도) 1,681백만원
- (2025년)1,200,000원×121명×12월-106,400,000원 → (2026년)1,200,000원×121명×12월-61,400,000원
※ 단가 1,200,000원 기준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72,151만원 집행
2023	-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91,921만원 집행
2024	-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113,046만원 집행
2025	-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121,983만원 집행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예산 및 인원 정·현원 관리를 통해 본부와 지방관서별
형평성 있는 인력 운용으로 사회복지무요원을 배치하여 행정지원 인력으로 활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96	0	796	796	721	90.5	90.5	0	75
2023	1,049	0	1,046	1,046	919	87.8	87.8	0	127
2024	1,346	0	1,346	1,137	1,130	83.9	99.3	0	7
2025	1,636	0	1,636	1,226	1,220	74.6	99.5	0	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59)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총액)(7011-2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본경비 (본부기관운영, 총액)	7,460	7,621	7,621	8,462	8,462	841	11.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467	7,610	7,460	-	150	7,621	7,715	7,646	-	-	8,46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복리후생비, 본부 지원부서 특근매식비, 과운영비, 일·숙직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없음
- ② 추진경위
 - 고용노동부 지원부서 기관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원필요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총액) :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감사관실, 운영지원과, 국제협력관실 운영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지원 등 8,462백만원
 - 인건비 : 122백만원
 - 상용임금 : 121백만원
 - 일용임금 : 1백만원
 - 운영비 : 7,583백만원
 - 특근매식비 : 127백만원
 - 일숙직비 : 24백만원
 - 복리후생비(고용노동부 전 기관 맞춤형 복지제도지원 등) : 7,048백만원
 - 기타운영비 : 384백만원
 - 직무수행경비(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 710백만원
 - 월정직책급(노동부 본부 전체) : 668백만원
 - 특정업무경비(감사·예산편성 활동비) : 42백만원
 - 고용부담금 : 4대사회보험 및 퇴직급여충당금 46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재배정 ⇒ 예산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440	-	7,440	7,781	7,575	101.8	97.4	-	206
2023	7,336	-	7,336	7,355	7,201	101.9	97.9	-	154
2024	7,467	-	7,467	7,610	7,406	99.2	97.3	-	204
2025	7,621	-	7,621	7,715	7,646	100.3	99.1	-	69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9.5.)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총액) (7011-212)	210-16	15	기본경비(산업 안전보건본부, 총액) (7011-216)	210-16	산업안전보건분야 포상금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025.10.29.)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총액) (7011-212)	210-05	3	기본경비(산업 안전보건본부, 총액) (7011-216)	210-05	특근매식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025.11.12.)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총액) (7011-212)	250-02	35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총액) (7011-212)	210-16	하반기 수시채용에 필요한 기타운영비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025.11.12.)	본부인건비 (7001-100)	110-05	114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총액) (7011-212)	210-16	하반기 수시채용에 필요한 기타운영비 부족분 충당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11.14)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총액) (7011-212)	210-05	3	기본경비(산업 안전보건본부, 총액) (7011-216)	210-05	각종 사고 대응 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 부족
자체전용 (2025.12.3)	지방청인건비 (지방고용노동 관서인건비) (7007-107)	110-05	62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총액) (7011-212)	210-12	하반기 직제 증원에 따른 맞춤형복지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025.12.18)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총액) (7011-212)	110-03	6	지방청기본경비 (대구지방관서 기본경비, 총액) (7024-227)	110-03	상용임금 예산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025.12.18)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총액) (7011-212)	320-09	2	지방청기본경비 (대구지방관서 기본경비, 총액) (7024-227)	320-09	실무수습 채용에 따른 퇴직연금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025.12.19)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총액) (7011-212)	110-03	8	지방청기본경비 (서울지방관서 기본경비, 총액) (7024-225)	110-03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025.12.19)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총액) (7011-212)	110-03	6	지방청기본경비 (중부지방관서 기본경비, 총액) (7024-228)	110-03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025.12.19)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총액) (7011-212)	110-03	17	지방청기본경비 (광주지방관서 기본경비, 총액) (7024-229)	110-03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025.12.26)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총액) (7011-212)	110-03	2	소속기관기본 경비(최저임금 위원회기본경 비, 총액) (7018-221)	320-09	퇴직연금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025.12.26)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총액) (7011-212)	110-03	20	지방청기본경비 (부산지방관서 기본경비, 총액) (7024-226)	320-09	퇴직연금 부족분 충당

사 업 명
(60) 기본경비(고용정책실, 총액)(7011-21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4	-	-	080	086
명칭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	-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3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고용정책실, 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본경비 (고용정책실, 총액)	고용노동부	실·국·과(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본경비 (고용정책실, 총액)	80	84	84	84	84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4	84	80	-	4	84	84	79	-	5	84
· 운영비	84	84	80	-	4	84	84	79	-	5	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업무 추진을 위한 공통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해당없음
- ② 추진경위 : 고용정책실 기본경비 지원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4	84	84	84	84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해당없음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정책실 소속 직원 및 관계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기본경비(고용정책실, 총액): (2025 예산) 84백만원 → (2026 예산) 84백만원(전년동)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4,000	○ 특근매식비(210-05): 45,511천원 1. 특근매식비 - 7,000원x54명x10일x12월 + 640,000원 = 45,511천원 ○ 기타운영비(210-16): 38,489천원 1. 과운영비(30,689천원) - 180,000원x12월x14과 + 449,000원 = 30,689천원 2. 실국장실 운영비(7,800천원) - 실장실 운영비 200,000원x12월x1실 = 2,400천원 - 국장실 운영비 150,000원x12월x3국 = 5,400천원	84,000	○ 특근매식비(210-05): 45,511천원 1. 특근매식비 - 9,000원x54명x8일x12월 - 1,145,000원 = 45,511천원 ○ 기타운영비(210-16): 38,489천원 1. 과운영비(30,689천원) - 180,000원x12월x14과 + 449,000원 = 30,689천원 2. 실국장실 운영비(7,800천원) - 실장실 운영비 200,000원x12월x1실 = 2,400천원 - 국장실 운영비 150,000원x12월x3국 = 5,4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고용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
2023	- 고용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
2024	- 고용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
2025	- 고용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정책실 관련 사업의 원활한 운영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경사업무 추진 및 경상경비 사용 요청 → 타당성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 검토
→ 지급결의 및 지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4	-	84	68	66	78.6	97.1	-	2
2023	84	-	84	84	76	90.5	90.5	-	8
2024	84	-	84	84	80	95.2	95.2	-	4
2025	84	-	84	84	79	94.0	94.0	-	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인력 충원에 따라 지방관서(대구청) 특근매식비, 과 운영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전용 * (전용내역) 기본경비(고용정책실, 총액) > 지방청기본경비(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 총액) 특근매식비 증 16백만원 - 집행잔액 불용(2백만원)
2023	- 집행잔액 불용(8백만원)
2024	- 집행잔액 불용(4백만원)
2025	- 집행잔액 불용(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61) 기본경비(노동정책실, 총액)(7011-2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080	08F
명칭			노동정책관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4
명칭	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노동정책실, 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총괄>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사업시행주체	노동정책총괄과
		고용노동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본경비 (노동정책실, 총액)	154	138	138	142	205	67	48.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8	158	154	-	4	138	138	134	-	4	205
· 기본경비 (노동정책실,총액)	138	158	154	-	4	138	138	134	-	-	2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노동정책실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없음
- ② 추진경위

- 노동정책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로 편성·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3	133	138	138	20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수혜자 :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기본경비(노동정책실,총액)
: ('25) 138백만원 → ('26) 205백만원, 67백만원 증액

- ① 특근매식비
: ('25) 85,840천원 → ('26) 151,217천원
- (요구) 현안업무 수행 관련 예산 요구
- (산출) 경상업무특근 80,784천원
노사관계 대책 등 노사정책 비상근무 2,700천원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비상근무 2,700천원
지방관서 직제 반영분(65,377천원)
단수조정 △344천원

- ② 기타운영비
: ('25) 52,160천원 → ('26) 53,783천원
- (요구) 노동정책실 운영 및 과운영비 소요
- (산출) 과운영비 45,983천원
노동정책실장실 운영비 2,400천원
정책관실 운영비 5,400천원

○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8,000	○ 특근매식비(210-05) : 85,840천원 가. 경상업무특근 (80,388천원) 나. 노사관계 대책 등 노사정책 비상근무(2,730천원) 다.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비상근무(2,730천원) 라. 조정재원 (-8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52,160천원 가. 과운영비 (44,360천원) 나. 노동정책실장실 운영비 (2,400천원) 다. 정책관실 운영비 (5,400천원)	205,000	○ 특근매식비(210-05) : 151,217천원 가. 경상업무특근(80,784천원) 나. 노사관계 대책 등 노사정책 비상근무(2,700천원) 다.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비상근무(2,700천원) 라. 지방관서 직제 반영분(65,377천원) 마. 조정재원(-344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53,783천원 가. 과운영비 (45,983천원) 나. 노동정책실장실 운영비 (2,400천원) 다. 정책관실 운영비 (5,4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노동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122백만원)
2023	- 노동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126백만원)
2024	- 노동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154백만원)
2025	- 노동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134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노동정책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운영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경사업무 추진 및 경상경비 사용 요청 → 타당성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 검토
→ 지급결의 및 지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3	-	123	123	123	99.2	99.2	-	1
2023	133	-	133	133	126	94.7	94.7	-	7
2024	138	-	138	158	154	111.6	97.5	-	4
2025	138	-	138	138	134	97.1	97.1	-	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1백만원)
2023	- 불용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7백만원)
2024	- 불용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4백만원)
2025	- 불용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4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12.11)	기본경비 (노동정책실,총액)	210-16 (기타운영)	5	기본경비 (노동정책실,총액)	210-05 (특근매식)	경사업무 특근

사 업 명
(62)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총액)(7011-21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6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소관부처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본경비(산업안전 보건본부, 총액)	129	157	157	334	334	177	112.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9	129	122		7	157	178	173	0	5	334
· 기본경비(산업안전 보건본부, 총액)	129	129	122		7	157	178	173	0	5	3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업안전보건본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없음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 연도 : 2014년
- 추진 배경 : 산업안전보건본부 운영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4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9	125	129	157	33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총액)
: (2025 예산) 157백만원 → (2026 예산) 334백만원(증 177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7,000 (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80,346천원 1. 특근매식비 (64,512천원) 7,000원×64명×12월×12월=64,512천원 2. 지방관서 정기직제 반영(15,000천원) 3. 단수조정 (+834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76,654천원 1. 본부 과운영비(70,614천원) 180,000원×12개과×12월+31,734,000원=57,654천원 · 지방관서 정기직제 반영(12,960천원) 2. 본부 비서실 운영비(6,000천원) - 본부장실 운영비 200,000원×1실×12월=2,400천원 - 국장실 운영비 150,000×2실×12월=3,600천원 4. 단수조정 (+40천원)	334,000 (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257,797천원 1. 특근매식비 (64,512천원) 9000원×64명×12월×12월=82,944천원 2. 감독관 증원 소요(177,451천원) 3. 단수조정 (△2,598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76,203천원 1. 본부 과운영비(57,654천원) 180,000원×12개과×12월+31,734,000원=57,654천원 2. 지방관서 정기직제 반영(12,960천원) 3. 본부 비서실 운영비(6,000천원) - 본부장실 운영비 200,000원×1실×12월=2,400천원 - 국장실 운영비 150,000×2실×12월=3,600천원 4. 단수조정 (△411천원)

4) 사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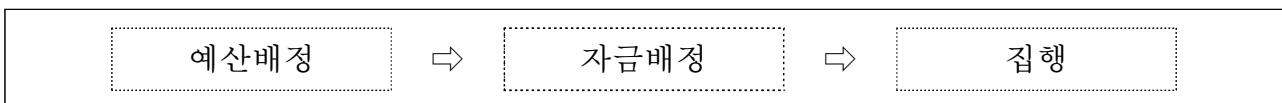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업재해예방 사업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49	0	149	129	124	83.2	96.1	0	5
2023	125	0	125	125	116	92.8	92.8	0	9
2024	129	0	129	129	122	94.6	94.6	0	7
2025	157	0	157	178	173	42.0	97.2	0	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지방청 특근매식비 부족에 따른 20백만원 전용 - 본부 특근매식비 부족에 따른 4백만원 세목변경
2023	- 본부 운영비 일부 미집행에 따른 9백만원 불용
2024	- 본부 운영비 일부 미집행에 따른 7백만원 불용
2025	- 본부 운영비 일부 미집행에 따른 5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63)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 총액)(7011-2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7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 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본경비 (직업능력정책국, 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직업능력정책과 직접수행

가. 예산(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기본경비(직업능력 정책국, 총액)	46	46	47	47	1	2.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6	46	42	-	4	46	46	45	-	1	47
·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 총액)	46	46	42	-	4	46	46	45	-	1	4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 총액)) 직업능력정책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없음
- ② 추진경위 - 직업능력정책국 기본경비 지원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1	46	46	46	4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계획) 산출 근거

- 직업능력정책국 기본경비 47만원
 - 특근매식비 26백만원
 - 기타운영비 2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단위: 억원)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재배정 ⇒ 예산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1	0	41	41	28	68.3	68.3	0	13
2023	46	0	46	46	34	73.9	73.9	0	12
2024	46	0	46	46	42	91.3	91.3	0	4
2025	46	0	46	46	45	97.8	97.8	0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
2023	-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
2024	-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
2025	-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64)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총액)(7011-21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8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본경비 (통합고용 정책국, 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중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본경비(통합고용 정책국, 총액)	54	55	55	57	56	1	0.0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5	55	54	-	1	55	55	50	-	5	56
· 기본경비(통합고용 정책국, 총액)	55	55	54	-	1	55	55	50	-	5	5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총액)) 통합고용정책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없음
- ② 추진경위 : 통합고용정책국 기본경비 지원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5	55	55	55	5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총액) : (2025 예산) 55백만원 → (2026 예산) 56백만원, 1백만원 증액
 - (요구) 통합고용정책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지원
 - (산출)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56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5	○ 특근매식비(210-05) : 30백만원 1. 통합고용정책국 특근매식비(18백만원) • 7,000원*4일*12개월*55명=18,480천원 2. 청년고용정책관 특근매식비(11백만원) • 7,000원*4일*12개월*33명=11,088천원 3. 단수조정(1백만원) ○ 기타운영비(210-16) : 25백만원 1. 과 운영비(17백만원) • 180,000원*12개월*8과=17,280천원 2. 국장실 운영비(4백만원) • 150,000원*12개월*2국=3,600천원 3. 단수조정(4백만원)	56	○ 특근매식비(210-05) : 31백만원 1. 통합고용정책국 특근매식비(18백만원) • 9,000원*3일*12개월*57명=18,468천원 2. 청년고용정책관 특근매식비(13백만원) • 9,000원*3일*12개월*39명=12,636천원 3. 단수조정(△283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25백만원 1. 과 운영비(17백만원) • 180,000원*12개월*8과=17,280천원 2. 국장실 운영비(4백만원) • 150,000원*12개월*2국=3,600천원 3. 단수조정(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각 대상별(고령자, 장애인, 여성, 사회적기업) 고용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재배정 ⇒ 예산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5	-	55	39	36	66.1	93.2	-	3
2023	55	-	55	55	39	70.9	70.9	-	16
2024	55	-	55	55	54	97.5	97.5	-	1
2025	55	-	55	55	50	91.5	91.5	-	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사유: 코로나 19 확산 및 인력충원으로 초과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대전지방관서 기본 경비 예산 부족으로 본부 통합고용정책국 기본경비 예산 일부를 전용하여 충당(16백만원)
2023	-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
2024	- 조정 사유: 일가정양립추진단 신설로 초과근무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특근매식비(210-05) 부족분 2백만원을 기타운영비(210-16)에서 세목변경
2025	- 조정 사유: 통합고용정책국 내 특근매식비 부족으로 기타운영비에서 특근매식비로 금액조정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12.2)	기본경비(통합 고용정책국, 총액) (7011-218)	210-16	2	기본경비(통합 고용정책국, 총액) (7011-218)	210-05	통합고용정책국 내 특근매식비 부족으로 기타운영비에서 특근매식비로 금액조정

사 업 명
(65) 사회복지무요원운용(본부, 비총액)(7011-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080	086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사회복지무요원운용(본부, 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운영지원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사회복지무요원운용 (본부, 비총액)	204	256	256	322	322	66	25.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3	253	204	0	3	256	256	192	0	64	322
· 운영비	190	190	146	0	1	191	191	137	0	54	257
· 여비	63	63	58	0	2	65	65	55	0	9	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노동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요원 운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병역법」 제31조 및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
- ② 추진경위 - 병역자원을 우리부 행정업무 지원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73	250	253	256	32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사회복지요원 피복비(210-03): (2025년) 15백만원 → (2026년) 15백만원
 - (2025년) 309,840원×51명-801,840원 → (2025년) 309,840원×51명-801,840원
 ※ 단가 309,840원 기준
- 사회복지요원 급식비(210-04): (2025년) 176백만원 → (2026년) 242백만원
 - (2025년) 7,000원×121명×12개월×21일(월평균 평일일수)-37,444,000원 → (2026년)9,000원
 ×121명×12개월×21일(월평균 평일일수)-32,057,000원
- 사회복지요원 국내여비(220-01): (2025년) 65백만원 → (2026년) 65백만원
 - (2025년) 3,000원×121명×12개월×21일(월평균 평일일수)-26,476,000원 → (2026년)3,000원
 ×121명×12개월×21일(월평균 평일일수)-26,476,000원=6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사회복지요원 피복비, 급식비, 여비 20,896만원 집행
2023	- 사회복지요원 피복비, 급식비, 여비 20,530만원 집행
2024	- 사회복지요원 피복비, 급식비, 여비 20,401만원 집행
2025	- 사회복지요원 피복비, 급식비, 여비 19,209만원 집행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예산 및 인원 정·현원 관리를 통해 본부와 지방관서별
 형평성 있는 인력 운용으로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하여 행정지원 인력으로 활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73	0	273	273	210	76.6	76.6	0	63
2023	250	0	250	250	205	82	82	0	45
2024	253	0	253	207	204	80.6	98.5	0	3
2025	256	0	256	256	192	75	75	0	6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66)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총액)(7011-2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총액)	실·국·과(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소관부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본경비 (본부기관운영, 비총액)	6,852	10,012	10,012	10,045	10,345	333	3.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정)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325	7,143	6,852	-	291	10,012	9,159	8,917	-	-	10,3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노동부 본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운영지원과, 감사관실, 대변인실 등 지원 부서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없음
- ② 추진경위
 - 노동부 지원부서의 기관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원필요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총액) :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감사관실, 운영지원과, 국제협력관실 운영비 등 10,345백만원

 - 운영비 : 6,427백만원
 - 일반수용비 : 4,021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 : 310백만원, 임차료 : 496백만원, 유류비 : 51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 70백만원, 일반용역비 : 1,479백만원
 - 여비(국내, 국외, 국외교육여비) : 2,403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 : 557백만원
 - 보전금(배상금, 포상금, 기타보전금) : 424백만원
 - 공사비 : 72백만원
 - 자산취득비 : 461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재배정 ⇒ 예산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560	△804	7,756	7,693	7,045	90.8	91.6	-	649
2023	9,040	-	9,040	7,007	6,676	73.8	95.3	-	331
2024	9,325	-	9,325	7,143	6,876	73.8	96.3	-	267
2025	10,012	-	10,012	9,159	8,917	89.1	97.4	-	242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7.24.)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비충액) (7011-252)	240-02	3	기본경비(산업 안전보건본부, 비충액) (7011-256)	240-02	TF신설에 따른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025.7.30.)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비충액) (7011-252)	210-01	6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비충액) (7011-252)	310-02	소송비용액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025.9.5.)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비충액) (7011-252)	210-01	7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비충액) (7011-252)	310-02	소송비용액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025.9.30.)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비충액) (7011-252)	210-01	5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비충액) (7011-252)	310-02	소송비용액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025.10.23.)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비충액) (7011-252)	210-01	2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비충액) (7011-252)	310-02	소송비용액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025.11.7.)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비충액) (7011-252)	210-01	204	노동위원회전 문성강화 (7039-309)	210-01	노동위원회 회의수당 및 안전검토 수당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025.11.7.)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비충액) (7011-252)	210-01	59	노동위원회전 문성강화 (7039-309)	310-02	소송비용액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025.11.7.)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비충액) (7011-252)	210-01	40	소속기관기본 경비(노동위원 회기본경비,비 충액) (7018-264)	210-02	노동위원회 소속 직원 사업수행을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 추당
자체전용 (2025.11.7.)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비충액) (7011-252)	210-01	24	소속기관기본 경비(노동위원 회기본경비,비 충액) (7018-264)	220-01	노동위원회 소속 직원 사업수행을 위한 여비 부족분 추당
자체전용 (2025.11.7.)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비충액) (7011-252)	210-01	73	무료법률 서비스지원 (7039-310)	210-01	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보수 지급 예산 부족분 충당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11.26)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비충액) (7011-252)	210-01	40	기본경비(노동 정책실, 비충액) (7011-254)	210-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전문가 TF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025.11.28)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비충액) (7011-252)	210-01	35	무료법률 서비스지원 (7039-310)	210-01	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보수 지급 예산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025.12.23)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비충액) (7011-252)	210-14	45	무료법률 서비스지원 (7039-310)	210-01	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보수 지급 예산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025.12.23)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비충액) (7011-252)	210-01	308	노동위원회전 문성강화 (7039-309)	210-01	노동위원회 회의수당 및 안전검토 수당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025.12.23)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비충액) (7011-252)	210-14	17	노동위원회전 문성강화 (7039-309)	210-01	노동위원회 회의수당 및 안전검토 수당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025.12.23)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비충액) (7011-252)	220-01	5	기본경비(고용 정책실, 비충액) (7011-253)	220-01	고용실 사업수행을 위한 여비 부족분 충당

사 업 명
(67) 기본경비(고용정책실, 비총액)(7011-25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4	-		080	086
명칭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3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 (고용정책실, 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본경비 (고용정책실, 비총액)	실·국·과(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고용노동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본경비 (고용정책실, 비총액)	785	707	707	728	699	△8	△1.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99	794	786	-	8	707	712	687	-	24	699
· 운영비	496	496	490	-	6	501	501	489	-	11	473
· 여비	73	168	166	-	2	76	81	79	-	2	76
· 업무추진비	50	50	50	-	-	50	50	50	-	-	70
· 연구용역비	31	31	31	-	-	31	31	20	-	11	31
· 유형자산	49	49	49	-	-	49	49	49	-	-	4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업무 추진을 위한 공통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해당없음
- ② 추진경위: 고용정책실 기본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58	677	699	707	69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해당없음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정책실 소속 직원 및 관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기본경비(고용정책실, 총액): (2025 예산) 707백만원 → (2026 예산) 699백만원(△8백만원, -1.1%)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07,000	○ 고용정책실 기본경비(비총액) 707백만원 - 회의자료 인쇄, 공공요금, 임차료 등 운영비 501백만원 - 국내 및 국외업무 여비 76백만원 - 업무추진비 50백만원 - 업무용역비 31백만원 - 고용정책실 자산취득비: 49백만원	699,000	○ 고용정책실 기본경비(비총액) 699백만원 - 회의자료 인쇄, 공공요금, 임차료 등 운영비 473백만원 - 국내 및 국외업무 여비 76백만원 - 업무추진비 70백만원 - 업무용역비 31백만원 - 고용정책실 자산취득비: 4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고용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
2023	- 고용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
2024	- 고용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
2025	- 고용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정책실 관련 사업의 원활한 운영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경상업무 추진 및 경상경비 사용 요청 → 타당성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 검토
→ 지급결의 및 지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58	-	658	658	615	93.4	93.4	-	43
2023	677	-	677	677	604	89.2	89.2	-	73
2024	699	-	699	794	786	112.4	99.0	-	8
2025	707	-	707	712	687	97.2	96.5	-	2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집행잔액 불용(43백만원)
2023	- 집행잔액 불용(73백만원)
2024	- 고용정책실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95백만원 내역변경 * (내역변경)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총액) 국내여비 △95백만원 > 기본경비(고용정책실 비총액) 국내여비 +95백만원
2025	- 고용정책실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5백만원 내역변경 * (내역변경)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총액) 국내여비 △5백만원 > 기본경비(고용정책실 비총액) 국내여비 +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68) 기본경비(노동정책실, 비총액)(7011-25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080	08F
명칭			노동정책관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4
명칭	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노동정책실, 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총괄>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사업시행주체	노동정책총괄과
		고용노동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본경비 (노동정책실,비총액)	2,246	2,122	2,122	2,716	3,016	894	42.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33	2,268	2,246	-	22	2,122	2,162	2,146	-	-	3,016
· 기본경비 (노동정책실비총액)	2,133	2,268	2,246	-	22	2,122	2,162	2,146	-	-	3,0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노동정책실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전금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없음

② 추진경위

- 노동정책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운영비, 여비 등)로 편성·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53	2,047	2,133	2,122	3,01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수혜자 :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기본경비(노동정책실,비총액)
: ('25) 2,122백만원 → ('26) 2,716백만원, 594백만원 증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122,000	☐ 운영비(210) : 959,473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464,916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62,368천원 ☐ 피복비(210-03) : 265,000천원 ☐ 임차료(210-07) : 151,566천원 ☐ 유류비(210-08) : 11,862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761천원 ☐ 여비(220) : 734,754천원 (\$2,740) ☐ 국내여비(220-01) : 679,340천원 ☐ 국외업무비(220-02) : 55,414천원(\$2,740) ☐ 업무추진비(240) : 159,541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59,541천원 ☐ 보전금(310) : 44,565천원 ☐ 포상금(310-03) : 41,148천원 ☐ 기타보전금(310-04) : 3,417천원 ☐ 유형자산(430) : 223,667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23,667천원	3,016,000	☐ 운영비(210) : 1,546,244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706,816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245,188천원 ☐ 피복비(210-03) : 370,000천원 ☐ 임차료(210-07) : 187,706천원 ☐ 유류비(210-08) : 24,533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2,001천원 ☐ 여비(220) : 731,983천원 (\$2,740) ☐ 국내여비(220-01) : 679,340천원 ☐ 국외업무비(220-02) : 52,643천원(\$2,740) ☐ 업무추진비(240) : 169,541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69,541천원 ☐ 보전금(310) : 344,565천원 ☐ 포상금(310-03) : 341,148천원 ☐ 기타보전금(310-04) : 3,417천원 ☐ 유형자산(430) : 223,667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23,667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노동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2,035백만원)
2023	- 노동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2,464백만원)
2024	- 노동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2,246백만원)
2025	- 노동정책실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2,146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노동정책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운영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경사업무 추진 및 경상경비 사용 요청 → 타당성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 검토
→ 지급결의 및 지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53	△11	2,042	2,063	2,035	99.7	98.6	-	28
2023	2,047	-	2,047	2,547	2,464	120.4	96.7	-	465
2024	2,133	-	2,133	2,268	2,246	105.3	99.0	-	22
2025	2,122	-	2,122	2,162	2,146	101.1	99.3	-	1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2022	- 본부기본경비 부족예산 충당을 위한 전용(57백만원) - 본부기본경비 부족예산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21백만원) - 임차료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정(18백만원) -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조정(12백만원)
2023	- 임차료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정(35백만원)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정(42백만원)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500백만원) -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조정(47백만원) - 근로감독 관련 포상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정(3백만원)
2024	-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35백만원) -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조정(73백만원)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100백만원) - 불용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22백만원)
2025	-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40백만원) -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조정(48백만원) - 불용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16백만원)

사 업 명
(69)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비총액)(7011-25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6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본경비 (산업안전보건본부, 비총액)	실·국·과(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소관부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본경비(산업안전 보건본부, 비총액)	1,601	1,693	1,693	3,363	3,363	1,670	98.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01	1,751	1,717	0	34	1,693	1,566	1,514	0	52	3,363
·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비총액)	1,601	1,751	1,717	0	34	1,693	1,566	1,514	0	52	3,36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업안전보건본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없음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 연도 : 2014년
- 추진 배경 : 산업안전보건본부 운영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4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78	1,493	1,601	1,693	3,36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비총액)

: (2025 예산) 1,693백만원 → (2026 예산) 3,363백만원, 1,670백만원 증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93,000 (천원)	☐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비총액) : 1,693백만원 ☐ 운영비 : 916백만원 - 일반수용비 : 636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111백만원 - 피복비 : 92백만원 - 임차료 : 49백만원 - 유류비 : 9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 18백만원 ☐ 여비 : 611백만원 - 국내여비 : 611백만원 ☐ 업무추진비 : 31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 : 31백만원 ☐ 보전금 : 5백만원 - 기타보전금 : 5백만원 ☐ 유형자산 : 130백만원 - 자산취득비 : 130백만원	3,363,000 (천원)	☐ 기본경비(산업안전보건본부, 비총액) : 3,363백만원(증 1,670백만원) ☐ 운영비 : 2,566백만원(증 1,650백만원) - 일반수용비 : 1,332백만원(증 696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610백만원(증 499백만원) - 피복비 : 398백만원(증 306백만원) - 임차료 : 143백만원(증 94백만원) - 유류비 : 43백만원(증 34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 40백만원(증 22백만원) ☐ 여비 : 611백만원(전년 동) - 국내여비 : 611백만원(전년 동) ☐ 업무추진비 : 51백만원(증 20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 : 51백만원(증 20백만원) ☐ 보전금 : 5백만원(전년 동) - 기타보전금 : 5백만원(전년 동) ☐ 유형자산 : 130백만원(전년 동) - 자산취득비 : 130백만원(전년 동)

4) 사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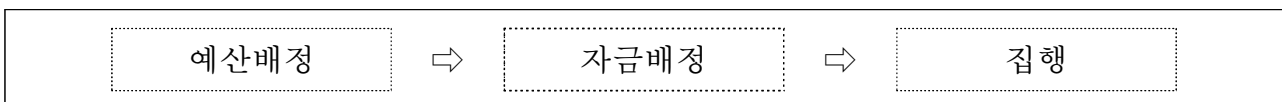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업재해예방 사업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423	△45	1,378	1,512	1,475	107.0	97.6	0	37
2023	1,493	0	1,493	1,833	1,779	119.2	97.0	0	54
2024	1,601	0	1,601	1,751	1,717	107.2	98.1	0	34
2025	1,693	0	1,693	1,566	1,514	89.4	96.7	0	5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국내여비 부족에 따른 131백만원 전용, 업무추진비 부족에 따른 3백만원 내역변경
2023	- 국내여비 300백만원 및 일반수용비 40백만원 내역변경 등
2024	- 국내여비 부족에 따른 200백만원 전용, 250백만원 내역변경
2025	- 국내여비 부족에 따른 130백만원 전용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 전용 (2025.12.18)	산업안전보건 본부(비충액) (7011-256)	일반 수용비 (210-01)	△130	지방청 기본경비 (7024)	국내여비 (220-01)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 여비 부족

사 업 명						
(70)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 비총액)(7011-25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7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 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본경비 (직업능력정책국, 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직업능력정책과
		직접수행

가. 예산(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본경비(직업능력 정책국, 비총액)	198	209	209	208	208	△1	△0.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8	198	167	-	31	209	209	194	-	15	208
·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 비총액)	198	198	167	-	31	209	209	194	-	15	2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본경비(직업능력정책국, 비총액)) 직업능력정책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없음
- ② 추진경위 - 직업능력정책국 기본경비 지원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5	195	198	209	20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계획) 산출 근거

- 직업능력정책국 기본경비 208백만원
 - 회의자료 인쇄, 공공요금, 임차료, 위탁사업 등 운영비 156백만원
 - 국내 및 국외업무 여비 20백만원
 - 업무추진비 6백만원
 - 포상금 10백만원
 - 자산취득비 1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재배정 ⇒ 예산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75	-	175	175	154	88.0	88.0	0	21
2023	195	-	195	165	161	82.6	97.6	0	4
2024	198	-	198	198	167	84.3	84.3	0	31
2025	209	-	209	209	194	92.8	92.8	0	15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 - 일반수용비 11백만원 국내여비로 전용
2023	-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 예상(약 8백만원) - 일반수용비 5백만원 국외여비로 전용 - 일반수용비 30백만원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총액) 배상금으로 전용
2024	-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 예상(약 31백만원) - 일반수용비 40백만원 국내여비로 전용
2025	-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발생 예상(약 15백만원) - 일반수용비 39백만원 국내여비로 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71)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비총액)(7011-25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8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본경비 (통합고용 정책국, 비총액)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소관부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본경비(통합고용 정책국, 비총액)	255	280	280	288	274	△6	△0.0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8	278	255	-	23	280	280	277	-	3	274
· 기본경비(통합고용 정책국, 비총액)	278	278	255	-	23	280	280	277	-	3	2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비총액)) 통합고용정책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없음
- ② 추진경위 : 통합고용정책국 기본경비 지원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년~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72	276	278	280	27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기본경비(통합고용정책국, 비총액) : (2025 예산) 280백만원 → (2026 예산) 274백만원, 6백만원 감액
- (요구) 통합고용정책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지원
 - (산출) 수용비, 업추비, 여비 등 274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8	○ 일반수용비(210-01) : 186백만원 1. 정책 관련 홍보물 유인(117백만원) 2. 각종 고시 등 유인(6백만원) 3. 법령, 훈령, 예규 등 유인(6백만원) 4. 외국사례등 대상별 고용정책 일반자료 유인(8백만원) 5. 각종 위원회 및 간담회 등 참석수당(24백만원) 6. 전상장비(프린트토너 등) 소모품 구매(8백만원) 7. 간행물 및 기타비품 구입비(8백만원) 8. 사무용품 구입비(8백만원) 9. 국회업무 추진 관련 자료 유인(5백만원) 10. 단수조정(△4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2백만원 1. 안내문 및 지침 등 홍보책자 발송(20백만원) 2.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8백만원) 3. 장애인인무고용이행지도 우편요금(4백만원) ○ 임차료(210-07) : 8백만원 1. 정책 관련 회의장 임차료(8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32백만원 1. 국회 등 유관기관 출장(25백만원) 2. 지도점검 등 지방청 업무협의(7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1백만원 1. OECD 고용작업반회의(4~7급, 1명, 파리)(4백만원) 2. 외국고용평등 실태 연구(7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9백만원 1. 고령자고용정책 수립 관련 업무협의(1백만원) 2. 장애인고용정책 수립 관련 업무협의(1백만원) 3. 여성고용정책 수립 관련 업무협의(1백만원) 4. 사회적기업정책 수립 관련 업무협의(1백만원) 5. 청년고용정책 수립 관련 업무협의(4백만원)	274	○ 일반수용비(210-01) : 161백만원 1. 정책 관련 홍보물 유인(91백만원) 2. 각종 고시 등 유인(6백만원) 3. 법령, 훈령, 예규 등 유인(6백만원) 4. 외국사례등 대상별 고용정책 일반자료 유인(8백만원) 5. 각종 위원회 및 간담회 등 참석수당(24백만원) 6. 전상장비(프린트토너 등) 소모품 구매(8백만원) 7. 간행물 및 기타비품 구입비(8백만원) 8. 사무용품 구입비(7백만원) 9. 국회업무 추진 관련 자료 유인(2백만원) 10. 단수조정(385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2백만원 1. 안내문 및 지침 등 홍보책자 발송(20백만원) 2.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8백만원) 3. 장애인인무고용이행지도 우편요금(4백만원) ○ 임차료(210-07) : 8백만원 1. 정책 관련 회의장 임차료(8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34백만원 1. 국회 등 유관기관 출장(24백만원) 2. 지도점검 등 지방청 업무협의(9백만원) 3. 단수조정(1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0백만원 1. OECD 고용작업반회의(4~7급, 1명, 파리)(4백만원) 2. 외국고용평등 실태 연구(7백만원) 3. 단수조정(△598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9백만원 1. 고령자고용정책 수립 관련 업무협의(5백만원) 2. 장애인고용정책 수립 관련 업무협의(5백만원) 3. 여성고용정책 수립 관련 업무협의(5백만원) 4. 사회적기업정책 수립 관련 업무협의(5백만원) 5. 청년고용정책 수립 관련 업무협의(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각 대상별(고령자, 장애인, 여성, 사회적기업) 고용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재배정 ⇒ 예산집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72	-	272	272	262	96.2	96.2	-	10
2023	276	-	276	276	239	86.6	86.6	-	37
2024	278	-	278	278	255	91.6	91.6	-	23
2025	280	-	280	280	277	98.8	98.8	-	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내역변경 사유 (1) '호남권 직업체험 건립'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을 위해 외부회계 기관 용역비 지출 필요에 따라 일반수용비(210-01) 20백만원을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변경 (2)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에 따라 일반수용비(210-01) 10백만원을 공공요금및제세(210-02)로 세목변경
2023	- 내역변경 사유 (1) 국외출장 계획에 따른 국외여비(220-02) 부족으로 국내여비(220-01) 4백만원 세목변경 (2) 국내출장(4분기) 및 '일본의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답사'계획에 따라 부족분 33.1백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에서 국내여비(220-01, 21백만원) 및 국외여비(220-02, 12.1백만원)로 전용
2024	- 내역변경 사유 (1) 국외출장 계획에 따른 국외여비(220-02) 부족으로 국내여비(220-01) 2.3백만원 세목변경 (2) 일가정양립추진단 신설 및 현안 등의 사유로 통합국 내 출장건수가 증가(계획 변경)하여 부족분 총 52백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 및 공공요금및제세(210-02)에서 국내여비(220-01)로 전용
2025	- 내역변경 사유 (1) 행사 계획에 따라 임차료 부족분을 일반수용비(210-01)에서 5백만원 세목변경 (2) 통합고용정책국 출장여비 부족분을 일반수용비(210-01) 및 공공요금및제세(210-02)에서 46백만원 전용, 국외여비(220-02)에서 국내여비(220-01) 9백만원 세목변경 (3) 국외출장 계획에 따라 국외여비(220-02) 부족분 국내여비(220-01)에서 4백만원 세목변경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 · 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5.13)	기본경비 (통합고용 정책국, 비총액)	210-01	12	기본경비 (통합고용 정책국, 비총액)	210-07	남녀고용평등 행사, 통합국 내 사업운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해 부족분 전용
조정 (2025.5.21)		220-02	5		220-01	통합국 내 국내여비 부족분 국외여비에서 금액 조정
전용 (2025.6.24)		210-01	20		220-01	통합국 내 국내여비 부족분 일반수용비에서 전용
조정 (2025.7.11)		220-01	4		220-02	국외출장 계획에 따라 부족분 국내여비에서 금액 조정
전용 (2025.10.16)		210-01	22		220-01	통합국 내 국내여비 부족분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전용
		210-02	4			
조정 (2025.12.2)		220-02	4		220-01	통합국 내 국내여비 부족분 국외여비에서 금액 조정

사 업 명
(72) 사회복지무요원운용(노동위, 총액)(7018-21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19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사회복지무요원운용(노동위, 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사회복지무 요원운용 (노동위, 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사회복지무요원운용 (노동위, 총액)	129	127	127	135	135	8	6.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9	115	113	0	0	127	127	121	0	6	135
· 사회복지무요원운용(노동위, 총액)	129	115	113	0	0	127	127	121	0	6	1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노동위원회 소속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병역법, 사회복지무요원 복무관리규정
- ② 추진경위
 - 병역자원관리 개선을 위해 행정업무 지원인력으로의 활용방침에 의함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4	99	129	127	13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5개 노동위원회(중노위, 서울, 경기, 충남, 인천)
- 사업 수혜자 : 노동위원회 소속 사회복지무요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127백만원('25년) → 135백만원('26년)

- 인원 : 9명

- 세부내역 : 사회복지무요원 평균 인건비 인상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76백만원 집행
2023	-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95백만원 집행
2024	-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113백만원 집행
2025	-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121백만원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4	0	74	76	76	102.7	100	0	0
2023	99	0	99	99	95	96.0	96.0	0	4
2024	129	0	129	115	113	87.6	98.3	0	2
2025	127	0	127	127	121	95.3	95.3	0	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내역: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부족으로 전용(증 2백만원) ○ 불용내역: 집행잔액 4백만원
2023	○ 이·전용 내역: 해당없음 ○ 불용내역: 집행잔액 4백만원
2024	○ 이·전용 내역: 12월 공무원 초과수당 선지급분 부족으로 전용(감 14백만원) ○ 불용내역: 집행잔액 2백만원
2025	○ 이·전용 내역: 해당없음 ○ 불용내역: 집행잔액 6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73) 산재재심사위원회기본경비(총액)(7018-2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2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산재재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재재심사위원회기본경비 (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업시행주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재재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	41	45	45	45	45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5	45	41	0	4	45	45	45	0	0	45
· 운영비	29	29	25	0	4	29	29	29	0	0	29
· 직무수행경비	16	16	16	0	0	16	16	16	0	0	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동 사업은 산재재심사위원회 기관 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 없음
- ② 추진경위 -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설립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동 사업이 추진됨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63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2	45	45	45	45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25년) 45백만원 → ('26년) 45백만원(전년동)

1) 운영비

- 특근매식비: ('26년) 16백만원 (전년동)
- 복리후생비: ('26년) 0.3백만원 (전년동)
- 기타운영비: ('26년) 13백만원 (전년동)

2) 직무수행경비

- 직책수행경비: ('26년) 16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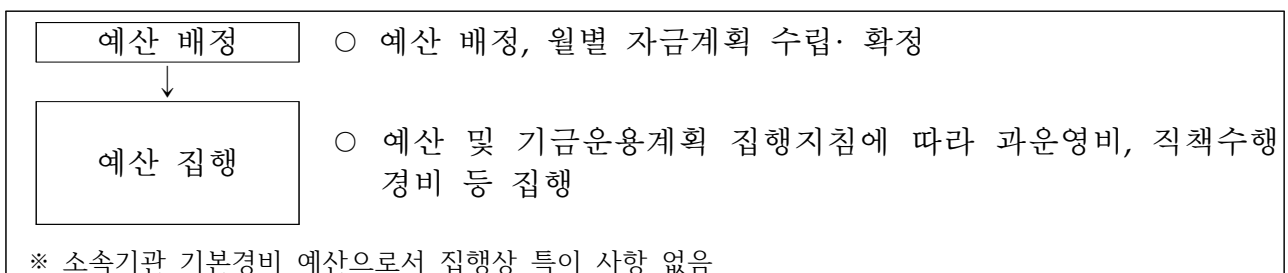
2022	4,747건 접수 / 4,705건 재결
2023	5,069건 접수 / 6,261건 재결
2024	5,751건 접수 / 4,887건 재결
2025	6,549건 접수 / 5,342건 재결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2	0	42	42	36	85.7	85.7	0	6
2023	45	0	45	45	41	92.0	92.0	0	4
2024	45	0	45	45	41	91.0	91.0	0	4
2025	45	0	45	45	45	99.4	99.4	0	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변경 (25.11.14)	산재재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 (7018-220)	기타운영비 (210-16)	3.5	산재재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 (7018-220)	특근매식비 (210-05)	'25.10~12월분 특근매식비 부족분 확보
세목변경 (25.12.24)	산재재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 (7018-220)	기타운영비 (210-16)	0.6	산재재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 (7018-220)	특근매식비 (210-05)	'25.12월분 특근매식비 부족분 확보

사 업 명
(74)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7018-22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2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최저임금위원회 기본경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실·국·과(팀)
	사업시행주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최저임금위원회 기본경비(총액)	80	87	87	91	91	4	4.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6	86	80	0	7	87	88	80	0	8	91
· 인건비	33	33	33	0	0	35	34	34	0	0	38
· 운영비	12	12	5	0	7	12	12	7	0	5	12
· 직무수행경비	34	34	34	0	0	34	34	31	0	3	34
· 민간이전	7	7	8	0	0	6	8	8	0	0	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최저임금위원회 기관운영경비(공무직근로자 인건비, 특근매식비, 직책수행경비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 ② 추진경위 : 기관운영 기본경비(인건비 등) 확보 및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1	84	86	87	9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최저임금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 : 87백만원('25) → 91백만원('26), +4백만원
 - 인건비 35백만원('25) → 38백만원('26), +3백만원
 - 운영비: 12백만원(전년동)
 - 특근매식비: 5백만원(전년동)
 - 복리후생비: 0.4백만원(전년동)
 - 기타운영비: 7백만원(전년동)
 - 직책수행경비: 34백만원(전년동)
 - 고용부담금: 6백만원('25) → 7백만원('26), +1백만원

4) 사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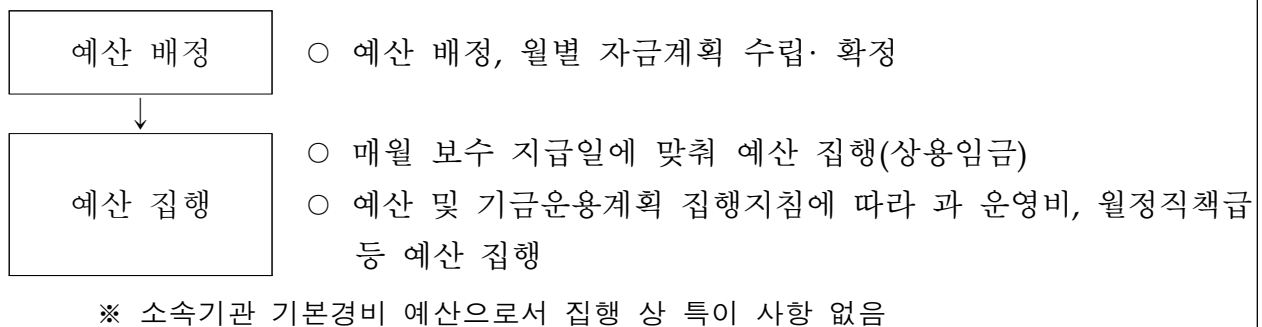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최저임금위원회 기관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1	0	81	83	74	91.4	89.1	0	9
2023	84	0	84	85	78	92.9	91.8	0	7
2024	86	0	86	88	80	93	91	0	7
2025	87	0	87	88	80	92	91	0	7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최저임금위원회 공무직근로자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본부기본경비(총액) 상용임금에서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 고용부담금으로 2백만원 전용
2023	- 최저임금위원회 공무직근로자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본부기본경비(총액) 상용임금에서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 고용부담금으로 1백만원 전용,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 상용임금에서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 고용부담금으로 0.3백만원 전용
2024	- 최저임금위원회 공무직근로자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본부기본경비(총액) 상용임금에서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 고용부담금으로 1백만원 전용,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 상용임금에서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 고용부담금으로 0.5백만원 전용
2025	- 최저임금위원회 공무직근로자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본부기본경비(총액) 상용임금에서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 고용부담금으로 1백만원 전용,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 상용임금에서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총액) 고용부담금으로 0.6백만원 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2.24.)	본부기본경비 (7011-212)	110-03	1	최저임금위원회 기본경비 (7018-221)	320-09	공무직 근로자 퇴직연금 납입액 부족으로 본부기본경비 상용임금에서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 고용부담금으로 1백만원 전용
	최저임금위원회 기본경비 (7018-221)	110-03	0.6			공무직 근로자 퇴직연금 납입액 부족으로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 상용임금에서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 고용부담금으로 0.6백만원 전용

사 업 명
(75) 노동위원회기본경비(총액)(7018-22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2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노동위원회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노동위원회 기본경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노동위원회 기본경비(총액)	942	940	940	973	973	33	3.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925	942	876	4	66	940	993	954	0	39	973
· 노동위원회기본경비 (총액)	925	942	876	4	66	940	993	954	0	39	97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노동위원회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고용노동부 공무원근로자 운영규정, 세출예산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기관운영 기본경비 확보 및 지원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73	906	925	940	97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노동위원회 직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노동위원회기본경비(총액): 940백만원('25년) → 973백만원('26년)

- ①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8명): 267백만원('25년) → 291백만원('26년)
 - 인원: 사무보조원 1명, 비서 3명, 속기사 3명, 민원상담원 1명
 - 처우개선 3.8%, 명절수당 120%, 통상임금 증액소요(+24,206천원) 반영
- ②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275백만원('25년) → 279백만원('26년)
- ③ 월정직책급(60명): 275백만원('25년) → 279백만원('26년)
- ④ 고용부담금(8명): 52백만원('25년) → 58백만원('26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노동위원회기본경비(총액) 815백만원 집행
2023	- 노동위원회기본경비(총액) 838백만원 집행
2024	- 노동위원회기본경비(총액) 876백만원 집행
2025	- 노동위원회기본경비(총액) 954백만원 집행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73	0	873	873	815	93.4	93.4	0	58
2023	906	0	906	901	838	92.4	93.0	0	59
2024	925	0	925	942	876	94.7	92.9	0	66
2025	940	0	940	993	954	101.5	96.1	0	3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내역: 특근매식비 부족으로 세목조정(12백만원) ○ 불용내역: 집행잔액 58백만원
2023	○ 이·전용 내역: 특근매식비 부족으로 세목조정(14백만원) ○ 불용내역: 집행잔액 59백만원, '23.12 카드대금(특근매식비) 4백만원 이월
2024	○ 이·전용 내역: 특근매식비 부족으로 전용(증 16백만원), 지방관서 복리후생비 부족으로 전용(감 4백만원) ○ 불용내역: 집행잔액 66백만원
2025	○ 이·전용 내역: 특근매식비 부족으로 전용(64백만원), 인건비 부족으로 전용(감 11백만원) ○ 불용내역: 집행잔액 39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0.21)	노동위원회 인건비 (7002-104)	110-05	64	노동위원회 기본경비(총액) (7018-222)	210-05	특근매식비 부족
전용 (2025.12.12)	노동위원회 기본경비(총액) (7018-222)	110-03	11	노동위원회 인건비 (7002-104)	110-01	인건비 부족

사 업 명
(76) 사회복지무요원운영(노동위, 비총액)(7018-26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6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사회복지무요원운영(노동위, 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노동위원회 기본경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사회복지무요원운영 (노동위, 비총액)	20	23	23	27	27	4	17.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	26	20	0	6	23	23	19	1	3	27
· 사회복지무요원운영 (노동위, 비총액)	26	26	20	0	6	23	23	19	1	3	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노동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무요원 운영(피복비, 급량비, 교통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병역법 제31조, 사회복지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 ② 추진경위: 자원관리 개선을 위해 행정업무 지원인력으로 활용 방침에 의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	25	26	23	2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4개 노동위원회(중노위, 서울, 경기, 인천)
- 사업 수혜자 : 노동위원회 소속 사회복지무요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사회복지요원 운영비 : 23백만원('25년) → 27백만원('26년)

○ 사회복지요원 운영비 및 여비(9명) 27백만원

- 피복비 2백만원, 급식비 15백만원, 국내교통여비 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사회복지요원 운영비 20백만원 집행
2023	사회복지요원 운영비 21백만원 집행
2024	사회복지요원 운영비 21백만원 집행
2025	사회복지요원 운영비 19백만원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노동위원회 소속 사회복지요원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5	0	25	27	21	84.0	77.8	0	6
2023	25	0	25	26	21	84.0	80.8	0	5
2024	26	0	26	26	20	76.9	76.9	0	6
2025	23	0	23	23	19	82.6	82.6	1	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내역: 사회복지요원 교통비 부족으로 전용(증 2백만원) ○ 불용내역: 집행잔액 6백만원
2023	○ 이·전용 내역: 사회복지요원 교통비 부족으로 내역변경(증 1백만원) ○ 불용내역: 집행잔액 5백만원
2024	○ 이·전용 내역: 해당없음 ○ 불용내역: 집행잔액 6백만원
2025	○ 이·전용 내역: 해당없음 ○ 불용내역: 집행잔액 3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77) 산재재심사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7018-26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6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산재재심사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재재심사위원회기본경비 (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업시행주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재재심사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	124	135	135	136	136	1	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9	129	124	0	5	135	135	133	0	2	136
· 운영비	98	98	95	0	2	99	99	97	0	1	100
· 여비	9	9	9	0	1	10	10	10	0	0	10
· 업무추진비	1	1	1	0	0	1	1	1	0	0	1
· 유형자산	20	20	19	0	2	25	25	24	0	1	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동 사업은 산재재심사위원회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 없음
- ② 추진경위 -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설립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동 사업이 추진됨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63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7	112	129	135	136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25년) 135백만원 → ('26년) 136백만원(1백만원 증)

1) 운영비

- 일반수용비: ('25년) 48백만원 → ('26년) 49백만원 (1백만원 증)
- 공공요금 및 제세: ('26년) 32백만원 (전년동)
- 임차료: ('26년) 11백만원 (전년동)
- 유류비: ('26년) 1백만원 (전년동)
- 시설장비유지비: ('26년) 7백만원 (전년동)

2) 여비

- 국내여비 : ('26년) 10백만원 (전년동)

3) 업무추진비

- 관서업무추진비 : ('26년) 1백만원 (전년동)

4) 유형자산

- 자산취득비 : ('26년) 25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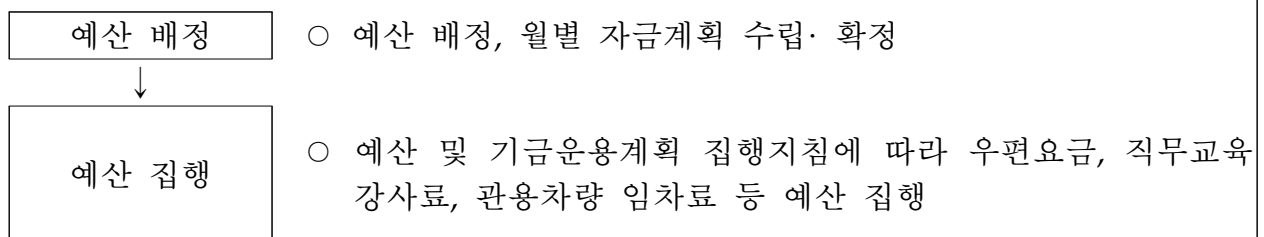
2022	4,747건 접수 / 4,705건 재결
2023	5,069건 접수 / 6,261건 재결
2024	5,751건 접수 / 4,887건 재결
2025	6,549건 접수 / 5,342건 재결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소속기관 기본경비 예산으로서 집행상 특이 사항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7	0	97	97	91	93.8	93.8	0	6
2023	112	0	112	112	102	91.0	91.0	0	9
2024	129	0	129	129	124	96.1	96.1	0	5
2025	135	0	135	135	133	98.3	98.3	0	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변경 ("25.11.14.)	산재재심사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 (7018-220)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10	산재재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 (7018-220)	일반수용비 (210-01)	사무용품, 소모품 등 구매 비용 확보
세목변경 ("25.12.18.)	산재재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 (7018-220)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3.5	산재재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 (7018-220)	일반수용비 (210-01)	사무용품, 소모품 등 구매 비용 확보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1.2			

사 업 명
(78)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7018-26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63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최저임금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실·국·과(팀)
	사업시행주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최저임금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	223	268	268	263	263	△5	△1.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3	263	223	0	40	268	268	221	0	47	263
· 운영비	181	181	40	0	22	186	186	179	0	7	182
· 여비	50	50	35	0	15	50	50	27	0	23	49
· 업무추진비	10	10	10	0	0	10	10	10	0	0	10
· 유형자산	22	22	8	0	14	22	22	5	0	17	2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각종 자료 발간, 최저임금 심의 운영지원(회의수당 지급 등)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 운영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 ② 추진경위 : 기관운영 기본경비 확보 및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5백만원	261백만원	263백만원	268백만원	263백만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최저임금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 268백만원('25) → 263백만원('26), △5백만원
 - 운영비: 186백만원('25) → 182백만원('26), △4백만원
 - 일반수용비: 156백만원('25) → 152백만원('26), △4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 8백만원(전년동)
 - 임차료: 19백만원(전년동)
 - 유류비: 2백만원(전년동)
 - 시설장비유지비: 1백만원(전년동)
 - 여비: 50백만원('25) → 49백만원('26), △1백만원
 - 국내여비: 30백만원(전년동)
 - 국외업무여비: 20백만원('25) → 19백만원('26), △1백만원
 - 업무추진비: 10백만원(전년동)
 - 자산취득비: 22백만원(전년동)

4) 사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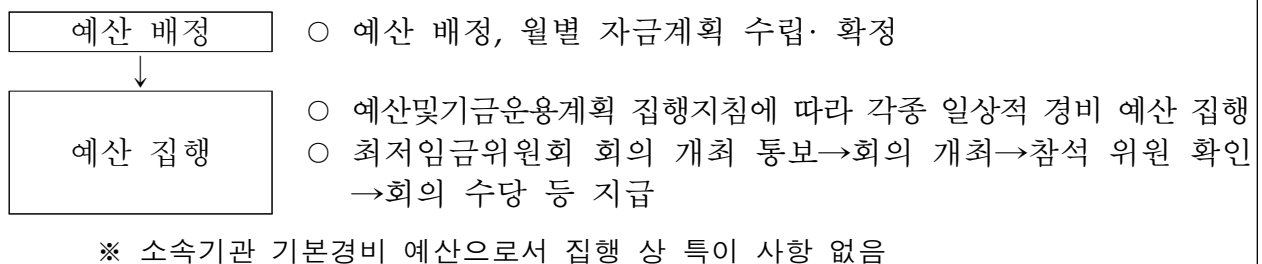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최저임금위원회 기관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55	0	255	256	242	94.9	94.5	0	14
2023	261	0	261	261	244	93.5	93.5	0	17
2024	263	0	263	263	223	84.8	84.8	0	40
2025	268	0	268	268	221	82.5	82.5	0	47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매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운영현황 조사 및 자료 수집을 위해 국외 출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항공 운임료 상승 등으로 인한 국외여비 부족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기본경비 일반수용비에서 국외 업무여비로 8백만원 전용 - 위원회 운영규칙개정,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부족으로 본부기본경비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성강화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 전용 - 항공 운임료 상승 등으로 인한 국외여비 부족으로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 국내여비에서 국외 업무여비로 7백만원 세목변경
2023	- 제1차 전원회의 회의장소 임차 관련 예산부족으로 수용비에서 임차료로 1백만원 세목변경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항공 운임료 상승 등으로 인한 국외여비 부족으로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 국내여비에서 국외 업무여비로 3백만원 세목조정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12.17)	최저임금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 (7018-263)	220-01	3	최저임금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 (7018-263)	220-02	항공 운임료 상승 등으로 인 한 국외여비 부족으로 최저 임금위원회기본경비 국내여 비에서 국외업무여비로 3백 만원 세목조정

사 업 명
(79) 노동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7018-26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64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노동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노동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노동위원회 기본경비(총액)	2,015	2,109	2,109	2,172	2,067	△42	△2.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86	2,068	2,015	0	34	2,109	2,167	2,091	18	58	2,067
· 노동위원회기본경비 (비충액)	2,086	2,068	2,015	0	34	2,109	2,167	2,091	18	58	2,0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노동위원회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고용노동부 공무원근로자 운영규정, 세출예산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기관운영 기본경비 확보 및 지원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70	1,992	2,086	2,109	2,06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노동위원회 직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노동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2,109백만원('25년) → 2,067백만원('26년)

- 운영비 1,565백만원('25년) → 1,521('26년)
- 여비 248백만원('25년) → 248백만원('26년)
- 업무추진비 152백만원('25년) → 152백만원('26년)
- 연구용역비 18백만원('25년) → 18백만원('26년)
- 손실보상금 9백만원('25년) → 9백만원('26년)
- 건설비 3백만원('25년) → 3백만원('26년)
- 유형자산 123백만원('25년) → 123백만원('26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노동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1,833백만원 집행
2023	- 노동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1,954백만원 집행
2024	- 노동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2,015백만원 집행
2025	- 노동위원회기본경비(비총액) 2,091백만원 집행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933	△ 33	1,900	1,879	1,833	96.5	97.6	0	46
2023	1,992	0	1,992	1,991	1,954	98.0	98.1	3	59
2024	2,086	0	2,086	2,068	2,015	96.6	97.4	18	34
2025	2,109	0	2,109	2,167	2,091	99.2	96.5	18	5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9.30.)	노동위원회 청사관리 (7036-306)	210-09	72	노동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 (7018-264)	220-01	국내여비 부족
	노동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 (7018-264)	210-01	11			
	노동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 (7018-264)	430-01	50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7039-309)	310-02	소송 패소비용 부족
전용 (2025.11.7.)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비총액) (7011-252)	210-01	40	노동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 (7018-264)	210-02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비총액) (7011-252)	210-01	24	노동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 (7018-264)	220-01	국내여비 부족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8.19.)	노동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 (7018-264)	220-01	13	노동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 (7018-264)	220-02	국외여비 부족
세목조정 (2025.11.26.)	노동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 (7018-264)	210-02	4	노동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 (7018-264)	210-01	일반수용비 부족
세목조정 (2025.12.29.)	노동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 (7018-264)	210-02	10	노동위원회 기본경비(비총액) (7018-264)	210-01	일반수용비 부족

사 업 명
(80) 최저임금위원회전산경비(비총액)(7018-26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65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최저임금위원회전산경비(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최저임금위원회 전산경비(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실·국·과(팀)
	사업시행주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최저임금위원회 전산경비(비총액)	160	199	199	199	199	0	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9	199	160	13	26	199	212	169	0	43	199
· 운영비	10	10	4	0	6	10	10	5	0	5	10
· 연구용역비	182	182	153	13	16	182	195	163	0	32	182
· 유형자산	7	7	3	0	4	7	7	1	0	6	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능(연구용역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 ② 추진경위 : 기관운영 기본경비 확보 및 지원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5백만원	198백만원	199백만원	199백만원	199백만원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최저임금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최저임금위원회전산경비(비총액) : 199백만원(전년동)
 - 일반수용비 : 10백만원(전년동)
 - 일반연구비 : 182백만원(전년동)
 - 심의 기초자료 등 기타 연구용역: 60백만원
 - 임금실태 등 분석 연구용역: 20백만원
 - 비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 분석 연구용역: 20백만원
 - 최저임금 효과(경제, 노동시장, 소득분배 등) 분석: 82백만원
 - 자산취득비: 7백만원(전년동)

4) 사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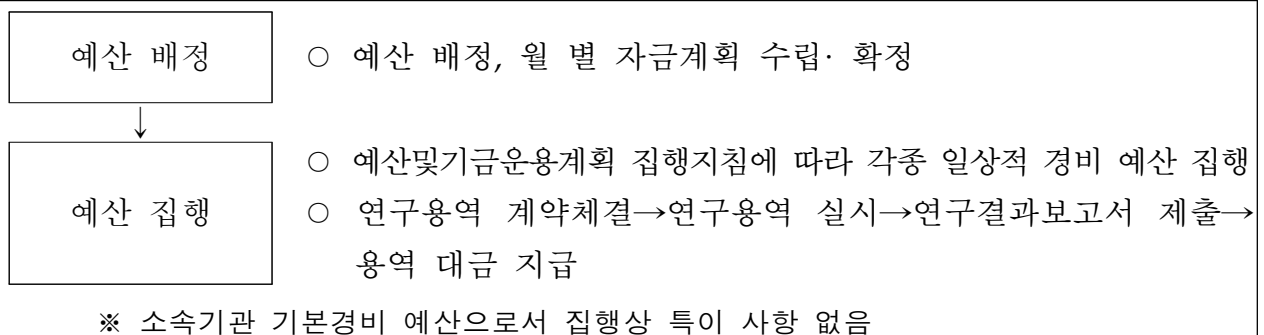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최저임금위원회 기관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95	0	195	195	188	96.4	96.4	0	7
2023	198	0	198	198	162	81.8	81.8	0	36
2024	199	0	199	199	160	80.4	80.4	13	26
2025	199	0	199	212	169	85	80	0	43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주요국 최저임금 실태 확인을 위한 해외 출장 조사 등 내실있는 연구를 위해 추가적인 일정 확보가 필요하여 연구기간 연장함(기존: 2024. 9. 6.~12. 20., 변경: 2024. 9. 6.~2025. 2. 28.)에 따라 일반연구비 13백만원 이월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81) 서울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25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서울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서울지방관서기본경비 (총액)	실·국·과(팀)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소관부처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서울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1,244	1,298	1,298	1,375	1,361	63	4.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82	1,254	1,244	0	10	1,298	1,344	1,332	0	12	1,36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6개 지청의 기본적인 경사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 예산 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서울지방노동관서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25	1,267	1,282	1,298	1,361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6개 지청
- 사업 수혜자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6개 지청 소속직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상용임금(비서 7명, 고객지원관 7명) : 432백만원(2025년) → 474백만원(2026년)
- 일용임금(3개 관서) : 69백만원(2025년) → 69백만원(2026년)
- 특근매식비(7개 관서) : 260백만원(2025년) → 271백만원(2026년)
- 일숙직비(7개 관서) : 1백만원(2025년) → 1백만원(2026년)
- 복리후생비(7개 관서) : 14백만원(2025년) → 14백만원(2026년)
- 기타운영비(7개 관서) : 247백만원(2025년) → 247백만원(2026년)
- 직책수행경비(7개 관서) : 159백만원(2025년) → 159백만원(2026년)
- 고용부담금(7개 관서) : 117백만원(2025년) → 127백만원(2026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181백만원 집행
2023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366백만원 집행
2024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244백만원 집행
2025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332백만원 집행('25.12월말 기준)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6개 지청의 원활한 기관 운영으로 행정효율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25	0	1,225	1,212	1,181	96.4	97.4	0	31
2023	1,267	0	1,267	1,380	1,366	107.8	98.9	0	14
2024	1,282	0	1,282	1,254	1,244	97.1	99.2	0	10
2025	1,298	0	1,298	1,344	1,332	102.6	99.1	0	1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서울청 인건비 부족 및 타 지방청 직책수행경비 부족으로 조정, 전용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23	- 이·전용 등 사유 : 서울청 인건비 부족 및 타 지방청 직책수행경비 부족으로 조정, 전용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24	- 이·전용 등 사유 : 서울청 인건비 부족 및 타 지방청 직책수행경비 부족으로 조정, 전용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25	- 이·전용 등 사유 : 서울청 특근매식비 및 인건비 부족으로 전용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5.10.17.)	지방고용노동관서 인건비(7007-107)	110-05	△38	기본경비(서울청, 총액)(7024-225)	210-05	초과근무 증가에 따른 특근매식비 부족
자체전용 (“25.12.15.)	기본경비(서울청, 총액)(7024-225)	250-02	△32	기본경비(서울청, 총액)(7024-225)	210-05	초과근무 증가에 따른 특근매식비 부족
자체전용 (“25.12.19.)	기본경비(본부, 총액)(7011-212)	110-03	△8	기본경비(서울청, 총액)(7024-225)	110-03	비서, 고객지원관 등 공무직 인건비 부족

사 업 명
(82)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26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 (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부산지방관서기본 경비(총액)	1,097	1,115	1,115	1,178	1,178	63	5.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87	1,115	1,097	0	18	1,115	1,203	1,173	0	30	1,1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동 내역사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7개 지청의 기본적 경사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예산 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부산지방고용노동관서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 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25	1,057	1,087	1,115	1,178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7개 지청
- 사업 수혜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7개 지청 소속 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1,178백만원
- 상용임금(8개 관서): 489백만원(2025년) → 535백만원(2026년)
 - 일용임금(8개 관서): 17백만원(2025년) → 17백만원(2026년)
 - 특근매식비(8개 관서): 153백만원(2025년) → 160백만원(2026년)
 - 일숙직비(8개 관서): 1백만원(2025년) → 1백만원(2026년)
 - 복리후생비(8개 관서): 12백만원(2025년) → 12백만원(2026년)
 - 기타운영비(8개 관서): 216백만원(2025년) → 216백만원(2026년)
 - 직책수행경비(8개 관서): 131백만원(2025년) → 131백만원(2026년)
 - 고용부담금(8개 관서): 96백만원(2025년) → 106백만원(2026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983백만원 집행
2023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176백만원 집행
2024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097백만원 집행
2025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173백만원 집행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7개 지청의 원활한 기관 운영으로 행정효율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재배정 -> 예산 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25	0	1,025	1,016	982	95.8	95.1	0	33
2023	1,057	0	1,057	1,199	1,176	111.3	102.2	0	23
2024	1,087	0	1,087	1,115	1,097	100.9	98.4	0	18
2025	1,115	0	1,115	1,203	1,173	105.2	97.5	0	3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특근매식비 부족으로 세목변경 - 집행잔액 33백만원 불용
2023	- 이·전용 등 사유: 특근매식비 부족으로 세목변경 - 집행잔액 23백만원 불용
2024	- 이·전용 등 사유: 특근매식비 부족으로 세목변경 - 집행잔액 18백만원 불용
2025	- 이·전용 등 사유: 특근매식비 부족으로 세목변경 - 집행잔액 30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0.17)	지방고용노동 관서인건비 (7007-107)	110-05	68	부산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7024-226)	210-05	지방관서 특근매식비 부족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에서 전용
전용 (2025.12.26)	기본경비(본부 기관운영, 총액) (7011-212)	110-03	20	부산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7024-226)	320-09	공무직 퇴직연금부담금 예산 부족해소를 위해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총액)에서 전용

사 업 명
(83) 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27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대구지방관서기본 경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대구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784	815	815	839	862	47	5.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96	794	784	0	10	815	846	839	0	6	86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소속지청(5개소)의 기본 경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 예산 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른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 운영 경상경비 지원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32	767	796	815	86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당없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 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 862백만원
 - 상용임금(비서 6명, 고객지원관 6명): 363백만원(2025년) → 397백만원(2026년)
 - 일용임금(2개 관서): 20백만원(2025년) → 20백만원(2026년)
 - 특근매식비(6개 관서): 128백만원(2025년) → 134백만원(2026년)
 - 일숙직비(6개 관서): 1백만원(2025년) → 1백만원(2026년)
 - 복리후생비(6개 관서): 7백만원(2025년) → 7백만원(2026년)
 - 기타운영비(6개 관서): 146백만원(2025년) → 146백만원(2026년)
 - 직무수행경비(6개 관서): 79백만원(2025년) → 79백만원(2026년)
 - 고용부담금(6개 관서): 71백만원(2025년) → 78백만원(2026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5개 지청의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741백만원 집행
202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5개 지청의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881백만원 집행
202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5개 지청의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784백만원 집행
202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5개 지청의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839백만원 집행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외 5개 지청의 원활한 기관운영으로 행정효율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연간 예산 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32	0	732	748	741	101.2	99.1	0	7
2023	767	0	767	883	881	114.9	99.8	0	2
2024	796	0	796	794	784	98.5	98.7	0	10
2025	815	0	815	846	839	102.9	99.2	0	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과 운영비) 부족으로 조정, 전용 - 불용 사유: 집행잔액
2023	- 이·전용 등 사유 : 청년인턴 인건비, 고용부담금, 특근매식비, 동호회 지원예산, 초과근무 수당 부족으로 조정, 전용 - 불용 사유: 집행잔액
2024	- 이·전용 등 사유 : 상용임금 부족으로 조정, 전용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5	- 이·전용 등 사유 :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특근매식비 부족으로 전용 및 조정 - 불용사유: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0.17)	7007-107	110-05	23	7024-227	210-05	특근매식비 부족
전용 (2025.12.18)	7011-212	110-03	6	7024-227	110-03	상용임금 부족
전용 (2025.12.18)	7011-212	320-09	2	7024-227	320-09	고용부담금 부족
세목변경 (2025.12.26)	7024-227	210-16	9	7024-227	210-05	특근매식비 부족

사 업 명
(84) 중부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28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중부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중부지방 관서기본 경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관리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중부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2,099	2,151	2,264	2,264	113	5.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99	2,127	2,072	0	55	2,151	2,305	2,260	0	0	2,2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중부청 및 관내 14개 지청 등 중부지방노동관서의 기본적 경사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3조제1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예산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중부지방노동관서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51	2,052	2,099	2,151	2264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부청 및 14개 관서
- 사업 수혜자 : 중부청 및 14개 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상용임금(비서 15명, 명예상담원 15명) : 892백만원(2025년도) -> 972백만원(2026년도)
일용임금(15개 관서) : 58백만원(2025년도) -> 58백만원(2026년도)
특근매식비(15개 관서) : 345백만원(2025년도) -> 359백만원(2026년도)
일·숙직비(15개 관서) : 3백만원(2025년도) -> 3백만원(2026년도)
복리후생비(15개 관서) : 21백만원(2025년도) -> 21백만원(2026년도)
기타운영비(15개 관서) : 409백만원(2025년도) -> 409백만원(2026년도)
직책수행경비(15개 관서) : 238백만원(2025년도) -> 238백만원(2026년도)
고용부담금(15개 관서) : 184백만원(2025년도) -> 202백만원(2026년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특근매식비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940백만원 집행
2023	특근매식비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2,323백만원 집행
2024	특근매식비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2,072백만원 집행
2025	특근매식비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2,260백만원 집행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중부지방노동관서의 원활한 기관운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951	0	1,951	1,970	1,940	99.4	98.5	0	30
2023	2,052	0	2,052	2,357	2,323	113.2	98.5	0	35
2024	2,099	0	2,099	2,127	2,072	98.7	97.4	0	55
2025	2,151	0	2,151	2,305	2,260	98	98	0	0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세목 변경 등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 잔액
2023	- 이·전용 등 사유 : 청년인턴(15명) 채용 관련 인건비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 잔액
2024	- 이·전용 등 사유 : 공무원근로자 인건비 부족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 잔액
2025	- 이·전용 등 사유 : 특근매식비 및 인건비 부족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 전용 (‘25.10.17.)	지방고용노동관서 인건비(7007-107)	110-05	148,471	중부지방관서기본 경비(총액)(7024-228)	210-05	특근매식비 부족
자체 전용 (‘25.12.8.)	중부지방관서기 본경비(총액) (7024-228)	250-02	24,400	중부지방관서기 본경비(총액)(7024-228)	210-05	특근매식비 부족
자체 전용 (‘25.12.19)	본부기본경비(총액) (7011-212)	110-03	6,000	중부지방관서기 본경비(총액)(7024-228)	110-03	인건비 부족

사 업 명
(85)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2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29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 (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사업시행주체	고용관리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광주지방관서기본 경비(총액)	859	880	880	929	929	49	5.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63	872	859	0	12	880	921	910	0	11	92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의 기본적인 경사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3조제1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예산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96	839	863	880	929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
- 사업 수혜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 소속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총액): 929백만원
 - 상용임금(비서 6명,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7명): 368백만원(2025년) → 403백만원(2026년)
 - 일용임금(통계조사원) :21백만원(2025년) → 21백만원(2026년)
 - 특근매식비(6개관서): 125백만원(2025년) → 130백만원(2026년)
 - 일·숙직비(6개관서): 1백만원(2025년) → 1백만원(2026년)
 - 복리후생비(6개관서): 8백만원(2025년) → 8백만원(2026년)
 - 기타운영비(6개관서): 158백만원(2025년) → 158백만원(2026년)
 - 직책수행경비(6개관서): 103백만원(2025년) → 103백만원(2026년)
 - 고용부담금(6개관서): 97백만원(2025년) → 107백만원(2026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상용임금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796백만원 집행
2023	상용임금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839백만원 집행
2024	상용임금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859백만원 집행
2025	상용임금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910백만원 집행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의 원활한 기관운영으로 행정효율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96	0	796	816	810	101.7	99.2	0	6
2023	839	0	839	985	980	116.8	99.5	0	4
2024	863	0	863	872	859	99.5	98.5	0	12
2025	880	0	880	921	910	103.4	98.8	0	1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세목 변경 등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 잔액
2023	- 이·전용 등 사유 : 세목 변경 등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 잔액
2024	- 이·전용 등 사유 : 세목 변경 등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 잔액
2025	- 이·전용 등 사유 : 세목 변경 등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0.17.)	지방고용노동 관서경비 (7007-107)	110-05	24	광주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7024-229)	210-05	업무수행에 필요한 특근매식비 부족
전용 (2025.12.18.)	본부기본경비 (총액) (7011-212)	110-03	17	광주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7024-229)	110-03	공무직 근로자 업무량 증가에 따른 상용임금(초과근무수당 등) 예산 부족

사 업 명
(86)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7024-2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 노동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3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대전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대전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828	880	880	928	928	48	5.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867	861	828	-	33	880	921	887	-	34	92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의 기본적인 경사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 예산 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대전지방노동관서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01	843	867	880	928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
- 사업 수혜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 소속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 880백만원(2025년) → 928백만원(2026년)
- 상용임금(비서 6명, 명예상담원 6명) : 370백만원(2025년) → 404백만원(2026년)
- 일용임금(통계조사원) : 14백만원(2025년) → 14백만원(2026년)
- 특근매식비(6개 관서) : 142백만원(2025년) → 148백만원(2026년)
- 일숙직비(6개 관서) : 1백만원(2025년) → 1백만원(2026년)
- 복리후생비(6개 관서) : 8백만원(2025년) → 8백만원(2026년)
- 기타운영비(6개 관서) : 160백만원(2025년) → 160백만원(2026년)
- 직책수행경비(6개 관서) : 104백만원(2025년) → 104백만원(2026년)
- 고용부담금(6개 관서) : 81백만원(2025년) → 89백만원(2026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773백만원 집행
202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922백만원 집행
202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828백만원 집행
202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887백만원 집행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의 원활한 기관 운영으로 행정효율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01	-	801	800	773	96.5	96.6	-	27
2023	843	-	843	945	922	109.4	97.6	-	23
2024	867	-	867	861	828	95.5	96.2	-	33
2025	880	-	880	921	887	100.8	96.3	-	3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부족으로 자체전용 등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3	- 이·전용 등 사유 :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부족으로 자체전용 등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4	- 이·전용 등 사유 :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부족으로 자체전용 등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5	- 이·전용 등 사유 : 특근매식비 부족으로 자체전용 등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10.17)	지방고용노동 관서인건비 (7007-107)	110-05	41	대전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7024-230)	210-05	특근매식비 예산 부족
자체전용 (2025.12.19)	대전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7024-230)	250-02	8	대전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7024-230)	210-05	특근매식비 예산 부족

사 업 명						
(87) 서울지방관서기본경비(비충액)(7024-26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67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서울지방관서기본경비(비충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서울지방관서기본경비 (비충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서울지방관서 기본경비(총액)	1,878	1,903	1,903	1,960	1,878	△25	△1.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67	1,878	1,877	0	0	1,903	1,906	1,886	0	20	1,8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6개 지청의 기본적인 경사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 예산 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서울지방노동관서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29	1,810	1,867	1,903	1,878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6개 지청
- 사업 수혜자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6개 지청 소속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일반수용비(7개 관서) : 352백만원(2026년) → 352백만원(2026년)
- 공공요금 및 제세(7개 관서) : 689백만원(2025년) → 699백만원(2026년)
- 피복비 (3개 관서) : 0.5백만원(2025년) → 0.6백만원(2026년)
- 임차료(7개 관서) : 31백만원(2025년) → 33백만원(2026년)
- 유류비(7개 관서) : 75백만원(2025년) → 75백만원(2026년)
- 시설장비유지비(7개 관서) : 14백만원(2025년) → 14백만원(2026년)
- 국내여비(7개 관서) : 472백만원(2025년) → 472백만원(2026년)
- 관서업무추진비(7개 관서) : 51백만원(2025년) → 51백만원(2026년)
- 자산취득비(7개 관서) : 219백만원(2025년) → 181백만원(2026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841백만원 집행
2023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856백만원 집행
2024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877만원 집행
2025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886백만원 집행('25. 12월말 기준)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6개 지청의 원활한 기관 운영으로 행정효율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829	0	1,829	1,882	1,841	100.7	97.8	35	5
2023	1,810	0	1,810	1,863	1,856	102.5	99.6	0	8
2024	1,867	0	1,867	1,878	1,877	100.5	99.9	0	1
2025	1,903	0	1,903	1,906	1,886	99.1	98.9	0	2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공공요금 부족으로 조정, 전용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23	- 이·전용 등 사유 : 공공요금 부족으로 조정, 전용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24	- 이·전용 등 사유 : 타 지청 공공요금 부족으로 조정, 전용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25	- 이·전용 등 사유 : 산업안전감독관 여비 부족으로 조정, 전용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5.12.18.)	본부기본경비 (산업안전보건본부, 비충액)	210-01	△3	기본경비(서울청, 비충액) (7024-267)	220-01	산업안전감독관 여비 부족

사 업 명
(88)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6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68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 (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부산지방관서기본 경비(비총액)	1,712	1,674	1,674	1,724	1,628	△46	△2.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48	1,749	1,712	0	37	1,674	1,695	1,680	13	2	1,62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동 내역사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7개 지청의 기본적 경사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예산 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부산지방고용노동관서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 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29	1,459	1,548	1,674	1,628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7개 지청
- 사업 수혜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7개 지청 소속 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부산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1,628백만원

- 일반수용비(8개 관서): 305백만원(2025년) → 305백만원(2026년)
- 공공요금 및 제세(8개 관서): 538백만원(2025년) → 546백만원(2026년)
- 피복비(8개 관서): 1백만원(2025년) → 1백만원(2026년)
- 임차료(8개 관서): 18백만원(2025년) → 19백만원(2026년)
- 유류비(8개 관서): 85백만원(2025년) → 85백만원(2026년)
- 시설장비유지비(8개 관서): 20백만원(2025년) → 20백만원(2026년)
- 국내여비(8개 관서): 431백만원(2025년) → 431백만원(2026년)
- 관서업무추진비(8개 관서): 42백만원(2025년) → 42백만원(2026년)
- 자산취득비(8개 관서): 234백만원(2025년) → 179백만원(2026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509백만원 집행
2023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493백만원 집행
2024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712백만원 집행
2025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680백만원 집행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7개 지청의 원활한 기관 운영으로 행정효율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재배정 -> 예산 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429	0	1,429	1,532	1,509	105.6	98.5	0	23
2023	1,459	0	1,459	1,529	1,493	102.3	97.6	0	36
2024	1,548	0	1,548	1,749	1,712	110.6	97.9	0	37
2025	1,674	0	1,674	1,695	1,680	100.4	99.1	13	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공공요금, 임차료 부족으로 세목변경 - 집행잔액 23백만원 불용
2023	- 이·전용 등 사유: 공공요금, 임차료 부족으로 세목변경 - 집행잔액 36백만원 불용
2024	- 이·전용 등 사유: 특공공요금, 임차료 부족으로 세목변경 - 집행잔액 37백만원 불용
2025	- 이·전용 등 사유: 여비 부족으로 세목변경 - 이월 사유: 부산청 별관 신축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계약 기간이 '25.11.6.부터 과업 완수시까지로 현재 진행 중에 있어 부득이하게 일반용역비 13백만원 이월 - 집행잔액 2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18)	기본경비(산업 안전본부, 비충액) (7011-256)	210-01	21	부산지방관서 기본경비(비충액) (7024-268)	220-01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 국내여비 부족에 따라 기본경비(산업안전본부, 비충액)에서 전용

사 업 명						
(89) 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6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69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 (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대구지방관서 기본경비(비총액)	1,133	1,120	1,120	1,154	1,126	6	0.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20	1,158	1,133	0	25	1,120	1,129	1,105	0	24	1,12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비충액))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소속지청(5개소)의 기본 경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 예산 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른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 운영 경상경비 지원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29	1,049	1,120	1,120	1,126

- 기타: 해당없음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당없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 대구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 1,126백만원
- 일반수용비(6개 관서): 195백만원(2025년) → 195백만원(2026년)
 - 공공요금 및 제세(6개 관서): 399백만원(2025년) → 405백만원(2026년)
 - 피복비(6개 관서): 1백만원(2025년) → 1백만원(2026년)
 - 임차료(6개 관서): 9백만원(2025년) → 9백만원(2026년)
 - 유류비(6개 관서): 56백만원(2025년) → 56백만원(2026년)
 - 시설장비유지비(6개 관서): 9백만원(2025년) → 9백만원(2026년)
 - 국내여비(6개 관서): 312백만원(2025년) → 312백만원(2026년)
 - 관서업무추진비(6개 관서): 30백만원(2025년) → 30백만원(2026년)
 - 자산취득비(6개 관서): 109백만원(2025년) → 109백만원(2026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5개 지청의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088백만원 집행
202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5개 지청의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059백만원 집행
202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5개 지청의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133백만원 집행
202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5개 지청의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105백만원 집행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외 5개 지청의 원활한 기관운영으로 행정효율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연간 예산 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29	0	1,029	1,097	1,088	105.7	99.2	0	9
2023	1,049	0	1,049	1,075	1,059	101.0	98.5	0	16
2024	1,120	0	1,120	1,158	1,133	101.2	97.8	0	25
2025	1,120	0	1,120	1,129	1,105	98.7	97.9	0	2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부족으로 조정, 전용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23	- 이·전용 등 사유 : 공공요금 부족으로 조정, 전용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24	- 이·전용 등 사유 : 공공요금, 여비 등 부족으로 조정, 전용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25	- 이·전용 등 사유 : 여비 부족으로 조정, 전용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18)	7011-256	210-01	9	7024-269	220-01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 여비 부족

사 업 명
(90) 중부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7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7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중부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중부지방 관서기본 경비(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관리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중부지방관서 기본경비(비총액)	2,783	2,858	2,944	2,875	17	0.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83	2,892	2,863	0	30	2,858	2,918	2,905	0	13	2,87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중부청 및 관내 14개 지청 등 중부지방노동관서의 기본적 경사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3조제1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예산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중부지방노동관서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625	2,700	2,783	2,858	2,875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부청 및 14개 관서
- 사업 수혜자 : 중부청 및 14개 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일반수용비(15개 관서) : 607백만원(2025년도) -> 607백만원(2026년도)
공공요금및제세(15개 관서) : 1,028백만원(2025년도) -> 1,043백만원(2026년도)
피복비(15개 관서) : 1백만원(2025년도) -> 1백만원(2026년도)
임차료(15개 관서) : 49백만원(2025년도) -> 49백만원(2026년도)
유류비(15개 관서) : 143백만원(2025년도) -> 143백만원(2026년도)
시설장비유지비(15개 관서) : 26백만원(2025년도) -> 26백만원(2026년도)
국내여비(15개 관서) : 665백만원(2025년도) -> 665백만원(2026년도)
관서업무추진비(15개 관서) : 67백만원(2025년도) -> 67백만원(2026년도)
자산취득비(15개 관서) : 270백만원(2025년도) -> 271백만원(2026년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2,769백만원 집행
2023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2,925백만원 집행
2024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2,862백만원 집행
2025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2,905백만원 집행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중부지방노동관서의 원활한 기관운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625	0	2,625	2,825	2,769	105.5	98.0	0	56
2023	2,700	0	2,700	2,998	2,925	108.3	97.5	0	74
2024	2,783	0	2,783	2,892	2,863	102.8	98.9	0	55
2025	2,858	0	2,858	2,918	2,905	101.6	99.6	0	13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세목 변경 등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 잔액
2023	- 해당 없음
2024	- 이·전용 등 사유 : 공공요금 부족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 잔액
2025	- 이·전용 등 사유 : 출장여비 부족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단위: 천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 전용 ('25.12.18.)	산업안전보건본부 (비총액)(7011-256)	210-01	59,800	중부지방관서기본 경비(비총액)(7024-270)	220-01	출장여비 부족

사 업 명
(91)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7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7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광주지방관서기본경비 (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광주지방관서기본 경비(총액)	1,227	1,201	1,201	1,155	1,155	△46	△3.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75	1,230	1,227	0	2	1,201	1,228	1,217	0	11	1,1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의 기본적인 경사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3조제1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예산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09	1,039	1,039	1,201	1,155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
- 사업 수혜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 소속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광주지방고용노동청(비총액): 1,155백만원
 - 일반수용비(6개 관서) : 270백만원(2025년도) -> 269백만원(2026년도)
 - 공공요금및제세(6개 관서) : 283백만원(2025년도) -> 288백만원(2026년도)
 - 피복비(6개 관서) : 1백만원(2025년도) -> 1백만원(2026년도)
 - 임차료(6개 관서) : 32백만원(2025년도) -> 32백만원(2026년도)
 - 유류비(6개 관서) : 19백만원(2025년도) -> 19백만원(2026년도)
 - 시설장비유지비(6개 관서) : 18백만원(2025년도) -> 18백만원(2026년도)
 - 국내여비(6개 관서) : 329백만원(2025년도) -> 329백만원(2026년도)
 - 관서업무추진비(6개 관서) : 32백만원(2025년도) -> 32백만원(2026년도)
 - 자산취득비(6개 관서) : 217백만원(2025년도) -> 167백만원(2026년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061백만원 집행
2023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120백만원 집행
2024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227백만원 집행
2025	일반수용비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217백만원 집행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의 원활한 기관운영으로 행정효율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09	0	1,009	1,066	1,061	105.1	99.5	0	6
2023	1,039	0	1,039	1,120	1,120	107	100	0	0
2024	1,075	0	1,075	1,230	1,227	114.1	99.8	0	2
2025	1,201	0	1,201	1,228	1,217	101.3	99.1	0	1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세목 변경 등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 잔액
2023	- 이·전용 등 사유 : 세목 변경 등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 잔액
2024	- 이·전용 등 사유 : 세목 변경 등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 잔액
2025	- 이·전용 등 사유 : 세목 변경 등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1)	광주지방관서기 본경비(비총액) (7024-271)	430-01	20	광주지방관서기 본경비(비총액) (7024-271)	210-02	공공요금 예산 부족
전용 (2025.12.18.)	기본경비(산업 안전보건본부, 비총액) (7011-256)	210-01	27	광주지방관서기 본경비(비총액) (7024-271)	220-01	산업안전감독관 국내여비 예산 부족

사 업 명
(92)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7024-27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 노동청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7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대전지방관서 기본경비(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대전지방관서 기본경비(비총액)	1,187	1,166	1,166	1,172	1,172	6	0.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25	1,191	1,187	-	4	1,166	1,176	1,173	-	3	1,17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의 기본적인 경사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세출 예산 집행지침
- ② 추진경위 : 대전지방노동관서의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에 대한 경비 및 조직과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운영 경상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72	1,127	1,125	1,166	1,172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
- 사업 수혜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 소속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 대전지방관서기본경비(비총액) : 1,166백만원(2025년) → 1,172백만원(2026년)
 - 일반수용비(6개 관서) : 274백만원(2025년) → 274백만원(2026년)
 - 공공요금 및 제세(6개 관서) : 340백만원(2025년) → 345백만원(2026년)
 - 피복비(3개 관서) : 1백만원(2025년) → 1백만원(2026년)
 - 임차료(6개 관서) : 34백만원(2025년) → 35백만원(2026년)
 - 유류비(6개 관서) : 60백만원(2025년) → 60백만원(2026년)
 - 시설장비유지비(6개 관서) : 31백만원(2025년) → 31백만원(2026년)
 - 국내여비(6개 관서) : 283백만원(2025년) → 283백만원(2026년)
 - 관서업무추진비(6개 관서) : 30백만원(2025년) → 30백만원(2026년)
 - 자산취득비(6개 관서) : 113백만원(2025년) → 113백만원(2026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109백만원 집행
202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142백만원 집행
202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187백만원 집행
202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1,173백만원 집행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5개 지청의 원활한 기관 운영으로 행정효율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수립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예산 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72	-	1,072	1,131	1,109	103.5	98.1	-	22
2023	1,127	-	1,127	1,182	1,142	101.3	96.6	-	40
2024	1,125	-	1,125	1,191	1,187	105.5	99.7	-	4
2025	1,166	-	1,166	1,176	1,173	100.6	99.7	-	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공공요금 부족으로 자체전용 등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3	- 이·전용 등 사유 : 공공요금 부족으로 자체전용 등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4	- 이·전용 등 사유 : 공공요금, 국내여비 부족으로 자체전용 등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2025	- 이·전용 등 사유 : 국내여비 부족으로 자체전용 등 - 불용 사유 : 집행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12.18)	기본경비(산업 안전보건본부, 비총액) (7011-256)	210-01	10	대전지방관서 기본경비(비총액) (7024-272)	220-01	국내여비 예산 부족

사 업 명
(93) 정책연구개발(70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정책연구개발	정책연구개발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정책연구개발	소관부처	실·국·과(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정책연구개발	414	415	415	321	321	△94	△22.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15	434	414	20	-	415	435	411	24	-	321
· 정책연구개발	415	434	414	20	-	415	435	411	24	-	3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책연구개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용역 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 ② '99년부터 고용노동 현안 해결 및 제도개선, 중장기 고용노동비전 마련 관련 연구용역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99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56	813	415	415	32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 대학교, 연구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정책연구개발: (2025) 415백만원 → (2026) 321백만원, △94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정책연구 개발 415	○ 정책연구비(260-02) : 415,000천원 - 41.5백만원*10개 과제	정책연구 개발 321	○ 정책연구비(260-02) 321,000천원 - 41.5백만원*7개 과제 + 30.5백만원*1개 과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19개 정책연구과제 실시(855백만원)
2023	- 20개 정책연구과제 실시(813백만원)
2024	- 10개 정책연구과제 실시(415백만원)
2025	- 13개 정책연구과제 실시(415백만원) - 행정안전부 주관 '25년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 성과점검 결과 '우수' 기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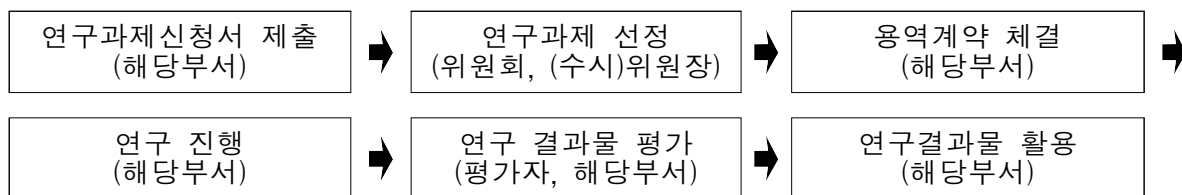
-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정책반영 및 참조를 통해 고용노동정책 개발 및 노동개혁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한 정책수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실·국 별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연구과제 신청 → 위원회 의결을 통한 연구 과제 선정 → 용역계약 체결 → 연구 진행 →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56	-	856	861	855	99.9	99.3	6	-
2023	813	-	813	819	800	98.4	97.7	19	-
2024	415	-	415	434	395	95.2	91.0	20	-
2025	415	-	415	435	411	99.0	94.5	24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25년 연구과제 3건의 계약 기간 연장(~'26.2월)에 따른 잔금 24백만원 차년도 이월

사 업 명						
(94)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7032-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1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고용노동행정혁신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6,104	6,208	6,208	6,274	6,274	66	1.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490	6,490	6,104	-	386	6,208	6,208	5,732	-	476	6,274
· 행정혁신 민원서비스 강화 추진	171	208	184	-	24	140	140	136	-	4	139
· 조직활성화 및 역량강 화 프로그램 운영	784	745	736	-	9	704	704	702	-	2	704
· 정책고객소통강화	1,747	1,747	1,745	-	2	1,600	1,600	1,595	-	5	1,600
· 정부혁신 유공포상	66	66	58	-	8	26	26	26	-	-	26
·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 역량강화	152	154	151	-	3	112	112	112	-	-	72
· 청년인턴 운영	3,570	3,570	3,230	-	340	3,626	3,626	3,161	-	465	3,7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긍정적 조직문화 형성, 내·외부 고객 소통 활성화, 행정·민원제도 개선 및 제안활동 지원,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한 국민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추진, 청년들에게 공공행정 일경험 제공 및 정책 이해도 제고
- **(행정혁신·민원 서비스 강화 추진)** 고용노동 정책의 수립·집행 등 정책 추진의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 확대, 변화하는 고용노동 환경에 맞춰 부처간 민간과의 협업 등 지속적인 정부혁신 추진 및 성과 홍보
- **(조직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부혁신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질병, 자살 등으로 인한 사망 증가에 대응하여 직원건강관리 프로그램, 특별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한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등 운영
- **(정책고객 소통강화)** 고용노동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하고 효과적인 매체를 통해 송출하는 등 정책인지도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방법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
- **(혁신행정 유공자 등 포상)** 정부혁신 분위기 확산 및 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성과제고 유인·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행정에 기여한 직원, 기관 등에 포상금 지급
-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 역량강화)** 고용노동정책 수행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 반영,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등 운영
- **(청년인턴 운영)**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 및 국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성주류화 조치)
- ② 추진경위
 - 1) 사업 시작연도: 2005년부터 계속
 - 2) 추진배경
 - 정부혁신 추진계획(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운영규정·추진계획(인사혁신처) 및 각 내역사업별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추진
 - '23.1.17.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에 따라 청년인턴 채용 추진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5년부터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해당없음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부 내부 직원 및 고용노동서비스 수요자, 청년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 |
|---|
| <p>① 행정혁신·민원서비스 강화 추진: ('25) 140백만원 → ('26) 139백만원, 1백만원 감액</p> <p>① 정부혁신, 행정제도 개선 추진: ('25) 60백만원 → ('26) 59백만원, 1백만원 감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출) 현장소통관 현장활동: 9백만원정부혁신 추진성과 홍보, 적극행정 국민파트너스 운영 등: 28백만원일하는 방식, 행정제도 개선 추진(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등): 13백만원각종 경진대회(정부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및 워크숍 관련 임차료: 3회*1백만원=3백만원학습 연구모임 지원: 0.5백만원*12개모임=6백만원 <p>② 전화 모니터링, 옴부즈만 운영 등 고객 중심 고용노동행정 추진:('25) 80백만원 → ('26 예산) 80백만원, 전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출) CS 교육과정 운영: 0.27백만원*48개 관서= 14백만원CS 행정 워크숍: 0.1백만원*50명= 5백만원CS 행정 워크숍 임차료: 0.1백만원*30명*1회=3백만원전화응대 모니터링: 0.01백만원*1,800콜=18백만원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 운영: (위원수당) 0.2백만원*40명*3회=24백만원, (책자제작) 1백만원옴부즈만 운영 임차료: 3백만원*1개소=3백만원 |
|---|

청렴시민감사관 수당: 0.2백만원*8명*7회=12백만원

② 조직 활성화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25) 704백만원 → ('26) 704백만원, 전년동

①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25) 165백만원 → ('26) 165백만원, 전년동

- (산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1,158회*0.085백만원=98.45백만원

집단프로그램 운영: 36.55백만원

직무스트레스 프로그램: 3회(회당 120명)*10백만원=30백만원

② 정부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5) 282백만원 → ('26) 282백만원, 전년동

- (산출) 지방관서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0.1백만원*28명*50개소=140백만원

필수 이수 교육과정 운영: 0.31백만원*458명=142백만원

③ 건강관리 증진 프로그램 운영: ('25) 257백만원 → ('26) 257백만원, 전년동

- (산출) 트라우마 전문상담: 0.3백만원*500명=150백만원

자살예방 전문교육: 0.5백만원*20회=10백만원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0.5백만원*50회=25백만원

건강생활습관 개선: 0.005백만원*10,000명=50백만원

심폐소생술 교육: 0.04백만원*550명=22백만원

③ 정책고객 소통강화: ('25) 1,600백만원 → ('26) 1,600백만원, 전년동

① 고용노동정책 대국민 소통: ('25) 733백만원 → ('26) 733백만원, 전년동

- (산출) 영상콘텐츠 제작: 154백만원*2회=308백만원

매체송출: 25백만원*17회=425백만원

② 뉴미디어 정책소통: ('25) 867백만원 → ('26) 867백만원, 전년동

- (산출) 대표 SNS 채널 운영 및 매체협업

: 120만원(매체협업 비용 30백만원*6회) = 180백만원

카드뉴스 등 제작: 1.325백만원*231회 = 306백만원

정책 소통영상 제작: 41.25백만원*8회 = 330백만원

정책기자단 운영: 발대식 수료식 2백만원(1백만원*2회)+취재지원 활동비 25백만원(0.05백만원*50명*10회)+워크숍 4백만원(2백만원*2회)+정책팸투어 4백만원(2백만원*2회)+콘텐츠기획 컨설팅 및 제작 16백만원(1.6백만원*10회) = 51백만원

④ 혁신행정 유공자 포상: ('25) 26백만원 → ('26) 26백만원, 전년동

① 조직몰입 우수기관 포상: ('25) 15백만원 → ('26) 15백만원

②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 ('25) 7백만원 → ('26) 7백만원

③ 우수제안 포상: ('25) 4백만원 → ('26) 4백만원

⑤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 역량강화: ('25) 112백만원 → ('26) 72백만원, 40백만원 감액

- (산출) 정책 포럼 등 운영: 5.2백만원 x 8회 = 42백만원

교육·자문 등 지원: 1백만원 x 30회 = 30백만원

⑥ 청년인턴 운영: ('25) 3,626백만원 → ('26) 3,733백만원, 107백만원 증액

① 청년인턴 인건비(월 보수 + 사회보험료): 3,506백만원

- (산출) 일용임금: 3,145백만원, 고용부담금: 361백만원

② 활동지원비(수용비+국내여비): 227백만원

- (산출) 수용비: 47백만원, 국내여비: 180백만원

○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예산	'25년 예산	예산	'26년 예산
	산출내역		산출내역
고용노동 행정혁신 역량강화 6,208	○ 일용임금(110-04) : 3,056,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137,550천원 가. 행정혁신·민원서비스 강화 추진 1. 정부혁신 추진: 29,550천원 2. 행정제도 개선 추진: 13,000천원	고용노동 행정혁신 역량강화 6,274	○ 일용임금(110-04) : 3,145,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159,550천원 가. 행정혁신·민원서비스 강화 추진 1. 정부혁신 추진: 28,550천원 2. 행정제도 개선 추진: 13,000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 학습연구모임운영지원: 500천원*12개모임=6,000천원 4. 옴부즈만 위원수당: 200천원*40명*3회=24,000천원 5. 현장리프트 제작: 1,000천원*1회=1,000천원 6. 청렴시민감사관수당: 200천원*8명*7회+800천원=12,000천원 5. CS행정워크숍 개최: 100천원*50명*1회=5,000천원 나. 조직활성화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1. 역량강화 및 조직가치교육운영 : 302천원*470명+60천원=142,000천원 다. 건강관리 증진 프로그램 운영 1.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500천원*50회=25,000천원 2. 건강생활습관 개선: 5천원*10,000명=50,000천원 3. 심폐소생술 교육: 40천원*550명=22,000천원 라. 고용노동정책 대국민소통강화 1. 영상 콘텐츠 제작: 154,000천원*2회=308,000천원 2. 매체송출: 25,000천원*17회=425,000천원 마.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 정책지원 1.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 정책개발 포럼 운영 : 7,000천원*3회=21,000천원 2. 양성평등 정책개발 자료문: 500천원*20회=10,000천원 3. 정책개발 포럼 자료집, 유인물 인쇄비 :2,000천원*10회=20,000천원 바. 청년인턴 운영: 24,000천원 ○ 임차료(210-07) : 14,000천원 가. 행정새신·생활공감정책 추진 1. 정부혁신 워크숍: 3,000천원 2. CS행정워크숍: 100천원*30명*1회=3,000천원 3. 옴부즈만 운영 임차료: 1,000천원*3회=3,000천원 나.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지원 1. 양성평등 정책개발 포럼 개최: 1,000천원*5회=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378,000천원 가. 행정새신·생활공감정책 추진 1. 전화응대모니터링: 18,000천원 2. cs교육과정 운영: 291,000천원*48개관서+32천원=14,000천원 나. 조직활성화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1.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운영: 135,000천원 가. 개별상담: 1158회*85천원+20천원= 98,450천원 나. 집단프로그램: 85천원*430명= 36,550천원 2. 조직활성화프로그램운영: 100천원*28명*50개소=140,000천원 3. 직무스트레스운영:10,000천원*3회=30,000천원 4. 건강관리증진프로그램운영: 160,000천원 ① 트라우마 전문상담: 30천원*500명=150,000천원 ②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50천원*1회*20개소=10,000천원 다. 대표 SNS 채널 운영 및 매체 협업 1. 대표SNS채널운영: 7,000천원*10회=70,000천원 2. 매체협업: 30,000천원*4회=120,000천원 3. 카드뉴스인포그래픽제작: 1,315천원*223회+525천원=296,000천원 4. 고용노동정책 소통 영상 제작: 41,250천원*8회=330,000천원 5. 정책기자단 운영: 51,000천원 라.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지원 1. 양성평등 정책개발 포럼 위탁운영비 : 7,000천원*2회=1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03,000천원 가. 청년인턴 운영: 203,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0,450천원	3. 학습연구모임운영지원: 500천원*12개모임=6,000천원 4. 옴부즈만 위원수당: 200천원*40명*3회=24,000천원 5. 현장리프트 제작: 1,000천원*1회=1,000천원 6. 청렴시민감사관수당: 200천원*8명*7회+800천원=12,000천원 5. CS행정워크숍 개최: 100천원*50명*1회=5,000천원 나. 조직활성화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1. 역량강화 및 조직가치교육운영 : 302천원*470명+60천원=142,000천원 다. 건강관리 증진 프로그램 운영 1.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500천원*50회=25,000천원 2. 건강생활습관 개선: 5천원*10,000명=50,000천원 3. 심폐소생술 교육: 40천원*550명=22,000천원 라. 고용노동정책 대국민소통강화 1. 영상 콘텐츠 제작: 154,000천원*2회=308,000천원 2. 매체송출: 25,000천원*17회=425,000천원 마.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 역량강화 1.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 정책 포럼 등 운영 : 5,250천원*4회=21,000천원 2. 양성평등 분야 교육·자료문 등 : 1,000천원*30회=30,000천원 바. 청년인턴 운영: 47,000천원 ○ 임차료(210-07) : 14,000천원 가. 행정새신·생활공감정책 추진 1. 정부혁신 워크숍: 3,000천원 2. CS행정워크숍: 100천원*30명*1회=3,000천원 3. 옴부즈만 운영 임차료: 1,000천원*3회=3,000천원 나.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 역량강화 1. 양성평등 정책 포럼 개최: 1,250천원*4회=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378,000천원 가. 행정새신·생활공감정책 추진 1. 전화응대모니터링: 18,000천원 2. cs교육과정 운영: 291,000천원*48개관서+32천원=14,000천원 나. 조직활성화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1.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운영: 135,000천원 가. 개별상담: 1158회*85천원+20천원= 98,450천원 나. 집단프로그램: 85천원*430명= 36,550천원 2. 조직활성화프로그램운영: 100천원*28명*50개소=140,000천원 3. 직무스트레스운영:10,000천원*3회=30,000천원 4. 건강관리증진프로그램운영: 160,000천원 ① 트라우마 전문상담: 30천원*500명=150,000천원 ②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50천원*1회*20개소=10,000천원 다. 대표 SNS 채널 운영 및 매체 협업 1. 매체협업: 30,000천원*6회=180,000천원 2. 카드뉴스인포그래픽제작: 1,315천원*231회+75천원(절사)=306,000천원 3. 고용노동정책 소통 영상 제작: 41,250천원*8회=330,000천원 4. 정책기자단 운영: 51,000천원 라.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 역량강화 1.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 정책 포럼 등 위탁 운영비 : 3,500천원*4회=1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80,000천원 가. 청년인턴 운영: 180,000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가. 행정새신·생활공감정책 추진 1. 현장의견수렴 간담회: 8,550천원 나.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지원 1.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 포럼 운영: = 1,9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40,000천원 가.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지원 1.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 정책개발 연구용역 40,000천원*1회=40,000천원 ○ 포상금(310-03) : 26,000천원 가. 혁신행정 유공자 등 포상 1. 공무원,민원제도우수제안포상: 1,000천원*4명=4,000천원 2. 조직물입우수기관격려 포상: 3,000천원*10개소=15,000천원 3. 정부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 등 우수사례 포상: 7,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43,000천원 가. 채용 청년인턴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343,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0,450천원 가. 행정새신·생활공감정책 추진 1. 현장의견수렴 간담회: 8,550천원 나.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 역량강화 1.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 포럼 등 운영: = 1,900천원 ○ 포상금(310-03) : 26,000천원 가. 혁신행정 유공자 등 포상 1. 공무원,민원제도우수제안포상: 1,000천원*4명=4,000천원 2. 조직물입우수기관격려 포상: 3,000천원*10개소=15,000천원 3. 정부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 등 우수사례 포상: 7,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61,000천원 가. 채용 청년인턴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361,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정부혁신 우수기관 선정(행정안전부)
2023	- 정부혁신 우수기관 선정(행정안전부)
2024	- 정부혁신 우수기관 선정(행정안전부)
2025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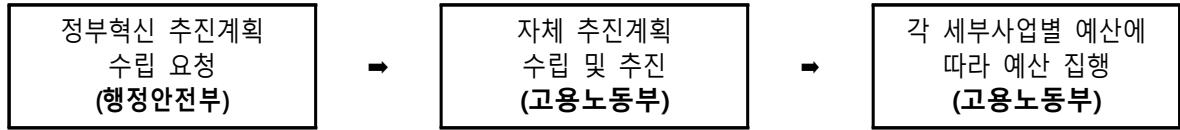
- 정부혁신 추진 지원, 고객만족 행정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민이 존중받는 고용노동행정 사회 조성
- ‘안전한 일터’ 등 주요 브랜드 정책 과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대국민 소통 강화
- 청년이 행정기관에서의 실무경험과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는 청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토대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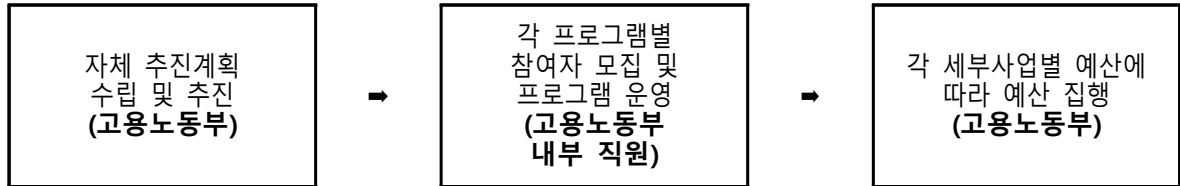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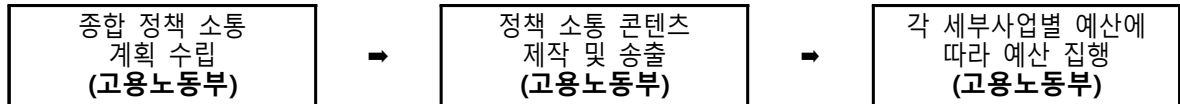
○ 행정혁신·민원서비스 강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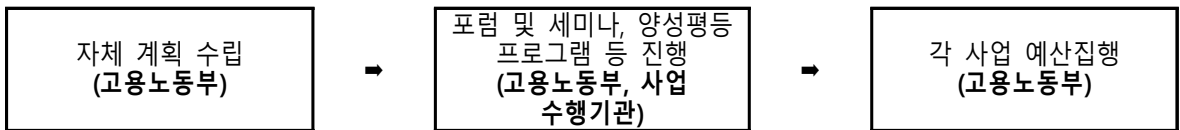
○ 조직 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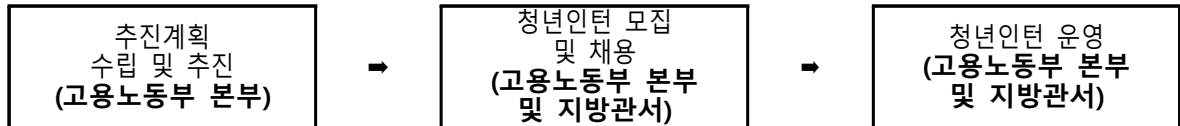
○ 정책고객 소통강화



○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 역량강화



○ 청년인턴 운영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703	△ 64	2,639	2,639	2,548	96.6	96.6	40	51
2023	2,863	-	2,863	2,903	2,890	99.6	99.6	-	13
2024	6,490	-	6,490	6,490	6,104	94.1	94.1	-	386
2025	6,208	-	6,208	6,208	5,732	92.3	92.3	-	47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95) 고용노동행정(정보화)(7034-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0	080	086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4	50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고용노동행정정보화	고용노동행정(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노동행정(정 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정책기획관
		지능정보화기획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		증감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노동행정(정보화)	22,378	21,701	23,739	23,739	2,038	9.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139	22,542	22,378	0	164	21,701	21,756	21,620	17	119	23,739
① 정보시스템 구축	1,523	2,295	2,287	0	8	588	666	639	17	10	847
· 정보보안솔루션 및 보안장비 추가 교체	236	236	236	0	0	73	73	73	0	0	73
· 노사누리 상습체불사업주 관리시스템 구축	0	0	0	0	0	0	0	0	0	0	446
· 스마트노사누리 구축	1,125	1,771	1763	0	7	0	0	0	0	0	210
· 고용부 정보화 관리수준 강화	81	80	80	0	1	81	81	81	0	0	81
· 홈페이지 개편	0	117	117	0	0	0	0	0	0	0	0
· 웹사이트 품질진단	20	20	20	0	0	20	20	20	0	0	20
· 정보화사업 평가 및 만족도조사	17	17	17	0	0	17	17	0	17	0	17
·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관리시스템 개선	0	0	0	0	0	397	397	387	0	10	0
·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44	44	44	0	0	0	0	0	0	0	0
·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도입(이월)	0	10	10	0	0	0	0	0	0	0	0
· 국정자원 화재복구	0	0	0	0	0	0	78	78	0	0	0
②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942	3,716	3,671	0	45	4,591	4,568	4,515	0	53	5,041
③사이버안전센터 운영	1,811	1,811	1,804	0	7	1,811	1,811	1,809	0	2	1,811
④전산장비 및 SW 구매	2,132	2,132	2,132	0	0	2,161	2,161	2,161	0	0	1,623
⑤정보시스템 운영	12,731	12,588	12,484	0	104	12,550	12,550	12,496	0	54	12,450
⑥AI노동법 상담	0	0	0	0	0	0	0	0	0	0	1,9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홈페이지, 전자민원, 내부업무 포털, 근로감독행정 등 고용노동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지청(48개), 위원회(15개), 고객상담센터 및 산하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고용노동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정보시스템 구축)** 직원에게 업무정보와 소통공간을 제공하는 포털, 대국민 홈페이지 및 전자민원 시스템 운영,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지원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노동부 전산자산(정보시스템·통신망·전산장비 등) 유지관리 위탁 운영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노동부 및 12개 산하기관이 보유한 보안장비 및 웹사이트에 대한 보안관제를 위해 전문 보안업체에 위탁·운영
- **(전산장비·SW 구매)** 전산장비(PC, 모니터, 프린터) 및 업무용SW 구매
- **(정보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구매 임차료, 통신회선료, 정보화사업 추진 운영비
- **(AI노동법 상담)** 국민의 노동법 질문에 맞춤형 답변 제공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4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연도	추진 내용
'86.~'00.	고용보험·취업알선 등 정보시스템 구축, 고용보험 정보통신망 및 노동부 행정정보통신망 통합
'01.~'10.	전자문서 및 전자민원시스템 구축, 노동부 및 산하단체 정보통신망 통합, 노동부 및 산하단체 지식관리센터(KMC), 인터넷방송시스템, PKMS시스템 구축, 전자민원시스템 개선사업 추진, 산하단체 정보화수준 평가,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 및 노동부 홈페이지 개편 등 추진
'11.~'20.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를 개소하고, 감사정보관리, 모바일 다우리, 개인정보 접속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고용부 전 기관 인터넷 전화기 보급 노사누리·형사사법공동시스템(KICS) 연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고용노동관련 민원 웹사이트 ONE-ID 서비스 실시, 네트워크 이중화를 통한 서비스 안정성 제고, 과태료관리 시스템·노사마루 이행강제금 기능 연계 및 납부대상자 과태료 조회 기능 강화, 소속기관 망분리, 사이버안전센터 지능형 위협 탐지 기능 구축, 개인정보 관리 통제체계 강화
'21.~'25.	노사누리 신고사건 처리 기능 개발, 스마트 노사누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관, 전자민원시스템 본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적용, 스마트 노사누리 구축 (근로감독업무 처리기능 재구축, 노동포털 구축, 노후장비 교체), 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이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비대면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85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926	24,869	22,139	21,701	23,73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고용노동부 직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비고
21,701	□ 정보시스템 구축	588	23,739	□ 정보시스템 구축	847 증 259
	○ 정보보안솔루션 및 보안장비 추가 교체	73		○ 정보보안솔루션 및 보안장비 추가 교체	73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강화	81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강화	81 -
	○ 웹사이트 품질진단	20		○ 웹사이트 품질진단	20 -
	○ 정보화사업 만족도 조사	17		○ 정보화사업 만족도 조사	17 -
		-		○ 노사누리 상설채널 사업주 관리시스템 구축	446 순 증
		-		○ 스마트 노사누리 구축	210 순 증
	○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관리시스템 개선	397			- 순 감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591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041 증 450
	○ 개발SW 유지보수	915		○ 개발SW 유지보수	915 -
	- 상주 11명, 비상주 2명			- 상주 11명, 비상주 2명	
	○ 스마트 노사누리 유지관리비	980		○ 스마트 노사누리 유지관리비	1,061 증 81
	○ PC, 프린터 유지보수	352		○ PC, 프린터 유지보수	349 감 3
	- 13,045백만원 × 2.7%			- 12,938백만원 × 2.7%	
	○ HW 유지보수	399		○ HW 유지보수	484 증 85
	- 8,462백만원 × 4.7%			- 8,303백만원×4.7%+79백만원 ×6.0%+1,112백만원× 8.0%	
	○ 상용SW 유지보수	1,725		○ 상용SW 유지보수	1,992 증 267
	- 15,420백만원 × 11.18%			- 17,817백만원 × 11.18%	
	○ PC·프린터 유지보수 공무직 인건비	220		○ PC·프린터 유지보수 공무직 인건비	240 증 20
	- 임금 182, 복리후생 3, 고용부담 35			- 임금 198, 복리후생 3, 고용부담 39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1,811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1,811 -
	○ 위탁운영 인건비:	1,811		○ 위탁운영 인건비	1,811
	- 18명(PM 1, 관제기획운영 1, 보안관제 9, 웹진단 4, 사고대응 3)			- 18명(PM 1, 관제기획운영 1, 보안관 제 9, 웹진단 4, 사고대응 3)	
	□ 전산장비 및 SW구매	2,161		□ 전산장비 및 SW구매	1,623 감 538
	○ PC, 프린터 구매	1,004		○ PC, 프린터 구매	428 감 576
	- PC 임차 109만원×3,670대	216		- PC 임차 110만원×6,549대	389 증 173
	- 프린터 임차 51만원×1,080대	30		- 프린터 임차 67만원×1,080대	39 증 9
	- PC 자산 109만원×616대	671			- 순 감
	- 프린터 자산 51만원×170대	87			- 순 감
	○ 사무용SW 구매	1,157		○ 사무용SW 구매	1,195 증 38
	- 한컴오피스 87.6천원×2,957본	259		- 한컴오피스100.6천원×2,952본	297 증 38
	- MS오피스 247.5천원×2,000본	524		- MS오피스 247.5천원×2,000본	524 -
	- 백신(내부) 17.5천원×7,000본	123		- 백신(내부) 17.5천원×7,000본	123 -
	- 백신(외부) 25.2천원×9,600본	242		- 백신(외부) 25.2천원×9,600본	242 -
	- 기록물관리 백신(서버용)	9		- 기록물관리 백신(서버용)	9 -
	□ 정보시스템 운영	12,550		□ 정보시스템 운영	12,450 감 100
	○ 기존 리스계약 임차료	6,211		○ 기존 리스계약 임차료	6,163 감 48
	○ 회선사용료	6,090		○ 회선사용료	6,038 감 52
	○ 수용비 등 기타 운영비	249		○ 수용비 등 기타 운영비	249 -
	- 수용비 221백 매식비 9백 국내여비 9백 국외여비 6백 업무추진비 4백			- 수용비 221백 매식비 9백 국내여비 9백 국외여비 6백 업무추진비 4백	
				□ AI노동법 상담	1,967 순 증
				○ 전문작업비	808 순 증
				○ AI API 이용료	367 순 증
				○ GPU 임차료	792 순 증

㉠ 정보시스템 구축: ('25) 588 → ('26) 847백만원(증 259백만원)

□ **(변동내역)**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종료 등으로 259백만원 증액

- ① 노사누리 상습체불 사업주 관리 시스템 구축 446백만원(순증)
- ② 스마트 노사누리 기능 추가 210백만원(순증)
- ③ 정보보안솔루션 및 보안장비 추가 교체 73백만원(전년동)
- ④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강화 81백만원(전년동)
- ⑤ 웹사이트 품질진단 20백만원(전년동)
- ⑥ 정보화사업 만족도 조사 17백만원(전년동)
- ⑦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관리시스템 개선 사업종료 △397백만원

- **(변동요인)**

- ① **노사누리 상습체불 사업주 관리 시스템 구축(446백만원):**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및 상습체불 사업주 선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근로자의 월보수액을 연계하는 업무프로세스 신설 및 경제적 제재(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을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의 정보제공을 위한 오픈API 개발
- ② **스마트 노사누리 기능 추가(210백만원):**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24.10.)에 따라 '26. 9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의 사건기록을 대검찰청에 전자문서로 송치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 ③ **정보보안솔루션 및 보안장비 교체(73백만원):** 제품 기술지원 종료(Eos)되는 보안장비 및 보안 소프트웨어의 하드웨어 장애 및 신규 보안 취약점 발생 등에 대처하기 위해 교체 (감 163백만원)
- ④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강화(81백만원):** 고용노동부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18~'20년), 국가융합망 전환('22년) 등으로 네트워크·정보보안 인프라가 증가하면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재설계 필요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대응 지원
- ⑤ **웹사이트 품질진단(20백만원):**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우리 부 홈페이지 내 공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진단 수행
- ⑥ **정보화사업 만족도 조사(17백만원):** 정보시스템 평가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성과관리 및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
- ⑦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관리시스템 개선(△397백만원):** 대국민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및 과태료 부과내역 조회 서비스 신설로 대민 편의성 제고와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통해 과태료 징수율 제고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5) 4,591 → ('26) 5,041백만원(증 450백만원)

- **(변동내역)** '24년 SW 기술자 평균임금 반영 및 유지보수 전산장비 반영

- ① 개발 SW 유지보수 915(전년동)
- ② 스마트 노사누리 유지관리비 980→1,061백만원(+81백만원)
- ③ PC·프린터 유지보수 352→349백만원(△3백만원)
- ④ HW 유지보수 399→484백만원(85백만원)
- ⑤ 상용SW 유지보수 1,725→1,992백만원(+267백만원)
- ⑥ 전산장비 유지보수 공무원근로자 처우개선

- **(변동요인)**

- ① **개발SW 유지보수(915백만원):** 공통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비용을 위한 예산(전년동)
- ② **스마트 노사누리 유지관리비(1,061백만원):** 스마트노사누리 구축 사업(2·3차) 유지관리 비용 반영 (증 81백만원)
- ③ **PC, 프린터 유지보수(349백만원):** 내용연수 도과한 PC의 유지보수대상 제외로 예산 감액(감 3백만원)
- ④ **HW 유지보수(484백만원)** '24년 도입 전산장비 반영 및 불용처리한 2장비의 유지보수대상 제외(증 85백만원)
- ⑤ **상용SW 유지보수(1,992백만원):** '24년 솔루션 도입분 반영 및 미사용 SW의 유지보수대상 제외(증 267백만원)
- ⑥ **PC·프린터 유지보수 공무원근로자(전산지원관) 인건비(240백만원)**

상용임금(110-03) :	181,620천원	
- 기본급 :	164,418천원	13,111원 × 209h × 12월 × 5명
- 명절상여금 :	14,754천원	2,459,000원 × 1.2 × 5명
- 급식비 :	8,400천원	140,000원 × 12월 × 5명
- 월차/초과수당 :	10,762천원	2,152,406 × 5명
복리후생비(210-12) :	2,500천원	500,000원 × 5명
고용부담금(320-09) :	35,507천원	
- 고용부담금 :	22,264천원	198,428천원 × 11.22%
- 퇴직금 :	16,529천원	198,428천원 × 8.33%

③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25, '26) 1,811(전년동)

- (추진내용) 고용부 및 산하기관 정보시스템 대상 사이버 테러 및 해킹위협 대비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및 침해대응
- (변동내역) 전년동

④ 전산장비·소프트웨어 구매: ('25) 2,161 → ('26) 1,623백만원(감 538백만원)

- (변동내역) ① 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1004 → 428백만원 (감 576백만원)
②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1,157 → 1,195백만원(증 38백만원)
- (변동요인) 한컴오피스 단가 상승분 반영
* 한컴오피스: ('25.) 단가 87,600원 → ('26.) 단가 100,600원

⑤ 정보시스템 운영: ('25) 12,550 → ('26) 12,450백만원(감 100백만원)

- (변동내역) ① 리스계약 임차료 6,211 → 6,163백만원(감 48백만원)
② 통신회선료 6,090 → 6,038백만원(감 52백만원)
③ 기타 운영비 249(전년동)
- (변동요인)
① '20년도 리스계약 종료(~'25.12월)로 인한 임차료 자연감소 및 '25년도 리스계약 예정 2건 반영
- 기존 리스계약 임차료: ('25) 6,211 → ('26) 6,163백만원(감 48백만원)
② 본부·소속기관 통신회선 공공요금
- 통신회선 공공요금: ('25) 6,090 → ('26) 6,038백만원(감 52백만원)

속도(bps)	회선 수	공공요금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단가	연간 요금	
5M	390	166	779,215	7개 고용센터 별관 폐쇄에 따른 통신회선 감소
10M	181	223	485,440	
20M	21	285	71,946	
30M	379	377	1,748,575	
50M	379	452	2,085,115	
100M	29	511	178,002	
155M	13	671	104,754	
300M	1	844	10,134	
소계	1,393		5,463,181	
기타요금			574,381	(전자팩스, 온나라 팩스, SMS, 카 카오톡 알림 등)
합 계			6,037,562	

⑥ AI노동법 상담: ('26) 1,967백만원(순증)

- (변동내역) ① AI API이용료 367백만원(질문1회 165원 × 81.78만회 사용(고객상담센터
실업급여 챗봇 사용통계 근거로 추정) × 2.47배 x VAT포함 1.1배)
② GPU 임차료 792백만원(월 이용료 60백만원(NVIDIA H100 80GB 16장,
VAT 포함, 최저가 제공 협상) × 12개월) ③ 전문작업비 808백만원

- (변동요인) 국민의 노동법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노동행정 패러다임을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채불 진정 접수 등 행정서비스까지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로도 기능할 수 있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제공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내부만족도 (점)	목표							내부직원 대상 정보시스템 만족도 조사	내부 시스템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실적								
	달성도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점)	목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실적								
	달성도								
정보보호수준 달성율 (%)	목표							내부직원 해킹메일 대응훈련	해킹메일 대응훈련 결과보고서
	실적								
	달성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행정정보 시스템 만족도 조사 : 73.4점 · 대국민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75.8점
2023	· 행정정보 시스템 만족도 조사 : 62.3점 · 대국민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70.0점
2024	· 행정정보 시스템 만족도 조사 : 70.4점 · 대국민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81.7점
2025	· 행정정보 시스템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예정 · 대국민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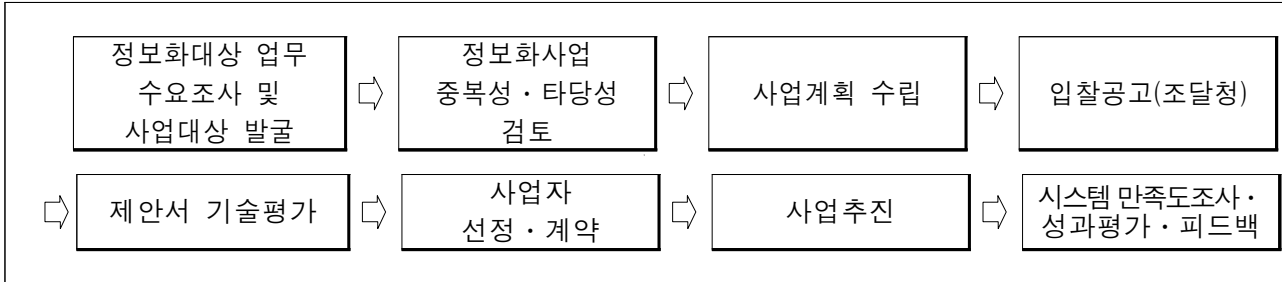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용노동행정업무의 효율화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대국민 노동행정 포털 사이트 구축 및 모바일 현장조사·감독 업무 혁신 구현
 - 정보시스템 통·폐합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체계 마련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하여 안전한 정보시스템 사용환경 구축
 - 사이버안전센터 지능형 위협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악성코드 피해 사전 방어
-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
 - 우리부 보유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품질 수준 향상으로 대 내외 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정감사, '23년) 산하기관에서 신종 해킹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고용노동부도 신종 해킹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점검을 추진할 것 (조치) 고용노동부·산하기관 대상으로 긴급 보안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자동화된 대응 체계 구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8,926	0	28,926	29,698	28,009	96.8	94.3	1,542	147
2023	24,869	0	24,869	26,411	25,205	101.3	95.4	772	434
2024	22,139	0	22,139	22,542	22,378	101	99.3	-	164
2025	21,701	0	21,701	21,756	21,620	99.6	99.4	17	11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과거 연도(2022~2024) 결산 상 특이사항

2022	○ 이·전용 등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이·전용 등 사유
	전용	지방고용노동관서 인건비 (7007-107)	110-01	+747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10-02	신규 개소 지방관서의 전용화선비 부족으로 공공요금및제세 비목으로 자체 전용
2023	○ 이·전용 등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이·전용 등 사유
	전용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10-02	±494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60-01	노조 근무시간면세 사용 정보 공개 관련 법 개정사항 스마트노사누리 반영 및 행안부 주관 공공웹사이트 표준 UI/UX 혁신 자원사업 추진을 위한 홈페이지개편 예산을 위해 일반연구비 비목으로 자체 전용
	조정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10-02	±91.5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10-07	리스계약 임차료 부족으로 세목 조정
	조정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20-02	±6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20-01	국내여비 부족으로 세목 조정
2024	○ 이·전용 등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이·전용 등 사유
	전용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10-02	±494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60-01	노조 근무시간면세 사용 정보 공개 관련 법 개정사항 스마트노사누리 반영 및 행안부 주관 공공웹사이트 표준 UI/UX 혁신 자원사업 추진을 위한 홈페이지개편 예산을 위해 일반연구비 비목으로 자체 전용
	조정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10-02	±91.5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10-07	리스계약 임차료 부족으로 세목 조정
	조정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20-02	±6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20-01	국내여비 부족으로 세목 조정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조정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20-02	3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20-01	국내여비 부족으로 세목 조정
조정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20-02	3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20-01	국내여비 부족으로 세목 조정
전용	고용노동행정(정보화) (7034-500)	220-02	42	본부인건비 (7011-100)	110-01	공무원 인건비 부족으로 기재부 승인 전용
		210-07	101			
		210-15	226			

○ 이월액 : 해당사항 없음

○ 불용액 : 164백만원

- 공공요금 등 기타 집행 잔액: 164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5.3.31.)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210-01	19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210-14	정보보안 교육 콘텐츠 제작
조정 ("25.5.12.)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220-02	3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220-01	국내여비 부족
조정 ("25.7.10.)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220-02	1.8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220-01	국내여비 부족
조정 ("25.8.28.)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220-02	1.2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220-01	국내여비 부족
전용 ("25.10.20.)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210-01	6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220-01	국내여비 부족
전용 ("25.11.24.)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210-15	23.3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260-0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복구

사 업 명
(96) 노동위원회청사관리(7036-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6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청·관사유지	노동위원회청사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노동위원회 청사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노동위원회 청사관리	2,122	2,230	2,230	2,281	2,276	46	2.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27	2,179	2,122	0	57	2,230	2,108	2,066	0	41	41
· 기존청·관사유지관리	1,977	2,053	1,996	0	57	2,080	1,958	1,919	0	38	38
· 노후시설개선·장비교체	250	126	126	0	1	150	150	147	0	3	1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노동위원회청사관리) 노동위원회 청사·숙소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통한 사무환경 개선 및 민원 만족도 향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노동위원회법」, 「정부청사관리규정」
- ② 추진경위
 - '53년 노동위원회법 제정·공포
 - '97년 노동위원회법 제정
 - '99년 노동위원회법 개정
 - '06년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신설
 - 비정규직보호법(차별시정) 및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필수유지업무 등) 제도 시행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06.12.21.)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06.12.21.)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06.12.30.)
 - ▶ 「노동위원회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07.1.26.)
 - ▶ 노동부훈령 개정('07.4.6. 및 '07.8.21. 노동부국가공무원정원배정표)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95	2,582	2,227	2,230	2,27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노동위원회 위원, 조사관 등 근무자 및 방문 민원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노동위원회청사관리 : 2,230백만원('25년) → 2,276백만원('26년)
 - 청·관사 유지관리 : 2,080백만원('25년) → 2,126백만원('26년)
 - 청소직 등 인건비 172백만원('25년) → 188백만원('26년)
 -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등 10백만원('25년) → 10백만원('26년)
 - 공공요금 및 제세 82백만원('25년) → 82백만원('26년)
 - 청·관사 등 임차료 590백만원('25년) → 620백만원('26년)
 - 시설장비유지비 943백만원('25년) → 943백만원('26년)
 - 관리용역비 78백만원('25년) → 78백만원('26년)
 - 공사비 100백만원('25년) → 100백만원('26년)
 - 청·관사 임차보증금 105백만원('25년) → 105백만원('26년)
 - 노후시설 개선·장비 교체 : 150백만원('25년) → 150백만원('26년)
 - 사무용장비·노후가구 교체 150백만원('25년) → 150백만원('26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청사·숙소 유지관리,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 1,676백만원
2023	청사·숙소 유지관리,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 2,294백만원
2024	청사·숙소 유지관리,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 2,122백만원
2025	청사·숙소 유지관리,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 2,066백만원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 및 민원·회의·사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민원인의 사무환경 만족도 및 접근용이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 |
|--|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995	0	1,995	1,815	1,676	84.0	92.3	0	139
2023	2,582	0	2,582	2,384	2,294	88.9	96.2	21	69
2024	2,227	0	2,227	2,179	2,122	95.3	97.4	0	57
2025	2,230	0	2,230	2,108	2,066	92.6	98.0	0	4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내역 -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배상금 부족으로 전용(감 178백만원), 사회복지무요원운용(노동위, 총액) 상용임금 부족으로 전용(감 2백만원),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세목조정(10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 부족으로 세목조정(16백만원) ○ 불용내역: 집행잔액 139백만원
2023	○ 이·전용 내역 - 권리구제대리인 수당 부족으로 노동위원회청사관리에서 전용(감 48백만원), 패소 배상금 부족으로 노동위원회청사관리에서 전용(감 148백만원), 청사관리 임차료·시설장비유지비·자산취득비 부족으로 본부기본경비에서 전용(증 98백만원), 광주지방관서 공공요금 부족으로 노동위원회청사관리에서 전용(감 100백만원), 청사관리 공공요금·임차료 부족으로 운영비 내에서 세목간 조정(99백만원)

	○ 불용내역: 집행잔액 69백만원, 경기지노위 청사 공사기간('23.12.~'24.2) 미완료로 공사비 21백만원 이월
2024	○ 이·전용 내역 - 소송 패소비용 부족으로 노동위원회청사관리에서 전용(감 190백만원), 경기지노위 청사 관리비 부족으로 본부기본경비 및 노동위원회 기본경비에서 전용(증 120백만원), 청사관리 공공요금·임차료 부족으로 운영비 내에서 세목간 조정(158백만원) ○ 불용내역: 집행잔액 57백만원
2025	○ 이·전용 내역 - 서울지노위 공사비 부족으로 청관사유지 및 시설관리 공사비에서 전용(25백만원) - 국내여비 부족으로 노동위원회청사관리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용(감72백만원) - 소송 패소비용 부족으로 노동위원회청사관리 무형자산에서 전용(감45백만원) - 노동위원회 인건비 부족으로 노동위원회청사관리 상용임금에서 전용(감30백만원) ○ 불용내역: 집행잔액 57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7.14.)	청관사유지 및 시설관리 (7036-440)	420-03	25	노동위원회 청사관리 (7036-306)	420-03	서울지노위 주차장 및 보행로 공사비 부족
전용 (2025.9.30.)	노동위원회 청사관리 (7036-306)	210-09	72	노동위원회 기본경비(비충액) (7018-264)	220-01	국내여비 부족
	노동위원회 청사관리 (7036-306)	440-00	45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7039-309)	310-02	소송 패소비용 부족
전용 (2025.12.16.)	노동위원회 청사관리 (7036-306)	110-03	30	노동위원회 인건비 (7002-104)	110-01	공무원 인건비 부족

사 업 명
(97) 청관사유지및시설관리(7036-4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44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청관사유지	청관사유지및시설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청관사유지및시설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청관사유지 및시설관리	13,855	14,211	14,211	17,055	15,768	1,557	11.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822	13,856	13,855	0	1	14,211	14,186	14,184	-	2	15,768
· 미화·시설관리 근로자 상용임금	1,174	1,129	1,129	0	0	1,254	1,222	1,221	-	1	1,390
· 청사·통신시설 이전 및 진단비	134	68	68	0	0	134	134	134	-	-	134
· 산재기금 및 임차 청·관사 임차료	3,347	3,347	3,347	0	0	3,578	3,578	3,578	-	-	3,668
· 시설장비유지 및 관리비	3,279	3,176	3,176	0	0	3,279	3,229	3,229	-	-	3,279
· 미화·시설관리 근로자 복리후생비	29	29	28	0	1	30	30	30	-	-	31
· 청사경비용역	592	695	695	0	0	654	704	703	-	1	669
· 미화·시설관리 근로자 법적부담금	230	275	275	0	0	245	277	277	-	-	275
·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비	2,787	2,790	2,790	0	0	2,787	2,768	2,767	-	-	4,072
· 감리비	20	17	17	0	0	20	17	17	-	-	20
· OA구입 등 자산 취득비	435	435	435	0	0	435	435	435	-	-	435
· 청·관사 임차보증금	1,795	1,895	1,895	0	0	1,795	1,793	1,793	-	-	1,79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청관사유지 및 시설관리) 본부 및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청·관사 임차, 소방·전기·가스·승강기 등 법정검사, 미화·시설관리 근로자 인건비, 청사 무인·특수경비, 노후배관·보일러·냉난방기·승강기 등 유지교체, 청·관사 위생관리 및 내구성 확보 등 안정적·위생적 유지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 및 제8조(청사의 합동화)
- ② 추진경위
 - 지방관서 청사(49개소) 및 고용노동부 별관 등의 운영을 위한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미화 및 시설관리 근로자 인건비, 무인경비 및 관리비,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비, 승강기·전기·소방 등의 안전점검 비용 등 운영경비 확보
 - 청·관사 임차료·보증금 등의 재원 및 청사 확보로 노동행정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063	14,170	13,822	14,211	15,76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본부 및 소속기관
- 사업 수혜자: 고용노동관서 소속 직원 및 방문 민원인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청관사유지및시설관리: ('25년) 14,211 → ('26년) 15,768백만원 (증1,557백만원, 증11.0%)

○ 미화·시설관리 근로자 상용임금: ('25년) 1,254 → ('26년) 1,390백만원(증136백만원)

- 기존 공무원 근로자 기본급: ('25년) 1,090백만원 → ('26년) 1,090백만원(전년동)
- 청사증축 관서 미화원 1명 증원 및 '25년 하반기 채용 1명 근무기간 6개월 추가: → ('26년) 38백만원(순증)
- 공무원 근로자 공통처우개선(3.8%): → ('26년) 43백만원(순증)
- 공무원 근로자 급식비·수당(기준변경) 1명증원 반영: ('25년) 164 → ('26년) 219백만원(증55)

(단위: 백만원)

구분	'25년	'26년	증액	변동사항	산출
계	164	219	55		
정액 급식비	99	101	2	1명증원	* ('25년) 99백만원 (= 월 14만원(기준) × 12개월 × 59명) →('26년) 101백만원 (= 월 14만원(기준) × 12개월 × 60명)
명절 상여금	65	118	53	1명증원, 지급기준변경	* ('25년) 65백만원 (= 연 110만원(기준기준) × 59명) →('26년) 118백만원 (= 기본급의 120%(변경기준) = (1,171백만원 ÷ 12개월) × 120%)

○ 일반수용비(청사 이전 및 시설물 진단 등): ('25년) 134 → ('26년) 134백만원 (전년동)

- 감독관 사무실 재배치 및 이전비 등: 100백만원
- 청사 진단 및 점검, 사인물 제작, 각종 소모품 구비 등: 34백만원

○ 청·관사 임차료: ('25년) 3,578 → ('26년) 3,668백만원 (증90백만원, 증2.5%)

- 기보유 청·관사 임차료: ('26년) 3,668백만원 = '25년 임차료 3,578백만원 × 102.5%

- **시설장비유지비:** ('25년) 3,279 → ('26년) 3,279백만원 (전년동)
 - 소속기관 청·관사 전기·소방·승강기·조경·냉난방기 등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임차사무실 관리비: ('26년) 3,279백만원(67백만원 × 49개 관서)
- **청사 미화·시설관리 근로자 복리후생비:** ('25년) 30 → ('26년) 31백만원 (증1백만원, 증3.3%)
 - 청사 미화·시설관리 공무원근로자 복지포인트(미화원 1명 증원 반영) : ('25년) 30(0.5백만원 × 59명) → ('26년) 31백만원(0.5백만원 × 60명)
- **청사방호 무인·특수경비 관리용역비:** ('25년) 654 → ('26년) 669백만원 (증15백만원, 증2.3%)
 - 고용부 별관 특수경비 및 지방관서 위탁 무인경비: ('25년) 654 → ('26년) 669백만원
- **미화·시설관리 근로자 고용부담금:** ('25년) 245 → ('26년) 275백만원 (증30백만원, 증12.2%)
 - 미화·시설관리 공무원 근로자 사회보험료 및 퇴직충당금 등: 275백만원(4.58백만원 × 60명)
- **노후 청사 등 개·보수 공사비:** ('25년) 2,787 → ('26년) 4,072백만원 (증1,285백만원, 증46.1%)
 - 지방관서 등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경비: 2,787백만원(56.9백만원 × 49개 관서)
 - * 옥상방수 등 수해예방공사, 냉난방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제거 및 무석면 텍스 시공 등
 - GHP방식 실외기 가스저감장치 개선공사: 1,285백만원(태백지청, 대구청, 부산동부지청)
- **감리비:** ('25년) 20 → ('26년) 20백만원 (전년동)
 - 지방관서 석면해체 감리, 건축·설비공사 기술지도 등: 20백만원(10백만원 × 2개 관서)
- **자산취득비:** ('25년) 435 → ('26년) 435백만원 (전년동)
 - 지방관서 개보수공사 등에 따른 자산취득: 435백만원(8.9백만원 × 49개 관서)
- **청사 및 관사 임차보증금:** ('25년) 1,795 → ('26년) 1,795백만원 (전년동)
 - 기존 청사 및 관사 재계약 임차보증금 인상 요구분 반영 등: 1,795백만원(36.6백만원 × 49개 관서)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구 분	'25년 예산	'26 예산	증감
□ 청관사유지 및시설관리	14,211	15,768	1,557
(1) 상용임금	1,254 - 근무시간 증가 반영 공무원 근로자(59명) 상용임금 1,254 * 임금 1,090, 급식비 99, 명절상여금 65	1,390 - 근무시간 증가 반영 공무원 근로자(60명) 상용임금 1,390 * 기본급 1,171, 급식비 101, 명절상여금 118	136
(2) 일반수용비	134 - 청사·통신시설 이전 및 재배치 100 - 안전진단, 사인물 제작, 각종소모품 등 34	134 - 청사·통신시설 이전 및 재배치 100 - 안전진단, 사인물 제작, 각종소모품 등 34	-
(3) 임차료	3,578 - 청관사 기존(3,519) 및 신규(59) 임차료 3,578	3,668 - 청관사 기존(3,578) 및 재계약 인상(90) 임차료 3,668	90
(4) 시설장비유지비	3,279 - 전기·승강기·소방안전대행 및 관리비 3,279	3,279 - 전기·승강기·소방안전대행 및 관리비 3,279	-
(5) 복리후생비	30 - 공무원 근로자(59명) 복지포인트 30	31 - 공무원 근로자(60명) 복지포인트 31	1
(6) 관리용역비	654 - 별관 특수경비 및 지방관서 무인경비 654	669 - 별관 특수경비 및 지방관서 무인경비 669	15
(7) 고용부담금	245 - 미화원 근무시간 증가 반영 공무원 근로자 법적부담금 245	275 - 미화원 근무시간 증가 반영 공무원 근로자 법적부담금 275	30
(8) 공사비	2,787 - 노후시설 개·보수, 옥상방수, 긴급복구 등 2,787	4,072 - 노후시설 개·보수, 옥상방수, 긴급복구 등 2,787 - GHP방식 실외기 가스저감장치 개선공사 1,285	1,285
(9) 감리비	20 - 석면해체 감리, 건축·설비공사 기술지도	20 - 석면해체 감리, 건축·설비공사 기술지도	-
(10) 자산취득비	435 - 노후자산 교체 435	435 - 노후자산 교체 435	-
(11) 무형자산	1,795 - 청·관사 기존 보증금 인상분 및 신규 관사 1,795	1,795 - 청·관사 기존 보증금 인상분 및 신규 관사 1,795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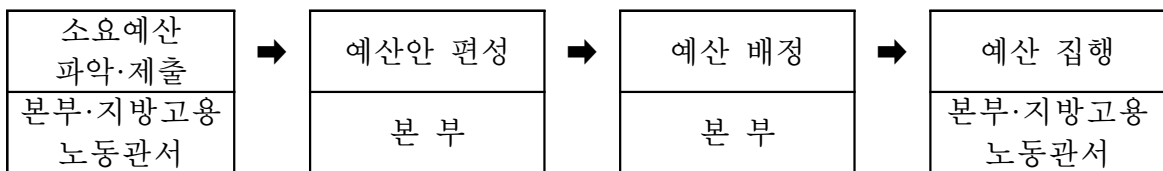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본부 및 48개 지방관서 등 소속기관 청·관사 유지에 필요한 경상경비로 수요관서로부터 관리비, 임차료, 개보수비 등 소요예산을 파악 후 예산에 편성하여 배정·집행



8) 각종 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063	0	15,063	15,063	14,834	98.5	98.5	213	16
2023	14,170	0	14,170	14,383	14,382	101.5	99.9	0	1
2024	13,822	0	13,822	13,856	13,855	100.2	99.9	0	1
2025	14,211	0	14,211	14,186	14,184	99.8	99.9	0	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 7. 10.)	청관사유지및 시설관리 (7036-440)	공사비 (420-03)	25	노동위원회 청사관리 (7036-306)	공사비 (420-03)	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 공사비 부족
세목조정 (25. 9. 18.)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50	청관사유지및 시설관리 (7036-440)	관리용역비 (210-15)	인건비 인상에 따른 무인·특수경비용역비 부족
세목조정 (25. 12. 2)		감리비 (420-04)	3		공사비 (420-03)	직제 증원에 따른 공사비 소요발생
전용 (25. 12. 18.)		무형자산 (440-00)	2.43		공사비 (420-03)	직제 증원에 따른 공사비 소요발생
전용 (25. 12. 26.)		상용임금 (110-03)	32		고용부담금 (320-09)	공무직 근로자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사 업 명						
(98)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7039-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9	309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노동위원회운영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중앙노동위원회
	사업시행주체	기획총괄과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9,219	8,898	8,898	9,929	9,645	747	8.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849	9,435	9,219	20	196	8,898	9,479	9,240	40	198	9,645
· 위원 및 조사관 역량 강화	675	675	651	0	23	400	384	369	0	14	400
· 부문별위원회운영	6,989	7,326	7,243	0	83	7,013	7,552	7,503	0	48	7,660
· 고용노사분쟁 조정· 화해기능강화	485	485	457	20	8	795	796	721	40	35	785
· 송무수행	700	949	869	0	80	747	747	647	0	100	8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원·조사관 역량강화) 업무 분야별 워크숍, 직무 교육 등을 통해 위원·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지원
- (부문별 위원회 운영) 부문별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위원들에 대한 회의수당, 안전검토비 지급 및 12개 지노위에 공인노무사·민간경력자를 활용한 초기상담 지원
- (노사분쟁 조정기능 지원)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현장출장 등으로 노사분쟁 조기 타결을 지원하는 조정위원들의 활동 지원(수당, 여비 등)
- (송무수행·이행강제금 반환)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한 행정소송 사건의 소송비용 및 부과 취소 사유 발생시 기 수납 이행강제금 반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노사정위원회 합의('02.11.21.) 등으로 '05년부터 노동위원회 기능강화사업이 본격 추진
 - * 노사정위원회 합의 : 조정기법 개발, 조정전문가 육성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운영
-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및 인프라 확충계획 보고(대통령 업무보고, '04.3.4.)
- 취약근로자보호법(차별시정) 및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필수유지업무 등) 시행에 따른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지원을 위해 인력충원, 상임위원 보강 등 노동위원회의 기능강화 추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06.12.21.)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06.12.2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06.12.30.)
- 「노동위원회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07.1.26.)
- 노동부훈령 개정('07.4.6. 및 '07.8.21. 노동부국가공무원정원배정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10.1.1.)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9.8.27.)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519	7,528	8,849	8,898	9,64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근로자 및 사업주, 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8,898백만원('25년) → 9,645백만원('26년)

○ 위원 및 조사관 역량 강화<전년동> : 400백만원('25년) → 400백만원('26년)

- 조사관 교육: 100백만원('25년) → 100('26년)
- 조사관 역량강화: 50백만원('25년) → 50백만원('26년)
- 위원 역량강화: 76백만원('25년) → 76백만원('26년)
- 우수조사관 포상: 7백만원('25년) → 7백만원('26년)
- 조사관활동비: 167백만원('25년) → 167백만원('26년)

○ 부문별위원회 운영<647> : 7,013백만원('25년) → 7,660백만원('26년)

- 회의수당 및 안전검토비: 6,192백만원('25년) → 6,672백만원('26년)
- 위원 교통비 : 65백만원('25년) → 65백만원('26년)
- 차별시정전문위원 및 권리구제지원관 인건비 : 724백만원('25년) → 891백만원('26년)
- 권리구제지원팀 운영비 : 25백만원('25년) → 25백만원('26년)

- 회의운영 및 물품구매 등 : 7백만원('25년) → 7백만원('26년)
- **고용노사분쟁 조정·화해기능강화<전년동>** : 785백만원('25년) → 785백만원('26년)
 - ADR전문가 양성 : 500백만원('25년) → 500백만원('26년)
 - 정책연구 : 100백만원('25년) → 100백만원('26년)
 - 준상근조정위원 사례비 : 45백만원('25년) → 45백만원('26년)
 - 분쟁조정 등 현장조정 : 49백만원('25년) → 49백만원('26년)
 - 회의업무 추진 : 91백만원('25년) → 91백만원('26년)
- **송무수행 및 이행강제금반환<100>** : 700백만원('25년) → 800백만원('26년)
 - 송달료 : 5백만원('25년) → 5백만원('26년)
 - 소송비용 : 391백만원('25년) → 491백만원('26년)
 - 소송수행외부위탁: 225백만원('25년) → 225백만원('26년)
 - 이행강제금 반환 : 79백('25년) → 79백만원('26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7,545백만원 집행
2023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8,206백만원 집행
2024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9,219백만원 집행
2025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9,240백만원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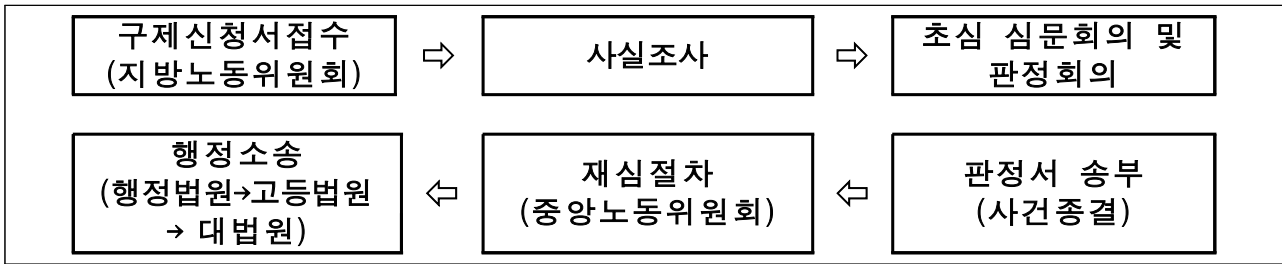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예방·사후적 분쟁해결 활동을 통한 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
- 심판·차별시정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으로 분쟁 조기해결 및 신속한 근로자 권리구제
- 복수노조 교섭대표 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노노갈등 사전 차단
- 위원 및 조사관 전문성 및 업무역량 강화
- 행정소송 수행업무의 원활한 지원 및 이행강제금의 신속한 반환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4년 결산)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사업에서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는 등 예산 수립이 면밀하지 못하였음. 과다한 이전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892	△373	7,519	7,697	7,545	100.3	98.0	0	152
2023	7,528	0	7,528	8,353	8,206	109.0	98.2	0	147
2024	8,849	0	8,849	9,435	9,219	104.2	97.7	20	196
2025	8,898	0	8,898	9,479	9,240	103.8	97.5	40	19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내역: 소송비용 부족으로 전용(증 178백) ○ 불용내역: 집행잔액 152백만원
2023	○ 이·전용 내역 - 신고사건 증가에 따른 회의수당 및 패소 배상금 부족으로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총액) 등에서 전용(증 825백만원) ○ 불용내역: 집행잔액 147백만원
2024	○ 이·전용 내역 - 신고사건 증가에 따른 회의수당 및 패소 배상금 부족으로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총액) 등에서 전용(증 586백만원), 용역비 등 부족으로 운영비 내에서 세목조정(215백만원) ○ 불용내역: 집행잔액 196백만원, 정책연구용역 20백만원 이월

2025	○ 이·전용 내역 - 신고사건 증가에 따른 회의수당 부족으로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충액)에서 전용(증 529백만원) - 소송 패소 비용 부족으로 노동위원회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노동위원회청사관리 무형자산,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일반수용비,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충액) 등에서 전용(증 209백만원) - 공무원 인건비 부족으로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상용임금에서 전용(감 50백만원) - 회의수당 부족으로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임차료에서 세목조정(7백만원) ○ 불용내역: 집행잔액 198백만원, 정책연구용역 40백만원 이월
------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9.30.)	노동위원회 기본경비(비충액) (7018-264)	자산취득비 (430-01)	50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7039-309)	배상금 (310-02)	소송 패소비용 부족
	노동위원회 청사관리 (7036-306)	무형자산 (440-00)	45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7039-309)	일반수용비 (210-02)	52			
전용 (2025.11.7.)	본부기본경비 본부기관운영(비충액) (7011-252)	일반수용비 (210-01)	204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7039-309)	일반수용비 (210-01)	회의수당 부족
	본부기본경비 본부기관운영(비충액) (7011-252)	일반수용비 (210-01)	59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7039-309)	배상금 (310-02)	소송 패소비용 부족
전용 (2025.12.23.)	본부기본경비 본부기관운영(비충액) (7011-252)	일반수용비 (210-01)	325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7039-309)	일반수용비 (210-01)	회의수당 부족
세목조정 (2025.12.16)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7039-309)	210-07	7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7039-309)	10-01	일반수용비 부족

사 업 명
(99) 무료법률서비스지원(7039-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9	31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노동위원회운영	무료법률서비스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무료법률서비스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중앙노동위원회
	사업시행주체	심판1과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1,176	1,000	1,000	1,400	1,177	177	17.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50	1,176	1,176	0	0	1,000	1,271	1,271	0	0	1,177
· 무료법률서비스지원	1,050	1,176	1,176	0	0	1,000	1,271	1,271	0	0	1,17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취약계층에게 권리구제 대리인(공인노무사 및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무료 지원하여 권익보호 및 사회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1.20.]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취약계층의 지원 등)>

- ①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취약계층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6.10.12.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07.05.17. 노동위원회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 '15.01.20. 노동위원회법 개정
- '15.07.20.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25	1,125	1,050	1,000	1,17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취약계층 근로자(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 1,000백만원('25년) → 1,177백만원('26년)

- (요구) 물량 1,200백만원(3,030건×397천원), 단가인상분 2,00백만원(71천원×2,817건)
- (반영) 1,177백만원(3,027×388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716건 선임(월평균 226건 선임)
2023	- 2,716건 선임(월평균 226건 선임)
2024	- 3,000건 선임(월평균 250건 선임)
2025	- 3,069건 선임(월평균 258건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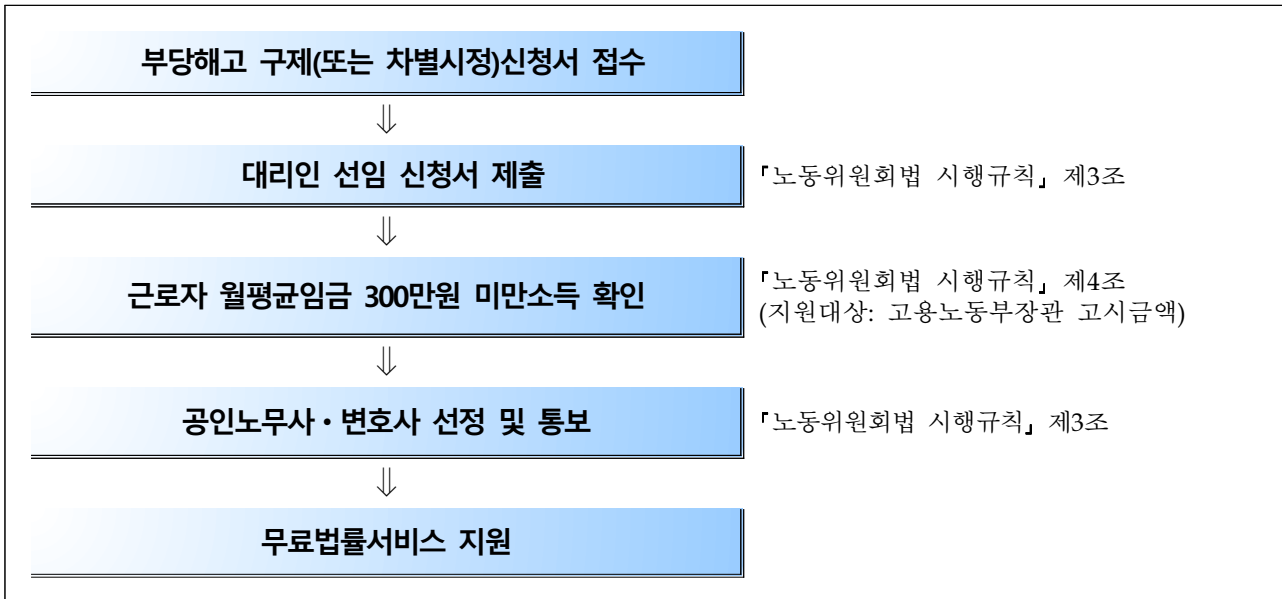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권익보호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4년 결산**)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노동위원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예산의 과소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25년 국정감사**) ① 예산부족 사유로 대리인 보수가 지연지급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② 보수 단가 관련하여 보수 산정 항목 중 회의 참석수당에 교통비 등 실비가 미반영되어 있고, 시장 가격 150만원 내지 300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 바(평균 40만원, 최대 70만원), 인정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소요액을 제출할 것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25	△49	1,076	1,076	1,058	98.3	98.3	0	18
2023	1,125	0	1,125	1,173	1,173	104.3	100.0	0	0
2024	1,050	0	1,050	1,176	1,176	112.0	100.0	0	0
2025	1,000	0	1,000	1,271	1,271	100.0	100.0	0	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내역: 해당사항 없음 ○ 불용내역: 집행잔액 18백만원
2023	○ 이·전용내역: 권리구제대리인 보수 부족으로 48백만원 전용(증) ○ 불용내역: 해당없음
2024	○ 이·전용내역: 권리구제대리인 보수 부족으로 본부기본경비에서 전용(증 127백만원) ○ 불용내역: 해당없음
2025	○ 이·전용내역 - 권리구제대리인 보수 부족으로 노동위원회기본경비(비충액),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 비충액)에서 전용(증 271백만원) ○ 불용내역: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9.30.)	노동위원회 기본경비(비충액) (7018-264)	일반수용비 (210-01)	46	무료법률 서비스지원 (7039-310)	일반수용비 (210-01)	권리구제대리인 보수 부족
전용 (2025.11.7.)	본부기본경비 본부기관운영(비충액) (7011-252)	일반수용비 (210-01)	73			
전용 (2025.11.28.)	본부기본경비 본부기관운영(비충액) (7011-252)	일반수용비 (210-01)	35			
전용 (2025.12.23.)	본부기본경비 본부기관운영(비충액) (7011-252)	일반수용비 (210-01)	35			
내역변경 (2025.9.30.)	노동위원회 전문성강화 (7039-309)	일반수용비 (210-01)	72			

사 업 명						
(100)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7039-5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9	50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노동위원회운영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중앙노동위원회
	사업시행주체	기획총괄과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노동위원회 정보화운영(정보화)	1,456	7,276	7,276	5,626	2,959	△4,317	△59.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87	1,498	1,456	0	41	7,276	7,276	4,603	2,648	25	2,959
·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539	539	513	0	26	539	539	537	0	2	665
·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311	311	0	0	-	-	-	-	-	-
· 원격영상심문회의 시스템구축	413	413	403	0	10	506	506	484	0	23	506
· 정보화전략계획수립	235	235	230	0	5	-	-	-	-	-	-
·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	-	-	-	-	-	6,231	6,231	3,582	2,648	-	1,78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조정·심판업무의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② 추진경위

- 노사마루시스템 등 구축('02년)
- 노사마루시스템 재구축('05년)
 - 기존 조정·심판DB시스템을 개편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조정·심판사건을 처리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재구축
- 전자심판위원회 시스템 등 구축('06년)
 - 부의 안을 전자화하여 전자심판위원회 운영, 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개발
- 노사마루시스템 추가업무 개발('07년)
 - 차별시정, 이행강제금 및 금전보상제, 조정전 지원 등 신규업무 처리프로그램 개발
 - 노동판례 및 판정·판결DB구축을 통한 정보검색기능 제공
- 디지털회의녹음 및 전자사건철관리시스템 구축('08년)
 - 조정·심판 회의내용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회의녹음시스템 구축

- 복수노조업무 전산처리 프로그램 개발('11년)
- 정보시스템 보강 및 보안솔루션 도입('12년)
 - 노후 서버 교체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암호화솔루션 도입 등 보안강화
- 검색서버 이전 구축 및 조직도 연계체계 등 기능 개선('13년)
 - 검색서버 이전 구축 및 검색프로그램 수정 개발, 조직도 연계체계 개선 등
- 판정서 품질 향상을 위한 확정절차 개선('15년)
 - 판정서 작성 및 사건처리결과 알림 프로그램 변경
 - 공익위원 판정서 검토 프로그램 개발
- 홈페이지를 반응형 웹으로 재구축('16년)
- 도로명주소 연계 및 위원노사마루 등 개선('17년)
- 관리자용 업무처리현황 및 질적 분석 자료 입력 등 개선('18년)
- 노사마루시스템 전면개편 ('19년)
- 위원노사마루시스템 기능개선('20년)
- 홈페이지 망분리·기능개선 및 이행강제금 데이터 이관('21년)
- 노후장비교체 및 구축사업('22년)
-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통·폐합 및 내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등('23년)
- 디지털노동위원회 ISP 및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구축 등('24년)
- 노동위원회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디지털노동위원회 1차구축 및 노동위원회 원격영상회의시스템 확대구축 등('25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65	1,453	1,187	7,276	2,95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노동위원회
- 사업수혜자: 근로자, 노동조합 및 사업주, 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 : 7,276백만원('25년) → 2,959백만원('26년)

①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등: 539백만원('25년)→ 665백만원('26년)

- (일반수용비) 15백만원('25년)→ 15백만원('26년)
- (공공요금 및 제세) 9백만원('25년)→ 4백만원('26년)
- (시설장비유지비) 470백만원('25년)→ 646백만원('26년)
- (임차료) 50백만원('25년)→ 순감

② 원격영상심문회의시스템구축: 506백만원('25년)→ 506백만원('26년)

- (자산취득비) 506백만원('25년) → 506백만원('26년)

③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 6,231백만원('25년, 1차)→ 1,788백만원('26년, 2차)

- (일반연구비) 4,279백만원('25년, 1차)→ 1,182백만원('26년, 2차)
- (자산취득비) 1,952백만원('25년, 1차)→ 606백만원('26년, 2차)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1,706백만원(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 지출총액) - 노후장비 교체 및 구축사업 - 법개정사항(채용상 성차별 등) 시스템 반영
2023	○ 1,303백만원(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 지출총액) -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통·폐합 및 내부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노동위원회 원격영상심문회의시스템 구축(2개소)
2024	○ 1,456백만원(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 지출총액) - 노동위원회 원격영상심문회의시스템 확대구축(3개소) - 디지털노동위원회 정보화전략계획수립
2025	○ 4,603백만원(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 지출총액) - 노동위원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디지털위원회 1차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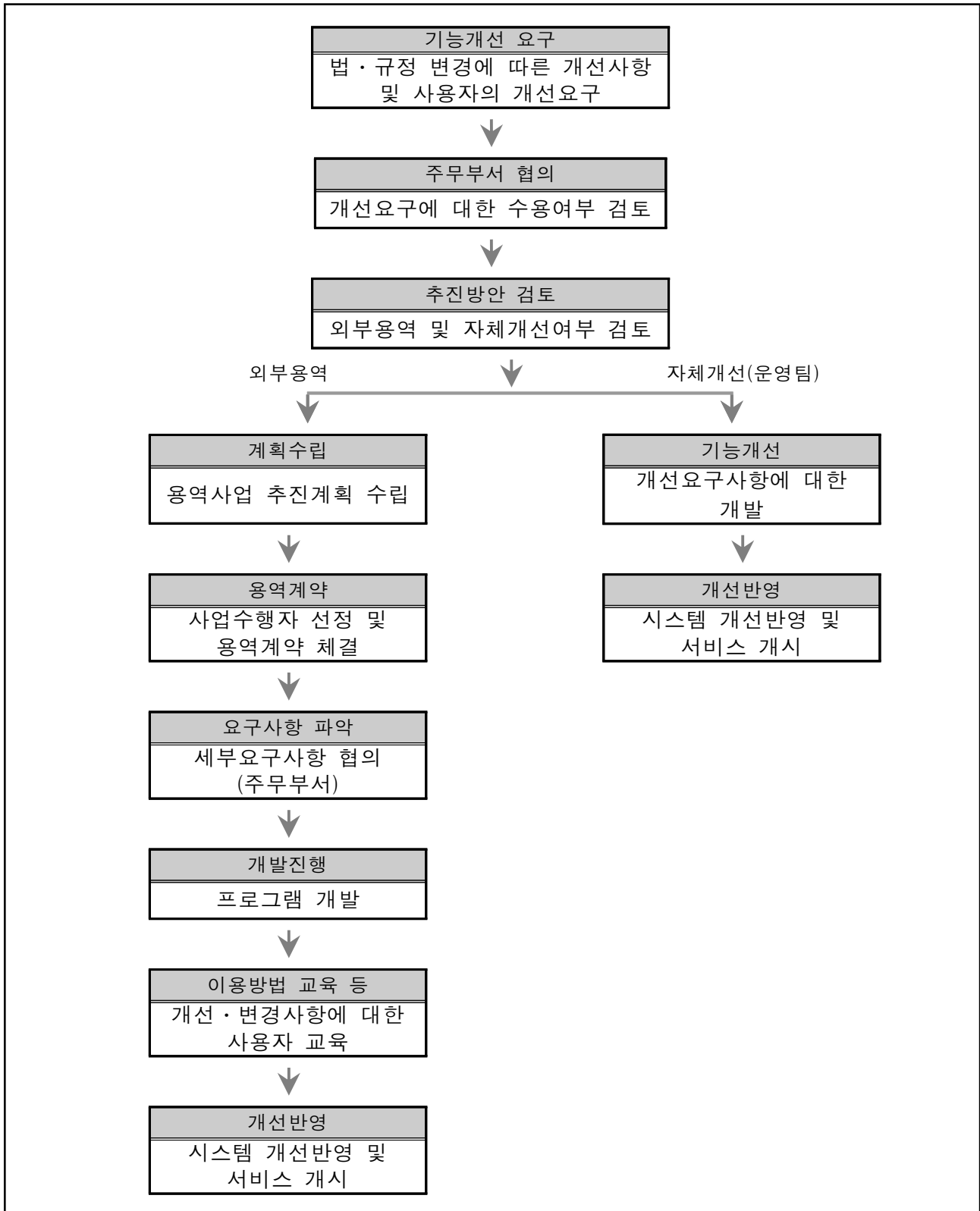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디지털 노동위원회 구축 등을 통해 내·외부 고객 서비스 강화와 조정·심판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965	0	1,965	1,984	1,706	86.8	86.0	187	91
2023	1,453	0	1,453	1,640	1,303	89.6	79.4	311	26
2024	1,187	0	1,187	1,498	1,498	122.6	97.1	0	41
2025	7,276	0	7,276	7,276	4,603	63.3	63.3	2,648	2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내역 - 자산취득비 부족으로 전용(증 19백만원), 공공요금 부족으로 세목조정(8백만원),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세목조정(3백만원) ○ 불용내역: 집행잔액 91백만원
2023	○ 이·전용 내역 - 일반연구비 부족으로 임차료에서 전용(증 15백만원),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세목조정(19백만원), 공공요금 부족으로 세목조정(6백만원) ○ 불용내역: 2023년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 26백만원, 사업 기간('23.7.~'24.1.) 미종료 이월 311백만원
2024	○ 이·전용 내역 -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임차료에서 세목조정(47백만원), 공공요금 부족으로 임차료에서 세목조정(3백만원) ○ 불용내역: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 41백만원
2025	○ 이·전용 내역 -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임차료에서 세목조정(47백만원), 공공요금 부족으로 임차료에서 세목조정(5백만원) ○ 불용내역: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 25백만원, 디지털노동위원회구축 사업기간 미종료로 이월 2,648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10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7040-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40	307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운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리과
	사업시행주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리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3,436	3,905	3,905	4,358	4,670	765	19.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3,530	3,530	3,436	0	94	3,905	3,905	3,800	0	105	4,670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3,530	3,530	3,436	0	94	3,905	3,905	3,800	0	105	4,6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요 고용·노동 정책과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현안 관련 논의 및 사회적 대화 회의체 활성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법률 제 17864호, '21.1.5.)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9150호, '18.9.11.)

② 추진경위

- '97년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지원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98.1.15 노사정 3자 협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출범
- '98년에는 대통령령에 설치근거를 두었으며, '99년에는 법률에 설치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사회적 대화체제를 제도화(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 '06.04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 개편방안에 합의
- '07.01.26.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07.4.27 시행)
- '09.02.2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전문 및 64개 항목) 체결
- '11.06.10. 「베이비붐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중소기업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13.07.17. 「청년고용증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
- '14.12.23.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15.0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17.09.13.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한 권고문」 채택
- '17.11.06. 「노동시장 외주화와 격차 해소방안」 채택
- '18.06.12.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전면개정('18.9.13. 시행)
- '18.08.21.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
- '19.02.18.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합의」 채택
- '19.02.19.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 채택
- '19.03.05.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
- '19.05.03.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위원 권고문 발표
- '19.06.03. 「사람중심 스마트공장 협약식」 노사정 업무협약 체결
- '19.08.30.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문」 발표
- '20.02.20. 「해운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선원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운산업위원회 합의문」 발표
- '20.03.02.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발표
- '20.03.0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 발표
- '20.03.19.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합의문」 발표
- '20.04.27.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합의문」 발표
- '20.05.13. 「플랫폼 경제활성화 및 노동종사자 지원방안에 관한 합의문」 발표
- '20.07.28.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합의문」 발표
- '20.08.18.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 발표
- '20.09.08.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20.10.08.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실현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20.10.16.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 의결
- '20.10.27.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 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 의결
- '20.10.29. 「지속가능한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 합의안」 채택
- '20.11.18.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채택
- '21.11.05.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발표
- '22.06.09. 「가사·아이돌봄 산업생태계 조성가 종사자 보호 확대를 위한 합의문」 발표
- '22.06.10. 「대리운전업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가 대리운전 종사자 보호 확보를 위한 합의문」 발표
- '23.03.15.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 '24.02.06.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 채택
- '24.10.22. 공무원 근무면제한도 심의·의결
- '24.10.28. 교원 근무면제한도 심의·의결
- '25.05.08.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25) 3,905백만원 → ('26) 4,670백만원, 19.6%

(1) 회의체 등 운영: ('25) 1,375백만원 → ('26) 1,777백만원, +29.2%

- 의제별·업종별·계층별 위원회 활성화 및 연구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국제행사 등 회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외협력활동 지원 예산 등 고려하여 29.2% 증액
- (산출)

① 일반수용비 1,224백만원(전년대비 +367백만원)

▲ 본위원회 운영 180백만원(전년동)

-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및 자문료 154백만원 = 12,800,000원*12월
- 참석수당 12백만원 = 13명*150,000원*6회
- 안건검토비 8백만원 = 13명*100,000원*6회
- 운영비 6백만원 = 1,000,000원*6회

▲ 운영위원회 운영 10백만원(전년동)

- 참석수당 5백만원 = 3명*150,000원*10회
- 원고료 3백만원 = 3명*100,000원*10회
- 운영비 2백만원 = 200,000원*10회

▲ 이행점검위원회 운영 14백만원(전년동)

- 참석수당 6백만원 = 7명*200,000원*4회
- 안건검토비 3백만원 = 7명*100,000원*4회
- 운영비 6백만원 = 1,500,000원*4회

▲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운영 14백만원(전년동)

- 참석수당 6백만원 = 3명*150,000원*15회
- 안건검토비 5백만원 = 3명*100,000원*15회
- 운영비 3백만원 = 200,000원*15회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35백만원(전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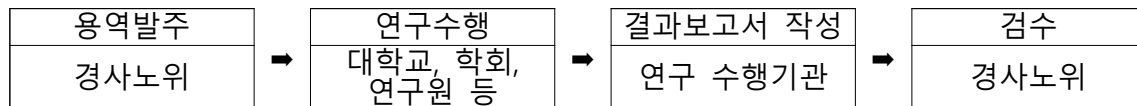
- 참석수당 26백만원 = 11명*200,000원*12회
- 안건검토비 7백만원 = 6명*100,000원*11회
- 운영비 2백만원 = 2,000,000원*1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 회의 운영 102백만원(신설)

- 전문가자문료 72백만원 = 6,000,000원*12월
- 참석수당 26백만원 = 11명*200,000원*12회
- 운영비 4백만원 = 300,000원*12회
- ▲ 특별위원회 운영 38백만원(전년동)
 - 참석수당 30백만원 = 10명*200,000원*15회
 - 안건검토비 2백만원 = 1명*100,000원*15회
 - 원고료 6백만원 = 2명*200,000원*15회
- ▲ 의제별위원회 운영 138백만원(전년동)
 - 참석수당 106백만원 = 11명*200,000원*16회*3개
 - 안건검토비 5백만원 = 1명*100,000원*16회*3개
 - 원고료 19백만원 = 2명*200,000원*16회*3개
 - 운영비 8백만원 = 2,800,000원*3개
- ▲ 업종별위원회 운영 91백만원(전년대비 +5백만원)
 - 참석수당 70백만원 = 11명*200,000원*16회*2개
 - 안건검토비 3백만원 = 1명*100,000원*16회*2개
 - 원고료 13백만원 = 2명*200,000원*16회*2개
 - 운영비 5백만원 = 2,500,000원*2개
- ▲ 계층별위원회 운영 164백만원(전년대비 +10백만원)
 - 참석수당 128백만원 = 10명*200,000원*16회*4개
 - 안건검토비 7백만원 = 1명*100,000원*16회*4개
 - 원고료 19백만원 = 1.5명*200,000원*16회*4개
 - 운영비 10백만원 = 2,500,000원*4개
- ▲ 연구회 운영 18백만원(전년동)
 - 참석수당 17백만원 = 7명*200,000원*12회
 - 원고료 1백만원 = 7명*200,000원
- ▲ 토론회 운영 19백만원(전년대비 +9백만원)
 - 참석수당 3백만원 = 9명*200,000원*2회
 - 원고료 3백만원 = 7명*200,000원*2회
 - 운영비 13백만원 = 6,400,000원*2회
- ▲ 노사정포럼, 워크숍 등 15백만원(전년동)
 - 참석수당 4백만원 = 10명*200,000원*2회
 - 원고료 2백만원 = 4명*200,000원*2회
 - 운영비 10백만원 = 4,800,000원*2회
- ▲ 국제협력 관련 76백만원(전년동)
 -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서울이사회 등 66백만원
 - 영문 브로셔 발간 등 10백만원
- ▲ 대외협력활동 관련 311백만원(전년대비 +240백만원)
 - 사회적대화 제작 36백만원 = 17,900,000원*2회
 - 소식지 발간 6백만원 = 310,000원*20회
 - 대외협력활동 등 지원 17백만원 = 1,656,000원*10회
 - 홈페이지운영관련 6백만원
 - 디지털홍보관련 6백만원
 - 위원회 운영 대국민 광고홍보비 240백만원
- ② 공공요금 및 제세 5백만원(전년동)

- ▲ 우편 발송 요금 5백만원(450,000원*12월)
- ③ 임차료 72백만원(전년대비 +36백만원)
 - ▲ 외부 회의장 임차 36백만원(=12회*3,000,000원)
 - ▲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회 개최 관련 회의장 임차 20백만원(=1회*20,000,000원)
 - ▲ 회의장비 등 임차 16백만원(=12회*1,300,000원)
- ④ 국내여비 10백만원(전년동)
 - ▲ 참석위원 여비 10백만원(=80,000원*10회*12월)
- ⑤ 국외여비 54백만원(전년동)
 - ▲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 16백만원
 - ▲ 국제노사정기구연합 기구 이사회 12백만원
 - ▲ 국제노사정기구 서울이사회 초청비용 11백만원
 - ▲ 주요의제 및 정책관련 공무 국외 출장 15백만원
- ⑥ 사업추진비 159백만원(전년동)
 - ▲ 공식행사 경비 25백만원(=5,000,000원*5회)
 - ▲ 공식회의 경비 122백만원(=17명*30,000원*20회*12월)
 - ▲ 해외출장 지원 경비 12백만원(=3,950,000원*3회)
- ⑦ 관서업무추진비 54백만원(전년동)
 - ▲ 유관기관 업무협의 36백만원(=5명*30,000원*20회*12월)
 - ▲ 위원장등 대내외 업무협의 18백만원(=5명*30,000원*10회*12월)
- ⑧ 일반연구비 100백만원(전년동)
 - ▲ 의제개발 등 연구용역 100백만원(=50백만원*2회)
- ⑨ 정책연구비 100백만원(전년동)
 - ▲ 의제개발 등 정책연구용역 100백만원(=50백만원*2회)

<연구용역 진행 절차>



(2) 사무처 운영: ('25) 564백만원 → ('26) 651백만원, +15.4%

- 노후전산장비 교체 및 임차를 위한 사무처 운영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5.4% 증액
- (산출)

- ① 일반수용비 158백만원(전년동)
 - ▲ 소모품 등 구매비용 72백만원(전년동)
 - 토너 구입비 20백만원 = 5,100,000원*4회
 - 사무전산용품 및 비품 구입비 18백만원 = 1,500,000원*12월
 - 생수 등 구입비 16백만원 = 1,300,000원*12월
 - 기념품 구입비 15백만원 = 3,000,000원*5회
 - 업무수첩 등 제작구입비 3백만원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59백만원(전년동)
 - 데이터베이스이용료 등 5백만원
 - 물품관리 용역대금 3백만원
 - 기타사용료 3백만원
 - 홈페이지 개편 용역 48백만원

- ▲ 간행물 등 구입비 18백만원(전년동)
 - 신문 등 간행물 구입 18백만원 = 1,500,000원*12월
- ▲ 유인물 제작 6백만원(전년동)
 - 내부자료 유인 2백만원 = 500,000원*4회
 - 외부제출자료 유인 4백만원 = 1,000,000원*4회
- ▲ 교육훈련경비 3백만원(=400,000원*8회)(전년동)
- ② 공공요금 및 제세 44백만원(전년동)
 - ▲ 전화 통신 인터넷 요금 40백만원(전년동)
 - 전화요금 30백만원 = 2,550,000원*12월
 - 개인통신비 지원 8백만원 = 635,000원*12월
 - 국가정보통신, 인터넷 사용요금 2백만원 = 129,000원*12월
 - ▲ 케이블 TV 수신료 2백만원(=150,000원*12월)(전년동)
 - ▲ 무인경비서비스요금 1백만원(=132,000원*12월)(전년동)
 - ▲ 기타 보험료 세금 등 1백만원(전년동)
- ③ 특근매식비 6백만원(전년동)
- ④ 임차료 133백만원(전년대비 +21백만원)
 - ▲ 관용차량 임차료 53백만원(=4,450,000원*12월)(전년동)
 - ▲ 전산사무용품 임차료 80백만원(전년대비 +21백만원)
 - 컴퓨터 등 임차 52백만원 = 41대*106,000원*12월
 - 모니터 등 임차 1백만원 = 3대*22,000원*12월
 - 개인프린터 등 임차 8백만원 = 11대*60,500원*12월
 - 공기청정기 및 커피머신 등 임차 7백만원 = 569,500원*12월
 - 복사기 임차 12백만원 = 990,000원*12월
- ⑤ 유류비 10백만원(전년동)
 - ▲ 업무용차량 유류비 10백만원(=275,000원*3대*12월)
- ⑥ 시설장비유지비 27백만원(전년동)
 - ▲ 네트워크유지보수료 15백만원(=1,261,370원*12월)(전년동)
 - ▲ 업무시스템 유지보수료 5백만원(전년동)
 - 백신프로그램 3백만원
 - 기타업무시스템 2백만원
 - ▲ 관용차량 유지보수료 4백만원(=300,000원*12월)(전년동)
 - ▲ 기타유지보수료 3백만원(전년동)
- ⑦ 복리후생비 5백만원(전년동)
 - ▲ 맞춤형복지 5백만원(=500,000원*10명)
- ⑧ 기타운영비 32백만원(전년동)
 - ▲ 축조의금 및 격려금 등 12백만원(=1,000,000원*12월)
 - ▲ 비서실 운영비 11백만원(=475,000원*2개*12월)
 - ▲ 과운영비 9백만원(=720,000원*12월)
- ⑨ 국내여비 26백만원(전년동)
 - ▲ 직원 근무지내 출장 9백만원(=20,000원*36명*12월)
 - ▲ 직원 근무지외 출장 17백만원(50,000원*29명*12월)
- ⑩ 관서업무추진비 44백만원(전년동)
 - ▲ 내부 간담회 등 개최경비 38백만원(=8명*30,000원*13회*12월)
 - ▲ 직원 및 위원 워크숍 등 6백만원(=41명*30,000원*5회)

⑪ 직책수행경비: 72백만원(전년동)

- ▲ 장관급 24백만원
- ▲ 차관급 16백만원
- ▲ 2급보조기관 11백만원
- ▲ 4급보조기관 21백만원

⑫ 국제부담금: 18백만원(전년동)

- ▲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부담금 12,000유로

○ 국제노사정기구연합 개요

- 설립연도: 1999년(사무처: 벨기에)
- 총회: 매년 9월경 개최(최고의결기관)
- 설립목적: 전세계 경제·사회 주체 간 대화 촉진 및 노사정 기구 설립지원
- 회원국: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 70여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초 가입일: '06년 3월

○ 부담금: 12,000유로(규정: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정관 14조 2항)

- 정회원국의 매년 부담금 납부의무가 있으며, '15년부터 회원국의 기여도(한국은 이사국 신분)에 따라 그룹별로 부담금 납부를 요청

*** (국제노사정기구연합, 14년 총회 의결사항-GDP대비 국가그룹별 부담금 확대) '중요 그룹(최소 €12,000), '중간 그룹(최소 €5,000), '일반 그룹(€2,500)으로 분류, 한국은 중요 그룹으로 분류되어 '17년부터 부담금을 증액 납부하였음**

○ 기타

- '09년~현재까지 아시아 이사국으로 활동 중
- * 이사국 현황 : 17개국(아프리카(6), 중남미(3), 아시아(3), 유럽(5))
- '15.9월 아시아 대륙의 사무부총장 국가로 선출(임기: 2년, 현재 연임)

⑬ 자산취득비: 76백만원(전년대비 +66백만원)

- ▲ 방송장비 및 일반자산 구매 등 10백만원
- ▲ 윈도우10 지원종료 관련 노후PC 교체 등 66백만원(신규)

(3) 청사관리비: ('25) 1,303백만원→ ('26) 1,514백만원, +16.3%

- '26.2월 청사임차 재계약에 따른 보증금·관리비 증액분 +16.3% 증액

- (산출)

- ▲ 청사임차료(210-07) 851백만원(77.4백만원*11월)(전년동)
- ▲ 청사관리비(210-02) 433백만원(36.1백만원*12월)(전년대비 +5백만원)
- ▲ 청사전기료(210-02) 26백만원(2.2백만원*12월)(전년대비 +2백만원)
- ▲ 청사임차보증금(440-00) 204백만원(신규)

(4) 인건비: ('25) 663→ ('26) 727백만원, +9.5%

- 상임위원 1명, 공무원근로자 9명의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처우개선분 등 반영하여 적정수준 편성

- (산출)

- ▲ 상용임금 688백만원 ▲ 고용부담금 3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01.13. 대리운전업·가사서비스업 분과위원회 발족 01.14. 제2기 여성위원회 발족 06.09. 「가사·아이돌봄 산업생태계 조성가 종사자 보호 확대를 위한 합의문」 발표 06.21. 제2기 소상공위원회 발족 06.10. 「대리운전업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가 대리운전 종사자 보호 확대를 위한 합의문」 발표 12.06.~19. 제12차 본위원회 개최 및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등 3개 합의문 의결
2023	02.08.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발족 02.09.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 03.15.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07.27. 초고령사회 계속고용연구회 발족 11.13.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선언 12.14. 노사정 대표자 회의
2024	02.06.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 원칙과 방향 선언문」 등 5개 안전 의결) 03.07.~11 제14차 본위원회 개최(「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의결) 05.30.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06.21. 일·생활 균형위원회 발족 06.27.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발족 10.22. 공무원 근무면제한도 심의·의결 10.28. 교원 근무면제한도 심의·의결
2025	01.2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02.17. 계속고용 한·일 공동세미나 개최 03.26.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 개최 05.08.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 05.29.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2.10. 복합전환의 시대 국제컨퍼런스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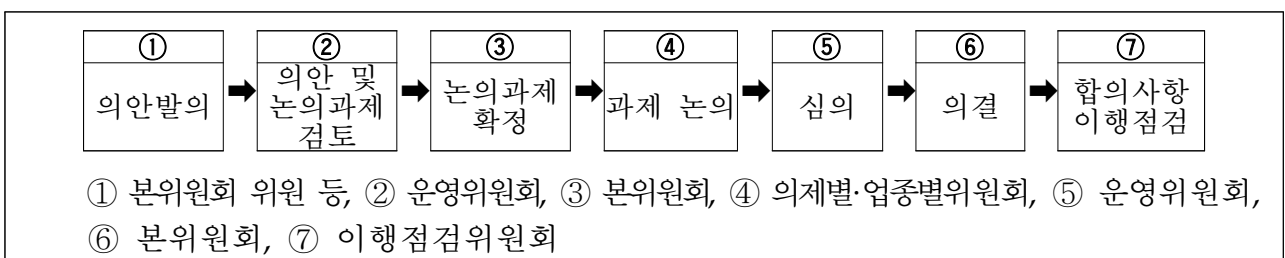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요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355	△67	3,288	3,288	3,142	93.7	95.5	0	146
2023	3,291	0	3,291	3,291	3,157	95.9	95.9	0	135
2024	3,530	0	3,530	3,530	3,436	97.3	97.3	0	94
2025	3,905	0	3,905	3,905	3,800	97.3	97.3	0	10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추경 편성 사유) 제2차추경 재원마련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67백만원 감액
2023	- (이·전용 등 상세내역 및 사유) 노동시장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자문단, 연구회 운영이 확대됨에 따라 연구용역 수요가 증가하여 재원마련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연구비로 75백만원 자체전용, 정부안 예산편성 시 반영되지 못한 대변인 직위에 대한 직책수행경비 부족 예산을 일반수용비에서 자체 전용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102) 고객상담센터인건비(7902-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900	7902	101
명칭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	고객상담센터인건비	고객상담센터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객상담센터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고객상담센터인건비	3,780	3,797	3,797	4,064	4,064	267	7.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814	3,785	3,780	-	5	3,797	3,807	3,802	-	5	4,064
· 고객상담센터인건비	3,814	3,785	3,780	-	5	3,797	3,807	3,802	-	5	4,0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노동 분야 상담을 원하는 국민에게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또는 인터넷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고용보험법 (법률 제19210호)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 기반의 구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573호)

제2조(소속기관)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둔다.

제7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제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 전국 단일 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고용노동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52호)

시행령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① 법 제2조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 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조사연구형 기관,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및 기타 유형의 기관의 설치 및 구분은 별표1과 같고, …후략…

[별표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

구분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
... 중략 ...		
기타 유형의 기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특허청

② 추진경위

- '03.11. 종합상담센터 설립추진계획 확정
- '03.12. 『종합상담센터 설립추진단』 발족
- '04.08. 종합상담센터 개소
- '04.12. 종합상담센터 직제 마련
- '10.07. 직제 개편(종합상담센터 → 고객상담센터)
- '12.12. 고객상담센터 이전(경기도 안양 → 울산)
- '16.03.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 지정
- '21.01. 민간위탁콜센터(천안·안양·광주) 직접 운영 전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4.8월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673	3,777	3,814	3,797	4,064

- 기타: 연간 전화상담 537만건, 인터넷 상담 17만건, 채팅상담 14.5만건 처리('25년 기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 분야 상담을 원하는 전 국민(주로 근로자 및 사업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고객상담센터인건비: ('25) 3,797백만원 → ('26) 4,064백만원(267백만원 증액)

□ 보수(110-01): ('25) 3,767백만원 → ('26) 4,031백만원, 264백만원 증액

- (요구) 공무원 59명* 인건비
- * 고객상담센터 공무원 기준 정원
- (산출) 4,031백만원 = 68,322천원×59명

□ 연가보상비(110-05): ('25) 30백만원 → ('26) 33백만원, 3백만원 증액

- (요구) 공무원 59명* 연가보상비
- * 고객상담센터 공무원 기준 정원
- (산출) 33백만원 = 560천원×59명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797	□ 인건비(110) : 3,797백만원 ○ 보수(110-01) : 3,767백만원 가. 공무원 인건비 = 62,783천원×60명 ○ 연가보상비(110-05) : 30백만원 가. 공무원 연가보상비 = 500천원×60명	4,064	□ 인건비(110) : 4,064백만원 ○ 보수(110-01) : 4,031백만원 가. 공무원 인건비 = 68,322천원×59명 ○ 연가보상비(110-05) : 33백만원 가. 공무원 연가보상비 = 560천원×59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전화상담 135만건, 인터넷상담 16만건 처리
2023	전화상담 551만건, 인터넷상담 13만건 처리
2024	전화상담 534만건, 인터넷상담 13만건, 채팅상담 6.7만건 처리('24. 8. 1. 개시)
2025	전화상담 537만건, 인터넷상담 17만건, 채팅상담 14.5만건 처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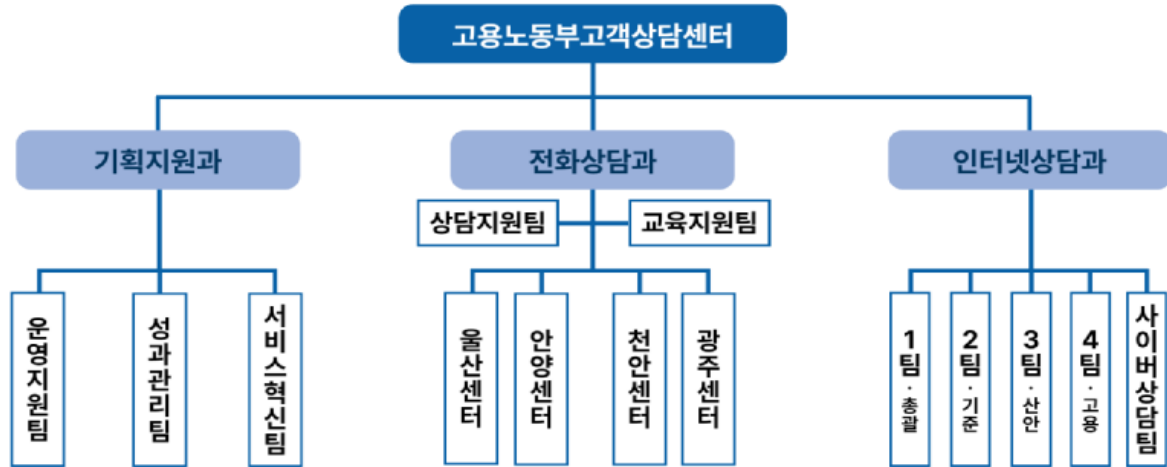
- 고용·노동 분야 전화상담 및 인터넷·서면 질의 민원을 집중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조직도



□ 업무 개요

부서명	주요업무
기획지원과	운영·관리 총괄 기획·인사·총무·홍보·시스템·보안·평가·ESG경영
전화상담과	상담지원팀 전화상담 업무지원·모니터링, 교육지원팀 상담원 교육지원
울산센터	민원상담 노동(임금·퇴직금·근로시간)·산업안전·국민취업지원제도
천안센터	민원상담 실업급여(25±5%), 청년내일채움공제·취업지원·모성보호
안양센터	민원상담 실업급여(50±5%), 사업주지원금
광주센터	민원상담 실업급여(25±5%), 내일배움카드, 외국인 고용허가
인터넷상담과	민원답변 고용·노동분야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 민원 처리 업무

* (☎1350) ① 지방관서 전화번호 및 위치안내, ② 나의민원 확인, ③ 고용상담, ④ 노동상담,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⑤ 외국어상담

** (③고용상담) ①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④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⑤ 취업지원, ⑥ 사업주 지원금, ⑦ 외국인고용 허가제도, ⑧ 청년내일채움공제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사항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673	△6	3,667	3,472	3,461	94.4	99.7	-	11
2023	3,777	-	3,777	3,763	3,594	95.1	95.5	-	169
2024	3,814	-	3,814	3,785	3,780	99.1	99.9	-	5
2025	3,797	-	3,797	3,807	3,802	100.1	99.9	-	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공무원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액 납부를 위해 고객상담센터운영 고용부담금으로 195백만원 전용(감)
2023	- 전용: 복지포인트 지급액 및 국내여비 부족으로 인해 14백만원 전용(감)
2024	- 이용: 본부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29백만원 이용(감)
2025	- 전용: ① 공무원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액 부족분 충당을 위해 연가보상비에서 6.4백만원 전용(감), ②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17백만원 전용(증)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2.9.)	고객상담센터 인건비 (7902-101)	연가보상비 (110-05)	6.4	고객상담센터 운영 (7931-301)	복리후생비 (210-12)	공무원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액 부족분 충당
전용 (25.12.16.)	고객상담센터 운영 (7931-301)	일반수용비 (210-01)	17	고객상담센터 인건비 (7902-101)	보수 (110-01)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

사 업 명
(103) 고객상담센터운영(79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900	7931	301
명칭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	고객상담센터운영	고객상담센터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객상담센터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객상담센터
	사업시행주체	기획지원과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고객상담센터운영	23,488	24,040	24,040	26,607	26,607	2,567	10.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719	23,532	23,488	-	44	24,040	24,029	23,993	-	36	26,607
· 고객상담센터운영	23,719	23,532	23,488	-	44	24,040	24,029	23,993	-	36	26,60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용·노동 분야 상담을 원하는 국민에게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또는 인터넷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고용보험법 (법률 제19210호)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 기반의 구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573호)

제2조(소속기관)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둔다.

제7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제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 전국 단일 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고용노동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52호)

시행령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① 법 제2조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 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조사연구형 기관,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및 기타 유형의 기관의 설치 및 구분은 별표1과 같고, ...후략...

[별표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

구분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
... 중략 ...		
기타 유형의 기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특허청

② 추진경위

- '03.11. 종합상담센터 설립추진계획 확정
- '03.12. 『종합상담센터 설립추진단』 발족
- '04.08. 종합상담센터 개소
- '04.12. 종합상담센터 직제 마련
- '10.07. 직제 개편(종합상담센터 → 고객상담센터)
- '12.12. 고객상담센터 이전(경기도 안양 → 울산)
- '16.03.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 지정
- '21.01. 민간위탁콜센터(천안·안양·광주) 직접 운영 전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4.8월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149	24,478	23,719	24,040	26,607

- 기타: 연간 전화상담 537만건, 인터넷 상담 17만건, 채팅상담 14.5만건 처리('25년 기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사업 수혜자 : 고용·노동 분야 상담을 원하는 전 국민(주로 근로자 및 사업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고객상담센터운영: ('25) 24,040백만원 → ('26) 26,607백만원(2,567백만원 증액)

① 인건비: ('25) 20,647백만원 → ('26) 22,876백만원(2,229백만원 증액)

- (요구) 기존 공무원 근로자 인건비

- (산출)

◦ 상용임금(110-03): ('25) 16,990백만원 → ('26) 18,815백만원(1,825백만원 증액)

- 사무원 34백만원

- 기본급 27백만원=10,760원×209H×12개월×1명
- 초과근무수당 2백만원=11,920원×1.5배×120H×1명
- 정액급식비 2백만원=140천원×12개월×1명
- 명절상여금 2.6백만원=10,760원×209H×1명×120%
- 연가보상비 0.4백만원=11,920원×8H×5일×1명

- 전임전화상담원 16,037백만원

- 기본급 13,064백만원=11,620원×12개월×{(209H×246명)+(130H×12명)+(117H×348명)}
- 초과근무수당 411백만원={[(12,780원×246명)+(13,470원×12명)+(13,670원×348명)]×1.5배×34H}
- 정액급식비 1,018백만원=140천원×12개월×606명
- 명절상여금 1,306백만원=[{(209H×246명)+(130H×12명)+(117H×348명)}×11,620원]×120%
- 연가보상비 237백만원={[(12,780원×246명×8H)+(13,470원×12명×5H)+(13,670원×348명×4.5H)]×5일}

- 책임전화상담원 2,668백만원

- 기본급 2,210백만원=14,940원×209H×12개월×59명
- 초과근무수당 100백만원=16,090원×59명×1.5배×70H
- 정액급식비 99백만원=140천원×12개월×59명
- 명절상여금 221백만원=14,940원×209H×59명×120%
- 연가보상비 38백만원=16,090원×8H×5일×59명

- 청소원 인건비 76백만원

- 기본급 57백만원=(10,770원×143H×12개월×2명)+(10,770원×79H×12개월×2명)
- * 청소원 소정근로시간 울산 일5.5H(월143H), 안양·광주 일3H(월79H)
- 초과근무수당 5백만원={[(12,440원×2명)+(13,840원×2명)]×1.5배×65H}
- 정액급식비 7백만원=140천원×12개월×4명
- 명절상여금 6백만원=[{(143H×2명)+(79H×2명)}×10,770원]×120%
- 연가보상비 1백만원={[(12,440원×5.5H×2명)+(13,840원×3H×2명)]×5일}

- (단수조정) △163천원

◦ 고용부담금(320-09): ('25) 3,322백만원 → ('26) 3,726백만원(404백만원 증액)

- 사회보험료 2,158백만원=18,815백만원×11.47%
- 퇴직연금 1,568백만원=18,815백만원×0.0833

◦ 복리후생비(210-12): (2026요구) 335백만원(전년동)

- 복지포인트 335백만원=500천원×670명

② 기관 운영비: (2025) 3,394 → (‘26) 3,731백만원(337백만원 증액)

■ 일반수용비(210-01): (‘25) 257백만원 → (‘26) 157백만원(100백만원 감액)

- (요구) 감정노동자 힐링 프로그램, 직무학습서 제작,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
- (산출) 총 157백만원
 - 감정노동자 힐링교육 27백만원=40천원×670명
 - 상담원 직무학습서 책자 인쇄 15백만원=25천원×600부
 - 복사용지 25백만원=20천원×103박스×12개월
 -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비 4백만원=30천원×25종×6개월
 -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24백만원=500천원×12개월×4개센터
 - 복합기 드럼 및 토너 등 5백만원=400천원×12개월
 - 연도별 상담사례집 발간 16백만원=20천원×200부×4개센터
 - 인터넷노동법이용료 2백만원=170천원×12개월
 - 전화상담원 교육비용 21백만원=150천원×4개센터×36회
 - 청사유지 소모품 12백만원=1,000천원×12개월
 - 기타 소모품 구입 6백만원=6,000천원
- (단수조정) △175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6) 733백만원(전년동)

- (요구) 각종 공공요금 및 재택근무 장비 통신비 등
- (산출) 총 733백만원
 - 전기, 수도, 우편요금 등 520백만원=10,816천원×12개월×4개센터
 - 재택근무 장비 통신비 27백만원=29천원×79대×12개월
 - 챗봇 이용요금(카카오톡 이용료) 3백만원=건당 30원×연 10만건
 - 보이는 ARS 안내 문자(알림톡) 발송비 10백만원=건당 5원×연 200만건
 - 전화상담품질 모니터링 안내문자 발송비 34백만원=2,820천원×12개월
 - SNS 채팅상담시스템 간편/본인인증 및 상담원 연결 서비스 이용료 140백만원=건당 140원×100만건

■ 특근매식비(210-05): (‘26) 35백만원(전년동)

- (요구) 특근 직원 매식비
- (산출) 35백만원=9천원×59명×5.492일×12개월
- (단수조정) △44천원

■ 일숙직비(210-06): (‘26) 1백만원(전년동)

- (요구) 당직 수당 등
- (산출) 1백만원= 83천원×12개월

■ 임차료(210-07): (‘26) 658백만원(전년동)

- (요구) 청사 임차료 및 각종 물품 임차료 등
- (산출) 총 658백만원

- 직원 워크숍 장소 임차 2백만원=600천원×4개센터
- 정수기 등 임차료 43백만원=3,617천원×12개월
- 직원 숙소 임차료 58백만원=537천원×9개소×12개월
- 재택근무용 노트북 임차 106백만원=44천원×200대×12개월
- 3개 청사(천안·안양·광주) 임차료 449백만원=12,471천원×12개월×3개센터

■ **유류비(210-08): (‘26) 1백만원(전년동)**

- (요구) 관용차량 유류비
- (산출) 1백만원=83천원×12개월

■ **시설장비유지비: (‘26) 60백만원(전년동)**

- (요구) 각종 시설 유지보수비
- (산출) 총 60백만원
 - ARS 시스템(음성 및 보이는ARS) 메뉴 변경 유지보수 20백만원
 - 청사 시설장비 유지보수 24백만원=6,000천원×12개월
 - OA(PC등) 유지보수비 16백만원=794천원×8%×250대

■ **일반용역비(210-14): (‘26) 17백만원(전년동)**

- (요구) 책임전화상담원 위탁교육비
- (산출) 17백만원=책임전화상담원 위탁 교육비 8,322천원×2회

■ **관리용역비(210-15): (‘26) 1,117백만원(전년동)**

- (요구) 전화상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각종 용역비
- (산출) 총 1,117백만원
 - 무인경비, 소방·승강기·전기안전 용역 등 11백만원=923천원×12개월
 - 전화상담시스템(울산·천안·안양·광주) 유지보수 용역 641백만원=53,444천원×12개월
 - 청사 관리비(천안·안양·광주) 465백만원=21,721원×1,783평(3개센터)×12개월

■ **기타운영비(210-16): (‘26) 112백만원(전년동)**

- (요구) 경조사비, 과 운영비, 우수실적 포상 등
- (산출) 총 112백만원
 - 직원경조사비 4백만원=50천원×86회
 - 과운영비(울산) 15백만원=(180천원+230천원+810천원)×12개월
 - 과운영비(천안·안양·광주) 29백만원=810천원×3과×12개월
 - 우수실적 포상 65백만원=2,320천원×4개센터×7회
- (단수조정) △558천원

■ **국내여비(220-01): (‘26) 54백만원(전년동)**

- (요구) 관내·외 출장 여비, 교육 여비, 우수상담기관 견학 여비 등
- (산출) 54백만원
 - 27백만원=울산 2,212천원×12개월
 - 27백만원=750천원×3개센터×12개월

■ **사업추진비(240-01): (‘26) 8백만원(전년동)**

- (요구) 노사관계자 회의, 유관기관 업무협의, 상담능력 제고 간담회 등

- (산출) 8백만원
 - 4백만원=울산 320천원×12개월
 - 4백만원=110천원×3개센터×12개월

■ 관서업무추진비(240-02): (‘26) 20백만원(전년동)

- (요구) 직원 연찬회, 관서 업무비 등
- (산출) 20백만원
 - 3백만원=울산 292천원×12개월
 - 17백만원=465천원×3개센터×12개월

■ 직책수행경비(250-02): (‘26) 8백만원(전년동)

- (요구) 4급 기관장 및 5급 보조기관 직책수행경비
- (산출) 총 8백만원
 - 4급 기관장 5백만원=400천원×12개월×1명
 - 5급 보조기관 3백만원=80천원×12개월×3명

■ 일반연구비(260-01): (‘25) 12백만원 → (‘26) 100백만원(88백만원 증액)

- (요구) 책임운영기관 필수 연구용역비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연구용역
- (산출) 총 100백만원
 - 고객만족도 조사 12백만원=12백만원×1식
 - 채팅상담시스템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연구용역 실시 88백만원=88백만원×1식

■ 공사비(420-03): (‘25) 40백만원 → (‘26) 490백만원(450백만원 증액)

- (요구) 청사 정기 시설보수 공사 및 청사 이전·확장
 - (산출) 총 490백만원
 - 청사 정기 시설보수 공사 40백만원=40백만원×1식
 - 안양센터 청사 이전 공사 450백만원*
- * (인테리어 230백만원)+(통신·전기 135백만원)+(철거 및 원상복구 59백만원)+(사인물 설치 25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25) 260백만원 → (‘26) 160백만원(100백만원 감액)

- (요구) 노후 전산기기 및 사무가구 정기 교체
- (산출) 총 16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변동이 있는 비목만 표기하였으며, 나머지 비목은 위 산출근거와 동일함.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040	○ 상용임금(110-03): 16,990백만원 가. 사무원 (33백만원) · 기본급 26백만원=10,370원×209H×12개월×1명 · 초과근무수당 3백만원=15,920원×1.5×120H×1명 · 정액급식비 2백만원=140천원×12개월×1명 · 명절상여금 1백만원=1,100천원×1명	26,607	○ 상용임금(110-03): 18,815백만원(1,825백만원 증액) 가. 사무원 (34백만원) · 기본급 27백만원=10,760원×209H×12개월×1명 · 초과근무수당 2백만원=11,920원×1.5배×120H×1명 · 정액급식비 2백만원=140천원×12개월×1명 · 명절상여금 2.6백만원=10,760원×209H×1명×120%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연가보상비 1백만원=15,920원×8H×10일×1명 나. 전임전화상담원 (14,592백만원) - 기본급 12,592백만원=11,200원×12개월×((209H×246명)+(130H×12명)+(117H×348명)) - 초과근무수당 196백만원=((16,660원×246명)+(16,660×12명)+(16,660원×348명))×1.5배×13H - 정액급식비 1,018백만원=140천원×12개월×606명 - 명절상여금 666백만원=1,100천원×606명 - 연가보상비 119백만원=((16,660원×246명×8H) + (16,660원×12명×5H) + (16,660원×348명×4.5H))×2일 다. 책임전화상담원 (2,293백만원) - 기본급 2,129백만원=14,390원×209H×12개월×59명 - 정액급식비 99백만원=140천원×12개월×59명 - 명절상여금 65백만원=1,100천원×59명 라. 청소원 (72백만원) - 기본급 55백만원=((10,370원×12개월×143H×2명)+(10,370원×12개월×79H×2명)) - 초과근무수당 3백만원=15,920원×30H×1.5×4명 - 정액급식비 7백만원=140천원×12개월×4명 - 명절상여금 4백만원=1,100천원×4명 - 연가보상비 3백만원=((15,920원×5.5H×10일×2명)+(15,920원×3H×10일×2명)) ○ 고용부담금(320-09): 3,322백만원 - 사회보험료 및 퇴직연금 3,322백만원=16,990백만원×19.55% ○ 일반수용비(210-01): 257백만원 가. 감정노동자 힐링교육 55백만원 나. 상담원 직무학습서 책자 35백만원 다. 복사용지 25백만원 라.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비 4백만원 마.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48백만원 바. 복합기 드럼 및 토너 등 10백만원 사. 연도별 상담사례집 발간 16백만원 아. 인터넷 노동법 이용료 4백만원 자. 전화상담원 교육비용 29백만원 차. 청사유지 소모품 24백만원 카. 기타 소모품 7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12백만원 가.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12백만원 ○ 공사비(420-03): 40백만원 가. 청사 정기 시설보수 공사 4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260백만원 가. 사무기기 및 사무가구 교체 100백만원 나. 노후 서버 장비 및 방화벽 교체 100백만원 다. SNS 채팅상담시스템 간편/본인인증 서버 도입 60백만원	- 연가보상비 0.4백만원=11,920원×8H×5일×1명 나. 전임전화상담원 (16,037백만원) - 기본급 13,064백만원=11,620원×12개월×((209H×246명)+(130H×12명)+(117H×348명)) - 초과근무수당 411백만원=((12,780원×246명)+(13,470×12명)+(13,670원×348명))×1.5배×34H - 정액급식비 1,018백만원=140천원×12개월×606명 - 명절상여금 1,306백만원=[((209H×246명)+(130H×12명)+(117H×348명))×11,620원]×120% - 연가보상비 237백만원=((12,780원×246명×8H) + (13,470원×12명×5H) + (13,670원×348명×4.5H))×5일 다. 책임전화상담원 (2668백만원) - 기본급 2,210백만원=14,940원×209H×12개월×59명 - 초과근무수당 100백만원=16,090원×59명×1.5배×70H - 정액급식비 99백만원=140천원×12개월×59명 - 명절상여금 221백만원=14,940원×209H×59명×120% - 연가보상비 38백만원=16,090원×8H×59명×5일 라. 청소원 (76백만원) - 기본급 57백만원=((10,770원×12개월×143H×2명)+(10,770원×12개월×79H×2명)) - 초과근무수당 5백만원=((12,440원×2명)+(13,840원×2명))×1.5배×65H - 정액급식비 7백만원=140천원×12개월×4명 - 명절상여금 6백만원=[((143H×2명)+(79H×2명))×10,770원]×120% - 연가보상비 1백만원=((12,440원×5.5H×2명)+(13,840원×3H×2명))×5일 - 단수조정 △163천원 ○ 고용부담금(320-09): 3,726백만원(404백만원 증액) - 사회보험료 및 퇴직연금 3,726백만원=18,815백만원×19.8% ○ 일반수용비(210-01): 157백만원(100백만원 감액) 가. 감정노동자 힐링교육 27백만원 나. 상담원 직무학습서 책자 15백만원 다. 복사용지 25백만원 라.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비 4백만원 마.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24백만원 바. 복합기 드럼 및 토너 등 5백만원 사. 연도별 상담사례집 발간 16백만원 아. 인터넷 노동법 이용료 2백만원 자. 전화상담원 교육비용 21백만원 차. 청사유지 소모품 12백만원 카. 기타 소모품 6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100백만원(88백만원 증액) 가.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12백만원 나. 채팅상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88백만원 ○ 공사비(420-03): 40백만원(450백만원 증액) 가. 청사 정기 시설보수 공사 40백만원 나. 안양센터 청사 이전 및 확장 450백만원 - 인테리어 공사 230백만원 - 통신·전기 공사 135백만원 - 철거 및 원상복구 59백만원 - 사인물 설치 25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160백만원(100백만원 감액) 가. 노후 전산기기 및 사무가구 교체 1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전화상담 135만건, 인터넷상담 16만건 처리
2023	전화상담 551만건, 인터넷상담 13만건 처리
2024	전화상담 534만건, 인터넷상담 13만건, 채팅상담 6.7만건 처리('24. 8. 1. 개시)
2025	전화상담 537만건, 인터넷상담 17만건, 채팅상담 14.5만건 처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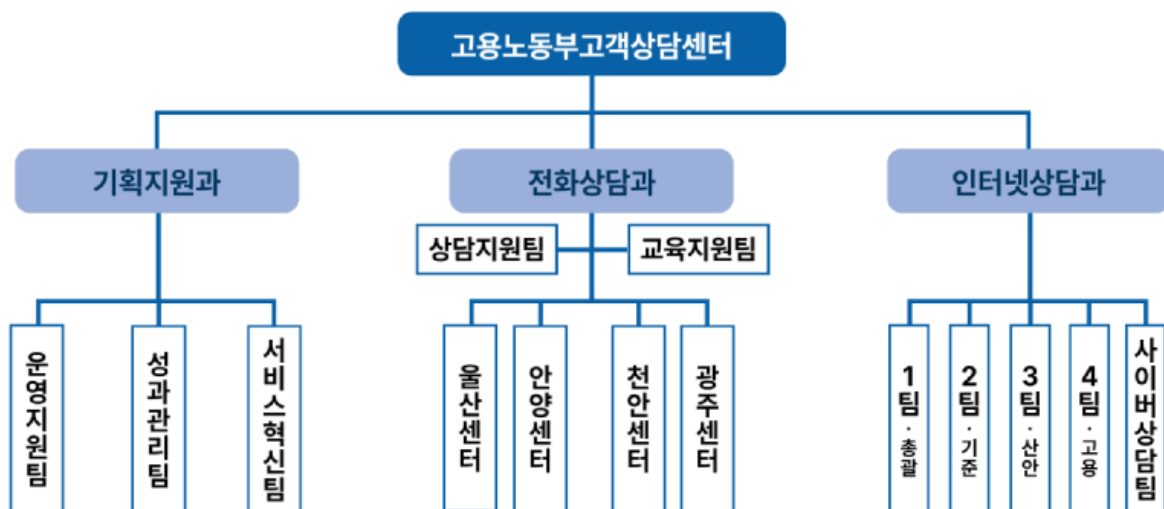
- 고용·노동 분야 전화상담 및 인터넷·서면 질의 민원을 집중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조직도



□ 업무 개요

부서명		주요업무
기획지원과		운영·관리 총괄 기획·인사·총무·홍보·시스템·보안·평가·ESG경영
전화상담과		상담지원팀 전화상담 업무지원·모니터링, 교육지원팀 상담원 교육지원
	울산센터	민원상담 노동(임금·퇴직금·근로시간)·산업안전·국민취업지원제도
	천안센터	민원상담 실업급여(25±5%), 청년내일채움공제·취업지원·모성보호
	안양센터	민원상담 실업급여(50±5%), 사업주지원금
	광주센터	민원상담 실업급여(25±5%), 내일배움카드, 외국인 고용허가
인터넷상담과		민원답변 고용·노동분야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 민원 처리 업무

* (☎1350) ① 지방관서 전화번호 및 위치안내, ② 나의민원 확인, ③ 고용상담, ④ 노동상담,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⑤ 외국어상담

** (③고용상담) ①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④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⑤ 취업지원, ⑥ 사업주 지원금, ⑦ 외국인고용 허가제도, ⑧ 청년내일채움공제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사항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149	-	7,149	7,347	7,326	102.5	99.7	-	18
2023	24,478	-	24,478	24,492	24,117	98.5	98.5	-	375
2024	23,719	-	23,719	23,532	23,488	99.0	99.8	-	44
2025	24,040	-	24,040	24,029	23,993	99.8	99.9	-	3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①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 부족(일반수용비, 관리용역비) 등으로 상용임금에서 58백만원 전용(증감), ②전화상담품질 모니터링 조사 방식 변경으로 34백만원 비목 변경(일반연구비→공공요금및제세)
2023	- 전용: ①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금액 부족으로 인건비에서 5백만원 전용(증) ② 출장 및 교육 여비 부족으로 인건비에서 9백만원 전용(증) ③ 공무원 퇴직연금 적립금 충당으로 상용임금에서 658백만원 전용(증감) ④ K-ESG 경영지표 활용 전략 수립 계획 변경에 따른 연구용역비 부족으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7백만원 전용(증감)
2024	- 전용: ① 스포츠의 날 실시 비용 및 출장비 부족으로 일반수용비에서 국내여비로 17백만원 전용(증감) ② 공무원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액 부족으로 상용임금에서 복리후생비로 3백만원 전용(증감) ③ 출장비 부족으로 관서업무추진비에서 국내여비로 5백만원 전용(증감) ④ 공무원 퇴직연금 적립금 충당으로 상용임금에서 488백만원 전용(증감) - 이용: ① 본부 인건비 부족분으로 187백만원 전용(감)
2025	- 전용: ① 기관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비용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20백만원 전용(증감), ② 스포츠의 날 실시 등 출장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 관서업무추진비, 일반연구비, 일·숙직비에서 24백만원 전용(증감), ③ 공무원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액 부족분 충당을 위해 연가보상비에서 6백만원 전용(증), ④ 공무원 인건비(상용임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기타운영비에서 186백만원 전용(증감), ⑤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17백만원 전용(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2.21.)	고객상담센터 운영 (7931-301)	일반수용비 (210-01)	20	고객상담센터 운영 (7931-301)	일반연구비 (260-01)	연구용역 실시에 따른 일반연구비 부족분 충당
전용 (“25.11.10.)		일반수용비 (210-01)	15		국내여비 (220-01)	스포츠의 날 실시 등 출장여비 부족분 충당
전용 (“25.12.16.)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6.5			
전용 (“25.12.24.)		일반연구비 (260-01)	1.7			
전용 (“25.12.29.)		일·숙직비 (210-06)	1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2.9.)	고객상담센터 인건비 (7902-101)	연가보상비 (110-05)	6.4	고객상담센터 운영 (7931-301)	복리후생비 (210-12)	공무직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액 부족분 충당
전용 ("25.12.16.)	고객상담센터 운영 (7931-301)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175	고객상담센터 운영 (7931-301)	상용임금 (110-03)	공무직 인건비(상용임금) 부족분 충당
전용 ("25.12.16.)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11			
전용 ("25.12.26.)		기타운영비 (210-16)	0.4			
전용 ("25.12.16.)		일반수용비 (210-01)	17	고객상담센터 인건비 (7902-101)	보수 (110-01)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

사 업 명
(104)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8421-88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	고용지원정책관		080	086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21	881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모성보호지원)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용보험기금 전출 (모성 보호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보험기금 전출 (모성보호지원)	400,000	550,000	550,000	600,000	600,000	50,000	9.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00,000	400,000	400,000	-	-	550,000	550,000	550,000	-	-	600,000
· 고용보험기금전출 (모성보호지원)	400,000	400,000	400,000	-	-	550,000	550,000	550,000	-	-	60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 육아 지원 사업의 사회분담화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모성보호 급여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0조(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 의거 산전후휴가기간 확대 계획 추진
-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결정('00. 4. 10.)
 - 산전후휴가기간을 연장(60→90일)하되, 사업주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대책 마련
- '01.6월 모성보호관련 3법 개정 시 관련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분담토록 국회 부대 결의(※붙임: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
- '05. 5. 31. 산전후휴가급여 사회분담 수준 확대 3법 개정('06.1월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1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00,000	300,000	400,000	550,000	600,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출산·육아기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을 사용하는 근로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 ('25) 550,000 → ('26) 600,000백만원, +50,000백만원(+9.1%)
 - (요구) '26년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의 일부 지원,
 - *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출산·육아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실업급여 계정의 한계상황, 모성보호급여 도입 당시 국회 의결 사항 및 노사정 대타협 취지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지원 필요
 - (산출) '26년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의 일부 지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용보험 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안정적 운영 및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고용노동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23년 환노위, 예정처 결산)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의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23년 예결위, 환노위, 예정처 결산)
 - 정부는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24년 환노위 결산)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정 증감액	추경(A)						
2022	300,000	-	300,000	300,000	300,000	100	100	-	0
2023	300,000	-	300,000	300,000	300,000	100	100	-	0
2024	400,000	-	400,000	400,000	400,000	100	100	-	0
2025	550,000	-	550,000	550,000	550,000	100	100	-	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특이사항 없음
2023	특이사항 없음
2024	특이사항 없음
2025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10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전출(산재보험운영)(8422-88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22	882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산재기금으로의 전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산재보험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기금 전출 (산재보험운영)	실·국·과(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소관부처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전출 (산재보험운영)	6,300	6,300	6,300	6,300	6,3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6,300	6,300	6,300	0	0	6,300	6,300	6,300	6,300	0	0	6,300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전출 (산재보험운영)	6,300	6,300	6,300	0	0	6,300	6,300	6,300	6,300	0	0	6,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재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전출하여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 연도 : 1995년
- 추진 배경 : '94.12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정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던 산재보험에 관한 집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95. 5. 1.)함에 따라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을 산재기금으로 전출하여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5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300	6,300	6,300	6,300	6,3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산재보험운영) :
- ('25년) 6,300 → ('26년) 백만원(전년 동)
- 산재보험사업 수행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으로의 전출금 6,3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가 보험사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적용·징수, 요양·보상, 재활·복지 등 산재보험 사무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
보험사무 수행기관(근로복지공단)의 업무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일반회계 전출

⇒

산재기금 전입

⇒

산재보험운영비 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산재보험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증액 필요성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300	0	6,300	6,300	6,300	100	100	0	0
2023	6,300	0	6,300	6,300	6,300	100	100	0	0
2024	6,300	0	6,300	6,300	6,300	100	100	0	0
2025	6,300	0	6,300	6,300	6,300	100	100	0	0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사 업 명
(10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전출(산재예방지원)(8422-88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080	08E
명칭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22	883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산재기금으로의 전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산재예방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전출 (산재예방지원)	실·국·과(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전출 (산재예방지원)	15,000	15,000	15,000	25,000	25,000	10,000	66.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5,000	15,000	15,000	0	0	15,000	15,000	15,000	15,000	0	0	25,000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전출 (산재예방지원)	15,000	15,000	15,000	0	0	15,000	15,000	15,000	15,000	0	0	25,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정부 일반회계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 연도 : 1997년
- 추진 배경 : 정부의 산재예방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7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000	13,700	15,000	15,000	25,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산재예방지원) :
('25년) 15,000 → ('26년) 25,000백만원(증 10,000백만원)
○ 산재예방사업 수행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으로의 전출금 25,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산재예방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함으로써 산재기금 재정의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일반회계 전출

⇒

산재기금 전입

⇒

산재예방사업비 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산재예방사업 지출액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가 지출 총액
대비 0.14%에 그치고 있어 산재예방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방안 강구 필요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000	0	12,000	12,000	12,000	100	100	0	0
2023	13,700	0	13,700	13,700	13,700	100	100	0	0
2024	15,000	0	15,000	15,000	15,000	100	100	0	0
2025	15,000	0	15,000	15,000	15,000	100	100	0	0

2) 주요 결산사항

☐ 2025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정상 추진중

사 업 명						
(107)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임채기금운영)(8425-88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080	08E
명칭			근로기준정책관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25	885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임채기금으로의 전출금(임채기금운영)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임채기금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임채기금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사업시행주체	퇴직연금복지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일반회계 전입금	82	82	82	82	82	0	0.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82	82	82	0	0	82	82	82	0	0	82
·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	82	82	82	0	0	82	82	82	0	0	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임금채권보장기금전출(임채기금운영))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시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함으로써 임채기금 비용부담 경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99년~계속
- 추진배경: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0	82	82	82	82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기금전출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 사업수혜자 : 근로복지공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	당	없	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 지급 등 임금채권보장업무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요구) '25년도 수준으로 요구
 - (산출) 82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2 백만원	○ 기금전출금(610-03) : 82,000천원 가. 일반회계에서 임채기금으로 지원 : 82,000천원	82 백만원	○ 기금전출금(610-03) : 82,000천원 가. 일반회계에서 임채기금으로 지원 : 82,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일반회계에서 82백만원 지원 -
2024	일반회계에서 82백만원 지원
2025	일반회계에서 82백만원 지원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신속하고 정확한 체당금 지급으로 행정서비스 질제고, 사업주 변제금 회수 및 부담금 징수 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실적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일반회계 지출(전출) →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전입) →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고용노동부 사무집행 및 근로복지공단 운영비로 출연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0	0	0	0	0	-	-	0	0
2023	82	82	0	82	82	100.0	100.0	0	0
2024	82	82	0	82	82	100.0	100.0	0	0
2025	82	82	0	82	82	100.0	100.0	0	0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이·전용, 불용 등 특이사항 없음
2022	- 해당없음
2023	- 이·전용, 불용 등 특이사항 없음
2024	- 이·전용, 불용 등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Ⅱ.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사 업 명
(1) 진폐위로금(41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에너지및자원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투자계정	080	08E
명칭	사업특별회계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300
명칭	산업재해예방	진폐근로자보호	진폐위로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진폐위로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근로복지공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진폐위로금	86,869	83,725	128,774	86,851	86,851	3,126	3.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6,828	86,869	86,869	-	-	83,725	128,902	128,893	-	9	86,851
· 진폐재해위로금	22,548	33,893	33,893	-	-	28,983	29,720	29,720	-	-	32,972
· 장해위로금	29,932	19,778	19,778	-	-	22,546	65,277	65,268	-	9	21,451
· 유족위로금	34,348	33,198	33,198	-	-	32,196	33,905	33,905	-	-	32,42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해위로금)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결과 진폐에 걸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해 진폐예방법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
- (장해위로금)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결과 진폐에 걸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해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10년 개정법 시행전 판정자)
- (유족위로금)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진폐예방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10년 개정법 시행전 판정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진폐재해위로금
3. 삭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 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제5조(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추진경위

- '84. 1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진폐기금 설치
- '85. 진폐위로금지급 사업 개시
- '00. 1. 진폐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 수행
- '08. 1. 근로복지공단에 사업 위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8,106	86,415	86,828	128,774	86,851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08. 1. 1.부터 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 중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및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진폐위로금 : (2025 추경) 128,774백만원 → (2026 예산) 86,851백만원, 감 41,923백만원, 감 32.6%
(2025 본예산 83,725백만원 → 제2회 추경 128,774백만원)
- ① 진폐재해위로금 : (2025 추경) 28,983백만원 → (2026 예산) 32,972백만원, 증 3,989백만원, 증 13.8%
(2025 본예산 28,983백만원 → 제2회 추경 28,983백만원)
- (요구)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인원·단가 3개년 평균 증감을 등 반영하여 요구
- (산출) 928명 × 35,537천원 = 32,972백만원
- ② 장해위로금 : (2025 추경) 67,595백만원 → (2026 예산) 21,451백만원, 감 46,144백만원, 감 68.3%
(2025 본예산 22,546백만원 → 제2회 추경 67,595백만원)
- (요구) 장해위로금 지급인원·단가 3개년 평균 증감을 등 반영하여 요구
- (산출) 865명 × 24,799천원 = 21,451백만원
- ③ 유족위로금 : (2025 추경) 32,196백만원 → (2026 예산) 32,428백만원, 증 232백만원, 증 7.2%
(2025 본예산 32,196백만원 → 제2회 추경 32,196백만원)
- (요구) 장해위로금 지급인원·단가 3개년 평균 증감을 등 반영하여 요구
- (산출) 494명 × 65,643천원 = 32,428백만원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진폐재해 위로금 28,983	< 진폐재해위로금 28,983백만원 > 가. 일반소요 : 수급자 834명 × 지급단가 34,752천원 = 28,983백만원 ※ 수급자수 : 최근 3년('21~'23) 가중 평균수급자 단가 : 최근 3년 평균단가 × 진폐고시임금 평균증감을 반영(103.86%)	진폐재해 위로금 32,972	< 진폐재해위로금 32,972백만원 > 증 3,989백만원 가. 일반소요 : 수급자 928명 × 지급단가 35,537천원 = 32,972백만원 ※ 수급자수 : 최근 3년('22~'24) 가중 평균수급자 단가 : 최근 3년 평균단가 × 진폐고시임금 평균증감을 반영(101.8%)
장해 위로금 67,595	< 장해위로금 67,595백만원 > 가. 일반소요 : 수급자 983명 × 지급단가 22,936천원 = 22,546백만원 ※ 수급자수 : 최근 3년('21~'23) 가중 평균수급자 - 최근 3년 특이소요 발생분 제외(129명) 단가 : 최근 3년 평균단가 × 진폐고시임금 평균증감을 반영(103.8%) 나. 특이소요(법원 판결 수용) : 45,049백만원 - 소제기 건 : 287명 × 17,111천원 - 공단 청구건 : 2,021명 × 19,860천원	장해 위로금 21,451	< 장해위로금 21,451백만원 > 감 46,144백만원 가. 일반소요 : 수급자 865명 × 지급단가 24,799천원 = 21,451백만원 ※ 수급자수 : 최근 3년('22~'24) 가중 평균수급자 - 단가 : 최근 3년 평균단가
유족 위로금 32,196	< 유족위로금 32,196백만원 > 가. 일반소요 : 수급자 509명 × 지급단가 63,253천원 = 32,196백만원 ※ 수급자수 : 최근 3년('21~'23) 가중 평균수급자 단가 : 최근 3년 평균단가 × 진폐고시임금 평균증감을 반영(103.8%)	유족 위로금 32,428	< 유족위로금 32,428백만원 > 증 232백만원 가. 일반소요 : 수급자 494명 × 지급단가 65,643천원 = 32,428백만원 ※ 수급자수 : 최근 3년('22~'24) 가중 평균수급자 단가 : 최근 3년 평균단가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 (하향지표) (단일지표)	목표	신규	0.54	0.50	0.45	0.42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 '25. 0.31 → '26. 0.29 (△6.5%) ** '25 목표치 0.45에 6.6% 감소 반영하여 0.42 산출	○ 측정산식 : 지 원 사 업 장 의 사 망 사 고 예 방 실적(%) $=(A-B)/A \times 100$ A : 공 단 지 원 사 업 장* 사 고 사 망 만 인 율(‰) * 재해발생사업 장(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지원 실적은 제외 B : 전체 사 고 사 망 만 인 율(‰)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실적	신규	0.51	0.48	-	-			
	달성도	신규	105.6	104.0	-	-			

* '25년 실적은 '26.3월말 집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2,832명 위로금 지급(88,636백만원)
2023	2,216명 위로금 지급(86,090백만원)
2024	2,113명 위로금 지급(86,869백만원)
2025	6,536명 위로금 지급(128,893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진폐위로금 지급은 질병으로 인해 소득 수준이 저하된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진폐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사항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8,106	-	88,106	88,666	88,636	100.6	100.0	-	30
2023	86,415	-	86,415	86,093	86,090	99.6	100.0	-	3
2024	86,828	-	86,828	86,869	86,869	100.0	100.0	-	-
2025	83,725	45,049	128,774	128,902	128,893	100.0	100.0	-	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집행잔액 30백만원 불용 * 진폐건강진단 예산 240백만원 및 진폐근로자지원 예산 320백만원을 진폐위로금으로 내역변경 후 집행
2023	- 집행잔액 3백만원 불용 * 진폐위로금 예산 322백만원을 진폐건강진단으로 내역변경 후 집행
2024	- 진폐근로자지원에서 41백만원 진폐위로금으로 내역변경 후 집행
2025	- 집행잔액 9백만원 불용 * 진폐건강진단(30백만원) 및 진폐근로자지원(98백만원)에서 진폐위로금으로 128백만원 내역변경 후 집행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내역변경 (2025.12.26.)	장해위로금	320	02	128	장해위로금 예산부족에 따른 증액 (진폐건강진단 △30, 진폐근로자지원 △98)
합 계				128	

사 업 명
(2) 진폐건강진단(4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에너지및자원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투자계정	080	08E
명칭	사업특별회계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300
명칭	산업재해예방	진폐근로자보호	진폐위로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진폐건강진단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사업시행주체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진폐건강진단	1,683	1,776	1,776	1,625	1,625	△151	△8.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2025년 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10	1,683	1,683	-	-	1,776	1,746	1,746	-	-	1,625
· 이직자건강진단	431	326	326	-	-	403	377	377	-	-	355
· 정밀건강진단	1,079	1,357	1,357	-	-	1,373	1,369	1,369	-	-	1,2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직자건강진단 및 2차건강진단(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직자 건강진단)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아 제18조에 따라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절차와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방법 등) 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1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하되, 실시 결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2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이 판단하는 경우에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진폐의 소견이 있거나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2.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4.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제27조(건강진단 비용의 청구) ① 건강진단기관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강진단 비용 청구서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건강진단 실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건강관리수첩의 기재 내용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84. 1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진폐기금 설치
- '85. 진폐위로금지급 사업 개시
- '00. 1. 진폐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 수행
- '08. 1. 근로복지공단에 사업 위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89	1,510	1,510	1,776	1,62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08. 1. 1.부터 근로복지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 중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및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진폐건강진단 : (2025) 1,776백만원 → (2026) 1,625백만원, 감 151백만원, 감 8.5%

① 이직자 건강진단 : (2025) 403백만원 → (2026) 355백만원, 감 48백만원, 감 11.9%

- (요구) 최근 3년 평균수급자 수 및 지급단가 반영한 예산 요구
- (산출) 수급자수 4,999명 × 지급단가 71천원 = 355백만원

② 정밀진단 : (2025) 1,373백만원 → (2026) 1,270백만원, 감 103백만원, 감 7.5%

- (요구) 최근 3년 평균수급자 수 및 지급단가 반영한 예산 요구
- (산출) 수급자수 3,866명 × 지급단가 338천원 = 1,270백만원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이직자 건강진단 403	< 이직자 건강진단 403백만원 > 가. 일반소요 : 수급자 5,255명 × 지급단가 77천원 = 403백만원 ※ 수급자수 : 최근 3년('21~'23) 가중 평균수급자+ '23~'24년 폐광 광업소 이직자수(330명) 단가 : 최근 3년 평균단가에 단가인상을 반영(108.5%)	이직자 건강진단 355	< 이직자 건강진단 355백만원 > 감 48백만원, 감 11.9% 가. 일반소요 : 수급자 4,999명 × 지급단가 71천원 = 355백만원 ※ 수급자수 : 최근 3년('22~'24) 평균수급자 단가 : 최근 3년 평균단가
정밀진단 1,373	< 정밀진단 1,373백만원 > 가. 일반소요 : 수급자 4,263명 × 지급단가 322천원 = 1,373백만원 ※ 수급자수 : 최근 3년('21~'23) 가중 평균수급자+ '23~'24년 폐광 광업소 이직자수(330명) 단가 : 최근 3년 평균단가에 단가인상을 반영(135.9%)	정밀진단 1,270	< 정밀진단 1,270백만원 > 감 103백만원, 감 7.5% 가. 일반소요 : 수급자 3,866명 × 지급단가 338천원 = 1,270백만원 ※ 수급자수 : 최근 3년('22~'24) 평균수급자 단가 : 최근 3년 평균단가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 (하향지표) (단일지표)	목표	신규	0.54	0.50	0.45	0.42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 '25. 0.31 → '26. 0.29 (△6.5%) ** '25 목표치 0.45에 6.6% 감소 반영하여 0.42 산출	○ 측정산식 : 지원 사업장의 사망사고 예방 실적(%) $=(A-B)/A \times 100$ A : 공단 지원 사업장* 사 고 사 망 만 인 율(‰) * 재해발생사업장(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지원 실적은 제외 B : 전체 사고 사망만인율(‰)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실적	신규	0.51	0.48	-	-			
	달성도	신규	105.6	104.0	-	-			

* '25년 실적은 '26.3월말 집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이직자건강진단: 4,637건, 329백만원 지급 - 정밀건강진단: 3,234건, 1,020백만원 지급
2023	- 이직자건강진단: 5,281건, 406백만원 지급 - 정밀건강진단: 4,611건, 1,548백만원 지급
2024	- 이직자건강진단: 5,078건, 326백만원 지급 - 정밀건강진단: 3,753건, 1,357백만원 지급
2025	- 이직자건강진단: 5,808건, 377백만원 지급 - 정밀건강진단: 4,254건, 1,369백만원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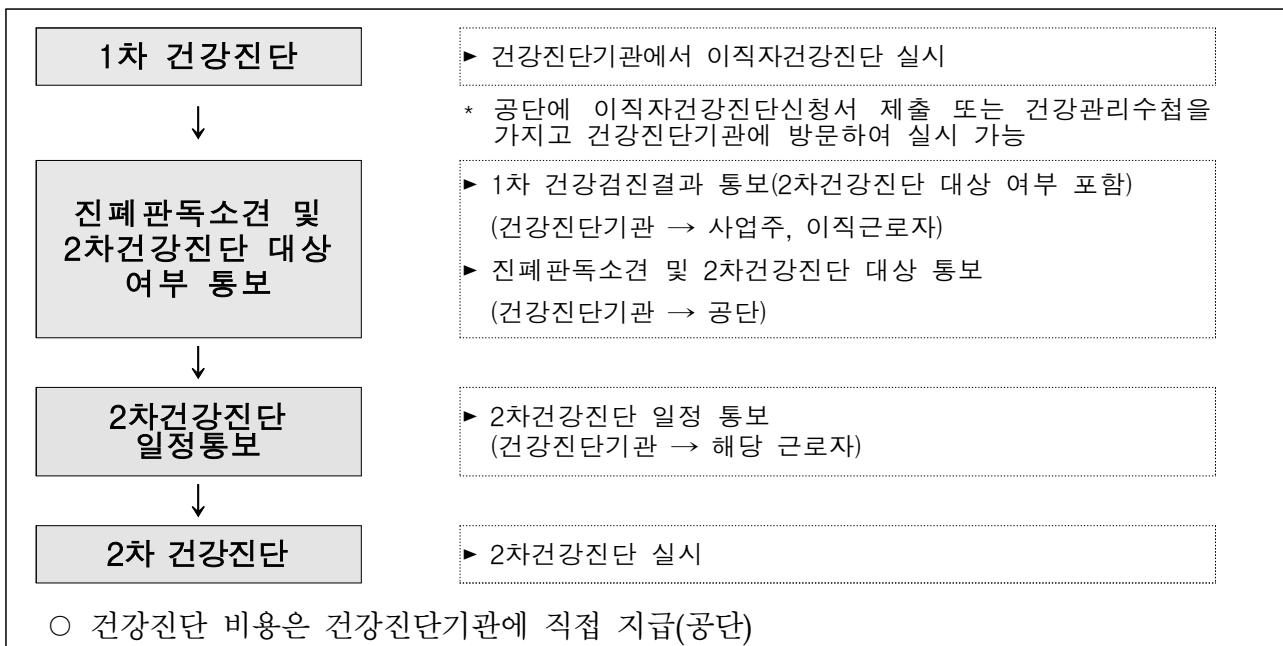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통해 진폐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사항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589	-	1,589	1,349	1,349	84.9	100.0	-	-
2023	1,510	-	1,510	1,954	1,954	129.4	100.0	-	-
2024	1,510	-	1,510	1,683	1,683	111.5	100.0	-	-
2025	1,776	-	1,776	1,746	1,746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진폐건강진단 예산 240백만원 진폐위로금으로 내역변경
2023	- 진폐위로금(322백만원), 진폐근로자지원(122백만원)을 진폐건강진단으로 내역변경
2024	- 진폐근로자지원(173백만원)을 진폐건강진단으로 내역변경
2025	- 진폐건강진단 30백만원을 진폐위로금으로 내역변경하여 집행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내역변경 (2025.12.26.)	이직자건강진단, 정밀건강진단	320	02	△30	장해위로금 예산부족에 따른 조정집행
합 계				△30	

사 업 명
(3) 진폐근로자지원(4131-304)

□ 사업 코드 정보

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에너지및자원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투자계정	080	08E
명칭	사업특별회계				사회복지	노동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301
명칭	산업재해예방	진폐근로자지원	진폐근로자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진폐근로자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산업보건
		보상정책관
	사업시행주체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진폐근로자 지원	1,014	1,119	1,119	1,019	1,019	△100	△8.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28	1,014	1,014	-	-	1,119	1,021	1,021	-	-	1,019
· 정기건강진단	72	43	43	-	-	59	30	30	-	-	31
· 진단수당	388	215	215	-	-	276	214	214	-	-	187
· 이송료	55	45	45	-	-	52	47	47	-	-	46
·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	2	-	-	-	-	2	2	-	-	-	2
· 진폐예방기본경비	711	711	711	-	-	730	730	730	-	-	7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기건강진단) 광업에 종사 중인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 비용을 지급하여 진폐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 (진단수당) 2차건강진단 동안 근로자에게 진단 수당을 지급하여 진폐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
- (이송료) 2차건강진단 동안 근로자에게 이송료를 지급하여 진폐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
-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 진폐근로자 중·고등학교 자녀 장학금 지급을 통해 진폐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
- (진폐예방기본경비) 진폐근로자보호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기 건강진단) ①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연도에는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임시 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합병증으로 1년 이상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을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사업)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1의2.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의 지급

2.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폐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의 지급. (이하 생략)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84. 1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진폐기금 설치
- '85. 진폐위로금지급 사업 개시
- '00. 1. 진폐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 수행
- '08. 1. 근로복지공단에 사업 위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60	1,207	1,228	1,119	1,019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08. 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 사업 수혜자 : 진폐근로자 및 진폐근로자의 중·고생 자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진폐근로자지원 : (2025) 1,119백만원 → (2026) 1,019백만원, 감 100백만원, 감 8.9%

① 정기건강진단 : (2025) 59백만원 → (2026) 31백만원, 감 28백만원, 감 47.5%

- (요구) 3개년 평균수급자 및 평균단가 반영하여 예산 요구
- (산출) 수급자 514명 × 지급단가 61천원 = 31백만원

② 진단수당 : (2025) 276백만원 → (2026) 187백만원, 감 89백만원, 감 32.2%

- (요구) 3개년 평균수급자 및 법정단가 반영하여 예산 요구
- (산출) 수급자 1,503명 × 법정단가 150천원 = 187백만원

③ 이송료 : (2025) 52백만원 → (2026) 46백만원, 감 6백만원, 감 11.5%

- (요구) 3개년 평균수급자 및 평균단가 반영하여 예산 요구
- (산출) 수급자 2,326명 × 지급단가 20천원 = 46백만원

④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 : (2025) 2백만원 → (2026) 2백만원, 전년동

- (요구)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4조로 정한 진폐근로자보호사업으로 명목상 최소금액으로 사업유지 예산 요구
- (산출) 수급자 1명 × 장학금 단가 2백만원 = 2백만원

⑤ 진폐예방 기본경비 : (2025) 730백만원 → (2026) 753백만원, 증 23백만원, 증 3.2%

- (요구) 진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기본경비 예산 요구
- (산출) 인건비 665백만원 + 기본경비 88백만원 = 753백만원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정기건강 진단 59	< 정기건강진단 59백만원 > 가. 일반소요 : 수급자 842명 × 지급단가 70천원 = 59백만원 ※ 수급자수 : 최근 3년('21~'23) 평균수급자 - 폐광 광업소 재직자 단가 : 최근 3년 평균단가에 단가인상을 반영(122.0%)	정기건강 진단 31	< 정기건강진단 31백만원 > 감 28백만원 가. 일반소요 : 수급자 514명 × 지급단가 61천원 = 31백만원 ※ 수급자수 : 최근 3년('22~'24) 평균수급자 - 폐광 광업소 재직자 단가 : 최근 3년 평균단가
진단수당 276	< 진단수당 276백만원 > 가. 일반소요 : 수급자 1,841명 × 지급단가 150천원 = 276백만원 ※ 수급자수 : 최근 3년('21~'23) 평균수급자 및 3년 정상 의증 판정비율 평균 등 반영 단가 : 법정단가 150천원	진단수당 187	< 진단수당 187백만원 > 감 89백만원 가. 일반소요 : 수급자 1,503명 × 지급단가 150천원 - 38백만원 = 187백만원 ※ 수급자수 : 최근 3년('22~'24) 평균수급자 단가 : 법정단가 150천원
이송료 52	< 이송료 52백만원 > 가. 일반소요 : 수급자 2,241명 × 지급단가 23천원 = 52백만원 ※ 수급자수 : 최근 3년('21~'23) 평균수급자 단가 : 최근 3년 평균단가에 대중교통 평균 인상을 반영 (125.3%)	이송료 46	< 이송료 46백만원 > 감 6백만원 가. 일반소요 : 수급자 2,326명 × 지급단가 20천원 = 46백만원 ※ 수급자수 : 최근 3년('21~'23) 평균수급자 단가 : 최근 3년 평균단가
진폐 근로자 자녀 장학금 2	<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 2백만원 > 가. 일반소요 : 수급자 1명 × 지급단가 2백만원 = 2백만원 ※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4조로 정한 진폐근로자보호사업으로 명목상 최소금액으로 사업유지	진폐 근로자 자녀 장학금 2	<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 2백만원 > 전년동 가. 일반소요 : 수급자 1명 × 지급단가 2백만원 = 2백만원 ※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4조로 정한 진폐근로자보호사업으로 명목상 최소금액으로 사업유지
진폐예방 기본경비 730	< 진폐예방 기본경비 730백만원 > 가. 인건비 : 609백만원(정규직 15명) + 33백만원(기타직 1명) 나. 기본경비 : 88백만원	진폐예방 기본경비 753	< 진폐예방 기본경비 753백만원 > 증 23백만원 가. 인건비 : 665백만원(정규직 15명) + 34백만원(기타직 1명) 나. 기본경비 : 8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원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 (하향지표) (단일지표)	목표	신규	0.54	0.50	0.45	0.42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목표 비율*을 준용**하여 목표치 설정 * '25. 0.31 → '26. 0.29 (△6.5%) ** '25 목표치 0.45에 6.6% 감소 반영하여 0.42 산출	○ 측정산식 : 지 원 사 업 장 의 사 망 사 고 예 방 실적(%) $=(A-B)/A \times 100$ A : 공 단 지 원 사 업 장* 사 고 사 망 만 인 율(‰) * 재해발생사업 장(중대재해조사 및 감독 대상 사업장 등) 지원 실적은 제외 B : 전체 사 고 사 망 만 인 율(‰)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실적	신규	0.51	0.48	-	-			
	달성도	신규	105.6	104.0	-	-			

* '25년 실적은 '26.3월말 집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제1차 건강진단 중 정기건강진단 : 918건, 54백만원 - 건강진단부대비(진단수당, 이송료) : 3,314건, 198백만원 - 진폐근로자복지(자녀장학금) : 지급액 없음 - 진폐예방기본경비 : 678백만원 집행
2023	- 제1차 건강진단 중 정기건강진단 : 920건, 56백만원 - 건강진단부대비(진단수당, 이송료) : 4,618건, 333백만원 - 진폐근로자복지(자녀장학금) : 지급액 없음 - 진폐예방기본경비 : 694백만원 집행
2024	- 제1차 건강진단 중 정기건강진단: 685건, 43백만원 - 건강진단부대비(진단수당, 이송료): 3,555건, 260백만원 - 진폐근로자복지(자녀장학금) : 지급액 없음 - 진폐예방기본경비: 711백만원 집행
2025	- 제1차 건강진단 중 정기건강진단: 466명, 30백만원 - 건강진단부대비(진단수당, 이송료): 3,713건, 261백만원 - 진폐근로자복지(자녀장학금) : 지급액 없음 - 진폐예방기본경비: 730백만원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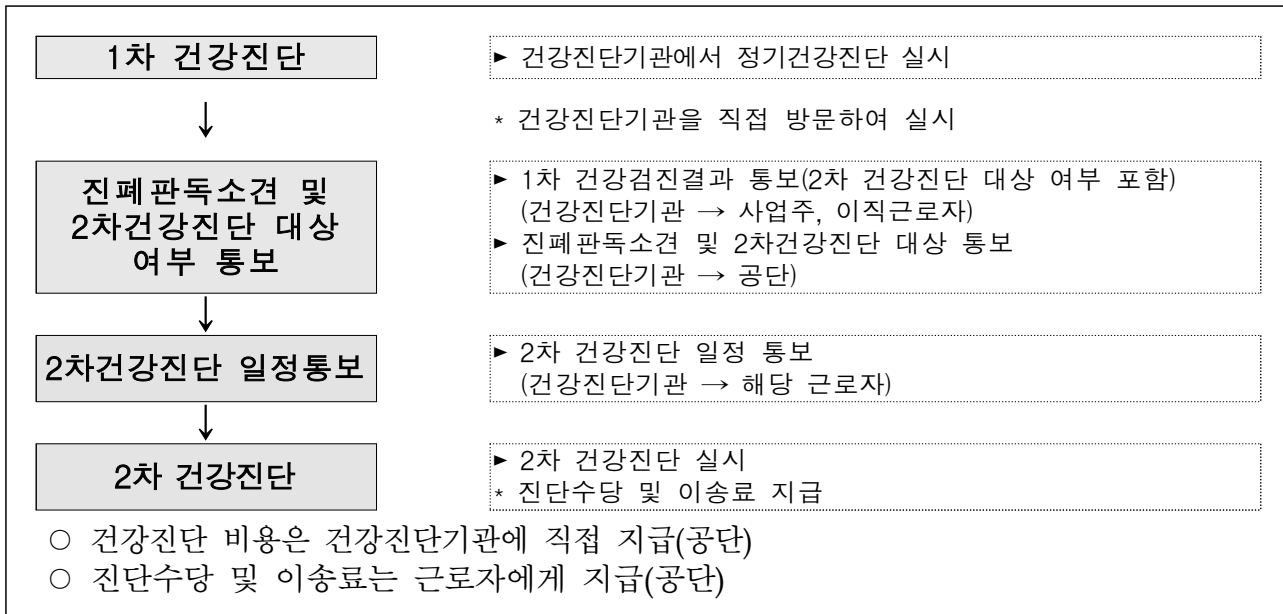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폐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진폐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사항 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사항 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60	-	1,260	940	931	73.9	99.0	-	9
2023	1,207	-	1,207	1,085	1,083	89.7	99.8	-	2
2024	1,228	-	1,228	1,014	1,014	100.0	100.0	-	-
2025	1,119	-	1,119	1,021	1,021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사항

2022	- 진폐근로자지원 예산 320백만원 진폐위로금으로 내역변경
2023	- 집행잔액 2백만원 불용 - 진폐근로자지원 예산 122백만원을 진폐건강진단으로 내역변경
2024	- 진폐근로자지원 예산 214백만원에서 진폐위로금으로 41백만원, 진폐근로자건강진단으로 173백만원 내역변경
2025	- 진폐근로자지원 예산 98백만원을 진폐위로금으로 내역변경하여 집행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내역변경 (2025.12.26.)	정기건강진단, 진단수당, 이송료,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	320	02	△98	장해위로금 예산부족에 따른 조정집행
합 계				△98	

Ⅲ.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 업 명
(1) 사회적기업육성(지특)(1037-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특회계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지역지원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7	312
명칭	고용창출 및 훈련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육성(지특)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75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사회적기업육성(지특)	소관부처	실·국·과(팀)
		통합고용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사회적기업과 지자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사회적기업육성 (지특)	47,665	-	-	32,100	32,100	32,10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7,665	47,665	44,385	-	-	-	-	-	-	-	32,100
· 일자리창출사업	47,665	47,665	44,385	-	-	-	-	-	-	-	32,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회적기업육성(지특))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①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3년

- 사업 추진경위

- ('03년) '03년 추경편성 시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신규로 포함하여 시행(시범사업 '03~'04년)
- ('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 ('11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자치단체 이관
- ('15년) 일자리창출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편성
- ('17년) 사회보험료 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편성
- ('19년) 지역자율(생활)·세종·제주계정 예산 지역지원계정으로 통합·이관
- ('20년) 사회보험료 지원 국고보조율 상향(70→75%)
- ('22년) 일자리창출사업·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군특 지원계정에서 군특 제주계정으로 이관
- ('23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
- 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9.1.)에 따라 인건비 지원사업은 '24년까지 운영 후 사업종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9,272	103,377	47,665	-	32,100

- 기타: '26년 일자리창출사업 예상 지원인원 5,088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일자리창출 사업	보조	지자체 보조	32,100백만원	7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일자리창출사업

: ('24) 47,665백만원 → ('25) 0원 → ('26예산) 32,100백만원

- (요구) 최근 5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증가율 및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

- (산출) 32,100백만원

· ①5,088명 x ②700,000원 x ③12개월 x ④75%

① 5,088명 = 1,272개소('24년 지원기업 중 인증·예비 1년 차<30인 미만> 402개소 + '24년~'25년 신규 인·지정<30인 미만, 추계> 812개소, + '24년 SVI 탁월·우수 기업<30인 이상> 58개소 x 4명(일자리창출사업 평균 지원 인원)

② 700,000원 = 월 평균 지원금액(50만원 ~ 90만원 중위값)

③ 75% =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32,100 백만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32,100,000천원 1. 일자리창출사업 32,100,000천원 산출: 5,088명 x 700,000원 x 12개월 x 75% = 32,10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	-			
	달성도	103.2	101.8	100.7	-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8.5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 인구 수 / 만15~29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수 (만1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가 입인원(철회·취소 제외)*100,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 보험자 전수조사/ 중소벤처 기업진흥 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인증 사회적기업 수(누계) : 3,534개소, 고용현황: 67,633명
2023	○ 인증 사회적기업 수(누계) : 3,737개소, 고용현황: 71,950명
2024	○ 인증 사회적기업 수(누계) : 3,762개소, 고용현황: 74,135명
2025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26년 예상 지원인원 5,088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무조정실, '23년)

- (지적사항) 건전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민간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산정착오 등으로 인한 과오지급된 건에 대해서 환수 필요
- (대응) 제도개선 과제는 정상 추진, 과오지급건은 환수처리

○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23년)

- (지적사항) 인건비 등 직접지원 중심의 인위적인 육성 정책에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
- (대응) 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원패러다임을 전환(육성→자생)하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수립('23.9.1.)하여 사회적기업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

○ (국정감사, '23년)

- (지적사항)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규모의 단계적 조정 필요
- (대응) '24년 사회적기업 예산으로 인건비(500억원, 6006명)를 편성하고 he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예산(198억원, 7254명)을 증액함. 또한 지원종료(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조정 현황을 파악하여 맞춤형 취업기업지원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등 후속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지원 등을 지속 제공할 예정

○ (국정감사, '24년)

- (지적사항) 정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삭감 관련 정책 재검토 필요
- (대응)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이며, 간접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경된 만큼 사회적기업이 고용 안정망 기능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판로·성장지원 정책 등을 내실 있게 마련·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현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검토할 예정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보조사업 연장평가(2022) 결과: 사업방식변경

- (지적사항)

- 사회적기업 성과지표는 개선 필요하며, 사회보험료 지원 기간(4년)을 초과한 생존율로 측정할 필요
- 일자리창출사업의 부정수급 관리 노력 확대 필요,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전/사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연계 필요

- (대응)

- 재정지원 종료 후 지속가능성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조정, 인증기업의 일자리창출은 3년, 사회보험료는 4년이므로 기존 3년 생존율에서 5년 생존율로 변경
- 부정수급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연계 추진, 타 법령 부정수급 이력 확인 및 부정수급 사업장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배제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21.11), 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과 연계('22.7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9,272	-	99,272	99,272	95,759 (80,801)	96.5	96.5	-	3,513
2023	103,377	-	103,377	103,377	102,859 (83,689)	99.5	99.5	-	518
2024	47,665	-	47,665	47,665	44,385 (33,612)	93.1	93.1	-	3,280
2025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사유: 예산교부 수요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2023	- 내역조정 사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실 수요 증가 및 인건비 불용 최소화를 위해 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내역조정
2024	- 불용 사유: 예산교부 수요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2)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자율)(1056-3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자율계정 (시·도 자율 편성사업)	080	08D
명칭	특별회계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56	315
명칭	고용창출	지역고용촉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자율)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056-317, 지역지원계정)에서 예산의 일부이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90~7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자율)	소관부처	실·국·과(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자율)	-	-	-	60,025	60,025	60,025	순증

* (참고) '26년부터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에서 예산의 일부 이관하여 편성(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시·도 자율편성사업)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60,025
· 지역산업맞춤형 일 자리지원(자율)	-	-	-	-	-	-	-	-	-	-	60,0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해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면 경상사업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② 추진경위

-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된 고용·능력개발정책으로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분권형 고용·인적자원개발 정책 필요성 제기되어 '06년 신규사업으로 사업 수행
-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체제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문('06.12.13) 발표
 - * “지역차원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체제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인적·물적 투자를 확대한다”
- 노사정위원회『지역고용거버넌스 선진화를 위한 권고문』의결('08.5.8)
 - * 노사정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고용사정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간다('08.5.8)
- '20년 예산 회계 변경 편성
(고용보험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6년 사업 명칭 변경 및 일부 예산 계정이관
(사업명: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일부 예산 계정 이관: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 → 지역자율계정<시·도 자율편성>,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60,02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지역의 미취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시·도 자율)	보조	지자체 보조	60,025	90~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시행지침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시·도 자율)

- (편성) 부산광역시 등 14개 시도 지역 주력 및 신성장 산업 일자리창출 및 질 개선 등 사업 운영비
- (산출) 14개 시도 지역일자리 사업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지자체 경상보조) 60,025백만원

[지역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자치단체	예산	사업내용
1	부산광역시	4,000	지역의 주력, 신성장 산업 육성 등 지역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일자리 질 개선 등 사업추진
2	대구광역시	3,200	
3	인천광역시	4,961	
4	광주광역시	3,150	
5	대전광역시	1,440	
6	울산광역시	2,400	
7	경기도	2,730	
8	강원특별자치도	1,000	
9	충청북도	4,013	
10	충청남도	3,495	
11	전북특별자치도	4,296	
12	전라남도	15,000	
13	경상북도	7,440	
14	경상남도	2,90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69.8	-			
	달성도	103.2	101.8	100.7	100.4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7.2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 / 만15~29세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참여자 고용유지율 (장려금 유형)	목표	-	-	-	-	87.4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취업소요 180일 이내 인원 중 고용유지율 수 100일 이상 대상자 수)/평가대상건수 중 취업소요 180일 이내 인원수*100	참여자정보 수집 고용보험DB 연계
	실적	-	-	-	-	-			
	달성도	-	-	-	-	-			
참여자 취업률 (고용서비스 유형)	목표	-	-	-	-	46.9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취업소요 180일 이내 고용보험 취득대상자 수/평가기간 내 수집한 평가대상자 전체 수)*100	참여자정보 수집 고용보험DB 연계
	실적	-	-	-	-	-			
	달성도	-	-	-	-	-			
참여자 취업률 (교육훈련 유형)	목표	-	-	-	-	37.5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취업소요 180일 이내 고용보험 취득대상자 수/평가기간 내 수집한 평가대상자 전체 수)*100	참여자정보 수집 고용보험DB 연계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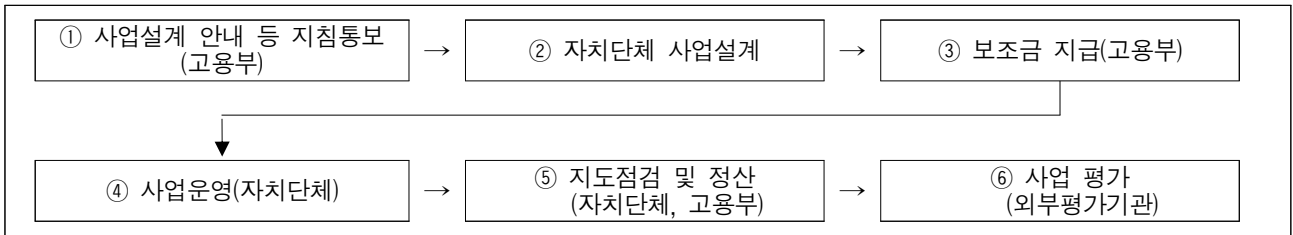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운영하여 지역·산업 특화 고용창출 기반 구축 및 주요산업 빈일자리 해소
-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 유치 및 지역 내 육성·공급 체계 구축, 지역 주력산업 내의 임금, 복지, 근로여건, 생산성 등 격차 완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2023	-	-	-	-	-	-	-	-	-
2024	-	-	-	-	-	-	-	-	-
2025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해당없음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3)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제주)(1056-3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제주특별	080	08D
명칭	특별회계			자치도계정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56	315
명칭	고용창출	지역고용촉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제주)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056-317, 지역지원계정)에서 예산의 일부이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8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제주)	실·국·과(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제주)	-	-	-	6,000	6,000	6,000	순증

* (참고) '26년부터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에서 예산의 일부 이관하여 편성(지특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6,000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제주)	-	-	-	-	-	-	-	-	-	-	6,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해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면 경상사업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② 추진경위

-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된 고용·능력개발정책으로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분권형 고용·인적자원개발 정책 필요성 제기되어 '06년 신규사업으로 사업 수행
-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체제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문('06.12.13) 발표
 - * “지역차원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체제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인적·물적 투자를 확대한다”
- 노사정위원회『지역고용거버넌스 선진화를 위한 권고문』의결('08.5.8)
 - * 노사정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고용사정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간다('08.5.8)
- '20년 예산 회계 변경 편성
(고용보험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6년 사업 명칭 변경 및 일부 예산 계정이관
(사업명: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일부 예산 계정 이관: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 → 지역자율계정<시·도 자율편성>,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6,00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지역의 미취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제주)	보조	지자체 보조	6,000	8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시행지침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제주특별자치도계정)

- (편성) 제주특별자치도 6,000백만원 편성
- (산출) 지역일자리 사업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지자체 경상보조) 6,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추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69.8	-			
	달성도	103.2	101.8	100.7	100.4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7.2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 / 만15~29세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참여자 고용유지율 (장려금 유형)	목표	-	-	-	-	87.4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취업소요 180일 이내 인원 중 고용유지율 수/평가대상자 수)/평가대상자 수 중 취업소요 180일 이내 인원수*100	참여자정보 수집 고용보험DB 연계
	실적	-	-	-	-	-			
	달성도	-	-	-	-	-			
참여자 취업률 (고용서비스 유형)	목표	-	-	-	-	46.9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취업소요 180일 이내 고용보험 취득대상자 수/평가기간 내 수집한 평가대상자 전체 수)*100	참여자정보 수집 고용보험DB 연계
	실적	-	-	-	-	-			
	달성도	-	-	-	-	-			
참여자 취업률 (교육훈련 유형)	목표	-	-	-	-	37.5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취업소요 180일 이내 고용보험 취득대상자 수/평가기간 내 수집한 평가대상자 전체 수)*100	참여자정보 수집 고용보험DB 연계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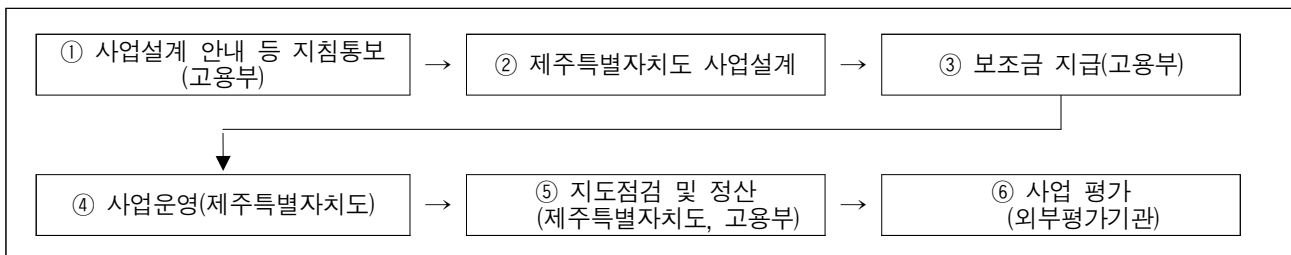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운영하여 지역·산업 특화 고용창출 기반 구축 및 주요산업 빈일자리 해소
-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 유치 및 지역 내 육성·공급 체계 구축, 지역 주력산업 내의 임금, 복지, 근로여건, 생산성 등 격차 완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2023	-	-	-	-	-	-	-	-	-
2024	-	-	-	-	-	-	-	-	-
2025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4)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세종)(1056-31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세종특별	080	08D
명칭	특별회계			자치시계정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56	315
명칭	고용창출	지역고용촉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세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056-317, 지역지원계정)에서 예산의 일부이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8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세종)	실·국·과(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세종)	-	-	-	1,500	1,500	1,500	순증

* (참고) '26년부터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에서 예산의 일부 이관하여 편성(지특회계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1,500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세종)	-	-	-	-	-	-	-	-	-	-	1,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해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면 경상사업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② 추진경위

-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된 고용·능력개발정책으로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분권형 고용·인적자원개발 정책 필요성 제기되어 '06년 신규사업으로 사업 수행
-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체제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문('06.12.13) 발표
 - * “지역차원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체제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인적·물적 투자를 확대한다”
- 노사정위원회『지역고용거버넌스 선진화를 위한 권고문』의결('08.5.8)
 - * 노사정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고용사정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간다('08.5.8)
- '20년 예산 회계 변경 편성
(고용보험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6년 사업 명칭 변경 및 일부 예산 계정이관
(사업명: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일부 예산 계정 이관: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 → 지역자율계정<시·도 자율편성>,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50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지역의 미취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세종)	보조	지자체 보조	1,500	8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시행지침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세종특별자치시계정)

- (편성) 세종특별자치시 1,500백만원 편성
- (산출) 지역일자리 사업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지자체 경상보조) 1,5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69.8	-			
	달성도	103.2	101.8	100.7	100.4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7.2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 / 만15~29세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참여자 고용유지율 (장려금 유형)	목표	-	-	-	-	87.4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취업소요 180일 이내 인원 중 고용유지일 수 100일 이상 대상자 수)/평가대상건수 중 취업소요 180일 이내 인원수*100	참여자정보 수집 고용보험DB 연계
	실적	-	-	-	-	-			
	달성도	-	-	-	-	-			
참여자 취업률 (고용서비스 유형)	목표	-	-	-	-	46.9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취업소요 180일 이내 고용보험 취득대상자 수/평가기간 내 수집한 평가대상자 전체 수)*100	참여자정보 수집 고용보험DB 연계
	실적	-	-	-	-	-			
	달성도	-	-	-	-	-			
참여자 취업률 (교육훈련 유형)	목표	-	-	-	-	37.5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취업소요 180일 이내 고용보험 취득대상자 수/평가기간 내 수집한 평가대상자 전체 수)*100	참여자정보 수집 고용보험DB 연계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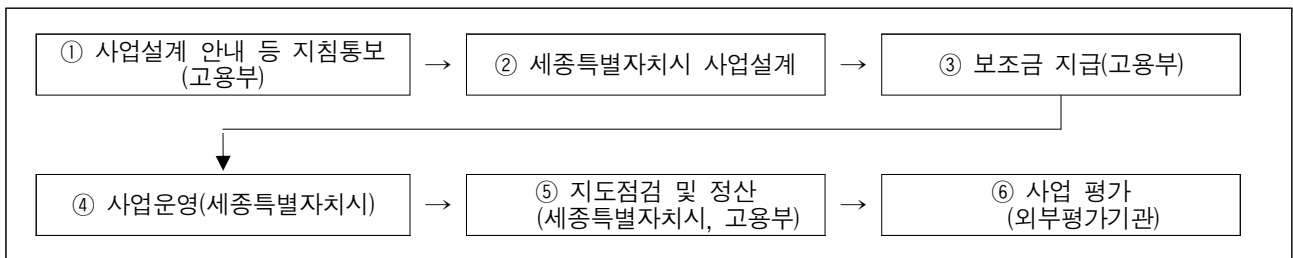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운영하여 지역·산업 특화 고용창출 기반 구축 및 주요산업 빈일자리 해소
-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 유치 및 지역 내 육성·공급 체계 구축, 지역 주력산업 내의 임금, 복지, 근로여건, 생산성 등 격차 완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2023	-	-	-	-	-	-	-	-	-
2024	-	-	-	-	-	-	-	-	-
2025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5)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1056-3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지원 계정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56	317
명칭	고용창출	지역고용촉진지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90~7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실·국·과(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노동정책정책관 노동정책총괄과
	고용노동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105,796	107,864	137,864	125,108	150,108	42,244	39.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6,292	106,292	105,796	-	496	107,864	137,864	136,394	-	1,470	150,108
· 자치단체지원	94,767	94,767	94,321	-	446	98,034	128,034	126,610	-	1,424	105,006
· 지역상생형 일터 조성 프로젝트	-	-	-	-	-	-	-	-	-	-	34,872
· 지역고용인프라	90	90	90	-	-	90	90	90	-	-	90
· 운영비	395	395	346	-	49	395	395	349	-	46	295
· 산업인자위지원	11,040	11,040	11,040	-	-	9,345	9,345	9,345	-	-	9,845

※ (참고) 24년 보조사업 지도·점검 등 국내 출장 여비 수요 증가에 따른 전용(210-01→220-01, 50백만원) 및 세목 조정(220-02→220-01, 9백만원)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자치단체지원)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자치단체가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등 고용 현안을 해결
-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내 원하청 상생협력 업종·기업 등을 발굴하여 임금·복지, 근로환경 및 일자리 질 개선 등 노동시장 격차 완화 지원
- (지역고용인프라확충) 지역고용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일자리사업 정보 제공, 우수사례 홍보를 위한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 (운영비) 인쇄물 제작, 전문가 간담회, 업무관련 회의, 현장점검 등 운영경비 집행
- (산업인자위지원)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현장 직무중심 인력양성체계 구축 및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협회·기업, 근로자 단체 등 참여)를 지원

* (주요기능) 산업별 인력현황 조사·분석,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훈련·자격 기준 마련,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개발 등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② 추진경위

-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된 고용·능력개발정책으로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분권형 고용·인적자원개발 정책 필요성 제기되어 '06년 신규사업으로 사업 수행
-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체제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문('06.12.13) 발표
* “지역차원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체제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인적·물적 투자를 확대한다”
- 노사정위원회 『지역고용거버넌스 선진화를 위한 권고문』 의결('08.5.8)
* 노사정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고용사정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고용·인적자원 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간다('08.5.8)
- '20년 예산 회계 변경 편성(고용보험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6년 사업 명칭 변경 및 일부 예산 계정이관
(사업명: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일부 예산 계정 이관: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 → 지역자율계정<시·도 자율편성>,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2,667	147,504	106,292	137,864	150,10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광역)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 및 자치단체(광역)
- 사업 수혜자 : 지역의 미취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자치단체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103,538	70~9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고용노동부 시행지침
	출연	한국고용 정보원	1,468	100%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보조	지자체 보조	32,872	70~9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고용노동부 시행지침
		노사발전 재단	2,000	100%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제2조
산업인자위 지원	출연	한국산업 인력공단	9,845	10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자치단체 지원사업: ('25) 98,034백만원 → ('26) 105,006백만원, 6,972백만원 증액

■ 사업개편(통·폐합 등)지역일자리 이음프로젝트: ('26) 96,468백만원

- (참고) 단일 지역의 주요 산업에 구인난 개선, 신성장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사업(舊 지역혁신 지원)을 지역거점 육성 및 초광역권 균형발전 등을 위한 지역 간 연계 일자리 사업으로 개편 운영
- (요구) ①초광역권 일자리 사업의 운영, ②일자리를 중심으로 광역 내 기초자치단체 간 연계사업 운영 ③예기치 못한 고용변동(통상환경 변화, 재난 등) 대응 등 일자리 사업운영비
- (산출) ①초광역권 일자리 사업(광역 이음): 30,000백만원(3개 모델 x 10,000백만원)
 ②기초단위 연계 일자리 사업(기초 이음): 20,000백만원(10개 모델 x 2,000백만원)
 ③고용변동 대응(버팀 이음): 45,000백만원(9개소 x 5,000백만원)
 ④지역일자리 이음프로젝트 사업모델 발굴,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1,468백만원

■ 일자리공시제 우수단체 지원: ('25) 888백만원 → ('26) 888백만원

- (요구) 일자리대상 수상자치단체 인센티브 지원의 전년 수준 물량 반영
- (산출) 12개소 x 74백만원

■ 지역인자위 지원: ('25) 7,650백만원 → ('26) 7,650백만원

- (요구) 지역별 일자리·훈련 수급조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 지역별 인자위 운영비
- (산출) 17개소 x 450백만원

② 사업개편(통·폐합 등)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26) 34,872백만원

- (참고) 舊 지역혁신 지원 내 노동시장 격차 해소 지원 관련 사업과 지역구조 이중구조 개선 지원 사업을 일자리 질 개선 및 협력사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복지 격차 완화 중심 사업으로 통합·개편
- (산출) ①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 20,000백만원(10개소x평균 2,000백만원)
 ②조선업재직자희망공제: 12,872백만원(잔여물량)
 ③운영위탁 지원: 2,000백만원

③ 지역고용인프라 확충사업: ('25) 90백만원 → ('26) 90백만원, 전년 동

- (요구) 지역고용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운영·유지·보수비 반영
- (산출) 위탁사업비 90백만원

③ 운영경비: ('25) 395백만원 → ('26) 295백만원, 100백만원 감액

- (요구) 사업운영예산 효율화를 통한 운영경비 일부 절감
- (산출)

- (운영비) 158백만원
- (여비) 56백만원
- (국제부담금*) 50백만원: OECD LEED 의무 부담금

* OECD LEED 참여목적

- 지역수준에서 시행되는 경제·노동시장·사회정책의 질 제고
- 지역경제·고용개발 혁신 정보공유 및 확산의 증진
- 회원국의 지역개발 전략 설계·집행·평가 지원 및 비회원국 간의 정보교류, 지역 기구 간의 교류지원

- (업무추진비) 31백만원

④ 산업인자위 지원: ('25) 9,345백만원 → ('26) 9,845백만원, 500백만원 증액

- (요구) ①산업인자위 지원, ②산업맞춤형 AI 인재전략 수립 지원, ③직업계고 학과 및 교과 개편지원 등
- (산출) ①산업인자위 지원: 9,345백만원(21개소 x 445백만원)
 ②산업맞춤형 AI 인재전략 수립 지원: 300백만원(3개 컨소시엄 x 100백만원)
 ③교과편성 지원: 200백만원(5개 학교 x 4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5~64세 고용률(%)	목표	66.4	68.0	69.0	69.5	70.0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 / 만15~64세 인구) *100	통계청
	실적	68.5	69.2	69.5	69.8	-			
	달성도	103.2	101.8	100.7	100.4	-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목표	-	-	-	-	47.2	최근 5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만15~29세 경제활동인구 수 / 만15~29세인구) *100	통계청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상용직 근로자비율(%)	목표	69.8	71.4	-	-	-	-	상용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100	통계청
	실적	73.0	74.1	-	-	-			
	달성도	104.5	103.8	-	-	-			
청년고용률(%)	목표	42.5	43.8	-	-	-	-	(청년취업자/ 청년층 인구)*100	통계청
	실적	46.6	46.5	-	-	-			
	달성도	109.6	106.2	-	-	-			
청년공제가입자의 2년 이상 고용(공제) 유지율(%)	목표	63.1	68.0	-	-	-	-	(t-2)년 청년공제 가입자 중 2년 이상 유지자 수 (만기자 포함) /(t-2)년 청년공제 t:당해연도	청년층고용보험피보 험자 전수조사/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실적	69.7	64.6	-	-	-			
	달성도	110.4	95.0	-	-	-			
참여자 고용유지율 (장려금 유형)	목표	-	-	-	-	87.4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취업소요 180일 이내 인원 중 고용유지일 수 100일 이상 대상자 수)/평가대상건수 중 취업소요 180일 이내 인원수*100	참여자정보 수집 고용보험DB 연계
	실적	-	-	-	-	-			
	달성도	-	-	-	-	-			
참여자 취업률 (고용서비스 유형)	목표	-	-	-	-	46.9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취업소요 180일 이내 고용보험 취득대상자 수/평가기간 내 수집한 평가대상자 전체 수)*100	참여자정보 수집 고용보험DB 연계
	실적	-	-	-	-	-			
	달성도	-	-	-	-	-			
참여자 취업률 (교육훈련 유형)	목표	-	-	-	-	37.5	최근 3년간 평균실적 및 변동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취업소요 180일 이내 고용보험 취득대상자 수/평가기간 내 수집한 평가대상자 전체 수)*100	참여자정보 수집 고용보험DB 연계
	실적	-	-	-	-	-			
	달성도	-	-	-	-	-			
고용창출 효과성(%)	목표	59	44	42.2	42.2	-		(취업자수/수료자수) *100 [지역산업맞춤형일 자리창출사업(교육 훈련 사업 부문) 수료자 중 취업자수]	자치단체 최종 성과 보고서
	실적	43.7	40.6	44.5	44.5	-			
	달성도	74.1	92.3	105.5	105.5	-			
고용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점)	목표	90	90	90	91	-		고용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측정 지표를 개발하여 만족도 조사 결과 값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외부 전문기관 참여자 만족도 조사보고서
	실적	90	92	92	94	-			
	달성도	100.0	102.2	102.2	103.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132개 사업 선정, 121,825백만원 지원 / 28,367명 취업
2023	132개 사업 선정, 133,307백만원 지원 / 35,582명 취업
2024	194개 사업 선정, 94,321만원 지원 / 24,581명 취업
2025	252개 사업 선정, 126,610백만원 지원 / 22,048명 취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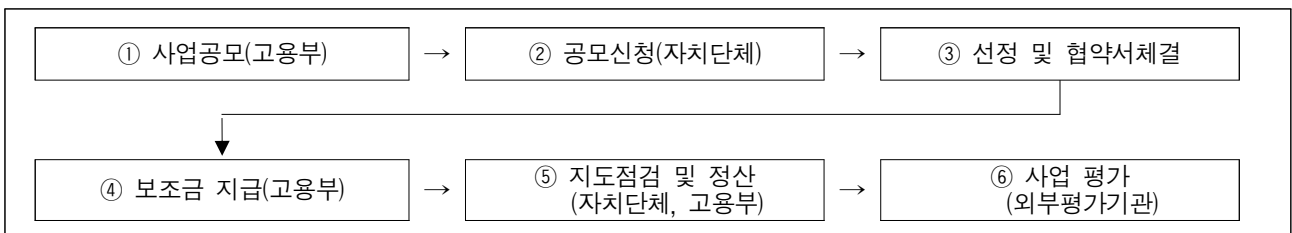
- 자치단체가 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제안하고, 고용부가 공모로 선정·지원하는 대표적인 상향식 고용정책으로 우수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하여 성공모델 전파
-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 지역·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지역·산업특화 고용창출 기반 구축 및 주요산업 빈일자리 해소
- 일자리-생활권 연결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거점 육성 및 초광역권 균형발전 지원 등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응
- 산업전환에 대응하는 신성장산업 발굴·육성, 지역 일자리 질 개선 및 참여 주체 다양화를 통해 임금·복지·근로환경 등 노동시장 격차 완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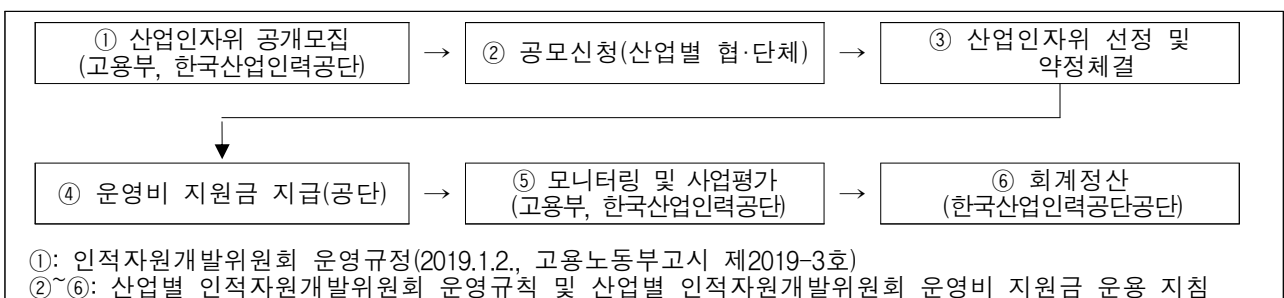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자치단체지원



- 산업인자위지원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과업량에 부합하도록 용약 계약 체결(환노위·예결위, 23결산)
 - ('24.1.10. 조치완료) 예산반영, 위탁 계약 체결
- 2) 대외공개 평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24.5): 양호
 - 지역의 요구에 따라 매년 새롭게 사업을 신설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현장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고려됨
 - 지역균형발전 사업평가('24.5): 우수
 - 보조사업연장평가('24.5): 사업방식 변경
 - 지자체 부적정 집행 예방 필요, 보조사업 성과지표(훈련의 고용창출효과성)는 사업특성 반영 어려워 변경 필요
 - (조치완료) ①국고보조금 집행 교육이수 의무 부여, ②지자체 수행기관 점검 방식 변경('23년 자율 → '24년 의무), ③보조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적용('26년 성과지표 반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25.5): 양호
 -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기획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일자리사업 발굴 등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재정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 장기적 차원에서 본 사업은 목적대로 운영될 경우 지역 일자리의 질과 고용가능성 등을 높여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기여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됨
 - 지역균형발전 사업평가('25.5): 우수
-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32,704	△37	132,667	132,667	132,146	99.6	99.6	-	521
2023	147,504	-	147,504	147,504	146,297	99.2	99.2	-	1,207
2024	106,292	-	106,292	106,292	105,796	99.5	99.5	-	496
2025	107,864	30,000	137,864	137,864	136,394	98.9	98.9	-	1,47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예비비 배정, 이월: 해당 없음 - 추경편성 사유: 운영비 일부 감액 조정(△37백만원)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3	- 이·전용, 예비비 배정, 추경 편성, 이월: 해당없음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4	- 이·전용 : 국내여비 부족으로 전용(50백만원) 및 세목조정(9백만원) - 예비비 배정, 추경 편성, 이월: 해당없음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5	- 이·전용 : 임차료 부족으로 세목조정(2백만원), 국내여비 부족으로 전용(30백만원) 및 세목조정(19백만원) - 추경 편성: 대내외 여건 변화(재난, 관세정책 변화 등)에 따른 예기치 못한 고용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 운영(30,000백만원) - 불용사유: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4.2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056-317)	210-01	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056-317)	210-07	선진사례 시찰 국외출장 중 임차료 지급을 위해 임차료로 조정
전용 (2025.6.1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056-317)	210-01	3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056-317)	220-01	보조사업 지도·점검 등 대면업무(출장) 증가에 따라 국내여비로 전용
조정 (2025.10.15.)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056-317)	220-02	19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056-317)	220-01	보조사업 지도·점검 등 대면업무(출장) 증가에 따라 국내여비로 전용

사 업 명						
(6) 직업안정기관운영(지특)(704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39	24	고용서비스정책관	3	080	08D
명칭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계정	사회복지	부문명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41	301
명칭	노동행정지원	제주이관업무지원	직업안정기관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직업안정 기관운영 (지특)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제주특별자치도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직업안정기관운영 (지특)	981	1,010	1,010	1,040	1,016	6	0.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29.)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81	981	981	-	-	1,010	1,010	1,010	-	-	1,0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06.7.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제주고용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운영비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 (직업안정에 관한 특례)
 - ① 「고용정책기본법」 제 11조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으로 직업소개·직업지도 등의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안정기관을 설치 운영한다.
 - ② 도지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③ ~ ⑤항 생략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07년
- '06.7.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고용센터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 '07년부터 이관된 제주고용센터의 기본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보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81	981	981	1,010	1,016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고용복지+센터)
- 사업 수혜자 : 제주특별자치도민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직업안정 기관운영	보조	지자체보조	1,016	국고 10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제주고용센터 운영 : (2025) 981 → (2026) 1,016백만(+6백만원)

- ① 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 750백만원 (62.5백만원*12월)
- ② 고용센터(서귀포지소) 청사 : 임대료 및 관리비 : 60백만원 (5백만원*12월)
- ③ 청사 환경정비 및 시설·보수 재료 등 구입: 24백만원(2백만원*12월)
- ④ 청사 관리소모품 구입: 70백만원
- 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강사 수당(구직자 단기취업특강)
: 12백만원 (251천원*50회)
- 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 10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10,000 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010,000천원 가. 제주고용복지+센터 운영 · 청사 임차, 관리비 등 기본 운영비: 1개소×1,010,000천원	1,016,000 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016,000천원 가. 제주고용복지+센터 운영 (1,016,000천원) · 청사 임차, 관리비 등 기본 운영비: 1개소×1,016,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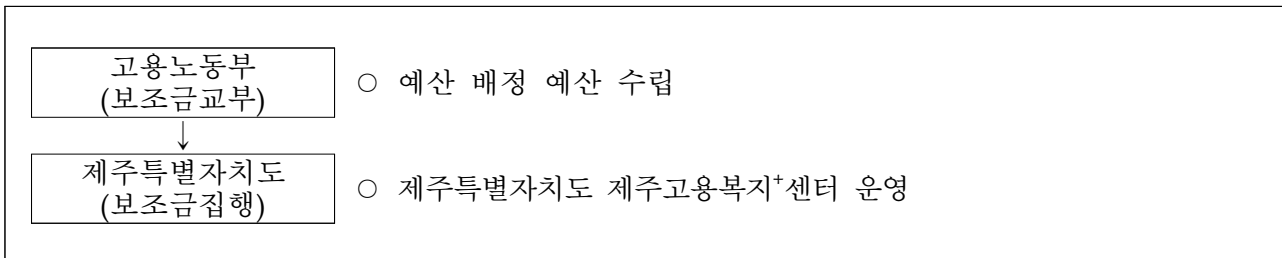
2022	제주고용복지+센터 1개소 운영
2023	제주고용복지+센터 1개소 운영
2024	제주고용복지+센터 1개소 운영
2025	제주고용복지+센터 1개소 운영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주고용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제주도민에게 제공되는 고용서비스의 질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81	-	981	981	981	100	100	-	-
2023	981	-	981	981	981	100	100	-	-
2024	981	-	981	981	981	100	100	-	-
2025	1,010	-	1,010	1,010	807	79.9	79.9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7) 내일배움카드운영지원(지특)(7041-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제주특별 자치도	080	08D
명칭	특별회계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41	310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제주이관업무지원	내일배움카드운영지원(지특)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내일배움카드운영지원 (지특)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내일배움카드 운영지원(지특)	104	106	106	109	109	3	2.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4	104	104	-	-	106	106	106	-	-	109
· 내일배움카드운영지원(지특)	104	104	104	-	-	106	106	106	-	-	10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제주지역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운영비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8조 제1항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

2.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직업·진로상담 및 경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8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특례)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55조,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수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59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호·제3호·제5호(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및 제6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② 추진경위

- '98년부터 실업자 재취업 촉진을 위해 취업 및 창업훈련 실시
- '98.8월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취업유망분야훈련 실시
- '06.7.1부터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신규실업자직업훈련 제주특별자치도로 분리
- '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제도개선, 사업비는 내일배움카드(고보)로 일원화 하고, 운영비만 편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해당 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9	102	104	106	109

- 기타 : '25년 사업 규모 106백만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내일배움카드 운영지원 (지특)	보조	지자체 보조	106	100.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1]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내일배움카드운영지원(지특)

- : ('25 106백만원 → ('26) 109백만원, 3백만원(2.8%) 증액
- (요구) 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단가 상향
- (산출) 94백만원, 3명×31,333천원(2025년) → 97백만원, 3명×32,333천원(2026년)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6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06백만원 가. 인건비 (94,000천원) · 인건비 : 3명×31,333천원=94,000천원 나. 운영비 (12,000천원) · 운영경비 : 12,000천원×1년=12,000천원	109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09백만원 가. 인건비 (97,000천원) · 인건비 : 3명×32,333천원=97,000천원 나. 운영비 (12,000천원) · 운영경비 : 12,000천원×1년=12,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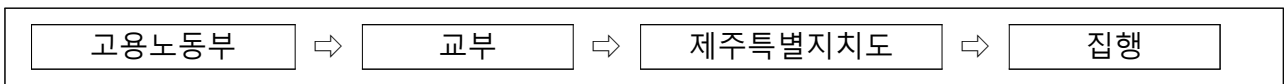
2022	99백만원 집행(95백만원 실집행)
2023	102백만원 집행(101백만원 실집행)
2024	104백만원 집행(103.7백만원 실집행)
2025.12월	106백만원 집행(106백만원 실집행)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주지역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9	-	99	99	99	100.0	100.0	-	-
2023	102	-	102	102	102	100.0	100.0	-	-
2024	104	-	104	104	104	100.0	100.0	-	-
2025	106	-	106	106	106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3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4	- 불용사유: 집행잔액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 없음

사 업 명
(8)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7041-31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계정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41	316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제주이관업무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민취업 지원제도 (지특)	소관부처
	실·국·과(팀)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국민취업지원제도 (지특)	8,955	8,910	8,910	9,957	9,957	1,047	11.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955	8,955	8,955	-	-	8,910	8,910	8,910	-	-	9,957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7,794	7,794	7,794	-	-	8,172	8,172	8,172	-	-	9,396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776	776	776	-	-	738	738	738	-	-	561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385	385	385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0.6.9.제정)
- ② 추진경위
 -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17.5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의 조기 도입 및 제도 기본 골격 등에 대한 노사정 합의 도출(‘18.8월, ‘19.3월)
 - 사회적 합의 등을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마련, 제11차 일자리위원회 의결·발표(‘19.6.4)
 -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안 마련, 국회 제출(‘19.9.16) → 국회 본회의 통과(‘20.5.20)
 - 법률 부칙 제1조에 따라 ‘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1.1.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023	13,023	8,955	8,910	9,95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I 유형) 15~69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취업경험 미충족자는 선발형으로 지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인 저소득 구직자(15~34세 청년 중위소득 120%, 재산 5억 이하)
(II 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 중위소득 120% 초과하는
15~34세 청년 및 결혼이민자 등 취업취약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민취업 지원제도 I 유형	보조	지자체 보조	9,396	10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국민취업 지원제도 II 유형	보조	지자체 보조	561	10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5) 8,910백만원 → ('26) 9,957백만원, +1,047백만원

* (목표인원) ('25) 3,000명 → ('26) 3,000명(전년동)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 ('25) 8,172 → 9,396백만원, +1,224백만원

* (목표인원) ('25) 2,500 → ('26) 2,500명(전년동)

- 자치단체경상보조: 9,396백만원

* 구직촉진수당 인상(월): ('25) 50만원 → ('26) 60만원

* I, II유형 운영비를 I유형으로 통합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 ('25) 738 → 561백만원, △177백만원

* (목표인원) ('25) 500 → ('26) 500명(전년동)

- 자치단체경상보조: 561백만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폐지 및 청년 빈일자리 추가수당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해당없음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은 '22년부터 성과관리 대상 아님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민취업지원제도 3,011명 참여(Ⅰ 유형 2,557명, Ⅱ 유형 454명) ·일경험프로그램 90명 연계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2,628명 참여(Ⅰ 유형 2,183명, Ⅱ 유형 445명) ·일경험프로그램 90명 연계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2,540명 참여(Ⅰ 유형 2,112명, Ⅱ 유형 428명) ·일경험프로그램 78명 연계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2,735명 참여(Ⅰ 유형 2,097명, Ⅱ 유형 638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로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위해 취업지원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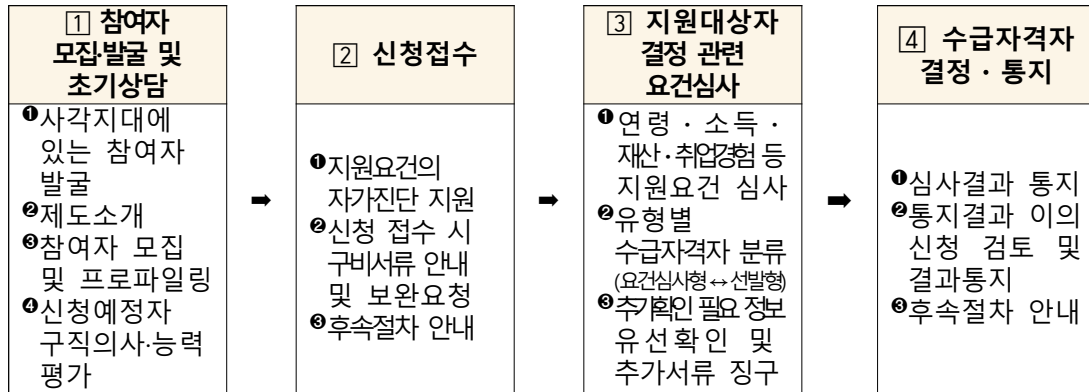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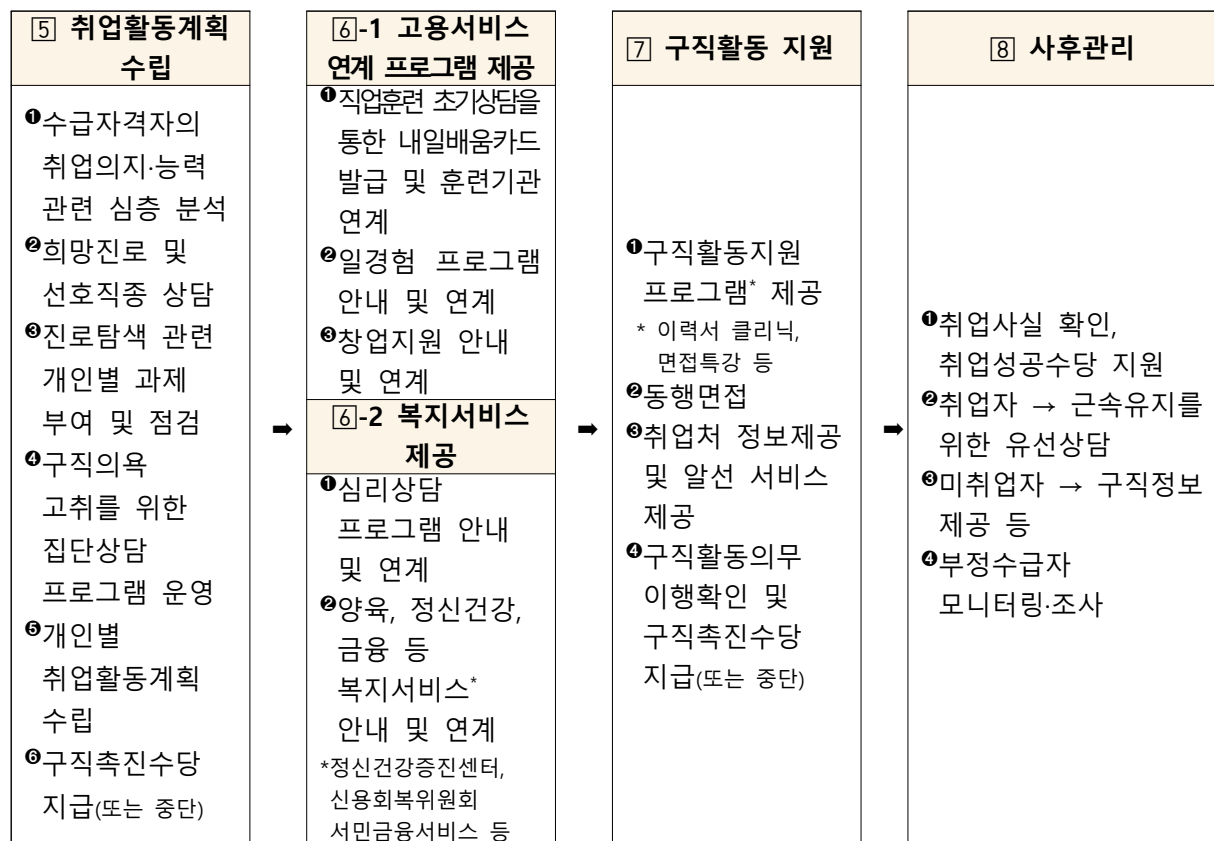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①지원대상자 선정 → ②취업지원서비스

① (지원대상자 선정) 참여자 모집·발굴 및 신청자 초기상담 → 신청접수 → 수급자격자 결정 관련 요건심사 → 수급자격자 선발·통지



②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복지 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지원 → 사후관리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2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압류방지 전용계좌 관련 행정미비 개선 필요

<'23년>

- 제주지역 내 구직자 참여 저조 원인 분석 및 참여 확대 방안 모색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3,023	-	13,023	13,023	13,023	100.0	100.0	-	-
2023	13,023	-	13,023	13,023	13,023	100.0	100.0	-	-
2024	8,955	-	8,955	8,955	8,955	100.0	100.0	-	-
2025	8,910	-	8,910	8,910	8,910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불용) - 목표물량 대비 집행 부진으로 참여자 수당 및 민간위탁비 불용
2023	○(불용) - 목표물량 대비 집행 부진으로 참여자 수당 및 민간위탁비 불용
2024	○(불용) - 목표물량 대비 집행 부진으로 참여자 수당 및 민간위탁비 불용
2025	○(불용) - 목표물량 대비 집행 부진으로 참여자 수당 및 민간위탁비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9) 제주노동위원회지원(7041-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균특회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080	08F
명칭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41	401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제주이관업무지원	제주노동위원회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제주노동위원회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중앙노동위원회
	사업시행주체	기획총괄과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제주노동위원회 지원	1,373	1,414	1,414	1,451	1,451	37	2.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73	1,373	1,350	0	0	1,414	1,414	1,414	0	0	1,451
· 전문성강화지원	251	251	231	0	0	260	260	260	0	0	263
· 청사관리지원	83	83	83	0	0	86	86	86	0	0	86
· 인력지원	940	940	938	0	0	968	968	968	0	0	1,002
· 기본경비지원	99	99	98	0	0	100	100	100	0	0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제주노동위원회 운영비, 인건비, 부문별위원회 운영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5조

② 추진경위

- 2007년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관장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회의 및 기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35	1,350	1,373	1,414	1,451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국고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제주지역 노동분쟁 관련 근로자 및 제주지노위 소속 위원, 조사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문성강화 지원	보조	제주지방 노동위원회	263	100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9조 제3항
인력지원	보조		1,002	100	
기본경비지원	보조		100	100	
청사관리지원	보조		86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제주노동위원회지원: 1,414백만원('25년) → 1,451백만원('26년)

- 전문성강화 지원: 260백만원('25년) → 263백만원('26년)
- 청사관리 지원: 86백만원('25년) → 86백만원('26년)
- 인력 지원: 968백만원('25년) → 1,002백만원('26년)
- 기본경비 지원: 100백만원('25년) → 100백만원('26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1~20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 ③ 향후(20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335	0	1,335	1,335	1,335	100.0	100.0	0	0
2023	1,350	0	1,350	1,350	1,350	100.0	100.0	0	0
2024	1,373	0	1,373	1,373	1,373	100.0	100.0	0	0
2025	1,414	0	1,414	1,414	1,414	100.0	100.0	0	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사 업 명
(10)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7041-4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계정	080	08D
명칭	특별회계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41	402
명칭	고용노동행정지원	제주이관업무지원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광주지방관서기본 경비(총액)	3,493	3,598	3,598	3,720	3,720	122	3.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93	3,493	3,493	0	0	3,598	3,598	3,216	0	382	3,720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3,493	3,493	3,493	0	0	3,598	3,598	3,216	0	382	3,7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25조에 따라 이관된 제주고용센터 운영 시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 내지 제403조

② 추진경위

-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상 지원을 하여야 함
- 2006. 7. 1. 제주고용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이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3,225	3,278	3,493	3,598	3,720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국고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제주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제주고용센터 터업무지원	보조	지차제보조	3,720백만원	10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제주고용센터업무지원

- 330목(자치단체경상보조): 3,598백만원(2025년도) → 3,720백만원(2026년도/인건비, 기본경비 지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3,225백만원 집행완료
2023	3,278백만원 집행완료
2024	3,493백만원 집행완료
2025	3,598백만원 집행완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주고용센터의 원활한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고용노동부 (보조금교부)	○ 예산 배정 예산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집행)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고용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집행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225	0	3,225	3,225	3,225	100	100	0	0
2023	3,278	0	3,278	3,278	3,278	100	100	0	0
2024	3,493	0	3,493	3,493	3,493	100	100	0	0
2025	3,598	0	3,598	3,598	3,598	100	100	0	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정상 추진
2023	- 정상 추진
2024	- 정상 추진
2025	- 정상 추진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 없음

IV.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사 업 명
(1)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1135-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등·평생교육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지원특별회계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08
명칭	직업능력개발	한국폴리텍대학출연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309,958	307,605	307,605	314,950	313,648	6,043	2.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액	불용 액	
○ 기능별 분류 (합계)	317,873	317,873	309,958	-	7,915	307,605	307,605	297,828	-	9,777	313,648
· 인력개발사업	105,725	105,725	105,694	-	31	92,588	92,588	92,564	-	24	83,917
· 시설확충사업	46,200	46,200	46,200	-	-	41,092	41,092	41,092	-	-	44,824
· 정보전산화	3,921	3,921	3,921	-	-	4,779	4,779	4,779	-	-	6,775
· 경상경비	200,605	200,605	192,721	-	7,884	205,226	205,226	193,131	-	9,753	209,826
· 자체수입	△38,578	△38,578	△38,578	-	-	△36,080	△36,080	△33,738	-	-	△31,69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필요한 산업현장 수요 중심의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훈련인프라 구축과 경상경비 지원
- (인력개발사업) 교직원 직무교육을 위한 능력개발사업 및 대학 안내, 다기능기술자, 전공심화과정 및 학과 신설·개편 장비비 등 훈련사업비
- (시설확충사업) 캠퍼스(교육원) 신설, 기숙사개보수, 노후시설보강, 대학증개축, 훈련 시설리모델링, 석면천장재 교체, 노후 냉난방설비 개선 사업 등
- (정보전산화사업) 41개소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 각종 업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유지 관리, IDC 위탁 운영비 등
- (경상경비) 청사관리비 등 기관운영비, 41개 캠퍼스의 공과금 등 운영비, 기술계 대안 학교인 다솜고등학교 훈련운영비 및 교직원 인건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 설립·경영자에게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에 한정한다)에게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 및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98년 2.5.자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분리하여 학교법인 기능대학 설립·운영
- 2006년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계획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훈련기관(19개 직업전문학교) 통합, 한국폴리텍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11개 대학, 40개 캠퍼스로 운영
- 2012년 3월 다문화가정의 탈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병행하는 다숨학교를 설립·운영
- 2016년 고학력 청년실업자 훈련을 위한 도심형 직업훈련시설인 분당융합기술교육원 개원
- 2020년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개원
- 2021년 로봇캠퍼스(영천) 개교
- 2025년 전력기술교육원(나주) 개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4,142	278,661	317,873	307,605	313,64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사업 수혜자 : 한국폴리텍대학 재학생, 재직근로자, 미취업자, 중소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인력개발사업	출연 (수지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83,917	수지차 보전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의 2~3, 39조, 48조
시설확충사업			44,824		
정보전산화			6,775		
경상경비			209,826		
자체수입			△31,694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 (2025 예산) 307,605백만원 → (2026 예산) 313,648백만원, 6,043백만원 증액

(1) 인력개발사업 : (2025 예산) 92,588백만원 → (2026 예산) 83,917백만원, 8,671백만원 감액

- 교직원능력개발 : (2025 예산) 2,697백만원 → (2026 예산) 2,757백만원, 60백만원 증액
 - (요구) 급변하는 사업구조 및 기술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교직원 연수비로 그간의 정원 증원을 반영하여 사업비 증액
 - (산출) 2,744명×1.00백
- 대학안내 : (2025 예산) 1,013백만원 → (2026 예산) 1,013백만원, 전년동
 - (요구)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훈련생 모집·홍보 활성화
 - (산출) 43개소×24백만원
- 다기능기술자 : (2025 예산) 17,749백만원 → (2026 예산) 17,117백만원, 632백만원 감액
 - (요구) 학위과정 축소계획에 따른 훈련인원 축소(12,320→11,715명, △605명) 및 급식비 단가 인상*
 - * 급식비 단가 1,200 → 1,350원 (+150원)
 - (산출) 11,715명×1.461백만원 (급식비 단가 인상 +236백만원 포함)
- 학위전공심화과정 : (2025 예산) 1,148백만원 → (2026 예산) 1,209백만원, 61백만원 증액
 - (요구) 훈련인원 확대(380→400명, +20명)에 따른 훈련비
 - (산출) 400명×3.0백만원

- ⑤ 학과신설 및 개편 : (2025 예산) 45,250백만원 → (2026 예산) 26,600백만원, 18,650백만원 감액
- (요구)
 - 첨단산업 학과신설 ('25년) 6 → ('26년) 2개과, △4개과
 - 전통산업 고도화 학과개편 ('25년) 25 → ('26년) 20개, △5개과
 - (산출)
 - 첨단산업 학과신설 : 2개과 x 3,000백만원 = 6,000백만원
 - 전통산업 고도화 학과개편 : 20개과 x 1,030백만원 = 20,600백만원
- ⑥ 대국민 공공인프라 개방 교육서비스 : (2025 예산) 15,163백만원 → (2026 예산) 16,021백만원, 858백만원 증액
- (요구) 공공직업훈련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민간에 연중 개방하는 대국민 직업교육서비스 운영비, '26년 2개소 확대 운영(광명 교육원, 신기술(전주) 교육원)
 - (산출) 37개소 x 433백만원(+2개소)
- ⑦ 외국인근로자 한국어훈련 : (2025 예산) 568백만원 → (2026 예산) 0백만원, 568백만원 감액
- (요구) 기술분야 한국어 맞춤형 커리큘럼 및 교육콘텐츠 개발 종료(이주배경 구직자 직업훈련에 활용)
- ⑧ 뿌리산업특화 교육센터 구축 : (2025 예산) 9,000백만원 → (2026 예산) 3,000백만원, 6,000백만원 감액
- (요구) 기존의 학과 개념을 탈피하여 캠퍼스 내 유휴 공간을 활용, 유연하고 탄력적인 직업훈련 체계 운영 위한 뿌리산업특화 교육센터 구축 사업비
 - (산출) 1개소 x 3,000백만원(△2개소)
- ⑨ 제2다습고 설립검토 연구용역 : (2025 예산) 0백만원 → (2026 예산) 100백만원, 100백만원 증액
- (요구) 폴리텍 제2다습고 설립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신규 반영
 - (산출) 1식 x 100백만원
- ⑩ 지역교육훈련센터 설립검토 연구용역 : (2025 예산) 0백만원 → (2026 예산) 100백만원, 100백만원 증액
- (요구) 지역교육훈련센터 설립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신규 반영
 - (산출) 1식 x 100백만원
- ⑪ 피지컬 AI공장 교육훈련 테스트베드 구축 : (2025 예산) 0백만원 → (2026 예산) 10,000백만원, 10,000백만원 증액
- (요구) 폴리텍이 운영 중인 현장형 통합과정 실습실을 고도화하여 피지컬 AI 공장형 실습실로 기능 확장
 - 지역 주요 산업을 매칭한 가칭 폴리텍 피지컬AI 벨트*에 해당하는 캠퍼스·학과 중심으로 피지컬 AI공장형 실습실 구축
 - * (예시) 인천(스마트팩토리), 화성(모빌리티), 성남·반도체융합(반도체), 청주(스마트팩토리), 논산바이오(바이오), 전주(모빌리티), 로봇캠퍼스(로봇), 창원(기계)
 - (산출) 4개소 x 2,500백만원
- ⑫ AI융합 기반 바이오 교육센터 신설 : (2025 예산) 0백만원 → (2026 예산) 4,500백만원, 4,500백만원 증액
- (요구) 바이오 산업 도약 지원과 AI공정 기술 교육을 위한 송도 지역 바이오 산업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필요
 - (산출) 1개소 x 4,500백만원
- ⑬ 다습학교운영 : (2025 예산) 0백만원 → (2026 예산) 1,500백만원, 1,500백만원 증액
- (요구) 다문화, 외국인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위한 기술계 특화 대안학교로,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비 반영
 - * '25, 경상경비 내역사업에서 '26, 사업비로 이관
 - (산출) 1개소 x 1,500백만원
- (2) 시설확충사업 : (2025 예산) 41,092백만원 → (2026 예산) 44,824백만원, 3,732백만원 증액

- ① 캠퍼스 신설 : (2025 예산) 2,418백만원 → (2026 예산) 462백만원, 1,956백만원 감액
 - (요구) 나주 전력기술교육원 신설 '25년 사업종료, 서천 등 캠퍼스 신설 사업비 미요구,
 동두천 융합기술교육원 1차연도 설계비 462백만원 요구
 - (산출) 동두천 융합기술교육원 1차연도 설계비 462백만원
- ② 노후시설보강 : (2025 예산) 8,728백만원 → (2026 예산) 9,307백만원, 579백만원 증액
 - (요구) 전국 42개소의 노후 건축물 유지보수, 창호교체 및 각종 법정 의무사항(기계설비 성능점검 등) 이행에 따른 시설보강 사업비로, '20년 이후 신설한 캠퍼스(교육원) 시설 유지보수비 증액 반영
 - (산출) 42개소 x 222백만원
- ③ 석면천장재교체 : (2025 예산) 4,256백만원 → (2026 예산) 2,055백만원, 2,201백만원 감액
 - (요구) 석면 천장재 교체를 위한 잔여 사업비('26년 사업 종료*)
 * 당초 '20~'27년 추진 예정이었으나, '26년 잔여 물량 교체완료(예정)로 사업 조기종료
 - (산출) 14,474㎡ x 150천원
- ④ 기숙사 개선 : (2025 예산) 806백만원 → (2026 예산) 6,997백만원, 6,191백만원 증액
 - (요구) 공동 샤워장 및 화장실, 다인실 등 노후된 기숙사 시설을 개선하여 직업훈련생의 쾌적한 정주여건과 교육환경 도모
 · (종료) 직업훈련과정 기숙사 환경개선('25, 400백만원) 종료
 · (계속) 화성 기숙사 개보수 2차연도 사업비(사업기간 '25~'26년)
 - (산출) 화성 1개소 x 6,997백만원
- ⑤ 교육훈련시설 증개축 : (2025 예산) 17,382백만원 → (2026 예산) 12,923백만원, 4,459백만원 감액
 - (요구) 직업훈련생의 교육훈련 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증개축 사업비
 · (종료) 구미 훈련시설 리모델링 종료
 · (계속) 충남(홍성) 복합관 증개축 4차, 나주 복지관 증축 2차, 반도체융합(안성) 학생회관 증축 2차, 아산 반도체융합교육시설 증축 2차 사업비 반영
 · (신규) 춘천 공학관 증축 1차 설계비 반영
 - (산출)

구분	'25년	'26년예산	증감	사업기간	비고
합계	17,382	12,923	△4,459		
구미 훈련시설 리모델링	7,905	-	△7,905	'23~'25년	'25년 종료
충남(홍성) 복합관 증축	7,080	2,382	△4,698	'23~'26년	4차연도 사업비
나주 복지관 증축	718	6,199	5,481	'25~'27년	2차연도 사업비(잔여 40:60)
반도체융합(안성) 학생회관 증축	433	3,362	2,929	'25~'27년	2차연도 사업비(잔여 40:60)
아산 반도체융합교육시설 증축	1,246	253	△1,123	'25~'28년	2차연도 사업비(설계비)
춘천 공학관 증축	-	727	-	'26~'28년	1차연도 사업비(신규)

- ⑥ 메타버스플랫폼 구축 : (2025 예산) 48백만원 → (2026 예산) 0백만원, 48백만원 감액
 - (요구) 사업종료(메타버스플랫폼 운영 지속하되, 운영비 절감하여 최소 소요분 경상비 등 활용)
- ⑦ 유해 기계설비 개선 : (2025 예산) 7,454백만원 → (2026 예산) 7,454백만원, 전년동
 - (요구)
 ·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수리 부품이 단종된 캠퍼스 노후 냉난방기 교체 소요
 · 캠퍼스 학생식당 조리 종사자의 산재예방(폐암 등)을 위한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연차별 추진
 - (산출)
 ·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 35,162㎡ x 129천원 = 4,535백만원
 ·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21개소 x 273백만 = 2,919백만원

- ⑧ 시설물 내진성능보강 : (2025 예산) 0백만원 → (2026 예산) 2,278백만원, 2,278백만원 증액
- (요구) 공공기관 시설물 평균 내진율('24, 80.3%, 행안부 발표)에 미치지 못하는 폴리텍 시설물(내진율 23.3%)에 대한 내진보강 추진으로 지진 발생 시 훈련생 등 시설 이용자의 피해 저감을 위한 신속 조치 필요
 - * '25년, ②노후시설보강 사업비 內 690백만원 반영→별도 내내역으로 분리하여 확대 추진 필요**
 - **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 지진위험지역인 영남권 등 6개소 대상 내진성능평가 우선 추진,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 확대 및 전체 사업비 추계하여 연차별 추진 예정
 - (산출) 111,994m² x 20천원
- ⑨ 중대재해예방 안전보호구 지급 : (2025 예산) 0백만원 → → (2026 예산) 660백만원, 660백만원 증액
- (요구) 폴리텍 캠퍼스 시설업무 종사자* 산재예방 위한 안전보호구 지급 소요
 - * 캠퍼스 소속 시설관리(영선), 전기, 미화, 조리 종사자 등 492명 대상(42개소)
 - (산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면보호구, 보안경 등) 492명 × 528천원 = 259백만원
 - 안전장비, 안전보건표지, 보관함 42개소 × 9,550천원 = 401백만원
- ⑩ 노후통학버스 교체 : (2025 예산) 0백만원 → (2026 예산) 1,610백만원, 1,610백만원 증액
- (요구) 대중교통망이 취약한 곳에 위치한 캠퍼스에서 보유·운용* 중인 노후 통학버스 교체** 소요
 - * 내용연수(9년) 경과 노후버스: 반도체융합('06년, 안성), 충남('07년, 홍성), 인재원·남대구('10년, 남원), 충주('11년), 전남('12년, 무안), 화성('15년) 캠퍼스 등 총 14대** 보유·운용 중
 - ** 14대 중 노후도, 주행거리, 이용인원, 용도, 운행주기 등을 고려하여 교체가 시급한 7대 우선 추진
 - (산출) 7대 × 230백만원
- ⑪ 시유지 교환 매입 : (2025 예산) 0백만원 → (2026 예산) 1,078백만원, 1,078백만원 증액
- (요구) 폴리텍 소유 광주 제2캠퍼스* 부지와 광주시 소유의 광주 제1캠퍼스 부지를 교환 매입하여 자산관리 효율성 및 부지 활용도 제고
 - * 제2캠퍼스는 현재 유허부지로 미활용 중이나, 소유에 따른 유지관리비(무인경비 비용 등) 지속 발생
 - (산출) 1식 x 1,078백만원

(3) 정보전산화 : (2025 예산) 4,779백만원 → (2026 예산) 6,775백만원, 1,996백만원 증액

- 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2025 예산) 3,124백만원 → (2026 요구) 3,840백만원, 716백만원 증액
- (요구) 정보시스템 회선망 사용료 및 유지보수 관리, IDC위탁 운영비로, '20년 이후 동결된 사업비 현실화 및 신설 캠퍼스(교육원) 유지보수비 반영
 - (계속) 회선망 사용료 1,280 → 1,486 (+206백만원)
 - (계속) 유지보수 관리 1,661 → 1,950 (+289백만원)
 - (계속) IDC위탁 운영 183 → 404 (+221백만원)
 - (산출) 43개소 x 89백만원
- ② 노후 네트워크 보강 : (2025 예산) 1,655백만원 → (2026 예산) 1,655백만원, 전년동
- (요구) 노후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의 지속적인 고도화 추진으로 직업교육훈련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 (산출) 네트워크 백본 스위치 등 181개 × 9.1백만원
- ③ 클라우드기반 협업 업무시스템 교체 : (2025 예산) 0백만원 → (2026 예산) 300백만원, 300백만원 증액
- (요구) '16년 구축된 업무공유 시스템(메일, 메신저 등)의 기술지원 종료로 보안점검 시 보안상 취약점 다수 지적('25.4월, 15건* 등), 장애 발생 시 대응불가 등,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업무시스템 전환 시급
 - * 고용부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결과, 시스템 취약점 15건 중 14건은 EoS**로 후속조치 불가
 - ** EoS(End of Support) : 특정 소프트웨어 또는 운영 체제에 대한 제조사의 기술 지원과 보안 업데이트가 종료됨을 의미
 - (산출) 1식 × 300백만원

- ④ K-SHIFT(직업훈련체계 대전환) ISP : (2025 본예산) 0백만원 → (2026 예산) 980백만원, 980백만원 증액
- (요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직업훈련 체계로의 대전환을 구현하기 위한 K-SHIFT 정보화전략계획 ISP 사업비
 - (산출) 1식 × 980백만원

(4) 경상경비 : (2025 예산) 205,226백만원 → (2026 예산) 209,826백만원, 4,600백만원 증액

- ① 기관운영 : (2025 예산) 2,137백만원 → (2026 예산) 2,030백만원, 107백만원 감액
- (요구) 법인 청사(인천) 관리비 등 기관 운영비
 - (산출) 2,030백만원 × 1개소(법인)
 - * 경상비 공통감액
- ② 대학운영 : (2025 예산) 18,112백만원 → (2026 예산) 13,558백만원, 4,554백만원 감액
- (요구) 전국 41개 캠퍼스(교육원 등)의 공공요금 등 필수 소요 운영비
 - * ('24) 40개소 → ('25) 41개소, 1개소(나주 교육원) 개원
 - (산출) 331백만원 × 41개소(35개 캠퍼스, 5개 교육원, 1개 인재원)
 - * 경상비 공통감액, 나주 교육원 개원 등 특이소요 반영
- ③ 다습고교운영 : (2025 예산) 1,474백만원 → (2026 예산) 0백만원, 1,474백만원 감액
- (요구) '25, 경상경비 내역에서 '26, 인력개발사업 내역으로 이관
- ④ 인건비 : (2025 예산) 183,503백만원 → (2026 예산) 194,238백만원, 10,735백만원 증액
- (요구) 교직원 2,724명의 인건비
 - (산출) 71백만원 × 2,724명
 - * 교직원 정원 직렬별 증원 및 감원, 공통 처우개선 등 반영

(5) 자체수입 : (2025 예산) 36,080백만원 → (2026 예산) 31,694백만원, 4,386백만원 감액

- ① 사업수입 : (2025 예산) 28,036백만원 → (2026 예산) 22,185백만원, 5,851백만원 감액
- (요구) 학위과정 훈련인원 감소 및 최근 수업료 예결산 추이를 반영하여, 20.9% 감액 요구
 - * 학위과정 축소계획에 따라 '25년 12,700명→'26년 12,115명, △585명
 - (산출)
 - 수업료(등록금) 21,857백만원
 - * 정원 12,115명×평균 재학율 83.4%×수업료 2.432백만원×장학금 지급율 △11%
 - 전형료 328백만원
 - * 최근 3년 평균 결산액: '22년 352, '23년 318, '24년 314백만원
- ② 사업외수입 : (2025 예산) 2,309백만원 → (2026 예산) 3,365백만원, 1,056백만원 증액
- (요구) 이자수입 2,139백만원, 잡수입 1,226백만원
 - (산출)
 - 이자수입 2,139백만원
 - * 최근 3년 평균 결산액: '22년 1,018, '23년 2,310, '24년 3,089백만원
 - 잡수입 1,226백만원
 - * 최근 3년 평균 결산액: '22년 1,128, '23년 1,127, '24년 1,424백만원
- ③ 결산잉여 : (2025 예산) 5,735백만원 → (2026 예산) 6,144백만원, 409백만원 증액
- (요구) 전기이월 3,737백만원, 전전기이월 2,407백만원
 - (산출)
 - 전기이월 3,737백만원

* 최근 3년 평균 결산액: '22년 3,868, '23년 2,720, '24년 4,622백만원

· 전전기이월 2,407백만원

* '24년 차차기이월 반영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7,605	○ 사업출연금(350-02) : 307,605백만원	313,648	○ 사업출연금(350-02) : 313,648백만원
	가. 인력개발사업 (92,588백만원)		가. 인력개발사업 (83,917백만원)
	· 교직원능력개발 : 2,744명×0.98백만원=2,697백만원 · 대학안내 : 41개소×24백만원=1,013백만원 · 다기능기술자 : 12,320명×1,441천원=17,749백만원 · 학위전공심화 : 380명×3,022천원=1,148백만원 · 학과신설 및 개편 45,250백만원 - 학과신설 : (산산업)3개과×3,000백만 + (반도체)3개과×3,500백만 - 학과개편 : (전통산업)25개과×1,030백만 · 꿈드림공작소 : 35개소×433백만원=15,163백만원 · 외국인근로자 한국어훈련 568백만원 · 뿌리산업특화 교육센터 구축 : 3개소×3,000백만원=9,000백만원		· 교직원능력개발 : 2,744명×1.00백만원=2,757백만원 · 대학안내 : 41개소×24백만원=1,013백만원 · 다기능기술자 : 11,715명×1,461천원=17,117백만원 · 학위전공심화 : 400명×3,022천원=1,209백만원 · 학과신설 및 개편 26,600백만원 - 학과신설 : (첨단산업)2개과×3,000백만 - 학과개편 : (전통산업)20개과×1,030백만 · 꿈드림공작소 : 37개소×433백만원=16,021백만원 · 외국인근로자 한국어훈련 0백만원 (종료) · 뿌리산업특화 교육센터 구축 : 1개소×3,000백만원=3000백만원 · 피지컬 AI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신규) · 4개소×2,500백만원=10,000백만원 · AI융합 기반 바이오 교육센터 (신규) · 1개소×4,500백만원=4,500백만원 · 다습학교운영 1개소×1,500백만원=1500백만원 (내역이관)
	나. 시설확충사업 (41,092백만원)		나. 시설확충사업 (44,824백만원)
	· 캠퍼스신설 : 나주5차 418백만원, 서천 2,000백만원 · 기숙사개보수 : 806백만원 - 직업훈련 기숙사 환경개선 400백만원 - 화성 1차 설계비 406백만원 · 노후시설보강 : 42개소×208백만원=8,728백만원 - 법정의무소요 등 반영(기계설비 성능점검, 내진성능보강 외) · 석면천장재교체 : 28,310㎡×150천원=4,256백만원 · 교육훈련시설 증개축 : 16,136백만원 - 구미 3차 공사비 7,905백만원 - 홍성 3차 공사비 7,080백만원 - 나주 1차 설계비 718백만원 - 반도체융합(안성) 1차 설계비 433백만원 - 반도체 종합교육시설(아산) 1차 설계비 1,246백만원 · 메타버스플랫폼 : 1개소×48백만원=48백만원 · 노후 기계설비 개선 7,454백만원 - 냉난방기설비교체 : 35,162㎡×129천원=4,535백만원 -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 10개소×292백만원=2,919백만원		· 캠퍼스신설 : 462백만원 - 동두천 융합기술교육원 1차연도 설계비 462백만원 · 기숙사개보수 : 6,997백만원 - 직업훈련 기숙사 환경개선 0백만원 (종료) - 화성 2차 공사비 6,997백만원 · 노후시설보강 : 42개소×222백만원=9,307백만원 - 시설유지보수, 법정의무소요(기계설비 성능점검) 등 반영 · 석면천장재교체 : 14,474㎡×150천원=2,055백만원 · 교육훈련시설 증개축 : 12,923백만원 - 구미 종료 - 홍성 복합관 4차 공사비 2,382백만원 - 나주 복지관 2차 공사비 6,199백만원 - 반도체융합(안성) 학생회관 2차 공사비 3,362백만원 - 반도체 종합교육시설(아산) 구축 2차 설계비 253백만원 - 춘천 공학관 증축 1차 설계비 727백만원 (신규) · 메타버스플랫폼 : 0백만원 · 노후 기계설비 개선 7,454백만원 - 냉난방기설비교체 : 35,162㎡×129천원=4,535백만원 -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 10개소×292백만원=2,919백만원 · 시설물 내진성능보강 2,278백만원 (내내역이관) · 중대재해예방 안전보호구 지급 660백만원 (신규) · 노후 통학버스 교체 7대×230백만원=1,610백만원 (신규) · 시유지 교환 매입 1식×1,078백만원=1,078백만원 (신규)
	다. 정보전산화 (4,799백만원)		다. 정보전산화 (6,775백만원)
	· 정보시스템유지보수 : 43개소×73백만원=3,124백만원 · 노후네트워크교체 : 181대×9백만원=1,655백만원		· 정보시스템유지보수 : 43개소×89백만원=3,840백만원 · 노후네트워크교체 : 181대×9백만원=1,655백만원 · 클라우드기반 협업 업무시스템 교체 300백만원 (신규) · K-SHIFT(직업훈련체계 대전환) ISP 980백만원 (신규)
313,648	라. 경상경비 (205,226백만원)	313,648	라. 경상경비 (209,826백만원)
	· 기관운영 : 1개소×2,137백만원=2,249백만원 · 대학운영 : 41개소×442백만원=18,112백만원 · 다습교운영 : 1개소×1,474백만원=1,474백만원 · 인건비 : 2,724명×67백만원=183,503백만원		· 기관운영 : 1개소×2,030백만원=2,030백만원 · 대학운영 : 41개소×331백만원=13,558백만원 · 다습학교운영 : 0백만원 (내역이관) · 인건비 : 2,724명×71백만원=194,238백만원
	마. 자체수입 (△36,080백만원)		마. 자체수입 (△31,694백만원)
	· 사업수입 : △28,036백만원 · 사업외수입 : △2,309백만원 · 결산잉여금 : △5,735백만원		· 사업수입 : △22,185백만원 · 사업외수입 : △3,365백만원 · 결산잉여금 : △6,14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Digital Training 수료율 (단위: %)	목표	88.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9.7	-	-	-	-			
	달성도	101.9	-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수 (단위: 명)	목표	13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132,005	-	-	-	-			
	달성도	101.5	-	-	-	-			
K-Digital Training 취업률 (단위: %)	목표	(신규)	6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57.5	-	-	-			
	달성도	-	84.3	-	-	-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취업률 (단위: %)	목표	73.0	80.3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1.7	80.1	-	-	-			
	달성도	111.9	99.8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료율 (단위: %)	목표	(신규)	7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78.6	-	-	-			
	달성도	-	99.7	-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인원 (단위: 명)	목표	(신규)	(신규)	786,000	690,258	(삭제)	-	-	-
	실적	-	-	664,955	-	-			
	달성도	-	-	84.5	-	-			
훈련 양성률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9.3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 (22) 88.8 (23) 89.7 (24) 89.5	(내일배움카드 수료 인원/훈련실사인원) x 08(가중치) + (폴리텍 훈련 수료 인원/훈련실사인원) x 02(가중치)	전수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폴리텍대학)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양성 계획인원: 14,395명, 참여인원: 13,539명, 수료인원: 12,108명
2023	양성 계획인원: 13,950명, 참여인원: 12,790명, 수료인원: 11,069명
2024	양성 계획인원: 13,270명, 참여인원: 12,357명, 수료인원: 10,464명
2025	양성 계획인원: 12,700명, 참여인원: 12,159명, 수료인원: 추진 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능대학·공공직업훈련시설 43개소(1법인, 35캠퍼스, 5교육원, 1인재원, 1고교) 운영 및 교육훈련시설 개선, 인프라 확충 등
- 학위과정 인력개발사업 추진(다기능기술자 11,715명, 학위전공심화 400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세부사업 : 해당없음
- 내역사업(시설확충사업) 중 일부 내내역 : 아래 참조

□ 총사업비 정보

○ (캠퍼스 신설) 경기북부(파주)캠퍼스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15~2025	101	-	-	-	-	372	473

○ (캠퍼스 신설) 밀양캠퍼스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15~2026	92	-	-	-	-	244	336

○ (캠퍼스 신설) 서천캠퍼스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16~2025	53	-	-	20	-	294	347

○ (캠퍼스 신설) 나주전력기술교육원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1~2025	134	-	83	4	-	-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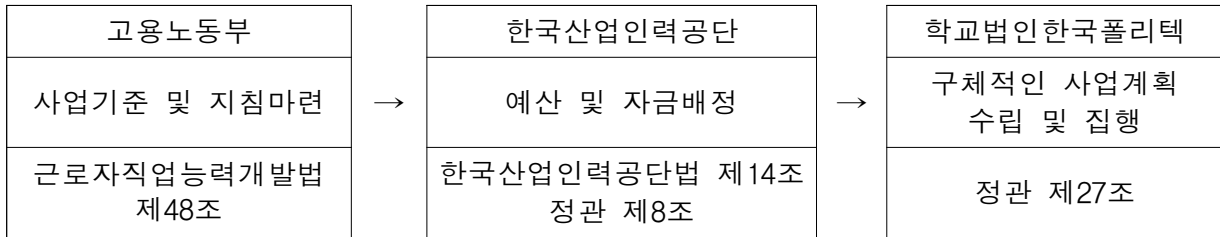
○ (교육훈련시설 증개축) 반도체종합교육시설 구축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5~2028	-	-	-	12	3	281	296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집행절차



-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피출연·피보조 기관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폴리텍대학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결위, 2024예산안 부대의견, '23년) 학과신설 및 개편 사업의 경우 접근성과 배후 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지원 검토 필요
- (환노위, 2024예산안 부대의견, '23년) 학과 편성 운영 예산의 반도체 편중을 지양 하고, 지역기업의 수요, 입학 인구의 증감 및 선호를 고려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환노위,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24년) 전공심화과정의 모집률 상승 방안을 모색 하여 입학인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예결위,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24년) 교원 충원 방안 마련 필요
- (환노위, 2025예산안 부대의견, '24년) 차별성 있는 외국인근로자 한국어훈련 사업 추진 필요
- (환노위, 2025예산안 부대의견, '24년) 뿌리산업특화 교육센터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24,142	-	224,142	223,896	214,813	95.8	95.9	-	9,083
2023	278,661	-	278,661	277,461	273,527	98.2	98.6	-	3,934
2024	317,873	-	317,873	317,873	309,958	97.5	97.5	-	7,915
2025	307,605	-	307,605	307,605	297,828	96.8	96.8	-	9,77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금액 : △246백만원 - 전용사유 : 한국폴리텍운영지원(BIL정부지급금) 사업의 적용물가지수 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부족액 지원 - 불용금액 : 9,083백만원 - 불용사유 : 정·현원차 인건비 등 집행 잔액 불용
2023	- 전용금액 : △1,200백만원 - 전용사유 : 한국폴리텍운영지원(BIL정부지급금) 사업 적용물가지수 상승 등으로 인한 운영비, 임대료 부족액 지원 - 불용금액 : 3,934백만원 - 불용사유 : 정·현원차 인건비 등 집행 잔액 불용
2024	- 전용금액 : 해당없음 - 전용사유 : 해당없음 - 불용금액 : 7,915백만원 - 불용사유 : 정·현원차 인건비 등 집행 잔액 불용
2025	- 전용금액 : 해당없음 - 전용사유 : 해당없음 - 불용금액 : 9,777백만원 - 불용사유 : 정·현원차 인건비 등 집행 잔액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1135-7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750
명칭	직업능력개발	한국폴리텍대학출연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사업시행주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35,406	41,809	41,809	42,849	42,849	1,040	2.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6,873	36,873	35,406	-	1,467	41,809	41,809	40,607	-	1,251	42,849
· 임차료	25,180	25,180	24,054	-	1,126	28,632	28,632	27,733	-	949	29,176
· 운영비	11,693	11,693	11,352	-	341	13,177	13,177	12,874	-	302	13,67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기간산업·기술발전에 필요한 산업현장 수요 중심의 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에 필요한 공학관과 기숙사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충하고 건물 운영에 따른 임차료 및 운영비 지급
- (임차료) 27개소 민간투자비 균등분할 지급
- (운영비) 27개소 인건비, 제경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 설립·경영자에게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에 한정한다)에게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 및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② 추진경위

- '70년대 직업훈련시설로 설립된 후 한국폴리텍대학으로 승격, 학과·정원 증가 등으로 교육훈련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05년 도입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시설확보 추진
- 2005·2006·2007·2017·2018·2020년도 사업의 정부지급금(임차료, 운영비) 지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9,232	33,565	36,873	41,809	42,849

- 기타 : 27개소, 42개동, 234,748m²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사업수혜자 : 다기능기술자 재학생 및 비학위과정 훈련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임차료	출연	학교법인	28,632	100.0%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11조의2~3, 39조, 48조, 사회적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운영비		한국폴리텍	13,177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 (2025 예산) 41,809백만원 → (2026 예산) 42,849백만원, 1,040백만원 증액

① 임차료 : (2025 예산) 28,632 → (2026 예산) 29,176백만원 (+544백만원)

- (요구) 사업수익률 변경('06, '07, '17년 사업) 및 '05~'20년 7개 BTL사업의 '26년 연중 임대료 반영
- (산출) 27개소×1,081백만원(평균치)

② 운영비 : (2025 예산) 13,177 → (2026 예산) 13,673백만원 (+496백만원)

- (요구) '05~'20년 7개 BTL사업 소비자물가 변동에 따른 '26년 연중 운영비 반영
- (산출) 27개소×506백만원(평균치)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1,809	○ 임차료(210-07) : 28,632천원 가. 임차료 (28,632천원) · '25년 BTL사업 임차료 : 27개소×1,060천원=28,632천원 ○ 운영비(320-01) : 13,177천원 가. 운영비 (13,177천원) · '25년 BTL사업 운영비 : 27개소×488천원=13,177천원	42,849	○ 임차료(210-07) : 29,176천원 가. 임차료 (29,176천원) · '26년 BTL사업 임차료 : 27개소×1,081천원=29,176천원 ○ 운영비(320-01) : 13,673천원 가. 운영비 (13,673천원) · '26년 BTL사업 운영비 : 27개소×506천원=13,673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운영성과 평가 실시 후 정부지급금 지급
2023	운영성과 평가 실시 후 정부지급금 지급
2024	운영성과 평가 실시 후 정부지급금 지급
2025	운영성과 평가 실시 후 정부지급금 지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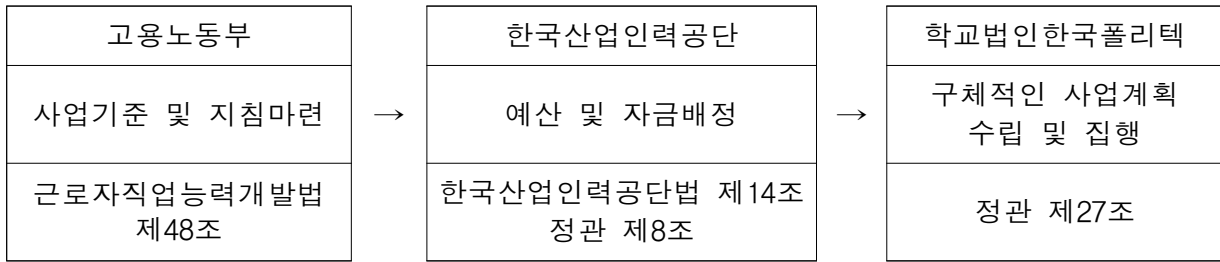
- 학위 및 비학위과정 교육·훈련생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
- 청년고용률 증대 및 취약계층 훈련을 통한 국가기간·전략산업분야 인력 공급 활성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집행절차



-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피출연·피보조 기관
고용노동부 (41,809백만원)	=> (41,809백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41,809백만원)	=> (41,809백만원)	한국폴리텍대학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9,232	-	29,232	28,968	28,967	99.1	100.0	-	1
2023	33,565	-	33,565	34,765	34,763	103.6	100.0	-	2
2024	36,873	-	36,873	36,873	35,406	96.0	96.0	-	1,467
2025	41,809	-	41,809	41,809	40,607	97.1	97.1	-	1,20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금액 : △264백만원 - 전용사유 : 숙련기술장려사업(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개최) 및 BTL 운영비 지원 - 불용금액 : 1백만원 - 불용사유 : 집행 잔액
2023	- 전용금액 : 1,200백만원 - 전용사유 : 한국폴리텍운영지원(BIL정부지급금) 사업 적용물가지수 상승 등으로 인한 운영비, 임대료 부족액 지원 - 불용금액 : 2백만원 - 불용사유 : 집행 잔액
2024	- 전용금액 : 해당없음 - 전용사유 : 해당없음 - 불용금액 : 1,467백만원 - 불용사유 : 집행 잔액
2025	- 전용금액 : 해당없음 - 전용사유 : 해당없음 - 불용금액 : 1,251백만원 - 불용사유 : 집행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3)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1136-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등·평생교육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지원특별회계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9
명칭	직업능력개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기술 교육대학교운영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직업능력정책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52,718	45,406	45,406	41,966	41,966	△3,440	△7.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2,718	52,718	52,718	-	-	45,406	45,406	45,406	-	-	41,966
· 교육환경인프라구축	13,090	13,090	13,090	-	-	12,186	12,186	12,186	-	-	8,706
· 대학정보화사업	1,382	1,382	1,382	-	-	1,500	1,500	1,500	-	-	2,180
· 연구학생지원비	2,660	2,660	2,660	-	-	2,660	2,660	2,660	-	-	2,660
· 고용서비스역량강화 센터 건립	3,782	3,782	3,782	-	-	2,100	2,100	2,100	-	-	0
· 첨단산업훈련 콘텐츠강화	3,815	3,815	3,815	-	-	760	760	760	-	-	380
· 기관운영비	49,059	49,059	49,059	-	-	51,331	51,331	51,331	-	-	53,203
· 자체수입	△21,070	△21,070	△21,070	-	-	△25,131	△25,131	△25,131	-	-	△25,16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 창의적이고 우수한 실천공학적 자질을 갖춘 직업능력 개발담당자(훈련교사, 인력개발담당자 및 실천공학기술자·기업현장교사), 직업능력 개발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인력 및 고용서비스전문가 양성 등에 필요한 기관 운영비
- (교육환경인프라구축) ❶노후화된 건물·설비를 연차적으로 개·보수하여 건물 안전성 및 내구성 향상, ❷학생의 밀집도가 높은 한기대 1공학관 내진설계 및 교육환경개선, ❸대학본관(행정동)을 증축하여 교육시설에 분산되어 있는 행정부서를 대학본관으로 이전하여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 (대학정보화사업) 학부·대학원생 교육·연구지원을 위한 전산망 관리비
- (연구학생지원비) 학부모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생장학금 지원
- (고용서비스역량강화센터 건립) 고용서비스 관련 종사자의 인력양성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교육인프라 구축
- (첨단훈련콘텐츠강화)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첨단산업훈련에 필요한 콘텐츠 기반 강화(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 (기관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 (자체수입) 학생 등록금, 이자수입 등의 자체수입과 전(전)년도 이월금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52조의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훈련 또는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재직적합훈련과정

3.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한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수교육 등 사업의 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의 요건·내용·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2(기술교육대학의 설립·운영)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실천공학기술자·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공학교육에 관한 선도모형의 개발·운영 및 보급사업

3. 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

4.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5. 다른 법령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시행령)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시행령)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제2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훈련직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

2.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 기법

3. 훈련생에 대한 지도 및 상담

4. 훈련성과 및 훈련생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보수교육의 시간은 24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7조의2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사업

2. 훈련매체, 훈련과정, 훈련방법 등의 개발·보급사업

3.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4. 조사·연구사업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제26조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 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관리를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

제26조(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2. 3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직업훈련교사 양성 목적 대학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5조(직업능력개발훈련촉진시책) 및 제11조 (훈련교사 양성 시설 및 훈련과정)
- '95. 7월 고용보험법 제정 동법에 근거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주의 직업훈련의무제도 폐지
- '98년 직업훈련기본법 폐지하고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훈련촉진사업을 위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하고 지원재원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규정
- '98년 직업훈련교사 단기 양성 및 재·향상훈련을 위해 대학 부설기관으로 능력개발교육원 설치(정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 훈련교사 양성기관 일원화)
- '99년 직업훈련촉진기금 폐지로 피보험자 등의 위탁 훈련사업비와 교육지원비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 기관운영비와 경상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 '02년 노후장비보강 사업비는 지원재원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환
- '08년 한국노동교육원법 폐지 및 관련 직무교육 한기대로 이관(노동행정연수원 설치)
- '14년 온라인 훈련 기반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대학 부설기관으로 온라인평생교육원 설치
- '15년 직업훈련 기관·과정 심사·평가 등 직업훈련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해 대학 부설기관으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설치
- '20년 고용노동연수원 기관 분리(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
- '21년 고용서비스 인력양성(과정평가형) 및 민간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 '22년 고용서비스정책학과 신설·운영
- '23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BTL 정부지급금 포함)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66,454(건축공사 2건: 29,517백만원, 36,937백만원)
- 사업기간 : '8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0,251	50,035	52,718	45,406	41,966

- 기타 : ①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 양성 3,830명, ②직업훈련교원 재·향상연수 58,548명, ③평생능력개발온라인훈련사업 134,000명, 훈련콘텐츠 338과정 개발 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학부생(직업능력개발담당자) 및 대학원생(직업능력개발전문가),
직업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기관, 재직 근로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교육환경 인프라구축	출연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8,706	62.5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3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
대학정보화 사업			2,180		
연구학생 지원비			2,660		
고용서비스 역량강화 센터건립			0		
첨단산업 훈련콘텐츠 강화			380		
기관운영비			53,203		
자체수입			△25,163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 : (2025 예산) 45,406백만원 → (2026 예산) 41,966백만원 (△3,440백만원)

① 교육환경인프라 구축

: (2025 예산) 12,186백만원 → (2026 예산) 8,706백만원 (△3,480백만원)

- (요구) ❶노후건축설비개수, ❷대학본부 증축 및 환경개선 공사비

- (산출) ❶노후건축설비개수: (2025 예산) 3,987백만원 → (2026 예산) 3,987백만원 (전년동)

❷1공학관 환경개선: 공사일정 감안 (2025 예산) 1,199백만원 → (2026 예산) 0백만원 (△1,199백만원)

❸대학본부 증축 및 환경개선: 건축공사 마지막 소요(4년) (2025 예산) 7,000백만원 → (2026 예산) 4,719백만원 (△2,281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사업기간	'23~'25년	'26년 예산	잔여사업비
계	47,491	-	19,532	4,719	23,240
1공학관 환경개선	29,517	'23~'28(6년)	6,277	-	23,240
- 설계비	1,944	-	1,944	-	-
- 공사비	25,507	-	3,551	-	21,956
- 감리비	1,977	-	693	-	1,284
- 부대비	89	-	89	-	-
대학본부 증축 및 환경개선	17,974	'23~'26(4년)	13,255	4,719	-
- 설계비	953	-	953	-	-
- 공사비	14,466	-	10,389	4,077	-
- 감리비	2,215	-	1,573	642	-
- 부대비	340	-	340	-	-

② 대학정보화사업

: (2025 예산) 1,500백만원 → (2026 예산) 2,180백만원 (증680백만원)

- (요구) 노후 서버 교체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교육용 S/W 라이선스비, 전용회선 이용료,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네트워크 망분리 ISP 수립비 등

- (산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332백만원 및 네트워크 망분리 ISP 수립비 348백만원 증액

③ 연구학생지원비

: (2025 예산) 2,660백만원 → (2026 예산) 2,660백만원 (전년수준)

- (요구 및 산출) 학부모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금 전년수준

④ 고용서비스역량강화센터 건립

: (2025 예산) 2,100백만원 → (2026 예산) 0백만원 (△2,100백만원)

- (요구) 공사일정을 감안하여 4차년도 예산 미요구

- (산출) 공사일정을 감안하여 4차년도 예산 미반영

구분	총사업비	사업기간	'23~'25년	잔여사업비
계	36,937	'23~'28(예정)	7,582	29,355
- 설계비	1,431	-	1,431	-
- 공사비	29,308	-	4,931	24,377
- 감리비	3,574	-	1,000	2,574
- 부대비	354	-	220	134

⑤ 첨단산업훈련콘텐츠강화

: (2025 예산) 760백만원 → (2026 예산) 380백만원 (△380백만원)

- (요구 및 산출)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675명 양성

⑥ 기관운영비

: (2025 예산) 51,331백만원 → (2026 예산) 53,203백만원 (증1,872백만원)

- (요구 및 산출) 인건비 46,317백만원, 경상경비 6,886백만원

⑦ 자체수입

: (2025 예산) △25,131백만원 → (2026 예산) △25,163백만원 (△32백만원)

- 등록금수입: (2025 예산) 18,135 → (2026 예산) 18,302백만원 (증167백만원)

- 이자수입: (2025 예산) 1,070 → (2026 예산) 1,067백만원 (증3백만원)

- 이월결산잉여금: (2025) 5,926 → (2026 예산) 5,794백만원 (증132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5,406	○ 사업출연금(350-02) : 45,406백만원 가. 교육환경인프라 구축: 12,186백만원 • 노후건축설비개수 3,987백만원 • 1공학관 환경개선(3차년도) 1,199백만원 • 대학본부 증축 및 환경개선(3차년도) 7,000백만원 나. 대학정보화사업: 1,500백만원 • 노후 서버 교체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교육용S/W 라이선스비, 전용회선 이용료, 데이터백업센터 유지관리비 등 다. 연구학생지원비: 2,660백만원 • 학부모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생장학금 라. 고용서비스역량강화센터: 2,100백만원 • (3차년도) 공사비 및 감리비 등 마. 첨단산업훈련콘텐츠강화: 760백만원 •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1,080명 바. 기관운영비: 51,331백만원 • 인건비 및 경상비 사. 자체수입: △25,131	41,966	○ 사업출연금(350-02) : 41,966백만원 가. 교육환경인프라 구축: 8,706백만원 • 노후건축설비개수 3,987백만원 • 1공학관 환경개선(4차년도) 0백만원 • 대학본부 증축 및 환경개선(4차년도) 4,719백만원 나. 대학정보화사업: 2,180백만원 • 노후 서버 교체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교육용S/W 라이선스비,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네트워크 망분리 ISP 수립비 등 다. 연구학생지원비: 2,660백만원 • 학부모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생장학금 라. 고용서비스역량강화센터: 0백만원 • (4차년도) 공사일정 감안 마. 첨단산업훈련콘텐츠강화: 380백만원 •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675명 양성 바. 기관운영비: 53,203백만원 • 인건비 및 경상비 사. 자체수입: △25,163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직업능력개발 과정이수자 취업률 (단위: %)	목표	86.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2.5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달성도	95.9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직업훈련교원 보수교육 만족도 (단위: 점)	목표	4.65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4.66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달성도	100.2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온라인훈련 이용인원 (단위: 천명)	목표	2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208.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달성도	104.2	(삭제)	(삭제)	(삭제)	(삭제)			
K-Digital Training 수료율 (단위: %)	목표	88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9.7	-	-	-	-			
	달성도	101.9	-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수 (단위: 명)	목표	13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131,737	-	-	-	-			
	달성도	101.3	-	-	-	-			
K-Digital Training 취업률 (단위: %)	목표	(신규)	68.2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57.5	-	-	-			
	달성도	-	84.3	-	-	-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취업률 (단위: %)	목표	73.0	80.3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81.7	80.1	-	-	-			
	달성도	111.9	99.8	-	-	-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료율 (단위: %)	목표	(신규)	78.8	(삭제)	(삭제)	(삭제)	-	-	-
	실적	-	78.6	-	-	-			
	달성도	-	99.7	-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인원	목표	(신규)	(신규)	786,600	690,258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 분석시스템)
	실적	-	-	664,955	-				
	달성도	-	-	84.5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한국대학평가원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취득(5개 평가영역 평가준거 모두 만족) - '22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교육중심대학 1위(14년 연속) - '22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정보통신공학전공' 최우수 - [정규 양성과정] 4,698명(학부 4,133명+대학원 565명) - [재·향상 연수] 91,822명(교직향상 70,500명, 전공향상 21,322명) - [온라인훈련] 225,900명, 훈련콘텐츠 430과정 개발(이러닝 400+VT 30) 등
2023	- 취업률 80.3%(교육부 공시기준, 졸업생 500명 이상 4년제 대학 중 2위) - '23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학생교육 우수대학 평가' 1위 - '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기재부 주관) '우수 등급(85.6점)' - [정규 양성과정] 4,681명(학부 4,111명+대학원 570명) - [재·향상 연수] 83,010명(교직향상 60,656명, 전공향상 22,231명, KDT 123명) - [온라인훈련] 238,561명, 훈련콘텐츠 421과정 개발(이러닝400+VT15+메타버스6) 등
2024	- 취업률 80.1%(교육부 공시기준, 졸업생 500명 이상 4년제 대학 중 3위) - 전국 4년제 "지방 소재 대학 중 수시 경쟁률 상위 10위권 이내(8.94:1)" - '24년 국민권익위 "종합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평가분류기관 중 최고 등급) - [정규 양성과정] 4,785명(학부 4,215명+대학원 570명) - [재·향상 연수] 80,718명(교직향상 56,092명, 전공향상 24,477명, KDT 149명) - [온라인훈련] 260,336명, 훈련콘텐츠 342과정 개발(이러닝321+VT15+메타버스6) 등
2025	- 2026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대전·세종·충청권 4년제 대학 최고(11.2:1)" - 특허청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통령상(연속 2회) 등 수상 - [정규 양성과정] 4,737명(학부 4,157명+대학원 580명) - [재·향상 연수] 64,948명(교직향상 40,756명, 전공향상 24,101명, KDT 91명) - [온라인훈련] 249,439명, 훈련콘텐츠 338과정 개발(이러닝320+VT15+메타버스3)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한기대의 인프라 확충,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우수 직업능력개발담당자 등 지속 양성(연간 약 3,830명) 및 직업훈련 품질 제고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인 경우 작성

☐ 총사업비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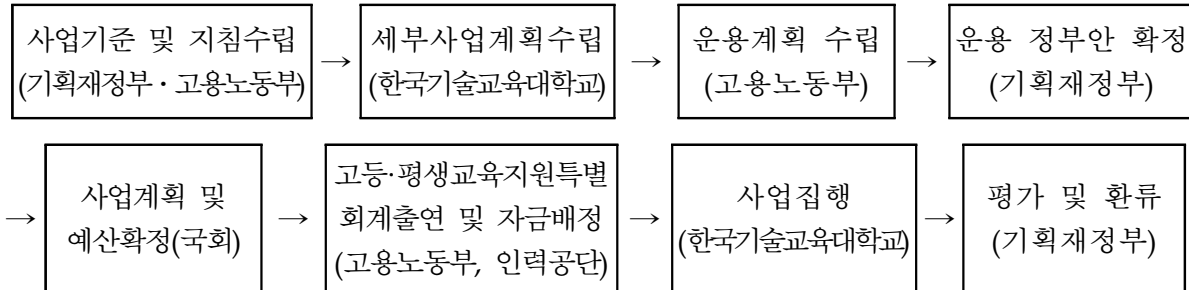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한기대 1공학관	'23~'28	-	11	40	12	-	232	295
고용 서비스 역량강 화센터	'23~'28	-	17	38	21	-	294	370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집행절차 : 정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학습지도능력을 갖춘 실천공학기술자 및 인력개발담당자 양성사업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위탁 실시하고, 재원은 정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학교법인에 재출연

- 사업추진 흐름도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0,251	-	40,251	40,082	40,082	99.6	100.0	-	-
2023	50,035	-	50,035	49,683	49,683	99.3	100.0	-	-
2024	52,718	-	52,718	52,718	52,718	100.0	100.0	-	-
2025	45,406	-	45,406	45,406	45,406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 전용사유: BTL 임차료 및 운영비 부족분 169백만원을 기관운영비(경상경비)에서 전용 집행 - 실집행 불용사유: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절감 및 사업비 절감 운용, 정현원 차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
2023	- 특이사항 없음 - 전용사유: BTL 임차료 및 운영비 부족분 352백만원을 기관운영비(경상경비) 등에서 전용 집행 - 실집행 불용사유: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절감 및 사업비 절감 운용, 정현원 차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
2024	- 특이사항 없음 - 실집행 불용사유: 경상경비 및 사업비 절감 운용, 육아휴직자 다수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
2025	- 특이사항 없음 - 「고등교육법」에 따라 회계기간을 3월 ~ 익년 2월말로 운영 중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4)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BTL정부지급금)(1136-7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고등·평생교육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080	08D
명칭	지원특별회계				사회복지	고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750
명칭	직업능력개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직업능력정책국
	사업시행주체	직업능력정책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BTL정부지급금)	3,593	3,671	3,671	3,638	3,638	△33	△0.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593	3,593	3,536	-	57	3,671	3,671	3,544	-	-	3,638
· 임차료	2,513	2,513	2,475	-	38	2,542	2,542	2,461	-	-	2,486
· 운영비	1,080	1,080	1,061	-	19	1,129	1,129	1,083	-	-	1,15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부족한 교육시설(공학관 및 기숙사)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충하고, 건물운영에 따른 임차료 및 운영비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52조의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훈련 또는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계좌적합훈련과정

3.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한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수교육 등 사업의 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의 요건·내용·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2(기술교육대학의 설립·운영)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실천공학기술자·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공학교육에 관한 선도모형의 개발·운영 및 보급사업

3. 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

4.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5. 다른 법령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시행령)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시행령)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제2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훈련직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

2.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 기법

3. 훈련생에 대한 지도 및 상담

4. 훈련성과 및 훈련생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보수교육의 시간은 24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7조의2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사업
2. 훈련매체, 훈련과정, 훈련방법 등의 개발·보급사업
3.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4. 조사·연구사업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제26조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 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관리를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

제26조(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제24조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실험실습 교과비중이 일반대학의 2배에 달하여 공학관 및 기숙사 시설이 상당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원 한계로 시설확충 지연
- 정부에서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노후된 교육훈련시설 조기 개선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부처별 사업시행
 - '08. 1~2: 실무위원회 구성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준비
 - '08. 6.10: 타당성 용역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검토
 - '08. 7.23: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08. 8.29: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P·Q심사서류 접수
 - '09. 1.2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0. 5.24: 사업시행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
 - '10. 7.23: 실시계획승인신청
 - '10. 8.13: 건축허가 승인
 - '10.12.13: 실시계획 승인(고시)
 - '10.12.15: 공사착공
 - '12. 8월: 준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2년 ~ 2032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168	3,168	3,593	3,671	3,638

- 기타 : 공학관, 기숙사 운영에 따른 임차료 및 운영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사업 수혜자 : 직업능력개발담당자, 직업능력개발전문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임차료	출연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2,486	100%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및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운영비			1,152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① 임차료 : (2025 예산) 2,542 → (2026 예산) 2,486백만원 (△56백만원)
 - (요구 및 산출) 민간투자비 균등분할 지급(4분기×621.5백만원)
- ② 운영비 : (2025 예산) 1,129 → (2026 예산) 1,152백만원 (증23백만원)
 - (요구 및 산출) 인건비, 제경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 운영비(4분기×288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671	○ 임차료(210-07) : 2,542백만원 가. 임차료 : 2,542백만원 - (요구 및 산출) 민간투자비 균등분할 지급(4분기×635.5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1,129백만원 가. 운영비 : 1,129백만원 - (요구 및 산출) 인건비, 제경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 운영비 (4분기×282.25백만원)	3,638	○ 임차료(210-07) : 2,486백만원 가. 임차료 : 2,486백만원 - (요구 및 산출) 민간투자비 균등분할 지급(4분기×621.5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1,152백만원 가. 운영비 : 1,152백만원 - (요구 및 산출) 인건비, 제경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 운영비 (4분기×28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운영평가 실시 후, 정부지급금 지급
2023	운영평가 실시 후, 정부지급금 지급
2024	운영평가 실시 후, 정부지급금 지급
2025	운영평가 실시 후, 정부지급금 지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과정 교육생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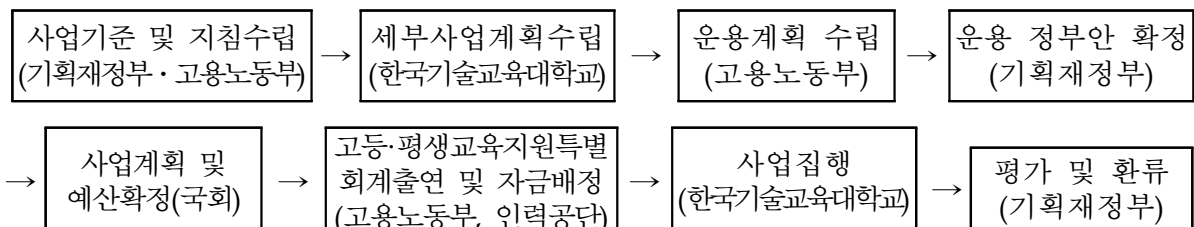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집행절차 : 정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학습지도능력을 갖춘 실천공학기술자 및 인력개발담당자 양성사업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위탁실시하고, 재원은 정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학교법인에 재출연

- 사업추진 흐름도



8) 각종 평가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 대외공개 평가
-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168	-	3,168	3,337	3,336	105.3	100.0	-	1
2023	3,168	-	3,168	3,520	3,519	111.1	100.0	-	1
2024	3,593	-	3,593	3,593	3,536	98.4	98.4	-	57
2025	3,671	-	3,671	3,671	3,544	96.6	96.6	-	12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사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입차료 증가 및 적용물가지수 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사업 기관운영비에서 169백만원 전용
2023	- 전용사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입차료 증가 및 적용물가지수 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운영지원사업 기관운영비 등에서 352백만원 전용
2024	- 불용사유: 다음연도 물가지수 및 금리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57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2025	- 불용사유: 다음연도 물가지수 및 금리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127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